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08호

2023. 9. 14.(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3-268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
제2023-269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3

[행정예고]

제2023-2633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22

◈ 고 시

제2023-395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 ····· 31
제2023-396호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변경) -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6
제2023-397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72
제2023-39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4
제2023-399호 도시관리계획(청담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77
제2023-400호 도시관리계획(삼성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01
제2023-401호 도시관리계획(역삼 · 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29
제2023-402호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57
제2023-403호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 · 1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81
제2023-404호 사당5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3
제2023-405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 226
제2023-406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고시 ····· 235
제2023-407호 도시관리계획(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39

제2023-408호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78
제2023-409호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 개발계획 변경수립 ·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479
제2023-41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52

◈ 공 고

제2023-2561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555
제2023-2589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576
제2023-2611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 578
제2023-2612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579
제2023-2621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580
제2023-2622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공고 ····· 582
제2023-2623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 583
제2023-262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 584
제2023-2628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계획 예고 ····· 585
제2023-2634호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 601
제2023-2635호 20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 602
제2023-2643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 · 훈련 미이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604
제2023-2645호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공모」 공고 ····· 606
제2023-2646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607
제2023-2647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 변경 등록 및 등록 말소사항 공고 ····· 608
제2023-2648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723
제2023-2649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725
제2023-265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726
제2023-265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727
제2023-2680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728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3-26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774
제2023-290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75
제2023-29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80

◈ 구 고 시

제2023-4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 785
제2023-137호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5차) 고시(용산구) ····· 788
제2023-14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산구) ····· 790
제2023-11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대문구) ····· 794
제2023-117호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 797
제2023-165호 비관리청 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남구) ····· 799
제2023-166호 비관리청 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남구) ····· 801
제2023-120호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송파구) ····· 803
제2023-121호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송파구) ····· 807
제2023-148호 고덕아르테온 기부채납 어린이공원 1호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동구) ····· 810

◈ 구 공 고

제2023-1111호 도시계획시설(공원/꿈나무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용산구) ····· 819
제2023-111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이촌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용산구) ····· 825
제2023-1120호 새샘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동대문구) ····· 832
제2023-1363호 마포구 염리동 168-9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마포구) ····· 842
제2023-1568호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양천구) ····· 851

제2023-1569호 도시관리계획[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양천구) ····· 852
제2023-157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갈산근린공원] 결정(변경) 열람공고 (양천구) ····· 853
제2023-1507호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금천구) ····· 855
제2023-1505호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동작구) ····· 856
제2023-156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송파구) ····· 865
제2023-1931호 암사동 252-8 일대 행위제한 열람 공고(강동구) ····· 867

◈ 사업소고시

제2023-3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868
제2023-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868
제2023-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869

◈ 기 타

제2023-27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870
제2023-27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871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8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조직 소관사무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조직) → 비상기획관 산하로 이관하여 민방위경보 운영관리 업무 등 소관 사무 반영

나.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간 업무조정
- (도시교통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관련 계획 수립 및 이동지원센터 업무 (보행자전거과 → 교통정책과 및 택시정책과)
-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 및 전시관람 업무 (총무과↔전시과)

다. 그밖에 규칙상 명칭 변경 및 직위 직렬 조정 사항 반영 등
- (경제정책실) ‘서울영화센터’(舊 서울시네마테크)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법령인 ‘서울시 영상진흥조례’상 명칭인 ‘영상산업지원시설’로 변경
- (도시교통실)「경찰법」 개정(’21.1월 시행)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장 직렬 조정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kyoni0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에 제20호부터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및 민방위경보 전파
21. 민방위경보시설·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
22. 그 밖의 민방위경보 전달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제9항제8호 중 “시네마테크”를 “영상산업 지원시설”로 한다.

제13조제5항제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행

제13조제9항제6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20호 중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6.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제54조제1항 중 농업교육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을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전산통신과,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전산통신과”로, “소방령으로,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을 “소방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35조제2항제4호 중 “매표 및 관람객 현황 관리, 주차장 등”을 “주차장 등”으로,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5. 과학관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마케팅

제135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매표 및 안내데스크 관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비상기획관) ① ~ ③ (생 략)	제8조(비상기획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민방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및 민방위경보 전파
<신 설>	21. 민방위경보시설·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 22. 그 밖의 민방위경보 전달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경제정책실에 두는 국·과) ① ~ ⑧ (생 략)	제11조(경제정책실에 두는 국·과)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시네마테크, e스포츠경기장 조성 및 운영	8. 영상산업 지원시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⑩ ~ ⑭ (생 략)	⑩ ~ ⑭ (현행과 같음)
제13조(도시교통실에 두는 과) ① ~ ④ (생 략)	제13조(도시교통실에 두는 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행

현 행	개 정 안
5. ~ 17. (생 략)	6. ~ 18. (현행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택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6. ~ 15. (생 략)	7. ~ 16. (현행 제6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보행자전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행	<삭 제>
4.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삭 제>
5. ~ 20. (생 략)	3. ~ 18. (현행 제5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음)
21. (생 략)	19. (현행 제21호와 같음)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⑬ 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서울지방경찰청 위임업무 중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항	20. 서울특별시경찰청 ----------
21. ~ 23. (생 략)	21. ~ 23. (현행과 같음)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4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 농업교육과·기술보급과를 두고, 농업교육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54조(하부조직) ① ----------지방농촌지도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하부조직) ①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종합상황실, 자원관리과, 전산통신과,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두고, 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자원관리과장 및 전산통신과장은 소방령으로,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6조(하부조직) ① ---------- 전산통신과---------- 소방령----------.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및 민방위경보 전파 2. 민방위경보시설·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 3. 그 밖의 민방위경보 전달에 관한 사항 등	<삭 제>
제135조(하부조직) ① (생 략)	제135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매표 및 관람객 현황 관리, 주차장 등 운영수익 관리	4. 주차장 등 운영수익 관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5. 과학관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마케팅
5.·6. (생 략)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③ 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과학관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마케팅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6. 매표 및 안내데스크 관리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9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총정원 변동없이 직렬·직급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립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 등에 따라 교육공무원 13명 증원을 위해 일반직공무원 13명 정원 조정
- 일반직공무원 5급이하 △13 → 교육공무원 교수 +11명, 조교 +2명

나.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소관 변경에 따라 소방방재센터(직속기관) → 비상기획관(본청) 정원 22명 이관
- 5급 1명, 6급이하 2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 포함)

다.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3조 2교대 확대추진을 위해 소방직 12명 직급 조정
- 소방사 △12 → 소방령 + 12

라. 그밖에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 및 필요분야 인력 재배치를 위해 직렬·직급 간 조정
- ① 기후환경본부 ② 재난안전관리실 ③ 은평병원 등 직렬·직급 간 정원조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kyoni0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710	429	1,149	5,216	226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02	4,654	420	371	5,033	224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또는방송통신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행정·환경·공업또는녹지란 아래 행정·환경·공업또는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급 소계	1,544	1,049	54	57	337	47
행정또는방송통신	6	5			1	
행정·공업또는시설	76	67		1	8	
행정·환경·공업 또는시설	1	1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전기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682	1,919	178	109	1,372	104
행정	1,422	886	148	43	271	74
공업	351	110	6	5	228	2
시설	584	326	3	2	235	18
방송통신	57	35	2	2	18	
전기운영	52	1			51	

같은 표 7급 소계란, 의료기술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행정·공업·시설·전산란, 기계운영란, 농림운영란,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327	1,309	123	133	1,701	61
의료기술	43	2		1	40	
시설	545	234	2	5	296	8
방송통신	55	30	3	5	17	
행정·공업·시설·전산	11	10			1	
기계운영	58	3	1		54	
농림운영	2				2	

사무운영	60	6	2	1	51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운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102	142	38	59	860	3
행정	110	20	7	12	69	2
공업	97	5	1	4	87	
시설	76	5			71	
방송통신	16	7		2	7	
운전	98	14	3	11	70	

같은 표 9급 소계란, 방송통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567	5	3	1	558	
방송통신	2	2				

같은 표 전문경력관 소계란, 나군 소계란, 나군 소계란 아래 민방공경보통제요원란, 약물분석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치료사란을 삭제한다.

전문경력관 소계	157	28	4	2	123	
나군 소계	67	24	4	2	37	
민방공경보통제요원	1	1				

약물분석기사	2				2	

같은 표 교육공무원 계란, 교수·부교수·조교수란, 조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공무원 계	554			554		

교수·부교수·조교수	476			476		
조교	77			77		

별표 2의 소방령란, 소방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령	179	27		152		

소방사	3,671	23		3,64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 · 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1,730	4,690	429	1,157	5,228	226
(생 략)						
일반직 계	10,715	4,634	420	392	5,045	224
(생 략)						
5급 소계	1,544	1,048	54	58	337	47
(생 략)						
행정또는방송통신	6	4		1	1	
(생 략)						
행정·공업또는시설	77	68		1	8	
(생 략)						
행정·환경·공업또는녹지	3	3				
(칸 신설)						
(생 략)						
6급 소계	3,681	1,917	178	111	1,371	104
행정	1,421	886	148	43	270	74
(생 략)						
공업	351	111	6	4	228	2
(생 략)						
시설	583	325	3	2	235	18
(생 략)						
방송통신	58	34	2	4	18	
(생 략)						
전기운영	52			1	51	
(생 략)						
7급 소계	3,339	1,301	123	141	1,713	61

개 정 안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 · 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1,730	4,710	429	1,149	5,216	226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0,702	4,654	420	371	5,033	224
(현행과 같음)						
5급 소계	1,544	1,049	54	57	337	47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방송통신	6	5			1	
(현행과 같음)						
행정·공업또는시설	76	67		1	8	
(현행과 같음)						
행정·환경·공업또는녹지	3	3				
행정·환경·공업또는시설	1	1				
(현행과 같음)						
6급 소계	3,682	1,919	178	109	1,372	104
행정	1,422	886	148	43	271	74
(현행과 같음)						
공업	351	110	6	5	228	2
(현행과 같음)						
시설	584	326	3	2	235	18
(현행과 같음)						
방송통신	57	35	2	2	18	
(현행과 같음)						
전기운영	52	1			51	
(현행과 같음)						
7급 소계	3,327	1,309	123	133	1,701	61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생 략)							(현행과 같음)						
의료기술	42	2		1	39		의료기술	43	2		1	40	
(생 략)							(현행과 같음)						
시설	547	235	2	5	297	8	시설	545	234	2	5	296	8
(생 략)							(현행과 같음)						
방송통신	55	22	3	13	17		방송통신	55	30	3	5	17	
(생 략)							(현행과 같음)						
행정·공업·시설·전산	10	9			1		행정·공업·시설·전산	11	10			1	
(생 략)							(현행과 같음)						
기계운영	59	3	1		55		기계운영	58	3	1		54	
(생 략)							(현행과 같음)						
농림운영	3				3		농림운영	2				2	
(생 략)							(현행과 같음)						
사무운영	70	6	2	1	61		사무운영	60	6	2	1	51	
8급 소계	1,104	136	38	66	861	3	8급 소계	1,102	142	38	59	860	3
행정	109	19	7	12	69	2	행정	110	20	7	12	69	2
(생 략)							(현행과 같음)						
공업	97	4	1	5	87		공업	97	5	1	4	87	
(생 략)							(현행과 같음)						
시설	77	6			71		시설	76	5			71	
방송통신	16	2		7	7		방송통신	16	7		2	7	
(생 략)							(현행과 같음)						
운전	100	14	3	12	71		운전	98	14	3	11	70	
(생 략)							(현행과 같음)						
9급 소계	567	3	3	3	558		9급 소계	567	5	3	1	558	
(생 략)							(현행과 같음)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생 략)							(현행과 같음)						
전문경력관 소계	157	27	4	3	123		전문경력관 소계	157	28	4	2	123	
(생 략)							(현행과 같음)						
나군 소계	67	23	4	3	37		나군 소계	67	24	4	2	37	

현 행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생 략)						
민방공경보통제요원	1	1				
(생 략)						
치료사	1				1	
약물분석기사	1				1	
(생 략)						
다군 소계	541			541		
(생 략)						
교수부교수조교수	465			465		
조교	75			75		
(생 략)						

[별표 2]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소방공무원 계	7,434	157		7,277		
(생 략)						
소방령	167	27		140		
(생 략)						
소방사	3,683	23		3,660		
(생 략)						

개 정 안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현행과 같음)						
민방공경보통제요원	1	1				
(현행과 같음)						
(칸 삭제)						
약물분석기사	2				2	
(현행과 같음)						
교육공무원 계	554			554		
(현행과 같음)						
교수·부교수·조교수	476			476		
조교	77			77		
(현행과 같음)						

[별표 2]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소방공무원 계	7,434	157		7,277		
(생 략)						
소방령	179	27		152		
(생 략)						
소방사	3,671	23		3,648		
(생 략)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33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기관(부서)별 공무직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관(부서)별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2,176명에서 2,145명으로 31명 감원 조정(제4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 2133-6741, FAX : 2133-0822, E-mail: bjh9825@seoul.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 2133-0822
(2) 이메일: bjh9825@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이 공고(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행정예고 및 중요문서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총 2,176명”을 “총 2,145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4조(정원의 총수) ① 시 공무직의 정원은 총 2,176명으로 한다. ②(생 략)	제4조(정원의 총수) ① ---------- ---------- 총 2,145명--------. ②(현행과 같음)

[별 표]

공무직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명)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총 계	2,145	323	516	81	440	234	144	8	16	11	27	441	228	116
본 청	268	108	15	0	63	26	26	0	6	0	5	74	7	1
민방위담당관	3				2	1	1					1		
빅데이터담당관	4	4												
정보공개담당관	8	8												
소방행정과	18				5	3	2					6	6	1
일자리정책과	22	22												
복지정책과	3	3												
안심돌봄복지과	1	1												
어르신복지과	1	1												
택시정책과	1	1												
물류정책과	1	1												
문화재관리과	11	2	9											
보건의료정책과	1	1												
감염병관리과	3	3												
총무과	169	55			54	22	23		4		5	60		
주택정책과	2	2												
건축기획과	2	2												
광화문광장사업과	10				2				2			7	1	
동물보호과	8	2	6											
직속기관	303	62	2	0	120	94	19	0	2	2	3	95	24	0
서울시립대학교	106	22			21	10	8		2		1	43	20	
보건환경연구원	25	8			10	4	4			2		7		
인재개발원	6											6		
서울종합방재센터	10	7			2						2	1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농업기술센터	1											1		
119특수구조단	1											1		
소방서	121	25			75	75						21		
소방학교	20		2		6	3	3					8	4	
시민안전체험관	13				6	2	4					7		
사업소	**1,564**	**153**	**499**	**81**	**257**	**114**	**99**	**8**	**8**	**9**	**19**	**262**	**197**	**115**
상수도사업본부	125	9	6		52	21	21				10	45	9	4
미래한강본부	146		76		6	1	1		1	1	2	56	3	5
데이터센터	8				3	3						3	2	
시립어린이병원	41	7			9	4	5					11	3	11
시립서북병원	62	7			12	5	6		1			9	9	25
시립은평병원	24	2			8	4	4					7	5	2
서울역사박물관	123	37			28	14	14					25	33	
한성백제박물관	82	41			14	4	4		1	1	4	8	19	
서울시립미술관	48	3			14	9	5					17	10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67		44											23
서울도서관	3	3												
서울역사편찬원	6	5										1		
품질시험소	3											2	1	
동부도로사업소	26		1	14	8	4	4					1	2	
서부도로사업소	18		1	14								1	1	1
남부도로사업소	20		1	13								2	3	1
북부도로사업소	20		1	14								2	1	2
성동도로사업소	17		1	13								2	1	
강서도로사업소	17		1	13								2		1
중랑물재생센터	10		3		3	2		1				3	1	
난지물재생센터	7		4		1			1				1		1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서울대공원	188	4	57		67	29	20	6	5	6	1	26	8	26
동부공원여가센터	76	2	58									6	8	2
중부공원여가센터	111	1	87		3	1	2						20	
서부공원여가센터	134		93		2						2	4	29	6
북부공원여가센터	45		26		2	1	1						17	
서울시립과학관	47	26			6	3	3					8	6	1
서울식물원	69	4	39		11	5	5			1		10	5	
서울기록원	2	2												
아동복지센터	5				2	1	1					2	1	
차량정비센터	1											1		
공무원수련원	13				6	3	3					7		
의회사무처	10	0	0	0	0	0	0	0	0	0	0	10	0	0
의회사무처	10											10		

현 행

[별표] 공무직 정원표 (제4조 관련)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총 계	2,176	336	529	81	438	233	143	8	17	11	26	430	246	116
본 청	279	106	15	0	69	28	30	0	6	0	5	82	6	1
민방위담당관	4				2	1	1					2		
빅데이터담당관	4	4												
일자리정책과	22	22												
복지정책과	3	3												
안심돌봄복지과	1	1												
어르신복지과	1	1												
택시정책과	1	1												
물류정책과	1	1												
문화재관리과	11	2	9											
총무과	166	53			54	22	23		4		5	59		
정보공개담당관	8	8												
정신건강과	1	1												
감염병관리과	3	3												
동물보호과	8	2	6											
건축기획과	2	2												
광화문광장사업과	11				2				2			8	1	
주택정책과	2	2												
소방행정과	16				5	3	2					5	5	1
안전지원과	14				6	2	4					8		
직속기관	284	62	2	0	115	92	15	0	2	2	4	81	24	0
서울시립대학교	104	22			22	10	8		2		2	40	20	
보건환경연구원	25	8			10	4	4			2		7		
인재개발원	4											4		

개 정 안

[별표] 공무직 정원표 (제4조 관련)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총 계	2,145	323	516	81	440	234	144	8	16	11	27	441	228	116
본 청	268	108	15	0	63	26	26	0	6	0	5	74	7	1
민방위담당관	3				2	1	1					1		
빅데이터담당관	4	4												
정보공개담당관	8	8												
소방행정과	18				5	3	2					6	6	1
일자리정책과	22	22												
복지정책과	3	3												
안심돌봄복지과	1	1												
어르신복지과	1	1												
택시정책과	1	1												
물류정책과	1	1												
문화재관리과	11	2	9											
보건의료정책과	1	1												
감염병관리과	3	3												
총무과	169	55			54	22	23		4		5	60		
주택정책과	2	2												
건축기획과	2	2												
광화문광장사업과	10				2				2			7	1	
동물보호과	8	2	6											
직속기관	303	62	2	0	120	94	19	0	2	2	3	95	24	0
서울시립대학교	106	22			21	10	8		2		1	43	20	
보건환경연구원	25	8			10	4	4			2		7		
인재개발원	6											6		

현 행

[별표] 공무직 정원표 (제4조 관련)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서울종합방재센터	1											1		
농업기술센터	10	7			2						2	1		
119특수구조단	1											1		
소방서	120	25			75	75						20		
소방학교	19		2		6	3	3					7	4	
사업소	1,602	168	512	81	254	113	98	8	9	9	17	256	216	115
상수도사업본부	128	9	7		50	21	20				9	46	12	4
한강사업본부	138		76		5	1	1		1	1	1	51	3	3
데이터센터	9				3	3						3	3	
시립어린이병원	45	12			9	4	5					11	2	11
시립서북병원	63	7			12	5	6		1			10	9	25
시립은평병원	27	4			8	4	4					5	6	4
서울역사박물관	127	37			28	14	14					28	34	
한성백제박물관	89	44			14	4	4		1	1	4	8	23	
서울시립미술관	49	5			14	8	5		1			17	9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67		44											23
서울도서관	3	3												
동부도로사업소	26		1	14	8	4	4					1	2	
서부도로사업소	18		1	14								1	1	1
남부도로사업소	21		1	13								2	4	1
북부도로사업소	19		1	14								1	1	2
성동도로사업소	17		1	13								2	1	
강서도로사업소	16		1	13								1		1
서울역사편찬원	9	8										1		
중랑물재생센터	10		3		3	2		1				3	1	

개 정 안

[별표] 공무직 정원표 (제4조 관련)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농업기술센터	10	7			2						2	1		
서울종합방재센터	1											1		
119특수구조단	1											1		
소방서	121	25			75	75						21		
소방학교	20		2		6	3	3					8	4	
시민안전체험관	13				6	2	4					7		
사업소	1,564	153	499	81	257	114	99	8	8	9	19	262	197	115
상수도사업본부	125	9	6		52	21	21				10	45	9	4
미래한강본부	146		76		6	1	1		1	1	2	56	3	5
데이터센터	8				3	3						3	2	
시립어린이병원	41	7			9	4	5					11	3	11
시립서북병원	62	7			12	5	6		1			9	9	25
시립은평병원	24	2			8	4	4					7	5	2
서울역사박물관	123	37			28	14	14					25	33	
한성백제박물관	82	41			14	4	4		1	1	4	8	19	
서울시립미술관	48	3			14	9	5					17	10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67		44											23
서울도서관	3	3												
서울역사편찬원	6	5										1		
품질시험소	3											2	1	
동부도로사업소	26		1	14	8	4	4					1	2	
서부도로사업소	18		1	14								1	1	1
남부도로사업소	20		1	13								2	3	1
북부도로사업소	20		1	14								2	1	2

현 행

[별표] 공무직 정원표 (제4조 관련)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난지물재생센터	7		4		1			1				1		1
동부공원여가센터	76	2	58									6	8	2
중부공원여가센터	114	1	87		3	1	2						23	
서부공원여가센터	137		93		2						2	4	32	6
북부공원여가센터	45		26		2	1	1						17	
서울대공원	192	4	62		67	29	20	6	5	6	1	24	9	26
서울식물원	76	4	46		11	5	5			1		9	6	
아동복지센터	6				2	1	1					3	1	
공무원수련원	15				6	3	3					7	2	
차량정비센터	1											1		
서울시립과학관	47	26			6	3	3					8	6	1
서울기록원	2	2												
품질시험소	3											2	1	
의회사무처	11	0	0	0	0	0	0	0	0	0	0	11	0	0
의회사무처	11											11		

개 정 안

[별표] 공무직 정원표 (제4조 관련)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성동도로사업소	17		1	13								2	1	
강서도로사업소	17		1	13								2		1
중랑물재생센터	10		3		3	2		1				3	1	
난지물재생센터	7		4		1			1				1		1
서울대공원	188	4	57		67	29	20	6	5	6	1	26	8	26
동부공원여가센터	76	2	58									6	8	2
중부공원여가센터	111	1	87		3	1	2						20	
서부공원여가센터	134		93		2						2	4	29	6
북부공원여가센터	45		26		2	1	1						17	
서울시립과학관	47	26			6	3	3					8	6	1
서울식물원	69	4	39		11	5	5			1		10	5	
서울기록원	2	2												
아동복지센터	5				2	1	1					2	1	
차량정비센터	1											1		
공무원수련원	13				6	3	3					7		
의회사무처	10	0	0	0	0	0	0	0	0	0	0	10	0	0
의회사무처	10											10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5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지정문화재) · 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사실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개요
 가.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 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59호	법화영험전 (法華靈驗傳)	1책	24.8×16.6	1565년 (명종 20) 이전	중랑구 (대한불교 조계종 법장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60호	노원 정암사 석조석가여래좌상 (蘆原 淨巖寺 石造釋迦如來坐像)	불상 1구, 불상 전적 13건	상 높이 75, 너비 48	1702년	노원구 (김형택)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61호	청자 양인각 연지동자문 완 (靑瓷陽印刻蓮池童子紋 碗)	1점	높이 5.5, 굽지름 5.3, 입지름 18.6	고려시대	마포구 ((재)금성문화재단)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 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62호	감지금니섭대승론석론권제3 (紺紙金泥攝大乘論釋論卷第三)	1권	높이 30.7, 길이 약 850, 천간 6.8, 지간 4.9, 변상도 19×38, 발원문 19×10.5	1319년 (충숙왕 6)	종로구 (이호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63호	신룡사명 동종 (神龍寺銘銅鍾)	1점	총고 21.6, 구경 13.4	고려 1238년	종로구 (이호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64호	서초 관현사 목조관음보살좌상 (瑞草 觀顯寺 木造觀音菩薩坐像)	불상 1구, 복장 유물 6건	높이 75.5, 너비 45.5	조선 1637년	서초구 (김민채 [연성])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65호	강북 삼성암 산신도 (江北 三聖庵 山神圖)	1점	전체 : 세로 125.0×가로 146.8 화면 : 세로 116.7×가로 138.0	1908년	강북구 (대한불교 조계종 삼성암 세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66호	강북 삼성암 치성광여래회도 (江北 三聖庵 熾盛光如來會圖)	1점	전체 : 세로 110.0, 가로 223.2 화면 : 세로 104.0, 가로 218.7	1909년	강북구 (대한불교 조계종 삼성암 세민)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90호	노원 정암사 신묘장구대다라니판목 (蘆原 淨巖寺 神妙章句大陀羅尼版木)	1점	판목 : 70 × 30.5 × 3.4 광곽 : 54.8 × 30.5	조선 후기	노원구 (김형택)

나. 지정 사유

■ 유형문화재

【법화영험전(法華靈驗傳)】

조사 대상 『법화영험전』은 고려 승려 요원의 편찬서로 여러 불교 영험문헌 중에서 법화경의 영험담(靈驗談)만을 뽑아 간행한 책으로 고려 후기 법화 신앙과 불교 설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그 내용 중에는 현전하지 않는 고려 진정국사(眞靜國師)의 『해동전홍록(海東傳弘錄)』 일부 내용을 알 수 있고, 신라와 고려 승려의 전기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전해지는 여러 판본 중

에 조사대상이 된 황해도 수안 대청산 중암 판본은 1565년경에 판각한 책으로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본문의 결락이 없고, 현존하는 판본 중에 동일본으로 동국대 1종, 일본에 1종 정도만 확인되어 희귀함이 있는 등 조선 전기의 서지학 및 불교학 연구 측면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노원 정암사 석조석가여래좌상(蘆原 淨巖寺 石造釋迦如來坐像)】

<정암사 석조석가여래좌상>은 노원구 정암사 법당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석가여래좌상이다. 불상조성기와 전적이 잘 남아있어 이 불상이 1702년 순천 대흥사에서 조각승 수일(守一)이 제작한 과거칠불 가운데 하나임이 밝혀졌다. 불상조성기는 “時維 康熙四十一 歲次壬午 五月日 全羅左道順天府北嶺桐裡山大興寺緣化比丘等發願文” 즉 “강희 41년 임오년인 1702년에 전라좌도 순천부 북령의 동리산 대흥사에서 발원하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제목에서 알려주듯 이 석조석가여래좌상은 1702년 순천 대흥사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다. 불상조성기에는 경주 동령(東嶺) 불회산(佛會山)에서 과거칠불(過去七佛)과 오십삼석가존상(五十三釋迦尊像)을 조성한 후 순천 대흥사로 이운하여 봉안했으며, 당시 조성한 과거칠불 가운데 일곱 번째인 석가모니불이라고 적었다.

정암사의 석조석가여래좌상은 불석으로 제작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상조성기에 경주 동령(東嶺) 불회산(佛會山)에서 제작했다고 적고 있는데, 불회산이 정확히 경상도 동쪽의 어느 산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지만, 불석이 산출되는 기림사 인근이라고 추정된다. 상의 높이는 50cm가 조금 넘는 크지 않은 상이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1702년 순천 대흥사에 봉안했던 과거칠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7 석가모니불좌상임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청자 양인각 연지동자문 완(靑瓷陽印刻蓮池童子紋 碗)】

<청자 양인각 연지동자문 완>은 높이가 약 5.5cm, 입지름은 약 18.6cm 정도의 비교적 크기가 큰 완(碗)이다. 조사대상 청자의 내면은 틀[도범(陶範)]을 사용하여 문양을 바탕면보다 도드라지게 하는 양인각(陽印刻) 혹은 압출양각(壓出陽刻)이라 하는 장식기법으로 시문되었다. 조사대상과 같이 입지름이 넓고 기측면이 저부에서부터 구연까지 사선에 가깝게 곧게 뻗은 형태에 내면을 압출양각으로 장식한 완은 고려 중기에 새로 등장한 형식 중 하나이다.

<청자 양인각 연지동자문 완>은 고려시대 제작된 다양한 종류의 완 중 태토와 유색, 번조 상태 등 품질이 우수하다. 구연부 3곳 정도가 수리된 것으로 파악되나, 비교적 제작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조사대상 청자는 크기와 형태, 장식 등이 조화를 이루었으며, 압인각 장식의 정세함과 완성도가 뛰어나 전체적으로 예술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동일한 형식의 작품이 여럿 존재하나, 그중 조사대상품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자 양인각 연지동자문 완>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감지금니섭대승론석론권제3(紺紙金泥攝大乘論釋論卷第三)】

<감지금니섭대승론석론권제삼>은 권본으로 두루마리를 펼치면 먼저 패(牌)형의 발원문이 첫머리에 자리하고, 이어 변상도와 본문의 순으로 이어진다. 조사 대상의 감지는 보편적인 고려시대의 사경지 보다 약간 얇고 빳빳한 편이다. 본문과 변상도 모두 금을 사용했으며 종이의 상태와 금의

발색도 좋으나 글자는 고려 사경체 보다 예리함이 줄고 획이 부드러운 편이다. 경의 본문은 상하 단선으로 천지간을 나누고 행간에는 계선(界線)을 쳐서 1행 14자로 기록하였다.

『섭대승론』은 산스크리트어로 Mahāyāna-saṃgraha 라 하며 '大乘을 포섭(包攝)한 논' 이라는 뜻으로 무착(無着, Asa ga, 395-470년경)이 지은 대승불교 초기의 대표적 경전이다. 대승불교의 개론서라 할 수 있으며,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었다. 『섭대승론』의 산스크리트 원본은 현재 전하지 않고 한역 3본과 티베트어역이 현존한다.

<감지금니섭대승론석론권제삼>은 충선왕이 원에 머물고 있던 시기에 발원하여 제작된 사경으로 비록 국내에서 고려 사경승이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고려의 왕이 발원한 사경이므로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14세기 초 원대 사경의 재료, 서체, 변상도 등 제작의 양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도 있으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룡사명 동종(神龍寺銘銅鍾)】

1238년에 조성된 〈신룡사 동종〉은 통일신라 종 형식을 갖춘 전통형이면서 고려 후기 종의 특징인 입상화문대가 장식된 종 양식을 보인다. 규모는 작으나 보살상이나 당좌의 양각선 같은 세부 표현에서 양감이 두드러진다.

제작 시기가 분명한 이 종은 반자 3점, 범종 2점을 남긴 고려 후기 걸출한 주성장이었던 한중서의 장년기 작품으로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다. 특히 명문은 고려 관장들의 체계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고 하겠다.

한중서의 작품 중 걸작으로 알려진 내소사 동종과 옥천사 반자는 이미 보물로 지정된 바 있어 같은 장인이 만든 신룡사명 동종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서초 관현사 목조관음보살좌상(瑞草 觀顯寺 木造觀音菩薩坐像)】

서울 관현사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해 1637년 6월 조각승 인일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래의 봉안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연풍현감' 기록으로 보아 연풍지역 사찰에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울 관현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각승 인일이 제작한 2건의 불상을 이은 3번째 발견품이며, 임진왜란 직전과 직후의 조선 조각계를 연결해주는 주요 조각승의 작품으로서 의의가 크다. 임진왜란 직후 활동하기 시작한 소수의 조각승 중 하나인 仁日의 후반기 작품 경향을 알 수 있다는 데에서 학술적 중요성이 있으며, 이 작품 사례를 통하여 인일이 경기도 남부에서 충북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에서 활동하였을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학술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관현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강북 삼성암 산신도(江北 三聖庵 山神圖)】

<삼성암 산신도>는 1908년에 강재희의 시주로 출초 석옹 철유, 편수 두흠 등 6명의 화승이 제작하여 삼성암에 봉안한 불화이다. 서양화 음영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채색법으로 대한제국 시기의 특징을 반영하였다. 특히 출초를 담당한 석옹 철유는 전통 불화에 서양화법을 접목한 근대 화승으로서 평가받는데, 이 불화에서 이러한 서양화의 명암법을 반영하여 산신과 배경 풍경을 채색

하였다. 또한 백우선을 든 산신이 호랑이에 등을 기댄 도상은 경상도 지역의 도상이 서울지역 산신도에서 발전하는 산신도 도상 흐름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화면에 표현된 두 그루의 소나무는 궁중 채색화인 <일월오봉도>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을 변용하여 서울지역의 산신도 도상에서 나타난 특이한 예이다. 이처럼 서양화의 명암법을 반영하고, 서울지역 산신도 도상의 특별한 형태를 보여주는 <삼성암 산신도>는 시대 양식과 출초 화승 석옹 철유의 특징을 담은 불화로서 자료 가치가 높다.

또한 제작 시기와 봉안 장소가 명확하고, 도상이 서울지역 산신도의 특이한 사례로서 수도권 산신도의 발전 화풍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강북 삼성암 치성광여래회도(江北 三聖庵 熾盛光如來會圖)】

<삼성암 치성광여래회도>는 1909년에 3인의 상궁들이 시주자로 참여한 것으로, 당시 저명한 수화승 경선 응석과 3인의 화승들이 제작하였다. 경선 응석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서울 ·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여러 불화의 범본을 제작하였던 화승으로, <삼성암 치성광여래회도>는 그가 제작한 <치성광여래도>의 화면 구성과 도상을 적절히 변용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정연한 화면 구성과 원만한 불 · 보살의 표현, 섬세한 시문 등 화승들의 역량이 잘 발휘된 작품이다. 적극적인 금박의 사용과 화려한 문양은 상궁들이 후원한 서울 · 경기지역의 화려한 화풍을 잘 보여준다. 또한 대한제국의 상징 문양인 오얏꽃 문양을 여러 곳에 시문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불화는 제작 시기와 봉안 장소가 명확하고, 범본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당시 수도권 불화의 제작 방식, 후원층과 관련 있는 화풍과 문양 등 서울 · 경기 지역의 불화의 도상과 화풍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따라서 <삼성암 치성광여래회도>는 시기성과 지역성을 잘 반영한 불화로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자료

【노원 정암사 신묘장구대다라니판목(蘆原 淨巖寺 神妙章句大陀羅尼版木)】

<정암사 신묘장구대다라니판목>에는 '종산보광사판' 이라고 판각 사찰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산 보광사는 여수의 대표적인 산의 하나인 종고산(鍾鼓山)을 일컬으며, 보광사는 종고산의 남록에 위치하는 사찰이다. 조사대상의 판목은 전후면 모두 경면주사(鏡面朱砂) 등으로 인출하여 전면적으로 주홍색으로 뒤덮여 있으며, 여러 차례의 인출로 판목 표면에 가는 가로금이 많이 파여 져 있다. 판목은 크고 단단하여 뒤틀림이 없고, 판면은 마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글자는 온전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현존 다라니판목 중 <신묘장구대다라니>판은 <대불정존승다라니>나 <수구다라니>에 비해 그 현존 사례가 드물다. 또한 판목에 판각 연대는 없으나 판각처가 새겨져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판목 중 1매의 판목이 지정된 사례는 드물지만 <신묘장구대다라니판목>은 발견 사례가 희귀하여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문화재 지정 일자 : 서울시보 고시 일자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 396호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변경) -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7호(2019.7.25.)로 결정된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1-1970호(2021.12.16.), 2023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3.15.)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3-1157호(2023.6.22.)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불광동 227-7번지 일대	44,258	증)3,530	47,788	-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44,258.0	증)3,530.0	47,788.0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8,519.0	감)563.0	7,956.0	16.6	-
	도 로		3,216.0	증)177.0	3,393.0	7.1	-
	공원	합계	5,303.0	감)740.0	4,563.0	9.5	-
		공원1	3,383.0	감)1,184.0	2,199.0	4.6	소공원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2	1,715.0	감)528.0	1,187.0	2.5	소공원
		공원3-1	205.0	-	205.0	0.4	불광근린공원
		공원3-2 주1)	-	증)972.0	972.0	2.0	불광근린공원 (대체공원)
획 지	소 계		35,739.0	증)4,093.0	39,832.0	83.4	-
	획지1		34,435.0	증)4,157.0	38,592.0	80.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획지2-1 주2)	397.0	감)397.0	-	-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삭제
		획지2-2 주3)	-	증)333.0	333.0	0.7	환지(요양병원)
	획지3		331.0	-	331.0	0.7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구대)
	획지4		576.0	-	576.0	1.2	문화 및 집회시설 (다문화박물관)

주1) 기 불광근린공원 937㎡를 폐지 정비구역으로 편입하고 추가편입구역2(예승빌라) 일부 972㎡를 불광근린공원 대체공원으로 조성
주2) 사업부지내 기 유치원부지 사업주 의사 결정에 따라 기 결정된 획지2-1(유치원) 용도폐지
주3) 정비구역내 요양원 소유부지(221-56, -91, -92, 238-15(일부2㎡) / 296㎡)를 획지로 편입하고 획지2-2(요양원)부지 333㎡ 신설하여 환지

4.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합 계	47,788	-	47,78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140	증) 37	1,177	2.5	근린공원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395	감) 4,376	8,019	16.8	도로, 소공원 등
	제3종일반주거지역	20,287	증) 4,447	24,734	51.7	획지1
	준주거지역	13,966	감) 108	13,858	29.0	획지1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불광동 산 58-3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935	-	•불광근린공원 선형 정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불광동 230-13, 217-5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136	-	•불광근린공원 선형 정형화 및 구역편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불광동 217-4, 221-7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준주거지역	3,313	-	•소공원1,2 선형 조정 및 구역편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불광동 218-3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74	-	•획지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불광동 239-18, 221-92 239-15일대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45	-	•소공원1 및 획지3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구역내 기반시설과의 정합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불광동 221-28일대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450	-	•획지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불광동 230-14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제1종일반주거지역	972	-	•불광근린공원 계획 일관성 및 효용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5.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table>
<tr><td>추정
비례율</td><td>●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수입 - 총지출) / 종전자산액 X 100%
●추정비례율 =100.47%
= (873,909,300,830원 - 600,720,313,000원) / 271,914,473,410원 X 100%
- 총수입 추정액 = 873,909,300,830원
- 총지출 추정액 = 600,720,313,000원
- 종전자산 추정 총액 = 271,914,473,410원</td></tr>
<tr><td>개별
종전자산추정액</td><td>토지평가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과 인근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 종전가액을 추정

건물평가 : 사용승인 일자를 기준으로 구조, 시공,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종전 자산가액을 추정하되, 감가수정은 관찰감가법을 병용 종전가액을 추정

집합건물평가 : 층별·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시공, 관리상태, 대지지분은 물론 인근지역내 유사물건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집합건물 종전자산가액을 추정

※ 단독주택 및 상가 = 토지평가 추정액 + 건물평가 추정액
토지: 개별요인, 인근평가사례, 인근거래사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건물: 재조달 원가, 부대설비 보정원가, 건물현황, 준공년도
※ 집합건물 = 인근 거래사례, 유사부동산 평가사례, 외부요인, 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td></tr>
<tr><td>추정
분담금 산출</td><td>아파트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추정분담금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
<tr><th>추정권리가액</th><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추정액</th><th>추정분담금</th></tr>
<tr><td rowspan="8">개별 종전자산총액
X 추정 비례율</td><td>39형</td><td>465,774,000</td><td rowspan="8">권리자분양가 추정액
-추정권리가액
(+: 부담, -: 환급)</td></tr>
<tr><td>45형</td><td>531,160,000</td></tr>
<tr><td>50형</td><td>594,037,000</td></tr>
<tr><td>59형</td><td>665,224,000</td></tr>
<tr><td>74형</td><td>762,280,000</td></tr>
<tr><td>84형</td><td>863,132,000</td></tr>
<tr><td>114형</td><td>1,055,963,000</td></tr>
<tr><td>129형</td><td>1,169,128,000</td></tr>
</table>
</td></tr>
</table>

주1) 본 내용은 추정액으로 향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분양가격 그리고 사업비 확정 결과 등에 따라 상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	20~23	집산 도로	1,820 (410)	불광동 (불광동 239-21)	불광동 (불광동 220-2)	일반 도로	-	건고 제2493호 ('66.06.21)	-
변경	중로	1	1	20~23	집산 도로	1,820 (470)	불광동 (불광동 239-21)	불광동 (불광동 220-2)	일반 도로	-	건고 제2493호 ('66.06.21)	선형변경 및 구역내 연장 확대
기정	소로	1	6	6~10	국지 도로	117 (79)	불광동 221-57	불광동 230-23	일반 도로	-	서고 제468호 (2008.12.18)	-
변경	소로	1	6	6~10	국지 도로	97 (59)	불광동 221-59	불광동 230-23	일반 도로	-	서고 제468호 (2008.12.18)	선형변경 및 구역내 구간 일부폐지

※ ( )는 구역내 연장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	중로1-1	•구역내 일부 구간 확폭 및 선형 조정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구역내 일부 구간 확폭 및 굴곡구간 선형 조정
소로1-6	소로1-6	•도로 선형변경 및 구역내 구간 일부폐지	•획지2(요양병원)부지 계획에 따라 진출입에 불필요한 도로선형 변경 및 구역내 일부 구간 폐지

나.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GTX A호선)	은평구 갈현동 산131-1	강남구 삼성동 111-8	연신내역 서울역	20,515	319,832	-	지하부 입체적시설 결정
변경	2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6호선)	은평구 역촌동	중랑구 신내동	-	36,100 (490)	-	교통부고시 제1993-5호 (1993.4.13)	공원1과 일부 중복결정

※ ( )는 구역내 연장

※ GTX A호선 은평구구간 : 연장 4,064m, 면적 62,873.3㎡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은평구구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수도권광역급행 철도A노선	갈현동 산131-1 ~ 불광동 산42-12	길이	4,064m	-	4,064m	-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에 한함.
				폭	12m~50m	-	12m~50m		
				높이	해수면(+100) 57.85m~ 112.47m	-	해수면(+100) 57.85m~ 112.47m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철도	•공원1과 중복결정 - 면적 : 597㎡	•공원내 기 결정된 철도 시설(출입구) 일부 공원1과 중복결정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원1	소공원	불광동 13-33번지 일대	3,383	감) 1,184	2,199	건고 제1671호 (1965.7.8)	철도일부 중복결정
변경	-	공원2	소공원	불광동 238-16번지 일대	1,715	감) 528	1,187	서고 제237호 (2019.7.25.)	-
변경	-	공원3	근린공원	불광동 230-14번지 일대	118,314.2 (205)	증) 35	118,349.2 (1,177)	건고 제138호 (1977.7.14)	

※ ( )는 구역내 포함 되는 공원면적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1	•공원 면적 감소 - 면적 : 3,383㎡→2,199㎡ •공원내 철도2 일부 중복 결정 - 면적 : 597㎡	•공원 의무면적 최소 확보 •공원내 기 결정된 철도 시설(출입구) 일부 중복결정
-	공원2	•공원 면적 감소 - 면적 : 1,715㎡→1,187㎡	•공원 의무면적 최소 확보
-	공원3	•공원 면적 증가 - 면적: 118,314.2㎡ → 118,349.2㎡ - 편입: 972㎡ / 제외: 937㎡	•불광근린공원 정형화를 위한 선형 조정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기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이용시설	소 계	-	4,870.0	증)1,290.0	6,160.0	-
	경로당	획지1	380.0	증)20.0	400.0	
	주민공동시설	〃	480.0	증)1,820.0	2,300.0	
	주민운동시설	〃	1,000.0	감)641.5	358.5	
	어린이놀이터	〃	1,800.0	감)278.5	1,521.5	
	관리사무소	〃	420.0	감)190.0	230.0	
	어린이집	〃	580.0	증)320.0	900.0	
	작은도서관	〃	210.0	증)140.0	350.0	
	다함께돌봄센터	〃	-	증)100.0	100.0	
커뮤니티 지원시설	소 계	-	3,750.0	감)3,750.0	-	-
	어린이집	획지1	1,600.0	감)1,600.0	-	
	실내체육시설	〃	2,150.0	감)2,150.0	-	
	문화센터	〃				
	키즈카페	〃				
	북카페	〃				

※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 4」에 따라 1,000세대 이상의 경우 500㎡에 세대당 2㎡를 곱한 면적×1.25 이상 확보
= 500㎡+(1,457×2.0)×1.25 = 4,142.5㎡ 이상 < 6,160.0㎡ 계획

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44,258	-	-	불광동 227-7번지 일대	164	-	-	164	-	-
변경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47,788	-	-	불광동 227-7번지 일대	176	-	-	176	-	-

9. 건축시설계획(변경)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 기정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h rowspan="2">비고
(연면적)</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 rowspan="4">기정</td><td rowspan="4">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td><td rowspan="4">44,258</td><td>획지1</td><td>34,435</td><td>불광동
227-7번지 일대</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40
이하</td><td>350
이하</td><td>54m이하
최고15층</td><td>-</td></tr>
<tr><td>획지2</td><td>397</td><td>불광동
238-27번지 일대</td><td>교육연구시설
(유치원)</td><td colspan="4">관계법령에 따름</td></tr>
<tr><td>획지3</td><td>331</td><td>불광동
238-28번지 일대</td><td>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구대)</td><td colspan="4">관계법령에 따름</td></tr>
<tr><td>획지5</td><td>576</td><td>불광동
239-10번지 일대</td><td>문화 및
집회시설
(다문화박물관)</td><td colspan="4">관계법령에 따름</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0">•총 세대수 : 공동주택 1,305세대(공공임대 374세대, 임대 148세대, 일반분양 783세대)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91.49%
<table><tr><th colspan="2">구분(전용면적)</th><th>계</th><th>분양</th><th>공공임대주택</th><th>임대주택</th></tr><tr><td colspan="2">계</td><td>1,305(100.0%)</td><td>783</td><td>374</td><td>148</td></tr><tr><td rowspan="2">85㎡
이하</td><td>60㎡이하</td><td>961(73.6%)</td><td>439</td><td>374</td><td>148</td></tr><tr><td>60㎡초과
~85㎡이하</td><td>233(17.8%)</td><td>233</td><td>-</td><td>-</td></tr><tr><td colspan="2">85㎡초과</td><td>111(8.6%)</td><td>111</td><td>-</td><td>-</td></tr></table></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0">•건축한계선 : 불광로변 3m

•공공보행통로
- 위치 : 공원1(소공원)~불광동 230-4번지
- 폭원 : 20m(공공보행통로 상부 개방)

•보차혼용통로
- 위치 : 획지3(불광동 239-8번지 / 폭원 : 6m)</td></tr>
<tr><td>2차역세권
포함</td><td colspan="10">•「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2-1-4에 의거 2차역세권(1,403㎡, 3.2%)을 사업부지에 포함하고자 함</td></tr>
</table>

※ 높이는 지반고를 제외한 건축물 높이를 의미함

■ 변경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h rowspan="2">비고
(연면적)</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 rowspan="4">변경</td><td rowspan="4">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td><td rowspan="4">47,788</td><td>획지1</td><td>38,592</td><td>불광동
227-7번지 일대</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40
이하</td><td>340.50
이하</td><td>62m이하
최고20층</td><td>-</td></tr>
<tr><td>획지2</td><td>333</td><td>불광동
221-11번지 일대</td><td>환지(요양병원)</td><td colspan="3">관계법령에 따름</td></tr>
<tr><td>획지3</td><td>331</td><td>불광동
238-28번지 일대</td><td>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구대)</td><td colspan="3">관계법령에 따름</td></tr>
<tr><td>획지4</td><td>576</td><td>불광동
239-10번지 일대</td><td>문화 및
집회시설
(다문화박물관)</td><td colspan="3">관계법령에 따름</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0">•총 세대수 : 공동주택 1,457세대(용적률완화 261세대, 재개발임대 141세대, 일반분양 1,055세대)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96.63%
<table><tr><th colspan="2">구분(전용면적)</th><th>계</th><th>분양</th><th>공공주택(용적률완화)</th><th>공공주택(재개발임대)</th></tr><tr><td colspan="2">계</td><td>1,457(100.0%)</td><td>1,055</td><td>261</td><td>141</td></tr><tr><td rowspan="2">85㎡
이하</td><td>60㎡이하</td><td>889(61.0%)</td><td>517</td><td>231</td><td>141</td></tr><tr><td>60㎡초과
~85㎡이하</td><td>519(35.6%)</td><td>489</td><td>30</td><td>-</td></tr><tr><td colspan="2">85㎡초과</td><td>49(3.4%)</td><td>49</td><td>-</td><td>-</td></tr></table></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0">•건축한계선
- 위치 : 불광로변(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 폭원 : 3m
•공공보행통로
- 위치 : 공원1(소공원)~불광동 230-4번지
- 폭원 : 20m(공공보행통로 상부 개방, 통로 내 보도폭과 조성계획은 지침 및 도면참조)
•보차혼용통로
- 위치 : 획지3(불광동 238-28번지 / 폭원 : 6m)</td></tr>
<tr><td>2차역세권
포함</td><td colspan="10">•「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1-3-2 에 의거 사업부지는 1차 역세권에 해당함 주1)</td></tr>
</table>

※ 높이는 지반고를 제외한 건축물 높이를 의미함

주1)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이내의 범위로 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 24년 12월 한시적으로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이내의 범위로 한다(전문개정 2022.06.20.)

나. 용적률 계획

■ 기정

<table>
<tr><th>구분</th><th colspan="5">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합계
(구역면적)</td><td>획지1
(공동주택)</td><td>계획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td><td>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획지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r>
<tr><td>44,258㎡</td><td>34,435㎡</td><td>8,519㎡</td><td>1,575㎡</td><td>2,213.4㎡</td></tr>
<tr><td>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5">•계획정비기반시설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8,519㎡ – 1,575㎡ – 2,213.4㎡ = 4,730.6㎡
•순부담 면적 = 4,730.6㎡(종상향 면적(34,435㎡) 대비 13.7%)</td></tr>
<tr><td>패키지
허용용적률
계획</td><td colspan="5">•기준용적률 : 206.10%(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
•허용용적률 : 338.15%(패키지 허용용적률 계획 적용)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건축계획(안)</th></tr>
<tr><td colspan="2">공공임대주택 공급</td><td>•완화되는 용적률의 50/100 이상 (66.02% 이상)
= 법정 : 22,734㎡(66.02%이상) 〈 계획 22,741.45㎡(66.04%)</td></tr>
<tr><td rowspan="4">필수
항목</td><td>리모델링이
쉬운구조</td><td>•「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제5호의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에 적합할 것</td></tr>
<tr><td>커뮤니티
지원시설</td><td>•커뮤니티 지원시설(300세대 이상 : 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의 3%이상)
⇒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법정: 3,198.9㎡ 이상 〈 계획: 3,750㎡)</td></tr>
<tr><td>에너지 효율
건축물</td><td>•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의 평점합계 86점 이상,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td></tr>
<tr><td>친환경 건축물</td><td>•건축법 제65조 및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주택사업은 최우수등급, 기타 건축주택사업은 우수등급 이상</td></tr>
<tr><td>선택
항목</td><td>신재생에너지
사용</td><td>•「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 일반건축물은 3%이상 설치</td></tr>
</table>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4-4-1에 의거하여 종전 기준 적용</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5">•기준용적률 206.10%, 허용용적률 338.15%, 공공임대주택 건립 용적률 66.02%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주)×(1+1.3×가중치×α)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 272.13%×(1+1.3×0.8484×0.1374) + {(338.15%–206.10%)/2}
= 313.36% + 66.02%
= 379.38% → 350%이하 적용(계획 : 347.55%)</td></tr>
<tr><td>가중치</td><td colspan="5">•공공시설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86.88% / 338.15% = 0.8484</td></tr>
<tr><td>α</td><td colspan="5">•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4,730.6㎡ / 34,435㎡ = 0.1374</td></tr>
</table>

주) 허용용적률은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용적률 제외 : 272.13% = 338.15%–66.02%

■ 변경

<table>
<tr><th>구분</th><th colspan="6">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합계
(구역면적)</td><td>획지1
(공동주택)</td><td>계획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td><td>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획지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r>
<tr><td>47,788㎡</td><td>38,592㎡</td><td>7,956㎡</td><td>1,396㎡</td><td>3,811㎡</td></tr>
<tr><td>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6">•계획정비기반시설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7,956㎡ - 1,396㎡ - 3,811㎡ = 2,749㎡
•순부담 면적 = 2,749.0㎡(종상향 면적(38,592㎡) 대비 7.12%)</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6">•기준용적률 : 210.81%(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
<table><tr><th>변경(안)</th><th>면적(㎡)</th><th>기준용적률(%)</th><th>용적률 가중평균</th></tr><tr><td>구역면적</td><td>38,592.0</td><td>-</td><td>210.81%</td></tr><tr><td>제1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td><td>1,110.0</td><td>150%</td><td>-</td></tr><tr><td>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3,624.0</td><td>190%</td><td>-</td></tr><tr><td>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준주거지역</td><td>6,155.0</td><td>190%</td><td>-</td></tr><tr><td>준주거지역→준주거지역</td><td>7,703.0</td><td>300%</td><td>-</td></tr></table></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6">•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건축물)
= 210.81%×(1+1.3×0.9137×0.0727)
= 229.01%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건축계획(안)</th></tr><tr><td rowspan="4">서울형
주거환경
정책</td><td>지속가능형
공동주택</td><td>•「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제5호의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인 공동주택 또는 ‘주택법 제38조에 의한 장수명 주택’</td></tr><tr><td>친환경
건축물</td><td>•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한 적용대상 구분을 적용하여 ㉠환경성능 부문, ㉡에너지 성능 부문, ㉢에너지 관리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 중 2가지 이상 적용</td></tr><tr><td>역사문화 보전</td><td>•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생활 문화유산이 포함된 경우 보전 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td></tr><tr><td>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권장)</td><td>•커뮤니티 지원시설(300세대 이상 : 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의 3%이상)
⇒ 미적용</td></tr></table></td></tr>
<tr><td>가중치</td><td colspan="6">•공공시설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192.60% / 210.81% = 0.9137</td></tr>
<tr><td>α</td><td colspan="6">•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2,749㎡ / 38,592㎡ = 0.0727</td></tr>
<tr><td>법적
상한용적률</td><td colspan="6">•340.50%이하 적용(계획 : 340.50% 적용)
<table><tr><th>구 분</th><th>건축계획(안)</th></tr><tr><td>장기전세주택 공급</td><td>•완화된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1/2 이상 (55.745% 이상)
= 법정 : 21,513.11㎡(55.745%이상) 〈 계획 21,518.33㎡(55.75%)</td></tr></table></td></tr>
</table>

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기정

구 분	세대규모(전용㎡)	세대수(세대)	비율(%)
총 건립세대수	-	1,305	100.0
소유주 및 일반분양	40.05㎡, 48.13㎡, 59.98㎡, 84.98㎡, 121.85㎡	783	60.0
소 계	-	522	40.0
공공임대주택	40.05㎡, 48.13㎡	374	28.7
(기존세입자) 임대주택	40.05㎡, 48.13㎡	148	11.3

■ 변경

구 분	세대규모(전용㎡)	세대수(세대)	비율(%)
총 건립세대수	-	1,457	100.0
소유주 및 일반분양	39.01㎡, 45.80㎡, 50.93㎡, 59.98㎡, 74.97㎡, 84.98㎡, 114.95㎡, 129.98㎡	1,055	72.4
소 계	-	402	27.6
용적률완화	50.93㎡, 59.98㎡, 84.98㎡	261	17.9
재개발임대	39.01㎡, 45.80㎡	141	9.7

10.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빗물의 지하침투율이 최대가 되도록 조경면적 최대 반영 - 주변단지와 도로 Level에 맞게 계획 - 녹지면적증가, 지구내 녹지공간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생활환경: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계획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 시행후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포장면적의 축소 •사업시행 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 - 장비 분산투입, 작업장내 차속제한, 저소음, 저진동 공사장비 투입, 야간작업 지양	-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난방지	•지반붕괴를 유발하거나 유수기능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절성토의 규제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여 우·오수관로 개량 및 설치계획을 수립 •공원의 녹음시설을 통한 수해예방효과를 기대(우수의 침투 및 보수효과) •건축법 및 주택법의 방화, 소방, 피난 등의 설치 기준을 준수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단지내 동선체계 구축 •비상시 보행자동선이 비상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지양하고 지하로 유도	-

나. 환경성 검토결과(변경)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가. 물순환,수리 · 수문	건축유형별 기준 적용	○	•생태면적율은 30% 이상으로 계획	•자연지반녹지, 수공간, 인공지반녹지를 적용
나. 생태 네트워크	녹지 · 수생태 연결성확보	○	•대상지 내부는 노후된 주거지역 및 상가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조경수목이 일부 식재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녹지공간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상지 지상부에 조경녹지, 옥상정원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복합 환경 창출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를 통하여 생태적 연결성 확보
다. 지형 · 지질	지형 · 지질 변동최소화	○	•본 대상지는 주거지 및 상가시설로 비교적 평탄한 지형임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라.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으로 조사됨	•대지면적내 조경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임에 따라 새로운 녹지공간을 형성
마.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대상지 북측으로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음	•북측 주거지의 일조영향이 일부 예상되며, 건물높이, 배치계획 등의 조절을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바. 바람	바람길 확보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사.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열 지표면 열수지의 변화 등으로 대상지 주변지역이 열섬현상 이 발생 할 수 있음	•찬바람 이동통로 확보 및 조경녹지, 옥상정원 등을 최대한 확보
아. 대기질 ·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	○	•건축물의 부지정지 및 터파기 작업에 의한 단기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	•방진망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
	온실가스 저감	○	•유입인구의 증가로 온실가스 증가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
자.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건축물의 부지정지 및 터파기 작업에 의한 일시적인 토사유출 발생	•공사중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사전에 예방
차.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수립	○	•에너지사용량 증가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검토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카. 경관	Skyline보전	○	•대상지는 노후화된 주거지역 및 일부 상가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임	•건축물 신축에 따른 시각적 개방 확보 및 경관조화를 통한 시가지환경의 질 향상 •사업대상지와 개발계획을 고려할 때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
	조망권 확보	○	•주변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녹지 공간 확보를 비롯한 녹색경관창출을 도모함
타.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사업대상지 서측으로 불광근린공원이 인접하여 위치함	•조경공간 내 자연 · 인공지반 등 녹지공간 최대확보 •옥상녹화 등을 통한 휴식공간 제공 •대상지내 공원 조성
파.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상지 동측으로 불광로가 있으며, 지하철6호선 독바위역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사업지구 동측 불광로 확포장하여 선형개선을 통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보행자의 안정성 도모 •공공시설 및 보행동선과 연계된 녹지 네트워크 형성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X	•대지면적이 작아,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공동주택 단지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하. 소음 및 진동	소음환경 기준이하	○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이상 발생 예상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후 공사시행 •차음설계(창호, 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갸. 친환경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건설폐재 및 폐유등 발생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토록하며,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후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겠음

11.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에 의한 관리처분방법에 의함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이내	토지등소유자	723세대	증) 734세대	1,457세대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북동측 약 170m 지점에 수리초교, 대상지 남측 약 300m 지점에 불광초교 입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인가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예정 • 공사 시 발생하는 교육환경 저해요소에 대해서는 인근 교육시설에 대한 지장이 최대한 없도록 계획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공원 및 단지내 가로 주변으로 야간조명 및 가로등 설치 등 방범시설 및 안전시설을 곳곳에 배치하고, CPTED 기법을 도입하여 범죄발생수준 및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설계시 반영 검토

14. 홍수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하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경사면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수해에 대비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구분	계획내용
수재해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경사가 있는 지형에 위치하고 있어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화재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철저 대비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구역내 화재 발생에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불광동 227-7번지 일대	44,258	증) 3,530	47,788	100.0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변경	불광동 227-7번지 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합 계	47,788	-	47,78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140	증) 37	1,177	2.5	근린공원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395	감) 4,376	8,019	16.8	도로, 소공원 등
	제3종일반주거지역	20,287	증) 4,447	24,734	51.7	획지1
	준주거지역	13,966	감) 108	13,858	29.0	획지1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불광동 산 58-3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935	-	•불광근린공원 선형 정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불광동 230-13, 217-5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136	-	•불광근린공원 선형 정형화 및 구역편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불광동 217-4, 221-7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준주거지역	3,313	-	•소공원1,2 선형 조정 및 구역편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불광동 218-3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74	-	•획지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불광동 239-18, 221-92 239-15일대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45	-	•소공원1 및 획지3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구역내 기반시설과의 정합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불광동 221-28일대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450	-	•획지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불광동 230-14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제1종일반주거지역	972	-	•불광근린공원 계획 일관성 및 효용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	20~23	집산도로	1,820 (410)	불광동 (불광동 239-21)	불광동 (불광동 220-2)	일반도로	-	건고 제2493호 ('66.06.21)	-
변경	중로	1	1	20~23	집산도로	1,820 (470)	불광동 (불광동 239-21)	불광동 (불광동 220-2)	일반도로	-	건고 제2493호 ('66.06.21)	선형변경 및 구역내 연장 확대
기정	소로	1	6	6~10	국지도로	117 (79)	불광동 221-57	불광동 230-23	일반도로	-	서고 제468호 (2008.12.18)	-
변경	소로	1	6	6~10	국지도로	97 (59)	불광동 221-59	불광동 230-23	일반도로	-	서고 제468호 (2008.12.18)	선형변경 및 구역내 구간 일부폐지

※ ( )는 구역내 연장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	중로1-1	•구역내 일부 구간 확폭 및 선형 조정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구역내 일부 구간 확폭 및 굴곡구간 선형 조정
소로1-6	소로1-6	•도로 선형변경 및 구역내 구간 일부폐지	•획지2(요양병원)부지 계획에 따라 진출입에 불필요한 도로선형 변경 및 구역내 일부 구간 폐지

2)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GTX A호선)	은평구 갈현동 산131-1	강남구 삼성동 111-8	연신내역 서울역	20,515	319,832	-	지하부 입체적시설 결정
변경	2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6호선)	은평구 역촌동	중랑구 신내동	-	36,100 (490)	-	교통부고시 제1993-5호 (1993.4.13)	공원1과 일부 중복결정

※ ( )는 구역내 연장

※ GTX A호선 은평구구간 : 연장 4,064m, 면적 62,873.3㎡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은평구구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수도권광역급행 철도A노선	갈현동 산131-1 ~ 불광동 산42-12	길이	4,064m	-	4,064m	-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에 한함.
				폭	12m~50m	-	12m~50m		
				높이	해수면(+100) 57.85m~ 112.47m	-	해수면(+100) 57.85m~ 112.47m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철도	•공원1과 중복결정 - 면적 : 597㎡	•공원내 기 결정된 철도 시설(출입구) 일부 공원1과 중복결정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원1	소공원	불광동 13-33번지 일대	3,383	감) 1,184	2,199	건고 제1671호 (1965.7.8)	철도일부 중복결정
변경	-	공원2	소공원	불광동 238-16번지 일대	1,715	감) 528	1,187	서고 제237호 (2019.7.25.)	-
변경	-	공원3	근린공원	불광동 230-14번지 일대	118,314.2 (205)	증) 35	118,349.2 (1,177)	건고 제138호 (1977.7.14)	

※ ( )는 구역내 포함 되는 공원면적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1	•공원 면적 감소 - 면적 : 3,383㎡→2,199㎡ •공원내 철도2 일부 중복 결정 - 면적 : 597㎡	•공원 의무면적 최소 확보 •공원내 기 결정된 철도 시설(출입구) 일부 중복결정
-	공원2	•공원 면적 감소 - 면적 : 1,715㎡→1,187㎡	•공원 의무면적 최소 확보
-	공원3	•공원 면적 증가 - 면적: 118,314.2㎡ → 118,349.2㎡ - 편입: 972㎡ / 제외: 937㎡	•불광근린공원 정형화를 위한 선형 조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 분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1	①	35,739	불광동 227-7번지 일대	34,43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불광동 238-27번지 일대	397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3			불광동 238-28번지 일대	331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구대)
4			불광동 239-10번지 일대	576	문화및집회시설 (다문화박물관)

■ 변경

구 분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1	①	39,832	불광동 227-7번지 일대	38,59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불광동 238-27번지 일대	333	환지(요양병원)
3			불광동 238-28번지 일대	331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구대)
4			불광동 239-10번지 일대	576	문화및집회시설 (다문화박물관)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기정

위치		구분	계획내용
획지번호	면적(㎡)		
획지1	34,435	허용용도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 및 동법 제35조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54m 이하(최고 15층)
		공공보행통로	• 위치 : 공원1(소공원)~불광동 230-4번지 • 폭원 : 20m(공공보행통로 상부 개방)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 불광로변 3m
획지2	397	허용용도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연면적의 50% 이상 유치원 확보) • 그 외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용도
획지3	331	허용용도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의 50% 이상 지구대 확보) • 그 외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용도
		보차혼용통로	• 위치 : 획지3(불광동 239-8번지) • 폭원 : 6m
획지4	576	허용용도 (D)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의 50% 이상 박물관 확보) • 그 외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용도

■ 변경

위치		구분	계획내용
획지번호	면적(㎡)		
획지1	38,592	허용용도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 및 동법 제35조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340.50% 이하
		높 이	• 62m 이하(최고 20층)

위치		구분	계획내용
획지번호	면적(㎡)		
		공공보행통로	• 위치 : 공원1(소공원) ~ 불광동 230-4번지 • 폭원 : 20m(공공보행통로 상부 개방, 통로 내 보도폭과 조성계획은 지침 및 도면참조)
		건축한계선	• 위치 : 불광로변(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 폭원 : 3m
획지2	333	-	• 환지(요양병원)
획지3	331	허용용도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의 50% 이상 지구대 확보) • 그 외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용도
		보차혼용통로	• 위치 : 획지3(불광동 238-28번지) • 폭원 : 6m
획지4	576	허용용도 (D)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의 50% 이상 다문화박물관 확보) • 그 외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용도

Ⅲ.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독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불광동 13-9번지 일대	17,044	감)2	17,042	100.0	서울시고시 제1996-149호 (1996.6.10)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불광동 13-9번지 일대	• 구역제척 - 면적 17,044㎡ → 17,042㎡ (감 2㎡)	• 독바위지구단위계획구역 정형화를 위해 일부구역을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에 편입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7,044	감) 2	17,042	100.0	-
준주거지역	17,044	감) 2	17,042	100.0	서울시고시 제1996-149호 (1996.6.10)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준주거지역 면적 변경 - 17,044㎡→17,042㎡ (감 2㎡)	•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함에 따라 준주거지역 면적 감소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	15	집산 도로	45	불광동 12	불광동 11-1	일반 도로	서고 제2002-60호 (2002.3.5)	-
기정	중로	1	1	20~23	집산 도로	1,820 (317)	불광동 (불광동 239-21)	불광동 (불광동 217-3)	일반 도로	건고 제2493호 (66.6.21)	-
변경	중로	1	1	20~23	집산 도로	1,820 (224)	불광동 (불광동 239-21)	불광동 (불광동 217-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50 (135)	불광동 17-350 (불광동 13-24)	불광동 17-684 (불광동 17-684)	일반 도로	서고 제2694호 (2006.4.6)	-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195	불광동 239-15	불광동 221-59	일반 도로	서고 제468호 (2008.12.18)	-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432 (53)	불광동 13-9 (불광동 13-9)	불광동 189 (불광동 13-6)	일반 도로	서고 제3호 (69.1.18)	-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438 (203)	불광동 11-17 (불광동 11-26)	불광동 17-9 (불광동 16-201)	일반 도로	서고 제3호 (69.1.18)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	중로1-1	• 도로 선형변경	•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라 도로 선형 일부 변경

2) 공공공지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공공공지	불광1동 10	122	-	122	서고 제2002-60호 (2002.3.5)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기정/변경)
2.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4.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6.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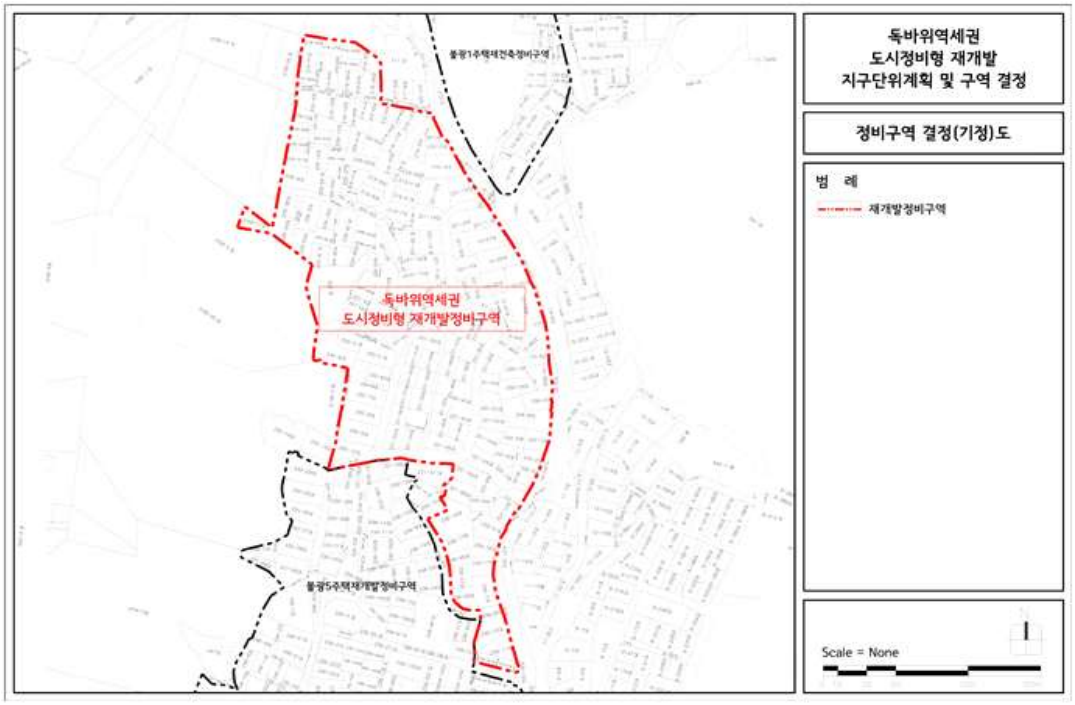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60),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02-351-747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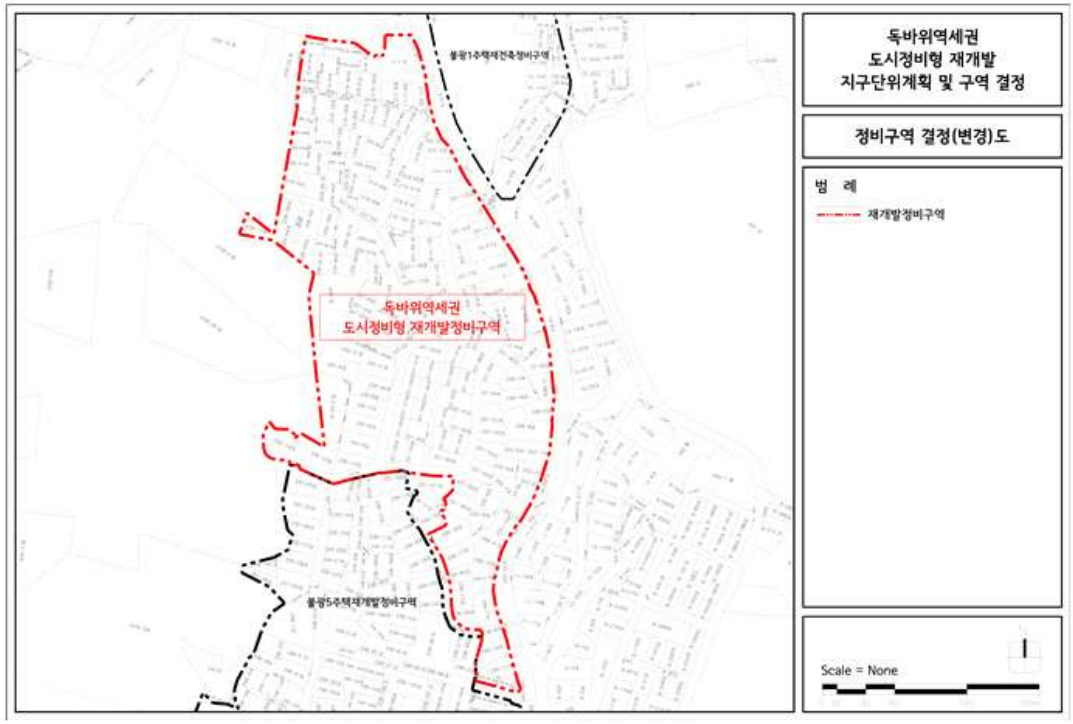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Ⅵ.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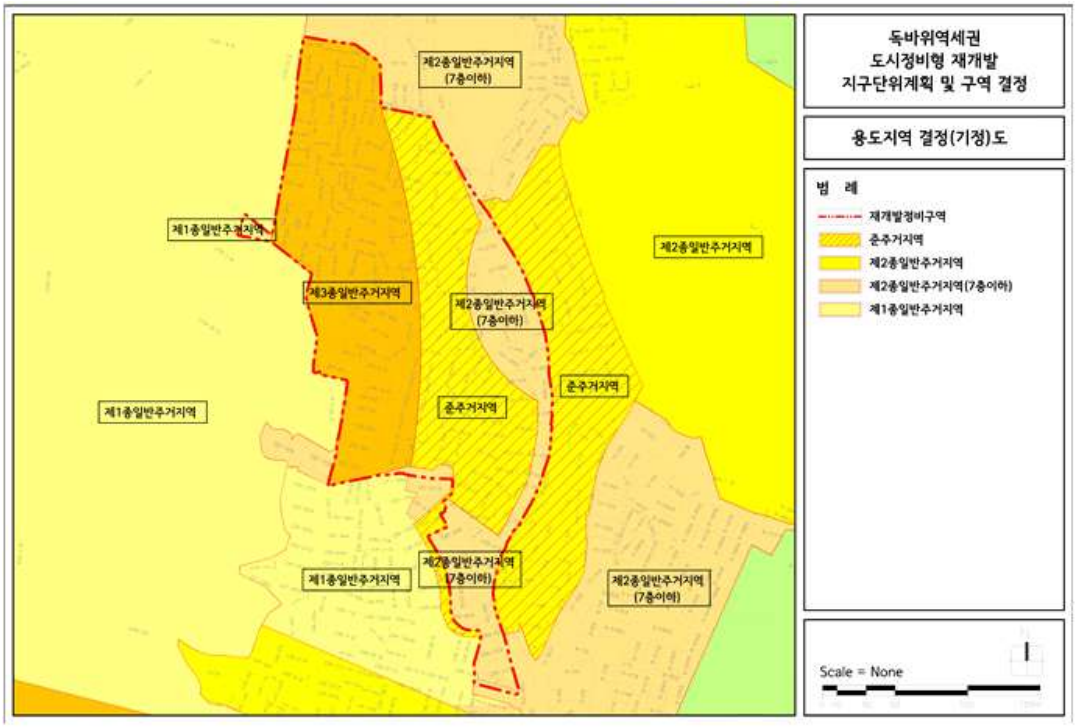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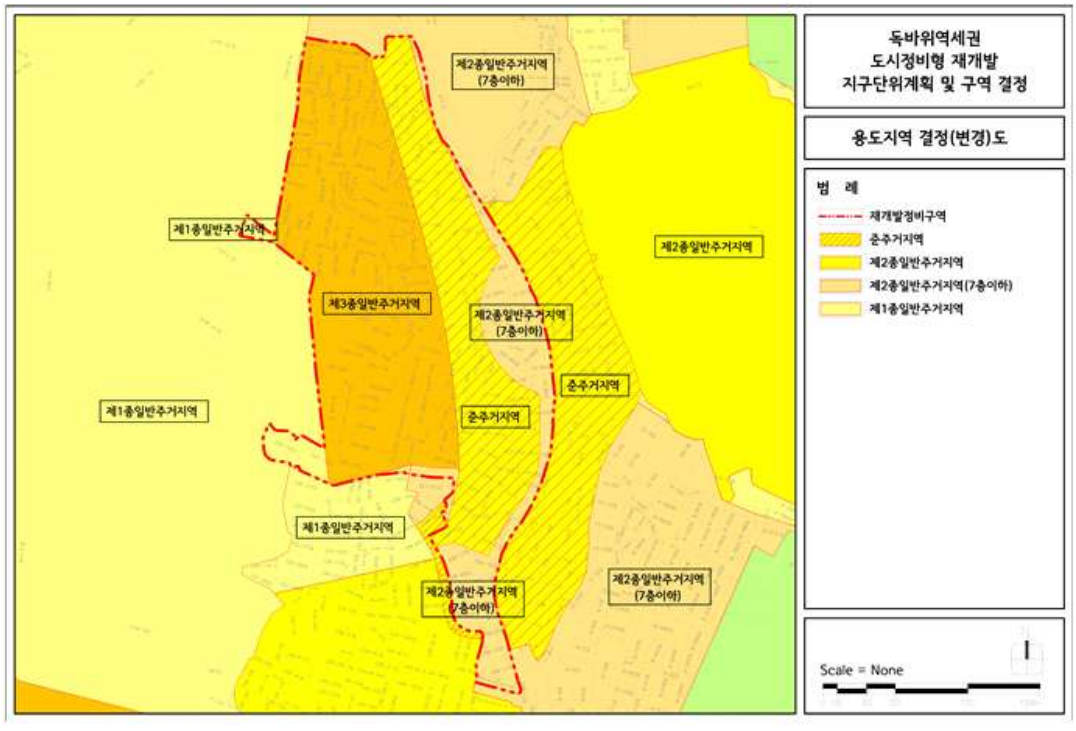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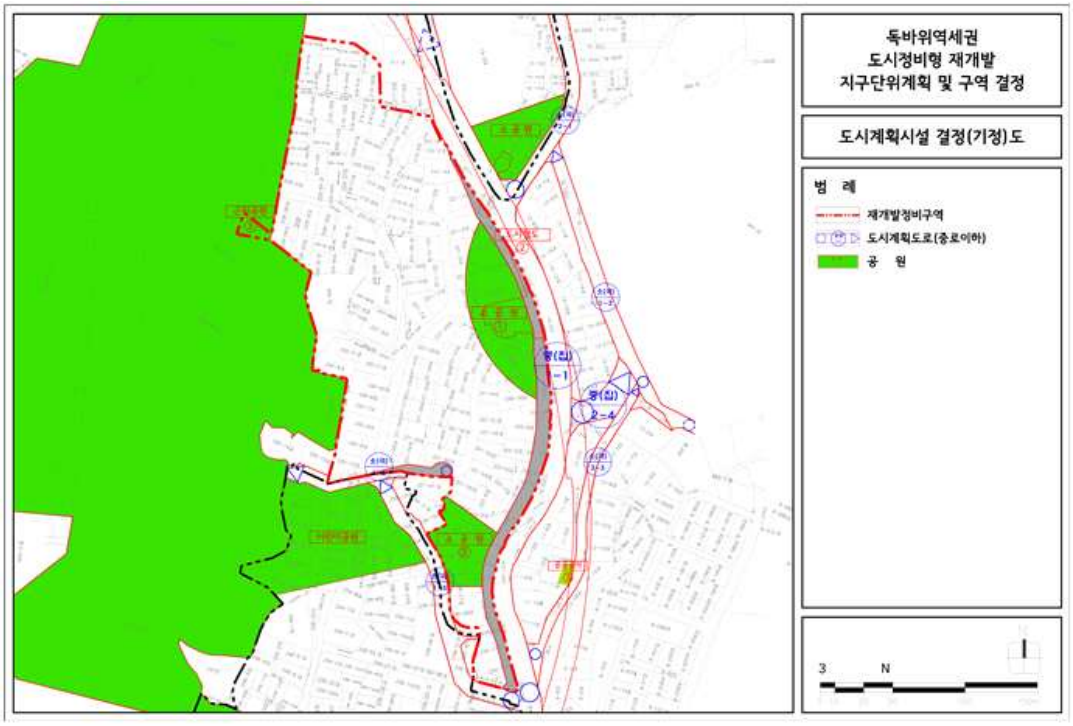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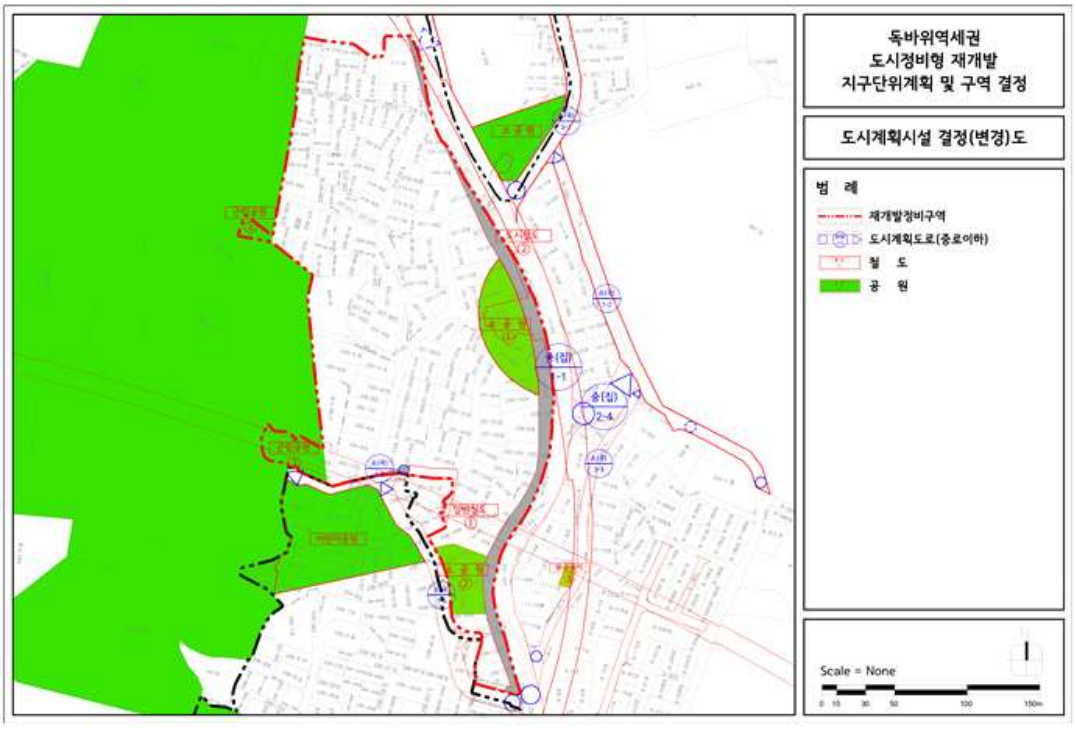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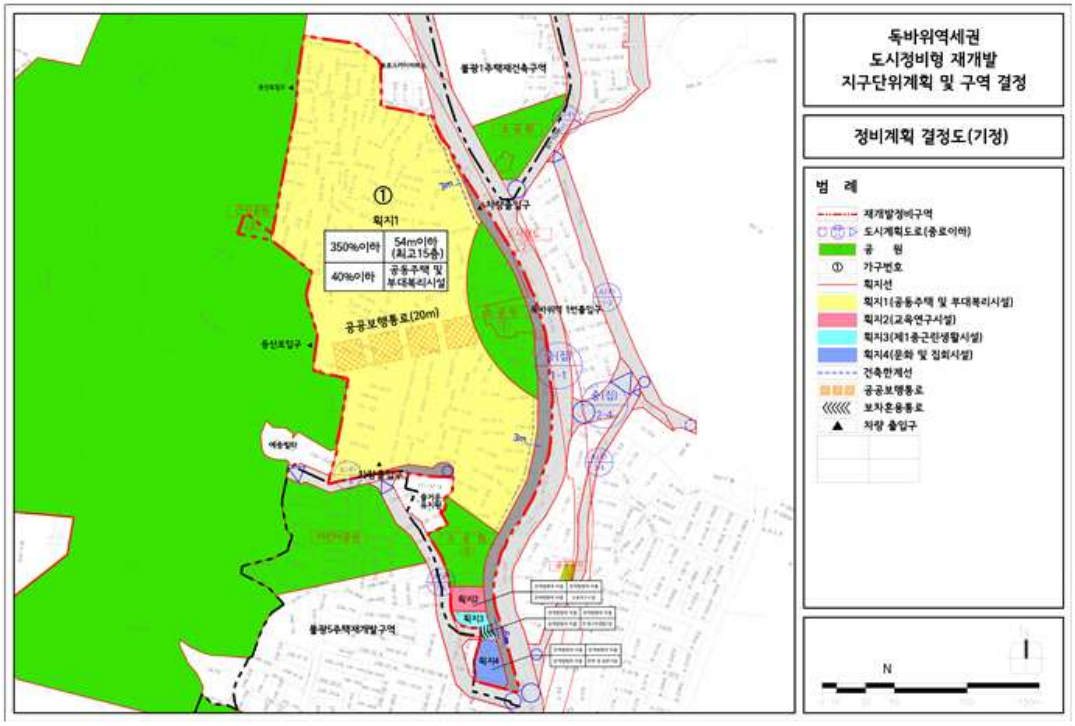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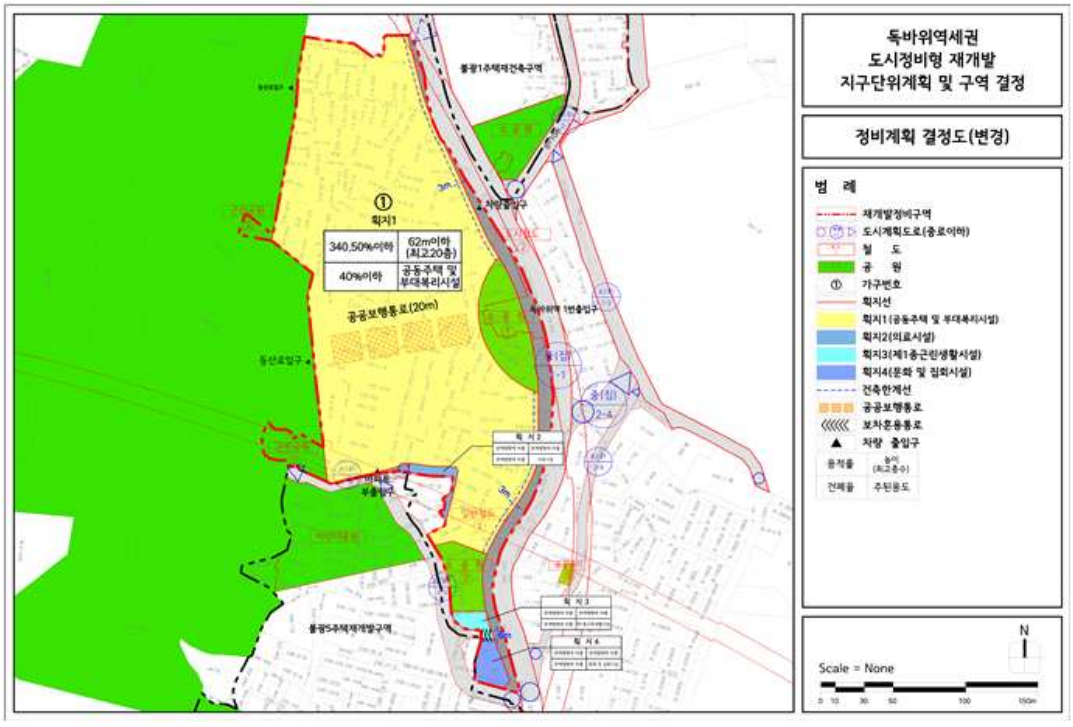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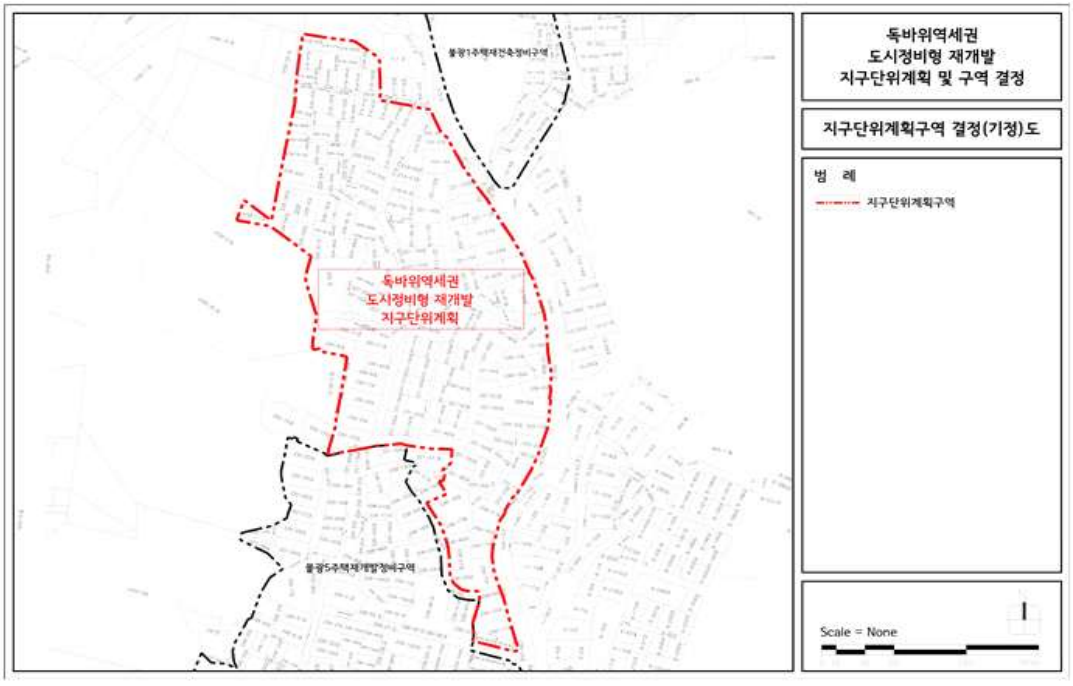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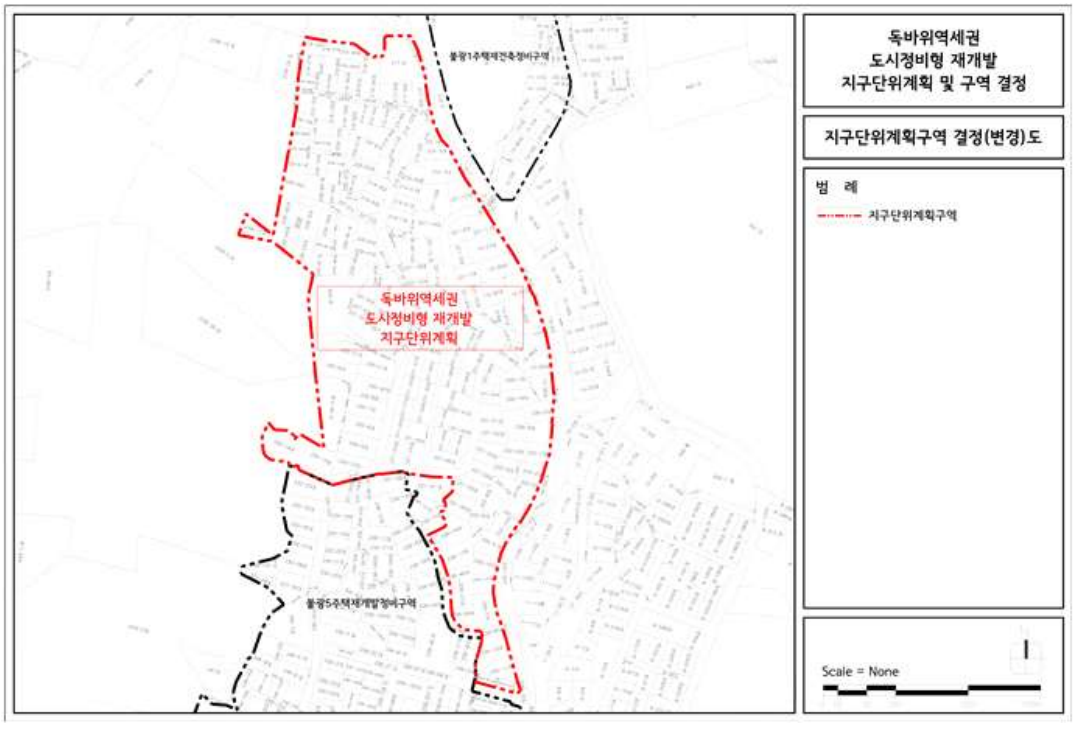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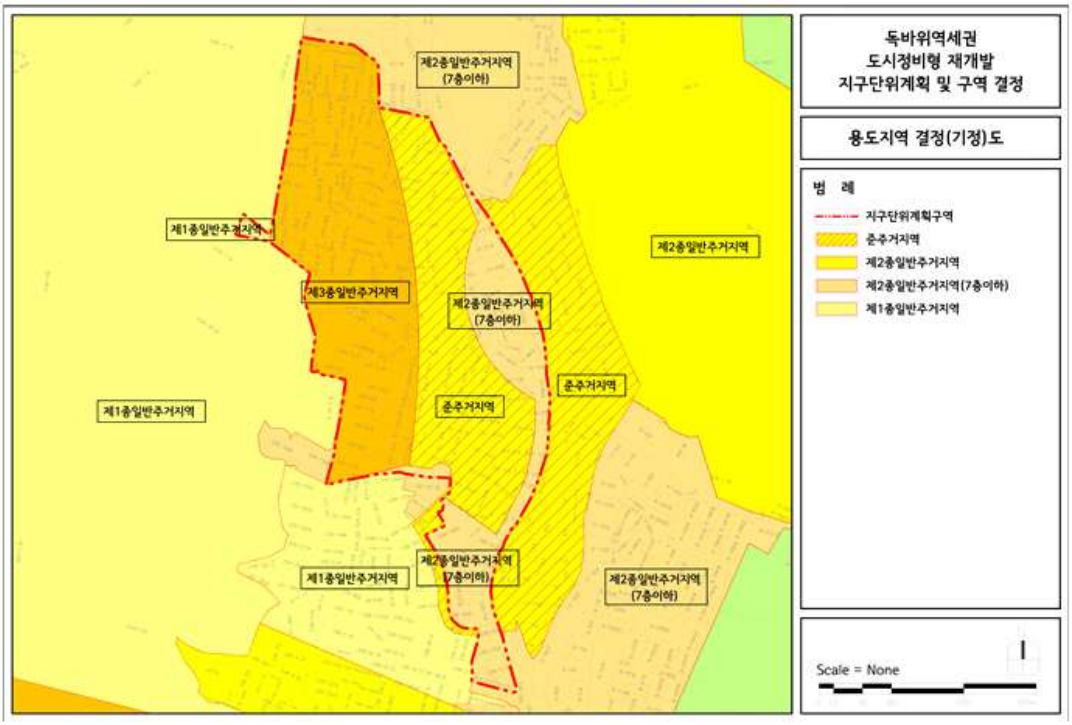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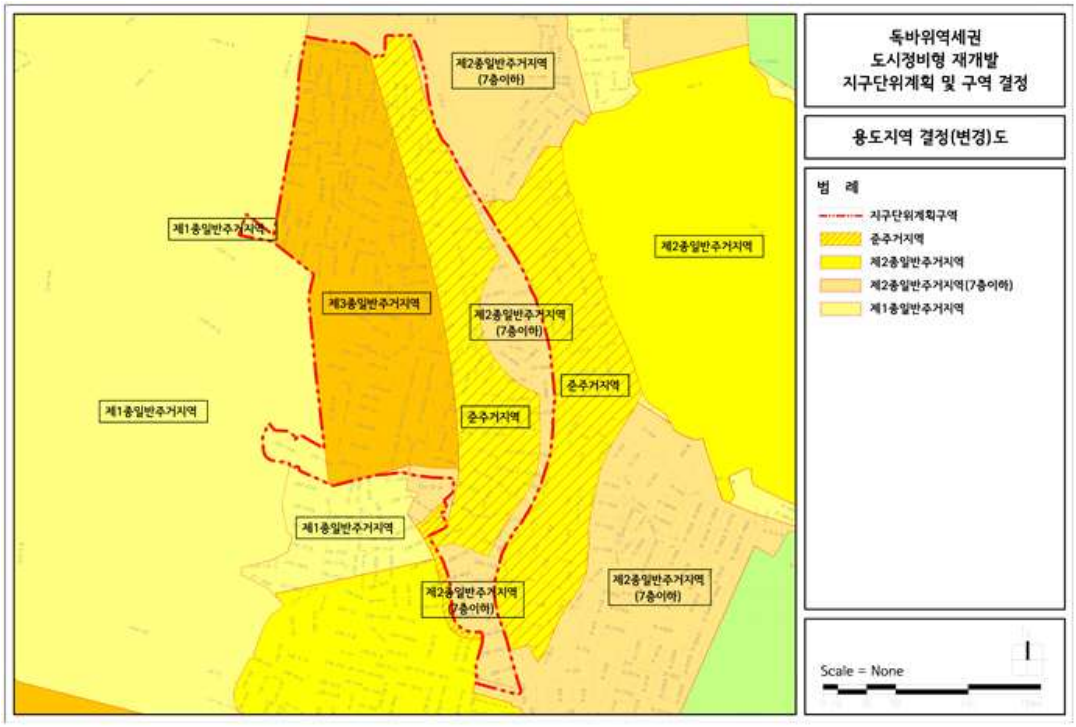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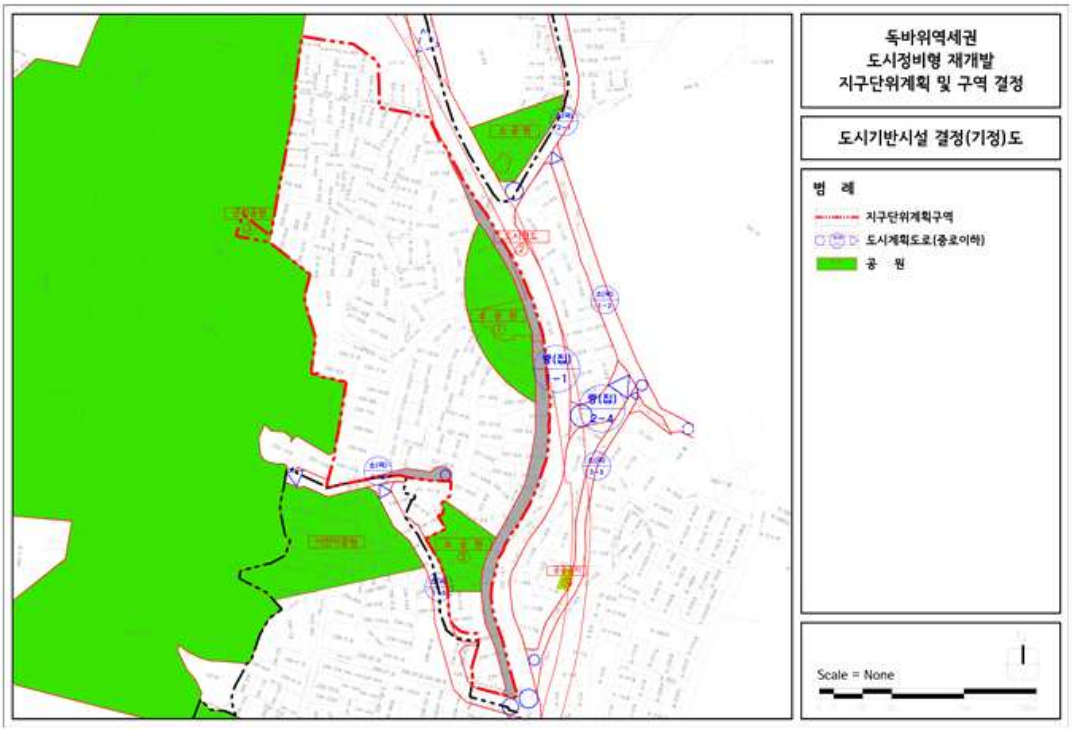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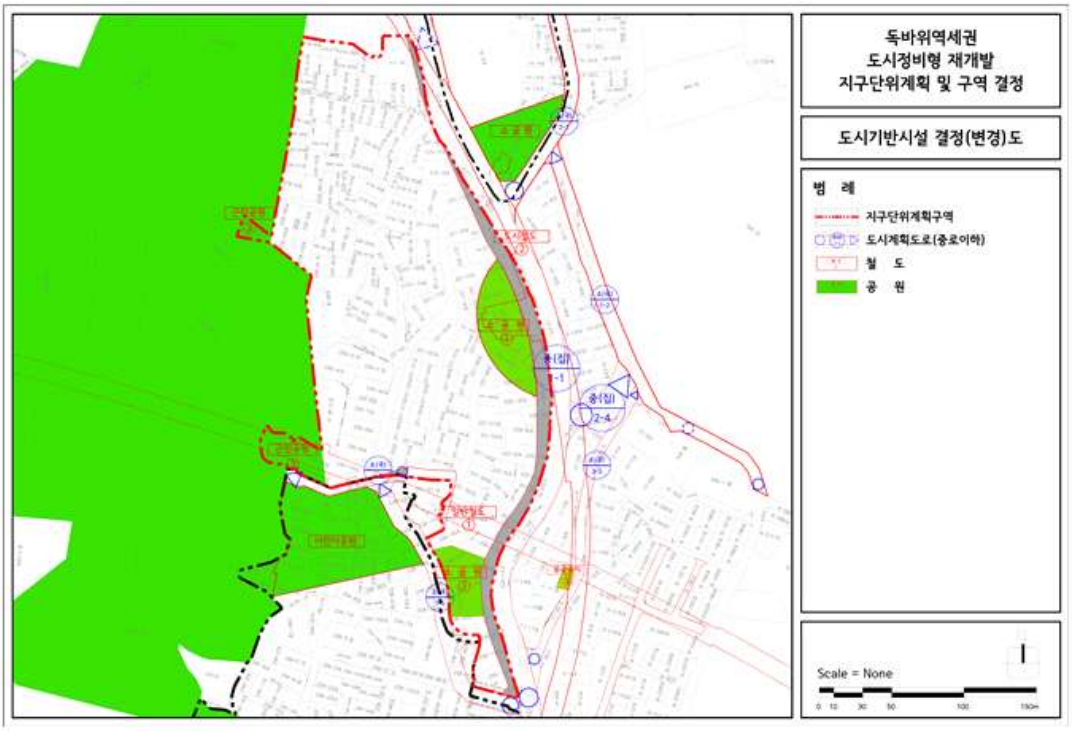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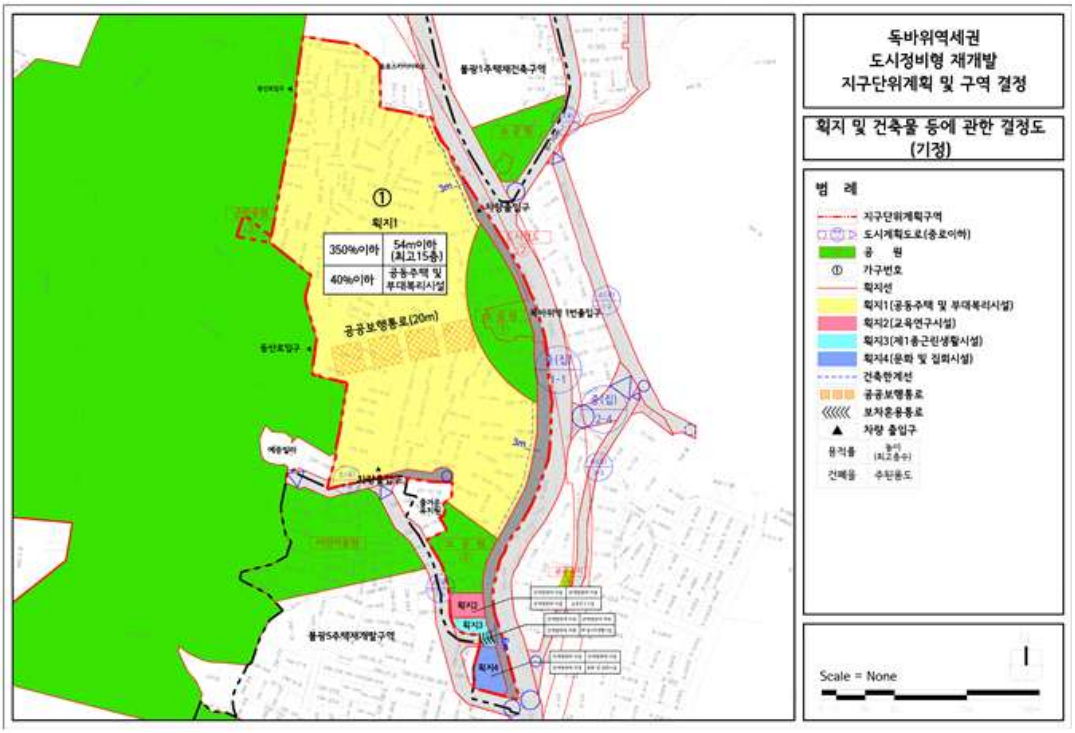
□기반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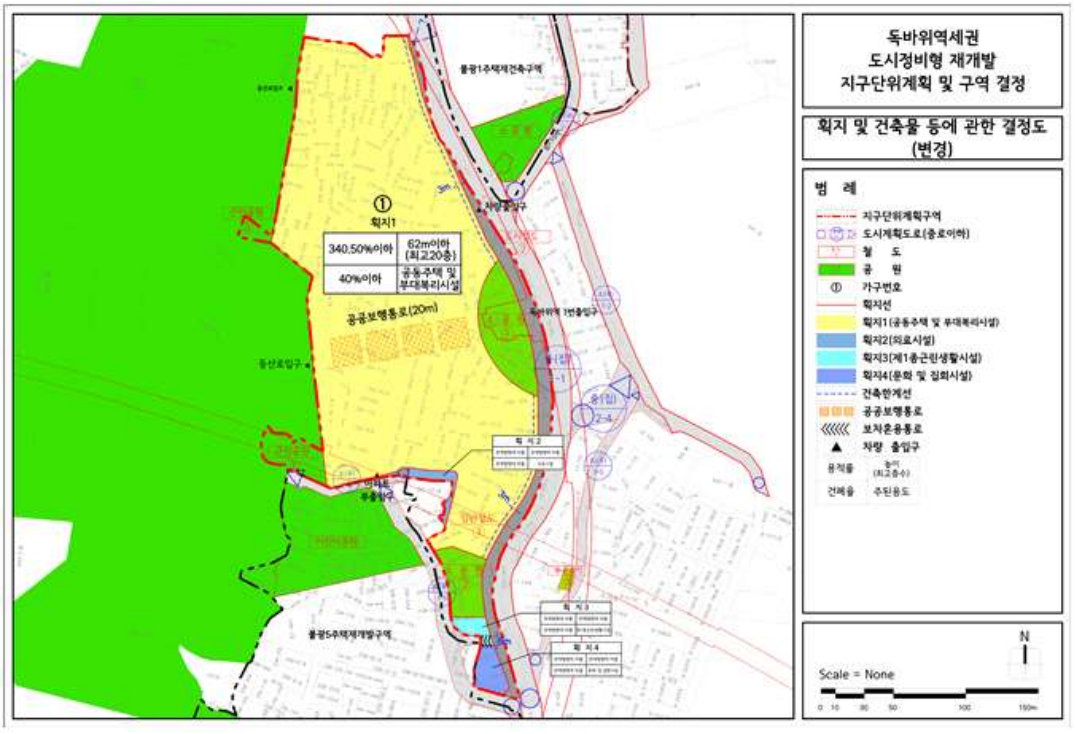
□기반시설 결정도(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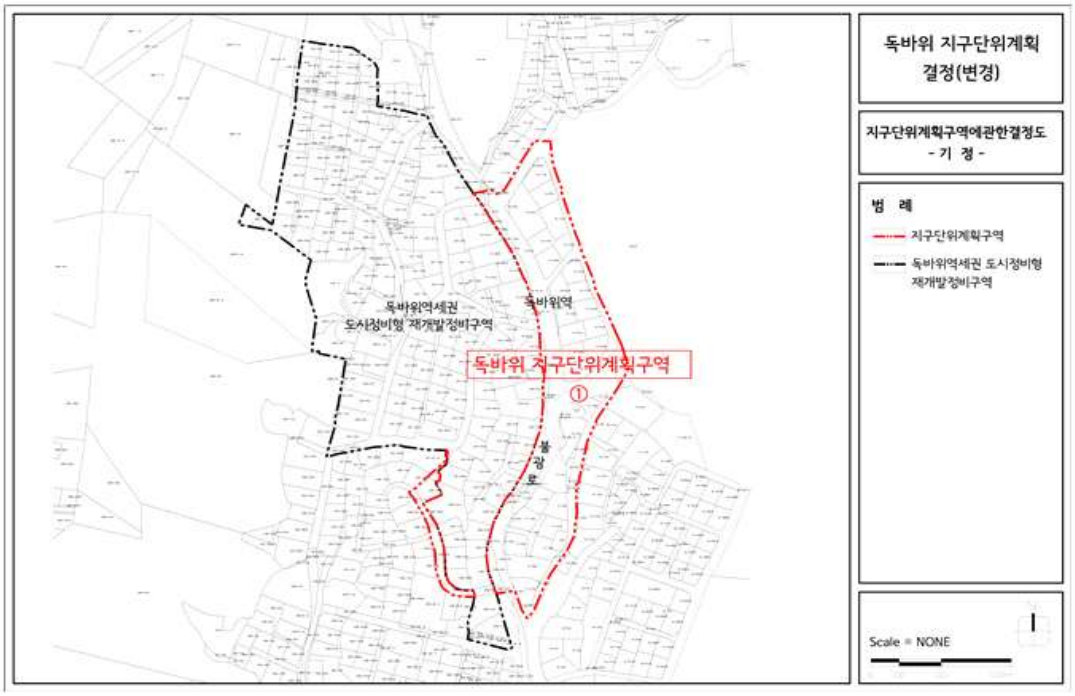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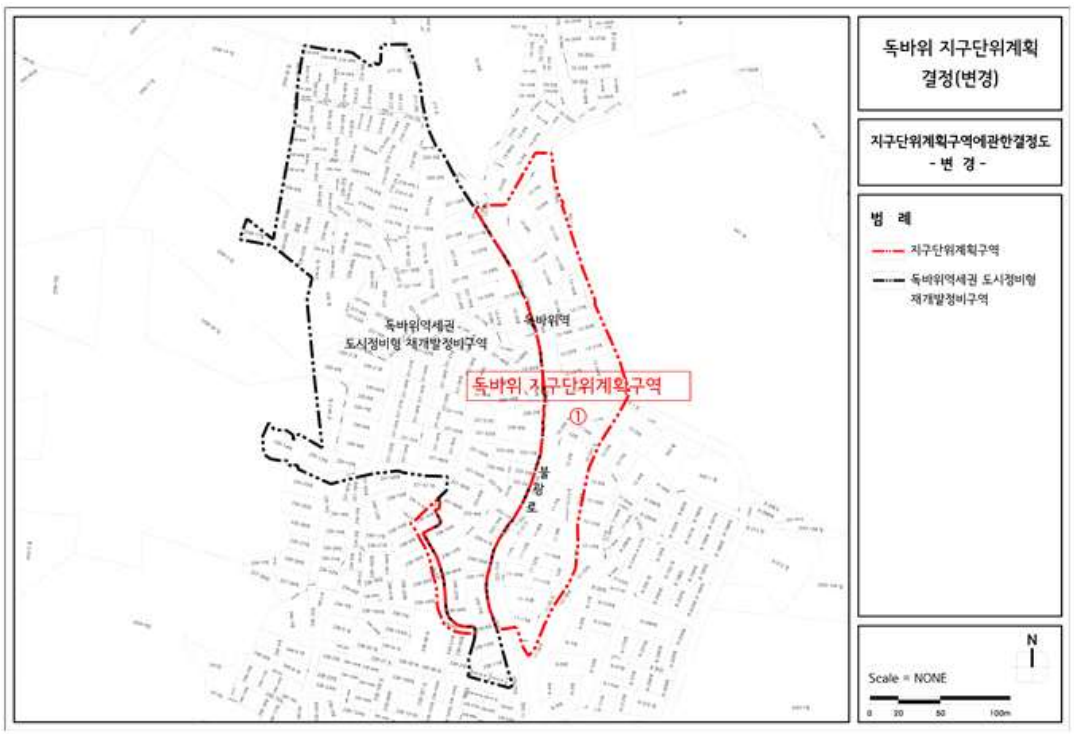


[독바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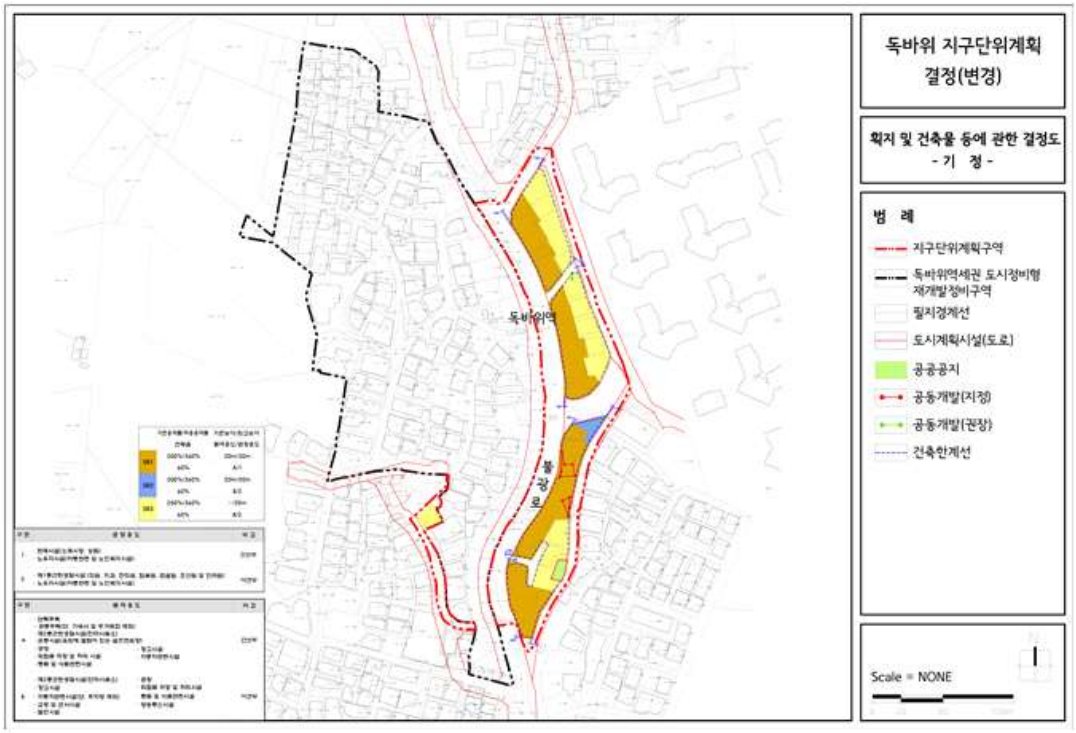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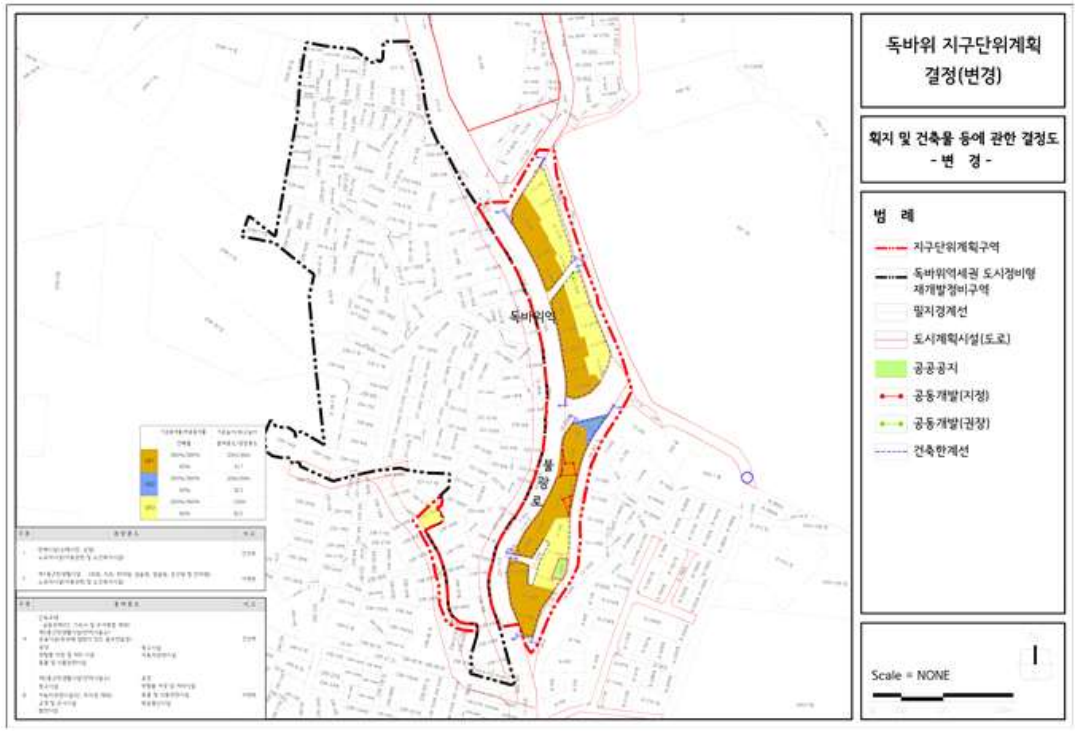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7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15-103번지 일대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 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목적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

나. 주거와 건축, 생활환경 등 높아진 시민의식 수준에 맞추어 미래 서울 도시 주거의 새로운 대안 제시 및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명	위 치	면 적(㎡)
방화3 특별건축구역 (획지1)	강서구 방화동 615-103번지 일대	75,472

※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	용 도	최고층수	비 고
방화3 특별건축구역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6층	

나. 특례적용사항

구역명	특례적용사항	적용 취지
방화3 특별건축구역 (획지1)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 배제	•해발고도(57.86m) 제한구역으로서 향과 조망을 개선하며 단지 전체에 중저층을 배치하여 새로운 주거 공간과 주동 형태를 구현하기 위함.

4.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에 따름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2) 및 강서구 도시재생과(☎02-2600-6547)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지정된 청담·도곡아파트지구에 대하여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1.1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구(아파트지구)의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①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계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도곡동, 대치동 일대	1,064,794.0	감) 1,064,794.0	-	1976.08.21. (건고 131호)
			저밀		571,816.1	감) 571,816.1	-	
			고밀		492,977.9	감) 492,977.9	-	

2.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폐지 1,063,794.0㎡ → 0㎡	도시여건 및 제도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파트지구를 폐지함

Ⅱ. 관계도면 : 붙임 참조

Ⅲ. 기타사항

○ 아파트지구에서 폐지되는 범위 내 도시계획시설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은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따름.

V.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6),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02-3423-6063) 및 도시계획과 (☎02-3423-61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도지구(아파트지구) 결정(변경)도

• 기정



•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9호

도시관리계획(청담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일대 청담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6.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아파트단지 재건축 가능시기 단계별 도래에 따라 선제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청담삼익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원	61,823.9	감) 61,823.9	-	-
신설	청담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청담동 일대	-	증) 104,200.8	104,200.8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청담삼익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61,823.9	감) 61,823.9	-	· 광역차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필요에 따라 청담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을 통해 관리하고자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폐지 ·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은 청담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침으로 반영하여 계획 유지
신설	청담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증) 104,200.8	104,200.8	· 아파트지구 관련 법령 등의 제도적 변화 및 대규모주거단지 재건축에 따른 광역차원의 체계적 관리방안 필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아파트지구 내 각 주구별 이격 현황 및 상위계획(생활권계획 등) 적용 등 지역적 특성의 상이함을 고려하여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청담, 삼성, 역삼·도곡)으로 분리하여 지구단위계획 행정적 효율성 제고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04,200.8	100.0	-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8,172.0	17.4	-
		제3종일반주거지역	86,028.8	82.6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경관지구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	강남도로	782,400 (6,316.5)	32,600 (524)	양측 12	건고 제739호 (1971.12.30)	-

※ ( )은 구역 내 해당사항임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1) 도로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a	6~12	집산도로	641 (430)	청담동 133-3	청담동 130-22	일반도로	건고 제44호 (1977.2.8)	학동로101길 영동대로138길
기정	소로	2	a	8	국지도로	132	청담동 134-26	청담동 134-13	일반도로	-	-

※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나. 도시공간시설 : 변경

1. 공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근린공원	청담동 134-13 일원	17,402.0	증) 770.0	18,172.0	서고 제2005-369호 (2005.12.1)	청수근린공원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 근린공원 면적 증가 - 17,402.0㎡ → 18,172.0㎡ 증) 770.0㎡	· 지정목적을 상실한 공공공지⑧ 폐지면적을 편입시켜 공원 면적 증가

2) 공공공지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⑧	공공공지	-	청담동 134-18 일원	770.0	감) 770.0	-	서고 제2005-369호 (2005.12.1)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⑧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면적 770.0㎡)	· 지정목적을 상실한 공공공지 폐지 후 입지형태, 기능을 고려하여 공원①(청수근린공원)으로 편입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및 획지 설정기준

구분			설정기준	비고
가구			· 8m이상 도로로 구획되는 블록을 기준으로 가구 설정	1개소
획지	획지		· 정비계획이 기 결정(정비사업 완료)된 일단의 계획적 개발단위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반시설계획 등에 따른 계획적 개발단위 · 2개 이상의 필지에 단일 건축물로 조성 된 경우	4개소
	필지	자율적 공동개발	· 소규모 중심시설 밀집지역내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 공동개발(통합개발) 가능	2,000㎡ 이하

▌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도면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A	강남구 청담동 134-38번지 일원	104,200.8	청담 특별계획구역1,2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필지 또는 획지					분류코드	비 고
구분	번호	번호	위치		공부상면적(㎡)	계획면적(㎡)		
신설	A	A1	청담동	134-38대	24,393.1	24,393.1	RA-(3)	청담자이 APT
		A2	청담동	134-24도	2,021.5	146.1	CN-(3)	청담 특별계획구역2 (청담삼익상가)
				134-20대	6,885.3	3,529.8		
		A3	청담동	134-16대	3,360.2	3,360.2	RA-(3)	신동아 APT
		A4	청담동	134-17대	2,173.4	1,996.8	RA-(3)	청담 특별계획구역1 (청담삼익APT)
				134-18대	27,541.8	19,507.5		
				134-20대	6,885.3	3,029.1		
				134-21대	21,179.9	20,644.7		
				134-22대	3,285.8	2,919.0		
				134-24도	2,021.5	1,246.8		
				134-25대	1,754.0	1,754.0		

※ 상기면적은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가. 권장용도 및 허용용도

구분	도면표시	전 층	비고
허용 용도	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주1)	· RA-(3)
	2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도	· RA-(3)(완료형)
권장 용도	a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공공업무시설, 사무소·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 주민체육시설, 학원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수련시설 중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CN-(3)

주1) 부대·복리시설은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휴게음식점,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공동작업장, 일자리지원시설 등에 해당함(「주택법」 제2조 14호에 따름)

주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은 '3-5-나.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을 따름

나. 불허용도

구분	도면표시	전 층	비고
불허 용도	A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RA-(3)
	B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도 이외 용도	· RA-(3)(완료형)
	C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업무시설(1층에 한함), 총포판매소, 장의사, 게임제공업소(1층에 한함)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CN-(3)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중생활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단, 위 용도 중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며 [별표1]을 가이드라인으로 함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은 '3-5-나.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을 따름

[별표1] 기존 중심시설용지(코드 CN-, CG-) 주거용도 전환시 가이드라인

구 분	유형1	유형2	유형3
입지기준	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	역세권 250m이내 이면부	유형1,2 이외 지역
비주거비율	30%이상 (지상연면적 10%이상)	20%이상 (지상연면적 10%이상)	10%이상 (지상연면적 10%이상)
공공기여	주거용도 전환비율의 5~10% - 대지면적 5,000㎡미만 5%, 5,000㎡이상~10,000㎡미만 5%~10%미만, 10,000㎡이상 10% (예시) 대지면적 3천㎡, 주거비율 70% 허용시 공공기여율 : 5%×70%=3.5% ※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기준 준용		

※ 역세권이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이내 범위(사각형)를 말하며, 대지면적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함
※ 공동주택 용도 허용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기여 면적은 용적률 완화 산정에 적용하지 않음
※ 주거용도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에 해당
※ 비주거비율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용도 전환(비율 조정) 가능
※ 불허용도 C에 해당하는 필지 또는 획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경우,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건폐율	코드구분
제2종일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RA-(3) CN-(3)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건폐율 적용	RA-(3)(완료형)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은 '3-5-나.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을 따름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건폐율

연번	획지번호	건폐율	아파트명	해당 고시문
1	A1	21.00%	청담자이아파트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나.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용적률(%)			비고	코드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2종일반→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30%이하	250%이하	단, 공동주택이 주용도로서 부지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00(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50세대)세대 이상 (공동)개발시 또는 공동주택 통합개발시 코드RA-(3) 기준 적용	CN-(3)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적률 적용				RA-(3) (완료형)
	200%이하	200%이하	300%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정법정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서 건축위원회 심의시확정	RA-(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9호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에 의거 재건축단지(청담주구)의 경우 계획용적률 200%(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외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이하로 기 결정된 사항을 반영

※ 2005년 용도지역상향부지(RA-(3), CN-(3))는 재건축 추진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10% 별도 이행

※ 기준용적률 200%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3.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준용하여 허용용적률 완화범위 1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단, 향후 관련계획 및 기준 변경시 변경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 상한용적률은 향후 변화된 구역여건을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항목 및 인센티브를 확인하여 심의를 통하여 수립 및 결정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적용하고, 그 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에 따름

※ 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준공된 단지(필지)는 관련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 용적률은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은 '3-5-나.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을 따름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적률

연번	획지번호	용적률	아파트명	해당 고시문
1	A1	266.71%	청담자이아파트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다. 기준용적률 완화에 따른 의무사항

- 대지규모가 5,000㎡ 이상 또는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이상)를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총 10%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특별계획구역도 포함한다.)
- 아래의 항목 이외 입지적 특성 및 사회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공공성 등을 확보하여 시(市)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市)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 분		적용기준		
1	우수디자인	15%		
2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10%	
3	녹색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6%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3%	
4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3%	
5	신 · 재생에너지 공급률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20%초과	3%	
		20% 이하 ~ 15% 초과	2%	
		15% 이하 10% 초과	1%	
6	지능형 건축물	1등급	15%	
		2등급	12%	
		3등급	9%	
		4등급	6%	
7	공공보행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등 조성(지역권*설정) └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 a ※a=1이하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15%p 이내
8	열린단지	•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로 조성(지형도면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5%p
9	공개공지	•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 · 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 기준용적률× (조성면적(의무면적 제외)/대지면적) × a ※a=1이하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시/ 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5%p 이내
10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 · 돌봄시설*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p

구 분		적용기준	
11	방재안전	• 화재 · 소방 · 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 개선 └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 · 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 · 자문을 통해 적용	5%p
12	지역기반시설정비	• 사업구역 주변 환경정비(도로, 공원, 통학로등/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 기준용적률× (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 × a ※a=1이하 ※ 환산부지면적 : 정비비용/사업지 대지가액(市 기부채납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5%p 이내
13	지역특화	•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 맞춤형 항목 신설 가능 └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 및 산정방식 신설(위원회에서 인정시)	10%p 이내 (합산)
합계		총 10% 이상 선택적 이행	

※ 기준용적률 200%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서울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3.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준용하여 허용용적률 완화범위 1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단, 향후 관련계획 및 기준 변경시 변경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높이		비고	
기준	최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	RA-(3)
32m 이하	40m 이하	· 단, 공동주택이 주용도로서 부지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00 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50세대) (공동)개발시 또는 공동주택 통합개발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CN-(3)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높이 적용			RA-(3)(완료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 높이는 관련 법령에 따름
※ 최고높이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3-5.높이계획에 따른 최고높이 설정 프로세스 적용하여 산정
- 최소 20m, 최대40m 이하로 결정/기준높이는 최고높이의 0.8배 적용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은 '3-5-나.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을 따름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높이

연번	획지번호	높이	아파트명	해당 고시문
1	A1	104m	청담자이아파트	건축물대장상 높이 적용

마. 기준높이 완화 인센티브 내용

구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고
1	공동개발		조성시	• 기준높이 X **α**	• 공동개발(권장) 이행시: **α** = 0.25 • 자율적 공동개발시 : **α** = 0.3 (소규모 중심시설용지 통합개발)
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시	• 기준높이 X [(제공면적 - 설치의무면적) / 대지면적] X 3.0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실내공개공지 조성시 완화계수 3.0 → 4.0 적용
			쌈지형(침상형) 공지조성시	• 기준높이 X (제공면적 / 대지면적) X 2.5 X**α**	• 필로티형: **α**= 2.0 • 개방형 : **α**= 2.5
3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계획시	• 기준높이 X 0.3	• 권장용도 연면적의 합이 총 연면적의 20% 이상 확보시인정
4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시	• 기준높이 X 가로지장물개수 X 2.5 ※ 설치면적 = 지장물설치면적 + 공사비 · 이전비환산면적	•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5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공익시설 설치 시 기준높이 8m 완화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 시설 등 지역필요시설계획 수립 시 결정 또는 해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자치구 포함)에서 인정하는 경우
6	친환경	물환경	옥상녹화	• 대지면적의 10%이상 설치 시 기준높이 8m 완화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에너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 기준높이 X 0.25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상 의무사항을 초과하여 인증된 경우

※ 기준용적률 완화 의무사항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기준용적률 완화(의무) 또는 기준높이 완화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건축물 배치 · 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선	건축 한계선	RA-(3)	·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6m - 학동로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RA-(3), CN-(3)이면부	·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3m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고층부 벽면한계선	청담아파트지구 (15층 이상 건축물) (지구통경축)	· 학동로,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등으로부터 3m ※11층 이상 적용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지 않은 필지(획지)의 경우 「민법」 제242조에 따름(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 이격)
※ 「강남구 고시 제2019-42호(2019.3.8.)」에 따라 학동로변 건축선(3m) 지정

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배치 및 형태	공동주택	RA-(3)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강변 첫 주동은 중저층(15~20층 이하)으로 배치하고, 주변 여건 및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시(市)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 광역통경축 또는 지구통경축변의 건축선(건축한계선, 고층부벽면한계선 등) 및 배치의 경우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름. 이 경우 건축선(또는 구역경계선)으로부터 공원 또는 녹지시설 등 개방형 시설(기부채납)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 폭원만큼 이격한것으로 본다.	[규제사항]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권장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권장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 권장하여 일률적인 판상 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동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권장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권장 ·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 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커뮤니티시설 및 열린 조경시설 등을 배치 권장하여 생활가로를 조성하여 열린 공간으로 계획	[권장사항]
	부대 및 복리시설	RA-(3)	· 공공보행통로 등 주변에 우선 배치 권장 · 단지내부 보행가로변에 부대 및 복리시설, 지역개방 커뮤니티시설 등 복합시설 계획을 권장하여 기존 가로와 아파트단지와의 연계성 강화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권장	[권장사항]
	공공시설	-	· 담장 설치를 지양하고, 보행자의 접근성 및 시각적 개방감을 향상시키도록 공간 계획	-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타 외관 요소	옥외설비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가능한 별도의 설치 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책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류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 주택용지의 경우, 향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높이계획 규제 변화에 따라 상위 관련 지침이 변경 시 위의 계획내용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기준을 따름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청담 특별계획구역 1	청담동 134-21일대	-	증) 61,823.9	61,823.9	유형1 청담삼익APT (착공)
신설	청담 특별계획구역 2	청담동 134-20일대	-	증) 3,840.1	3,840.1	유형2 청담삼익상가

▮ 특별계획구역 지정사유서

-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2000년 이전 준공된 단지(사업미추진)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이거나 200세대 이상인 단지,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2개소 신설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청담 특별계획구역1(청담삼익아파트)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4-18일대	-
특별계획구역면적(㎡)	• 61,823.9㎡	
용도지역 · 지구	• 제1 · 3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획지계획	• 획지 A4(면적 : 51,098.0㎡)	
공공기여율	•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순부담) 비율 : 10% 내외 원칙 • 용도지역 상향(서울시고시 제2005-369호)에 따른 공공기여 10%이상 별도 이행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시설 등 계획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37호(2022.12.29.)에 따라 결정된 공공시설계획 적용 • 도로 1,968.9㎡ • 근린공원 8,757.0㎡ - 공공공지 770㎡ 폐지 및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통합 관리 ※ 학동로101길(청담삼익상가소유부지 154.1㎡)조성시 강남구청과 협의를 통해 조성	
용도 계획	불허 용도	A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 용도	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부대 · 복리시설은 제1종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공동작업장, 일자리 지원시설 등에 해당(주택법 제2조 14호에 따름)	-
밀도 계획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200% 이하 • 상한용적률: 300% 이하(공공기여량에따른 완화범위에 한함)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300% 이하	예정법적상한 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시 확정
	높이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학동로:6m - 학동로101길변: 3m • 고층부벽면한계선(15층 이상의 건축물의 11층 이상 벽면에 적용) - 학동로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지침도에 따름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시 적용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37호(2022.12.29.)에 따라 결정된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사항에 따름	
			• 공동주택 - 광역통경축 또는 지구통경축변의 건축선(건축한계선, 고층부벽면한계선 등) 및 배치의 경우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름. 이 경우 건축선(또는 공원 또는 녹지시설 등 개방형 시설(기부채납)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 폭원만큼 이격한것으로 본다.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강변 첫 주동은 중저층(15~20층 이하)으로 배치하고, 주변 여건 및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시(市)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규제사항]
			• 공동주택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단지 내부 배치는 한강으로의 시각적 개방감및 인접단지와 통경축과의 연계를 고려한 탑상형배치를 권장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	[권장사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하여 계획 -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 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커뮤니티시설 및 열린 조경시설 등을 배치 권장하여 생활가로를 조성하여 열린 공간으로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적 면적의 1/3 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권장사항]
	기타 외관요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37호(2022.12.29.)에 따라 결정된 기타외관 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사항에 따름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루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 - 공원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내 보행자도로 조성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상에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기타에 관한사항		•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전 정비계획이 결정고시 되거나,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된 구역은 해당 고시 된 사항으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세부개발계획 변경 시 본 지침을 따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37호(2022.12.29.)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이 수립된 단지가 경미한 변경사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변경)으로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을 변경할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0.05)」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 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 · 동내 · 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등을 통해 결정	-

▌청담 특별계획구역2(청담삼익상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4-20일대	-
특별계획구역면적(㎡)			• 3,840.1㎡	-
용도지역 · 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획지계획			• 획지 A2(면적 : 3,686.0㎡)	-
공공시설 등 계획			• 도로 154.1㎡ ※ 사업 완료 후 도로(154.1㎡)는 토지 기부채납토록함(시설조성에 대한 사항은 강남구청 및 청담삼익아파트와 협의를 통해 조성하도록 함) • 용도지역 상향(서울시고시 제2005-369호)에 따른 공공기여 10%이상 별도 이행 • 공동주택 건립시 한강변 공공시설 등 확보비율은 10%내외 공공기여를 원칙으로 함 (주거용도 도입에 대한 공공기여와 별도로 적용) ※ 공동주택을 도입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5.건축물에 관한 계획" 에서 정한 [별표1]을 가이드라인으로 함 ※ 지역 필요시설등 기타 기반시설은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결정	-
용도계획	불허용도	C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1층에 한함), 총포판매소, 장의사, 게임제공업소(1층에 한함)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중생활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단, 위 용도 중 시(市)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며 [별표1]을 가이드라인으로 함	-
	권장용도	a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공공업무시설, 사무소 ·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 주민체육시설, 학원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수련시설 중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밀도계획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00% 이하 • 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상한용적률 : 250% 이하	-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계획내용</th><th>비고</th></tr>
<tr><td></td><td></td><td>※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유도 항목기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적용기준</th><th>완화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2">1</td><td rowspan="2">물환경</td><td>자연지반</td><td>•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α</td><td>• α=0.8</td></tr>
<tr><td>옥상녹화</td><td>•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α</td><td>• α=0.7</td></tr>
<tr><td>2</td><td>대기환경</td><td>환경친화적 자동차</td><td>• 기준용적률×α</td><td>• α=0.06</td></tr>
<tr><td>3</td><td>열환경</td><td>생태면적률</td><td>• 기준용적률×(생태면적률인정면적/대지면적)×α</td><td>• α=0.5</td></tr>
<tr><td rowspan="2">4</td><td rowspan="2">대지내 공지</td><td>공개공지 등</td><td>•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td><td>• α=1.2(피로티형)
• α=1.0(개방형)</td></tr>
<tr><td>공공보행통로</td><td>•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td><td>• α=0.6</td></tr>
<tr><td>5</td><td>건축물 개방</td><td>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td><td>• 기준용적률×(제공면적/연면적)×α
※연면적은 지하연면적제외</td><td>• α=0.7</td></tr>
<tr><td colspan="5">총 30% 이내 선택적 이행</td></tr>
</table></td><td></td></tr>
<tr><td></td><td>높이</td><td>• 기준높이 32m이하
• 최고높이 40m이하</td><td>지침도에 따름</td></tr>
<tr><td>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td><td>건축선</td><td>• 건축한계선
- 학동로101길변: 3m
- 이면부: 3m

• 고층부벽면한계선(15층 이상의 건축물의 11층 이상 벽면에 적용)
- 이면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공동주택 도입시]
• 건축한계선
- 학동로101길변: 3m
- 이면부: 5m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 주상복합 형태로 개발시 3m)
• 고층부벽면한계선(15층 이상의 건축물의 11층 이상 벽면에 적용)
- 이면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 다만, 세장형필지 등 대지형상 및 여건을 고려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td><td>지침도에 따름</td></tr>
<tr><td></td><td>대지내 공지</td><td>•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 한강변 경관조망 확보 및 공원 진입로 연접부시각적 개방감을 위한 낮은 조경수목 등 설치 및 담장, 환기구등 차폐 구조물 배치 금지</td><td>지침도에 따름</td></tr>
<tr><td>건축물 배치 및 형태</td><td>배치 및 형태</td><td>• 학동로101길 및 이면도로변에 면한 1층 전면 벽면면적의 50% 이상을 쇼윈도 등의 투시형 벽면 및 투시형 셔터(내부가 안보이는 컬러유리, 필름지 등의 설치 금지)로 설치
• 외벽면의 의장재료, 색채 등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광역통경축 또는 지구통경축변의 건축선(건축한계선, 고층부벽면한계선 등) 및 배치의 경우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름. 이 경우 건축선(또는 구역경계선)으로부터 공원 또는 녹지시설 등 개방형 시설 (기부채납)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 폭원만큼 이격한 것으로 봄
• 공동주택 건립시 한강변 첫 주동은 중저층(15~20층 이하)으로 배치하고, 주변 여건 및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시(市)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td><td>[규제사항]</td></tr>
</table>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루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기타에 관한사항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0.05)」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 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한강변 관리기본계획(2015)」 상 ‘지구통경축 경관형성기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저층부 가로활성화 유도, 한강으로의 시각적 연계성 확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하도록 함 • 획지A2내 공동주택 도입을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여 및 건축물의 용도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5.건축물에 관한 계획” 에서 정한 [별표1]을 가이드라인으로 하며, 대지면적 5,000㎡이상 또는 10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150세대)이상 개발 시 용적률 및 높이는 ‘RA-(3)’ 의 지침을 적용 •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거 전통시장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동법 제48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등에 근거하여 용적률, 건폐율, 일조 및 높이제한, 대지의 공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법에서 특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을 따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의거 시장정비구역 사업추진계획 승인 · 고시된 구역은 해당 고시 된 사항으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봄	-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교통처리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대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간선가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불허(대지의 입지상 차량출입이 불가피할 경우 허용) ※ 단, 비상차량은 제외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철거 후 신축 시 적용) ※ 강남구청사 전면부의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추후 설계공모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절차를 통하여 조정 가능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RA-(3)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	RA-(3)	· 학교·공원 등 보행 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자 도로를 조성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 및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등 커뮤니티공간 설치	-

2.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9호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획지는 제외)
2. 자율적 공동개발, 단, 일반필지 공동개발에 따라 대지규모가 3,00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건축구역과 공동개발에 따라 재건축구역(공동개발하려는 필지 중 가장 큰 필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
3.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 대지안의 공지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4.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대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의 성격, 설치계획(위치변경 및 신규설치에 한함)의 변경
6. 법령이나 지침의 재·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지침의 변경
7.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 차량 출입구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변경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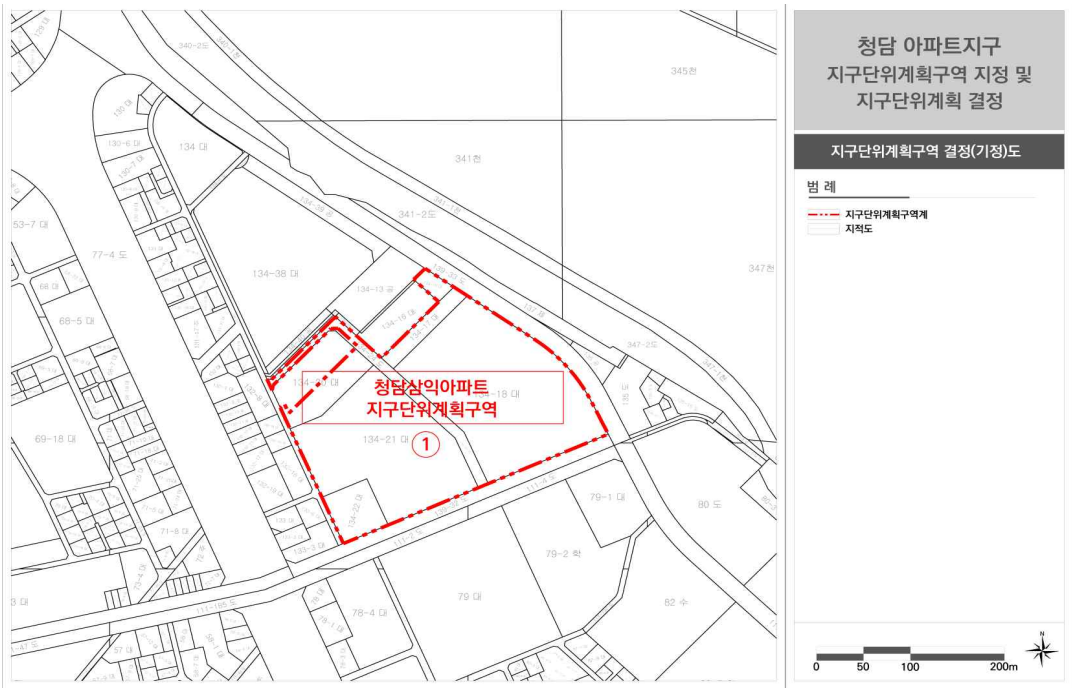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6), 강남구 재건축사업과(☎02-3423-6076) 및 도시계획과(☎02-3423-6108)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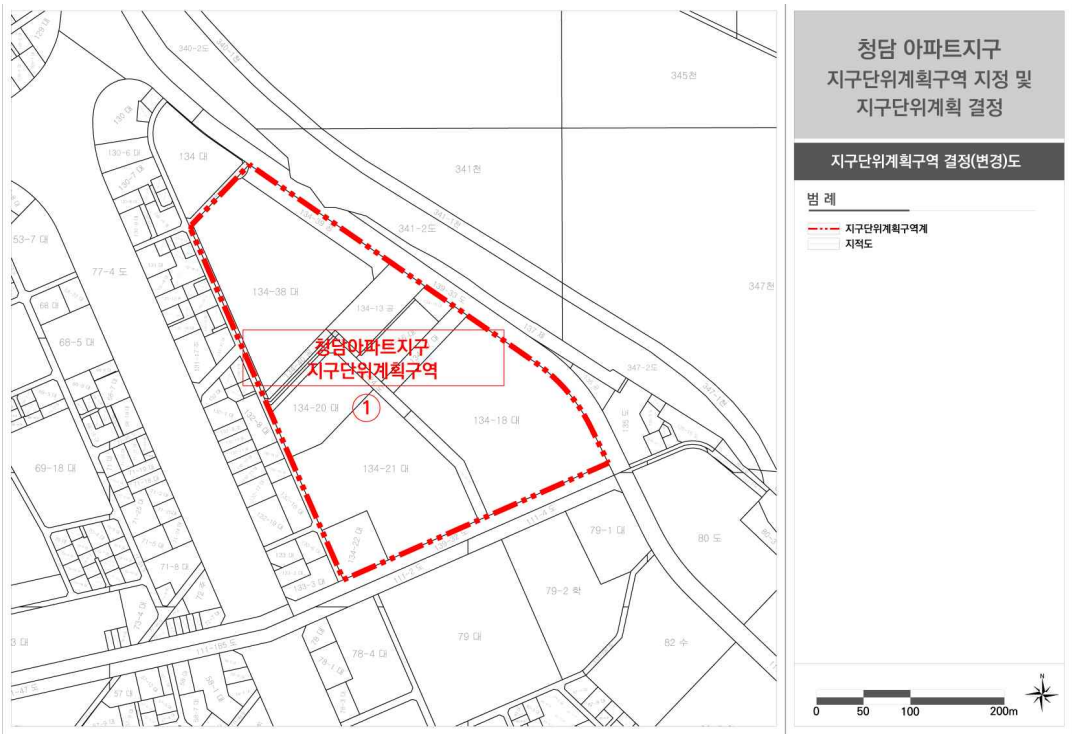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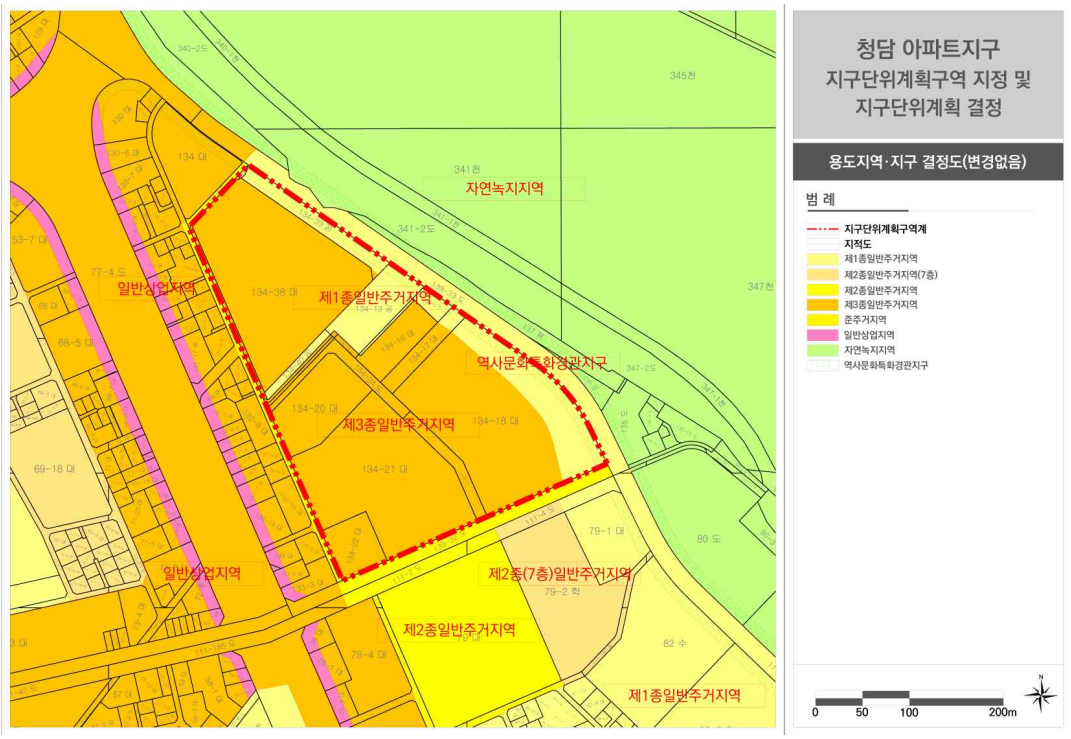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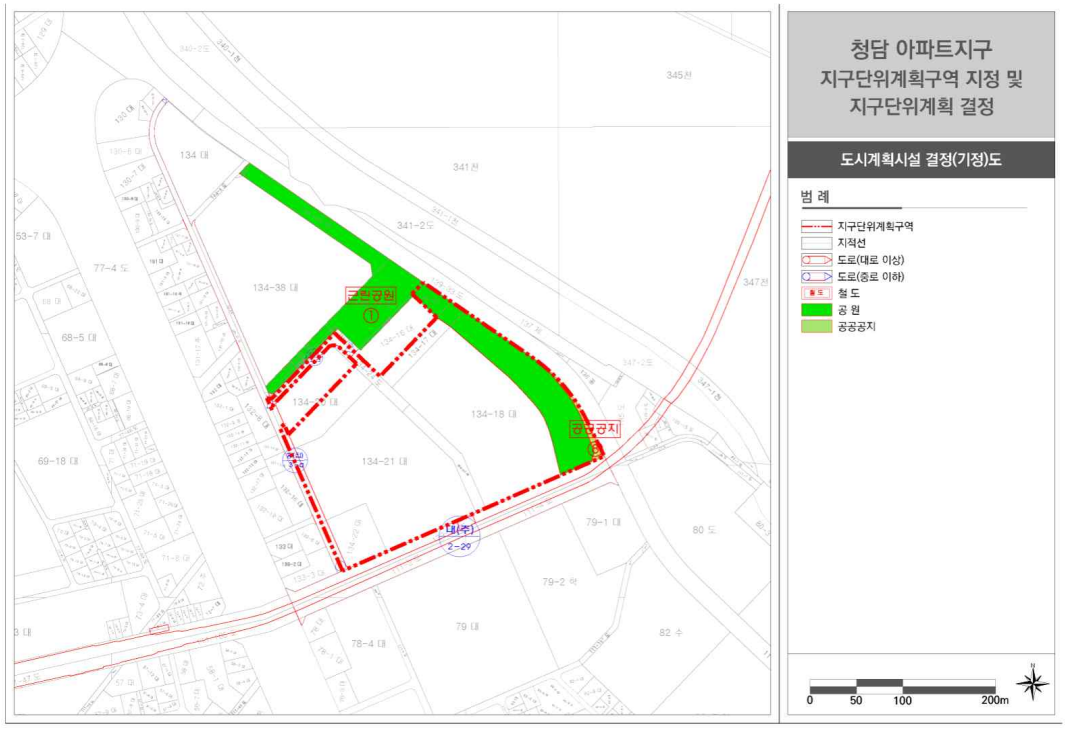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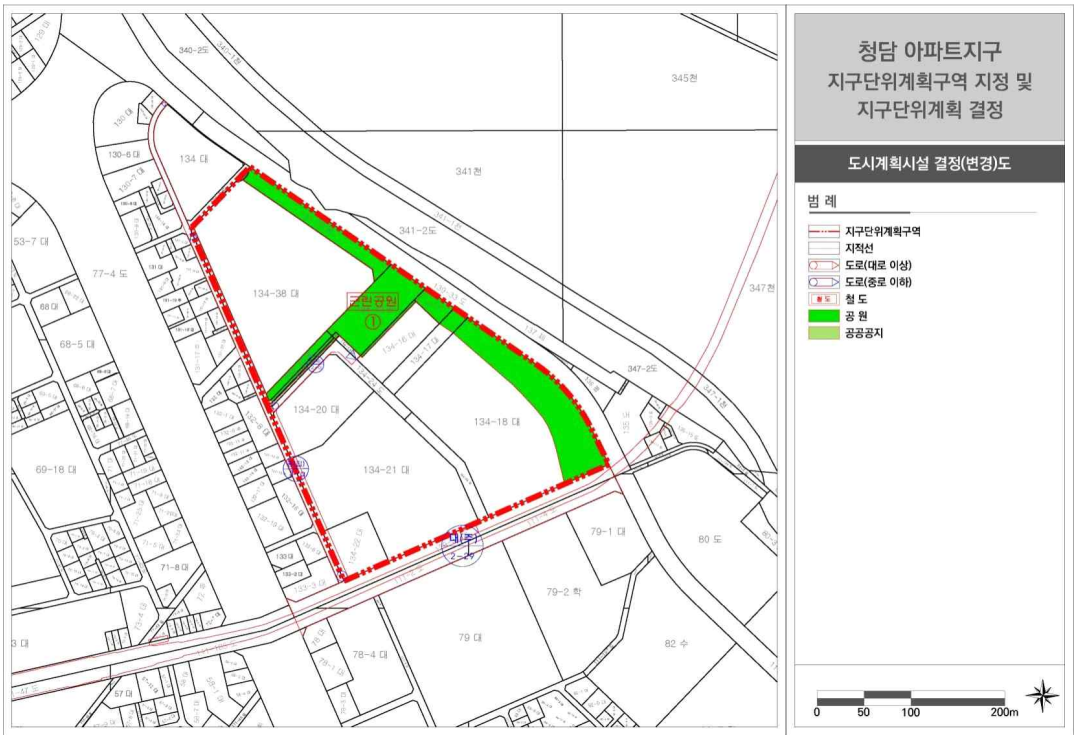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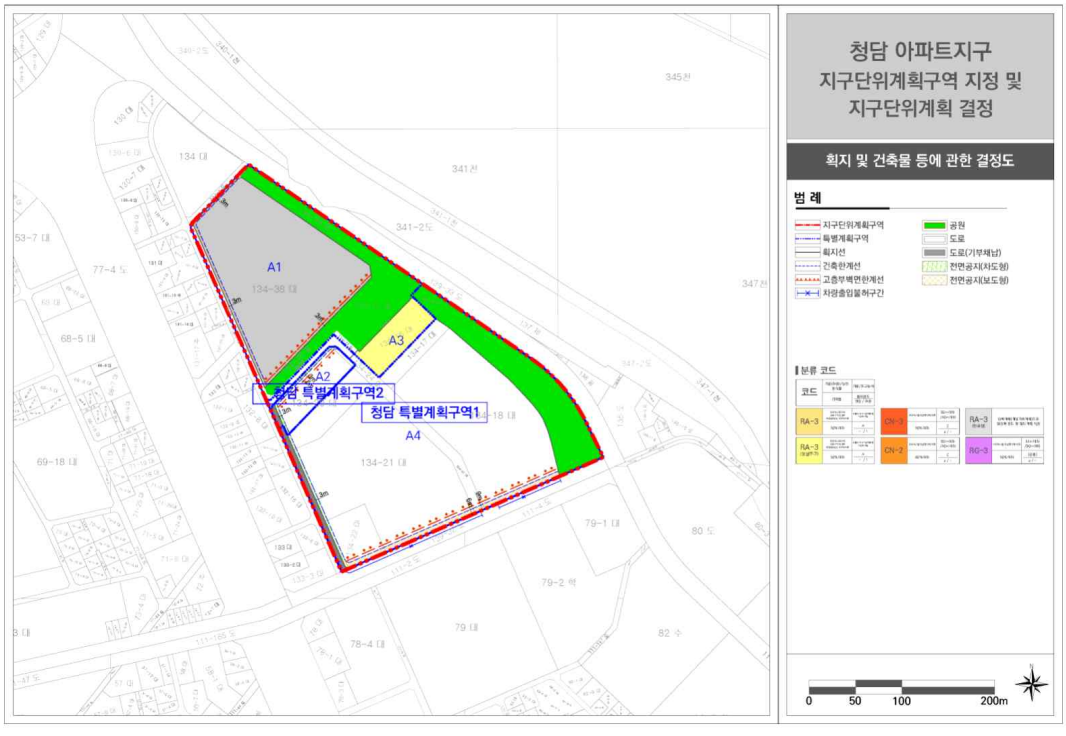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0호

도시관리계획(삼성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대 삼성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6.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아파트단지 재건축 가능시기 단계별 도래에 따라 선제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삼성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삼성동 일대	-	증) 290,643.3	290,643.3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삼성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증) 290,643.3	290,643.3	· 아파트지구 내 각 주구별 이격 현황 및 상위계획(생활권계획 등) 적용 등 지역적 특성의 상이함을 고려하여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청담, 삼성, 역삼·도곡)으로 분리하여 지구단위계획 행정적 효율성 제고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계			290,643.3	-	290,643.3	100.0	100.0	
주거지역	소계		290,643.3	-	290,643.3	99.5	99.5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0.0	-	1,500.0	0.5	0.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2,144.0	감) 15,550.9	6,593.1	7.6	2.3	
		제3종일반주거지역	265,571.4	증) 15,550.9	281,122.3	91.4	96.7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427.9	-	1,427.9	0.5	0.5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강남구 삼성동 16-1대	제2종(7층)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15,550.9	200% /200% /법적용적률 2배이하	220% /250%	·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020,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한 업무면적 증대 및 생활SOC 확충계획과 2020년 서울시 투자심사결과(적정)를 반영하여 청사부지 용도지역 상향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중로	1	a	20	집산도로	640	삼성동 4-3	삼성동 11-1	일반도로	-	기정도로 시설번호 부여
기정	중로	3	b	12	집산도로	461 (370)	삼성동 1-4 (삼성동 2)	삼성동 4-4 (삼성동 4-4)	일반도로	-	선릉로130길
변경	중로	3	b	12	집산도로	200 (130)	삼성동 1-4 (삼성동 2)	삼성동 2-5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c	6~18	집산도로	846 (693)	삼성동 9-23 (삼성동 11)	삼성동 21-4	일반도로	-	선릉로120길
변경	중로	3	c	6~18	집산도로	846 (693)	삼성동 9-23 (삼성동 11)	삼성동 21-4	보행자 우선도로	-	
기정	중로	3	d	6~12	집산도로	863 (182)	삼성동 34-25 (삼성동 24-32)	삼성동 22-3 (삼성동 188)	일반도로	-	삼성로115길
신설	중로	3	g	12	국지도로	142	삼성동 8	삼성동 8-5	일반도로	-	기정도로 시설번호 부여
신설	중로	3	h	12	국지도로	68	삼성동 8-5	삼성동 7-3	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i	12	국지도로	142	삼성동 3-1	삼성동 11	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j	12	국지도로	134	삼성동 111-44	삼성동 16-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a	10	국지도로	57	삼성동 1-1	삼성동 1-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b	10	국지도로	768	삼성동 5-3	삼성동 6-6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c	10	국지도로	150	삼성동 10-20	삼성동 10-28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d	10	국지도로	215	삼성동 49-12	삼성동 4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e	10	국지도로	153	삼성동 24-3	삼성동 24-25	일반도로	-	삼성로115길
신설	소로	3	a	6	국지도로	63	삼성동 111-96	삼성동 4-6	일반도로	-	기정도로 시설번호 부여
신설	소로	3	b	6	국지도로	54	소(국) 3-c	소(국) 1-b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c	6	국지도로	227	삼성동 6-6	삼성동 111-108	보행자 우선도로	-	
신설	소로	3	d	6	국지도로	132	삼성동 111-107	삼성동 111-115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e	6	국지도로	43	삼성동 20-4	삼성동 20-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f	6	국지도로	51	삼성동 21-4	삼성동 21	일반도로	-	

※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1-a	· 도로 신설	누락된 시설에 대한 신규결정
중로 3-b	중로 3-b	· 연장변경 : 461m → 200m	도로 분할(소로 3-c 신설)에 따라 연장 축소
중로 3-c	중로 3-c	· 사용형태 변경 - 일반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기존 현황도로 고려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형태 변경 (보행자우선도로)
-	중로 3-g	· 도로 신설	누락된 시설에 대한 신규결정
-	중로 3-h	· 도로 신설	누락된 시설에 대한 신규결정
-	중로 3-i	· 도로 신설	누락된 시설에 대한 신규결정
-	중로 3-j	· 도로 신설	누락된 시설에 대한 신규결정
-	소로 1-a	· 도로 신설	누락된 시설에 대한 신규결정
-	소로 1-b	· 도로 신설	누락된 시설에 대한 신규결정
-	소로 1-c	· 도로 신설	누락된 시설에 대한 신규결정
-	소로 1-d	· 도로 신설	누락된 시설에 대한 신규결정
-	소로 3-a	· 도로 신설	누락된 시설에 대한 신규결정
-	소로 3-b	· 도로 신설	누락된 시설에 대한 신규결정
-	소로 3-c	· 도로 신설 - 사용형태 : 보행자우선도로	중로 3-b 일부 폭원 변경(12m → 6m)에 따라 도로 분절하여 소로 신설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	소로 3-d	· 도로 신설	누락된 시설에 대한 신규결정
-	소로 3-e	· 도로 신설	누락된 시설에 대한 신규결정
-	소로 3-f	· 도로 신설	누락된 시설에 대한 신규결정

나. 도시공간시설 : 변경없음

1)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어린이공원	삼성동 14	1,500.0	-	1,500.0	-	삼성은행나무공원
기정	a	공원	소공원	삼성동 7-4	679.3	-	679.3	-	반달근린공원
기정	b	공원	소공원	삼성동 11-3	1,592.9	-	1,592.9	-	배꽃근린공원
기정	c	공원	소공원	삼성동 16-4	1,799.5	-	1,799.5	-	샘터근린공원
기정	②	공원	소공원	삼성동 189-1	1,320.0	-	1,320.0	서고 제2005-369호 (2005.12.1)	강남1소공원
기정	d	공원	소공원	삼성동 50-3	1,343.0	-	1,343.0	-	학봉근린공원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

1)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a	공공청사	-	삼성동 16-1	15,550.9	-	15,550.9	-	-
변경	a	공공청사	-	삼성동 16-1	15,550.9	-	15,550.9	-	강남구청 (문화시설 a와 중복결정)
기정	⑨	공공청사	-	삼성동 20-2	913.5	-	913.5	서고 제2005-369호 (2005.12.1)	강남구 보훈회관

▌ 공공청사 건축물의 규모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a	공공청사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변경	a	공공청사	50%이하	기준220%이하 /허용250%이하	12층이하	
기정	⑨	공공청사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 공공청사 및 편익시설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기준용적률 220% 이하로 계획하고, 허용용적률 250%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30%는 공공용도 및 전략용도로 제공하여야 함. (단, 바닥면적 1,600㎡ 이상을 전략용도로 설치 시 허용용적률 완화 가능)

▌공공청사 건축물의 규모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공공청사	· 공공청사 건축범위 변경 - 건폐율 : 60%이하 → 50%이하 - 용적률 : 200%이하 → 기준220%이하/허용250%이하 - 높 이 : 5층이하 → 12층이하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청사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2) 문화시설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문화시설	공연장, 문화시설	삼성동 16-1	-	(증 3,000㎡ 이상)	(3,000㎡이상)	-	공공청사a (강남구청)과 중복결정

▌문화시설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a	문화시설	· 문화시설 신설	· 「강남구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2018)」에 의거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문화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강남구 신청사내 문화시설 중복결정

▌문화시설 건축물의 규모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a	문화시설	50%이하	완화용적률 30%이내	지상층 3층 이하	강남구청사내 시설배치 (공연장, 문화시설)

※ 문화시설a 중복결정 면적 및 위치 등은 추후 강남구청사 국제설계공모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청사 및 편익시설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기준용적률 220% 이하로 계획하고, 허용용적률 250%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30%는 공공용도 및 전략용도로 제공하여야 함 (단, 바닥면적 1,600㎡ 이상을 전략용도로 설치시 허용용적률 완화 가능)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 설정기준

구분			설정기준	비고
가구			· 8m이상 도로로 구획되는 블록을 기준으로 가구 설정	5개소
획지	획지		· 정비계획이 기 결정(정비사업 완료)된 일단의 계획적 개발단위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반시설계획 등에 따른 계획적 개발단위 · 2개 이상의 필지에 단일 건축물로 조성 된 경우	30개소
	필지	자율적 공동개발	· 소규모 중심시설 밀집지역내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 공동개발(통합개발) 가능	2,000㎡ 이하

▮ 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도면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A	강남구 삼성동 2번지 일원	7,258.8	삼성 특별계획구역1
B	강남구 삼성동 3-1번지 일원	106,593.6	삼성 특별계획구역2
C	강남구 삼성동 16번지 일원	105,925.8	-
D	강남구 삼성동 188번지	15,599.3	-
E	강남구 삼성동 50번지 일원	34,315.4	-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필지 또는 획지					분류코드	비 고
구분	번호	번호	위치		공부상면적(㎡)	계획면적(㎡)		
신설	A	A1	삼성동	2대	3,432.4	3,432.4	RA-3	삼성 특별계획구역1 (서광 APT)
				2-1대	539.4	539.4		
				2-4대	116.7	116.7		
				2-5대	2,682.7	2,682.7		
				2-12대	378.0	378.0		
				2-13대	109.6	109.6		
	B	B1	삼성동	3-1대	1,232.3	1,232.3	RA-3	삼성월드타워 APT
		B2	삼성동	3-2대	461.2	461.2	RA-3	CLK APT

가구		필지 또는 획지					분류 코드	비 고
구분	번호	번호	위치		공부상면적(㎡)	계획면적(㎡)		
		B3	삼성동	3-8대	1,963.1	1,765.1	RA-3	우정에쉐르 APT
		B4	삼성동	3-3대	3,372.6	3,234.8	RA-3	석탑 APT
		B5	삼성동	4대	523.7	523.7	RA-3	삼성 특별계획구역2 (한솔 APT 101동)
				4-1대	549.1	549.1		
				4-2대	639.1	639.1		
				4-5대	450.2	450.2		
				4-6대	1,277.4	1,277.4		
				4-7대	87.5	87.5		
				4-8대	18.9	18.9		
				4-9대	11.7	11.7		
		B6	삼성동	4-3대	1,826.6	1,826.6	RA-3	푸른솔 APT
		B7	삼성동	4-4대	1,487.1	1,332.8	CN-3	-
				4-10대	101.8	101.8		
		B8	삼성동	7-3대	16,067.2	1,326.2	CN-3	래미안삼성2차 상가
		B9	삼성동	7-3대	16,067.2	14,741.0	RA-3	래미안삼성2차 APT
		B10	삼성동	6대	6,303.4	6,303.4	RA-3	현대 APT
		B11	삼성동	5대	3,189.0	3,189.0	RA-3	삼성 특별계획구역2 (한솔 APT 102동)
				5-2대	262.0	262.0		
				5-4대	45.5	45.5		
				5-5대	30.5	30.5		
				5-6대	47.6	47.6		
				5-7대	68.6	68.6		
		B12	삼성동	5-1대	1,347.8	1,347.8	CN-3	-
		B13	삼성동	5-3대	834.5	834.5	RA-3	골든카운티 APT
				5-8대	89.4	89.4		
		B14	삼성동	11대	29,586.1	29,586.1	RA-3	롯데캐슬프레미어 APT
				11-1대	7,354.3	7,354.3		
				11-2대	1,419.3	1,419.3		

가구		필지 또는 획지					분류 코드	비 고
구분	번호	번호	위치		공부상면적(㎡)	계획면적(㎡)		
		B15	삼성동	14-1대	15,382.5	15,382.5	RA-3	삼성동중앙하이츠 빌리지 APT
				14-5대	724.9	724.9		
	C	C1	삼성동	16대	1,357.8	1,357.8	CN-2	삼성힐스테이트1단지 상가
		C2	삼성동	16-1대	15,550.9	15,550.9	-	강남구청
		C3	삼성동	17대	9,974.3	9,974.3	RA-3	삼성동롯데 APT
		C4	삼성동	16-2대	41,426.2	41,426.2	RA-3	삼성힐스테이트 1단지 APT
			삼성동	16-5대	78.4	78.4		
		C5	삼성동	189대	26,401.0	24,952.7	RA-3	상아2차 APT (래미안 라클래시)
		C6				1,448.3	CN-3	근린생활시설
		C7	삼성동	20-2대	1,014	1,014.0	-	강남구 보훈회관
		C8	삼성동	20-4대	671.9	471.5	CN-3	주호빌딩
		C9	삼성동	20-5대	1,650.0	1,650.0	CN-3	근린생활시설
				20-6대	160.8	160.8		
				20-7대	149.4	149.4		
		C10	삼성동	21대	1,073.3	1,073.3	CN-3	한섬빌딩
		C11	삼성동	21-1대	83.5	83.5	CN-3	삼광빌딩
				21-2대	146.5	146.5		
				21-4대	832.4	618.1		
	D	D1	삼성동	188대	15,598.4	15,598.4	RA-3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 APT
	E	E1	삼성동	50대	33,243.6	33,243.6	RA-3	삼성힐스테이트 2단지 APT
		E2	삼성동	50-2대	1,071.8	1,071.8	CN-3	삼성힐스테이트 2단지 상가

※ 상기면적은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가. 권장용도 및 허용용도

구분	도면표시	전 층	비고
허용 용도	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주1)	· RA-3
	2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도	· RA-3(완료형)
권장 용도	a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공공업무시설, 사무소 ·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 주민체육시설, 학원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수련시설 중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CN-3 · CN-2

주1) 부대 · 복리시설은 제1종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공동작업장, 일자리지원시설 등에 해당함(「주택법」 제2조 14호에 따름)

주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은 '3-5-나.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을 따름

나. 불허용도

구분	도면표시	전 층	비고
불허 용도	A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RA-3
	B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도 이외 용도	· RA-3(완료형)
	C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업무시설(1층에 한함), 총포판매소, 장의사, 게임제공업소(1층에 한함)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CN-3 · CN-2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중생활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단, 위 용도 중 시(市)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며 [별표1]을 가이드라인으로 함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은 '3-5-나.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을 따름

[별표1] 기존 중심시설용지(코드 CN-, CG-) 주거용도 전환시 가이드라인

구 분	유형1	유형2	유형3
입지기준	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	역세권 250m이내 이면부	유형1,2 이외 지역
비주거비율	30%이상 (지상연면적 10%이상)	20%이상 (지상연면적 10%이상)	10%이상 (지상연면적 10%이상)
공공기여	주거용도 전환비율의 5~10% - 대지면적 5,000㎡미만 5%, 5,000㎡이상~10,000㎡미만 5%~10%미만, 10,000㎡이상 10% (예시) 대지면적 3천㎡, 주거비율 70% 허용시 공공기여율 : 5%×70%=3.5% ※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기준 준용		

※ 역세권이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이내 범위(사각형)를 말하며, 대지면적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함
※ 공동주택 용도 허용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기여 면적은 용적률 완화 산정에 적용하지 않음
※ 주거용도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에 해당
※ 비주거비율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용도 전환(비율 조정) 가능
※ 불허용도 C에 해당하는 필지 또는 획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경우,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건폐율	코드구분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60%이하	CN-2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RA-3, CN-3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건폐율 적용	RA-3(완료형)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은 '3-5-나.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을 따름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건폐율

연번	획지번호	건폐율	아파트명	해당 고시문
1	B2	26.98%	삼성동씨엘케이아파트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2	B3	36.35%	우정에쉐르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3	B9	26.00%	래미안삼성2차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4	B13	26.51%	골든카운티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5	B15	17.09%	삼성동중앙하이츠빌리지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6	C3	23.49%	삼성동롯데아파트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7	C4	19.94%	삼성동힐스테이트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8	C5	18.70%	래미안라클라시	강남구 고시 제2016-150호
9	D1	18.30%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	강남구 고시 제2014-23호
10	E1	19.39%	삼성동힐스테이트2차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나.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용적률(%)			비고	코드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	CN-2
제3종 일반주거지역	230%이하	230%이하	300%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정법정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서 건축위원회 심의시확정	RA-3

구분	용적률(%)			비고	코드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250%이하	25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단, 공동주택이 주용도로서 부지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00(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50세대)세대 이상 (공동)개발시 또는 공동주택 통합개발시 코드RA-3 기준 적용	CN-3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적률 적용				RA-3 (완료형)

※ 기준용적률 230%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3.3.) 허용용적률인센티브 항목을 준용하여 허용용적률 완화범위 2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단, 향후 관련계획 및 기준 변경시 변경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 상한용적률은 향후 변화된 구역여건을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항목 및 인센티브를 확인하여 심의를 통하여 수립 및 결정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에 따름

※ 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준공된 단지(필지)는 관련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 용적률은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은 '3-5-나.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을 따름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적률

연번	획지번호	용적률	아파트명	해당 고시문
1	B2	299.30%	삼성동씨엘케이아파트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2	B3	299.14%	우정에쉐르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3	B9	273.00%	래미안삼성2차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4	B13	249.51%	골든카운티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5	B15	269.46%	삼성동중앙하이츠빌리지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6	C3	344.07%	삼성동롯데아파트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7	C4	276.75%	삼성동힐스테이트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8	C5	295.94%	래미안라클라시	강남구 고시 제2016-150호
9	D1	299.99%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	강남구 고시 제2014-23호
10	E1	273.06%	삼성동힐스테이트2차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다. 기준용적률 완화에 따른 의무사항

- 대지규모가 5,000㎡ 이상 또는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이상)를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항목 중 총 20%이상 적용 (특별계획구역도 포함한다)
- 아래의 항목 이외 입지적 특성 및 사회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공공성 등을 확보하여 시(市)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 분		적용기준		
1	우수디자인	15%		
2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10%	
3	녹색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6%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3%	
4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3%	
5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20%초과	3%	
		20% 이하 ~ 15% 초과	2%	
		15% 이하 10% 초과	1%	
6	지능형 건축물	1등급	15%	
		2등급	12%	
		3등급	9%	
		4등급	6%	
7	공공보행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등 조성(지역권*설정) └ 기준용적률X (조성면적/대지면적) X a ※a=1이하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15%p 이내
8	열린단지	•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로 조성(지형도면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5%p
9	공개공지	•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 기준용적률X (조성면적(의무면적 제외)/대지면적) X a ※a=1이하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시/ 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5%p 이내
10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p

구 분		적용기준	
11	방재안전	• 화재 · 소방 · 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 개선 └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 · 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 · 자문을 통해 적용	5%p
12	지역기반시설정비	• 사업구역 주변 환경정비(도로, 공원, 통학로등/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 기준용적률× (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 × a ※a=1이하 ※ 환산부지면적 : 정비비용/사업지 대지가액(市 기부채납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5%p 이내
13	지역특화	•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 맞춤형 항목 신설 가능 └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 및 산정방식 신설(위원회에서 인정시)	10%p 이내 (합산)
합계		총 10% 이상 선택적 이행	

※ 기준용적률 200%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서울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3.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준용하여 허용용적률 완화범위 1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단, 향후 관련계획 및 기준 변경시 변경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높이		비고	
기준	최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	RA-3
32m 이하	40m 이하	· 단, 공동주택이 주용도로서 부지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00 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50세대) (공동)개발시 또는 공동주택 통합개발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CN-3 CN-2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높이 적용			RA-3(완료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 높이는 관련 법령에 따름

※ 최고높이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3-5.높이계획에 따른 최고높이 설정 프로세스 적용하여 산정
- 최소 20m, 최대40m 이하로 결정/기준높이는 최고높이의 0.8배 적용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은 '3-5-나.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을 따름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높이

연번	획지번호	높이	아파트명	해당 고시문
1	B2	35.7m	삼성동씨엘케이아파트	건축물대장상 높이 적용
2	B3	지상10층	우정에쉐르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3	B9	지상24층	래미안삼성2차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4	B13	35.4m	골든카운티	건축물대장상 높이 적용
5	B15	지상22층	삼성동중앙하이츠빌리지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6	C3	55.2m	삼성동롯데아파트	건축물대장상 높이 적용
7	C4	지상23층	삼성동힐스테이트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8	C5	105.3m	래미안라클라시	강남구 고시 제2016-150호
9	D1	89.8m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	강남구 고시 제2014-23호
10	E1	지상23층	삼성동힐스테이트2차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마. 기준높이 완화 인센티브 내용

구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고
1	공동개발	조성시	• 기준높이 × α	• 공동개발(권장) 이행시: α = 0.25 • 자율적 공동개발시 : α = 0.3 (소규모 중심시설용지 통합개발)
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시	• 기준높이 × [(제공면적 - 설치의무면적) / 대지면적] × 3.0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실내공개공지 조성시 완화계수 3.0 → 4.0 적용
		쌈지형(침상형) 공지조성시	• 기준높이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2.5 ×α	• 필로티형: α= 2.0 • 개방형 : α= 2.5
3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계획시	• 기준높이 × 0.3	• 권장용도 연면적의 합이 총 연면적의 20% 이상 확보시인정

구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고
4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시	• 기준높이 X 가로지장물개수 X 2.5 ※ 설치면적 = 지장물설치면적+공사비·이전비환산면적	•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5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공익시설 설치 시 기준높이 8m 완화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 시설 등 지역필요시설계획 수립 시 결정 또는 해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치구 포함)에서 인정하는 경우
6	친환경	물환경	옥상녹화	• 대지면적의 10%이상 설치 시 기준높이 8m 완화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에너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 기준높이 X 0.25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상 의무사항을 초과하여 인증된 경우

※ 기준용적률 완화 의무사항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기준용적률 완화(의무) 또는 기준높이 완화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선	건축한계선	RA-3, CN-3 간선부	·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6m - 학동로, 삼성로, 봉은사로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RA-3, CN-3 이면부	·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3m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지 않은 필지(획지)의 경우 「민법」 제242조에 따름(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 이격)

※ 「강남구 고시 제2019-42호(2019.3.8.)」에 따라 학동로, 삼성로, 봉은사로변 건축선(3m) 지정

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배치 및 형태	공동주택	RA-3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	[규제사항]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권장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권장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 권장하여 일률적인 판상 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동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권장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권장 ·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 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커뮤니티시설 및 열린 조경시설 등을 배치 권장하여 생활가로를 조성하여 열린 공간으로 계획	[권장사항]
	부대 및 복리시설	RA-3	· 공공보행통로 등 주변에 우선 배치 권장 · 단지내부 보행가로변에 부대 및 복리시설, 지역개방 커뮤니티시설 등 복합시설 계획을 권장하여 기존 가로와 아파트단지와의 연계성 강화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권장	[권장사항]
	공공시설	-	· 담장 설치를 지양하고, 보행자의 접근성 및 시각적 개방감을 향상시키도록 공간 계획	-
기타 외관 요소	옥외설비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가능한 별도의 설치 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책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류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 주택용지의 경우, 향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높이계획 규제 변화에 따라 상위 관련 지침이 변경 시 위의 계획내용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기준을 따름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삼성 특별계획구역 1	삼성동 2일대	-	증) 7,258.8	7,258.8	유형2 서광APT
신설	삼성 특별계획구역 2	삼성동 4-6일대	-	증) 7,571.9	7,571.9	유형2 한솔APT

▌ 특별계획구역 지정사유서

–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2000년 이전 준공된 단지(사업 미추진)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이거나 200세대 이상인 단지,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2개소 신설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삼성 특별계획구역1(서광APT)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2-5일대	-
특별계획구역면적(㎡)			• 7,258.8㎡	-
용도지역 · 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획지계획			• 획지 A1(면적 : 7,258.8㎡)	-
공공시설 등 계획			• 지역필요시설 등 기반시설은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 수립 시 결정 ※ 향후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수립시, 해당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용도 계획	불허 용도	A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 용도	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부대 · 복리시설은 제1종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공동작업장, 일자리지원시설 등에 해당(「주택법」 제2조 14호에 따름)	-
밀도 계획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기준(허용) 용적률 : 230% 이하 • 상한용적률: 300% 이하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300% 이하	예정법적 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시 확정
	높이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학동로변 : 6m – 선릉로130길, 이면도로변 : 3m	지침도에 따름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 (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규제사항]
			• 공동주택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권장사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부대 및 복리시설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적 면적의 1/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루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계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 및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기타에 관한사항		• 세부개발계획 수립 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0.05)」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동내·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등을 통해 결정	-

▌삼성 특별계획구역2(한솔APT)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6일대	-
특별계획구역면적(㎡)				• 7,571.9㎡	-
용도지역 · 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획지계획				• 획지 B5(면적 : 3,557.6㎡) • 획지 B11(면적 : 3,643.2㎡)	-
공공시설 등 계획				• 도로 371.1㎡ ※ 기타 지역필요시설 등 기반시설은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결정하고, 해당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용도계획	불허용도	A	획지 B5, B1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1	획지 B5, B1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부대 · 복리시설은 제1종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공동작업장, 일자리지원시설 등에 해당(「주택법」 제2조 14호에 따름)	-
밀도계획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기준(허용) 용적률 : 230% 이하 • 상한용적률: 300% 이하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300% 이하	예정법적 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시 확정
	높이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획지 B5	• 건축한계선 - 학동로변 : 6m - 이면부 : 3m	지침도에 따름
			획지 B11	• 건축한계선 - 이면부 : 3m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 이면부 차도연접형 전면공지 조성(폭원 3m)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 (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리모델링 사업추진시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을 고려하여 건축선 및 통경축 저촉부는 증축 불가	[규제사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공동주택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권장사항]
		• 부대 및 복리시설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적 면적의 1/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루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계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 및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기타에 관한사항		• 세부개발계획 수립 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0.05)」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동내·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등을 통해 결정	-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교통처리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대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간선가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불허(대지의 입지상 차량출입이 불가피할 경우 허용) ※ 단, 비상차량은 제외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철거 후 신축 시 적용) ※ 강남구청사 전면부의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추후 설계공모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절차를 통하여 조정 가능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RA-3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	RA-3	· 학교·공원 등 보행 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자 도로를 조성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 및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등 커뮤니티공간 설치	-
	기타 보행동선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자의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 · 공동주택단지 사이의 이면부 보차혼용도로 또는 통학로에 보행 편의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2.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9호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획지는 제외)
2. 자율적 공동개발, 단, 일반필지 공동개발에 따라 대지규모가 3,00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건축구역과 공동개발에 따라 재건축구역(공동개발하려는 필지 중 가장 큰 필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
3.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 대지안의 공지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4.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대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의 성격, 설치계획(위치변경 및 신규설치에 한함)의 변경
6. 법령이나 지침의 재·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지침의 변경
7.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 차량 출입구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변경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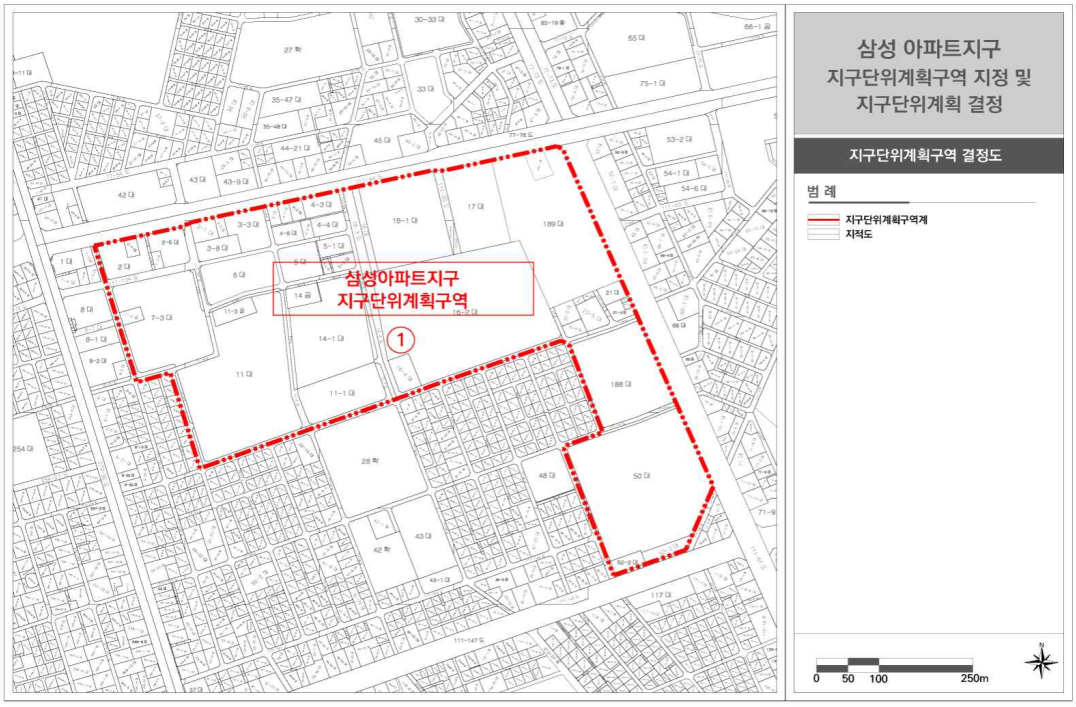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6), 강남구 재건축사업과(☎02-3423-6076) 및 도시계획과(☎02-3423-6108)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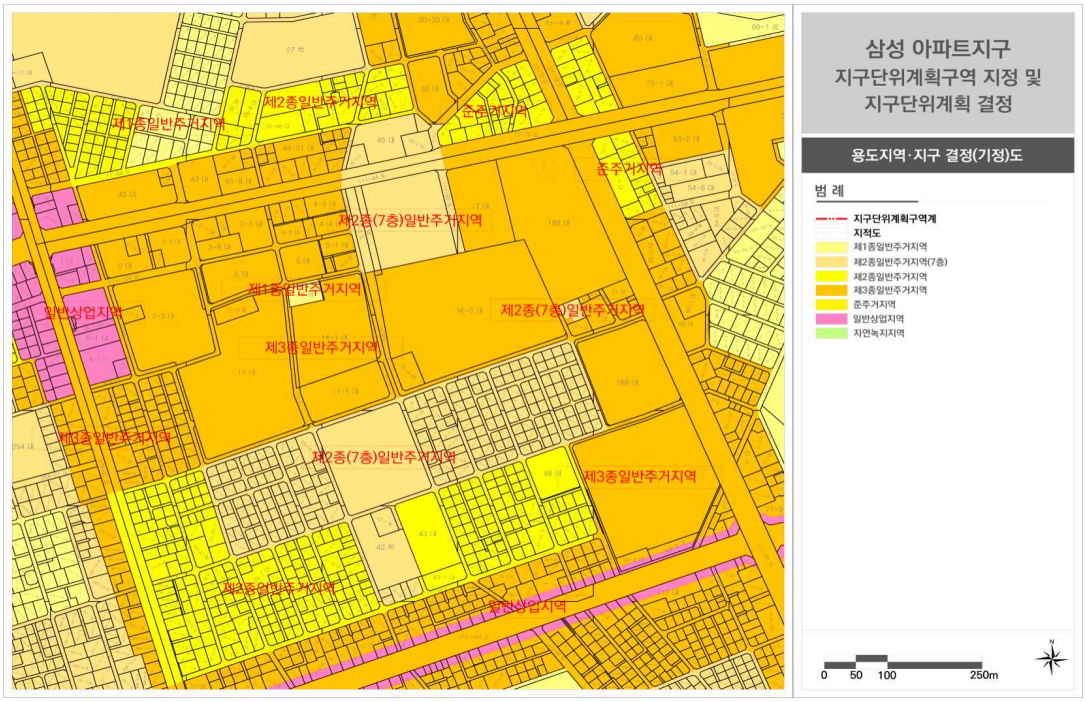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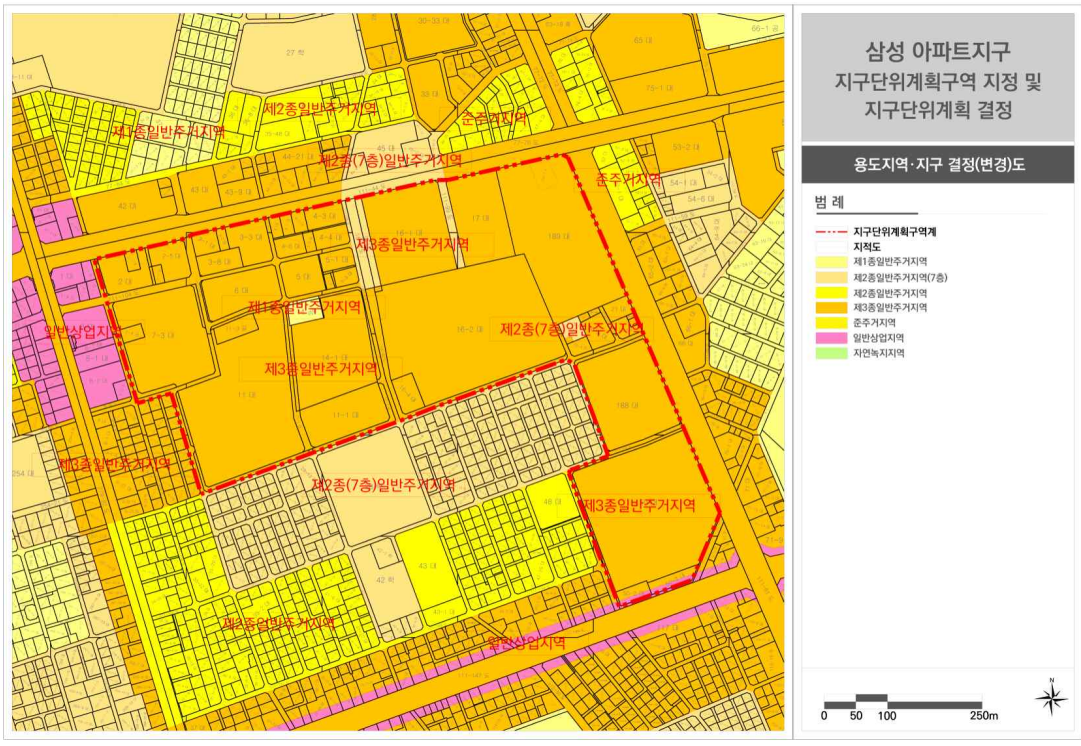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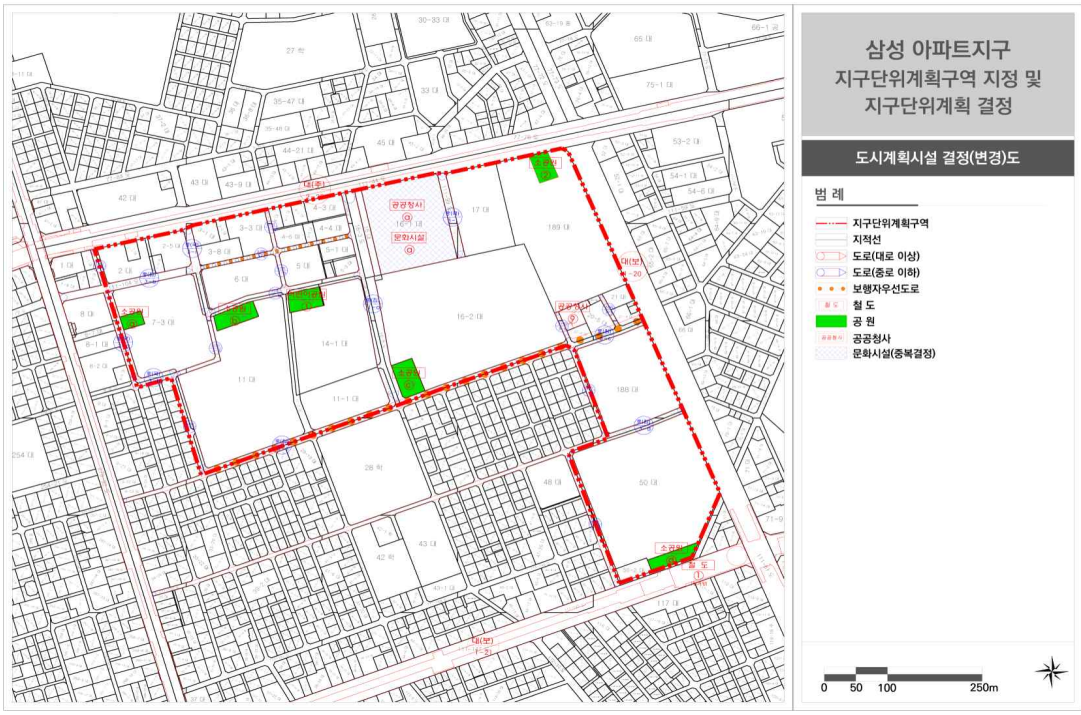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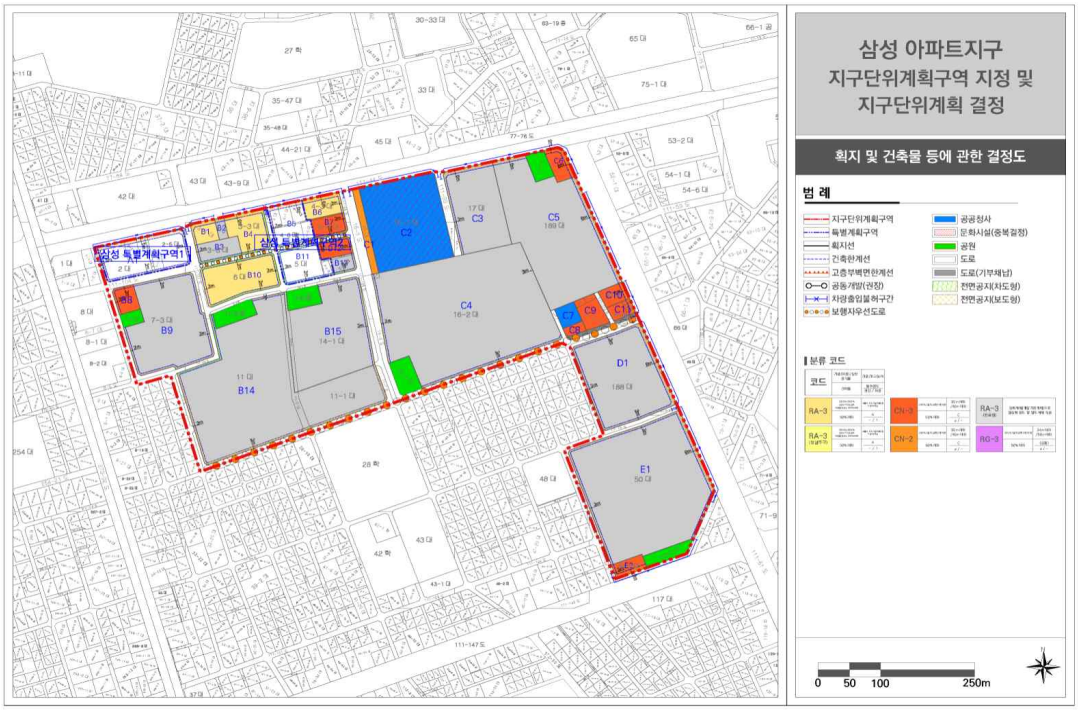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1호

도시관리계획(역삼·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도곡·대치동 일대 역삼·도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6.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아파트단지 재건축 가능시기 단계별 도래에 따라 선제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역삼·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역삼동, 도곡동, 대치동 일대	-	증) 669,949.7	669,949.7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역삼·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증) 669,949.7	669,949.7	· 아파트지구 내 각 주구별 이격 현황 및 상위계획(생활권계획 등) 적용 등 지역적 특성의 상이함을 고려하여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청담, 삼성, 역삼·도곡)으로 분리하여 지구단위계획 행정적 효율성 제고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69,949.7	-	669,949.7	100.0	
주거지역	소계		669,949.7	-	669,949.7	100.0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993.9	-	4,993.9	0.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9,488.9	-	69,488.9	10.4	
		제3종일반주거지역	595,466.9	-	595,466.9	88.9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1	22	35~38	주간선 도로	4,625 (740)	역삼동 광호리 (역삼동 762-3)	삼성동 대1-3 (대치동 1025)	일반도로	건고 제198호 (1971.4.7)	도곡로
기정	대로	3	71	25	보조 간선도로	6,250 (316)	압구정동 (대치동 1025)	도곡동 (대치동 888-3)	일반도로	건고 제198호 (1971.4.7)	선릉로
신설	중로	1	b	20~26	집산도로	555	역삼동 805-32	역삼동 755-1	일반도로	-	역삼로, 기정도로 시설번호 부여
기정	중로	2	1	6~15	국지도로	97	역삼동 806	역삼동 712-3	일반도로	서고 제42호 (2002.2.20)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281 (206)	역삼동 805-31 (역삼동 757)	역삼동 757-1	일반도로	-	선릉로69길
변경	중로	2	a	15	집산도로	281 (206)	역삼동 805-31 (역삼동 757)	역삼동 757-1	일반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중로	2	b	15	집산도로	268	역삼동 761	역삼동 754-4	일반도로	-	언주로70길, 기정도로 시설번호 부여
기정	중로	2	c	15	집산도로	278	역삼동 761-19	역삼동 805-52	일반도로	-	종점 오기정정
기정	중로	2	d	15	국지도로	51	도곡동 538	도곡동 52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e	12	집산도로	438 (345)	역삼동 706-26 (역삼동 710)	역삼동 707-42	일반도로	-	언주로86길
기정	중로	3	f	12	국지도로	147	역삼동 761-2	역삼동 761-26	일반도로	-	도곡로43길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30 (3)	역삼동 805-44 (역삼동 764)	역삼동 805-43 (역삼동 76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30 (5)	역삼동 756-19 (역삼동 757)	역삼동 756 (역삼동 75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35 (59)	역삼동 766-20 (역삼동 764)	역삼동 805-56	일반도로	-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481 (405)	역삼동 766-20 (역삼동 764)	역삼동 755	보행자 우선도로	-	
신설	소로	3	g	6~7	국지도로	374	역삼동 805-14	역삼동 805-17	일반도로	-	기정도로 시설번호 부여

※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1-b	· 도로 신설	누락된 시설에 대한 신규결정
중로 2-1	중로 2-a	· 도로번호 변경	중복된 도로번호 변경
-	중로 2-b	· 도로 신설	누락된 시설에 대한 신규결정
소로 3-1	소로 3-1	· 연장변경 : 135m → 481m · 사용형태 변경 - 일반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기존 도시계획도로 상 누락된 부분에 대한 도로 연장 변경 및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형태 변경 (보행자우선도로)
-	소로 3-g	· 도로 신설	누락된 시설에 대한 신규결정

2) 철도 : 변경없음

▮ 본선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모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②	도시 철도	본선 (분당선)	왕십리역 구내	송파구 장지동 596-21 일대	-	연장 : 17,912m 폭 :11~23m 면적 : 191,733㎡	서고 제31호 (1995.2.11)	

▮ 정거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②	도시철도	한티정거장 (분당선)	강남구 대치동 1011-28일대	5,928.0 (2,137.4)	서고 제31호 (1995.2.11)	

※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나. 도시공간시설 : 변경없음

1) 공원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공원	소공원	역삼동 711-5	576.0	-	576.0	서고 제2005-369호 (2005.12.1)	역삼미소소공원
기정	④	공원	소공원	역삼동 712 일원	2,543.3	-	2,543.3	서고 제2005-369호 (2005.12.1)	역삼센트럴IPARK공원
기정	e	공원	소공원	역삼동 713-15 일원	1,988.7	-	1,988.7	-	도성근린공원
기정	⑤	공원	소공원	역삼동 716-1	650.0	-	650.0	서고 제2005-369호 (2005.12.1)	역삼나들이공원
기정	f	공원	소공원	역삼동 754-7 일원	1,100.8	-	1,100.8	-	언주근린공원
기정	g	공원	소공원	역삼동 755-9 일원	1,175.0	-	1,175.0	-	송운근린공원
기정	h	공원	소공원	역삼동 754-4	1,147.7	-	1,147.7	-	보은근린공원
기정	i	공원	소공원	역삼동 755-7	1,293.6	-	1,293.6	-	영동근린공원
기정	j	공원	소공원	역삼동 757-1	1,580.6	-	1,580.6	-	길섶근린공원
기정	⑥	공원	소공원	역삼동 763-18	604.1	-	604.1	서고 제2005-369호 (2005.12.1)	다솜소공원, 위치 오기정정
기정	⑦	공원	소공원	도곡동 539-6	896.5	-	896.5	서고 제2005-369호(2005.12.1)	도곡단비소공원
기정	k	공원	소공원	도곡동 538-4	558.5	-	558.5	강남구고시 제2007-82호 (2008.1.3)	강남7소공원
기정	l	공원	소공원	도곡동 527-7	6,146.9	-	6,146.9	-	매봉근린공원
기정	m	공원	소공원	대치동 888-3	1,688.1	-	1,688.1	-	큰골근린공원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1) 학교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학교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⑪	학교	중학교	진선여중	역삼동 713	13,376.0	-	13,376.0		
기정	⑫	학교	고등학교	진선여고	역삼동 713	16,777.3	-	16,777.3		
기정	⑬	학교	초등학교	도성초교	역삼동 714	14,912.1	-	14,912.1		
기정	⑭	학교	중학교	역삼중	역삼동 767-20 일원	14,000.0	-	14,000.0		

▌학교 건축물의 규모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⑪	학교	60%이하	200%이하	6층이하	
기정	⑫	학교	60%이하	200%이하	6층이하	
기정	⑬	학교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기정	⑭	학교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 학교시설의 건축범위는 '도시관리계획(학교 건축범위) 일괄결정 추진계획(시설계획과-8466, 2007.09.06)' 의 내용을 따름

2) 공공청사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⑩	공공청사	파출소	역삼동 711-4	300.0	-	300.0	-	도곡 지구대
기정	b	공공청사	-	도곡동 527-6	750.0	-	750.0	-	도곡 어린이집

▌공공청사 건축물의 규모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⑩	공공청사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기정	b	공공청사	50%이하	250%이하	5층이하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역삼동 758-4일대	650.0	-	650.0	서고 제2018-168호 (2018.5.31)	-

▌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의 규모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50%이하	200%이하	5층이하	사회복지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

※ 건축물 계획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500㎡(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9-122호)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 설정기준

구분			설정기준	비고
가구			· 8m이상 도로로 구획되는 블록을 기준으로 가구 설정	6개소
획지	획지		· 정비계획이 기 결정(정비사업 완료)된 일단의 계획적 개발단위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반시설계획 등에 따른 계획적 개발단위 · 2개 이상의 필지에 단일 건축물로 조성 된 경우	45개소
	필지	공동개발(권장)	· 개발잔여지로 계획적 유도가 필요한 경우	1개소
		자율적 공동개발	· 소규모 중심시설 밀집지역내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 공동개발(통합개발) 가능	2,000㎡ 이하

▮ 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도면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A	강남구 역삼동 711-4번지 일원	182,347.1	역삼·도곡 특별계획구역1
B	강남구 역삼동 754번지 일원	105,187.4	-
C	강남구 역삼동 761번지 일원	94,078.5	역삼·도곡 특별계획구역2
D	강남구 역삼동 762-3번지	15,469.4	-
E	강남구 도곡동 539-5번지 일원	175,829.3	-
F	강남구 대치동 1025번지 일원	45,434.4	-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필지 또는 획지					분류 코드	비 고
구분	번호	번호	위치		공부상면적(㎡)	계획면적(㎡)		
신설	A	A1	역삼동	711-4대	300.0	300.0	-	도곡지구대
		A2	역삼동	711-3대	16,495.2	16,495.2	RA-3	역삼자이 APT
		A3	역삼동	711-6대	1,043.1	1,043.1	CN-3	역삼자이상가
		A4	역삼동	710대	9,062.5	9,062.5	RA-3	현대까르띠에710 APT
		A5	역삼동	902대	21,570.4	21,570.4	RA-3	개나리4차 APT

가구		필지 또는 획지					분류 코드	비 고
구분	번호	번호	위치		공부상면적(㎡)	계획면적(㎡)		
		A6	역삼동	713-11대	12,909.3	12,909.3	RA-3	역삼아이파크 APT
		A7	역삼동	709-5대	17,535.3	17,535.3	RA-3	테헤란아이파크 APT
		A8	역삼동	713학	30,153.3	30,153.3	-	진선여자중 · 고등학교
		A9	역삼동	713-7대	18,319.4	18,319.4	RA-3	래미안펜타빌 APT
		A10	역삼동	713-12대	11,000.3	11,000.3	RA-3	역삼아이파크 APT
		A11	역삼동	714학	14,912.1	14,912.1	-	서울도성초등학교
		A12	역삼동	716대	5,316.6	5,316.6	RA-3	역삼 · 도곡 특별계획구역1 (동부센트레빌 APT)
		A13	역삼동	716-3대	12,289.0	12,289.0	RA-3	개나리SK뷰 APT
		A14	역삼동	716-4대	716.7	716.7	CN-3	개나리SK뷰 상가
		A15	역삼동	712-5대	1,019.9	1,019.9	RA-3	도시형생활주택
	B	B1	역삼동	754대	21,883.3	20,958.0	RA-3	개나리래미안 APT
		B2	역삼동	754대	21,883.3	925.3	CN-3	개나리래미안 상가
		B3	역삼동	754-1대	24,001.1	24,001.1	RA-3	역삼푸르지오 APT
		B4	역삼동	754-2잡	1,589.5	1,589.5	CN-3	도곡프라자
		B5	역삼동	755대	8,831.9	8,420.3	CN-3	역삼이마트
		B6	역삼동	755-1대	16,397.9	16,397.9	RA-3	개나리푸르지오 APT
		B7	역삼동	755-4대	26,977.7	26,977.7	RA-3	역삼e편한세상 APT
	C	C1	역삼동	761대	837.4	837.4	RA-3	상지리츠빌 APT
				761-9대	836.5	836.5		
		C2	역삼동	761-1대	184.3	184.3	RG-3	공동개발(권장)
		C3	역삼동	761-2대	189.3	189.3		
		C4	역삼동	761-3대	1,312.4	1,312.4	RA-3	상지리츠빌2 APT
		C5	역삼동	761-10대	3,456.7	3,456.7	RA-3	대림역삼 APT
		C6	역삼동	761-19대	1,145.9	1,145.9	CN-3	강남프라자
				761-18대	426.3	426.3		
		C7	역삼동	761-26대	495.4	495.4	CN-3	역삼2동 주민센터
		C8	역삼동	758대	175.0	175.0	RA-3	역삼 · 도곡 특별계획구역2 (역삼동 758 · 은하수 · 760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중)
				758-1대	181.8	181.8		
				758-2대	212.0	10.2		
				758-4대	228.7	9.6		도로(570㎡)확보 공공시설(650㎡)확보

가구		필지 또는 획지					분류 코드	비 고
구분	번호	번호	위치		공부상면적(㎡)	계획면적(㎡)		
				758-5대	224.6	224.6		
				758-6대	198.6	198.6		
				758-7대	203.5	203.5		
				758-8대	211.6	211.6		
				758-9대	216.8	216.8		
				758-10대	251.0	251.0		
				758-11대	235.7	6.6		
				758-12도	138.8	138.8		
				758-13대	214.1	214.1		
				759대	298.3	298.3		
				759-1대	2,405.8	2,416.7		
				805-34도	728.9	138.9		
				805-41도	2,062.6	574.0		
				805-42도	136.2	136.2		
				760대	351.9	202.9		
				760-1대	358.2	358.2		
				760-2대	356.3	356.3		
				760-3대	361.5	361.5		
				760-4대	608.1	608.1		
				760-5대	586.3	469.3		
				760-6대	440.1	352.8		
				760-7대	1,273.8	1,273.8		
				760-9대	425.7	425.7		
				760-10대	331.7	247.1		
				760-11대	317.2	236.0		
				760-12도	128.3	128.3		
				760-19대	284.8	235.7		
				763-17도	729.9	181.1		
		C9	역삼동	758-2대	212.0	201.8	-	역삼·도곡 특별계획구역2 (사회복지시설)
				758-4대	228.7	219.1		
				758-11대	235.7	229.2		
		C10	역삼동	763-16대	19,521.0	19,521.0	RA-3	래미안그레이튼3차 APT
		C11	역삼동	767-17대	111.0	111.0	-	역삼중학교

가구		필지 또는 획지					분류 코드	비 고
구분	번호	번호	위치		공부상면적(㎡)	계획면적(㎡)		
				767-18대	90.0	90.0		
				767-20학	14,127.2	13,764.7		
				805-43도	1,660.7	65.3		
				805-49도	3,190.5	88.6		
		C12	역삼동	757대	25,757.2	25,757.2	RA-3	역삼래미안 APT
				764대	7,555.6	7,555.6		
				805-56대	798.6	798.6		
		C13	역삼동	757대	25,757.2	609.1	CN-3	역삼래미안 상가
	D	D1	역삼동	762-3대	15,469.4	15,469.4	RA-3	래미안그레이튼1차 APT
	E	E1	도곡동	539-5대	5,326.5	5,326.5	RA-3	
		E2	도곡동	538-3대	16,514.0	16,514.0	RA-3	래미안도곡카운티 APT
		E3	도곡동	538-1대	1,466.0	1,466.0	CN-3	진달래상가
		E4	도곡동	527대	133,361.6	133,361.6	RA-3	도곡렉슬 APT
				527-2대	137.8	137.8		
				528대	826.5	826.5		
				529대	1,373.8	1,373.8		
				530대	3,050.6	3,050.6		
		E5	도곡동	527-3대	4,359.3	4,359.3	CN-3	도곡렉슬 상가
		E6	도곡동	527-6대	750.0	750.0	-	구립 도곡어린이집
	F	F1	대치동	1025대	6,921.3	6,921.3	RA-3	대치롯데캐슬리베 APT
		F2	대치동	888대	36,229.1	36,229.1	RA-3	대치아이파크 APT
		F3	대치동	888-1대	595.0	595.0	CN-3	대치아이파크 상가

※ 면적은 지적 공부상면적 및 구적면적(계획면적)으로 표기함

▌공동개발 결정조서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계획내용	비고
I	89,081.6	역삼동	761-1	184.3	373.6	공동개발(권장)	개발잔여지의 적정규모 개발 유도
		역삼동	761-2	189.3			

▮ 공동개발 결정사유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권장)	역삼동 761-1, 761-2번지	•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주택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인접 필지와 공동주택으로 개발되지 못한 필지의 적정규모 개발 유도	-

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가. 권장용도 및 허용용도

구분	도면표시	전 층	비고
허용 용도	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주1)	· RA-3
	2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도	· RA-3(완료형)
권장 용도	a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공공업무시설, 사무소 ·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 주민체육시설, 학원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수련시설 중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CN-3 · RG-3

주1) 부대 · 복리시설은 제1종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공동작업장, 일자리지원시설 등에 해당함(「주택법」 제2조 14호에 따름)
주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은 '3-5-나.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을 따름

나. 불허용도

구분	도면표시	전 층	비고
불허 용도	공통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업무시설(1층에 한함), 총포판매소, 장의사, 게임제공업소(1층에 한함)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RG-3 · CN-3
	A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RA-3
	B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도 이외 용도	· RA-3(완료형)
	C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중생활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단, 위 용도 중 시(市)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며 [별표1]을 가이드라인으로 함	· CN-3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은 '3-5-나.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을 따름

[별표1] 기존 중심시설용지(코드 CN-, CG-) 주거용도 전환시 가이드라인

구 분	유형1	유형2	유형3
입지기준	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	역세권 250m이내 이면부	유형1,2 이외 지역
비주거비율	30%이상 (지상연면적 10%이상)	20%이상 (지상연면적 10%이상)	10%이상 (지상연면적 10%이상)
공공기여	주거용도 전환비율의 5~10% - 대지면적 5,000㎡미만 5%, 5,000㎡이상~10,000㎡미만 5%~10%미만, 10,000㎡이상 10% (예시) 대지면적 3천㎡, 주거비율 70% 허용시 공공기여율 : 5%×70%=3.5% ※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기준 준용		

※ 역세권이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이내 범위(사각형)를 말하며, 대지면적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함
※ 공동주택 용도 허용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기여 면적은 용적률 완화 산정에 적용하지 않음
※ 주거용도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에 해당
※ 비주거비율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용도 전환(비율 조정) 가능
※ 불허용도 C에 해당하는 필지 또는 획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경우,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다. 용도완화

구분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한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완화 계획수립	적용 범위	비고
용도완화	• 판매시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 의거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 용도완화 계획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주1) 바닥면적 제한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의거 완화	획지H5	준주거지역에서 건축가능한 판매시설 면적제한 완화

주1) 상점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소매점(서점 제외)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 한함.
주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은 '3-5-나.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을 따름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건폐율	코드구분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RA-3, RG-3, CN-3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건폐율 적용	RA-3(완료형)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은 '3-5-나.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을 따름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건폐율

연번	획지번호	건폐율	아파트명	해당 고시문
1	A2	14.2%	역삼자이아파트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2	A4	20.7%	강남센트럴아이파크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3	A6	17.0%	역삼I'PARK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4	A7	20.1%	테헤란아이파크	강남구 고시 제2006-53호
5	A9	18.6%	래미안펜타빌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6	A13	15.2%	개나리SK뷰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7	B1	21.2%	개나리래미안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8	B3	20.3%	역삼푸르지오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9	B6	17.6%	개나리푸르지오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10	B7	19.0%	역삼E-편한세상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11	C1	17.0%	상지리츠빌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12	C4	41.1%	상지리츠빌 역삼2차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13	C10	20.2%	래미안 그레이튼 3차	강남구 고시 제2006-52호
14	C12	18.3%	역삼래미안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15	D1	17.0%	래미안그레이튼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16	E2	20.3%	래미안도곡카운티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17	F1	20.8%	대치동롯데캐슬리베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18	F2	14.4%	대치아이파크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나.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용적률(%)			비고	코드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3종 일반주거지역	230%이하	230%이하	300%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정 법정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서 건축위원회 심의시 확정	RA-3
	250%이하	25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단, 공동주택이 주용도로서 부지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00(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50세대)세대 이상 (공동)개발시 또는 공동주택 통합개발시 코드RA-3 기준 적용	CN-3, RG-3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적률 적용				RA-3 (완료형)

※ 기준용적률 230%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3.3.) 허용용적률인센티브 항목을 준용하여 허용용적률 완화범위 2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단, 향후 관련계획 및 기준 변경시 변경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 상한용적률은 향후 변화된 구역여건을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항목 및 인센티브를 확인하여 심의를 통하여 수립 및 결정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적용하고, 그 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에 따름
※ 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준공된 단지(필지)는 관련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 용적률은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은 '3-5-나.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을 따름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적률

연번	획지번호	용적률	아파트명	해당 고시문
1	A2	299.96%	역삼자이아파트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2	A4	298.54%	강남센트럴아이파크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3	A6	273.98%	역삼I'PARK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4	A7	256.01%	테헤란아이파크	강남구 고시 제2006-53호
5	A9	273.98%	래미안펜타빌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6	A13	257.67%	개나리SK뷰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7	B1	273.25%	개나리래미안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8	B3	283.18%	역삼푸르지오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9	B6	275.36%	개나리푸르지오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10	B7	282.26%	역삼E-편한세상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11	C1	266.40%	상지리츠빌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12	C4	249.61%	상지리츠빌 역삼2차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연번	획지번호	용적률	아파트명	해당 고시문
13	C10	271.30%	래미안 그레이튼 3차	강남구 고시 제2006-52호
14	C12	276.16%	역삼래미안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15	D1	266.40%	래미안그레이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16	E2	261.12%	래미안도곡카운티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17	F1	299.80%	대치동롯데캐슬리베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18	F2	274.94%	대치아이파크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다. 기준용적률 완화에 따른 의무사항

- 대지규모가 5,000㎡ 이상 또는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이상)를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항목 중 총 20%이상 적용 (특별계획구역도 포함한다)
- 아래의 항목 이외 입지적 특성 및 사회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공공성 등을 확보하여 시(市)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 분		적용기준		
1	우수디자인	15%		
2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10%	
3	녹색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6%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3%	
4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3%	
5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20%초과	3%	
		20% 이하 ~ 15% 초과	2%	
		15% 이하 10% 초과	1%	
6	지능형 건축물	1등급	15%	
		2등급	12%	
		3등급	9%	
		4등급	6%	
7	공공보행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등 조성(지역권*설정) └ 기준용적률X (조성면적/대지면적) X a ※a=1이하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15%p 이내
8	열린단지	•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로 조성(지형도면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5%p

구 분		적용기준	
9	공개공지	•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 · 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 제외)/대지면적) × a ※a=1이하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시/ 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5%p 이내
10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 · 돌봄시설*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p
11	방재안전	• 화재 · 소방 · 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 개선 └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 · 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 · 자문을 통해 적용	5%p
12	지역기반시설정비	• 사업구역 주변 환경정비(도로, 공원, 통학로등/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 기준용적률 × (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 × a ※a=1이하 ※ 환산부지면적 : 정비비용/사업지 대지가액(市 기부채납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5%p 이내
13	지역특화	•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 맞춤형 항목 신설 가능 └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 및 산정방식 신설(위원회에서 인정시)	10%p 이내 (합산)
합계		총 10% 이상 선택적 이행	

※ 기준용적률 200%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서울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3.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준용하여 허용용적률 완화범위 1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단, 향후 관련계획 및 기준 변경시 변경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높이		비고	
기준	최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	RA-3
32m 이하	40m 이하	· 단, 공동주택이 주용도로서 부지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00 세대 이상(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50세대) (공동)개발시 또는 공동주택 통합개발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CN-3
24m 이하	30m 이하		RG-3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높이 적용			RA-3(완료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 높이는 관련 법령에 따름
※ 최고높이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3-5.높이계획에 따른 최고높이 설정 프로세스 적용하여 산정
- 최소 20m, 최대40m 이하로 결정/기준높이는 최고높이의 0.8배 적용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은 '③-5-나.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을 따름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높이

연번	획지번호	높이	아파트명	해당 고시문
1	A2	지상31층	역삼자이아파트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2	A4	지상25층	강남센트럴아이파크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3	A6	지상21층	역삼I'PARK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4	A7	지상25층	테헤란아이파크	강남구 고시 제2006-53호
5	A9	지상24층	래미안펜타빌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6	A13	지상25층	개나리SK뷰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7	B1	지상22층	개나리래미안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8	B3	지상16층	역삼푸르지오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9	B6	지상24층	개나리푸르지오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10	B7	지상25층	역삼E-편한세상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11	C1	지상15층	상지리츠빌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12	C4	19.5m	상지리츠빌 역삼2차	건축물대장상 높이 적용
13	C10	58.55m	래미안 그레이튼 3차	강남구 고시 제2006-52호
14	C12	지상22층	역삼래미안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15	D1	지상34층	래미안그레이튼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16	E2	지상21층	래미안도곡카운티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17	F1	지상18층	대치동롯데캐슬리베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18	F2	지상24층	대치아이파크	건축물대장상 층수 적용

마. 기준높이 완화 인센티브 내용

구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고
1	공동개발	조성시	• 기준높이 × α	• 공동개발(권장) 이행시: α = 0.25 • 자율적 공동개발시 : α = 0.3 (소규모 중심시설용지 통합개발)
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시	• 기준높이 × [(제공면적 - 설치의무면적) / 대지면적] × 3.0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실내공개공지 조성시 완화계수 3.0 → 4.0 적용
		쌈지형(침상형) 공지조성시	• 기준높이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2.5 × α	• 필로티형: α= 2.0 • 개방형 : α= 2.5
3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계획시	• 기준높이 × 0.3	• 권장용도 연면적의 합이 총 연면적의 20% 이상 확보시인정
4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시	• 기준높이 × 가로지장물개수 × 2.5 ※ 설치면적 = 지장물설치면적+공사비 · 이전비환산면적	•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5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공익시설 설치 시 기준높이 8m 완화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 시설 등 지역필요시설계획 수립 시 결정 또는 해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치구 포함)에서 인정하는 경우
6	지하연결통로 또는 지하철출입구	조성시	• 연결통로 : 기준높이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8.0 • 출입구 : 기준높이 × 0.3	• 한티역인접 중심시설에 한함 • 지하철 출입구는 대지 또는 건축물내 설치 후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고
7	친환경	물환경	옥상녹화	• 대지면적의 10%이상 설치 시 기준높이 8m 완화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에너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 기준높이 × 0.25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상 의무사항을 초과하여 인증된 경우

※ 기준용적률 완화 의무사항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기준용적률 완화(의무) 또는 기준높이 완화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지하철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완화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공된 부지 면적은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제공된 부지면적을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 및 기준높이 완화에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건축물 배치 · 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선	건축한계선	RA-3, CN-3 간선부	·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6m - 선릉로, 언주로, 도곡로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RA-3, CN-3 이면부, RG-3	·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3m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지 않은 필지(획지)의 경우 「민법」 제242조에 따름(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 이격)

※ 「강남구 고시 제2019-42호(2019.3.8.)」에 따라 선릉로, 언주로, 도곡로변 건축선(3m) 지정

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배치 및 형태	공동주택	RA-3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	[규제사항]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권장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권장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 권장하여 일률적인 판상 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동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권장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권장 ·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 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커뮤니티시설 및 열린 조경시설 등을 배치 권장하여 생활가로를 조성하여 열린 공간으로 계획	[권장사항]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부대 및 복리시설	RA-3	· 공공보행통로 등 주변에 우선 배치 권장 · 단지내부 보행가로변에 부대 및 복리시설, 지역개방 커뮤니티시설 등 복합시설 계획을 권장하여 기존 가로와 아파트단지와의 연계성 강화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권장	[권장사항]
	공공시설	-	· 담장 설치를 지양하고, 보행자의 접근성 및 시각적 개방감을 향상시키도록 공간 계획	-
기타 외관 요소	옥외설비	지구단위 계획구역전체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가능한 별도의 설치 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책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류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 주택용지의 경우, 향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높이계획 규제 변화에 따라 상위 관련 지침이 변경 시 위의 계획내용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기준을 따름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역삼 · 도곡 특별계획구역 1	역삼동 716	-	증) 5,316.6	5,316.6	유형2 동부센트레빌APT
신설	역삼 · 도곡 특별계획구역 2	역삼동 758일대	-	증) 12,263.1	12,263.1	유형1 은하수APT일대 (관리처분)

▌ 특별계획구역 지정사유서

–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2000년 이전 준공된 단지(사업미추진)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이거나 200세대 이상인 단지,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2개소 신설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역삼 · 도곡 특별계획구역2(역삼동 758 · 은하수 · 760)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대		-
특별계획구역면적(㎡)			• 12,263.1㎡		
용도지역 · 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획지계획			• 획지 C8(면적 : 11,043.1㎡) • 획지 C9(면적 : 650.0㎡)		
공공시설 등 계획			•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9-122호(2019.8.16.) 및 강남구고시 제2022-212호 (2022.11.4.)에 따라 결정된 공공시설계획 적용 - 도로 570.0㎡ - 사회복지시설 650.0㎡ (건축물 기부채납 연면적 1,500㎡, 지하1층~지상4층)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지침 준수		
용도계획	불허용도	A	획지C8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1	획지C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부대 · 복리시설은 제1종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공동작업장, 일자리지원 시설 등에 해당 (주택법제2조 14호에 따름)	-
		-	획지C9	• 사회복지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	
밀도계획	건폐율	획지C8 획지C9	• 50% 이하		-
	용적률	획지C8	•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상한용적률: 300% 이하(공공기여량에따른 완화범위에 한함)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300% 이하		예정법적 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시 확정
		획지C9	• 기준(허용)용적률 : 2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 2배이하		
	높이	획지C8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
		획지C9	• 5층 이하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이면부 : 3m		지침도에 따름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2-212호 (2022.11.4.)에 따라 결정된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사항에 따름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 (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규제사항]
			• 공동주택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환경설계 (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		[권장사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하여 계획 -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 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커뮤니티시설 및 열린 조경시설 등을 배치 권장하여 생활가로를 조성하여 열린 공간으로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적 면적의 1/3 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
	기타 외관요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2-212호 (2022.11.4.)에 따라 결정된 기타외관 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사항에 따름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루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계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 - 학교, 공원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내 보행자도로 조성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기타에 관한사항		•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전 정비계획이 결정고시 되거나,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된 구역은 해당 고시 된 사항으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세부개발계획 변경 시 본 지침을 따름 -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9-122호(2019.8.16.) 및 제2022-212호(2022.11.4.)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이 수립된 단지가 경미한 변경사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변경)으로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을 변경할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0.05)」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 · 동내 · 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 계획 등을 통해 결정	-

▌ 역삼 · 도곡 특별계획구역1(동부센트레빌APT)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6	-
특별계획구역면적(㎡)			• 5,316.6㎡	-
용도지역 · 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획지계획			• 획지 A12(면적 : 5,316.6㎡)	-
공공시설 등 계획			• 지역필요시설 등 기반시설은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수립 시 결정 ※ 향후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수립시, 해당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용도계획	불허용도	A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부대 · 복리시설은 제1종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공동작업장, 일자리지원시설 등에 해당(「주택법」 제2조 14호에 따름)	-
밀도계획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상한용적률 : 300% 이하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300%이하	예정법적 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시 확정
	높이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선릉로변 : 6m - 이면부 : 3m	지침도에 따름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 (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규제사항]
			• 공동주택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 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커뮤니티시설 및 열린 조경시설 등을 배치하여 생활가로를 조성하여 열린공간으로계획	[권장사항]
			• 부대 및 복리시설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적 면적의 1/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루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계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 – 학교, 공원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 및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기타에 관한사항	• 세부개발계획 수립 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0.05)」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 · 동내 · 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교통처리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대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간선가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불허(대지의 입지상 차량출입이 불가피할 경우 허용) ※ 단, 비상차량은 제외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철거 후 신축 시 적용)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RA-3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	RA-3	· 학교 · 공원 등 보행 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자 도로를 조성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 및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등 커뮤니티공간 설치	–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타 보행동선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자의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 · 공동주택단지 사이의 이면부 보차혼용도로 또는 통학로에 보행 편의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2.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9호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획지는 제외)
2. 자율적 공동개발, 단, 일반필지 공동개발에 따라 대지규모가 3,00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건축구역과 공동개발에 따라 재건축구역(공동개발하려는 필지 중 가장 큰 필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
3.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 대지안의 공지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4.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대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의 성격, 설치계획(위치변경 및 신규설치에 한함)의 변경
6. 법령이나 지침의 재·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지침의 변경
7.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 차량 출입구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변경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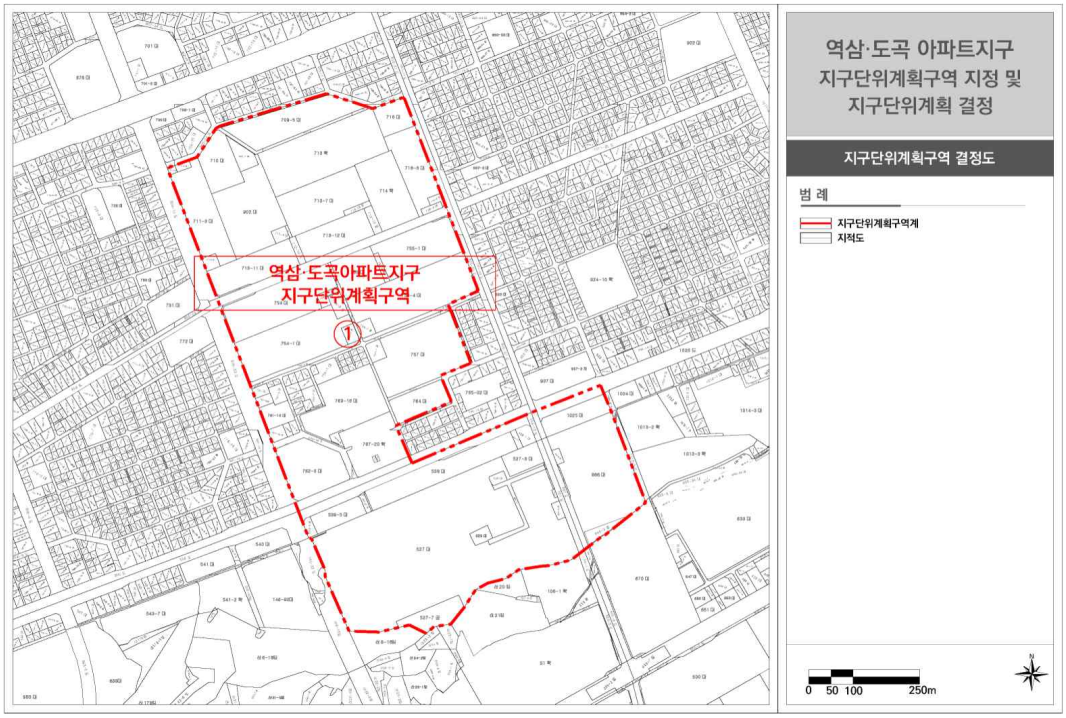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6), 강남구 재건축사업과(☎02-3423-6076) 및 도시계획과(☎02-3423-6108)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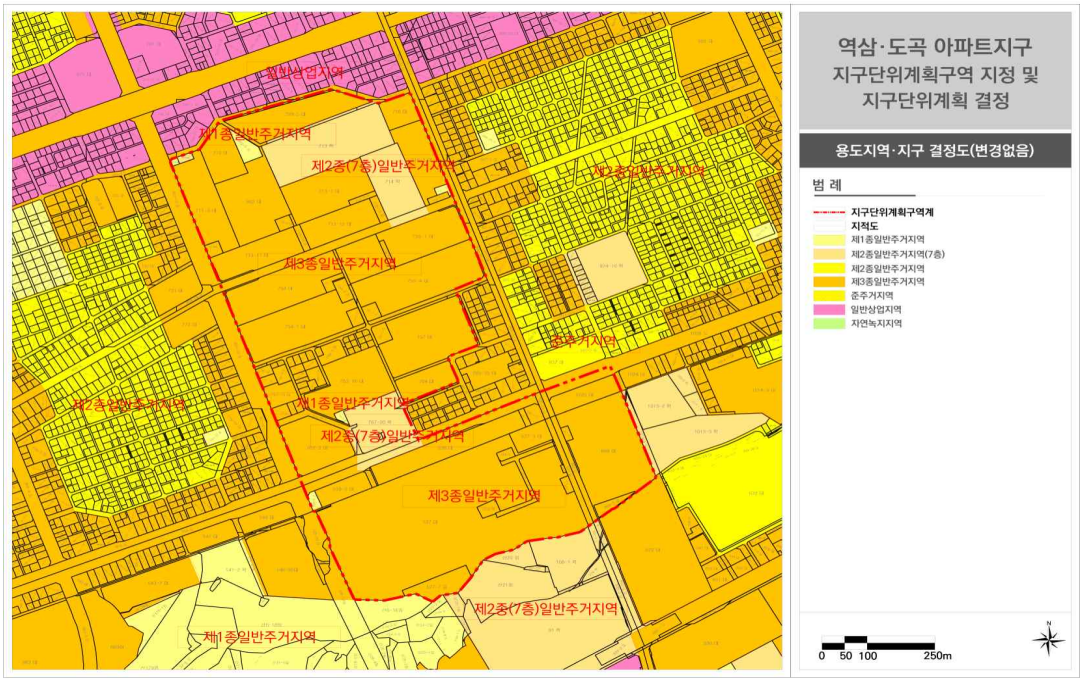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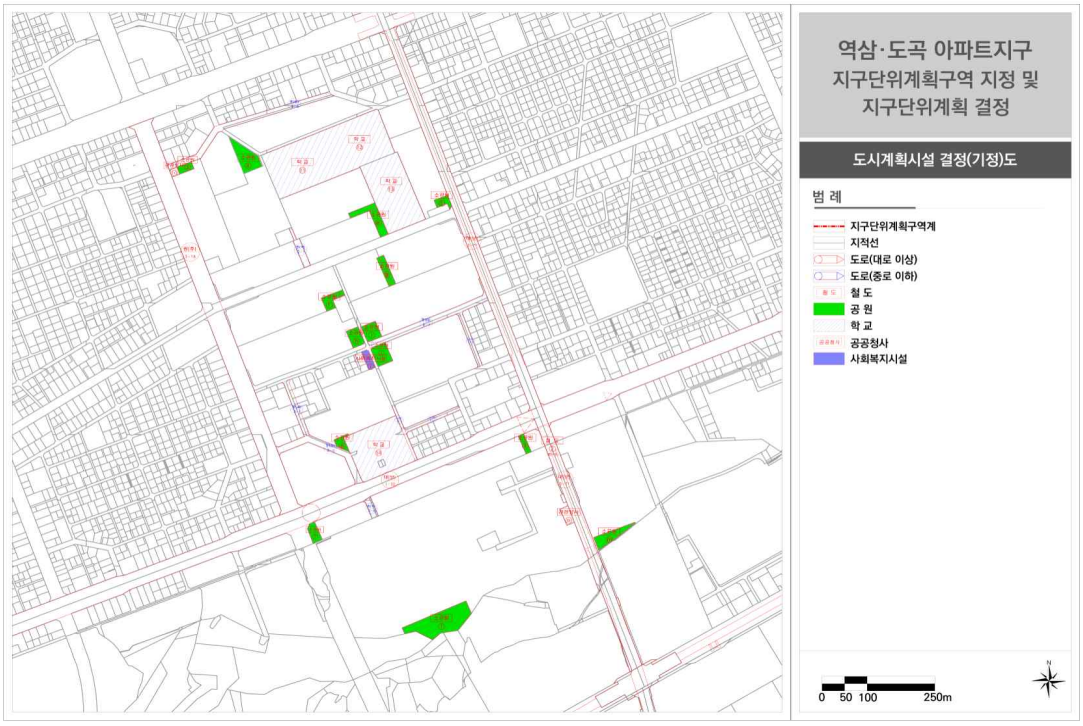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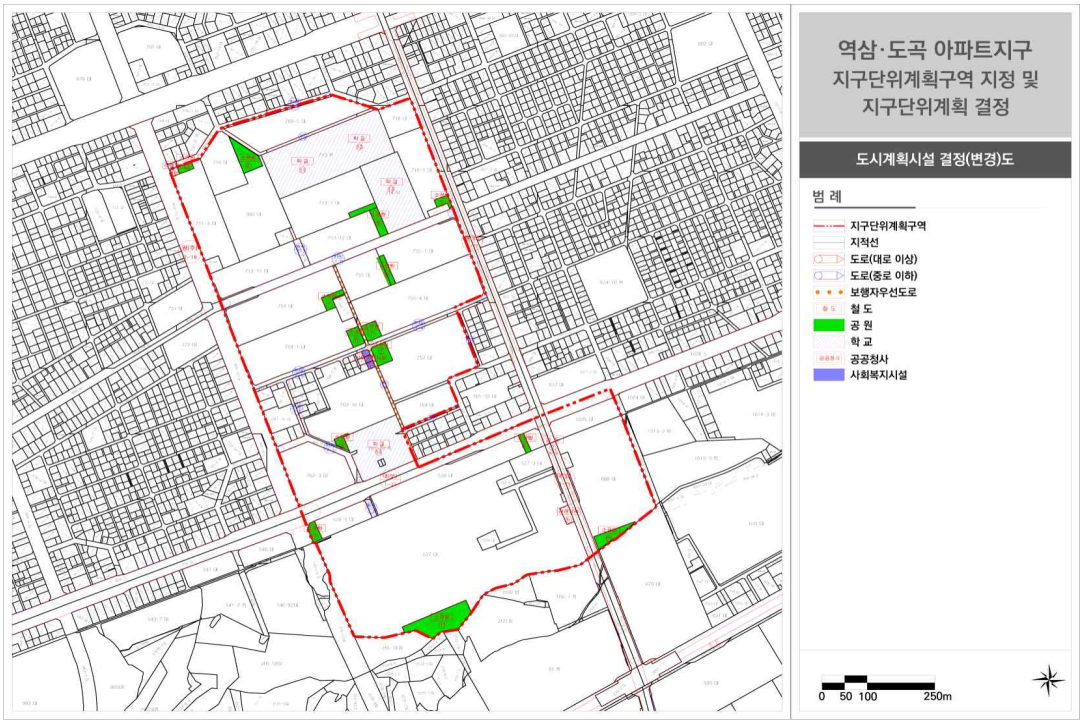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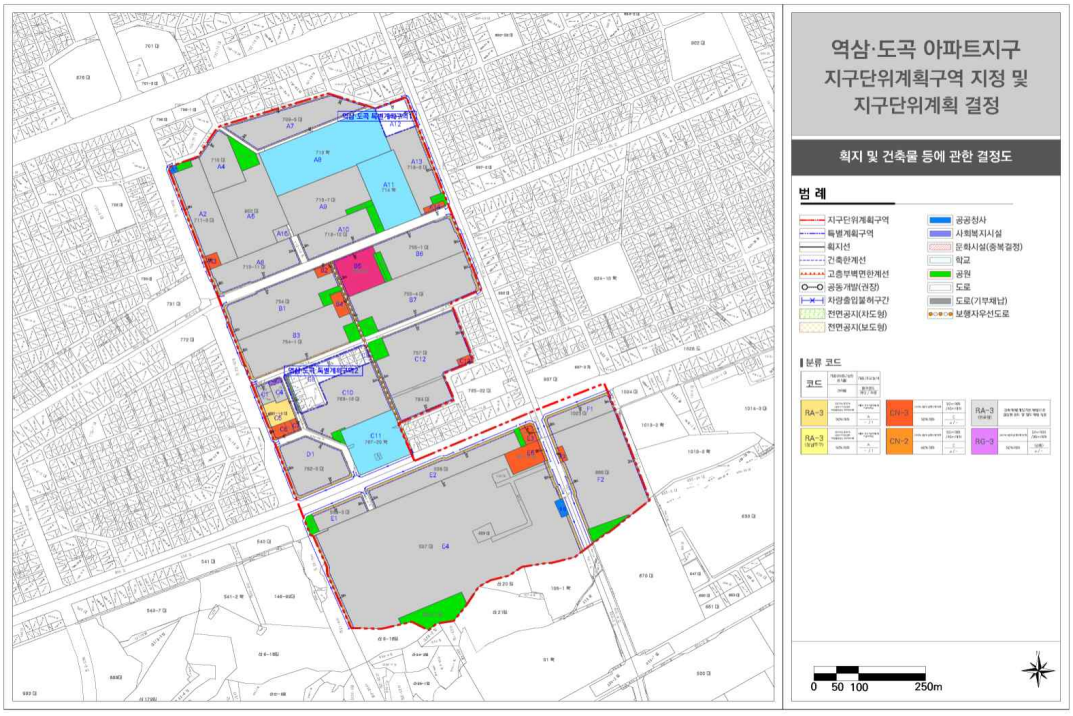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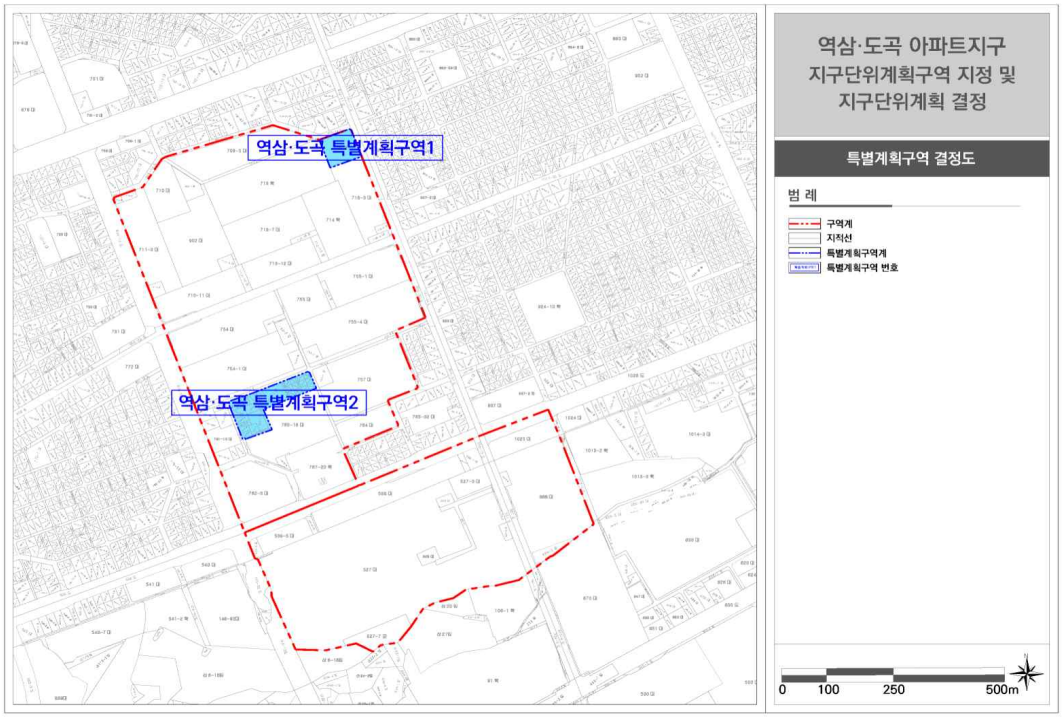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2호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2023.03.15.)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신규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28,315.5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의 효력 등) 및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 정비구역 지정 사유

구분	위 치	내 용	사유
신규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8,315.5	100.0	-
정비기반시설	소계	4,665.0	16.5	-
	도로	4,665.0	16.5	-
	광장	(719.3)	-	◦기존 정비기반시설
획지	소계	23,650.5	83.5	
	획지	23,650.5	83.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28,315.5	-	28,315.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4,110.4	감) 9,445.4	4,665.0	16.5
제3종일반주거지역	14,205.1	증) 9,445.4	23,650.5	83.5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분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획지	제2종(7)	제3종	9,445.4	•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및 입지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제3종	제3종	14,205.1	
공공시설	제2종(7)	제2종(7)	4,665.0	• 공공시설은 현재 용도지역 유지

4.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5.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산출근거(추산액은 정비구역 지정도서 참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구분	항목			금액(만원)
수입	소계		791세대	66,985,604
	분양주택	소유자	433세대	39,822,077
		일반	163세대	15,884,998
	임대주택	의무	101세대	3,323,653
		기부채납	28세대	-
		국민주택규모	62세대	977,498
	보류지		4세대	316,607
	기타시설	판매시설		6,845,794
	매출부가세			-185,022
지출	소계			41,236,618
	공사비			29,416,097
	보상비			3,023,359
	관리비			299,908
	설계비			474,436
	감리비			583,035
	부대경비			5,361,698
	예비비			2,078,085
종전자산 추정액				23,443,199

※추정비례율 : 109.83%[총수입(66,985,604만원) - 총지출(41,236,618만원) / 종전자산(23,443,199만원)]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공사비				
			-10%	-5%	0%	5%	10%
변동률		평균단위단가 (만원/3.3㎡)	697	736	775	814	852
분양가 (일반분양기준)	10%	4,212	146.73	140.23	133.73	127.23	120.73
	5%	4,021	134.78	128.28	121.78	115.28	108.78
	0% (기준)	3,829	122.83	116.33	109.83	103.33	96.83
	-5%	3,638	110.88	104.38	97.88	91.38	84.88
	-10%	3,446	98.93	92.43	85.93	79.43	72.93

6.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4	30-40	주간선 도로	일반 도로	1,340	남대문광장	중림동	1936.12.26. (총고722)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34	중림동 191-3	중림동 694	1996.01.05. (서고제1995-384호)
변경	중로	3	A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34	중림동 191-3	중림동 694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51	중림동 392-8	중림동 726-1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	중로 3-A	• 도로 확폭 - B = 8m → 12m	• 주택단지의 세대 수 및 보행로 확보를 고려하여 도로 확폭
-	소로 3-A	• 도시계획시설 신설 - 도로 B = 6m	• 구역계 서측 행정경계에 따라 마포구 아현동 4필지가 맹지가 되어 도로 계획

나. 도시철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km)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철도	고속철도 (2호선)	시청	잠실동	아현동	48.8	1,572.6	1975.12.20. (건고제203호)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법정		계획 면적(㎡)
			기준	면적(㎡)	
합 계		-	-	-	56,048,30
주민공동시설	소계	-	(세대수 × 2.5㎡) × 1.25㎡	2,471.9 이상	4,229.16
	경로당	획지	500 ~ 1,000세대 미만	225 이상	284.74
	어린이집	획지	500 ~ 1,000세대 미만	330 이상	398.61
	어린이놀이터	획지	300 ~ 1,000세대 미만 : 200㎡ + (세대수 × 1㎡)	991 이상	1,081.18
	작은도서관	획지	500 ~ 1,000세대 미만	158 이상	220.65
	주민운동시설	획지	-	-	1,864.84
	다함께돌봄센터	획지	500세대 이상	66 이상	120.0
	주민휴게시설	획지	-	-	259.14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	-	-	4,744.40
부대시설	소계		-		47,074.74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 :10㎡ + (세대수 - 50) × .0.05㎡	47.1 이상	272.97
	기계·전기실	-	-	-	1,078.40
	지하주차장	-	-	-	45,723.3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및 별표1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8.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신설	중림동 398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28,315.5	획지	23,650.5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136	-	-	-	136

9.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법적 상한	
신설	중림동 398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28,315.5	획지1	23,650.5	중림동 398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250	300	100m이하 (25층)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 총 세대 수 : 791세대 (분양 600세대, 임대 191세대)
- 건립규모

건립규모		전용면적 (㎡)	세대수(세대)			비율(%)
			소계	분양	임대	
85㎡ 이하	60㎡ 이하	39	39	-	39	4.9
		49	44	44	-	5.6
		59	427	305	122	54
	60㎡ 초과 ~ 85㎡ 이하	84	281	251	30	35.5
합계			791	600	191	100.0

※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음

- 정비계획 용적률에 대한 임대 규모별 건설 비율(도시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제외)
  -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세대수의 15.1% (기준 : 15.0%)

건립규모	기준	세대수(비율)
합계	101	101(100.0%)
40㎡이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 - 191 - 62(법적상한 공공임대주택 제외)} 의 30% 이상 : 129 x 30% = 38.70세대	39(38.6%)
40~50㎡이하	-	-
50~60㎡이하	-	62(61.4%)

심의 완화 사항

- 용도지역 상향 :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 (60㎡ 이하 소형주택건설 시 20% 완화)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16%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지능형 건축물 4등급)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정비
계획</th><th>법적
상한</th></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1">• 건축한계선 지정
- 공동주택 사업부지의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table><tr><th>구분</th><th>건축선 지정 내용</th></tr><tr><td rowspan="2">획지</td><td>• 북측(중림로)변 건축한계선 (폭 3~5m) 지정</td></tr><tr><td>• 중림로4길 및 인접대지경계선 변 건축한계선 (폭 3m) 지정</td></tr></table></td></tr>
<tr><td>기타사항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1">공공보행통로
- 도시철도 상부 8m 이상</td></tr>
</table>

나. 용적률 계획

<table>
<tr><th>구분</th><th colspan="8">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 rowspan="2">계
(구역면적)</td><td rowspan="2">획지</td><td colspan="4">신설 정비기반시설</td><td rowspan="2">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 rowspan="2">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소계</td><td>토지
(도로)</td><td>건축물 대지지분</td><td>건축물
환산 부지면적</td></tr>
<tr><td>28,315.5㎡</td><td>23,650.5㎡</td><td>5,706.8㎡</td><td>4,665.0㎡</td><td>741.3㎡</td><td>300.5㎡</td><td>2,980.7㎡</td><td>1,684.3㎡</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8">•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5,706.8㎡ - 2,980.7㎡ - 1,684.3㎡
= 1,041.8㎡</td></tr>
<tr><td>건축물
환산 부지면적</td><td colspan="8">• 환산부지 면적 = 표준건축비(천원/㎡) X 건축물 연면적(㎡) / 부지가액(천원/㎡)
- 공공임대 주택
= 943,182원/㎡ X 3,084.20㎡ / (4,839,527원 X 2)
= 300.5㎡</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8">• 기준용적률 =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 가중평균 + 20%(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
= [(제2종(7층)→ 제3종 면적/획지) X 190% + (제3종 면적/획지) X 210%] + 20%
= [(9,445.4/23,650.5) X 190% + (14,205.1/23,650.5)] X 210% + 20%
= 222.01%</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8">•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16.00%)
= 222.01% + 16.00%(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지능형 건축물)
= 238.01%
※ 향후 건축 심의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 최종 결정함</td></tr>
<tr><td>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4">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1.3x가중치xα토지+0.7α건축물}
= 238.01% X (1+1.3x0.03236+0.7x0.01312)
= 250.21%</td><td colspan="4">※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741.3㎡ / 22,909.23㎡ = 0.03236

※ α건축물=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300.5㎡ / 22,909.23㎡ = 0.01312</td></tr>
<tr><td>법적상한
용적률</td><td colspan="8">• 정비계획용적률 250.00% + 법적상한용적률로 증가하는 용적률 49.73% = 299.73%
[정비계획용적률에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1/2은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td></tr>
</table>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2022.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2016.06.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39호)

※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은 국·공유지 무상양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도시정비법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5항에 따른다.

□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 · 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되도록 건설하고,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1) 임대주택 건설 계획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 주택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산출근거	• 전체 세대 수 : 668세대 {791 – 123(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101세대 – 정비계획 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 수(도시정비법 제54조제4항 제외)의 15%이상 : 668세대 x 15% = 100.20세대 ∴ 101세대 계획 〉 100.20세대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40㎡ 이하로 건설 계획 – {191 – 62(법적상한 공공임대주택 제외)} 의 30% 이상 : 129 x 30% = 38.70세대 – 791세대의 5% 이상 : 791 x 5% = 39.55세대 ∴ 39세대 계획 〉 38.70세대 또는 39.55세대

건립규모	세대 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계	101	15.12	100.0
전용 39㎡	39	5.84	38.61
전용 59㎡	62	9.28	61.39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d colspan="2">구분</td><td colspan="5">내용</td></tr>
<tr><td colspan="2">계획 기준</td><td colspan="5">•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td><td colspan="5">• 299.73%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td><td colspan="5">• 250%</td></tr>
<tr><td rowspan="3">국민주택
규모 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 299.73% - 250.00% = 49.73%</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5">• 49.73% x 0.5 = 24.86%
- 23,650.5㎡ x 0.2486 = 5,880.5㎡</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5">• 5,880.5㎡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4">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 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59.0㎡</td><td>79.4㎡</td><td>32</td><td>2,539.2㎡</td><td rowspan="2">획지</td></tr>
<tr><td>84.0㎡</td><td>113.0㎡</td><td>30</td><td>3,389.4㎡</td></tr>
<tr><td colspan="2">합계</td><td>62</td><td>5,928.6㎡</td><td>≥ 5,880.5㎡</td></tr>
</table>

10.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환경보전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 기능 복원 및 강화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부분포장, 벽면녹화, 틈새투수포장의 증가로 생태면적률 31.2%로 최대한 확보 • 폐기물 수거는 중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재난방지	• 토목공사 완료 즉시 나대지를 안정화시키며, 조경식재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 • 토목공사는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며, 강우시 나출지에 임시비닐막이나 부직포를 덮어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

나.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경관녹지, 공원 및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열섬화 방지 등 실시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녹지면적 Ⅲ, 녹지모양Ⅰ, 내부연결성Ⅰ, 외부연결성Ⅲ	조경 및 녹지계획에 반영하여 주변 녹지와 연계강화 실시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없음	공사시 토양오염 최소화계획 수립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지형변화 최소화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물순환 (수리수질)	생태면적률 30%	○	적용 생태면적률 31.2%	자연지반녹지, 투수포장 등 다양한 녹지를 반영, 생태면적률을 높이도록 설계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토사유출량 변화예상 생활 오수 발생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바람	바람길 확보	○	대상지 재개발 및 정비시 기상(바람)요소에 대한 영향이 예상됨	찬바람 유입을 위한 건물 배치 조정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운영시 난방 및 전력사용에 의한 배출가스, 온실가스 발생	공사시 방진망 설치, 공사장 내 살수계획 운영시 청정연료 사용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실시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설치 운영 운영시 녹지공간조성으로 소음감소
경관	가로녹시율 35%	○	대상지 내 녹시율은 일부 조경녹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없음	공원, 조경녹지 적용
	조망권 확보	○	경관변화 발생	경관 고려한 건축물계획 수립
	Skyline 보전	○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	외부 건축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되도록 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대상지 내 휴식·여가공간 부족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경관녹지, 공원, 획지 등을 조성
보행 친화 공간	보행자전용도로계획수립	-	기존 보행동선 유지 및 보행자를 위한 가로공간조성	휴식과 여가공간과의 연계성 확보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상지 내 자전거 도로 조성되어 있지 않음	대상지 내 배치예정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자전거 보관소 설치 미고려	자전거 보관소 152대 이상 설치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 수		
				기존	계획	증
신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	391	791	400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계획내용	비고
봉래초등학교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 진동, 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 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거리 200m 이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및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라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단지 내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은 간선도로변 또는 주동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등 환경설계를 통한 자연감시 시스템(휴먼 시큐리티)을 구축 • 시선의 사각지대는 CCTV 설치를 통한 자연감시 기능 보완 • 산책로 및 보행가로변에는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 조성

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28,315.5	-	28,315.5	100.0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지역	14,110.4	감) 9,445.4	4,665.0	16.5
제3종일반주거지역	14,205.1	증) 9,445.4	23,650.5	83.5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분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획지	제2종(7)	제3종	9,445.4	•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및 입지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제3종	제3종	14,205.1	
공공시설	제2종(7)	제2종(7)	4,665.0	• 공공시설은 현재 용도지역 유지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신규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28,315.5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 조서

구분	면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28,315.5	-	28,315.5	100.0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지역	14,110.4	감) 9,445.4	4,665.0	16.5
제3종일반주거지역	14,205.1	증) 9,445.4	23,650.5	83.5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분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획지	제2종(7)	제3종	9,445.4	•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및 입지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제3종	제3종	14,205.1	
공공시설	제2종(7)	제2종(7)	4,665.0	• 공공시설은 현재 용도지역 유지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다.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4	30-40	주간선 도로	일반 도로	1,340	남대문광장	중림동	1936.12.26. (총고722)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34	중림동 191-3	중림동 694	1996.01.05. (서고제1995-384호)
변경	중로	3	A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34	중림동 191-3	중림동 694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51	중림동 392-8	중림동 726-1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	중로 3-A	• 도로 확폭 - B = 8m → 12m	• 주택단지의 세대 수 및 보행로 확보를 고려하여 도로 확폭
-	소로 3-A	• 도시계획시설 신설 - 도로 B = 6m	• 구역계 서측 행정경계에 따라 마포구 아현동 4필지가 맹지가 되어 도로 계획

2) 도시철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km)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철도	고속철도 (2호선)	시청	잠실동	아현동	48.8	1,572.6	1975.12.20. (건고제203호)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획지	획지	23,650.5	1	중림동 398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용도
신설	허용용도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신설	획지1	5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 용적률	
신설	획지1	222.01% 이하	238.01% 이하	250.00% 이하	300.00%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299.73% 계획 – 건축 심의 시 법적상한용적률 이하 범위에서 최종 결정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분	인센티브		비고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지능형 건축물 4등급	
신설	10%	6%	총 16% (최대 16.01% 이내)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기여	국민주택규모주택건설	
신설	11.99%	49.73%	총 61.72%

다) 높이 계획

구분	지역	높이 기준	비고
신설	획지1	75m 이하 (25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신설	북측(중림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후퇴
	중림로4길 변 및 인접대지경계선 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2)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신촌로변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로 가로의 1/2이상 대지안의 공지 또는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도로레벨 이상)에 가로활성화 시설을 연도형으로 조성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경관계획(배치 · 형태 포함)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의 배치	공동주택 사업부지	•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을 고려한 대상지 내 적절한 통풍, 채광, 개방감 등을 확보하도록 계획 • 주요 간선도로 변은 탑상형 주동 배치 등 적정 배치를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계획
건물 진출입구	공동주택 사업부지	• 보행약자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단차가 발생하는 지점에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계획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건축물의 외부형태	공동주택 아파트	•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주변의 경관을 고려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입면 다양화
재료 및 색채	공동주택 아파트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

3) 경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조명계획	공동주택 아파트	•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야간조명 설치 계획
스카이라인	공동주택 아파트	• 남측에 위치한 완충녹지 변으로 점차 낮아지는 층수 계획으로 주변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 내용
공공보행통로	획지	• 충정로역 지하철 출입구(#5, #6)와 연계하여 폭 8m 이상의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지정하여 커뮤니티 중심 가로 조성
전면공지	도로변, 인접대지 경계선 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도로와 연접한 보행공간은 공공도로의 재질과 패턴과 유사하게 조성하여 공공의 사용에 이질감이 없도록 함
쌈지형 공지	지하철 출입구 변	• 인근의 공공보행통로 및 지하철 출입구 주변에 배치하여,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는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 보행공간 및 인접한 전면공지 등과 일체형으로 조성 • 최소폭원 4m, 최소면적 25㎡이상의 규모로 조성

※ 구체적인 위치는 관련 도면 참조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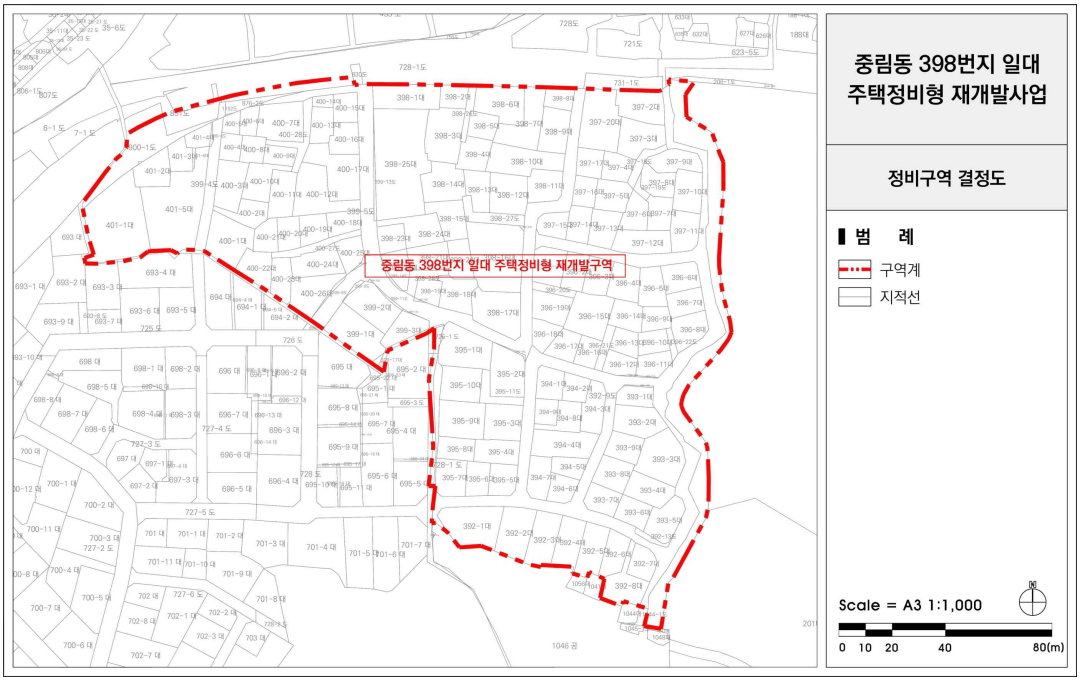
Ⅳ.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89),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72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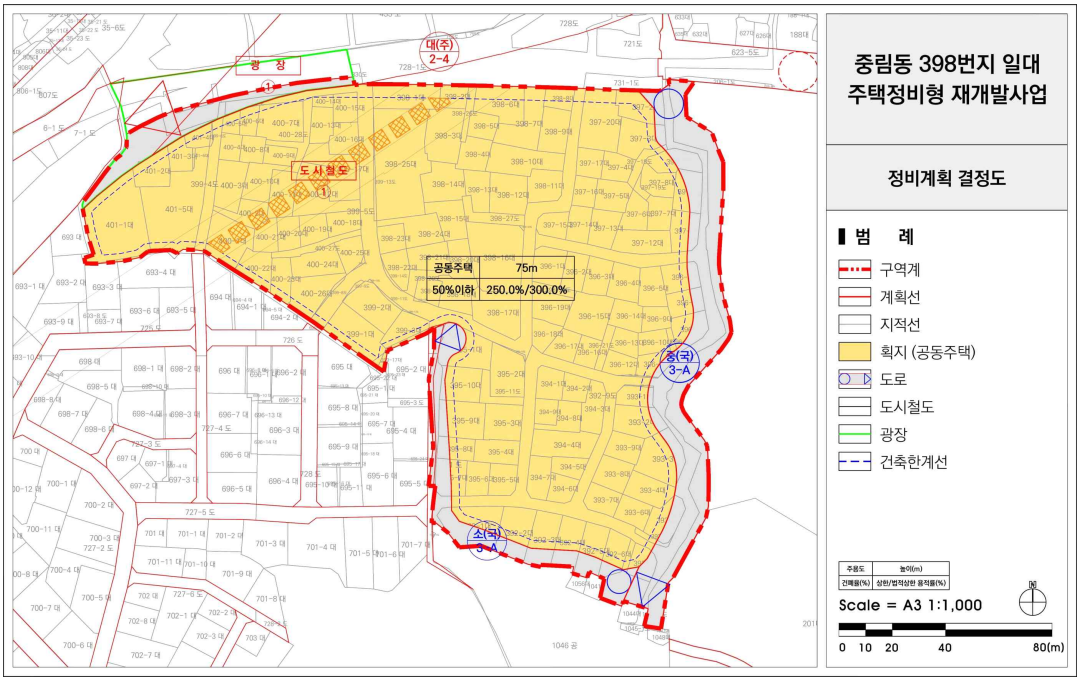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Ⅵ.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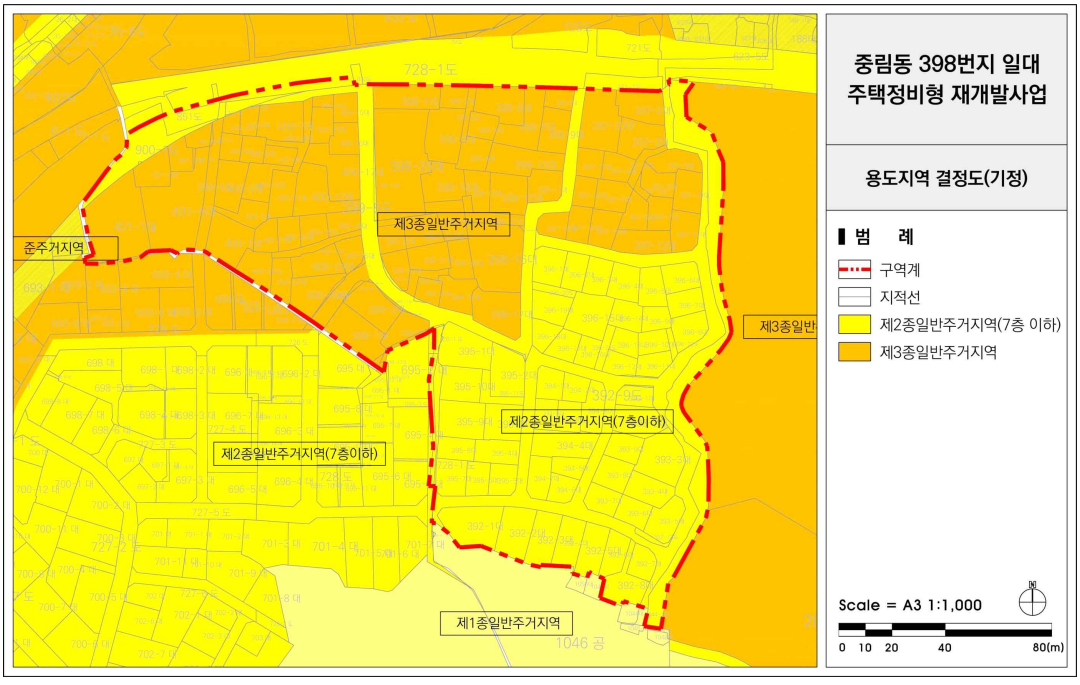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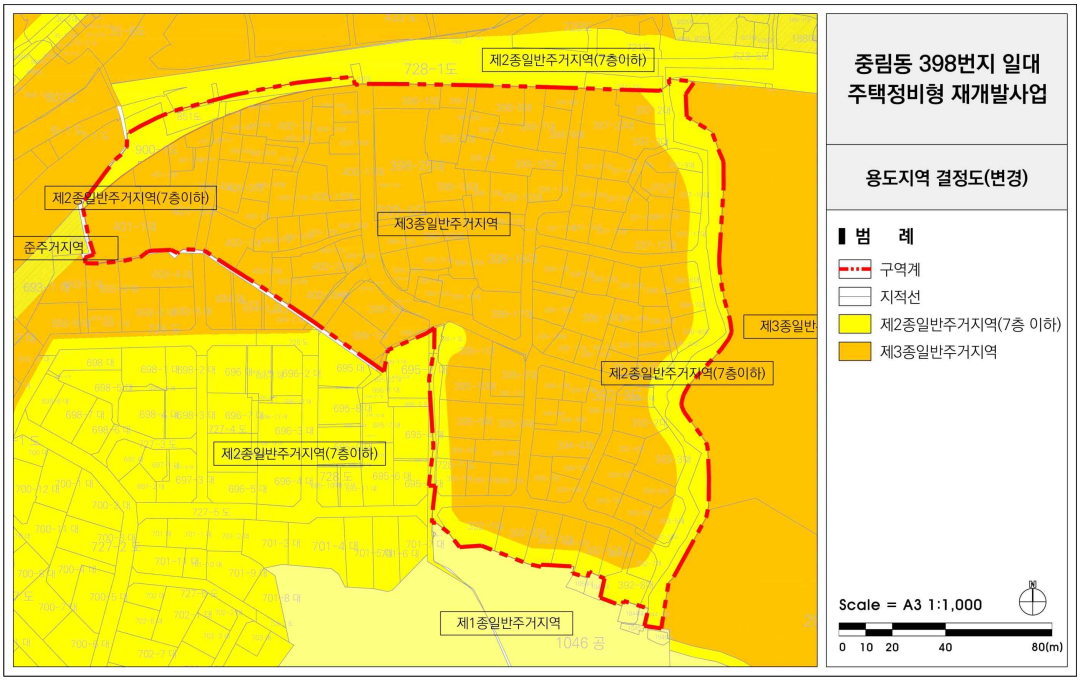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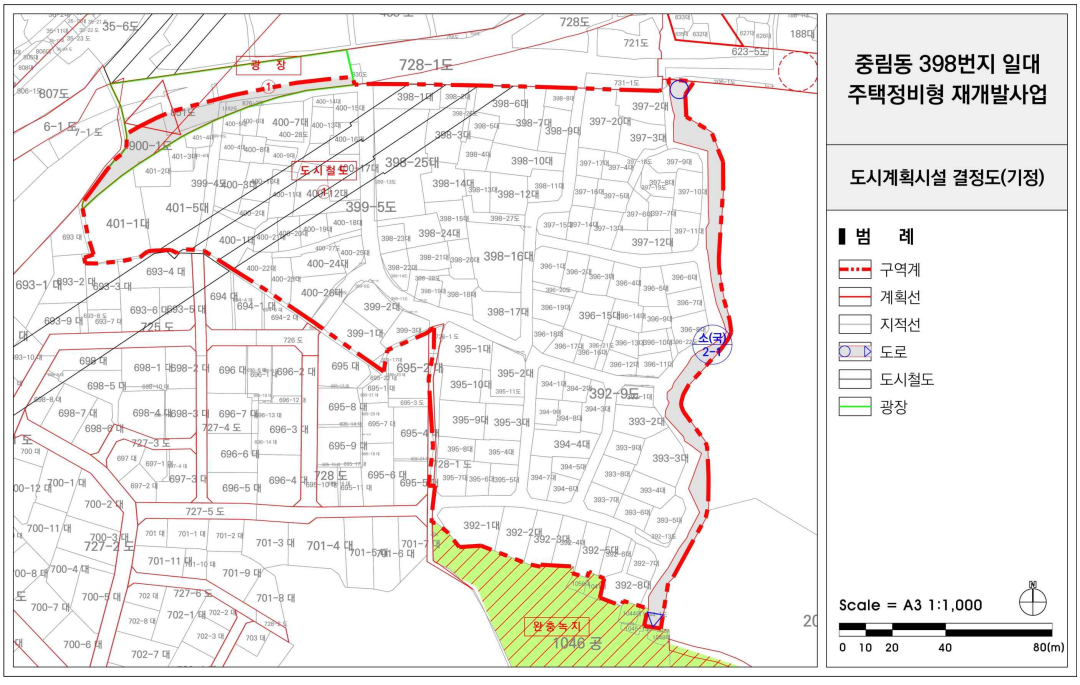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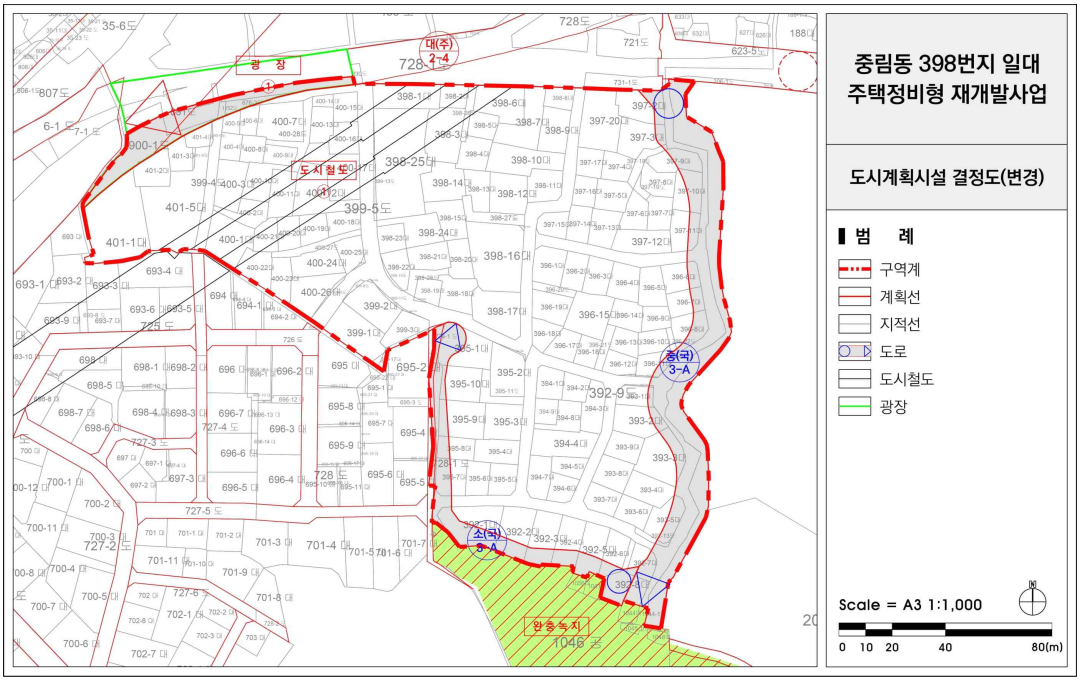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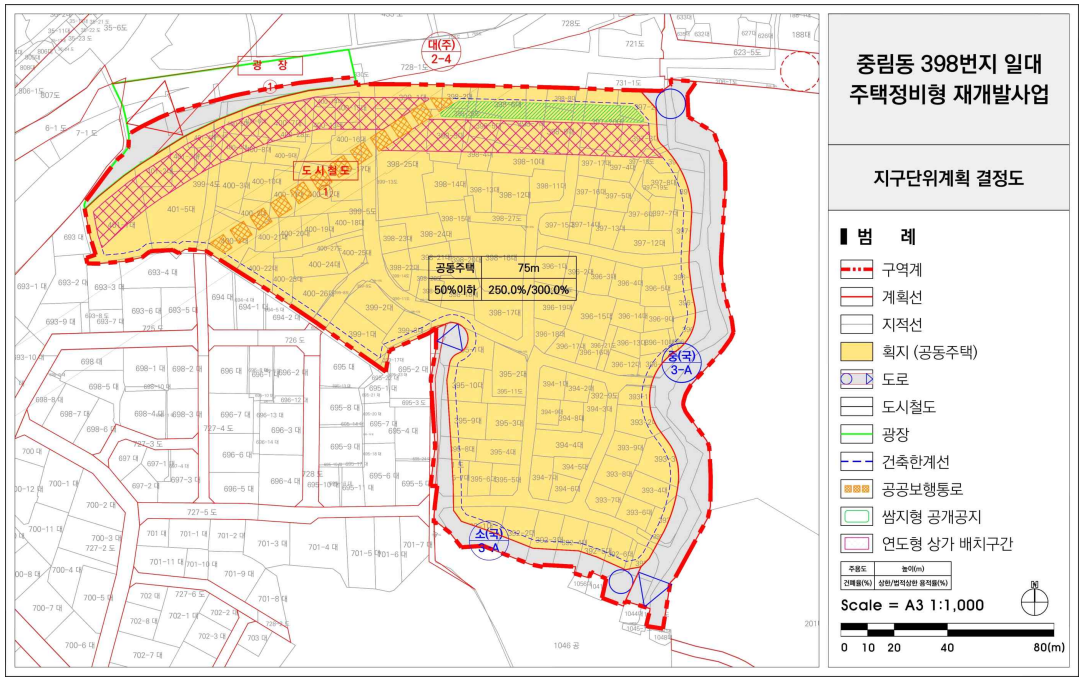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범 례
구역계
계획선
지적선
획지 (공동주택)
도로
도시철도
광장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쌈지형 공개공지
연도형 상가 배치구간
Scale = A3 1:1,000
0 10 20 40 80(m)
공동주택
75m
50%이하
250.0%/300.0%
대(주) 2-4
중(국) 3-A
소(국) 3-A
광 장
도시철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3호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태평로2가 재개발구역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서소문제2구역 재개발구역 지정되어, 건설부고시 제428호(1978.12.29.)로 태평로2가구역 및 서소문 제2구역 변경(통합) 및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64호(2022.2.17.)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2차(2023.08.1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태평로2가, 서소문동 남대문로 4가 일대	91,574.6	-	91,574.6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나. 정비지구 지정 조서(변경)

구분	지구명	위 치	시행면적(㎡)	구 분		비고
				획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중구 서소문동 58-9일대	9,621.1	7,904.9	1,716.2	-
변경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중구 서소문동 58-9일대	9,531.5	7,924.8	1,606.7	-

※ 변경사유 : 택지예정지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9,621.1	감) 89.6	9,531.5	100.0
정비기반시설등	소계	1,716.2	감) 109.5	1,606.7	16.9
	도로	873.0	감) 109.4	763.6	8.1
	공공청사(토지)	843.2	감) 0.1	843.1	8.8
획 지	대지	7,904.9	증) 19.9	7,924.8	83.1

※ 변경사유 : 택지예정지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91,574.6	-	91,574.6	100.0	-
일반상업지역	91,574.6	-	91,574.6	100.0	-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	서대문구 서소문, 순화동, 중구 종로2가 및 3가, 봉래동1가 각 일부지역	101,000	건설부고시 제1973-317호 (1973.8.1.)	-
기정	②	방화지구	-	서대문구 서소문동	13,000	건설부고시 제1973-216호 (1973.6.5.)	

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1) 정비사업비(추산액) 산출근거

구분	항목		금액	산출근거
소요비용추산액	소요비용 계		1,323,876,078천원	
	토지비(종전 토지 등의 금액)		525,408,176천원	정비구역 내 토지 · 건물 종전자산(추산액)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 무상양도 국공유지 제외]
	철거비		1,450,000천원	1식
	설계감리비		10,190,185천원	1식(설계, 감리 포함 추산액)
	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324,400,000천원	1식
		추가공사비	10,000,000천원	기타 공사비
		인입공사비	2,448,835천원	인입공사비
		건축물 기부채납 부담비용	21,930,000천원	기부채납 시설(공공청사) 외 기반시설 공사비용
	분담금 등	각종 제세금	13,474,207천원	1식
		각종 용역비	5,375,000천원	1식
		기타 컨설팅	3,530,300천원	1식
		감평 및 각종 수수료	4,998,171천원	1식
		각종 부담금	16,385,384천원	1식
	부대경비 기타	인허가비	620,000천원	1식
		예비비	15,272,190천원	1식
		기타	26,711,755천원	1식
	금융비용		341,681,875천원	제반사업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 정비사업비는 추산액으로 사업 추진일정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정비사업비 기준)

구분		금액	비고
총 사업비 (종후 평가금액)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1,323,876.078천원	①
	신축건물시설 평가액	699,006,569천원	
대지조성비		23,380,000천원	②
총 종전 토지 및 건물평가액		525,408,176천원	③
총 대지평가차액		150,218,393천원	①-②-③

※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총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 총 사업비)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의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후평가)' 이 나와야 확정할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서 분담금을 추산하기 위하여, 정비사업비(추산액)를 기준으로 각 시설별로 분배한 금액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정액)으로 책정함

3)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

구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계약 ㎡당)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권리가액 상당액)	개별 분담금	비고
업무 및 판매 일괄	계약 100㎡	11,200천원	1,120,000천원	1,290,000천원	-170,000천원	수령

※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업무 및 판매시설 일괄 계약면적 기준 ㎡당 금액

※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는 물건에 비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 상당액이 높을 경우에는 개별 분담금인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사업시행자 지급)하게 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사업시행자 징수)하는 것임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도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4	35~40	주간선도로	430(79)	태평로2가 340-6	서소문동 58-26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제428호(1978.12.29.)	-
기정	중로	1	201	20	집산도로	232(5)	서소문동 58-46	순화동 84-4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380호(1981.10.21.)	-
기정	중로	2	232	15	집산도로	345(106)	서소문동 58-26	봉래동1가 25-4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380호(1981.10.21.)	-
기정	소로	1	가	10	집산도로	43	서소문동 120-20	서소문동 72-4	일반도로	-	-	-

※ ( )는 금회 사업 대상지 내 연장임

2)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서소문동 122일대	843.2	감) 0.1	843.1	서울시고시 2020-233호 (`20.6.4.)	-

※ 변경사유 : 택지예정지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1) 건축물(공공청사)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변경없음)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60 이하	800 이하	90 이하	-

※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

※ 추후 건축 인허가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음

마. 정비기반시설등의 설치(부담) 계획(변경)

1) 정비기반시설등 부담계획(변경)

구분	사업지구	시행지구 면적(㎡)	대지 면적(㎡)	정비기반 시설면적(㎡)	기반 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순부담면적(㎡)			순부담률(%)			비고
						기반시설(토지) 면적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합계	기반시설(토지) 부담률	건축물 기부채납 부담률	합계	
기정	11,12	9,621.1	7,904.9	1,716.2	618.2	1,098.0	421.2	1,519.2	12.2	4.6	16.8	-
변경	11,12	9,531.5	7,924.8	1,606.7	618.1	988.6	421.2	1,409.8	11.1	4.7	15.8	-

※ 기존 공공용지 618.1㎡는 사업자에게 무상양도, 신설 공공청사(토지 및 건축물), 도로(토지)는 관리청 (중구)에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 서소문구역 평균 순부담률 13.78%

※ 변경사유 : 택지예정지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2) 정비기반시설등 설치(확보) 계획(변경)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구 분	위 치		지목	기반시설 부담면적(㎡)	비고
제11,12지구	소 계			1,606.7	-
	서소문동	122	차	615.0	-
		122-2	잡	1.5	-
		122-3	잡	1.6	-
		120-51	대	225.0	-
		123-7	잡		
		2주2)	도	479.5	· 택지예정지측량 결과 성과도의 가지번으로 표기
		2-1	도	253.0	
		2-2	도	25.7	
		2-3	도	5.4	

※ 변경사유 : 택지예정지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2)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사업시행자에 무상양도)

구 분	위 치		지목	면적(㎡)	비고
제11,12지구	소 계			618.1	
	서소문동	122	차	615.0	중구
		122-2	잡	1.5	중구
		122-3	잡	1.6	중구

※ 측량성과도 면적을 반영

바.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없음)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9,531.5	획지	7,924.8	서소문동 58-9번지 일원	4	-	-	4	-	-

2) 건축시설계획(변경)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h rowspan="2">비 고</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기정</td><td>서소문구역
제11,12
지구</td><td>9,621.1</td><td>11,12
지구</td><td>7,904.9</td><td>서소문동
58-9번
지</td><td>업무</td><td>60이하
(저층부70
이하)</td><td>600/800/9
99 이하</td><td>90m
이하</td><td>-</td></tr>
<tr><td>변경</td><td>서소문구역
제11,12
지구</td><td>9,531.5</td><td>11,12
지구</td><td>7,924.8</td><td>서소문동
58-9번
지</td><td>업무</td><td>50이하</td><td>600/800/1,
200
이하</td><td>176m
이하</td><td>-</td></tr>
<tr><td>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0">• 용적률 : ① + ② + ③ = 1,200.49% → 1,200%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변경없음) : 600%
② 허용용적률(변경) : 200%
- 기정
<table>
<tr><th colspan="2">목 적</th><th>인센티브 완화요건</th><th>산정방식</th><th>완화량</th></tr>
<tr><td rowspan="8">11,12</td><td rowspan="3">친환경 개발</td><td>녹색건축물 인증(그린 1등급)</td><td rowspan="3">정량부여</td><td rowspan="3">100%</td></tr>
<tr><td>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240kWh/㎡ · y이하)</td></tr>
<tr><td>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11%이상)</td></tr>
<tr><td rowspan="2">보행가로
활성화</td><td>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시</td><td>정량부여</td><td>30%</td></tr>
<tr><td>공공보행통로 도입 시</td><td>정률부여</td><td>30%</td></tr>
<tr><td>도시경제
활성화</td><td>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 시
(전용면적 900㎡ 이상 확보)</td><td>정률부여</td><td>17.46%</td></tr>
<tr><td>안전방재</td><td>방재관련시설 설치 시</td><td>정량부여</td><td>30%</td></tr>
<tr><td colspan="3">합 계</td><td colspan="2">200% 적용</td></tr>
</table>
- 변경
<table>
<tr><th colspan="2">목 적</th><th>인센티브 완화요건</th><th>산정방식</th><th>완화량</th></tr>
<tr><td rowspan="5">11,12</td><td>녹지생태공간</td><td>개방형녹지 의무기준 30% 초과 설치 시</td><td>정률부여</td><td>100%</td></tr>
<tr><td rowspan="2">친환경개발</td><td>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3개 항목 기준 초과 시</td><td>정량부여</td><td>30%</td></tr>
<tr><td>전기차충전소 법적의무사항 1/2 이상 초과 설치 시</td><td>정량부여</td><td>20%</td></tr>
<tr><td>보행가로활성화</td><td>공공보행통로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td><td>정률부여</td><td>30%</td></tr>
<tr><td>안전방재</td><td>방재관련시설 설치 시</td><td>정량부여</td><td>20%</td></tr>
<tr><td colspan="3">합 계</td><td colspan="2">200% 적용</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h rowspan="2">비 고</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td><td colspan="8">③ 상한용적률(변경) : 400%
- 기정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인센티브 산식</th><th>적용내용</th><th>완화량</th></tr>
<tr><td rowspan="2">11,12</td><td>토지(도로, 공공청사)</td><td>허용용적률×1.3×α
(α=부담면적/대지면적)</td><td>800%×1.3×0.1389
(α=1,098.0/7,904.9)</td><td>144.46%</td></tr>
<tr><td>건축물
(공공청사)</td><td>허용용적률×1.3×α
(α=부담면적/대지면적)</td><td>800%×1.3×0.0533
(α=421.2/7,904.9)</td><td>55.43%</td></tr>
<tr><td colspan="3">합 계</td><td colspan="2">199% 적용</td></tr>
</table>
- 변경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인센티브 산식</th><th>적용내용</th><th>완화량</th></tr>
<tr><td rowspan="2">11,12</td><td>토지(도로, 공공청사)</td><td>허용용적률×{1+(1.3×가중치
×α토지)
+(1.2×α건축물)}
(α=부담면적/대지면적)</td><td>800%×{1+(1.3×0.1389)
+(1.2×0.0532)}
(α토지=988.6/7,924.8)
(α건축물=421.2/7,924.8)</td><td>180.76%</td></tr>
<tr><td>공개공지 초과</td><td>허용용적률×(의무면적
초과/대지면적)</td><td>800%×2,176.62/7,924.8</td><td>219.73%</td></tr>
<tr><td colspan="3">합 계</td><td colspan="2">400% 적용</td></tr>
</table></td><td></td></tr>
<tr><td>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td><td colspan="8">• 최고높이계획 : ① + ② = 176.54m → 176m 이하 적용
① 개방형녹지 의무기준(30%) 초과확보에 따른 높이
= [적정건폐율(50%) × (기준높이(90m) + 20m)] ÷ (80% - 개방형녹지율(46.50%)) = 164.18m
②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높이 완화
= 기준높이(90m) × (의무면적 초과하는 공개공지(2,176.62㎡) ÷ 2) ÷ 대지면적(7,924.8㎡)
= 12.36m</td><td></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8">- 기정
• 건축한계선 : 서소문로변 · 통일로2길변 3m, 세종대로7길변 10m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서소문로변 3층 초과 8m
• 고층배치 금지구간 : 10지구, 11-1지구 경계부 고층배치금지 구간 설정
- 폭원 10m 지정, 높이 30m 이하 건축 가능
- 변경
• 건축한계선 : 서소문로변 · 통일로2길변 3m, 세종대로7길변 10m
• 고층배치 금지구간 : 10지구, 11-1지구 경계부 고층배치금지 구간 설정
- 폭원 10m 지정, 높이 30m 이하 건축 가능</td><td></td></tr>
<tr><td>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td><td colspan="8">• 지정용도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상업시설(의류,잡화,서적,전시시설,소매점 등)]</td><td></td></tr>
<tr><td rowspan="2">기타사항에 관한 계획</td><td>전면공지</td><td colspan="8">•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td><td></td></tr>
<tr><td>공공보행통로</td><td colspan="8">• 인접 지역과의 보행 연속성 및 기존 골목가로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 중심지 24시간 개방된 공공보행통로 확보
- 기정</td><td></td></tr>
</table>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동서방향 : 최소 폭원 6m 이상, 높이 6.5m 이상 계획 남북방향 : 최소 폭원 4m 이상(진입부는 개방감 확보를 위해 최소 폭원 6m 이상), 높이 6.5m 이상 계획 – 변경 동서방향 : 최소 폭원 6m 이상, 높이 6.5m 이상 계획 남북방향 : 최소 폭원 4m 이상(진입부는 개방감 확보를 위해 최소 폭원 6m 이상), 높이 6.5m 이상 계획 (일부구간 조정: 연장 84m → 45m)					
	공개공지				•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성 증진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간선가로변(서소문로, 세종대로7길) 공개공지 지정					
	개방형 녹지				• 지구 남서측 : 서-서1.2구역 제1지구의 개방형녹지를 연계하여 녹지 지정 • 지구 북동측 : 서소문구역 제10지구의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녹지 지정 ※ 면적 산정시 개방형녹지 심의기준 2-2에 따라 실효성 없는 면적(공공보행통로 등) 제외 ※ 개방형녹지는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심의기준'에 따르며 상세계획은 '녹지생태도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조성할 것					

※ 개방형녹지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에 녹지의 형상 조정 가능

사.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경관에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 • 주요 도로변에서의 조망분석으로 주변 시가지 및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유도	–
환경보전	• 절토량과 성토량의 적절한 배분으로 지형변동 및 토량 이동을 최소화 • 투수성 포장면적 비율을 높여 우수부하 저감	–
재난방지	• 기상이변에 의한 홍수 등을 대비한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 설치 • 구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대상지 북측 일부가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로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에 해당되나, 도로(대1-4)에 의해 이격(폭원 35~40m)되어 건축물에 따른 일조 등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교육영향평가 등을 통해 교육환경 보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자. 세입자 주거대책(해당없음)

차.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
-기정: 기준년도 2021년, 목표년도 2025년
-변경: 기준년도 2023년, 목표연도 2027년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지구명	위 치	시행면적(㎡)	구 분		비고
				획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중구 서소문동 58-9일대	9,621.1	7,904.9	1,716.2	-
변경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중구 서소문동 58-9일대	9,531.5	7,924.8	1,606.7	-

※ 변경사유 : 택지예정지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 · 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91,574.6	-	91,574.6	100.0	-
일반상업지역	91,574.6	-	91,574.6	100.0	-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	서대문구 서소문, 순화동, 중구 종로2가 및 3가, 봉래동1가 각 일부지역	101,000	건설부고시 제1973-317호 (1973.8.1.)	-
기정	②	방화지구	-	서대문구 서소문동	13,000	건설부고시 제1973-216호 (1973.6.5.)	-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도로)(변경없음)

2)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서소문동 122일대	843.2	감) 0.1	843.1	서울시고시 2020-233호 (2020.6.4.)	-

※ 변경사유 : 택지예정지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1) 건축물(공공청사)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변경없음)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60 이하	800 이하	90 이하	-

※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
※ 추후 건축 인허가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음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지구명	용 도	비 고
기정	허용용도	제11·12지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나. 건축물 건폐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 분	지구명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제11,12지구	• 60%이하(저층부 70%이하)	-
변경	제11·12지구	• 50%이하	-

다. 건축물 용적률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 분	지구명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제11,12지구	• 600%이하 / 800%이하 / 999%이하	-
변경	제11·12지구	• 600%이하 / 800%이하 / 1,200%이하	-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11,12지구)

구 분	인센티브			비 고
신설	녹지생태공간		100%	-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30%	
		전기차충전소 설치	20%	
	공공보행통로		30%	
	방재관련시설		20%	
합계			200% 적용	-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11,12지구)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토지, 건축물	공개공지 초과조성	
신설	토지 988.6㎡, 건축물 421.2㎡(환산면적) (용적률 180.76%)	2,969.1㎡ (용적률 219.73%)	-
합 계		400%	-

라.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 분	지구명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제11, 12지구	• 90m 이하	-
변경	제11, 12지구	• 176m 이하	-

마.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 분	지구명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제11, 12지구	• 건축한계선 : 서소문로변 · 통일로2길변 3m, 세종대로7길변 10m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서소문로변 3층 초과 8m • 고층배치 금지구간 : 10지구, 11-1지구 경계부 고층배치금지 구간 설정 - 폭원 10m 지정, 높이 30m 이하 건축 가능	-
변경	제11, 12지구	• 건축한계선 : 서소문로변 · 통일로2길변 3m, 세종대로7길변 10m • 고층배치 금지구간 : 10지구, 11-1지구 경계부 고층배치금지 구간 설정 - 폭원 10m 지정, 높이 30m 이하 건축 가능	-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 분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 대지 내 공지 : 간선가로변(서소문로, 세종대로7길) 공개 공지 및 대지 내 조경 배치 • 공공보행통로 : 동서방향 6m 이상, 높이 6.5m 이상 남북방향 4m 이상, 높이 6.5m 이상	-
변경	• 대지 내 공지 : 간선가로변(서소문로, 세종대로7길) 공개 공지 및 대지 내 조경 배치 • 공공보행통로 : 동서방향 6m 이상, 높이 6.5m 이상 남북방향 4m 이상, 높이 6.5m 이상 (일부 구간 조정 84m → 45m 감) 39m)	-

2) 개방형녹지에 관한 결정 조서(신설)

구 분	적용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 고
개방형녹지	지구 남서측 지구 북동측	3,684.9㎡	• 개방형녹지 - 조성계획 : 지구 남서측, 북동측 녹지 조성 - 유지관리 : 관리주체는 개방형녹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에 적합하게 운영·관리)	-

※ 개방형녹지 면적 산정 시 개방형녹지 심의기준 2-2에 따라 실효성 없는 면적(공공보행통로 등) 제외

※ 개방형녹지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 하에 녹지의 형상은 조정 가능

Ⅲ. 2023년 제12차(`23.8.16.)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 분	심의결과	의견사항	비고
제1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 별도 조건사항 없음	-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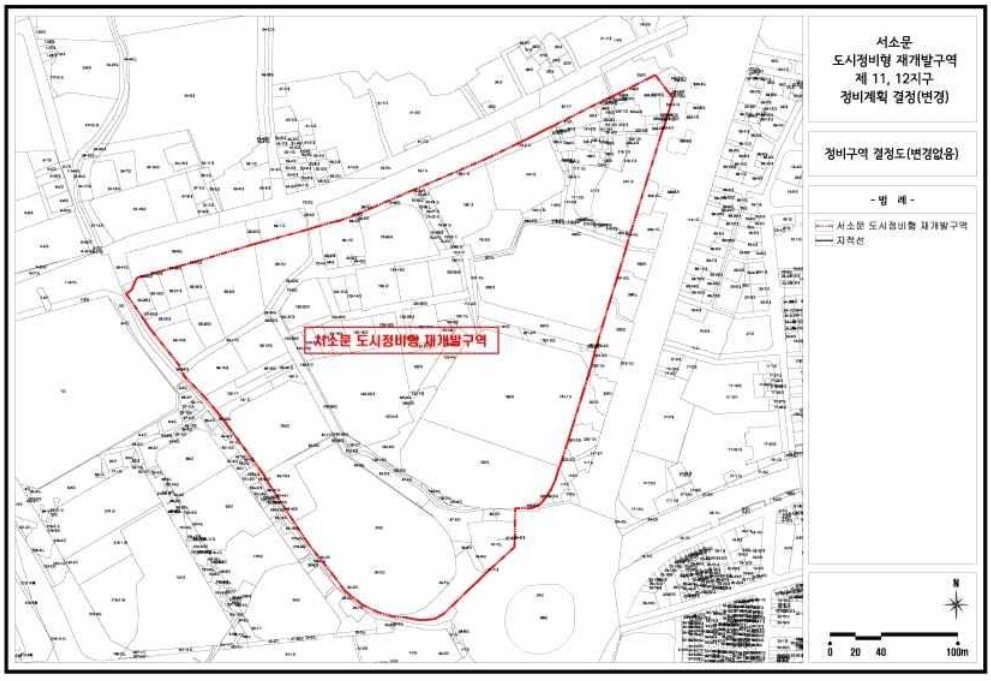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Ⅴ.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02-2133-4636) 및 중구청 도심정비과 (☎02-3396-5774)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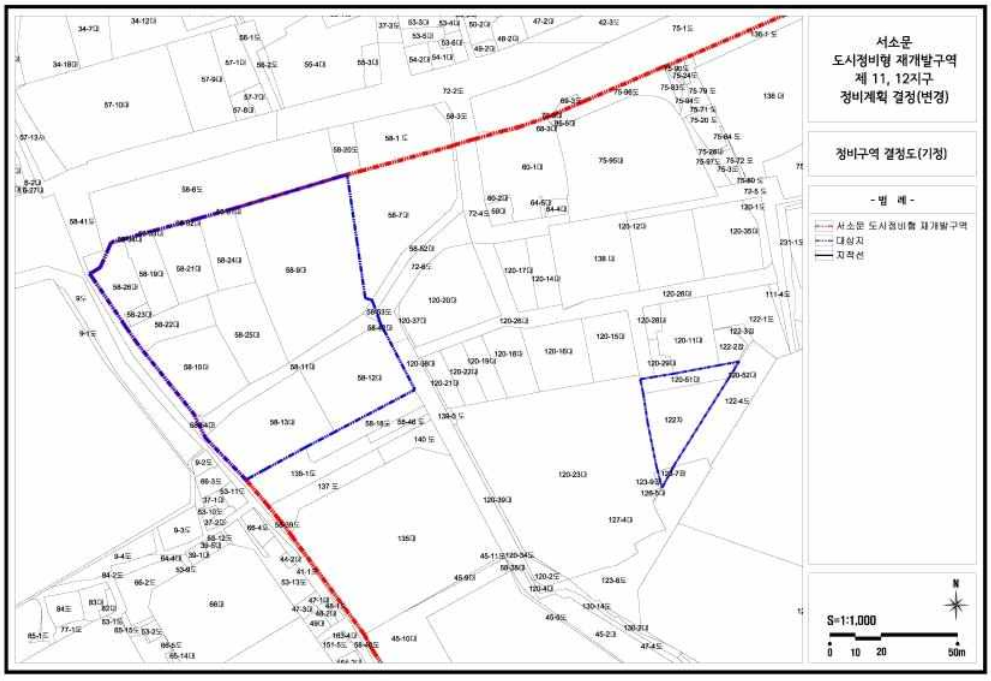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고시정보(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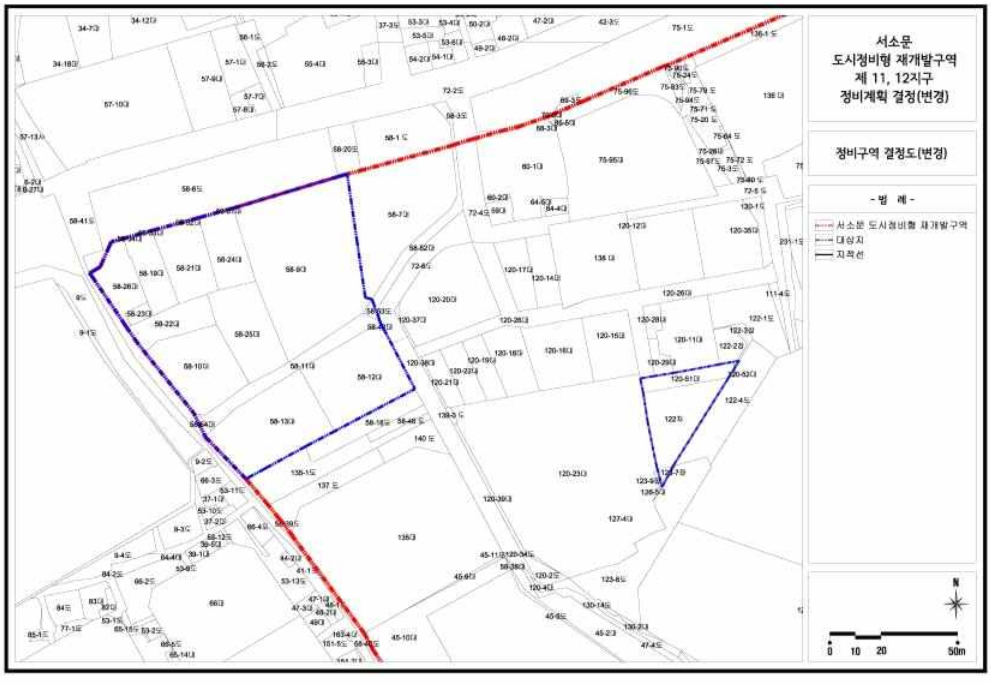


(이 하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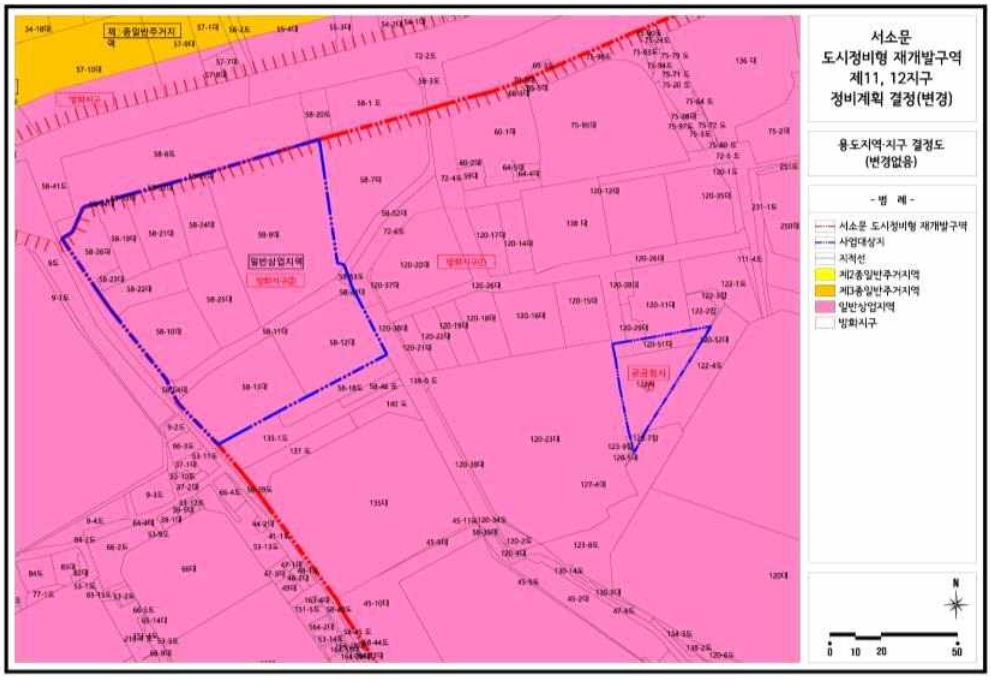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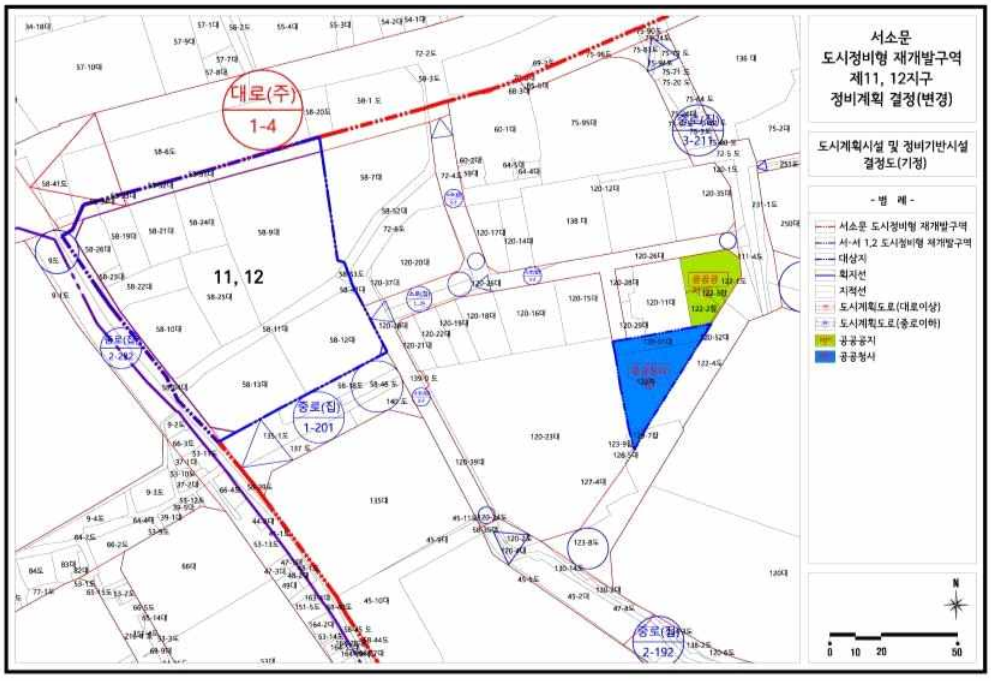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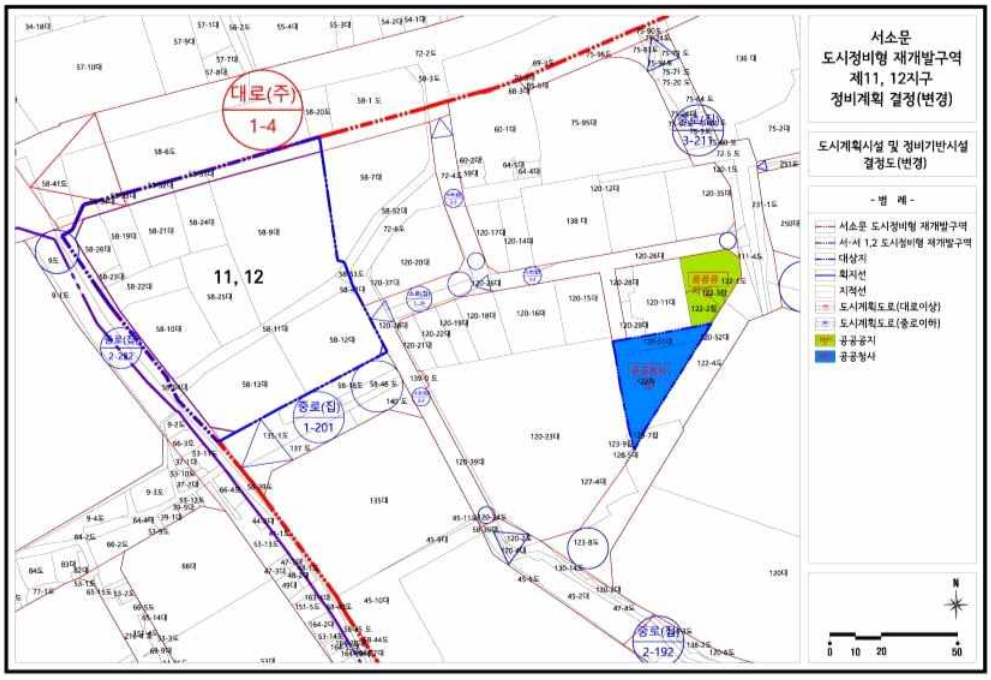


(이 하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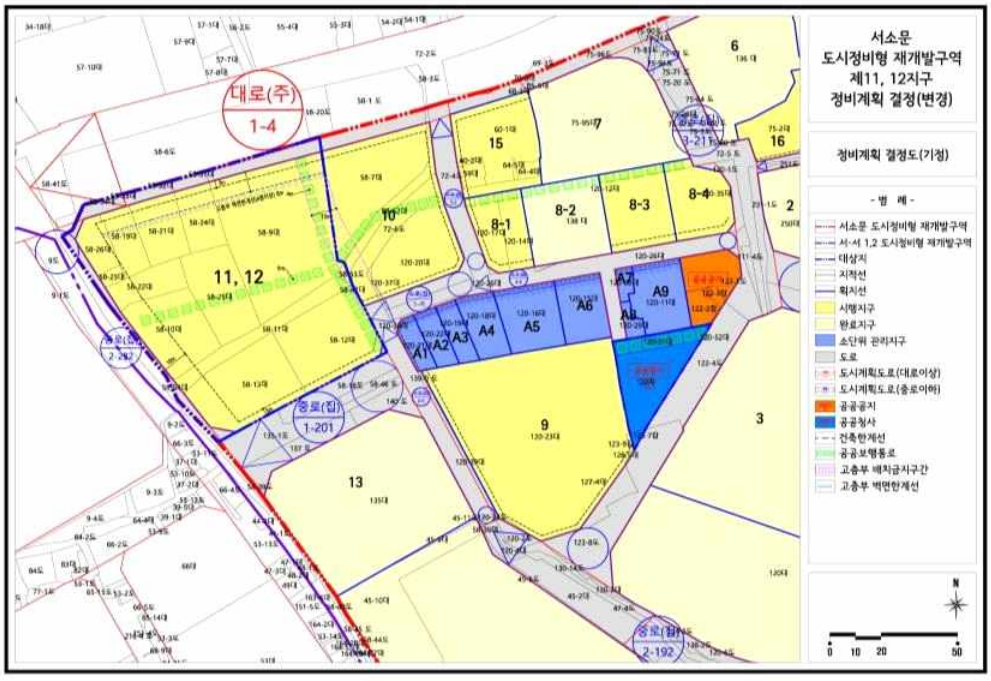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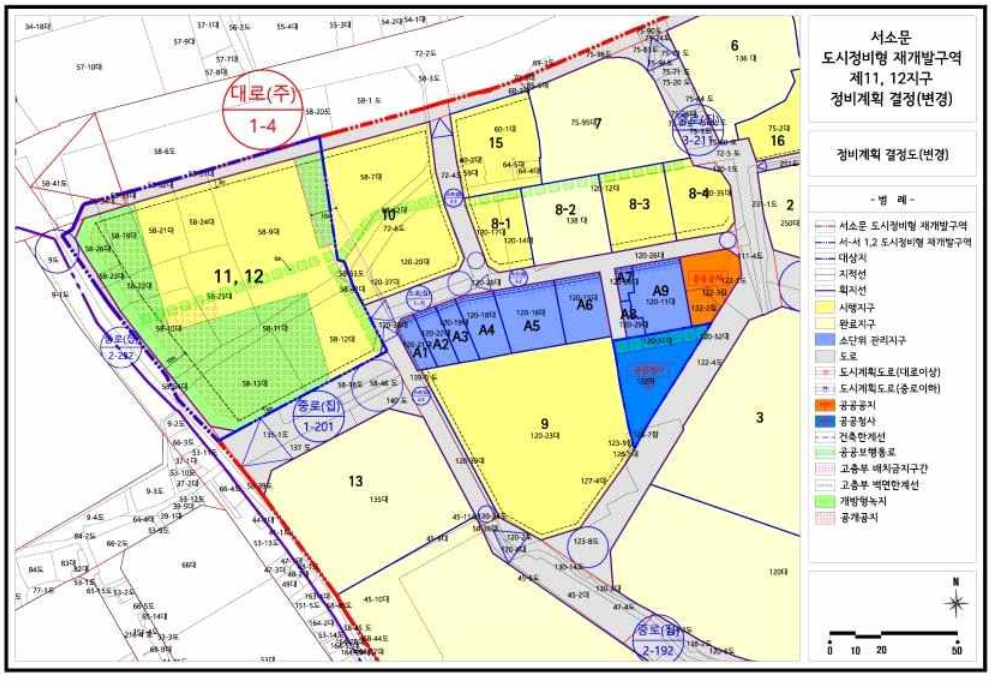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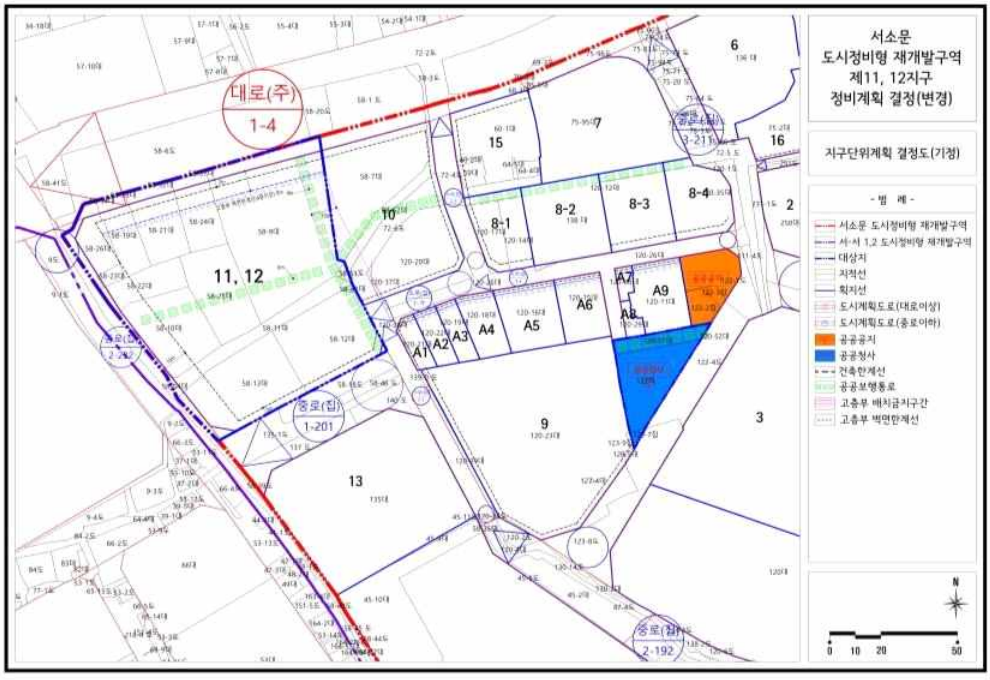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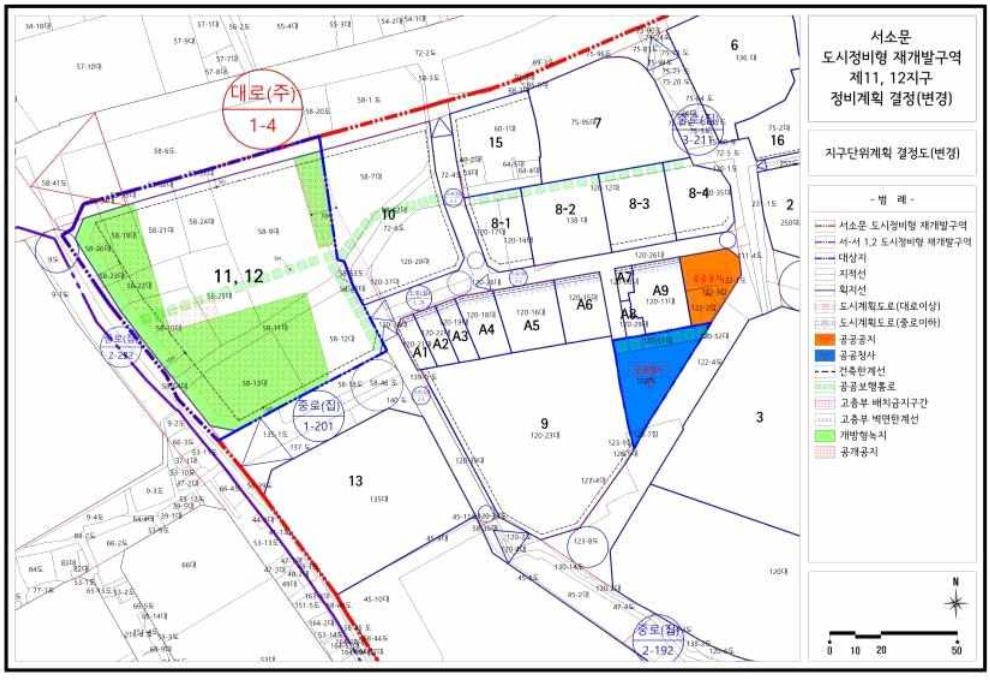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4호

사당5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0호(2017.03.02.)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7호(2021.02.25.)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된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조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18	사당동	303	2.1ha	190%	60%	12층이하	2	단독	-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20,265.0	-	20,265.0	-

3.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20,265.0	-	20,265.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289.3	-	289.3	1.4	-
	도로	289.3	-	289.3	1.4	-
획지		19,975.7	-	19,975.7	98.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0,265.0	-	20,265.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0,265.0	-	20,265.0	100.0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730	사당동 266-7	사당동 303-99	일반도로	-	서고제54호 (73.04.20)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45	사당동 708-543	사당동 303-51	일반도로	-	서고제70호 (17.03.02)	-

2) 주차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입체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용도	연면적 (㎡)	건폐율/용적률	수직적 범위		
기정	①	주차장	주차장	사당동 303-157 번지 일대	공영 주차장	2,024.0	-	지하1층 ~지상1층	서고제 2021-97호 (21.02.25)	주차대수 28대 (동작구청) ※ 마을버스 회차공간 지하1층
변경	①	주차장	주차장	사당동 303-157 번지 일대	공영 주차장	1,664.8	-	지하1층 ~지하2층	-	주차대수 20대 (동작구청) ※ 마을버스 회차공간 지하2층
기정	②	주차장	주차장	사당동 303번지 일대	공영 주차장	3,260.0	-	지하1층	서고제 2021-97호 (21.02.25)	주차대수 79대 (동작구청)
변경	②	주차장	주차장	사당동 303번지 일대	공영 주차장	3,756.6	-	지하1층	-	주차대수 87대 (동작구청)

※ 공영주차장은 공동주택과 복합시설로 설치 계획하며, 세부계획(수직적 범위, 연면적, 출입구 등) 등은 관리청 및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확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①	공영주차장	· 주차장 변경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303-157번지 일대 - 연면적 : 2,024.0㎡(28대) → 1,664.8㎡(20대)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건축계획 등이 변경되어 반영하는 사항임
②	공영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 연면적 : 3,260.00㎡(79대) → 3,756.6㎡(87대)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 변경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소계	획지	2,575.0	증) 1,434.26	4,009.26	-
	경로당		225.0	감) 0.08	225.08	
	어린이놀이터		350.0	증) 357.04	707.04	
	주민운동시설		450.0	-	450.00	
	작은도서관		200.0	증) 6.61	206.61	
	다함께돌봄센터		-	증) 181.15	181.15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카페라운지		-	증) 240.05	240.05	
	주민공동시설		-	증) 503.77	503.77	
	어린이집		500.0	감) 87.57	412.43	
	커뮤니티센터		850.0	증) 233.13	1,083.13	
관리사무소			250.0	증) 72.37	322.37	

※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마.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 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265.0	획지	19,975.7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79	-	-	79	-	-

2) 건축시설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평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기정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265.0	획지	19,975.7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198.2% 이하	210% 이하	37m이하 (평균10층이하)
변경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265.0	획지	19,975.7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3% 미만	198.5% 이하	210% 이하	37m이하 (평균10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기정

- 총 건립 세대수 : 공동주택 507세대 (일반분양 489세대, 소형주택 18세대)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구분(전용면적)		합계	분양주택	소형주택
합계		507(100.0%)	489(100.0%)	18(100.0%)
공동주택	60㎡이하	409(80.7%)	391(80.0%)	18(100.0%)
	60㎡~85㎡이하	98(19.3%)	98(20.0%)	-
	85㎡초과	-	-	-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된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이(m)
(평균층수)</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정비계획</th><th>예정
법적상한</th></tr>
<tr><td></td><td></td><td colspan="8">·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설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주택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td></tr>
<tr><td></td><td>변경</td><td colspan="8">· 총 건립 세대수 : 공동주택 510세대 (일반분양 494세대, 소형주택 16세대)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table>
<tr><th colspan="2">구분(전용면적)</th><th>합계</th><th>분양주택</th><th>소형주택</th></tr>
<tr><td colspan="2">합계</td><td>510(100.0%)</td><td>494(100.0%)</td><td>16(100.0%)</td></tr>
<tr><td rowspan="3">공동주택</td><td>60㎡이하</td><td>393(77.1%)</td><td>377(76.3%)</td><td>16(100.0%)</td></tr>
<tr><td>60㎡~85㎡이하</td><td>117(22.9%)</td><td>117(23.7%)</td><td>-</td></tr>
<tr><td>85㎡초과</td><td>-</td><td>-</td><td>-</td></tr>
</table>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설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주택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td><td>기정</td><td colspan="8">· 획지 내 건축한계선 3m 지정(도면참고)</td></tr>
<tr><td>기타사항</td><td>기정</td><td colspan="8">· 공공보행통로 계획(위치변경)
- 남북간 보행 동선 연결을 위해 공공보행통로 계획 : 4m
- 건축한계선을 통해 확보되는 보행공간 공공보행통로 계획 : 3m</td></tr>
</table>

■ 상한용적률 산정(기정)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신설 정비기반시설 (도로)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세입자 손실보상 토지환산 면적	신설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20,265.0㎡	19,975.7㎡	289.3㎡	1,889.7㎡	471.0㎡	72.8㎡	1,345.9㎡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 세입자 손실보상 토지환산면적 - 신설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289.3㎡ + 1,889.7㎡ + 471.0㎡ - 72.8㎡ - 1,345.9㎡ = 1,231.3㎡ ▪ 순부담률 : 구역면적대비 6.1% (기준 : 4.9%이상)						
기준 및 허용 용적률	▪ 190%						
상한 용적률 산정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건축물) = 190% × (1 + 1.3 × 1 × 0 + 0.7 × 0.0616) = 198.2% 이하						
α(토지)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289.3㎡ - 289.3㎡) / (20,265.0㎡ - 289.3㎡) = 0						
α(건축물)	▪ α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제공 면적 비율 = (1,889.7㎡ + 471.0㎡ - 1,129.4㎡) ÷ (20,265.0㎡ - 289.3㎡) = 0.0616						

※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주거사업과-4568. 2019.04.25.)을 반영하여, 향후 세입자대책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세입자 손실보상 토지환산면적 재조정

■ 상한용적률 산정(변경)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신설 정비기반시설 (도로)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세입자 손실보상 토지환산 면적	신설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20,265.0㎡	19,975.7㎡	289.3㎡	1,936.1㎡	471.0㎡	72.8㎡	1,345.9㎡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 세입자 손실보상 토지환산면적 - 신설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289.3㎡ + 1,936.1㎡ + 471.0㎡ - 72.8㎡ - 1,345.9㎡ = 1,277.7㎡ ▪ 순부담률 : 구역면적대비 6.3% (기준 : 4.9%이상)						
기준 및 허용 용적률	▪ 190%						
상한 용적률 산정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건축물) = 190% × (1 + 1.3 × 1 × 0 + 0.7 × 0.0639) = 198.5% 이하						

구분	산정내용
α(토지)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289.3㎡ - 289.3㎡) / (20,265.0㎡ - 289.3㎡) = 0
α(건축물)	▪ α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제공 면적 비율 = (1,936.1㎡ + 471.0㎡ - 1,129.4㎡) ÷ (20,265.0㎡ - 289.3㎡) = 0.0639

※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주거사업과-4568. 2019.04.25.)을 반영하여, 향후 세입자대책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세입자 손실보상 토지환산면적 재조정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적용산식		비고
기정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210.0%	-
		정비계획 용적률	198.2%	-
	증가된 용적률 50%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X 50% = 5.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연면적 환산	· 증가된 용적률의 50% X 대지면적 = 5.9% X 19,975.7㎡ = 1,178.56㎡		소형주택 확보기준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공급면적) : 1,200.78㎡ · 세대수 : 18세대 · 전용 44.99㎡(공급 66.71㎡) : 18세대		기준 이상 확보
변경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법적상한 용적률	210.0%	-
		정비계획 용적률	198.5%	-
	증가된 용적률 50%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X 50% = 5.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연면적 환산	· 증가된 용적률의 50% X 대지면적 = 5.8% X 19,975.7㎡ = 1,158.6㎡		소형주택 확보기준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공급면적) : 1,168.8㎡ · 세대수 : 16세대		기준 이상 확보

바.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 변경

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따라 영향 저감방안 강구 •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녹지 변동은 없으며, 사업시행 시 단지 내 녹화를 통해 최대한의 녹지 공간 확보	-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경계부의 녹화옹벽설치, 우수합류지점을 최대한 확보하는 계획 수립	-

2) 환경성 검토결과 : 변경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1.생태면적율	30%	○	기정	· 기존 토양포장상태 100% · 생태면적율 32.92%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틈새투수포장 등 적용
				변경	· 기존 토양포장상태 100% · 생태면적율 30.02%	
	2.녹지네트워크	주변녹지와의 관계	○	· 계획구역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음		대상지 내 조경공간 계획
	3.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 절성토 발생 예상		· 지형변화 최소화 · 절 · 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토량의 외부유출, 내부유입 최소화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 지형변화 최소화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4.비오톱	3등급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 비오톱 평가등급 5등급에서 상향 예상
생활 환경	5.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 건축선 이격 및 동간배치를 통한 일조영향 최소화		· 일조권 확보를 위해 대지경계선과 건축선의 이격거리를 확보 및 법정 인동간격 유지
	6.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저층의 주거지역과 공동주택(중층)이 위치		· 인동간격과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로 바람차단 최소화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7.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가 86점 이상 또는 2등급 획득목표	· 건축심의시 검토후 반영예정
		신재생에너지 사용	x	-	-
	8.경관	Skyline보전	○	· 스카이라인 변화예상	· 건물배치 및 높이설정에 반영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계획
		조망권 확보	○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 정확한 조망점 설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망권 확보
	9.휴식및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 오픈스페이스에 연결하여 휴식여가 공간 조성
	10.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x	· 보행자전용도로 미설치	-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x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자전거보관서 설치검토	공동주택 단지 내 계획예정
추가	11.소음 및 진동		○	· 가설방음판넬을 설치 (공사구간에 따라 필요시)	· 공사장 소음 · 진동 관리지침준수
	12.폐기물		○	· 기존 건축물 철거시 건설폐기물 발생	·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저감대책마련
	13.물순환(수질)		○	· 운영시 오수발생	·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14.대기질		○	· 비산먼지발생에 의한 영향 배기가스발생	· 방진망 설치, 공사장 살수계획 · 조경 녹지공간 조성계획으로 최소화

사. 정비사업시행계획 :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조합	• 현황세대수 : 414세대 • 계획세대수 : 507세대 • 증가세대수 : 93세대	-
변경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조합	• 현황세대수 : 414세대 • 계획세대수 : 510세대 • 증가세대수 : 96세대	-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동측 남성중학교 입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 동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 • 향후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거리 200m이내

자.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 (CPTED)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조경 식재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기회 차단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구성비 (%)	비고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사당5 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20,265.0	-	20,265.0	-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0,265.0	-	20,265.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0,265.0	-	20,265.0	100.0	

※ 용도지구는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730	사당동 266-7	사당동 303-99	일반 도로	-	서고제54호 (73.04.20)	-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45	사당동 708-543	사당동 303-51	일반 도로	-	서고제70호 (17.03.02)	-

※ 연장( ) 구역 내 연장임

2) 주차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입체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용도	연면적 (㎡)	건폐율/용적률	수직적 범위		
기정	①	주차장	주차장	사당동 303-157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2,024.0	-	지하1층~지상1층	서고제 2021-97호 (21.02.25)	주차대수 28대 (동작구청) ※ 마을버스 회차공간 지하1층
변경	①	주차장	주차장	사당동 303-157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1,664.8	-	지하1층~지하2층	-	주차대수 20대 (동작구청) ※ 마을버스 회차공간 지하2층
기정	②	주차장	주차장	사당동 303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3,260.0	-	지하1층	서고제 2021-97호 (21.02.25)	주차대수 79대 (동작구청)
변경	②	주차장	주차장	사당동 303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3,756.6	-	지하1층	-	주차대수 87대 (동작구청)

※ 공영주차장은 공동주택과 복합시설로 설치 계획하며, 세부계획(수직적 범위, 연면적, 출입구 등) 등은 관리청 및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확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공영주차장	· 주차장 변경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303-157번지 일대 - 연면적 : 2,024.0㎡(28대) → 1,664.8㎡(20대)	·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건축계획 등이 변경되어 반영하는 사항임
②	공영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 연면적 : 3,260.00㎡(79대) → 3,756.6㎡(87대)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획지	-	20,265.0.	사당동 303번지 일대	19,975.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지정용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구분		가구	계획내용	비고
기정	허용용도	획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2호의 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허용용도 이외용 도는 불허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건폐율 계획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0%이하	-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3%미만	-

② 용적률 계획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기정	190%이하	190%이하	198.2%이하	210.0%이하	정비계획	허용용적률 190.0% 상한용적률 198.2% 법적상한용적률 210.0%
변경	190%이하	190%이하	198.5%이하	210.0%이하	정비계획	허용용적률 190.0% 상한용적률 198.5% 법적상한용적률 210.0%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기정	8.2%	11.8%	20.0%
변경	8.5%	11.5%	20.0%

③ 높이 계획

구분	지역	높이(평균층수)	비 고
신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7m이하 (평균 13층이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 한계선	북측 남부순환로255바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격
	남측 남부순환로255길	
	동측 남부순환로255다길	
	서측 사당로16길	

라.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 배치계획	-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고려하여 건축계획 수립(공공건축가 선정)

◆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고려한 건축계획-(동작구 건축위원회 재심의 통과_`22.12.21)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기정	전면공지	북측 남부순환로255바길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건축계획에 따라 보도형 전면 공지로 조성 : 3m
		남측 남부순환로255길	
		동측 남부순환로255다길	
		서측 사당로16길	
	공공보행통로 (위치변경)	획지	- 남북간 보행 동선 연결을 위해 공공보행통로 계획 : 4m - 건축한계선을 통해 확보되는 보행공간 공공보행통로 계획 : 3m

나.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1.생태면적율	30%	○	기정	· 기존 토양포장상태 100% · 생태면적율 32.92%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틈새투수포장 등 적용
				변경	· 기존 토양포장상태 100% · 생태면적율 30.02%	
	2.녹지네트워크	주변녹지와의 관계	○	· 계획구역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음		대상지 내 조경공간 계획
	3.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 절성토 발생 예상		· 지형변화 최소화 · 절 · 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토량의 외부유출, 내부유입 최소화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 지형변화 최소화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4.비오톱	3등급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 비오톱 평가등급 5등급에서 상향 예상
생활 환경	5.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 건축선 이격 및 동간배치를 통한 일조영향 최소화		· 일조권 확보를 위해 대지경계선과 건축선의 이격거리를 확보 및 법정 인동간격 유지
	6.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저층의 주거지역과 공동주택(중층)이 위치		· 인동간격과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로 바람차단 최소화
	7.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가 86점 이상 또는 2등급 획득목표		· 건축심의시 검토후 반영예정
		신재생에너지 사용	x	-		-
	8.경관	Skyline보전	○	· 스카이라인 변화예상		· 건물배치 및 높이설정에 반영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계획
		조망권 확보	○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 정확한 조망점 설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망권 확보
	9.휴식및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 오픈스페이스에 연결하여 휴식여가 공간 조성
	10.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x	· 보행자전용도로 미설치		-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x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자전거보관서 설치검토		공동주택 단지 내 계획예정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추가	11.소음 및 진동		○	· 가설방음판넬을 설치 (공사구간에 따라 필요시)	· 공사장 소음 · 진동 관리지침준수
	12.폐기물		○	· 기존 건축물 철거시 건설폐기물 발생	·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저감대책마련
	13.물순환(수질)		○	· 운영시 오수발생	·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14.대기질		○	· 비산먼지발생에 의한 영향 배기가스발생	· 방진망 설치, 공사장 살수계획 · 조경 녹지공간 조성계획으로 최소화

다.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 중 소형주택
기정	합계	507	100.0	18	-	18	3.6	100.0	100.0
	40㎡이하	-	-	-	-	-	-	-	-
	40㎡초과~50㎡이하	187	36.9	18	-	18	3.6	100.0	100.0
	50㎡초과~60㎡이하	222	43.8	-	-	-	-	-	-
	60㎡초과~85㎡이하	98	19.3	-	-	-	-	-	-
	85㎡초과	-	-	-	-	-	-	-	-
변경	합계	510	100.0	16	-	16	3.1	100.0	100.0
	40㎡이하	-	-	-	-	-	-	-	-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 중 소형주택
	40㎡초과~50㎡이하	183	35.9	9	-	9	1.8	56.3	100.0
	50㎡초과~60㎡이하	210	41.2	7	-	7	1.3	43.7	100.0
	60㎡초과~85㎡이하	117	22.9	-	-	-	-	-	-
	85㎡초과	-	-	-	-	-	-	-	-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4.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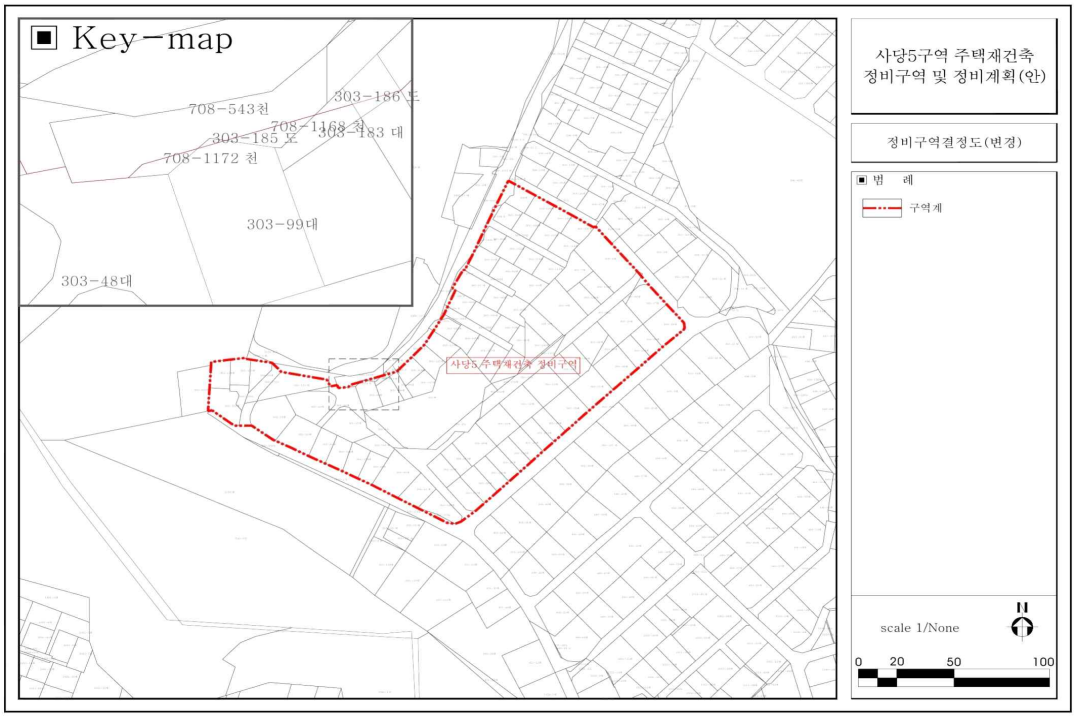
Ⅳ.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수립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14), 동작구청 도시정비2과(☎02-820-9776)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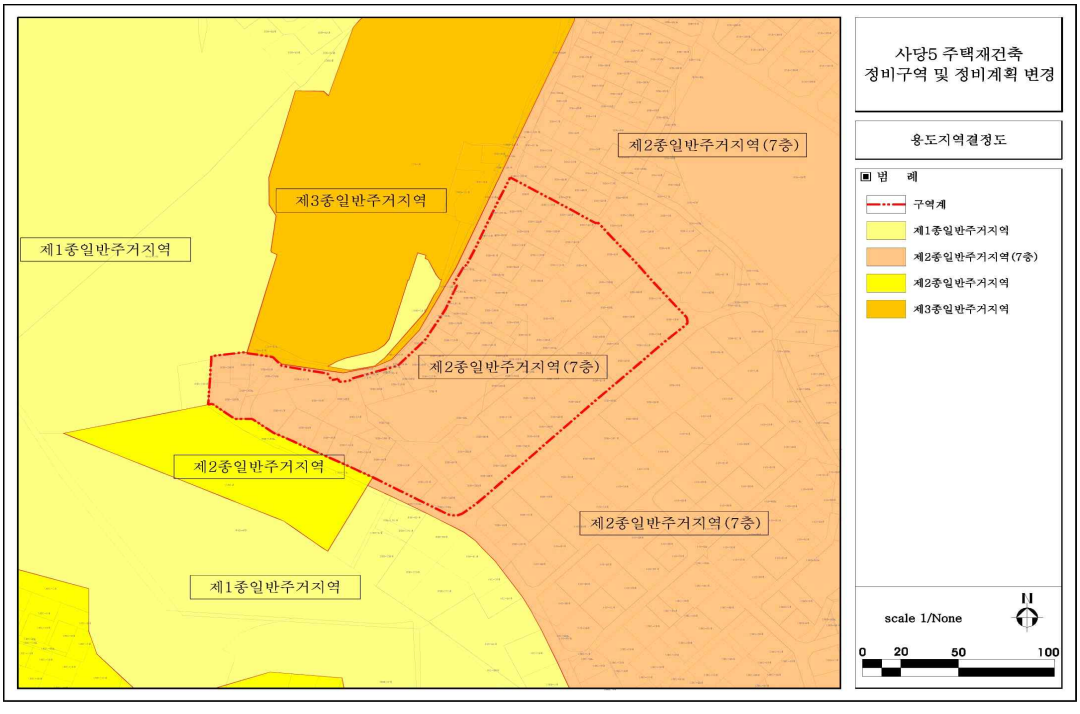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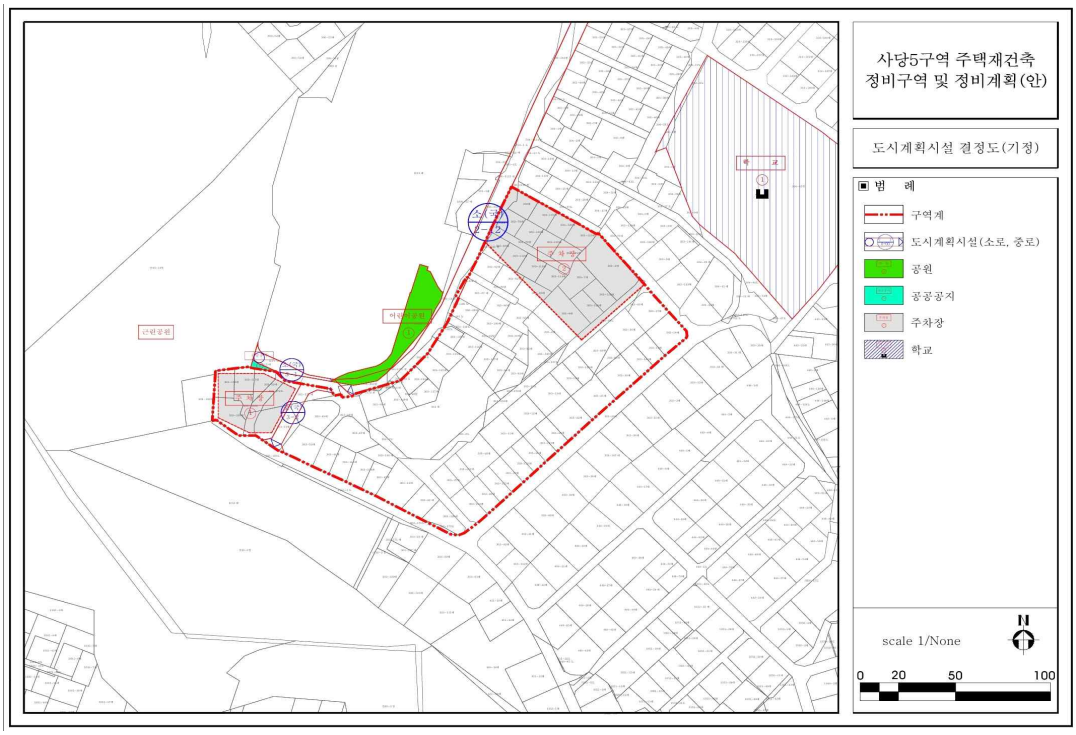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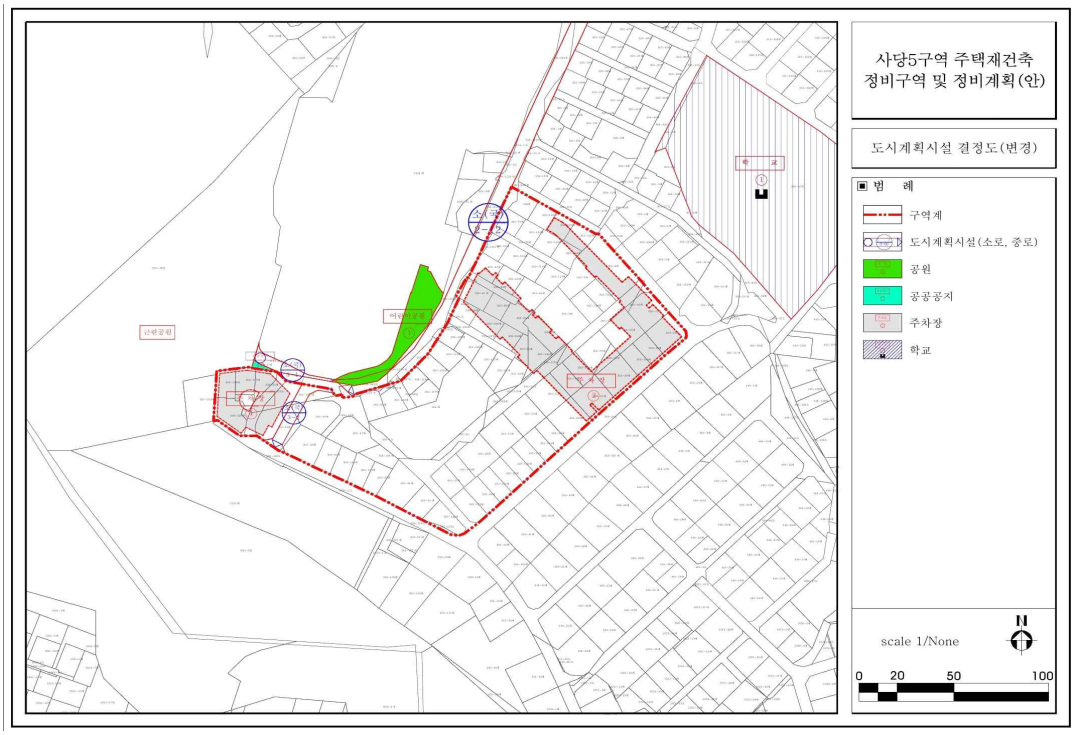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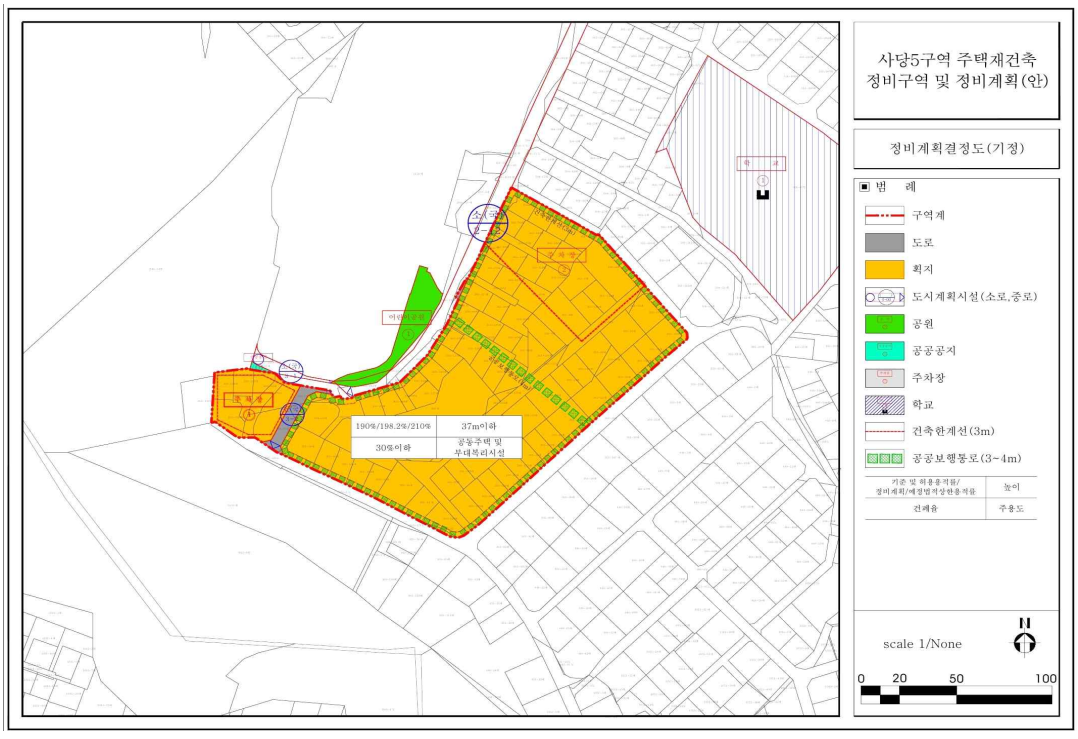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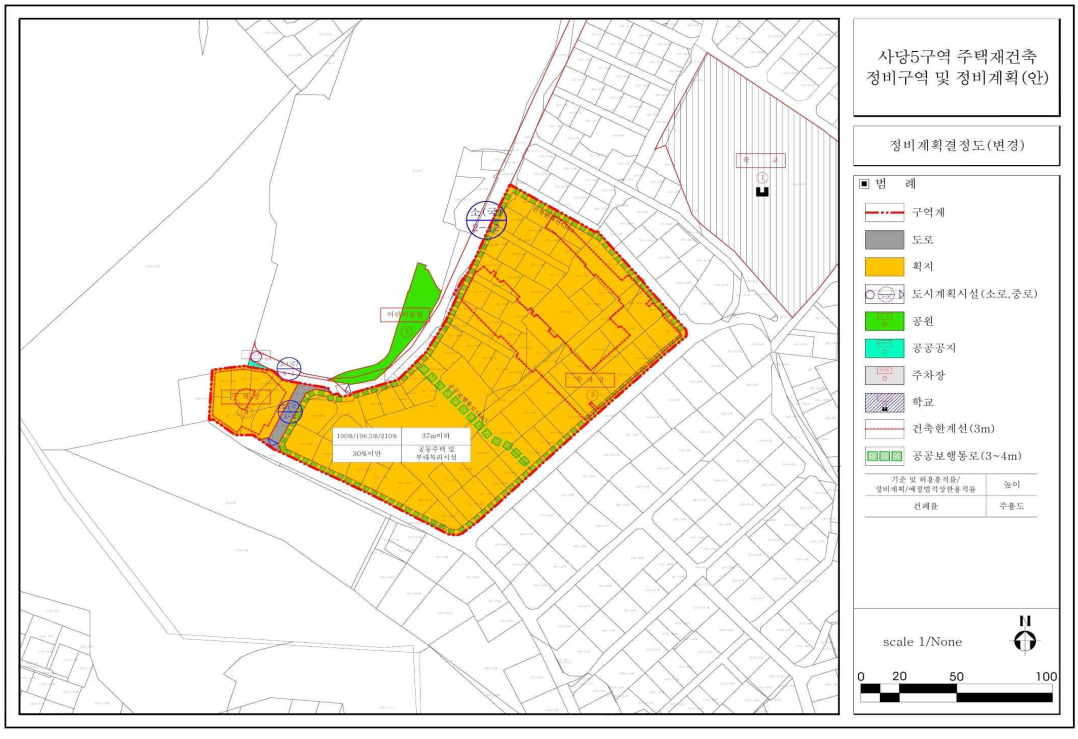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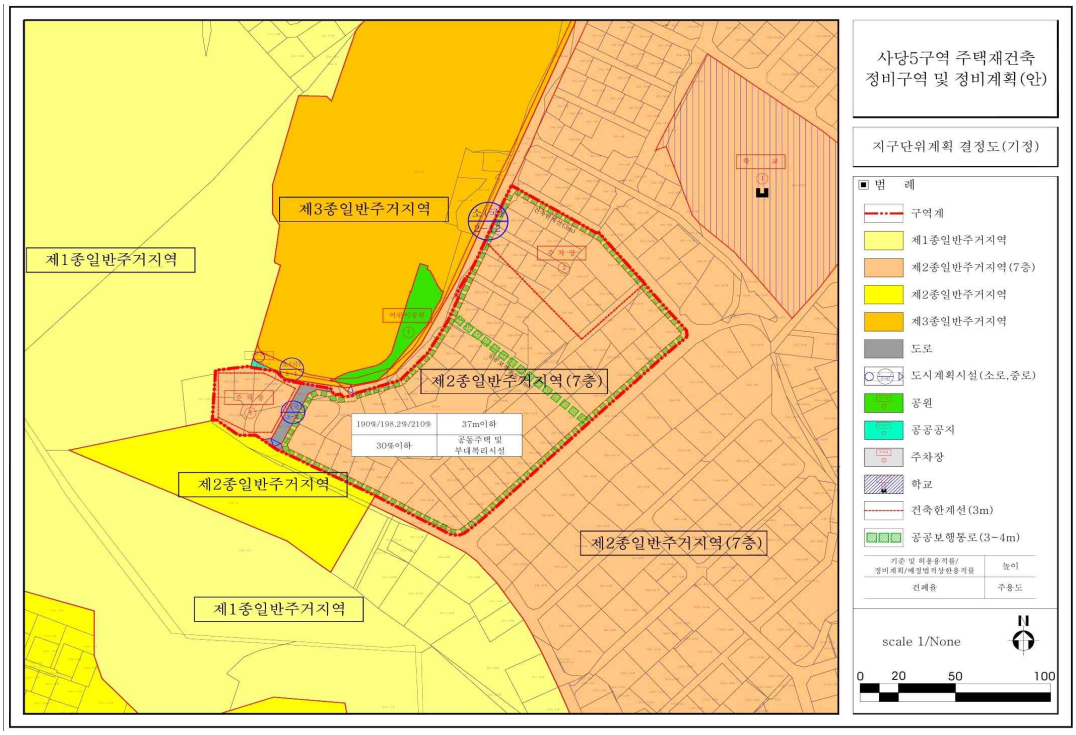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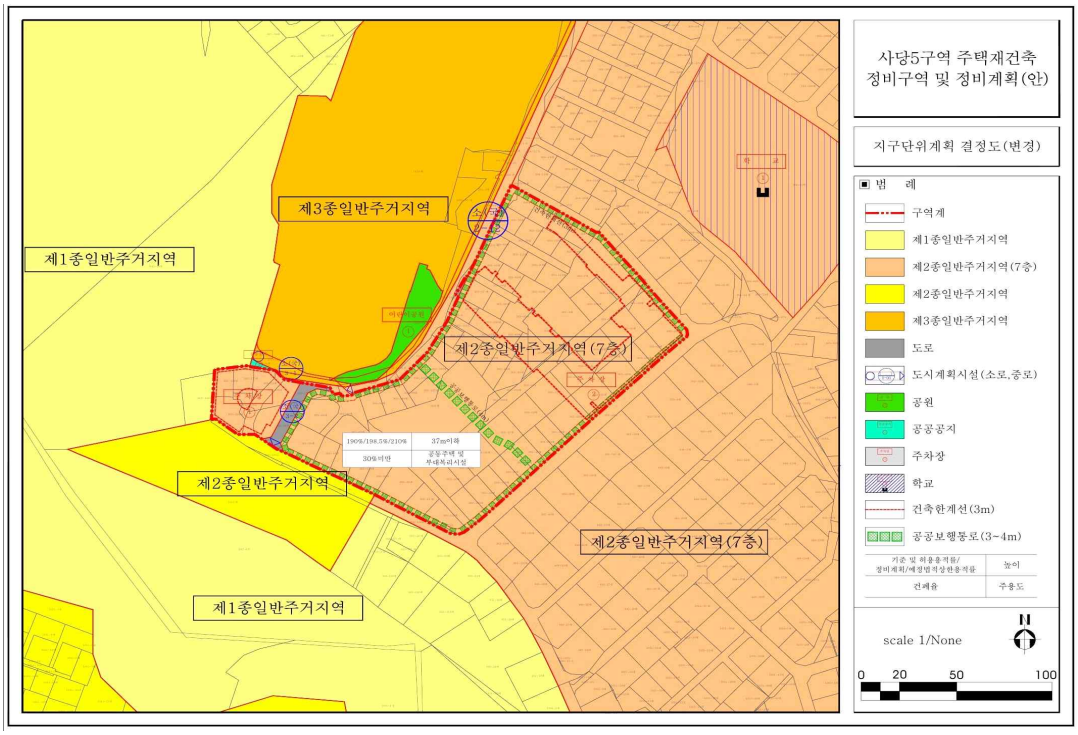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5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08호(2023.07.20.)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374호(2023.8.17.)로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받은 도시계획시설사업(미아배수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	강북구 미아동 산108-3,-4	5,065	감)130	4,93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08호 (2023.7.20.)	

나. 변경 결정 사유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수도공급설비 (미아배수지)	면적: 5,065㎡ → 4,935㎡(감130㎡)	- 지적측량 성과 반영

2.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미아동 산108-3, 산108-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 명 칭 : 미아배수지 건설사업

다. 사업규모 : 부지면적 - 4,935㎡, 시설용량 - 5,000㎥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작성고시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3. 토지·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 02-3146-1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미아배수지 건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강북구 미아동	산108-3	임	2,821	803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이강길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108-3				
						김은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1798				
						김석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94, 603동 702호 (구의동, 현대아파트)				
						김성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2길 16, 502동 801호(당산동4가, 당산현대5차아파트)				
						신복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19길 5-12(미아동)				
						김태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3로 110, 102동 802호 (식사동, 일산자이센트리지)	김순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5길 11, 503호 (당산동, 대우아파트)	근저당권	
						이현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58 달빛마을 106-1201				
						김석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46번길 15-11(장수동)				
						박종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60, 204동 803호(중산동, 일산2차아이파크)				
						김영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9길 14, B동 101호(월계동, 한전빌라)				
						금숙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3길 35, 207동 1503호(종암산, 래미안세레니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정석균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대마을길 60, 104동 1303호(조양동, 속초2차IPARK)				
						박장송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90, 206동 902호 (언남동, 장미마을삼성래미안2차아파트)				
						강정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90, 206동 902호 (언남동, 장미마을삼성래미안2차아파트)				
						김석연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촌기자촌아파트 248-302				
						김본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 102동, 601호 (사당동 극동아파트)				
						최명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502-5				
						이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3길 8, 319동 104호(상도동, 래미안상도3차아파트)				
						홍정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울로 50, 402동 704호 (여수동, 연꽃마을)				
						신성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34길 34(구의동)				
						곽효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63번길 13, 104동 402호(성남동, 삼성빌리지)				
						민우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4길 14, 101동 206호 (삼성동, 현대아파트)				
						이관선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75번길 53, 304호 (운남동, 아이리스)	김영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1길 26-10, 나동 303호 (신월동)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강북구 미아동	산108-3	임	2,821	803	유석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136, 112동 201호 (백석동, 현대아파트)	현대중전기 주식회사	울산 동구 일산동 337	근저당권	
						김일희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도산1길 22				
						유춘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14나길 44, 501호 (중계동)				
						오명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골안길 7-28, 104동 502호 (경남아너스빌)				
						신정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3로 111, 203동 1105호 (식사동, 일산자이3차)				
						이석희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갓바위2길 10-1				
						박정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5길 24-4 (神奈川県相模原市松が枝町23-7-40)				
						이정열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33길 16, 405호 (성당동, 성당에덴타운)				
						곽명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6길 11, A동 403호 (상도동, 약수맨션아파트)				
						천영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9길 16, 203호 (상도1동, 삼성상도빌라)				
						권현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29동 2103호 (잠실동, 트리지움)				
						차순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90길 90, 301호 (청담동)				
						이종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0, 1210호 (정자동 정자아이파크)				
						구본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3길 37, 406동 1204호 (월계동, 성원아파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류필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6동 103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강희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4가길 81 (송정동)				
						안정옥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91길 28-3, 401호 (성내동)				
						김세태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78번길 70, 107동 702호 (소사본동, 주공아파트)				
						윤주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5, 2308동 2005호 (행신동, 햇빛마을)				
						정태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07동 402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김운섭	경기도 파주시 하우3길 81-5, 201호 (야당동)				
						이종열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12길 28, 201호 (원효로4가, 동호쉐르빌)				
						김상학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79가길 24, 401호 (상일동, 삼성쉐르빌)				
						이찬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1405-83				
						유두형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39, 2409호 (목동, 목동트윈빌 D)				
						심우포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로654번길 59				
						진영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5길 85, 103동 1201호 (돈암동, 돈암동더샵아파트)				
						고정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5길 43 (상도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강북구 미아동	산108-3	임	2,821	803	이대형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86번길 21, 1134동 1503호 (산본동, 장미아파트)				
						이길훈	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20 (석정동)				
						서상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 57, 102동 305호 (어은동, 한빛아파트)				
						이주완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22길 34, 107동 603호 (중계동, 롯데아파트)				
						김유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2길 16, 502동 801호(당산동4가, 당산현대5차아파트)				
						최금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2길 16, 502동 801호(당산동4가, 당산현대5차아파트)				
						김희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20동 604호 (잠실동, 트리지움)				
						김현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6길 54, 201호 (화곡동)				
						신영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33, 102동 703호 (서초동, 서초교대 e편한세상아파트)				
						엄유석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414번길 63-38, 301호 (운북동)				
						엄은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33, 102동 703호 (서초동, 서초교대 e편한세상아파트) 800PROWSHEADLN.FOSTERCITY,CA94404 USA				
						엄은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8길 35-28, 203동 1701호 (연희동, 성원상떼빌팰리스아파트)				
						정영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내로 52, 804호 (독산동, 각산아파트)				
						박희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내로 69-54, 1404동 907호 (독산동, 주공아파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박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내로 69-54, 1404동 907호 (독산동, 주공아파트)				
						김부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329 (수유동)				
						김기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가길 36, 5동 406호 (이촌동, 중산아파트)				
						손경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19, 708동 1109호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박경효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로4길 3-1, 707호 (교동, 춘복타워맨션)				
						이일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63길 10, 109동 302호 (이문동, 이문e편한세상아파트)				
						김규득	경기도 군포시 대야1로24번길 20, 5동 302호 (대야미동, 목화빌라)				
						박지성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0, 1101동 801호 (망월동, 미사강변한신휴플러스)				
						심고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33, 7동 1103호 (관양동, 현대아파트)				
						최예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49, A동 2303호 (정자동 로얄팰리스)				
						김현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44길 61, 301호 (시흥동 하이빌)				
						신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6-92				
						류필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6동 103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심정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28, B동 207호 (고잔동, 신유연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강북구 미아동	산108-3	임	2,821	803	주식회사 좀에셋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4길 46, 2층 201호 (서초동)				
						서석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로 22, 510동 801호 (서천동, 힐스테이트서천)				
						김재형	경기도 고양시 화중로 219, 109동 1504호 (화정동, 달빛마을)				
						김정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56 (불광동, 메트로타워 17002호)				
						이준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 2동 1103호 (문래동3가, 영등포SK리더스뷰)				
						곽명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101번길 33-35, B동 101호 (덕이동, 삼성홈타운)				
						곽영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255번길 45, 902동 901호 (대화동, 킨텍스아이파크)				
						곽승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7번길 23, 5301동 2204호(여의동, 자연앤자이아파트)				
						곽상현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07, 115동 1303호(장안동, 장안현대홈타운)				
						백남관	서울 노원구 마들로1길 44, 101동 1304호(월계동, 서광아파트)				
2	강북구 미아동	산108-4	임	4,132	4,132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조명형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55길 43-18(수유동)				
						조민수	서울 강서구 등촌로13자길 71-7, 501호(화곡동, 예지쉐르빌)				
						송교영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17길 46(미아동, 향천사)				
						김진규	서울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1402호(도선동, 삼성쉐르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6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조성대상: 보행자우선도로 1개소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동대문구	장한로5길	10	392

2. 조성계획: 따로 붙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동대문구 장한로5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1부

[붙임]

동대문구 장한로5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위치: 장한로5길(장안동 218-5~431-2)(연장 392m,폭 10m)



○ 사업기간: 2023.9.~2023.12.(4개월)

○ 사업내용

- 아스팔트 포장: A=29a
- 도막형(디자인) 포장: A=27a
- (적색)미끄럼방지포장: A=8a
- 고원식교차로 신설: 4개소
- 측구 및 도로경계석 설치: L=646m
- 보행자안내표지 및 노면표시 등

○ 사 업 비 : 540백만원(시비 200백만원, 구비 340백만원)

○ 사업지 현황

- 폭 10m의 양방통행 도로로 노상주차장이 5면 운영되고 있음
- 상업지역/주거지역/근린생활시설로 주말/출·퇴근 시간대에 보행량이 많음
- 사업구간 내 사군자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음

□ 개선목표 및 범위

○ (경제적 효과)보행량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

○ (만족도)안전성/편리성/쾌적성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

○ (안전성 측면)차량 감속, 보행자 우선의 도로환경으로 보행안전 확보

○ (편리성 측면)차량통행량 감소, 주·정차 차량 감소, 보행편의 확보

○ (쾌적성 측면)가로미관 향상, 차량소음 감소

□ 설계안

○ 설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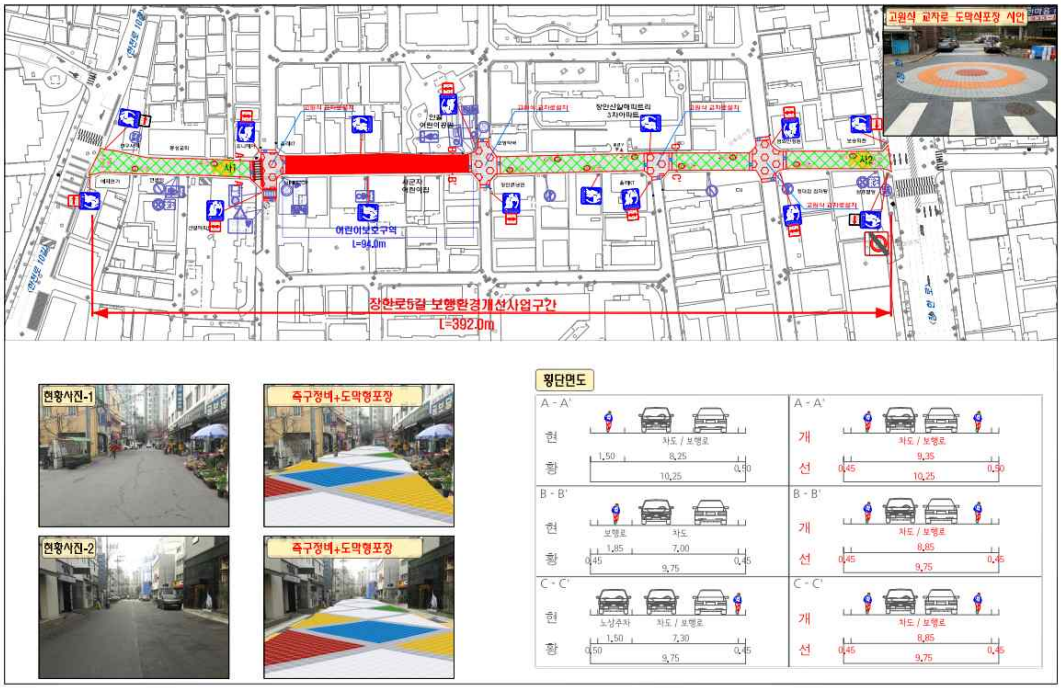
– 아스팔트 재포장 및 디자인포장

– 고원식교차로 4개소 신설

– 표지 및 노면표시 신설

– 측구 및 도로경계석 설치

○ 설계도



□ 시설협의 및 조치사항

○ 주차행정과

- 협의내용: 구간 내 거주지주차구획선 협의
- 조치사항: 해당 장한로5길 내 운영 중인 노상 거주자우선주차구획(장안1동 A 9구간, 5면) 사용자의 이용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공사 시행 후 원상복구

○ 치수과

- 협의내용: 사업구간내 맨홀, 빗물받이 등 시설물 협의
- 조치사항: 하수맨홀 인상작업 시 맨홀추락방지시설이 달린 일체형 맨홀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도로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시공할 것
  도로 포장공사로 인한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내 퇴적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하수시설물의 손괴나 기능 저하 발생 시 원인자부담으로 우리부서 직원 입회 하에 원상복구 조치할 것

□ 소요예산 및 일정

○ 소요예산: 540백만원

○ 일정계획

- ’23. 9. : 공사발주
- ’23. 10.~12. : 공사시행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7호

도시관리계획(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3년 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7.1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동일로 주변 일대를 건대입구역 지구와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연계거점 및 지역균형발전 특화거점으로 육성하여 성수지역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은 주민의 개발의사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양동 50번지 일대	-	증)93,563.7㎡	93,563.7㎡	-	-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신설 - 면적 : 93,563.7㎡	◦동일로 주변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성수IT산업 개발진흥지구와 건대입구역지구의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 특화거점으로 육성하여 성수지역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광진구 자양동 8-8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9호(2021.11.25.)]

-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회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은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1.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광진구 자양동 8-8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8-8일원	2,236.9	감) 2,236.9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9호 (2021.11.25.)	-

2. 지구단위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도시기반시설		◦ 해당사항 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획지 2,236.9㎡ - 광진구 자양동 8-8, 8-9, 8-10, 8-30		
	건축물의 용도계획	지정용도	• 공동주택(복합시설) 주1)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건축물의 밀도계획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959.13%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법적용적률 이하] - 완화용적률의 50% 범위 공공임대주택 제공	
		최고높이	◦ 85m 이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6m - 이면도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2~3m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 간선도로변 : 부도부속형 쟌면공지 ◦ 이면도로변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구 분		내용		계획사항		완화내용	비 고
공공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공공임대주택	◦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25% 이상 - 2,236.9㎡ X 25% = 559.23㎡ 이상	◦ 부속토지면적 : 561.31㎡(25.09%) - 95세대	총 480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167세대 공공기여	기본 용적률 680% 상한 용적률 959.13%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 완화용적률(254.18%)의 50% 공공임대주택 제공 ※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704.95%)	◦ 추가공공기여 : 127.11%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2,843.27㎡(127.11%) [완화용적률 254.18%의 50% : 127.09%] - 72세대			
건축물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 10% 이상 20% 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주거 : 비주거 = 88.81% : 11.19% (용적률 기준)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20㎡ ~ 60m 내외 - 1인(셰어형 포함) 세대 : 실사용면적 25㎡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실사용면적 45㎡ 이상		◦ 1인 세대 : 전용 20.17㎡, 20.40㎡(408세대) ◦ 2인 세대 : 전용 41.25㎡, 42.17㎡ (72세대)			
건축물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 100호 미만 : 100㎡ 이상 ◦ 100 ~ 300호 미만 : 150㎡ 이상 ◦ 300 ~ 364호 미만 : 200㎡ 이상 ◦ 364호 이상 : (전체건립호-299호) X 2.5 X 1.25		◦ 지상24층 585.88㎡ 계획(480세대)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 공공기여계획

구 분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	공공기여 계획	비 고
공공임대주택	기본용적률 (부지면적)	680% 이하	부지면적의 25% 이상 (559.23㎡ 이상)	◦ 부속토지면적 : 561.31㎡(25.09%) -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 2,298.31㎡(95세대)	총 480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167세대 계획
	상한용적률 (연면적)	959.13% 이하	완화용적률 1/2 이상 주2) (959.13-704.95)/2 =127.09%이상 (2,842.88㎡이상)	◦ 공공임대주택 제공 연면적 : 2,843.27㎡(72세대)	
공공시설		-	지상3층 공공시설(청년지원센터) 조성 후 기부채납	◦ 연면적 : 433.81㎡	

주2) 완화용적률 : 계획용적률(959.13%) -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704.95%) = 254.18%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93,563.7	-	93,563.7	100.0	
주거지역	소계	91,326.8	-	91,326.8	97.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749.7	-	2,749.7	2.9	
	제2종일반주거지역	1,741.1	-	1,741.1	1.9	
	제3종일반주거지역	86,836.0	감) 1,339.0	85,497.0	91.4	
	준주거지역	0.0	증) 1,339.0	1,339.0	1.4	
상업지역	소계	2,236.9	-	2,236.9	2.4	
	일반상업지역	2,236.9	-	2,236.9	2.4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내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 일반상업지역)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 가능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변 경 내 용		면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자양동 24-11번지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339.0	◦개발여건이 성숙된 특별계획구역 7을 성수지역중심의 위계를 고려한 효율적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2	2,080	23,823	1	364	12,704	4	811	5,560	7	905	5,559
대로	2	391	12,846	1	364	12,704	1	27	142	-	-	-
소로	10	1,689	10,977	-	-	-	3	784	5,418	7	905	5,559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 도로	5,910 (364)	행당동 (자양동 23-4)	자양동강변 (자양동 8-1)	일반 도로	-	건고제738호 (63.12.24)	아차산로
기정	대로	2	23	30~39	주간선 도로	6,500 (27)	면목동 (화양동 24-1)	성수동 (자양동 24-19)	일반 도로	-	건고제738호 (63.12.24)	동일로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56	화양동 42-1	화양동 42-27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363	화양동 50-2	화양동 48-25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365	자양동 23-3	자양동 8-2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56	화양동 41-3	화양동 41-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2	6	국지도로	46	화양동 49-9	화양동 49-2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3	6	국지도로	46	자양동 23-1	자양동 23-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4	6	국지도로	46	화양동 49-12	화양동 49-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5	6	국지도로	46	자양동 17-1	자양동 17-1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6	6	국지도로	499	화양동 44-68	화양동 31-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7	6~8	국지도로	166	자양동 16-46	자양동 16-27	일반 도로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2-1	◦ 신설(국지도로) - B = 8m, L = 56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	소로2-2	◦ 신설(국지도로) - B = 8m, L = 363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	소로2-3	◦ 신설(국지도로) - B = 8m, L = 365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	소로3-1	◦ 신설(국지도로) - B = 6m, L = 56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	소로3-2	◦ 신설(국지도로) - B = 6m, L = 46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	소로3-3	◦ 신설(국지도로) - B = 6m, L = 46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	소로3-4	◦ 신설(국지도로) - B = 6m, L = 46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	소로3-5	◦ 신설(국지도로) - B = 6m, L = 46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	소로3-6	◦ 신설(국지도로) - B = 6m, L = 499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	소로3-7	◦ 신설(국지도로) - B= 6~8m, L = 166m	◦ 이면부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구간 도로 확폭(폭2m) 및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결정조서(신설)

구 분	가구번호	위치	면 적 (㎡)	비 고
신설	D1	화양동 50-1 번지 일대	2,584.8	
	D2	화양동 49-21 번지 일대	6,963.6	
	D3	화양동 48-3 번지 일대	6,620.5	
	D4	자양동 23-4 번지 일대	2,549.4	
	D5	자양동 17-5 번지 일대	7,037.4	
	D6	자양동 8-1 번지 일대	6,630.4	
	D7	화양동 24-17 번지 일대	8,446.0	
	D8	화양동 234 번지 일대	9,303.7	
	D9	화양동 42-16 번지 일대	9,479.8	
	D10	자양동 24-30 번지 일대	9,261.8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 가구 10개소 신설	◦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블록에 대해 금회 가구로 결정

나. 획지 및 공동개발 등에 대한 결정조서(신설)

(1) 획지계획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획지(㎡)		비 고
				면적	계	
신설	D6	①	자양동 8-8	867.8	2,236.9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자양동 8-9	697.9		
			자양동 8-10	166.6		
			자양동 8-30	504.6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획지 1개소 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9호(2021.11.25.)로 기결정된 획지계획 반영

(2) 공동개발 등에 대한 결정조서

- 대상지 전구역이 획지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되어 별도의 공동개발계획 미수립, 단,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적용되는 지침은 별도 기재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가. 불허용도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통사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1호의 단독주택(간선변에 한함)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주1) 제외)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제28호의 장례시설 ◦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아차산로 (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매매장, 주차장 제외)	일반상업지역 상향지역
아차산로 (2)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동일로 (3)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제15호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매매장, 주차장 제외)	준주거지역 상향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4)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적용되는 용도계획

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지식산업센터를 말함

※불허용도 아차산로(1), 동일로(3)은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적용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 관련 법령 및 주변여건에 따른 불허용도 설정	◦ 구역 내 불건전 및 부적합 용도 불허 ◦ 주변여건을 고려한 가로활성화 저해 요소 불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9호(2021.11.25.)로 기결정된 불허용도계획 반영(역세권 청년주택 부지)

나. 권장용도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아차산로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주1))	일반상업지역 상향지역
동일로 (B)	◦ 제2호의 공동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주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주2), 임대형 기숙사)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제외), 직업훈련소, 체력단련장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의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제외), 직업훈련소 ◦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준주거 지역 상향지역

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지식산업센터를 말함
주2)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조 제4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말함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 가로특성 및 계획방향을 감안한 권장용도 신설	◦ 아차산로변의 경우 상업·업무·문화 중심의 복합개발을 통한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용도 권장 ◦ 동일로변의 경우 도심주거 및 부족한 업무지원·생활 편익 용도 권장

다. 지정용도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아차산로 (a)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 지정용도 계획 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9호(2021.11.25.)로 기결정된 지정용도계획 반영(역세권 청년주택 부지)

라. 건폐율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건폐율	비고
아차산로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상향지역
동일로	60% 이하	준주거지역 상향지역
	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화양동 현대아파트부지)

■ 결정 사유서

결정 내용	결정 사유서
◦ 건폐율 계획 신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을 반영하여 건폐율 계획 수립

마. 용적률 계획 결정조서(신설)

(1) 용적률 계획

구 분	용적률	비고
아차산로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주1)
	기본용적률 680% 이하 / 상한용적률 959.13%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주2)
동일로	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주1)
	기준 250% 이하 / 허용 250% 이하 / 상한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화양동 현대아파트부지주3))

상한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1.0~1.2)×α건축물+1.0×α현금)이내

※ 건축물 계수는 기부채납 건축물의 종류, 위치, 층수, 규모, 용도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1.0~1.2 범위 내에서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친환경 항목 적용시 상한용적률

◦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

◦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1+0.7×∑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ß)

※ ① 및 ②항목은 중복 적용불가 /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의 합은 15% 이내 (0.7 × (∑①~③) ≤ 15%)

① ZEB 인증

ZEB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완화비율	15%	14%	13%	12%	1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율이 20%미만인 경우 완화비율 : 10%

②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

녹색건축인증 / 에너지효율인증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9%	6%
1 등급	6%	3%

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완화비율	5%	10%	15%

④ 장수명주택인증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완화비율	15%	10%

◦ 완화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배 이내

주1)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이 변경됨을 전제로 적용가능
주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용기준 준용,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법적용적률 이하) 적용 (완화용적률의 50% 범위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3) 화양동 현대아파트부지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사업방식에 따른 관련 법령 및 지침 적용
주4)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주5)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주거와 주거외 부분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2020.5) 3-4-2.(용적률) 계획수립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을 따른다.

■ 결정 사유서

결정내용	결정사유서
◦ 용적률 계획 신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여 용적률 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9호(2021.11.25.)로 기결정된 용적률계획 반영(역세권 청년주택 부지)

(2) 준주거지역 용적률 적용기준

■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 적용기준

구 분	비주거용도 비율	비 고
준주거지역	◦ 건축계획용적률의 10% 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다.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만큼 허용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물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 주택 제외) 비율은 전체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도입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계획한다.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을 적용하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높이완화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3)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적용기준

■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 적용기준

구 분	비주거용도 비율	비 고
일반상업지역	◦ 건축계획용적률의 10% 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용적률계획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적용기준”을 적용하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에 따르되, 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중 주거용 용적률은 다음을 적용한다.

구분	산식
허용용적률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허용용적률 × (주거용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상한용적률 증가량**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상한용적률 증가량 × (주거용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상한용적률 증가량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 나목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다음의 산식 이하로 적용한다.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주거부문 용적률* / 상업지역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 나목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용적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4) 광진구 자양동 8-8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용적률 적용 기준(의무사항)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내용</th><th colspan="2">계획사항</th><th>완화내용</th><th>비 고</th></tr>
<tr><td rowspan="2">공공 기여율</td><td rowspan="2">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td><td rowspan="2">공공임대 주택</td><td>◦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25% 이상
- 2,236.9㎡ X 25% = 559.23㎡ 이상</td><td>◦ 부속토지면적 : 561.31㎡(25.09%)
- 95세대</td><td rowspan="2">총 480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167세대 공공기여</td><td rowspan="5">기본 용적률 680%

상한 용적률 959.13%</td><td rowspan="5">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td></tr>
<tr><td>◦ 완화용적률(254.18%)의 50% 공공임대주택 제공
※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704.95%)</td><td>◦ 추가공공기여 : 127.11%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2,843.27㎡(127.11%)
[완화용적률 254.18%의 50% : 127.09%]
- 72세대</td></tr>
<tr><td>건축물용도 구분</td><td>비주거비율</td><td colspan="2">◦ 10% 이상 20% 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td><td colspan="2">◦ 주거 : 비주거 = 88.81% : 11.19% (용적률 기준)</td></tr>
<tr><td>주택 건설 비중</td><td>주택규모</td><td colspan="2">◦ 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20㎡ ~ 60m 내외
- 1인(셰어형 포함) 세대 : 실사용면적 25㎡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실사용면적 45㎡ 이상</td><td colspan="2">◦ 1인 세대 : 전용 20.17㎡, 20.40㎡(408세대)
◦ 2인 세대 : 전용 41.25㎡, 42.17㎡ (72세대)</td></tr>
<tr><td>건축물형태</td><td>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td><td colspan="2">◦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td><td colspan="2">◦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td></tr>
<tr><td>주민 공동 시설</td><td>커뮤니티 시설</td><td colspan="2">◦ 100호 미만 : 100㎡ 이상
◦ 100 ~ 300호 미만 : 150㎡ 이상
◦ 300 ~ 364호 미만 : 200㎡ 이상
◦ 364호 이상 : (전체건립호-299호) X 2.5 X 1.25</td><td colspan="2">◦ 지상24층 585.88㎡ 계획 (480세대)</td></tr>
</table>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 공공기여계획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용적률</th><th>공공기여 기준</th><th>공공기여 계획</th><th>비 고</th></tr>
<tr><td rowspan="2">공공임대주택</td><td>기본용적률 (부지면적)</td><td>680% 이하</td><td>부지면적의 25% 이상 (559.23㎡ 이상)</td><td>◦ 부속토지면적 : 561.31㎡(25.09%)
-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 2,298.31㎡(95세대)</td><td rowspan="3">총 480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167세대 계획</td></tr>
<tr><td>상한용적률 (연면적)</td><td>959.13% 이하</td><td>완화용적률 1/2 이상 주1)
(959.13-704.95)/2
=127.09%이상
(2,842.88㎡이상)</td><td>◦ 공공임대주택 제공 연면적 : 2,843.27㎡(72세대)</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td><td>-</td><td>지상3층 공공시설(청년지원센터) 조성 후 기부채납</td><td>◦ 연면적 : 433.81㎡</td></tr>
</table>

주1) 완화용적률 : 계획용적률(959.13%) -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704.95%) = 254.18%

바. 높이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최고높이	비고
아차산로	100m 이하	일반상업지역 상향지역
	85m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80m 이하	일반상업지역 상향지역
동일로	70m 이하	준주거지역 상향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 높이계획 신설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고려한 계획 수립 ◦ 용도지역, 접도조건, 이면부 일조권 침해 최소화 등 지역 특성 및 주변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9호(2021.11.25.)로 기결정된 높이계획 반영(역세권 청년주택 부지)

사.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배치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고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 아차산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동일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면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3m	
고층부 벽면한계선	동일로20길변 동일로22길변 아차산로21길변 아차산로22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7m - 고층부(20m 이상)에 한함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건축물 배치계획 신설	◦ 연속적 가로경관 형성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 구역내·외 밀도 및 높이 차이를 고려하여 공간적 완충공간 조성을 위해 이면부 고층부 벽면한계선 지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9호(2021.11.25.)로 기결정된 건축물배치 계획 반영(역세권 청년주택 부지)

(2) 건축물의 형태·외관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 형태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전체	분절 및 분할 (권장)	◦ 건축물의 파사드가 단조롭고 폐쇄적인 벽면이 되지 않도록 재료구분, 창호디자인, 상하부 구분 등의 입면의 분절요소를 활용하여 풍부한 입면 디자인 권장	아차산로변 동일로20길변 동일로22길변
	발코니/난간 디자인 (권장)	◦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개방형 발코니, 돌출형 발코니, 측면 발코니 등 다양한 유형을 활용하여 입면을 변화있게 계획 ◦ 난간의 형태 및 재료에 따라 입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	간선변
	측면 이격공지의 처리 (권장)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으로 차폐 ◦ 그 외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공개공간으로 조성	간선변
1층부	투시형 벽면/셔터 (규제)	◦ 1층 벽면의 50% 이상을 쇼윈도 등의 투시형 벽면(내부가 안 보이는 컬러유리 · 필름지 등의 설치 금지)으로 설치 (단, 아차산로변의 경우 70% 이상 권장) ◦ 셔터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되, 셔터 설치 시 가로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셔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투시형으로 설치	간선변 동일로20길변 동일로22길변
	1층 높이 (규제)	◦ 1층 층고 제한 4.5m 이상	아차산로변
	개구부 높이 조화 (규제)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과 조화롭게 조성	간선변
	개구부가 없는 벽면 디자인 (규제)	◦ 도로변에 노출된 벽면은 조경, 벽화 등 장식적으로 처리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	동일로20길변 동일로22길변
	1층 바닥 높이 (규제)	◦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	전구역
		◦ 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 및 공지로부터 15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지만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친 경우 예외 인정	간선변 동일로20길변 동일로22길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지붕부	평지붕 (권장)	◦ 에너지 절약 측면의 열섬효과 방지를 위해 전체 면적의 40% 이상 옥상녹화 또는 텃밭, 정원으로 조성 권장 ◦ 고층부 벽면한계선에 의해 후퇴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개방감 확보 및 이용객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조성 권장	전구역
	파라펫 차폐 디자인 (권장)	◦ 건축물 옥상부에 FRP물탱크, 실외기 등의 설비시설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건축물과 일체화된 디자인의 차폐시설 설치	전구역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건축물 형태계획 신설	◦ 다채롭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물 형태계획 수립 ◦ 아차산로 및 동일로20길, 동일로22길 변의 경우 고가철도 및 특화가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로의 개방감 확보 및 다양한 입면이 계획가능토록 건축물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2) 건축물 재료 및 색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재료	통일성 (권장)	◦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 유지	전구역
	반사성 재료 금지 (규제)	◦ 금속, 반짝이는 타일,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 사용	전구역
	조화로운 천연재료 사용 (권장)	◦ 외벽은 목재나 석재 등 천연 그대로의 재료 사용 권장 ◦ 건물 저층부의 경우 보행자의 시선을 배려하여 시각적인 깊이와 입체감이 있는 소재(벽돌, 루버, 송판 노출콘크리트, 스터코 등 실감 및 패턴이 있는 소재) 사용 권장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 고려	아차산로변
색채	조화로운 색채계획 (권장)	◦ 건축물의 주요 색채로 원색(고채도) 및 이질적 소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및 「서울시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준수	전구역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건축물 재료 및 색채계획 신설	◦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물 색채계획 수립 ◦ 아차산로변의 경우 고차철도를 감안하여 보행자의 시각을 고려한 재료 및 색채 사용 권장

3)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양 설치	수평분할요소 적용 후 어닝 설치 (권장)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사인존(Sign Zone), 출입문 및 디스플레이 윈도우를 설치하는 윈도우존(Window Zone), 어닝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차양존(Awning Zone)으로 1층부 수평분할요소를 적용	간선변 동일로20길변 동일로22길변
		◦ 보행자의 이동 및 이용편의를 위한 가변형 공간 및 캐노피(어닝 포함) 등의 설치를 권장, 단, 건축한계선을 넘어서 설치 불가	간선변
중저층 입면	입면디자인 (권장)	◦ 고가철도에서 바라보는 삭막한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3~4층 높이내 LED 전광판, 개방형 공간(옥상정원, 테라스 등), 투시형 벽면 등 설치 권장	아차산로변
담장 및 옹벽	담장 설치 금지 (규제)	◦ 간선도로변 담장 설치 불허(단,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득한 경우 가능하며 이 경우 식재형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여야 함)	간선변
옥외 광고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디자인 (규제)	◦ 「옥외광고물법」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수 ◦ 건축물과 조화되는 색상 및 재료를 사용하여 입면과 일체감을 주도록 계획하고, 작고 간결하며 여백의 미를 살리는 디자인으로 계획 ◦ 단일 건물에 여러 개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표기방식, 크기, 위치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하여 통일감 있도록 설치	전구역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 조명 설치 (권장)	◦ 간선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에 대해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설치 권장 ◦ 용적률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치	간선변
탑상형 건축물	탑상형 건축물	◦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형태는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탑상형을 권장, 단, 특별계획가능구역 1~4의 경우 이면부 일조침해를 최소화하고 고층부 통경축 확보 및 시각적 차폐 완화를 위해 탑상형 건축물 준수 ◦ 탑상형 건축물은 건축물의 장변에 대한 단면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고, 건폐율 40% 이하로 건축 권장 ◦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5층 이상의 부분에 대해 건축물의 장변과 단면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고 그 부분의 건폐율이 40% 이하로 건축할 것을 권장	간선변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가로경관계획 신설	◦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가로경관계획 수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 내 공지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고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 아차산로변 : 6m ◦ 동일로변 : 3m	건축한계선에 의한 대지 내 공지
	이면도로변	◦ 2~3m	
공개공지	간선도로변	◦ 17개소 위치 권장	특별계획(가능)구역내 주요 결절부 위치 권장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 대지 내 공지 계획 신설	◦ 보행환경 개선 및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전면공지 계획 및 공개공지 위치 권장

나. 대지 내 통로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고
공공보행통로	간선도로변	◦ 6개소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공공보행통로 6개소 신설	◦ 통합개발에 따른 간선이면 가로단절 최소화 및 아차산로와 특화거리 연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신설

다.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아차산로변 동일로변	◦ 폭 30m이상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 차량출입불허구간 계획 신설	◦ 간선가로에서의 차량출입 최소화를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라.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적용기준	비고
자연지반보존	◦ 지하수 및 생태면적 확보,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자연지반 보존을 권장	
옥상녹화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2017.12.)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벽면녹화	◦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신·재생 에너지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녹색주차장	◦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생태면적률	◦ 건축물의 신축 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능형 건축물	◦ ‘건축법 제65조의 2’,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설치 권장	

■ 결정 사유서

결정내용	결정사유서
◦ 환경친화적 건축물 계획 신설	◦ 정책 및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구역내 친환경 요소 도입을 위해 계획 신설

마. 기존 건축물에 관한 사항

기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적용기준	비고
증축	◦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적용 -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로서 500㎡ 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하되, 증축되는 면적이 50㎡ 이내인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은 동별 및 누계로 산정한다)	
개축 및 재축	◦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적용	
대수선	◦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중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적용	
용도변경	◦ 용도변경을 하고자하는 부분의 용도계획은 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개보수 (리모델링)	◦ 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여부를 결정함	

■ 결정 사유서

결정내용	결정사유서
◦ 기존 건축물 계획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운영지침 신설

4. 인센티브 운영계획 결정조서(신설)

가. 용적률 인센티브 기본방향

1)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은 계획유도 인센티브와 중점 인센티브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운영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중점 인센티브 : 지구통합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계획 항목으로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계획

② 계획유도 인센티브 :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 유도가 필요한 항목으로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 이내로 계획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중점 인센티브 항목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이내	계획유도 항목 이행 시 (70% 이내)	중점 계획항목 이행 시 (30% 이상)	공공시설등 제공 시 등

2) **중점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획하며,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대체가 불가하다.

3) **계획유도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세부기준

■ 인센티브 유형 1 (아차산로변)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 60%	
기준/허용용적률			◦ 250%/610%	
인센티브 유도계획			◦ 중심기능 강화 ◦ 휴게공간 확충 및 가로활성화 유도 ◦ 아차산로변 가로경관 개선 및 개방감 확보 ◦ 스마트그린시티 시스템 구축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중점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전체연면적)×2	◦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주차장면적 제외)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α = 개방형 3.0 = 필로티형 1.5 ※ 법적 의무면적 제외
계획 유도	대지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α = 개방형 3.4 = 필로티형 1.7 ※ 법적 의무면적 제외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	기준용적률×0.5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가로경관계획 준수시
	지능형 건축물	지능형 건축물 인증	기준용적률×α	• 1등급~4등급으로 인증된 경우 ◦ α = 1등급 0.5 = 2등급 0.4 = 3등급 0.3 = 4등급 0.2

■ 인센티브 유형 2 (동일로변)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건폐율			◦ 60%	
기준/허용용적률			◦ 250%/350%	
인센티브 유도계획			◦ 도심주거 및 부족한 지원기능 강화 ◦ 보행환경 개선 ◦ 스마트그린시티 시스템 구축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중점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전체연면적)×0.5	◦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주차장면적 제외)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α = 개방형 2.0 = 필로티형 1.0 ※ 법적 의무면적 제외
계획 유도	대지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α = 개방형 2.0 = 필로티형 1.0 ※ 법적 의무면적 제외
	지능형 건축물	지능형 건축물 인증	기준용적률×α	• 1등급~4등급으로 인증된 경우 ◦ α = 1등급 0.4 = 2등급 0.3 = 3등급 0.2 = 4등급 0.1

4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신설	특별계획구역 1	화양동 50-1번지 일대	2,584.8	
신설	특별계획구역 2	자양동 23-4번지 일대	2,549.4	
신설	특별계획구역 3	자양동 17-5번지	1,904.8	
신설	특별계획구역 4	자양동 17-1번지 일대	5,132.6	
신설	특별계획구역 5	화양동 234번지	5,983.3	
신설	특별계획구역 6	화양동 42-4번지 일대	9,479.8	분할시행 가능
신설	특별계획구역 7	자양동 24-11번지 일대	1,389.7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결정 사유
신설	특별계획구역 1	화양동 50-1번지 일대	2,584.8	◦ 상위/관련계획 및 지역여건을 감안, 성수~건대간 도시기능을 연계하고 지역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 계획의 실현성 증대를 위해 분할시행가능토록 획지분할가능선 계획
신설	특별계획구역 2	자양동 23-4번지 일대	2,549.4	
신설	특별계획구역 3	자양동 17-5번지	1,904.8	
신설	특별계획구역 4	자양동 17-1번지 일대	5,132.6	
신설	특별계획구역 6	화양동 42-4번지 일대	9,479.8	
신설	특별계획구역 7	자양동 24-11번지 일대	1,389.7	
신설	특별계획구역 5	화양동 234번지	5,983.3	◦ 아파트부지로 향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시를 감안한 지침 수립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신설)

■ 특별계획구역 1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화양동 50-1번지 일대	
면적			◦ 2,584.8㎡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10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동일로변 3m, 이면부 2~3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동일로변 3m, 이면부 2~3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권장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 2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자양동 23-4번지 일대	
면적			◦ 2,549.4㎡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10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동일로변 3m, 이면부 2~3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0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동일로변 3m, 이면부 2~3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권장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 3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자양동 17-5번지	
면적			◦ 1,904.8㎡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100m 이하	
	배 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0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권장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 4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자양동 17-1번지 일대	
면적			◦ 5,132.6㎡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100m 이하	
	배 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0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2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6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 5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화양동 234번지	
면적			◦ 5,983.3㎡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4) (제3종일반주거지역)	
	권장용도		-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250% 이하 / 상한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7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3m, 이면부 2~3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아차산로21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동일로변 3m, 이면부 2~3m	지침도 참조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리모델링 사업시에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을 준수하되, 간선변의 개방감 확보 및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한 지침 마련 - 동일로변 담장 허물기 및 건축선 후퇴부분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배치 - 1층부 지역공유시설 및 상업용도 등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 6

구분			통합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위치			◦ 화양동 42-4번지 일대	
면적			◦ 9,479.8㎡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3) (동일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B) (동일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7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아차산로21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2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6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다양한 주거 공급 및 생활SOC 지원 / 청년혁신업무시설 확충	
	공공기여율		◦ 15% 이상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지역필요시설 등 - 예시용도 : 도전숙,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시제품공작소, 디자인스튜디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구분			분할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특별계획구역 6-A	특별계획구역 6-B	특별계획구역 6-C	특별계획구역 6-D	
면적			◦ 3,057.6㎡	◦ 2,201.7㎡	◦ 2,054.9㎡	◦ 2,165.6㎡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3) (동일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B) (동일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7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아차산로21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6-A : 1개소 위치 권장 ◦ 6-D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6-B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공공보행통로와 현황도로 연계) ◦ 6-C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 가장 좁은 폭이 3m 이상 되도록 조성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다양한 주거 공급 및 생활SOC 지원 / 청년혁신업무시설 확충				
	공공기여율		◦ 15% 이상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지역필요시설 등 - 예시용도 : 도전숙,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시제품공작소, 디자인스튜디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 7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자양동 24-11번지 일대	
면적			◦ 1,389.7㎡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3) (동일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B) (동일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7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아차산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다양한 주거 공급 및 생활SOC 지원 / 청년혁신업무시설 확충	
	공공기여율		◦ 15% 이상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지역필요시설 등 - 예시용도 : 도전숙,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시제품공작소, 디자인스튜디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2.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1	화양동 49-21번지 일대	4,023.1	분할시행가능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2	화양동 49-11번지 일대	2,940.5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3	화양동 48-3번지 일대	3,644.5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4	화양동 48-14번지 일대	2,976.0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5	자양동 8-3번지 일대	827.6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6	자양동 8-1번지 일대	3,565.9	분할시행가능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7	화양동 24-17번지 일대	8,446.0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8	화양동 41-14번지 일대	3,320.4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9	자양동 24-30번지 일대	7,922.8	분할시행가능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결정 사유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1	화양동 49-21번지 일대	4,023.1	◦ 상위/관련계획 및 지역여건을 감안, 성수~건대간 도시기능을 연계하고 지역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주민동의 등에 따라 계획 실현의 장기화를 감안하여 추후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 ◦ 계획의 실현성 증대를 위해 분할시행 가능토록 획지분할가능선 계획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2	화양동 49-11번지 일대	2,940.5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3	화양동 48-3번지 일대	3,644.5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4	화양동 48-14번지 일대	2,976.0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5	자양동 8-3번지 일대	827.6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6	자양동 8-1번지 일대	3,565.9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7	화양동 24-17번지 일대	8,446.0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8	화양동 41-14번지 일대	3,320.4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9	자양동 24-30번지 일대	7,922.8	

나.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시기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시기	◦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에 대한 효력은 잃으며 이 경우 일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행위 가능 ◦ 단, 주민요청(대상 토지 면적의 1/2이상 동의) 및 입안권자(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자문(자치구 포함)을 거쳐 2년이내(총 5년 범위이내)에서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신설)

■ 특별계획가능구역 1

구분			통합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위치			◦ 회양동 49-21번지 일대	
면적			◦ 4,023.1㎡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80m 이하	
	배 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구분			분리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특별계획가능구역 1-A	특별계획가능구역 1-B	
면적			◦ 2,022.8㎡	◦ 2,000.3㎡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80m 이하		
	배 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A : 1개소 위치 권장 ◦ 1-B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1-B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2

구분			통합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위치			◦ 화양동 49-11번지 일대	
면적			◦ 2,940.5㎡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80m 이하	
	배 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구분			분할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특별계획가능구역 2-A	특별계획가능구역 2-B	
면적			◦ 1,720.6㎡	◦ 1,219.9㎡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80m 이하		
	배 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2-A : 1개소 위치 권장 ◦ 2-B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2-A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3

구분			통합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위치			◦ 화양동 48-3번지 일대	
면적			◦ 3,644.5㎡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80m 이하	
	배 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구분			분리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특별계획가능구역 3-A	특별계획가능구역 3-B	
면적			◦ 2,109.6㎡	◦ 1,534.9㎡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80m 이하		
	배 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3-A : 1개소 위치 권장 ◦ 3-B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3-B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4

구분			통합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위치			◦ 화양동 48-14번지 일대	
면적			◦ 2,976.0㎡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80m 이하	
	배 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구분			분리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특별계획가능구역 4-A	특별계획가능구역 4-B	
면적			◦ 1,716.9㎡	◦ 1,259.1㎡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80m 이하		
	배 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4-A : 1개소 위치 권장 ◦ 4-B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4-A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5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자양동 8-3번지 일대	
면적			◦ 827.6㎡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10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6

구분			통합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위치			◦ 자양동 8-1번지 일대	
면적			◦ 3,565.9㎡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100m 이하	
	배 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0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권장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구분			분리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특별계획가능구역 6-A	특별계획가능구역 6-B	
면적			◦ 2,230.7㎡	◦ 1,335.2㎡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100m 이하		
	배 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0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6-A : 1개소 위치 권장 ◦ 6-B : 1개소 위치 권장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7

구분			통합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위치			◦ 화양동 24-17번지 일대	
면적			◦ 8,446.0㎡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3) (동일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B) (동일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7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아차산로21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2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6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다양한 주거 공급 및 생활SOC 지원 / 청년혁신업무시설 확충	
	공공기여율		◦ 15% 이상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지역필요시설 등 - 예시용도 : 도전숙,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시제품공작소, 디자인스튜디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구분			분리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특별계획가능구역 7-A	특별계획가능구역 7-B	특별계획가능구역 7-C	
면적			◦ 2,913.6㎡	◦ 2,688.0㎡	◦ 2,844.4㎡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3) (동일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B) (동일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7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아차산로21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7-A : 1개소 위치 권장 ◦ 7-B : 1개소 위치 권장 ◦ 7-C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7-B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 7-C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다양한 주거 공급 및 생활SOC 지원 / 청년혁신업무시설 확충			
	공공기여율		◦ 15% 이상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지역필요시설 등 - 예시용도 : 도전숙,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시제품공작소, 디자인스튜디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8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화양동 41-14번지 일대	
면적			◦ 3,320.4㎡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3) (동일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B) (동일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7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3m, 이면부 2~3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아차산로21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동일로변 3m, 이면부 2~3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권장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다양한 주거 공급 및 생활SOC 지원 / 청년혁신업무시설 확충	
	공공기여율		◦ 15% 이상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지역필요시설 등 - 예시용도 : 도전숙,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시제품공작소, 디자인스튜디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9

구분			통합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위치			◦ 자양동 24-30번지 일대	
면적			◦ 7,922.8㎡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3) (동일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B) (동일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7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아차산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2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6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다양한 주거 공급 및 생활SOC 지원 / 청년혁신업무시설 확충	
	공공기여율		◦ 15% 이상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지역필요시설 등 - 예시용도 : 도전숙,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시제품공작소, 디자인스튜디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구분			분리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특별계획가능구역 9-A	특별계획가능구역 9-B	특별계획가능구역 9-C	특별계획가능구역 9-D	
면적			◦ 2,446.6㎡	◦ 1,965.5㎡	◦ 2,227.3㎡	◦ 1,283.4㎡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3) (동일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B) (동일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7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아차산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9-A : 1개소 위치 권장 ◦ 9-B : 1개소 위치 권장 ◦ 9-C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9-A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 9-B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다양한 주거 공급 및 생활SOC 지원 / 청년혁신업무시설 확충				
	공공기여율		◦ 15% 이상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지역필요시설 등 - 예시용도 : 도전숙,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시제품공작소, 디자인스튜디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3)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일반지침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지			공동개발	비고
			동	위 치	면적(㎡)		
신설	D2	6,963.6	화양동	49-5	196.4		특별계획 가능구역 1
신설			화양동	49-6	268.4		
신설			화양동	49-8	195.7		
신설			화양동	49-9	804.0		
신설			화양동	49-10	203.6		
신설			화양동	49-15	180.8		
신설			화양동	49-18	538.5		
신설			화양동	49-20	334.9		
신설			화양동	49-21	1,218.8		
신설			화양동	49-1	199.7		특별계획 가능구역 2
신설			화양동	49-2	234.0	◦ 49-2, 49-11 : 공동개발(권장)	
신설			화양동	49-3	182.8	◦ 49-3, 49-11 : 공동개발(권장)	
신설			화양동	49-11	1,154.7	- 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신설			화양동	49-4	149.1		
신설			화양동	49-12	689.6		
신설			화양동	49-13	165.3		
신설			화양동	49-14	165.3		
신설	D3	6,620.5	화양동	48-1	188.8		특별계획 가능구역 3
신설			화양동	48-3	1,123.3		
신설			화양동	48-4	289.3	◦ 공동개발(권장)	
신설			화양동	48-5	916.7	- 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신설			화양동	48-19	164.0		
신설			화양동	48-20	164.0		
신설			화양동	48-21	174.3		
신설			화양동	48-22	175.2		
신설			화양동	48-23	226.1		
신설			화양동	48-27	188.8		
신설			화양동	48-2	155.4	◦ 공동개발(권장) - 간선변 개발규모 확대	특별계획 가능구역 4
신설			화양동	48-12	150.4		
신설			화양동	48-13	155.4		
신설			화양동	48-17	377.9		
신설			화양동	48-18	253.6		
신설			화양동	48-14	768.6		
신설			화양동	48-25	276.0		
신설			화양동	48-28	411.6		
신설			화양동	48-31	212.6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지			공동개발	비고
			동	위치	면적(㎡)		
신설			자양동	8-3	827.6		특별계획 가능구역 5
신설			자양동	8-1	882.0		
신설			자양동	8-4	330.9		
신설			자양동	8-23	159.3	◦ 8-23 : 필지분할가능선(권장)	
신설			자양동	8-24	330.9	◦ 8-4, 8-23, 8-27, 8-28 : 공동개발(권장)	
신설			자양동	8-25	134.2		
신설			자양동	8-26	99.8	◦ 8-23, 8-24, 8-25, 8-26 : 공동개발(권장)	
신설			자양동	8-27	100.2	-구역 정형화 및 개발규모 확대	
신설	D6	6,630.4	자양동	8-28	134.2		
신설			자양동	8-12	217.6		특별계획 가능구역 6
신설			자양동	8-13	35.4		
신설			자양동	8-14	217.6		
신설			자양동	8-16	211.0		
신설			자양동	8-17	112.1	◦ 공동개발(권장)	
신설			자양동	8-18	35.4	- 개발규모 확대	
신설			자양동	8-19	112.1		
신설			자양동	8-21	188.4		
신설			자양동	8-22	264.8		
신설			화양동	24-1	340.5		
신설			화양동	24-2	239.0		
신설			화양동	24-3	140.8		
신설			화양동	24-4	246.3		
신설			화양동	24-6	236.7		
신설			화양동	24-7	129.3		
신설			화양동	24-8	134.9		
신설			화양동	24-9	238.7		
신설			화양동	24-34	134.2		
신설			화양동	24-35	305.1		특별계획 가능구역 7
신설	D7	8,446.0	화양동	24-38	112.1		
신설			화양동	24-40	123.6		
신설			화양동	24-41	130.2		
신설			화양동	24-42	236.0		
신설			화양동	24-10	361.0	◦ 24-10, 24-11 : 공동개발(권장)	
신설			화양동	24-11	892.9	◦ 24-11, 24-12 : 공동개발(권장)	
신설			화양동	24-12	167.4	- 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신설			화양동	24-14	350.1	◦ 24-14, 24-15 : 공동개발(권장)	
신설			화양동	24-15	517.7	◦ 24-15, 24-16 : 공동개발(지정)	
신설			화양동	24-16	231.4	- 기 공동개발/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신설			화양동	24-45	167.5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지			공동개발	비고
			동	위 치	면적(㎡)		
신설	D7	8,446.0	회양동	24-17	1,007.6	◦ 공동개발(권장) - 동일소유자/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특별계획 가능구역 7
신설			회양동	24-18	113.7		
신설			회양동	24-22	113.1		
신설			회양동	24-24	101.2		
신설			회양동	24-19	128.9		
신설			회양동	24-21	129.6		
신설			회양동	24-25	137.2		
신설			회양동	24-27	100.2		
신설			회양동	24-28	134.2		
신설			회양동	24-29	138.2		
신설			회양동	24-30	143.8		
신설			회양동	24-31	187.4		
신설			회양동	24-44	314.1		
신설	D8	9,303.7	회양동	41-1	138.2		특별계획 가능구역 8
신설			회양동	41-2	230.7		
신설			회양동	41-3	209.6		
신설			회양동	41-5	160.0		
신설			회양동	41-6	160.3		
신설			회양동	41-7	171.9		
신설			회양동	41-8	262.5	◦ 공동개발(지정) - 기 공동개발	
신설			회양동	41-9	227.8		
신설			회양동	41-10	134.5		
신설			회양동	41-11	116.4		
신설			회양동	41-12	180.8		
신설			회양동	41-14	547.2		
신설			회양동	41-15	134.9		
신설			회양동	41-16	147.4		
신설			회양동	41-17	166.3		
신설	D10	9,261.8	자양동	24-2	793.2		특별계획 가능구역 9
신설			자양동	24-17	170.9	◦ 공동개발(특별지정) - 일관된 확폭계획으로 도로 연속성 확보	
신설			자양동	24-29	172.1		
신설			자양동	24-28	704.1		
신설			자양동	24-3	183.1	◦ 공동개발(특별지정) - 일관된 확폭계획으로 도로 연속성 확보	
신설			자양동	24-23	171.9		
신설			자양동	24-9	398.7	◦ 공동개발(지정) - 기 공동개발	
신설			자양동	24-16	330.6		
신설			자양동	24-31	606.3		
신설			자양동	24-5	520.7		
신설			자양동	24-4	177.5	◦ 공공동개발(특별지정) - 일관된 확폭계획으로 도로 연속성 확보	
신설			자양동	24-27	167.6		
신설			자양동	24-6	619.5		
신설			자양동	24-7	116.0	◦ 공동개발(지정) - 기 공동개발	
신설			자양동	24-8	363.6		
신설			자양동	24-20	183.1	◦ 공동개발(특별지정) - 일관된 확폭계획으로 도로 연속성 확보	
신설			자양동	24-21	171.9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지			공동개발	비고
			동	위치	면적(㎡)		
신설	D10	9,261.8	자양동	24-19	762.7	◦ 공동개발(권장) - 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특별계획 가능구역 9
신설			자양동	24-30	871.3		
신설			자양동	24-24	177.5	◦ 공동개발(특별지정) - 일관된 확폭계획으로 도로 연속성 확보	
신설			자양동	24-25	167.6		
신설			자양동	24-26	46.3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지침	비고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불허용도 공통사항 포함
건축물 밀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250% 이하 / 상한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간선변 70m 이하, 이면부 40m 이하	지침도 참조
건축물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아차산로변 3, 6m, 동일로변 3m, 이면부 1~3m ※ 자양동 8-17, 8-19의 경우 개별건축시 건축한계선 1m + 저층부 벽면한계선 1m(높이 4m 이상) 적용	지침도 참조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결정 조서에 따름	
기타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 3, 6m, 동일로변 3m, 이면부 1~3m	지침도 참조
	대지내통로	◦ 보차혼용통로 1개소	지침도 참조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원칙, 이면부에서 차량출입이 불가한 일부구간 직접차량 진출입 허용 - 차량출입구 4개소, 공동주차출입구 4개소 지정	지침도 참조

3) 인센티브 운영계획

■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구분	완화사항	비고
건폐율 완화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건폐율 완화
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1.0~1.2)×α건축물+1.0×α현금)이내 ※ 건축물 계수는 기부채납 건축물의 종류, 위치, 층수, 규모, 용도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1.0~1.2 범위 내에서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공공시설부지제공(기부채납)에 의한 건폐율 완화는 용적률 완화와 중복하여 적용 불가

■ 공동개발(특별지정) 이행시 용적률 완화

공동개발 필지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비고
2필지	10% 이하	허용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공동개발(특별지정)에 의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는 토지주가 도로(폭 2m)를 공공시설로 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적용되며, 공동개발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은 별도로 적용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토지주의 개발시점에서 자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행

※동일소유 필지는 하나의 필지로 봄. 단,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후 동일소유가 된 필지는 제외함

※부득이한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동개발(특별지정) 변경이 가능하나, 공동개발(특별지정)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아니함

■ 친환경 항목 적용시 용적률 완화

◦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

◦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1+0.7×∑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① 및 ②항목은 중복 적용불가 /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의 합은 15% 이내 (0.7 × (∑①~③) ≤ 15%)

① ZEB 인증

ZEB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완화비율	15%	14%	13%	12%	1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획득하고, 에너지자립율이 20%미만인 경우 완화비율 : 10%

②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

녹색건축인증 / 에너지효율인증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9%	6%
1 등급	6%	3%

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15%이상	20%이상	25%이상
완화비율	5%	10%	15%

④ 장수명주택인증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완화비율	15%	10%

◦ 완화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배 이내

5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공동개발 변경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5. 지정된 차량출입구 위치 변경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6.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7.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8.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Ⅲ.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신설	특별계획구역7	자양동 24-11번지 일대	1,389.7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신설	특별계획구역7	자양동 24-11번지 일대	1,389.7	◦ 개발여건이 성숙된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여 도시 전체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 당해 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신설)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389.7	-	1,389.7	100.0	
주거지역	소계	1,389.7	-	1,389.7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389.7	감)1,339.0	50.7	-	
	준주거지역	-	증)1,339.0	1,339.0	100.0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자양동 24-11번지 일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339.0	◦ 성수지역중심의 위계를 고려한 효율적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166 (25)	1,063 (51)	-	-	-	-	-	-	1	166 (25)	1,063 (51)
대로	-	-	-	-	-	-	-	-	-	-	-	-
소로	1	166 (25)	1,063 (51)	-	-	-	-	-	-	1	166 (25)	1,063 (51)

※ ( )은 특별계획구역 7 내 연장 및 면적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7	6~8 (8)	국지도로	166 (25)	자양동 16-46	자양동 16-27	일반 도로	-	-	

※ ( )은 특별계획구역 7 내 도로폭원 및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소로3-7	◦ 신설(국지도로) - B = 6~8m(8m), L = 166m(25m)	◦ 이면부 교통 및 보행환경을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폭(폭2m) 및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에 관한 결정

(1) 불허용도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동일로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1호의 단독주택(간선변에 한함)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15호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주1) 제외)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매매장, 주차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제28호의 장례시설 ◦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1호의 단독주택(간선변에 한함)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15호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주1) 제외)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매매장, 주차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제28호의 장례시설 ◦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지식산업센터를 말함

(2) 권장용도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동일로 (B)	◦ 제2호의 공동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주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주2), 임대형 기숙사)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제외), 직업훈련소, 체력단련장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의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제외), 직업훈련소 ◦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제2호의 공동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주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주2), 임대형 기숙사)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제외), 직업훈련소, 체력단련장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의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제외), 직업훈련소 ◦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주2)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조 제4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말함

(3) 건폐율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동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60% 이하	60% 이하	건축계획 58.38%

(4) 용적률 계획 결정조서(신설)

1) 용적률 계획

<table>
<tr><th>구 분</th><th>계 획 지 침</th><th>세부개발계획</th><th>비고</th></tr>
<tr><td>동일로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td><td>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td><td>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td><td>◦ 건축계획 : 398.64%</td></tr>
<tr><td colspan="4"></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3">◦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1.0~1.2)×α건축물+1.0×α현금)이내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td></tr>
<tr><td>친환경 항목 적용시
상한용적률</td><td colspan="3">◦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
◦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1+0.7×∑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① 및 ②항목은 중복 적용불가 /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의 합은 15% 이내 (0.7 × (∑①~③) ≤ 15%)
① ZEB 인증
<table>
<tr><th>ZEB등급</th><th>ZEB1</th><th>ZEB2</th><th>ZEB3</th><th>ZEB4</th><th>ZEB5</th></tr>
<tr><td>완화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r>
</table>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율이 20%미만인 경우 완화비율 : 10%
②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
<table>
<tr><th>녹색건축인증 / 에너지효율인증</th><th>최우수 (그린1등급)</th><th>우수 (그린2등급)</th></tr>
<tr><td>1+등급</td><td>9%</td><td>6%</td></tr>
<tr><td>1 등급</td><td>6%</td><td>3%</td></tr>
</table>
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table>
<tr><th>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h><th>15% 이상</th><th>20% 이상</th><th>25% 이상</th></tr>
<tr><td>완화비율</td><td>5%</td><td>10%</td><td>15%</td></tr>
</table>
④ 장수명주택인증
<table>
<tr><th>장수명주택 인증등급</th><th>최우수</th><th>우수</th></tr>
<tr><td>완화비율</td><td>15%</td><td>10%</td></tr>
</table>
◦ 완화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배 이내</td></tr>
</table>

주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이 변경됨을 전제로 적용 가능
주2)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주3)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주거와 주거외 부분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2020.5) 3-4-2.(용적률) 계획수립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을 따른다.
주4) 건축물 기부채납 면적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22.10.개정)' 에 따라 산정
※ 건축물 계수는 기부채납 건축물의 종류, 위치, 층수, 규모, 용도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1.0~1.2범위내에서 적용
※ 기부채납(도로 및 공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218.9㎡
※ 상한용적률 : 350% × (1+1.3×0.9139×0.1377+1.0×0.0415) = 421.8% / 400%이하 적용

2) 준주거지역 용적률 적용기준

■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 적용기준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준주거지역	◦ 건축계획용적률의 10% 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 건축계획용적률의 10% 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

(5) 높이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동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70m 이하	70m 이하	준주거지역 상향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배치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건축 한계선	간선도로변	◦ 동일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동일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면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고층부 벽면한계선	동일로22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7m - 고층부(20m 이상)에 한함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7m - 고층부(20m 이상)에 한함

2) 건축물의 형태·외관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형태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1층부	투시형 벽면/셔터 (규제)	◦ 1층 벽면의 50% 이상을 쇼윈도 등의 투시형 벽면(내부가 안 보이는 컬러유리·필름지 등의 설치 금지)으로 설치 ◦ 셔터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되, 셔터 설치 시 가로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셔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투시형으로 설치	◦ 1층 벽면의 50% 이상을 쇼윈도 등의 투시형 벽면(내부가 안 보이는 컬러유리·필름지 등의 설치 금지)으로 설치 ◦ 셔터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되, 셔터 설치 시 가로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셔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투시형으로 설치
	개구부 높이 조화 (규제)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과 조화롭게 조성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과 조화롭게 조성
	개구부가 없는 벽면 디자인 (규제)	◦ 도로변에 노출된 벽면은 조경, 벽화 등 장식적으로 처리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	◦ 도로변에 노출된 벽면은 조경, 벽화 등 장식적으로 처리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
	1층 바닥 높이 (규제)	◦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	◦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
		◦ 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 및 공지로부터 15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지만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친 경우 예외 인정	◦ 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 및 공지로부터 15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지만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친 경우 예외 인정

■ 건축물 재료 및 색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재료	통일성 (권장)	◦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 유지	◦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 유지
	반사성 재료 금지 (규제)	◦ 금속, 반짝이는 타일,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 사용	◦ 금속, 반짝이는 타일,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 사용
색채	조화로운 색채계획 (권장)	◦ 건축물의 주요 색채로 원색(고채도) 및 이질적 소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및 「서울시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준수	◦ 건축물의 주요 색채로 원색(고채도) 및 이질적 소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및 「서울시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준수

■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담장 및 옹벽	담장 설치 금지 (규제)	◦ 간선도로변 담장 설치 불허(단,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 위원회를 득한 경우 가능하며 이 경우 식재형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여야 함)	◦ 간선도로변 담장 설치 불허(단,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 위원회를 득한 경우 가능하며 이 경우 식재형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 광고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디자인 (규제)	◦ 「옥외광고물법」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수 ◦ 건축물과 조화되는 색상 및 재료를 사용하여 입면과 일체감을 주도록 계획하고, 작고 간결하며 여백의 미를 살리는 디자인으로 계획 ◦ 단일 건물에 여러 개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표기방식, 크기, 위치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하여 통일감 있도록 설치	◦ 「옥외광고물법」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수 ◦ 건축물과 조화되는 색상 및 재료를 사용하여 입면과 일체감을 주도록 계획하고, 작고 간결하며 여백의 미를 살리는 디자인으로 계획 ◦ 단일 건물에 여러 개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표기방식, 크기, 위치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하여 통일감 있도록 설치

나.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 내 공지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 동일로변 : 3m	◦ 동일로변 : 3m
	이면도로변	◦ 2m	◦ 2m

주) 건축한계선에 의한 대지내 공지

다.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동일로변	◦ 폭 30m이상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 폭 30m이상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라. 인센티브 운영계획 결정조서(신설)

(1) 용적률 인센티브 기본방향

1)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은 계획유도 인센티브와 중점 인센티브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운영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중점 인센티브 : 지구통합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계획 항목으로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계획

② 계획유도 인센티브 :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 유도가 필요한 항목으로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 이내로 계획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중점 인센티브 항목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이내	계획유도 항목 이행 시 (70% 이내)	중점 계획항목 이행 시 (30% 이상)	공공시설등 제공 시 등

2) **중점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획하며,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대체가 불가하다.

3) **계획유도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세부기준

■ 인센티브 유형(동일로변)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건폐율	◦ 60%
기준/허용용적률	◦ 250%/350%
인센티브 유도계획	◦ 도심주거 및 부족한 지원기능 강화 ◦ 보행환경 개선 ◦ 스마트그린시티 시스템 구축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중점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전체연면적)×0.5	◦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주차장면적 제외)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α = 개방형 2.0 = 필로티형 1.0 ※ 법적 의무면적 제외
계획유도	대지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α = 개방형 2.0 = 필로티형 1.0 ※ 법적 의무면적 제외
	지능형 건축물	지능형 건축물 인증	기준용적률×α	• 1등급~4등급으로 인증된 경우 ◦ α = 1등급 0.4 = 2등급 0.3 = 3등급 0.2 = 4등급 0.1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비율
증점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전체연면적)×0.5 = 250% × (4,484.51㎡ /6,811.26㎡) × 0.5 = 82.3%	◦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주차장면적 제외)	82.3%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α	◦ α = 개방형 2.0 = 필로티형 1.0 ※ 법적 의무면적 제외	-
계획 유도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α = 250% × (132㎡/1,339㎡) × 2.0 = 49.3%	◦ α = 개방형 2.0 ※ 간선부 미관지구 내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 시 제외(법적 의무면적 제외)	49.3%
	지능형 건축물	지능형 건축물 인증	기준용적률×α	• 1등급~4등급으로 인증된 경우 ◦ α = 1등급 0.4 = 2등급 0.3 = 3등급 0.2 = 4등급 0.1	-
합계					131.6%

■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부채납 면적	기부채납 비율	상한용적률
350%	218.9㎡	15.75%	421.8% (건축계획 398.64%)

※ 상한용적률 : 350% × (1+1.3×0.9139×0.1377+1.0×0.0415) = 421.8% / 400%이하 적용

마.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1)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공공 시설 조성 및 제공	◦ 공공기여율 : 15% 이상 ◦ 공공기여 목표 - 다양한 주거 공급 및 생활SOC 지원 / 청년혁신업무시설 확충 ◦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지역필요시설 등 예시용도 : 도전숙,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시제품공작소, 디자인스튜디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기부채납 : 218.9㎡(15.75%) - 도로(토지) : 50.7㎡ - 건축물 내 공공시설 : 168.2㎡ (건축물 및 부속토지) ◦ 설치·조성후 기부채납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2022.11)과의 정합성 및 실질적인 공공시설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부담계획 수립(공공시설 건축물로 설치·제공)

※ 특별계획구역은 공공기여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조성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함. 기부채납 비율은 구적면적에 대한 비율이므로 측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공공기여 계획에 따른 도로폭원에 대한 면적은 이행하여야 함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Ⅵ.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 및 광진구 도시계획과(☎02-450-7674)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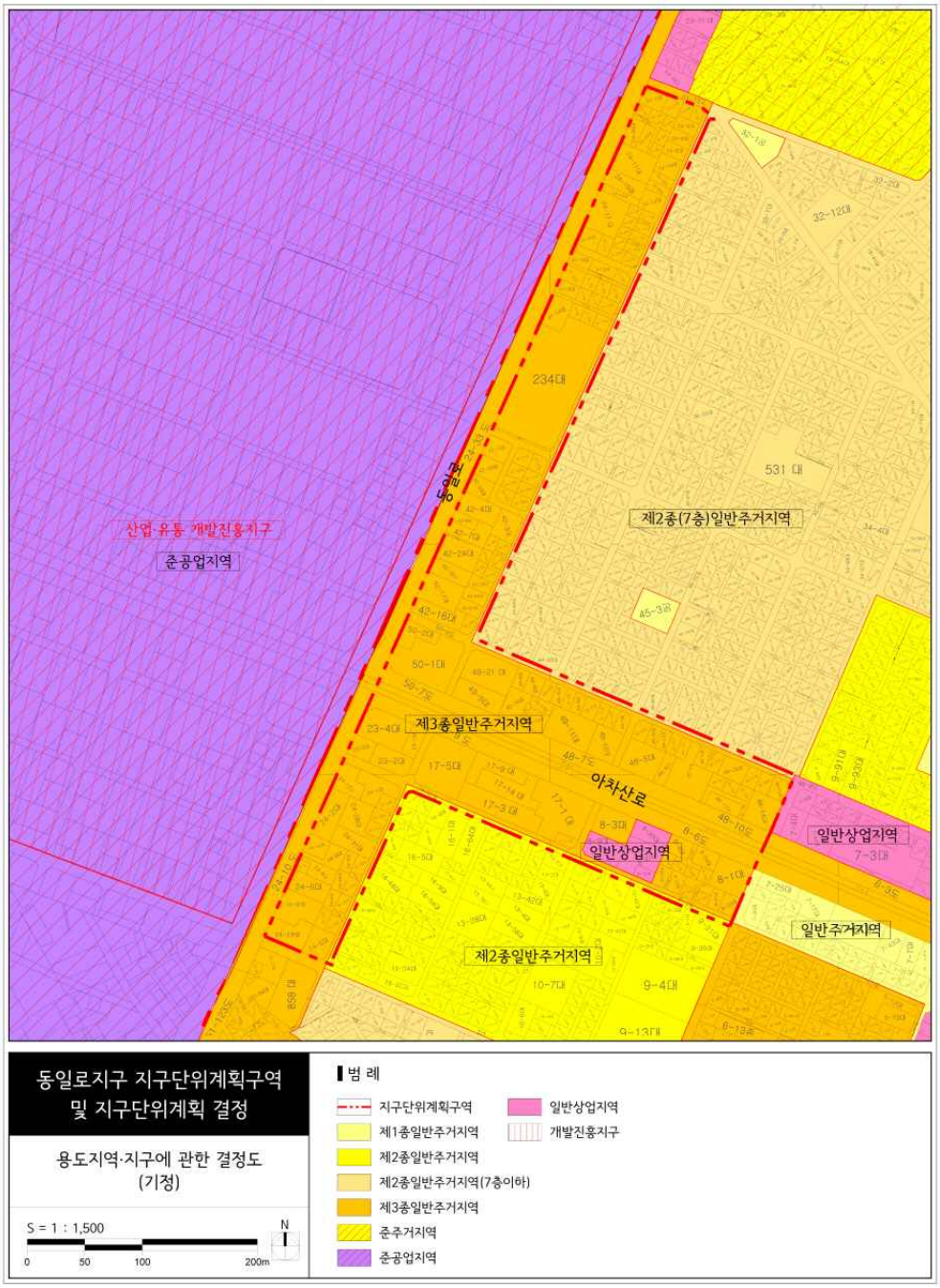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u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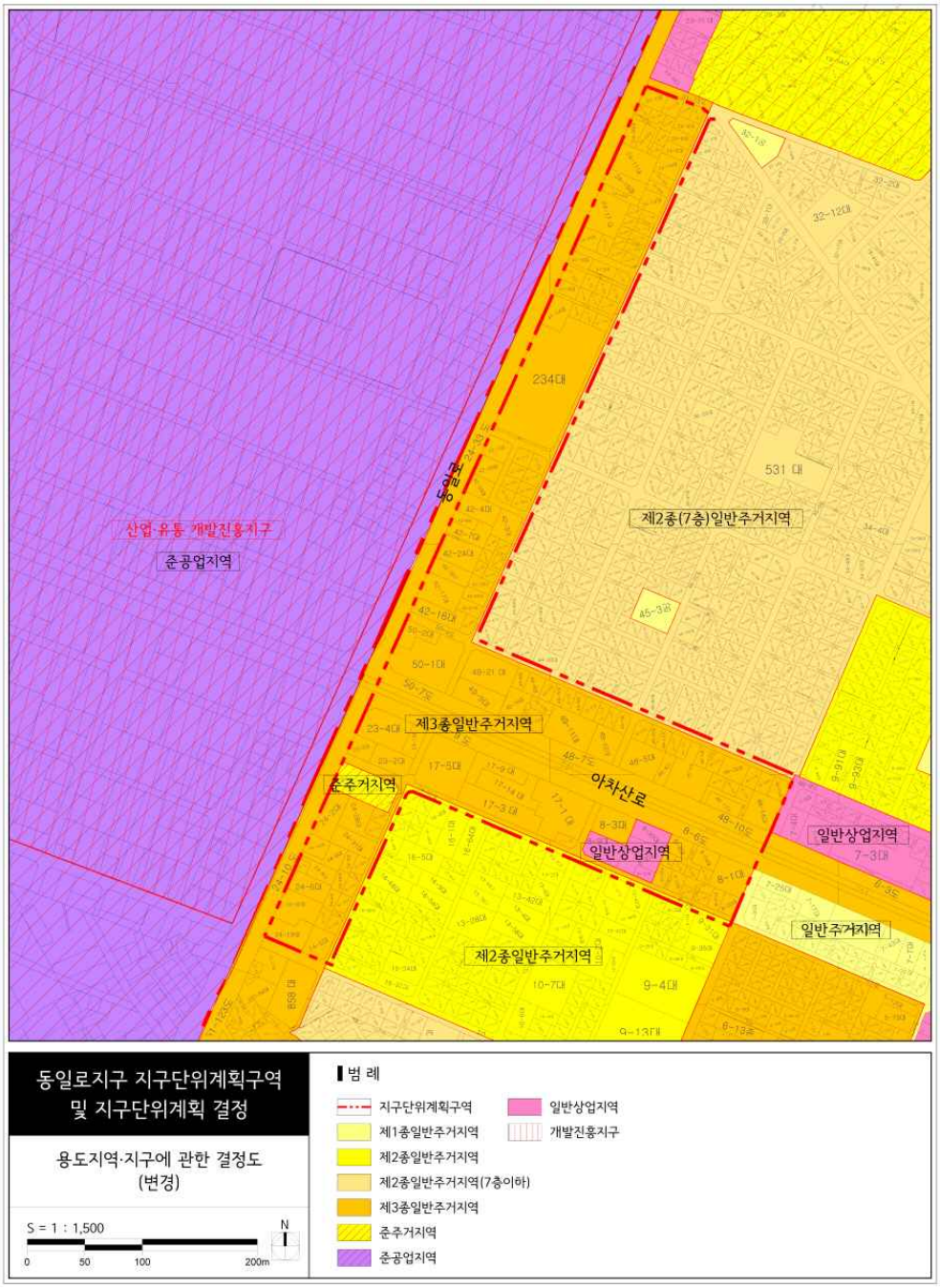
■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동일로지구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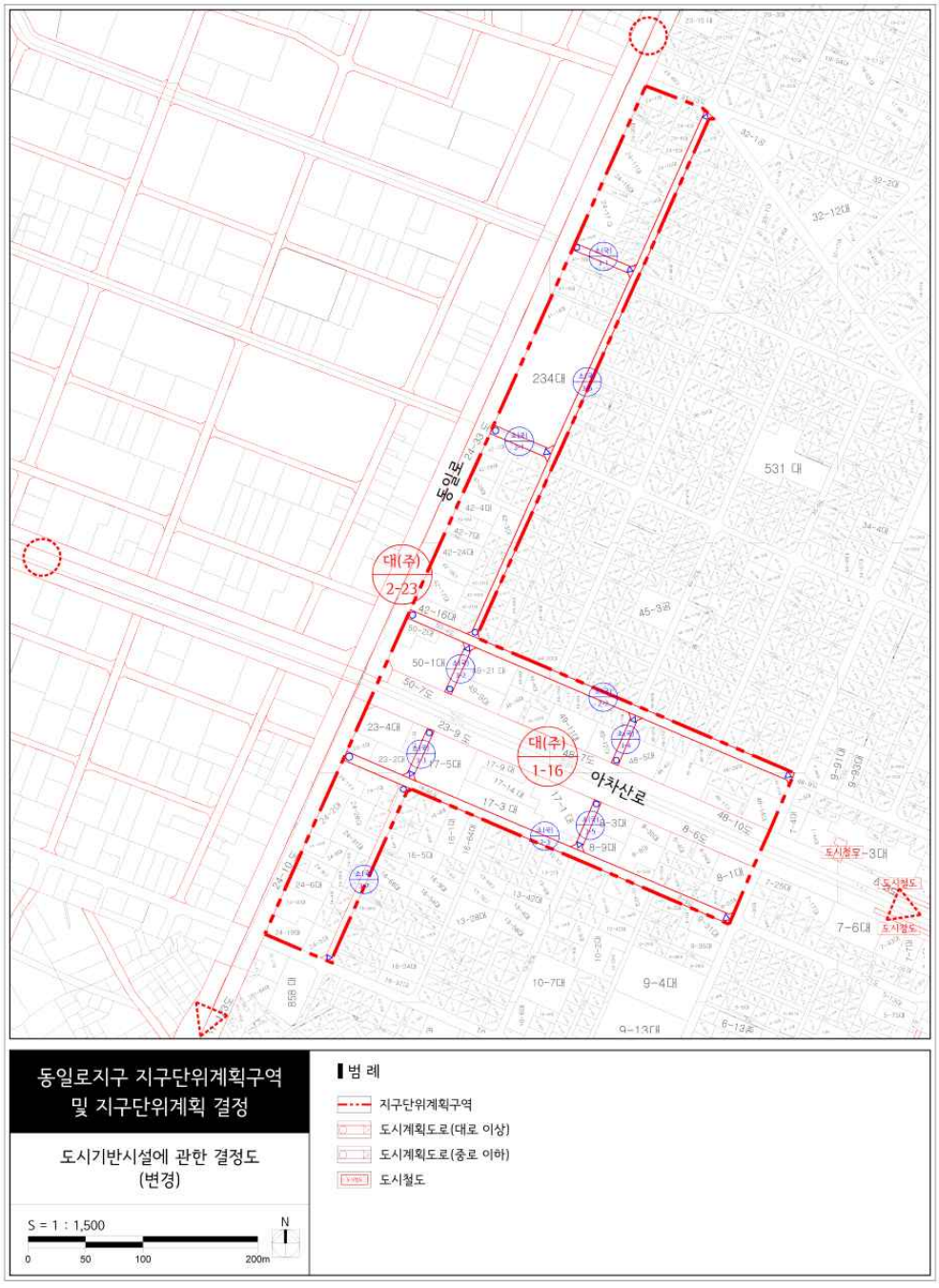
■ 동일로지구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 동일로지구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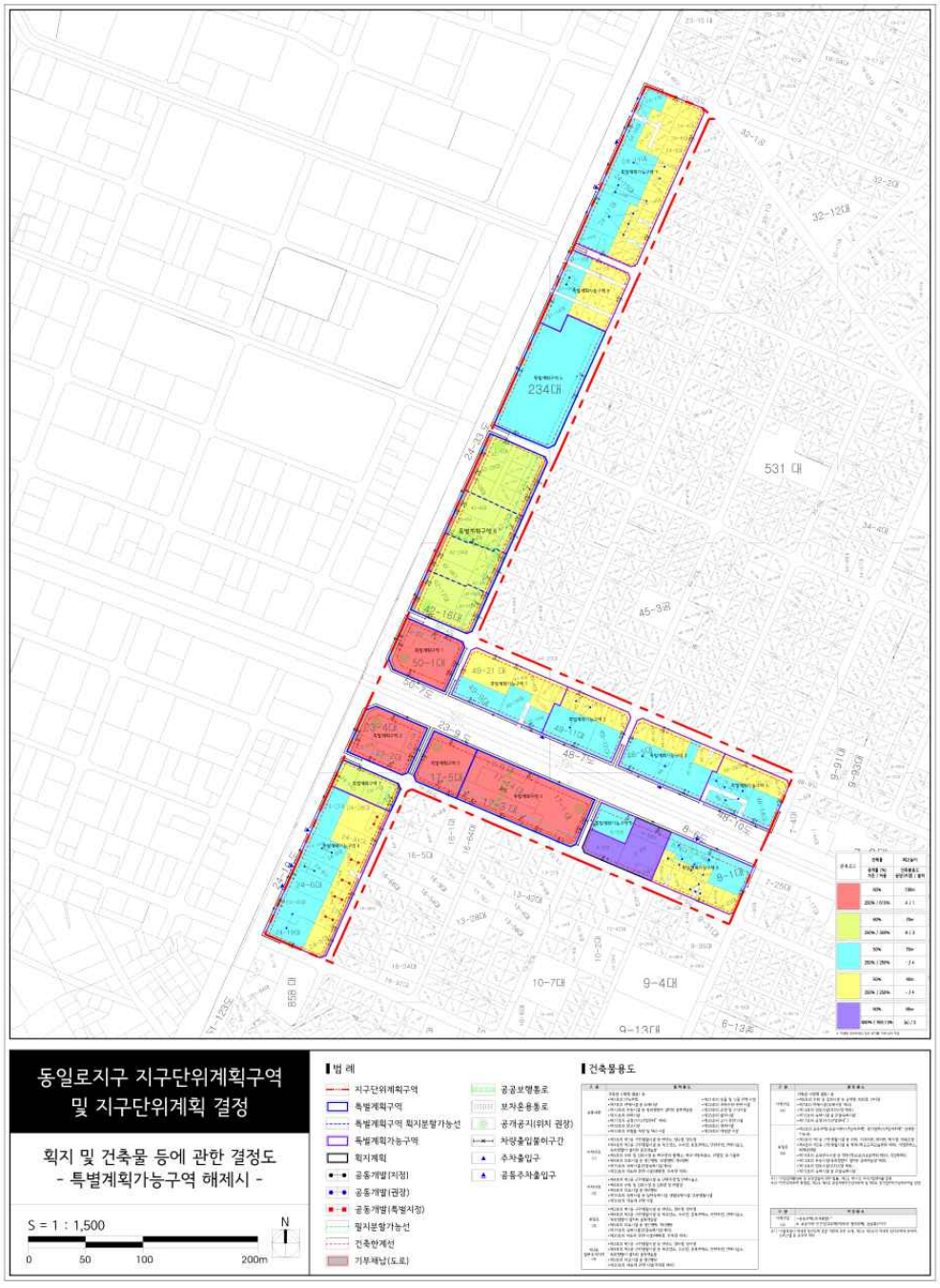
■ 동일로지구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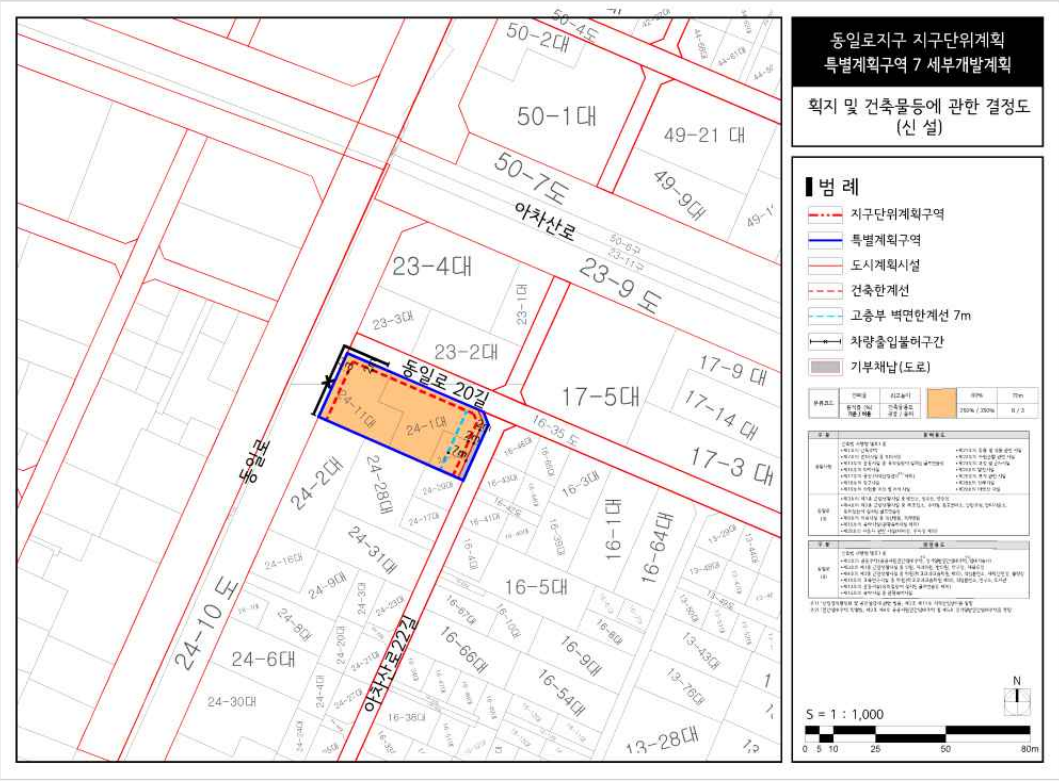
■ 동일로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동일로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지침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7호

도시관리계획(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3년 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7.1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동일로 주변 일대를 건대입구역 지구와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연계거점 및 지역균형발전 특화거점으로 육성하여 성수지역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은 주민의 개발의사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양동 50번지 일대	-	증)93,563.7㎡	93,563.7㎡	-	-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신설 - 면적 : 93,563.7㎡	◦동일로 주변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성수IT산업 개발진흥지구와 건대입구역지구의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 특화거점으로 육성하여 성수지역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광진구 자양동 8-8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9호(2021.11.25.)]

-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회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은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1.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광진구 자양동 8-8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8-8일원	2,236.9	감) 2,236.9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9호 (2021.11.25.)	-

2. 지구단위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도시기반시설			◦ 해당사항 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획지 2,236.9㎡ - 광진구 자양동 8-8, 8-9, 8-10, 8-30	
	건축물의 용도계획	지정용도	• 공동주택(복합시설) 주1)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건축물의 밀도계획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959.13%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법적용적률 이하] - 완화용적률의 50% 범위 공공임대주택 제공	
		최고높이	◦ 85m 이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6m - 이면도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2~3m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 간선도로변 : 부도부속형 전면공지 ◦ 이면도로변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구 분		내용		계획사항		완화내용	비 고
공공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공공임대주택	◦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25% 이상 – 2,236.9㎡ × 25% = 559.23㎡ 이상	◦ 부속토지면적 : 561.31㎡(25.09%) – 95세대	총 480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167세대 공공기여	기본 용적률 680% 상한 용적률 959.13%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 완화용적률(254.18%)의 50% 공공임대주택 제공 ※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704.95%)	◦ 추가공공기여 : 127.11%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2,843.27㎡(127.11%) [완화용적률 254.18%의 50% : 127.09%] – 72세대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 10% 이상 20% 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주거 : 비주거 = 88.81% : 11.19% (용적률 기준)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20㎡ ~ 60m 내외 – 1인(셰어형 포함) 세대 : 실사용면적 25㎡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실사용면적 45㎡ 이상		◦ 1인 세대 : 전용 20.17㎡, 20.40㎡(408세대) ◦ 2인 세대 : 전용 41.25㎡, 42.17㎡ (72세대)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 100호 미만 : 100㎡ 이상 ◦ 100 ~ 300호 미만 : 150㎡ 이상 ◦ 300 ~ 364호 미만 : 200㎡ 이상 ◦ 364호 이상 : (전체건립호–299호) × 2.5 × 1.25		◦ 지상24층 585.88㎡ 계획(480세대)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 공공기여계획

구 분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	공공기여 계획	비 고
공공임대주택	기본용적률 (부지면적)	680% 이하	부지면적의 25% 이상 (559.23㎡ 이상)	◦ 부속토지면적 : 561.31㎡(25.09%) –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 2,298.31㎡(95세대)	총 480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167세대 계획
	상한용적률 (연면적)	959.13% 이하	완화용적률 1/2 이상 주2) (959.13–704.95)/2 =127.09%이상 (2,842.88㎡이상)	◦ 공공임대주택 제공 연면적 : 2,843.27㎡(72세대)	
공공시설		–	지상3층 공공시설(청년지원센터) 조성 후 기부채납	◦ 연면적 : 433.81㎡	

주2) 완화용적률 : 계획용적률(959.13%) –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704.95%) = 254.18%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93,563.7	-	93,563.7	100.0	
주거지역	소계	91,326.8	-	91,326.8	97.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749.7	-	2,749.7	2.9	
	제2종일반주거지역	1,741.1	-	1,741.1	1.9	
	제3종일반주거지역	86,836.0	감) 1,339.0	85,497.0	91.4	
	준주거지역	0.0	증) 1,339.0	1,339.0	1.4	
상업지역	소계	2,236.9	-	2,236.9	2.4	
	일반상업지역	2,236.9	-	2,236.9	2.4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내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 일반상업지역)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 가능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변 경 내 용		면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자양동 24-11번지 일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339.0	◦개발여건이 성숙된 특별계획구역 7을 성수지역중심의 위계를 고려한 효율적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2	2,080	23,823	1	364	12,704	4	811	5,560	7	905	5,559
대로	2	391	12,846	1	364	12,704	1	27	142	-	-	-
소로	10	1,689	10,977	-	-	-	3	784	5,418	7	905	5,559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도로	5,910(364)	행당동(자양동 23-4)	자양동강변(자양동 8-1)	일반도로	-	건고제738호(63.12.24)	아차산로
기정	대로	2	23	30~39	주간선도로	6,500(27)	면목동(화양동 24-1)	성수동(자양동 24-19)	일반도로	-	건고제738호(63.12.24)	동일로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56	화양동 42-1	화양동 42-27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363	화양동 50-2	화양동 48-25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365	자양동 23-3	자양동 8-2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56	화양동 41-3	화양동 41-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2	6	국지도로	46	화양동 49-9	화양동 49-2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3	6	국지도로	46	자양동 23-1	자양동 23-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4	6	국지도로	46	화양동 49-12	화양동 49-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5	6	국지도로	46	자양동 17-1	자양동 17-1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6	6	국지도로	499	화양동 44-68	화양동 31-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7	6~8	국지도로	166	자양동 16-46	자양동 16-27	일반도로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2-1	◦ 신설(국지도로) - B = 8m, L = 56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	소로2-2	◦ 신설(국지도로) - B = 8m, L = 363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	소로2-3	◦ 신설(국지도로) - B = 8m, L = 365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	소로3-1	◦ 신설(국지도로) - B = 6m, L = 56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	소로3-2	◦ 신설(국지도로) - B = 6m, L = 46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	소로3-3	◦ 신설(국지도로) - B = 6m, L = 46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	소로3-4	◦ 신설(국지도로) - B = 6m, L = 46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	소로3-5	◦ 신설(국지도로) - B = 6m, L = 46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	소로3-6	◦ 신설(국지도로) - B = 6m, L = 499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	소로3-7	◦ 신설(국지도로) - B= 6~8m, L = 166m	◦ 이면부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구간 도로 확폭(폭2m) 및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결정조서(신설)

구 분	가구번호	위치	면 적 (㎡)	비 고
신설	D1	화양동 50-1 번지 일대	2,584.8	
	D2	화양동 49-21 번지 일대	6,963.6	
	D3	화양동 48-3 번지 일대	6,620.5	
	D4	자양동 23-4 번지 일대	2,549.4	
	D5	자양동 17-5 번지 일대	7,037.4	
	D6	자양동 8-1 번지 일대	6,630.4	
	D7	화양동 24-17 번지 일대	8,446.0	
	D8	화양동 234 번지 일대	9,303.7	
	D9	화양동 42-16 번지 일대	9,479.8	
	D10	자양동 24-30 번지 일대	9,261.8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 가구 10개소 신설	◦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블록에 대해 금회 가구로 결정

나. 획지 및 공동개발 등에 대한 결정조서(신설)

(1) 획지계획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획지(㎡)		비 고
				면적	계	
신설	D6	①	자양동 8-8	867.8	2,236.9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자양동 8-9	697.9		
			자양동 8-10	166.6		
			자양동 8-30	504.6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획지 1개소 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9호(2021.11.25.)로 기결정된 획지계획 반영

(2) 공동개발 등에 대한 결정조서

- 대상지 전구역이 획지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되어 별도의 공동개발계획 미수립, 단,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적용되는 지침은 별도 기재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가. 불허용도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통사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1호의 단독주택(간선변에 한함)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주1] 제외)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제28호의 장례시설 ◦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아차산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매매장, 주차장 제외)	일반상업지역 상향지역
아차산로(2)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동일로(3)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제15호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매매장, 주차장 제외)	준주거지역 상향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4)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적용되는 용도계획

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지식산업센터를 말함

※불허용도 아차산로(1), 동일로(3)은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적용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 관련 법령 및 주변여건에 따른 불허용도 설정	◦ 구역 내 불건전 및 부적합 용도 불허 ◦ 주변여건을 고려한 가로활성화 저해 요소 불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9호(2021.11.25.)로 기결정된 불허용도계획 반영(역세권 청년주택 부지)

나. 권장용도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아차산로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주1])	일반상업지역 상향지역
동일로 (B)	◦ 제2호의 공동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주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주2], 임대형 기숙사)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제외), 직업훈련소, 체력단련장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의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제외), 직업훈련소 ◦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준주거 지역 상향지역

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지식산업센터를 말함
주2)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조 제4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말함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 가로특성 및 계획방향을 감안한 권장용도 신설	◦ 아차산로변의 경우 상업·업무·문화 중심의 복합개발을 통한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용도 권장 ◦ 동일로변의 경우 도심주거 및 부족한 업무지원·생활 편익 용도 권장

다. 지정용도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아차산로 (a)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 지정용도 계획 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9호(2021.11.25.)로 기결정된 지정용도계획 반영(역세권 청년주택 부지)

라. 건폐율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건폐율	비고
아차산로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상향지역
동일로	60% 이하	준주거지역 상향지역
	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화양동 현대아파트부지)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 건폐율 계획 신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을 반영하여 건폐율 계획 수립

마. 용적률 계획 결정조서(신설)

(1) 용적률 계획

구 분	용적률	비고
아차산로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주1]
	기본용적률 680% 이하 / 상한용적률 959.13%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주2]
동일로	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주1]
	기준 250% 이하 / 허용 250% 이하 / 상한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화양동 현대아파트부지[주3])
상한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 허용용적률×(1+1.3×가중치×$\alpha_{토지}$+(1.0~1.2)×$\alpha_{건축물}$+1.0×$\alpha_{현금}$)이내 ※ 건축물 계수는 기부채납 건축물의 종류, 위치, 층수, 규모, 용도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1.0~1.2 범위 내에서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alpha_{토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alpha_{건축물}$: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alpha_{현금}$: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친환경 항목 적용시 상한용적률	◦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 ◦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1+0.7×∑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ß)

※ ① 및 ②항목은 중복 적용불가 /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의 합은 15% 이내 (0.7 × (Σ①~③) ≤ 15%)

① ZEB 인증

ZEB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완화비율	15%	14%	13%	12%	1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율이 20%미만인 경우 완화비율 : 10%

②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

녹색건축인증 / 에너지효율인증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9%	6%
1 등급	6%	3%

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완화비율	5%	10%	15%

④ 장수명주택인증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완화비율	15%	10%

◦ 완화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배 이내

주1)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이 변경됨을 전제로 적용가능
주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용기준 준용,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법적용적률 이하) 적용 (완화용적률의 50% 범위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3) 화양동 현대아파트부지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사업방식에 따른 관련 법령 및 지침 적용
주4)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주5)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주거와 주거외 부분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2020.5) 3-4-2.(용적률) 계획수립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을 따른다.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 용적률 계획 신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여 용적률 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9호(2021.11.25.)로 기결정된 용적률계획 반영(역세권 청년주택 부지)

(2) 준주거지역 용적률 적용기준

■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 적용기준

구 분	비주거용도 비율	비 고
준주거지역	◦ 건축계획용적률의 10% 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다.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만큼 허용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물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 주택 제외) 비율은 전체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도입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계획한다.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을 적용하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높이완화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3)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적용기준

■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 적용기준

구 분	비주거용도 비율	비 고
일반상업지역	◦ 건축계획용적률의 10% 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용적률계획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적용기준"을 적용하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에 따르되, 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중 주거용 용적률은 다음을 적용한다.

구분	산식
허용용적률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허용용적률 × (주거용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상한용적률 증가량**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상한용적률 증가량 × (주거용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상한용적률 증가량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 나목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다음의 산식 이하로 적용한다.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주거부문 용적률* / 상업지역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 나목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용적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4) 광진구 자양동 8-8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용적률 적용 기준(의무사항)

구 분		내용		계획사항		완화내용	비 고
공공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공공임대주택	◦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25% 이상 - 2,236.9㎡ × 25% = 559.23㎡ 이상	◦ 부속토지면적 : 561.31㎡(25.09%) - 95세대	총 480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167세대 공공기여	기본 용적률 680% 상한 용적률 959.13%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 완화용적률(254.18%)의 50% 공공임대주택 제공 ※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704.95%)	◦ 추가공공기여 : 127.11%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2,843.27㎡(127.11%) [완화용적률 254.18%의 50% : 127.09%] - 72세대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 10% 이상 20% 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주거 : 비주거 = 88.81% : 11.19% (용적률 기준)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20㎡ ~ 60m 내외 - 1인(셰어형 포함) 세대 : 실사용면적 25㎡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실사용면적 45㎡ 이상		◦ 1인 세대 : 전용 20.17㎡, 20.40㎡(408세대) ◦ 2인 세대 : 전용 41.25㎡, 42.17㎡ (72세대)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 100호 미만 : 100㎡ 이상 ◦ 100 ~ 300호 미만 : 150㎡ 이상 ◦ 300 ~ 364호 미만 : 200㎡ 이상 ◦ 364호 이상 : (전체건립호-299호) × 2.5 × 1.25		◦ 지상24층 585.88㎡ 계획 (480세대)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 공공기여계획

구 분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	공공기여 계획	비 고
공공임대주택	기본용적률 (부지면적)	680% 이하	부지면적의 25% 이상 (559.23㎡ 이상)	◦ 부속토지면적 : 561.31㎡(25.09%) -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 2,298.31㎡(95세대)	총 480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167세대 계획
	상한용적률 (연면적)	959.13% 이하	완화용적률 1/2 이상 주1) (959.13-704.95)/2 =127.09%이상 (2,842.88㎡이상)	◦ 공공임대주택 제공 연면적 : 2,843.27㎡(72세대)	
공공시설		-	지상3층 공공시설(청년지원센터) 조성 후 기부채납	◦ 연면적 : 433.81㎡	

주1) 완화용적률 : 계획용적률(959.13%) -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704.95%) = 254.18%

바. 높이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최고높이	비고
아차산로	100m 이하	일반상업지역 상향지역
	85m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80m 이하	일반상업지역 상향지역
동일로	70m 이하	준주거지역 상향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 높이계획 신설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고려한 계획 수립 ◦ 용도지역, 접도조건, 이면부 일조권 침해 최소화 등 지역 특성 및 주변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9호(2021.11.25.)로 기결정된 높이계획 반영(역세권 청년주택 부지)

사.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배치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고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 아차산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동일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면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3m	
고층부 벽면한계선	동일로20길변 동일로22길변 아차산로21길변 아차산로22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7m - 고층부(20m 이상)에 한함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건축물 배치계획 신설	◦ 연속적 가로경관 형성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 구역내·외 밀도 및 높이 차이를 고려하여 공간적 완충공간 조성을 위해 이면부 고층부 벽면한계선 지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9호(2021.11.25.)로 기결정된 건축물배치계획 반영(역세권 청년주택 부지)

(2) 건축물의 형태·외관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 형태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전체	분절 및 분할 (권장)	◦ 건축물의 파사드가 단조롭고 폐쇄적인 벽면이 되지 않도록 재료구분, 창호디자인, 상하부 구분 등의 입면의 분절요소를 활용하여 풍부한 입면 디자인 권장	아차산로변 동일로20길변 동일로22길변
	발코니/난간 디자인 (권장)	◦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개방형 발코니, 돌출형 발코니, 측면 발코니 등 다양한 유형을 활용하여 입면을 변화있게 계획 ◦ 난간의 형태 및 재료에 따라 입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	간선변
	측면 이격공지의 처리 (권장)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으로 차폐 ◦ 그 외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공개공간으로 조성	간선변
1층부	투시형 벽면/셔터 (규제)	◦ 1층 벽면의 50% 이상을 쇼윈도 등의 투시형 벽면(내부가 안 보이는 컬러유리 · 필름지 등의 설치 금지)으로 설치 (단, 아차산로변의 경우 70% 이상 권장) ◦ 셔터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되, 셔터 설치 시 가로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셔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투시형으로 설치	간선변 동일로20길변 동일로22길변
	1층 높이 (규제)	◦ 1층 층고 제한 4.5m 이상	아차산로변
	개구부 높이 조화 (규제)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과 조화롭게 조성	간선변
	개구부가 없는 벽면 디자인 (규제)	◦ 도로변에 노출된 벽면은 조경, 벽화 등 장식적으로 처리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	동일로20길변 동일로22길변
	1층 바닥 높이 (규제)	◦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	전구역
		◦ 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 및 공지로부터 15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지만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친 경우 예외 인정	간선변 동일로20길변 동일로22길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지붕부	평지붕 (권장)	◦ 에너지 절약 측면의 열섬효과 방지를 위해 전체 면적의 40% 이상 옥상녹화 또는 텃밭, 정원으로 조성 권장 ◦ 고층부 벽면한계선에 의해 후퇴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개방감 확보 및 이용객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조성 권장	전구역
	파라펫 차폐 디자인 (권장)	◦ 건축물 옥상부에 FRP물탱크, 실외기 등의 설비시설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건축물과 일체화된 디자인의 차폐시설 설치	전구역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건축물 형태계획 신설	◦ 다채롭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물 형태계획 수립 ◦ 아차산로 및 동일로20길, 동일로22길 변의 경우 고가철도 및 특화가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로의 개방감 확보 및 다양한 입면이 계획가능토록 건축물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2) 건축물 재료 및 색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재료	통일성 (권장)	◦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 유지	전구역
	반사성 재료 금지 (규제)	◦ 금속, 반짝이는 타일,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 사용	전구역
	조화로운 천연재료 사용 (권장)	◦ 외벽은 목재나 석재 등 천연 그대로의 재료 사용 권장 ◦ 건물 저층부의 경우 보행자의 시선을 배려하여 시각적인 깊이와 입체감이 있는 소재(벽돌, 루버, 송판 노출콘크리트, 스터코 등 실감 및 패턴이 있는 소재) 사용 권장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 고려	아차산로변
색채	조화로운 색채계획 (권장)	◦ 건축물의 주요 색채로 원색(고채도) 및 이질적 소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및 「서울시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준수	전구역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건축물 재료 및 색채계획 신설	◦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물 색채계획 수립 ◦ 아차산로변의 경우 고차철도를 감안하여 보행자의 시각을 고려한 재료 및 색채 사용 권장

3)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양 설치	수평분할요소 적용 후 어닝 설치 (권장)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사인존(Sign Zone), 출입문 및 디스플레이 윈도우를 설치하는 윈도우존(Window Zone), 어닝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차양존(Awning Zone)으로 1층 부 수평분할요소를 적용	간선변 동일로20길변 동일로22길변
		◦ 보행자의 이동 및 이용편의를 위한 가변형 공간 및 캐노피(어닝 포함) 등의 설치를 권장, 단, 건축한계선을 넘어서 설치 불가	간선변
중저층 입면	입면디자인 (권장)	◦ 고가철도에서 바라보는 삭막한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3~4층 높이내 LED 전광판, 개방형 공간(옥상정원, 테라스 등), 투시형 벽면 등 설치 권장	아차산로변
담장 및 옹벽	담장 설치 금지 (규제)	◦ 간선도로변 담장 설치 불허(단,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득한 경우 가능하며 이 경우 식재형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여야 함)	간선변
옥외 광고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디자인 (규제)	◦ 「옥외광고물법」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수 ◦ 건축물과 조화되는 색상 및 재료를 사용하여 입면과 일체감을 주도록 계획하고, 작고 간결하며 여백의 미를 살리는 디자인으로 계획 ◦ 단일 건물에 여러 개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표기방식, 크기, 위치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하여 통일감 있도록 설치	전구역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 조명 설치 (권장)	◦ 간선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에 대해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설치 권장 ◦ 용적률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치	간선변
탑상형 건축물	탑상형 건축물	◦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형태는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탑상형을 권장, 단, 특별계획가능구역 1~4의 경우 이면부 일조침해를 최소화하고 고층부 통경축 확보 및 시각적 차폐 완화를 위해 탑상형 건축물 준수 ◦ 탑상형 건축물은 건축물의 장변에 대한 단면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고, 건폐율 40% 이하로 건축 권장 ◦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5층 이상의 부분에 대해 건축물의 장변과 단면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고 그 부분의 건폐율이 40% 이하로 건축할 것을 권장	간선변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가로경관계획 신설	◦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가로경관계획 수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 내 공지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고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 아차산로변 : 6m ◦ 동일로변 : 3m	건축한계선에 의한 대지 내 공지
	이면도로변	◦ 2~3m	
공개공지	간선도로변	◦ 17개소 위치 권장	특별계획(가능)구역내 주요 결절부 위치 권장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 대지 내 공지 계획 신설	◦ 보행환경 개선 및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전면공지 계획 및 공개공지 위치 권장

나. 대지 내 통로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고
공공보행통로	간선도로변	◦ 6개소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공공보행통로 6개소 신설	◦ 통합개발에 따른 간선이면 가로단절 최소화 및 아차산로와 특화거리 연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신설

다.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아차산로변 동일로변	◦ 폭 30m이상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 차량출입불허구간 계획 신설	◦ 간선가로에서의 차량출입 최소화를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라.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적용기준	비고
자연지반보존	◦ 지하수 및 생태면적 확보,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자연지반 보존을 권장	
옥상녹화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2017.12.)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벽면녹화	◦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 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신 · 재생 에너지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령’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녹색주차장	◦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생태면적률	◦ 건축물의 신축 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능형 건축물	◦ ‘건축법 제65조의 2’,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설치 권장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 환경친화적 건축물 계획 신설	◦ 정책 및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구역내 친환경 요소 도입을 위해 계획 신설

마. 기존 건축물에 관한 사항

기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적용기준	비고
증축	◦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적용 –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로서 500㎡ 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하되, 증축되는 면적이 50㎡ 이내인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은 동별 및 누계로 산정한다)	
개축 및 재축	◦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적용	
대수선	◦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중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적용	
용도변경	◦ 용도변경을 하고자하는 부분의 용도계획은 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개보수 (리모델링)	◦ 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여부를 결정함	

■ 결정 사유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 기존 건축물 계획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운영지침 신설

4. 인센티브 운영계획 결정조서(신설)

가. 용적률 인센티브 기본방향

1)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은 계획유도 인센티브와 중점 인센티브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운영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중점 인센티브 : 지구통합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계획 항목으로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계획

② 계획유도 인센티브 :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 유도가 필요한 항목으로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 이내로 계획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중점 인센티브 항목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이내	계획유도 항목 이행 시 (70% 이내)	중점 계획항목 이행 시 (30% 이상)	공공시설등 제공 시 등

2) **중점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획하며,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대체가 불가하다.

3) **계획유도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세부기준

■ 인센티브 유형 1 (아차산로변)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 60%	
기준/허용용적률			◦ 250%/610%	
인센티브 유도계획			◦ 중심기능 강화 ◦ 휴게공간 확충 및 가로활성화 유도 ◦ 아차산로변 가로경관 개선 및 개방감 확보 ◦ 스마트그린시티 시스템 구축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중점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전체연면적)×2	◦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주차장면적 제외)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α = 개방형 3.0 = 필로티형 1.5 ※ 법적 의무면적 제외
계획유도	대지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α = 개방형 3.4 = 필로티형 1.7 ※ 법적 의무면적 제외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	기준용적률×0.5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가로경관계획 준수시
	지능형 건축물	지능형 건축물 인증	기준용적률×α	• 1등급~4등급으로 인증된 경우 ◦ α = 1등급 0.5 = 2등급 0.4 = 3등급 0.3 = 4등급 0.2

■ 인센티브 유형 2 (동일로변)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건폐율			◦ 60%	
기준/허용용적률			◦ 250%/350%	
인센티브 유도계획			◦ 도심주거 및 부족한 지원기능 강화 ◦ 보행환경 개선 ◦ 스마트그린시티 시스템 구축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중점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전체연면적) ×0.5	◦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주차장면적 제외)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α = 개방형 2.0 = 필로티형 1.0 ※ 법적 의무면적 제외
계획 유도	대지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α = 개방형 2.0 = 필로티형 1.0 ※ 법적 의무면적 제외
	지능형 건축물	지능형 건축물 인증	기준용적률×α	• 1등급~4등급으로 인증된 경우 ◦ α = 1등급 0.4 = 2등급 0.3 = 3등급 0.2 = 4등급 0.1

4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신설	특별계획구역 1	화양동 50-1번지 일대	2,584.8	
신설	특별계획구역 2	자양동 23-4번지 일대	2,549.4	
신설	특별계획구역 3	자양동 17-5번지	1,904.8	
신설	특별계획구역 4	자양동 17-1번지 일대	5,132.6	
신설	특별계획구역 5	화양동 234번지	5,983.3	
신설	특별계획구역 6	화양동 42-4번지 일대	9,479.8	분할시행 가능
신설	특별계획구역 7	자양동 24-11번지 일대	1,389.7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결정 사유
신설	특별계획구역 1	화양동 50-1번지 일대	2,584.8	◦ 상위/관련계획 및 지역여건을 감안, 성수~건대간 도시기능을 연계하고 지역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 계획의 실현성 증대를 위해 분할시행가능토록 획지분할가능선 계획
신설	특별계획구역 2	자양동 23-4번지 일대	2,549.4	
신설	특별계획구역 3	자양동 17-5번지	1,904.8	
신설	특별계획구역 4	자양동 17-1번지 일대	5,132.6	
신설	특별계획구역 6	화양동 42-4번지 일대	9,479.8	
신설	특별계획구역 7	자양동 24-11번지 일대	1,389.7	
신설	특별계획구역 5	화양동 234번지	5,983.3	◦ 아파트부지로 향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시를 감안한 지침 수립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신설)

■ 특별계획구역 1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화양동 50-1번지 일대	
면적			◦ 2,584.8㎡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10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동일로변 3m, 이면부 2~3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동일로변 3m, 이면부 2~3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권장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 2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자양동 23-4번지 일대	
면적			◦ 2,549.4㎡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10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동일로변 3m, 이면부 2~3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0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동일로변 3m, 이면부 2~3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권장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 3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자양동 17-5번지	
면적			◦ 1,904.8㎡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10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0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권장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 4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자양동 17-1번지 일대	
면적			◦ 5,132.6㎡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10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0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2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6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 5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화양동 234번지	
면적			◦ 5,983.3㎡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4) (제3종일반주거지역)	
	권장용도		–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250% 이하 / 상한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7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3m, 이면부 2~3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아차산로21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동일로변 3m, 이면부 2~3m	지침도 참조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리모델링 사업시에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을 준수하되, 간선변의 개방감 확보 및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한 지침 마련 – 동일로변 담장 허물기 및 건축선 후퇴부분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배치 – 1층부 지역공유시설 및 상업용도 등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 6

구분			통합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위치			◦ 화양동 42-4번지 일대	
면적			◦ 9,479.8㎡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3) (동일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B) (동일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7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아차산로21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2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6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다양한 주거 공급 및 생활SOC 지원 / 청년혁신업무시설 확충	
	공공기여율		◦ 15% 이상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지역필요시설 등 - 예시용도 : 도전숙,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시제품공작소, 디자인스튜디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구분			분할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특별계획구역 6-A	특별계획구역 6-B	특별계획구역 6-C	특별계획구역 6-D	
면적			◦ 3,057.6㎡	◦ 2,201.7㎡	◦ 2,054.9㎡	◦ 2,165.6㎡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3) (동일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B) (동일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7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아차산로21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6-A : 1개소 위치 권장 ◦ 6-D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6-B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공공보행통로와 현황도로 연계) ◦ 6-C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 가장 좁은 폭이 3m 이상 되도록 조성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다양한 주거 공급 및 생활SOC 지원 / 청년혁신업무시설 확충				
	공공기여율		◦ 15% 이상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지역필요시설 등 - 예시용도 : 도전숙,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시제품공작소, 디자인스튜디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 7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자양동 24-11번지 일대	
면적			◦ 1,389.7㎡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3) (동일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B) (동일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7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아차산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다양한 주거 공급 및 생활SOC 지원 / 청년혁신업무시설 확충	
	공공기여율		◦ 15% 이상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지역필요시설 등 - 예시용도 : 도전숙,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시제품공작소, 디자인스튜디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2.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1	화양동 49-21번지 일대	4,023.1	분할시행가능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2	화양동 49-11번지 일대	2,940.5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3	화양동 48-3번지 일대	3,644.5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4	화양동 48-14번지 일대	2,976.0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5	자양동 8-3번지 일대	827.6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6	자양동 8-1번지 일대	3,565.9	분할시행가능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7	화양동 24-17번지 일대	8,446.0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8	화양동 41-14번지 일대	3,320.4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9	자양동 24-30번지 일대	7,922.8	분할시행가능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결정 사유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1	화양동 49-21번지 일대	4,023.1	◦ 상위/관련계획 및 지역여건을 감안, 성수~건대간 도시기능을 연계하고 지역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주민동의 등에 따라 계획 실현의 장기화를 감안하여 추후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 ◦ 계획의 실현성 증대를 위해 분할시행 가능토록 획지분할가능선 계획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2	화양동 49-11번지 일대	2,940.5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3	화양동 48-3번지 일대	3,644.5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4	화양동 48-14번지 일대	2,976.0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5	자양동 8-3번지 일대	827.6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6	자양동 8-1번지 일대	3,565.9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7	화양동 24-17번지 일대	8,446.0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8	화양동 41-14번지 일대	3,320.4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9	자양동 24-30번지 일대	7,922.8	

나.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시기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시기	◦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에 대한 효력은 잃으며 이 경우 일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행위 가능 ◦ 단, 주민요청(대상 토지 면적의 1/2이상 동의) 및 입안권자(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자문(자치구 포함)을 거쳐 2년이내(총 5년 범위이내)에서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신설)

■ 특별계획가능구역 1

구분			통합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위치			◦ 화양동 49-21번지 일대	
면적			◦ 4,023.1㎡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8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구분			분리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특별계획가능구역 1-A	특별계획가능구역 1-B	
면적			◦ 2,022.8㎡	◦ 2,000.3㎡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8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A : 1개소 위치 권장 ◦ 1-B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1-B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2

구분			통합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위치			◦ 화양동 49-11번지 일대	
면적			◦ 2,940.5㎡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8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구분			분할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특별계획가능구역 2-A	특별계획가능구역 2-B	
면적			◦ 1,720.6㎡	◦ 1,219.9㎡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8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2-A : 1개소 위치 권장 ◦ 2-B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2-A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3

구분			통합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위치			◦ 화양동 48-3번지 일대	
면적			◦ 3,644.5㎡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8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구분			분리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특별계획가능구역 3-A	특별계획가능구역 3-B	
면적			◦ 2,109.6㎡	◦ 1,534.9㎡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8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3-A : 1개소 위치 권장 ◦ 3-B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3-B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4

구분			통합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위치			◦ 화양동 48-14번지 일대	
면적			◦ 2,976.0㎡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8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구분			분리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특별계획가능구역 4-A	특별계획가능구역 4-B	
면적			◦ 1,716.9㎡	◦ 1,259.1㎡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8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4-A : 1개소 위치 권장 ◦ 4-B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4-A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5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자양동 8-3번지 일대	
면적			◦ 827.6㎡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10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6

구분			통합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위치			◦ 자양동 8-1번지 일대	
면적			◦ 3,565.9㎡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10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0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권장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구분			분리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특별계획가능구역 6-A	특별계획가능구역 6-B	
면적			◦ 2,230.7㎡	◦ 1,335.2㎡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아차산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A) (아차산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61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10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일로20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변 6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6-A : 1개소 위치 권장 ◦ 6-B : 1개소 위치 권장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저렴한 산업공간 확보 / 보행편의 제공		
	공공기여율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준용 (사전협상지침상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 : 40% 내외) ※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적용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 예시용도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팝업스토어, 홍보관, R&D지원센터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7

구분			통합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위치			◦ 화양동 24-17번지 일대	
면적			◦ 8,446.0㎡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3) (동일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B) (동일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7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아차산로21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2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6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다양한 주거 공급 및 생활SOC 지원 / 청년혁신업무시설 확충	
	공공기여율		◦ 15% 이상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지역필요시설 등 - 예시용도 : 도전숙,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시제품공작소, 디자인스튜디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구분			분리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특별계획가능구역 7-A	특별계획가능구역 7-B	특별계획가능구역 7-C	
면적			◦ 2,913.6㎡	◦ 2,688.0㎡	◦ 2,844.4㎡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3) (동일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B) (동일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7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아차산로21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7-A : 1개소 위치 권장 ◦ 7-B : 1개소 위치 권장 ◦ 7-C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7-B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 7-C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다양한 주거 공급 및 생활SOC 지원 / 청년혁신업무시설 확충			
	공공기여율		◦ 15% 이상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지역필요시설 등 - 예시용도 : 도전숙,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시제품공작소, 디자인스튜디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8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화양동 41-14번지 일대	
면적			◦ 3,320.4㎡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3) (동일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B) (동일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7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3m, 이면부 2~3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아차산로21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동일로변 3m, 이면부 2~3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1개소 위치 권장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다양한 주거 공급 및 생활SOC 지원 / 청년혁신업무시설 확충	
	공공기여율		◦ 15% 이상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지역필요시설 등 - 예시용도 : 도전숙,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시제품공작소, 디자인스튜디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9

구분			통합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위치			◦ 자양동 24-30번지 일대	
면적			◦ 7,922.8㎡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3) (동일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B) (동일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7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아차산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2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6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다양한 주거 공급 및 생활SOC 지원 / 청년혁신업무시설 확충	
	공공기여율		◦ 15% 이상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지역필요시설 등 - 예시용도 : 도전숙,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시제품공작소, 디자인스튜디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구분			분리개발시 계획지침				비 고
			특별계획가능구역 9-A	특별계획가능구역 9-B	특별계획가능구역 9-C	특별계획가능구역 9-D	
면적			◦ 2,446.6㎡	◦ 1,965.5㎡	◦ 2,227.3㎡	◦ 1,283.4㎡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관한 사항	불허용도		◦ 불허용도 (3) (동일로변)				
	권장용도		◦ 권장용도 (B) (동일로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70m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벽면선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아차산로22길변 7m(20m 이상)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기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 동일로변 3m, 이면부 2m				지침도 참조
	공개공지		◦ 9-A : 1개소 위치 권장 ◦ 9-B : 1개소 위치 권장 ◦ 9-C : 1개소 위치 권장				
	통로계획		◦ 9-A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 9-B : 공공보행통로 폭 3m 이상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목표		◦ 다양한 주거 공급 및 생활SOC 지원 / 청년혁신업무시설 확충				
	공공기여율		◦ 15% 이상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지역필요시설 등 - 예시용도 : 도전숙,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시제품공작소, 디자인스튜디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정비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따른다.

(3)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일반지침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지			공동개발	비고
			동	위치	면적(㎡)		
신설	D2	6,963.6	화양동	49-5	196.4		특별계획가능구역 1
신설			화양동	49-6	268.4		
신설			화양동	49-8	195.7		
신설			화양동	49-9	804.0		
신설			화양동	49-10	203.6		
신설			화양동	49-15	180.8		
신설			화양동	49-18	538.5		
신설			화양동	49-20	334.9		
신설			화양동	49-21	1,218.8		
신설			화양동	49-1	199.7		특별계획가능구역 2
신설			화양동	49-2	234.0	◦ 49-2, 49-11 : 공동개발(권장)	
신설			화양동	49-3	182.8	◦ 49-3, 49-11 : 공동개발(권장)	
신설			화양동	49-11	1,154.7	- 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신설			화양동	49-4	149.1		
신설			화양동	49-12	689.6		
신설			화양동	49-13	165.3		
신설			화양동	49-14	165.3		
신설	D3	6,620.5	화양동	48-1	188.8		특별계획가능구역 3
신설			화양동	48-3	1,123.3		
신설			화양동	48-4	289.3	◦ 공동개발(권장)	
신설			화양동	48-5	916.7	- 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신설			화양동	48-19	164.0		
신설			화양동	48-20	164.0		
신설			화양동	48-21	174.3		
신설			화양동	48-22	175.2		
신설			화양동	48-23	226.1		
신설			화양동	48-27	188.8		
신설			화양동	48-2	155.4	◦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가능구역 4
신설			화양동	48-12	150.4	- 간선변 개발규모 확대	
신설			화양동	48-13	155.4		
신설			화양동	48-17	377.9		
신설			화양동	48-18	253.6		
신설			화양동	48-14	768.6		
신설			화양동	48-25	276.0		
신설			화양동	48-28	411.6		
신설			화양동	48-31	212.6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지			공동개발	비고
			동	위 치	면적(㎡)		
신설			자양동	8-3	827.6		특별계획가능구역 5
신설			자양동	8-1	882.0		
신설			자양동	8-4	330.9		
신설			자양동	8-23	159.3	◦ 8-23 : 필지분할가능선(권장) ◦ 8-4, 8-23, 8-27, 8-28 : 공동개발(권장) ◦ 8-23, 8-24, 8-25, 8-26 : 공동개발(권장) -구역 정형화 및 개발규모 확대	
신설			자양동	8-24	330.9		
신설			자양동	8-25	134.2		
신설			자양동	8-26	99.8		
신설			자양동	8-27	100.2		
신설	D6	6,630.4	자양동	8-28	134.2		특별계획가능구역 6
신설			자양동	8-12	217.6		
신설			자양동	8-13	35.4		
신설			자양동	8-14	217.6		
신설			자양동	8-16	211.0		
신설			자양동	8-17	112.1	◦ 공동개발(권장) - 개발규모 확대	
신설			자양동	8-18	35.4		
신설			자양동	8-19	112.1		
신설			자양동	8-21	188.4		
신설			자양동	8-22	264.8		
신설			화양동	24-1	340.5		
신설			화양동	24-2	239.0		
신설			화양동	24-3	140.8		
신설			화양동	24-4	246.3		
신설			화양동	24-6	236.7		
신설			화양동	24-7	129.3		
신설			화양동	24-8	134.9		
신설			화양동	24-9	238.7		
신설			화양동	24-34	134.2		
신설			화양동	24-35	305.1		특별계획가능구역 7
신설	D7	8,446.0	화양동	24-38	112.1		
신설			화양동	24-40	123.6		
신설			화양동	24-41	130.2		
신설			화양동	24-42	236.0		
신설			화양동	24-10	361.0	◦ 24-10, 24-11 : 공동개발(권장) ◦ 24-11, 24-12 : 공동개발(권장) - 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신설			화양동	24-11	892.9		
신설			화양동	24-12	167.4		
신설			화양동	24-14	350.1	◦ 24-14, 24-15 : 공동개발(권장) ◦ 24-15, 24-16 : 공동개발(지정) - 기 공동개발/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신설			화양동	24-15	517.7		
신설			화양동	24-16	231.4		
신설			화양동	24-45	167.5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지			공동개발	비고
			동	위치	면적(㎡)		
신설	D7	8,446.0	화양동	24-17	1,007.6	◦ 공동개발(권장) - 동일소유자/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특별계획가능구역 7
신설			화양동	24-18	113.7		
신설			화양동	24-22	113.1		
신설			화양동	24-24	101.2		
신설			화양동	24-19	128.9		
신설			화양동	24-21	129.6		
신설			화양동	24-25	137.2		
신설			화양동	24-27	100.2		
신설			화양동	24-28	134.2		
신설			화양동	24-29	138.2		
신설			화양동	24-30	143.8		
신설			화양동	24-31	187.4		
신설			화양동	24-44	314.1		
신설	D8	9,303.7	화양동	41-1	138.2		특별계획가능구역 8
신설			화양동	41-2	230.7		
신설			화양동	41-3	209.6		
신설			화양동	41-5	160.0		
신설			화양동	41-6	160.3		
신설			화양동	41-7	171.9		
신설			화양동	41-8	262.5	◦ 공동개발(지정) - 기 공동개발	
신설			화양동	41-9	227.8		
신설			화양동	41-10	134.5		
신설			화양동	41-11	116.4		
신설			화양동	41-12	180.8		
신설			화양동	41-14	547.2		
신설			화양동	41-15	134.9		
신설			화양동	41-16	147.4		
신설			화양동	41-17	166.3		
신설	D10	9,261.8	자양동	24-2	793.2		특별계획가능구역 9
신설			자양동	24-17	170.9	◦ 공동개발(특별지정) - 일관된 확폭계획으로 도로 연속성 확보	
신설			자양동	24-29	172.1		
신설			자양동	24-28	704.1		
신설			자양동	24-3	183.1	◦ 공동개발(특별지정) - 일관된 확폭계획으로 도로 연속성 확보	
신설			자양동	24-23	171.9		
신설			자양동	24-9	398.7	◦ 공동개발(지정) - 기 공동개발	
신설			자양동	24-16	330.6		
신설			자양동	24-31	606.3		
신설			자양동	24-5	520.7		
신설			자양동	24-4	177.5	◦ 공공동개발(특별지정) - 일관된 확폭계획으로 도로 연속성 확보	
신설			자양동	24-27	167.6		
신설			자양동	24-6	619.5		
신설			자양동	24-7	116.0	◦ 공동개발(지정) - 기 공동개발	
신설			자양동	24-8	363.6		
신설			자양동	24-20	183.1	◦ 공동개발(특별지정) - 일관된 확폭계획으로 도로 연속성 확보	
신설			자양동	24-21	171.9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지			공동개발	비고
			동	위치	면적(㎡)		
신설	D10	9,261.8	자양동	24-19	762.7	◦ 공동개발(권장) - 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특별계획가능구역 9
신설			자양동	24-30	871.3		
신설			자양동	24-24	177.5	◦ 공동개발(특별지정) - 일관된 확폭계획으로 도로 연속성 확보	
신설			자양동	24-25	167.6		
신설			자양동	24-26	46.3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지침	비고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불허용도 공통사항 포함
건축물 밀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 허용 250% 이하 / 상한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간선변 70m 이하, 이면부 40m 이하	지침도 참조
건축물 배치	건축선	◦ 건축한계선: 아차산로변 3, 6m, 동일로변 3m, 이면부 1~3m ※ 자양동 8-17, 8-19의 경우 개별건축시 건축한계선 1m + 저층부 벽면한계선 1m(높이 4m 이상) 적용	지침도 참조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결정 조서에 따름	
기타사항	전면공지	◦ 아차산로 3, 6m, 동일로변 3m, 이면부 1~3m	지침도 참조
	대지내통로	◦ 보차혼용통로 1개소	지침도 참조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원칙, 이면부에서 차량출입이 불가한 일부구간 직접차량 진출입 허용 - 차량출입구 4개소, 공동주차출입구 4개소 지정	지침도 참조

3) 인센티브 운영계획

■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구분	완화사항	비고
건폐율 완화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건폐율 완화
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1+1.3×가중치×$\alpha_{토지}$+(1.0~1.2)×$\alpha_{건축물}$+1.0×$\alpha_{현금}$)이내 ※ 건축물 계수는 기부채납 건축물의 종류, 위치, 층수, 규모, 용도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1.0~1.2 범위 내에서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alpha_{토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alpha_{건축물}$: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alpha_{현금}$: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공공시설부지제공(기부채납)에 의한 건폐율 완화는 용적률 완화와 중복하여 적용 불가

■ 공동개발(특별지정) 이행시 용적률 완화

공동개발 필지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비고
2필지	10% 이하	허용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공동개발(특별지정)에 의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는 토지주가 도로(폭 2m)를 공공시설로 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적용되며, 공동개발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은 별도로 적용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토지주의 개발시점에서 자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행

※동일소유 필지는 하나의 필지로 봄. 단,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후 동일소유가 된 필지는 제외함

※부득이한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동개발(특별지정) 변경이 가능하나, 공동개발(특별지정)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아니함

■ 친환경 항목 적용시 용적률 완화

◦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

◦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1+0.7×∑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ß)

※ ① 및 ②항목은 중복 적용불가 /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의 합은 15% 이내 (0.7 × (∑①~③) ≤ 15%)

① ZEB 인증

ZEB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완화비율	15%	14%	13%	12%	1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획득하고, 에너지자립율이 20%미만인 경우 완화비율 : 10%

②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

녹색건축인증 / 에너지효율인증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9%	6%
1 등급	6%	3%

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15%이상	20%이상	25%이상
완화비율	5%	10%	15%

④ 장수명주택인증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완화비율	15%	10%

◦ 완화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배 이내

5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공동개발 변경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5. 지정된 차량출입구 위치 변경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6.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7.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8.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Ⅲ.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신설	특별계획구역7	자양동 24-11번지 일대	1,389.7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신설	특별계획구역7	자양동 24-11번지 일대	1,389.7	◦ 개발여건이 성숙된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여 도시 전체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 당해 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신설)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389.7	-	1,389.7	100.0	
주거지역	소계	1,389.7	-	1,389.7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389.7	감)1,339.0	50.7	-	
	준주거지역	-	증)1,339.0	1,339.0	100.0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자양동 24-11번지 일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339.0	◦ 성수지역중심의 위계를 고려한 효율적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166 (25)	1,063 (51)	-	-	-	-	-	-	1	166 (25)	1,063 (51)
대로	-	-	-	-	-	-	-	-	-	-	-	-
소로	1	166 (25)	1,063 (51)	-	-	-	-	-	-	1	166 (25)	1,063 (51)

※ ( )은 특별계획구역 7 내 연장 및 면적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7	6~8 (8)	국지 도로	166 (25)	자양동 16-46	자양동 16-27	일반 도로	-	-	

※ ( )은 특별계획구역 7 내 도로폭원 및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소로3-7	◦ 신설(국지도로) - B = 6~8m(8m), L = 166m(25m)	◦ 이면부 교통 및 보행환경을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폭(폭2m) 및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에 관한 결정

(1) 불허용도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동일로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1호의 단독주택(간선변에 한함)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15호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주1] 제외)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매매장, 주차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제28호의 장례시설 ◦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1호의 단독주택(간선변에 한함)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15호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주1] 제외)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매매장, 주차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제28호의 장례시설 ◦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지식산업센터를 말함

(2) 권장용도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동일로 (B)	◦ 제2호의 공동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주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주2], 임대형 기숙사)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제외), 직업훈련소, 체력단련장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의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제외), 직업훈련소 ◦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제2호의 공동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주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주2], 임대형 기숙사)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제외), 직업훈련소, 체력단련장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의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제외), 직업훈련소 ◦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주2)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조 제4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말함

(3) 건폐율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동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60% 이하	60% 이하	건축계획 58.38%

(4) 용적률 계획 결정조서(신설)

1) 용적률 계획

<table>
<tr><th>구 분</th><th>계 획 지 침</th><th>세부개발계획</th><th>비고</th></tr>
<tr><td>동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td><td>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td><td>기준 250% 이하 / 허용 350% 이하 / 상한 400% 이하</td><td>◦ 건축계획 : 398.64%</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3">◦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 허용용적률×(1+1.3×가중치×$\alpha_{토지}$+(1.0~1.2)×$\alpha_{건축물}$+1.0×$\alpha_{현금}$)이내
– $\alpha_{토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alpha_{건축물}$: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alpha_{현금}$: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td></tr>
<tr><td>친환경 항목 적용시 상한용적률</td><td colspan="3">◦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
◦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1+0.7×∑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u>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ß)</u>
※ ① 및 ②항목은 중복 적용불가 /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의 합은 15% 이내
(0.7 × (∑①~③) ≤ 15%)
① ZEB 인증
<table><tr><th>ZEB등급</th><th>ZEB1</th><th>ZEB2</th><th>ZEB3</th><th>ZEB4</th><th>ZEB5</th></tr><tr><td>완화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r></table>※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율이 20%미만인 경우 완화비율 : 10%
②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
<table><tr><th>녹색건축인증 / 에너지효율인증</th><th>최우수 (그린1등급)</th><th>우수 (그린2등급)</th></tr><tr><td>1+등급</td><td>9%</td><td>6%</td></tr><tr><td>1 등급</td><td>6%</td><td>3%</td></tr></table>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table><tr><td>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d><td>15% 이상</td><td>20% 이상</td><td>25% 이상</td></tr><tr><td>완화비율</td><td>5%</td><td>10%</td><td>15%</td></tr></table>④ 장수명주택인증
<table><tr><td>장수명주택 인증등급</td><td>최우수</td><td>우수</td></tr><tr><td>완화비율</td><td>15%</td><td>10%</td></tr></table>◦ 완화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배 이내</td></tr>
</table>

주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이 변경됨을 전제로 적용 가능
주2) 공공주택, 역세권 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주3)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주거와 주거외 부분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2020.5) 3-4-2.(용적률) 계획수립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을 따른다.
주4) 건축물 기부채납 면적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22.10.개정)’에 따라 산정
※ 건축물 계수는 기부채납 건축물의 종류, 위치, 층수, 규모, 용도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1.0~1.2범위내에서 적용
※ 기부채납(도로 및 공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218.9㎡
※ 상한용적률 : 350% × (1+1.3×0.9139×0.1377+1.0×0.0415) = 421.8% / 400%이하 적용

2) 준주거지역 용적률 적용기준

■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 적용기준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준주거지역	◦ 건축계획용적률의 10% 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 건축계획용적률의 10% 이상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

(5) 높이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동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70m 이하	70m 이하	준주거지역 상향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배치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 동일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동일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면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고층부 벽면한계선	동일로22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7m – 고층부(20m 이상)에 한함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7m – 고층부(20m 이상)에 한함

2) 건축물의 형태·외관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형태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1층부	투시형 벽면/셔터 (규제)	◦ 1층 벽면의 50% 이상을 쇼윈도 등의 투시형 벽면(내부가 안 보이는 컬러유리·필름지 등의 설치 금지)으로 설치 ◦ 셔터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되, 셔터 설치 시 가로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셔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투시형으로 설치	◦ 1층 벽면의 50% 이상을 쇼윈도 등의 투시형 벽면(내부가 안 보이는 컬러유리·필름지 등의 설치 금지)으로 설치 ◦ 셔터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되, 셔터 설치 시 가로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셔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투시형으로 설치
	개구부 높이 조화 (규제)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과 조화롭게 조성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과 조화롭게 조성
	개구부가 없는 벽면 디자인 (규제)	◦ 도로변에 노출된 벽면은 조경, 벽화 등 장식적으로 처리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	◦ 도로변에 노출된 벽면은 조경, 벽화 등 장식적으로 처리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
	1층 바닥 높이 (규제)	◦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	◦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
		◦ 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 및 공지로부터 15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지만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친 경우 예외 인정	◦ 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 및 공지로부터 15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지만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친 경우 예외 인정

■ 건축물 재료 및 색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재료	통일성 (권장)	◦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 유지	◦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 유지
	반사성 재료 금지 (규제)	◦ 금속, 반짝이는 타일,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 사용	◦ 금속, 반짝이는 타일,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 사용
색채	조화로운 색채계획 (권장)	◦ 건축물의 주요 색채로 원색(고채도) 및 이질적 소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및 「서울시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준수	◦ 건축물의 주요 색채로 원색(고채도) 및 이질적 소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및 「서울시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준수

■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담장 및 옹벽	담장 설치 금지 (규제)	◦ 간선도로변 담장 설치 불허(단,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득한 경우 가능하며 이 경우 식재형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여야 함)	◦ 간선도로변 담장 설치 불허(단,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득한 경우 가능하며 이 경우 식재형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 광고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디자인 (규제)	◦ 「옥외광고물법」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수 ◦ 건축물과 조화되는 색상 및 재료를 사용하여 입면과 일체감을 주도록 계획하고, 작고 간결하며 여백의 미를 살리는 디자인으로 계획 ◦ 단일 건물에 여러 개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표기방식, 크기, 위치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하여 통일감 있도록 설치	◦ 「옥외광고물법」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수 ◦ 건축물과 조화되는 색상 및 재료를 사용하여 입면과 일체감을 주도록 계획하고, 작고 간결하며 여백의 미를 살리는 디자인으로 계획 ◦ 단일 건물에 여러 개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표기방식, 크기, 위치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하여 통일감 있도록 설치

나.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 내 공지 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 동일로변 : 3m	◦ 동일로변 : 3m
	이면도로변	◦ 2m	◦ 2m

주) 건축한계선에 의한 대지내 공지

다.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조서(신설)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동일로변	◦ 폭 30m이상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 폭 30m이상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라. 인센티브 운영계획 결정조서(신설)

(1) 용적률 인센티브 기본방향

1)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은 계획유도 인센티브와 중점 인센티브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운영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중점 인센티브 : 지구통합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계획 항목으로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계획

② 계획유도 인센티브 :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 유도가 필요한 항목으로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 이내로 계획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중점 인센티브 항목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이내	계획유도 항목 이행 시 (70% 이내)	중점 계획항목 이행 시 (30% 이상)	공공시설등 제공 시 등

2) 중점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획하며,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대체가 불가하다.

3) 계획유도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세부기준

■ 인센티브 유형(동일로변)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건폐율			◦ 60%	
기준/허용용적률			◦ 250%/350%	
인센티브 유도계획			◦ 도심주거 및 부족한 지원기능 강화 ◦ 보행환경 개선 ◦ 스마트그린시티 시스템 구축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중점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전체연면적)×0.5	◦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주차장면적 제외)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α = 개방형 2.0 = 필로티형 1.0 ※ 법적 의무면적 제외
계획유도	대지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α = 개방형 2.0 = 필로티형 1.0 ※ 법적 의무면적 제외
	지능형 건축물	지능형 건축물 인증	기준용적률×α	• 1등급~4등급으로 인증된 경우 ◦ α = 1등급 0.4 = 2등급 0.3 = 3등급 0.2 = 4등급 0.1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비율
중점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전체연면적)×0.5 = 250% × (4,484.51㎡/6,811.26㎡) × 0.5 = 82.3%	◦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주차장면적 제외)	82.3%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α	◦ α = 개방형 2.0 = 필로티형 1.0 ※ 법적 의무면적 제외	-
계획유도	대지내공지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α =250%×(132㎡/1,339㎡)×2.0=49.3%	◦ α = 개방형 2.0 ※ 간선부 미관지구 내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 시 제외(법적 의무면적 제외)	49.3%
	지능형건축물	지능형건축물인증	기준용적률×α	• 1등급~4등급으로 인증된 경우 ◦ α = 1등급 0.4 = 2등급 0.3 = 3등급 0.2 = 4등급 0.1	-
합계					131.6%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부채납 면적	기부채납 비율	상한용적률
350%	218.9㎡	15.75%	421.8% (건축계획 398.64%)

※ 상한용적률 : 350% × (1+1.3×0.9139×0.1377+1.0×0.0415) = 421.8% / 400%이하 적용

마.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1)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공공 시설 조성 및 제공	◦ 공공기여율 : 15% 이상 ◦ 공공기여 목표 – 다양한 주거 공급 및 생활SOC 지원 / 청년혁신업무시설 확충 ◦ 공공기여시설 – 결정도에서 제시한 도로 및 필요 공공시설등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업무시설, 지역필요시설 등 예시용도 : 도전숙,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시제품공작소, 디자인스튜디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와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결정	◦ 기부채납 : 218.9㎡(15.75%) – 도로(토지) : 50.7㎡ – 건축물 내 공공시설 :168.2㎡ (건축물 및 부속토지) ◦ 설치 · 조성후 기부채납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관리운영기준(2022.11)과의 정합성 및 실질적인 공공시설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부담계획 수립(공공시설 건축물로 설치·제공)

※ 특별계획구역은 공공기여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 조성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함. 기부채납 비율은 구적면적에 대한 비율이므로 측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공공기여 계획에 따른 도로폭원에 대한 면적은 이행하여야 함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Ⅵ.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 및 광진구 도시계획과(☎02-450-7674)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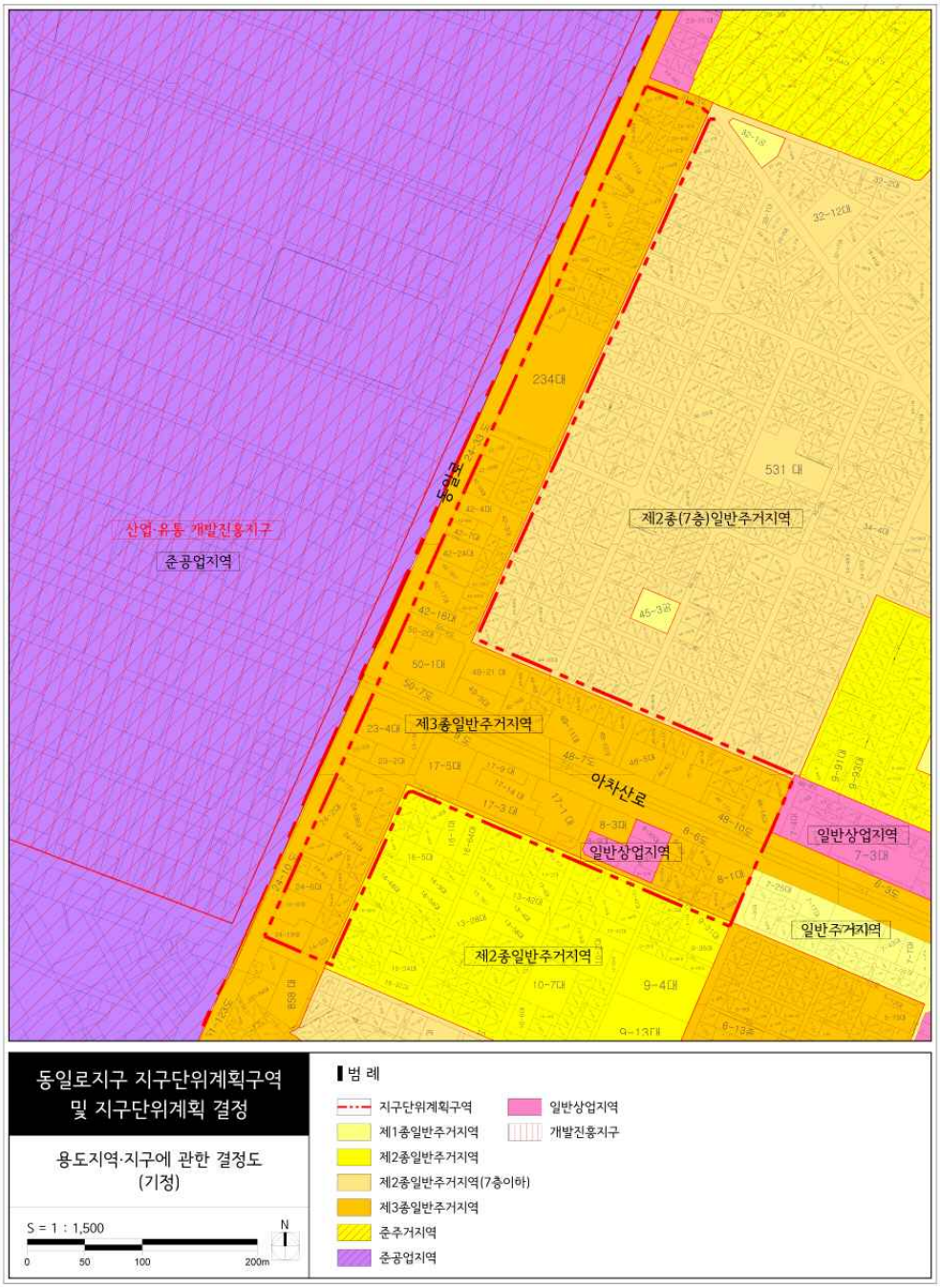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u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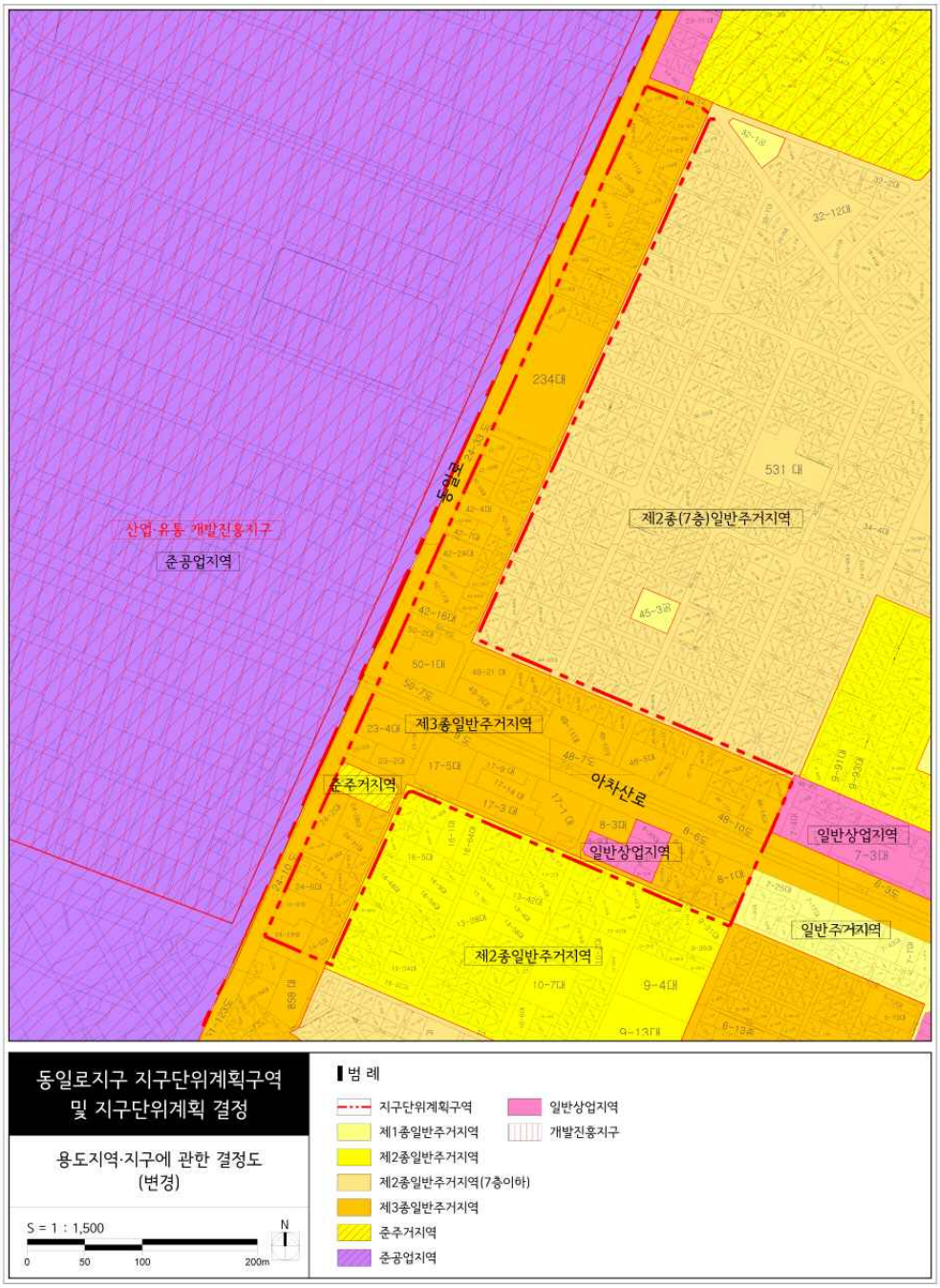
■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동일로지구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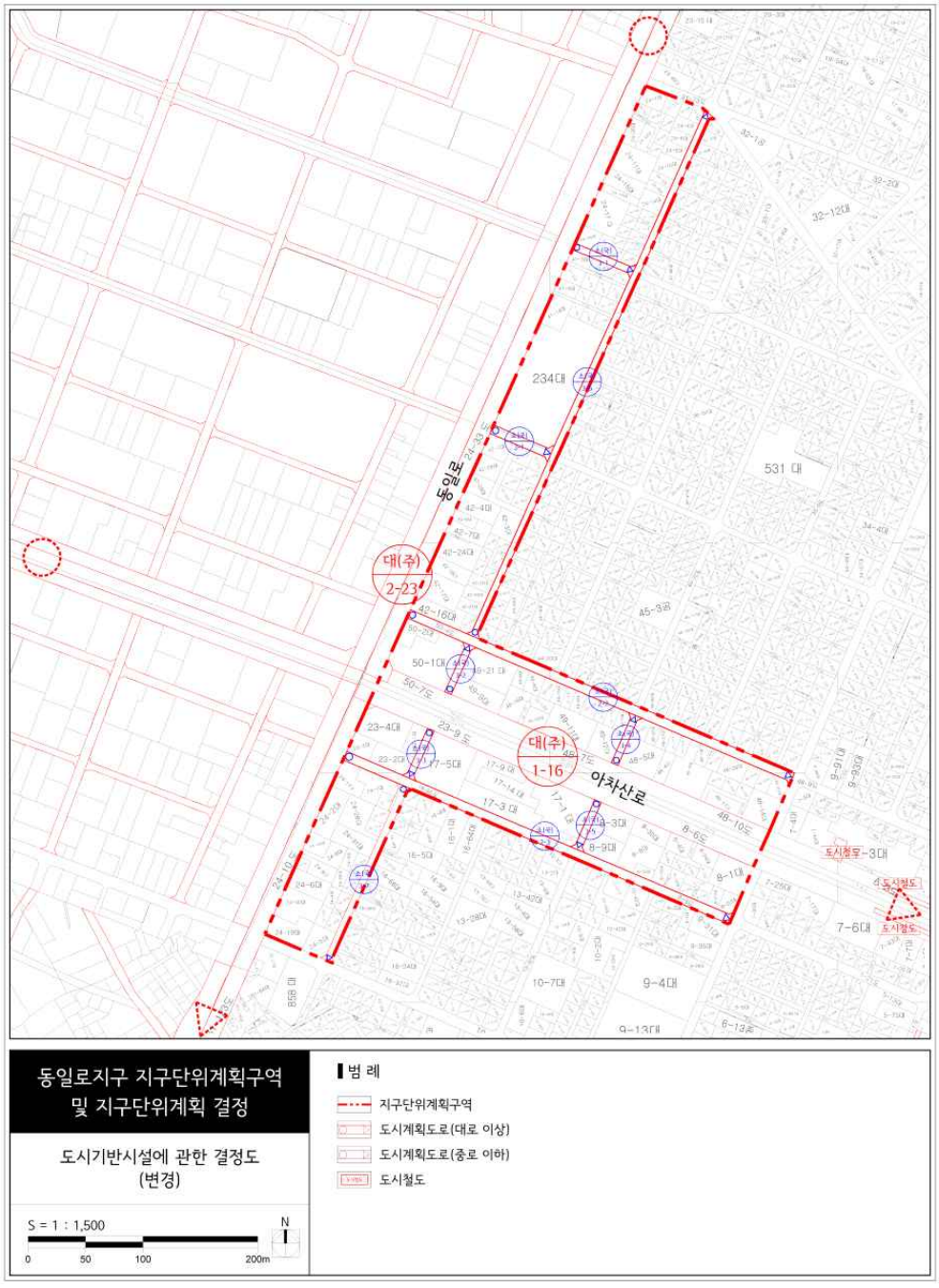
■ 동일로지구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 동일로지구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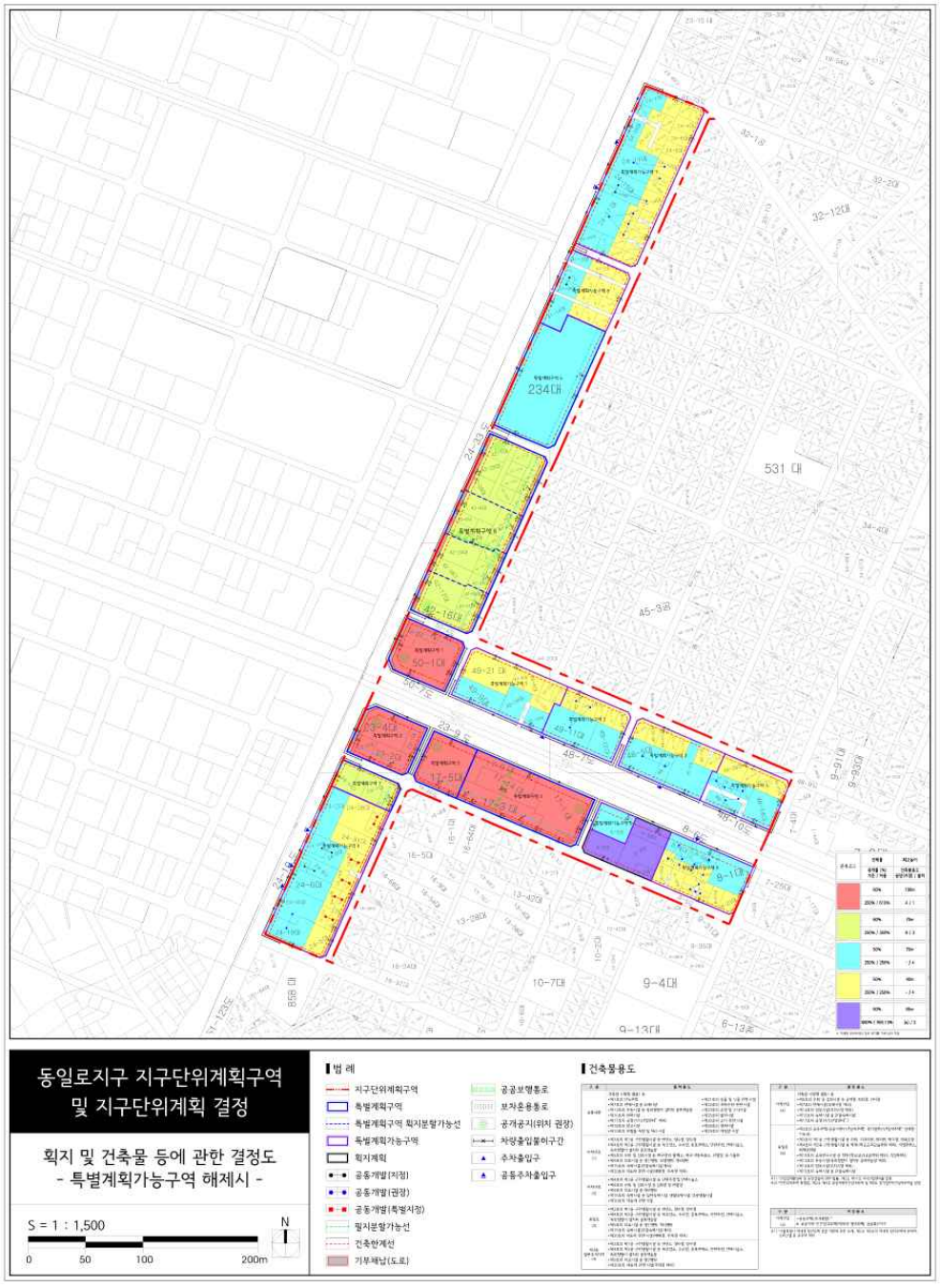
■ 동일로지구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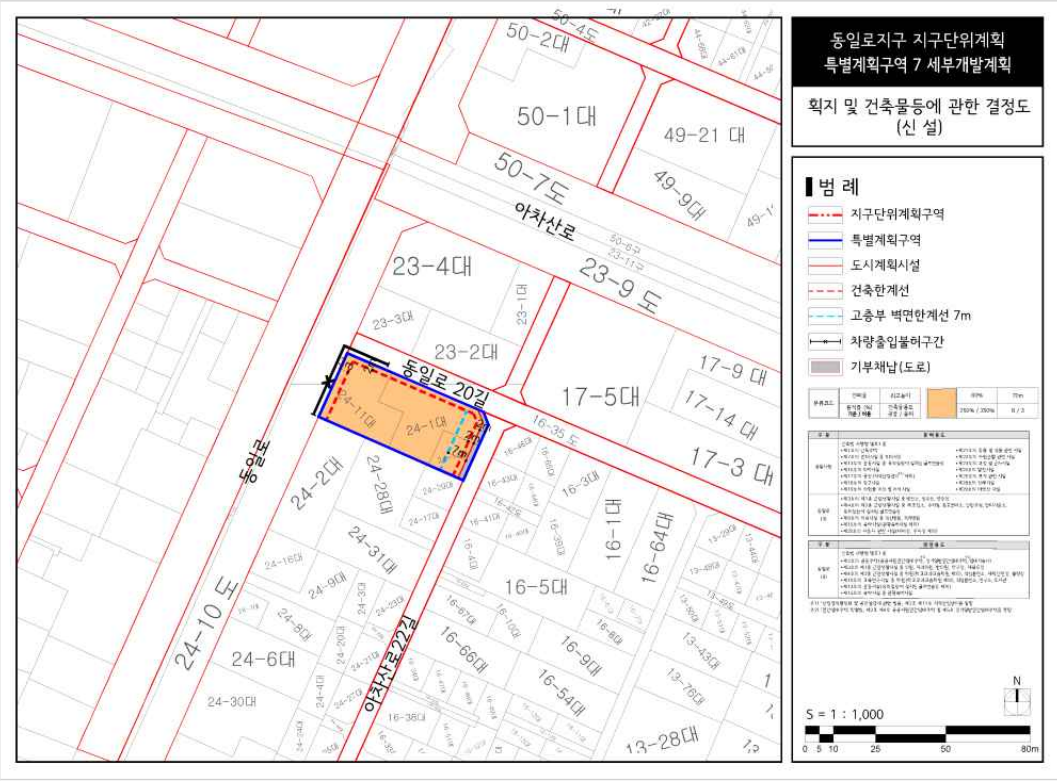
■ 동일로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동일로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지침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호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34호(1994.02.1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6호(2015.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9호(2020.06.11.)로 결정(변경)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서울특별시공고 제319호(1990.5.28.)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33호(2006.4.20.), 서울시특별시고시 제2017-246호(2017.7.13.)로 결정(변경)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2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2.11.09.) 심의 및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17.04.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목동신시가지의 재건축 가능시기 도래에 따라 통합적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단지별 재건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과 중복 지정·운영되어온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여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원	4,368,463.0	-	4,368,463.0	최초결정일 (1994.2.15.)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4호
폐지	②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목동동로 435 ~ 목동동로 309	714,871.4	감)714,871.4	-	최초결정일 (1990.05.28.) 서울특별시공고 제319호

※ 1) '①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은 금회 폐지되는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714,871.4㎡)' 을 "중심지역", 14개의 공동주택(아파트)및 그 외 지역을 '주거지역 및 기타지역' 으로 통칭하며, 구체적 위치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면적(㎡)			변경 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②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714,871.4	감)714,871.4	-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 (2017.04.26.) 의결사항에 따라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과 중복 운영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 이하여백 -

2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368,463.0	-	4,368,463.0	100.0	
주거지역	소계	3,168,887.9	-	3,168,887.9	72.5	
	제1종일반주거지역	261,190.4	-	261,190.4	6.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37,766.1	-	237,766.1	5.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6,609.2	-	606,609.2	13.9	
	제3종일반주거지역	2,063,322.2	-	2,063,322.2	47.2	
중심지역	소계	568,384.8	-	568,384.8	13.0	
	일반상업지역	568,384.8	-	568,384.8	13.0	
공업지역	소계	73,561.2	-	73,561.2	1.7	
	준공업지역	73,561.2	-	73,561.2	1.7	
녹지지역	소계	557,629.1	-	557,629.1	12.8	
	자연녹지지역	557,629.1	-	557,629.1	12.8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미관지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2019.04.18)에 따라 미관지구 일괄 폐지

나. 고도지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3호(2019.04.25)에 따라 고도지구 일괄 폐지

- 이하여백 -

3.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합계	106	57,048	964,451	19	6,072	179,611	41	25,882	268,410	46	25,094	516,430
광로	1	1,750	84,637	1	1,750	84,637	-	-	-	-	-	-
대로	36	38,470	572,640	1	1,823	61,137	5	14,332	65,154	31	24,138	507,486
중로	23	9,225	182,574	-	-	-	20	8,903	178,467	3	322	4,107
소로	45	5,780	63,463	17	2,499	33,837	16	2,647	24,789	12	634	4,837

※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1	12	50	주간선	1,750	안양천교	목1동 407-20	일반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상수공급설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1	78	10.8~147.5	주간선	7,530	신월동 835	여의도동 2-11	자동차 전용도로		서고시 2013-318 (2013.10.04)	입체적 결정 (도로, 교통광장, 공원 일부 중복)
기정	대로	2	36	30	주간선	3,663	진명여고 사거리	서울시계	일반도로		건고시 198 (71.04.07)	신월로
기정	대로	2	37	30	주간선	1,600	도림동	신길동	일반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기정	대로	2	38	30	주간선	7,250	외발산동	고척동	일반도로		건고시 198 (71.04.07)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73	30	주간선	272	신정동 576-3	대 3-147	일반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기정	대로	2	79	42	주간선	1,550	오목교	목동오거리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86	25~33.5	보조간선	6,950	양화동	광명시계	일반도로		〃	제방과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46	25	보조간선	2,170	경인고속국도	강서구 목동 136-2	일반도로		〃	중앙로 (강서로)
기정	대로	3	147	25	보조간선	1,527	대 2-79	신정동 80-1	일반도로		〃	하수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48	25	보조간선	2,080	신정동 576-3	신정동 406-1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49	25	보조간선	1,415	대 3-169	신정동 83-5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50	25	집산도로	383	대 3-169	대 3-148	일반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51	25	보조간선	2,000	대 3-169	대 3-86	일반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기정	대로	3	152	25	보조간선	2,000	대 3-169	대 3-86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53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54	25	보조간선	230	신정동 36-1	고척동 186-3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55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56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57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58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59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0	25	집산도로	150	대 3-151	대 3-15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1	25	집산도로	150	대 3-148	대 3-150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3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신정동 868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4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5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6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7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8	25	집산도로	150	대 3-147	대 3-149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9	25	주간선 도로	529	대 3-86 (구역계)	대 3-173 (대 3-173)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70	25	보조간선	30	대 3-149	목동중교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71	25	보조간선	880	구로구 고척동 41-1	강서구 신정동 171-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72	25	보조간선	323	대 3-148	대 3-151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73	25	주간선	150	대 3-150	대 3-148	일반도로		〃	하수도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74	25	보조간선	894	-	-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205	25	집산도로	150	대로3-147	대로3-149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25	보조간선	330	대 3-152	목동 914-3	일반도로		양천구공고 225호 (04.07.05)	목동 운동장과 유수지 사잇길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63	15	집산도로	548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서고시422호(94.12.27)	
기정	중로	2	264	15	집산도로	255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65	15	집산도로	463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66	15	집산도로	498	대 3-146	대 3-15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68	15	집산도로	534	대 2-36	대 3-14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69	15	집산도로	365	중 2-271	대 2-36 대 3-14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0	15	집산도로	516	중 2-271	대 2-7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1	15	보조간선	350	대 3-149	신정동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2	15	집산도로	443	대 2-73	중 2-276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3	15	집산도로	370	중 2-276	대 3-15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4	15	집산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신정동)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5	15	집산도로	341	대 3-149	차량기지(신정동)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6	15	집산도로	1,092	대 2-38	대 2-37	일반도로		〃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77	15	집산도로	582	대 2-37	신정동 331-1	일반도로		〃	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78	15	집산도로	960	대 3-86	강서구 신정동 294-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79	15	집산도로	150	광 1-12	대 3-15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80	15	집산도로	150	광 1-12	대 3-15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81	15	집산도로	326	신정동 76-22	신정동 80-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82	15	집산도로	290	대 3-147	목동 408-115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261	12	집산도로	150	대 3-150	대 3-15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262	12	집산도로	150	대 3-150	대 3-15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338	12	집산도로	22	대 3-171	신정동 330-13	일반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240	목동 917-2	목동 918-2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250	목동 917-2	목동 918-2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170	목동 924-1	목동 924-2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170	목동 923-1	목동 924-1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230	신정동 319-4	신정동 318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7	10	특수도로	230	신정동 320-3	신정동 319-4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8	10	특수도로	160	신정동 322-3	신정동 321-3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9	7	국지도로	7	신정동 312-3	신정동 1126	일반도로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64	대 3-147	신정동 134-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40	대 3-147	신정동 31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2	10	특수도로	150	대 3-151	대 3-152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13	10	특수도로	70	목동 908-38	목동 908-35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14	10	특수도로	85	목동 908-35	대 3-157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15	10	특수도로	95	광 1-12	대 3-159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16	10	특수도로	170	대 3-168	대 2-73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17	11	특수도로	184	대로3-173	대로2-79 (오목로)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18	10~27	특수도로	184	대로2-79 (오목로)	목동 408-178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2	8	특수도로	300	목동 900-8	목동 909-1	보행자 전용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3	8	특수도로	300	신정동 324-3	신정동 323-1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시422호 (94.12.27)	
기정	소로	2	5	8	특수도로	380	목동 908-1	목동 907-1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6	8	특수도로	260	신정동 323-1	신정동 322-3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06	대 3-163	신정 318-1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210	대 3-147	대 3-16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104	대 3-147	대 3-16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116	대 3-147	대 3-14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92	대 3-149	대 3-16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92	대 3-147	대 3-16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180	대 3-152	대 3-15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90	대 3-151	대 3-15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20	대 3-152	목동 905-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90	대 3-167	대 3-14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90	대 3-168	대 3-14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217	대 3-146 목동 산 29-3	목동 231-217	일반도로		서고시 152 (82.04.03)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85	신정동 296-7	신정동 296-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5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050-16	일반도로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5	4	국지도로	9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050-15	일반도로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0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123	일반도로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0	신정동 312-3 (중 2-271)	신정동 1123	일반도로		〃	녹지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5	6~ 10	국지도로	130	대 3-151	대 3-151	일반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기정	소로	3	16	6~8	국지도로	120	대 3-152	대 3-15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50	대 3-152	소 1-1	보행자 전용도로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50	대 3-152	소 1-1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시422호 (94.12.27)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136	대 3-151	대 3-15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5	6	특수도로	25	목동 905-1	목동 905-34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26	6	특수도로	32	대 3-151	소로 3-18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27	6	특수도로	22	소로 3-18	소로 1-1	보행자 전용도로	-	〃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노외주차장	목동915	100,824.3	-	100,824.3	서고시 422호 (94.12.27)	목동유수지와 중복결정
기정	②	노외주차장	목동907-8	1,188.4	-	1,188.4	〃	
기정	③	〃	목동907-19	1,124.2	-	1,124.2	〃	
기정	④	〃	목동905-29	684.7	-	684.7	〃	
기정	⑤	〃	신정동318-2	852.0	-	852.0	〃	
기정	⑥	〃	신정동322-5	1,139.0	-	1,139.0	〃	
기정	⑦	〃	신정동323-18	607.0	-	607.0	〃	
기정	⑧	〃	신정동323-13	608.2	-	608.2	〃	
기정	⑨	〃	목동905-21	892.8	-	892.8	〃	
기정	⑩	〃	신정동323-25	726.5	-	726.5	〃	
기정	⑪	〃	신정동323-33	749.2	-	749.2	〃	
기정	⑫	〃	신정동322-12	1,157.4	-	1,157.4	〃	
기정	⑬	〃	신정동319-21,22	1,513.2	-	1,513.2	2006.04.20	

※ 주차전용건축물 건축기준
- 층수 : 7층 이하
-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종류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부대시설 비율 : 30% 이내

3) 철도

■ 철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 장(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연결선)	신정동 1092일대 (신도림역~까치산역)	6,150 (585)	건고시 695호 (90.10.19)	도시철도 2호선
기정	②	철도	도시철도 (5호선)	목동 927-8일대 (목동역~오목교역)	19,000 (505)	건고시 695호 (90.10.19)	도시철도 5호선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총괄표

구 분	개 소	면 적(㎡)
합계	24	173,346.2
근린공원	4	84,494.4
문화공원	1	29,619.3
어린이공원	19	59,232.5

■ 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제1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1-2	2,299.5	-	2,299.5	서고시 422호 (94.12.27)	1단지
기정	②	제2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 902-2	4,211.4	-	4,211.4	〃	2단지
기정	③	제3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03-2	2,985.4	-	2,985.4	〃	3단지
기정	④	제4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04-1	6,517.0	-	6,517.0	〃	4단지
기정	⑤	제5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11-5	3,659.2	-	3,659.2	〃	6단지
기정	⑥	제6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12-1	3,963.8	-	3,963.8	〃	5단지
기정	⑦	제7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13-1	3,815.8	-	3,815.8	〃	5단지
기정	⑧	제8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목동925-1	2,375.1	-	2,375.1	〃	7단지
기정	⑨	제9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4-1	3,730.1	-	3,730.1	〃	8단지
기정	⑩	제10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3-2	1,738.6	-	1,738.6	〃	9단지
기정	⑪	제11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2-2	3,500.0	-	3,500.0	〃	9단지
기정	⑫	제12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11-1	3,148.2	-	3,148.2	〃	10단지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⑬	제13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5-2	2,498.5	-	2,498.5	〃	11단지
기정	⑭	제14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6-2	3,399.7	-	3,399.7	〃	12단지
기정	⑮	제15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7-1	2,265.5	-	2,265.5	〃	13단지
기정	⑯	제16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8-1	2,149.8	-	2,149.8	〃	13단지
기정	⑰	제17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29-2	2,433.9	-	2,433.9	〃	14단지
기정	⑱	제18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32-1	2,511.3	-	2,511.3	〃	14단지
기정	⑲	제19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정동330-1	2,029.7	-	2,029.7	〃	14단지
기정	근-①	신트리공원	근린공원	신정동310-7	16,409.3	-	16,409.3	〃	
기정	근-②	목마공원	근린공원	목동 910	12,816.8	-	12,816.8	〃	
기정	근-③	오목공원	근린공원	목동 921	21,470.4	-	21,470.4	〃	
기정	근-④	양천공원	근린공원	신정동 320	33,797.9	-	33,797.9	〃	
기정	문-①	파리공원	문화공원	목동 906	29,619.3	-	29,619.3	〃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3단지 서측녹지	녹지	목동903-7,8, 10~17	1,280.0	-	1,280.0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중복결정
변경			경관녹지						
기정	②	4단지 연변녹지	녹지	목동904-2	14,793.8	-	14,793.8	서고시 422호 (94.12.27)	
변경			경관녹지						
기정	③	4단지 서측녹지	녹지	목동904-5,6,7, 20~24	1,970.4	-	1,970.4	서고시 422호 (94.12.27)	
변경			경관녹지						
기정	④	6단지 연변녹지	녹지	목동911-8	4,130.9	-	4,130.9	서고시 422호 (94.12.27)	
변경			경관녹지						
기정	⑤	5단지 연변녹지	녹지	목동913-2	11,735.9	-	11,735.9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로 인한 녹지 분할
변경			경관녹지						
기정	⑥	목동교 서측IC녹지	녹지	목동914-1	6,498.7	-	6,498.7	서고시 422호 (94.12.27)	
변경			완충녹지						
기정	⑦	목동교 서측IC녹지	녹지	목동911-7	7,207.9	-	7,207.9	서고시 422호 (94.12.27)	
변경			완충녹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⑧	916-1 도 남측녹지	녹지 경관녹지	목동916-2	1,891.6	-	1,891.6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변경	⑨	7단지 연변녹지	녹지 경관녹지	목동925-8	8,854.0	-	8,854.0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변경	⑩	목동 927변 녹지	녹지 경관녹지	목동927-2	862.5	-	862.5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기정 변경	⑪	927-9구 서측녹지	녹지 경관녹지	목동927-10	787.4	-	787.4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서측
기정 변경	⑫	진명여고변 녹지	녹지 경관녹지	목동927 -11,12,13,14	6,622.8	-	6,622.8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변경	⑬	8단지 연변녹지	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4-2, 3	12,760.9	-	12,760.9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변경	⑭	9단지 연변녹지	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3-3	6,217.1	-	6,217.1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변경	⑮	9,10단지 북측녹지	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2 -4,6,7,8,9,10,11,12,13,14,15,16,17 313-5,7	2,726.5	-	2,726.5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변경	⑯	10단지 연변녹지	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1-2	2,270.6	-	2,270.6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변경	⑰	양명초등 북측녹지	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10-5	803.0	-	803.0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변경	⑱	11단지 연변녹지	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4	10,815.9	-	10,815.9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변경	⑲	11단지 연변녹지	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9	7,896.9	-	7,896.9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변경	⑳	11단지 남측녹지	녹지 경관녹지	신정동325 -13,14	3,031.9	-	3,031.9	서고시 422호 (94.12.27)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㉑	12단지 연변녹지	녹지	신정동326-1	2,347.9	-	2,347.9	서고시 422호 (94.12.27)	
변경			경관녹지						
기정	㉒	13단지 연변녹지	녹지	신정동328-2	6,013.1	-	6,013.1	서고시 422호 (94.12.27)	
변경			경관녹지						
기정	㉓	14단지 연변녹지	녹지	신정동329-1	6,833.6	-	6,833.6	서고시 422호 (94.12.27)	
변경			경관녹지						
기정	㉔	14단지 연변녹지	녹지	신정동330-6	3,867.5	-	3,867.5	서고시 422호 (94.12.27)	
변경			경관녹지						
기정	㉕	목동중학교 서측녹지	녹지	신정동319-10	102.4	-	102.4	서고시 422호 (94.12.27)	
변경			경관녹지						
기정	㉖	하수도변 연변녹지	녹지	신정동330 -16,23	411.5	-	411.5	서고시 422호 (94.12.27)	
변경			경관녹지						
기정	㉗	하수도변 연변녹지	녹지	신정동330-17	341.9	-	341.9	서고시 422호 (94.12.27)	
변경			경관녹지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①	3단지 서측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시설세분 지정
②	4단지 연변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 연계에 따른 녹지시설 지정
③	4단지 서측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시설세분 지정
④	6단지 연변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목동 운동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녹지시설 지정
⑤	5단지 연변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 연계에 따른 녹지시설 지정
⑥	목동교 서측IC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완충녹지	• 시설세분 지정
⑦	목동교 서측IC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완충녹지	• 시설세분 지정
⑧	916-1 도 남측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시설세분 지정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⑨	7단지 연변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 연계하여 가로활성화 시설 도입을 위한 시설세분 지정
⑩	목동 927변 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시설세분 지정
⑪	927-9구 서측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도시경관 향상 및 목동역 근린공원과 연계를 위한 시설세분 지정
⑫	진명여고변 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시설세분 지정
⑬	8단지 연변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간선도로변 완충기능과 경관 · 상징 · 보행 등 다목적 기능의 경관녹지 지정
⑭	9단지 연변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간선도로변 완충기능과 경관 · 상징 · 보행 등 다목적 기능의 경관녹지 지정
⑮	9,10단지 북측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시설세분 지정
⑯	10단지 연변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시설세분 지정
⑰	양명초등 북측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시설세분 지정
⑱	11단지 연변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시설세분 지정
⑲	11단지 연변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시설세분 지정
⑳	11단지 남측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시설세분 지정
㉑	12단지 연변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시설세분 지정
㉒	13단지 연변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간선도로변 완충기능과 경관 · 상징 · 보행 등 다목적 기능의 경관녹지 지정
㉓	14단지 연변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간선도로변 완충기능과 경관 · 상징 · 보행 등 다목적 기능의 경관녹지 지정
㉔	14단지 연변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간선도로변 완충기능과 경관 · 상징 · 보행 등 다목적 기능의 경관녹지 지정
㉕	하수도변 연변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시설세분 지정
㉖	하수도변 연변녹지	• 시설세분 지정 - 녹지 → 경관녹지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시설세분 지정

다. 유통 및 공급 시설

1) 수도공급설비 : 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광역 송수관	목동911-12 → 목동904-8	16,531.6	-	16,531.6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중복결정

2) 공동구 : 변경없음

■ 공동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환기구	환기구	목동903-9	7.6	-	7.6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②	환기구	환기구	목동911-13	5.7	-	5.7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③	공동구	공동구	목동925-2	4,634.2	-	4,634.2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기정	④	공동구	공동구	목동926-1	2,130.7	-	2,130.7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기정	⑤	공동구	공동구	목동927-1	1,035.6	-	1,035.6	서고시 422호 (94.12.27)	7단지

3)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열병합발전소	목동900	77,960.7	-	77,960.7	건고 282호 (91.06.05)	
기정	②	전기공급설비	신정동319-1	7,702.3	-	7,702.3	서고시 422호 (94.12.27)	변전소
기정	③	전기공급설비	목동905-10	1,584.5	-	1,584.5	〃	

4) 방송 · 통신시설 : 변경없음

■ 방송 · 통신시설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방송 · 통신시설	목동918-1	7,692.9	-	7,692.9	서고시 422호 (94.12.27)	전신전화국
기정	②	방송 · 통신시설	목동917-1	6,730.0	-	6,730.0	〃	기독교방송국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운동장 : 변경없음

■ 운동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운동장	목동914	126,133.4	-	126,133.4	서고시 422호 (94.12.27)	

2) 체육시설 : 변경없음

■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체육시설	목동914-5	20,783.3	-	20,783.3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②	체육시설	신정동322-10	6,877.1	-	6,877.1	〃	

3)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의약품 안전청	목동900-2	657.0	-	657.0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②	공공청사	소방서	목동900-11	4,327.2	-	4,327.2	〃	
기정	③	공공청사	의약품 안전청	목동900-12	8,313.0	-	8,313.0	〃	
기정	④	공공청사	목4동 주민센터	목동904-19	720.0	-	720.0	〃	
기정	⑤	공공청사	남부지방법원, 검찰청	신정동313-1	29,668.9	-	29,668.9	〃	
기정	⑥	공공청사	신정2동치안센터, 주민센터	신정동329-9	660.0	-	660.0	〃	
기정	⑦	공공청사	구민회관	신정동 322	4,685.7	-	4,658.7	〃	
기정	⑧	공공청사	경찰서	신정동 321, 321-2	6,862.2	-	6,862.2	〃	
기정	⑨	공공청사	구청	신정동 321-4	7,461.4	-	7,461.4	〃	
기정	⑩	공공청사	동파출소	목동 907-3	760.1	-	760.1	〃	
기정	⑪	공공청사	출입국 관리사무소	신정동 319-2	4,121.2	-	4,121.2	〃	
기정	⑫	공공청사	세무서	신정동 319-12	4,067.9	-	4,067.9	〃	
기정	⑬	공공청사	구의회	신정동 321-1	1,947.8	-	1,947.8	〃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⑭	공공청사	수도사업소	신정동 319-15	1,954.5	-	1,954.5	〃	
기정	⑮	공공청사	다목적회관	신정동 322-11	2,958.5	-	2,958.5	2006.04.20.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기정	⑯	공공청사	동파출소	신정동 322-9	1,008.5	-	1,008.5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⑰	공공청사	동파출소	신정동 324-5	656.2	-	656.2	〃	
기정	⑱	공공청사	동사무소	목동 919-3, 919-5	1,554.7	-	1,554.7	양천구고시 제2019-43호 (2019.06.13.)	
기정	⑲	공공청사	소방서	목동 919-6	4,459.9	-	4,459.9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⑳	공공청사	-	신정동 322-15	1,360.1	-	1,360.1	〃	
기정	㉑	공공청사	보건소	신정동 321-5	2,249.5	-	2,249.5	〃	
기정	㉒	공공청사	-	목동 908-32	1,013.7	-	1,013.7	2006.04.20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토지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비고
		지번	입체공간						
기정	공공청사	신정동 322-11	지상 1층 ~ 5층	2,958.5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2006.04.20	-
			잔여층		비도시계획시설	-	비도시계획시설		

■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 고
기정	①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②	〃	〃	〃	〃
기정	③	〃	〃	〃	〃
기정	④	〃	〃	〃	〃
기정	⑤	50% 이하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 고
기정	⑥	〃	250% 이하	-	〃
기정	⑦	60% 이하	기준용적률 : 500% 이하 허용용적률 : 800% 이하	80m 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⑧	〃	〃	〃	〃
기정	⑨	〃	〃	〃	〃
기정	⑩	〃	〃	100m 이하	〃
기정	⑪	〃	〃	80m 이하	〃
기정	⑫	〃	〃	〃	〃
기정	⑬	〃	〃	〃	〃
기정	⑭	〃	〃	〃	〃
기정	⑮	〃	〃	〃	〃
기정	⑯	〃	〃	〃	〃
기정	⑰	〃	〃	〃	〃
기정	⑱	〃	〃	120m 이하	〃
기정	⑲	〃	〃	〃	〃
기정	⑳	〃	〃	80m 이하	〃
기정	㉑	〃	〃	〃	〃
기정	㉒	〃	〃	100m 이하	〃

4) 문화시설 : 변경없음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양천도서관	도서관	목동 905, 905-32	5,474.3	-	5,474.3	94.12.27	

■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 고
기정	①	60% 이하	기준용적률 : 500% 이하 허용용적률 : 800% 이하	120m 이하	일반상업지역

5) 학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월촌초교	초등학교	목동901-1	12,067.7	-	12,067.7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②	영도초교	초등학교	목동903-1	12,605.6	-	12,605.6		
기정	③	경인초교	초등학교	목동911-4	11,525.8	-	11,525.8		
기정	④	서정초교	초등학교	목동927-5	12,556.4	-	12,556.4		
기정	⑤	신서초교	초등학교	신정동312-1	12,618.7	-	12,618.7		
기정	⑥	계남초교	초등학교	신정동325-7	18,932.9	-	18,932.9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⑦	갈산초교	초등학교	신정동330-10	12,659.4	-	12,659.4		
기정	⑧	신목중교	중학교	목동902-1	12,435.9	-	12,435.9		
기정	⑨	양정중교	중학교	목동911-2	19,889.6	-	19,889.6		
기정	⑩	목일중교	중학교	신정동330-2	12,771.5	-	12,771.5		
기정	⑪	목동중교	중학교	신정동319-8	1,020.0	-	1,020.0		
기정	⑫	양정고교	고등학교	목동911-3	19,869.1	-	19,869.1		
기정	⑬	진명여고	고등학교	목동927-6	19,834.9	-	19,834.9		
기정	⑭	목동고교	고등학교	신정동325-8	13,510.2	-	13,510.2	서고시 제2010-177호 (2010.5.13)	
기정	⑮	신목고교	고등학교	신정동330-3	13,937.3	-	13,937.3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⑯	세신유치원	유치원	신정동311-3	730.7	-	730.7		
기정	⑰	13단지유치원	유치원	신정동328-3	992.0	-	992.0		
기정	⑱	월촌중교	중학교	목동909	10,772.8	-	10,772.8	2006.04.20	중심 지역
기정	⑲	한가람고교	고등학교	목동909-12	10,352.7	-	10,352.7	〃	
기정	⑳	목운초중교	초등학교, 중학교	목동922	13,621.7	-	13,621.7	2004.01.15	

■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 고
기정	①	월촌초교	초등학교	30이하	120이하	5층이하	서고시 제2007-442호 (2007.12.6)
기정	②	영도초교	초등학교	〃	〃	〃	
기정	③	경인초교	초등학교	〃	〃	〃	
기정	④	서정초교	초등학교	〃	〃	〃	
기정	⑤	신서초교	초등학교	〃	〃	〃	
기정	⑥	계남초교	초등학교	〃	〃	〃	
기정	⑦	갈산초교	초등학교	〃	〃	〃	
기정	⑧	신목중교	중학교	〃	〃	〃	
기정	⑨	양정중교	중학교	〃	〃	〃	
기정	⑩	목일중교	중학교	〃	〃	〃	
기정	⑪	목동중교	중학교	〃	〃	〃	
기정	⑫	양정고교	고등학교	〃	〃	〃	
기정	⑬	진명여고	고등학교	35이하	〃	〃	
기정	⑭	목동고교	고등학교	45이하	150이하	5층이하	서고시 제2010-177호 (2010.5.13)
기정	⑮	신목고교	고등학교	35이하	120이하	5층이하	서고시 제2007-442호 (2007.12.6)
기정	⑱	월촌중교	중학교	〃	〃	〃	
기정	⑲	한가람고교	고등학교	〃	〃	〃	
기정	⑳	목운초중교	초등·중학교	40 이하	230 이하	9층 이하	

※ 1) 서고시 제2007-442호(2007.12.6.)로 서울시 초·중·고교의 건축범위가 일괄결정됨

6)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어린이집(3단지)	사회복지시설	목동903-3	1,012.4	-	1,012.4	서고시 422호 (94.12.27)	
기정	②	어린이집(10단지)	사회복지시설	신정동310-11	718.3	-	718.3	〃	
기정	③	노인종합복지관 (11단지)	사회복지시설	신정동325-3	2,141.7	-	2,141.7	〃	
기정	④	어린이집(14단지)	사회복지시설	신정동329-4	1,247.1	-	1,247.1	〃	
기정	⑤	남부준법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사회복지시설	신정동 330-11	3,353.8	-	3,353.8	〃	
기정	⑥	어린이집, 여성교실	사회복지시설	신정동 330-13	1,580.7	-	1,580.7		
기정	⑦	청소년회관	사회복지시설	목동918	5,473.8	-	5,473.8	〃	
기정	⑧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정동319-13	1,987.0	-	1,987.0	〃	

■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 고
기정	①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②	〃	〃	〃	〃
기정	③	〃	〃	〃	〃
기정	④	〃	〃	〃	〃
기정	⑤	〃	〃	〃	〃
기정	⑥	〃	〃	〃	〃
기정	⑦	〃	기준용적률 : 500% 이하 허용용적률 : 800% 이하	120m 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⑧	〃	〃	80m 이하	〃

마. 방재시설

1) 유수지 :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목동 (신정1)	유수지	목동914-6,915	104,961.0	-	104,961.0	서고시 422호 (94.12.27)	노외주차장과 일부중복결정
기정	②	오금 (신정2)	유수지	신정동330-4	38,239.5	-	38,239.5	〃	
				신정동330-14	4,015.5	-	4,015.5	〃	

2) 제방 : 변경없음

■ 제방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제방	-	목동900-9	15,527.0	-	15,527.0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일부 중복결정
				목동900-10	38,277.8	-	38,277.8	〃	
				목동910-2	6,037.7	-	6,037.7	〃	
				목동911-10	18,829.4	-	18,829.4	〃	
				목동914-3	44,335.3	-	44,335.3	〃	
기정	②	제방	-	신정동330-5	3,974.1	-	3,974.1	〃	도로와 일부 중복결정
				신정동330-8	28,605.5	-	28,605.5	〃	
				신정동330-18	357.4	-	357.4	〃	
				신정동330-19	2,336.0	-	2,336.0	〃	
				신정동330-20	11.5	-	11.5	〃	
				신정동330-21	1,365.2	-	1,365.2	〃	

바. 보건위생시설

1) 종합의료시설 : 변경없음

■ 종합의료시설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이대병원	종합병원	목동 911-1	27,805.4	-	27,805.4	서고시 422호 (94.12.27)	

사.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중앙수로 (7단지)	하수도	목동925-4	12,671.8	-	12,671.8	서고시 422호 (94.12.27)	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②	중앙수로변 (7단지)	하수도	목동926-4, 927-9	1,978.4	-	1,978.4	〃	7단지 서측
기정	③	하수도 (7단지 변)	하수도	목동926-6	615.4	-	615.4	〃	7단지 남측
기정	④	고지수로	하수도	신정동310-1	4,771.0	-	4,771.0	〃	10단지
기정	⑤	하수도	하수도	신정동331-1	461.8	-	461.8	〃	14단지 동측
기정	⑥	고지수로	하수도	신정동330-15	3,465.7	-	3,465.7	〃	14단지 남측

※ 상기 도시계획시설 중 특별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시설은 민간(조합)이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계획설명서 재원조달방안 참조)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계획

■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신 설		비 고
	가구번호	면적(㎡)	
가구 -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A1	96,186.0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가구 계획 수립
	A2	177,564.6	
	A3	171,688.4	
	A4	163,149.1	
	A5	122,825.3	
	A6	80,923.2	
	A7	117,450.6	
	A8	181,713.1	
	A9	146,916.7	
	A10	104,961.0	
	A11	135,726.0	
	A12	40,339.4	
	A13	65,872.3	
	A14	89,260.9	
	A15	105,520.4	
	A16	115,397.0	
	A17	148,024.4	
	A18	40,343.7	
	A19	80,011.8	
	A20	79,831.2	
	A21	127,339.5	
	A22	114,140.1	
	A23	59,420.0	
	A24	3,878.3	
	A25	79,475.5	
	A26	95,644.5	
	A27	136,937.4	
	A28	17,593.8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번호	면적(㎡)	가구번호	면적(㎡)	
가구 - 중심지역 (목동중심지구)	BL1	12,816.8	B1	12,816.8	구역 통합에 따른 가구번호 변경
	BL2	28,040.7	B2	28,040.7	
	BL3	21,071.8	B3	21,071.8	
	BL4	26,305.8	B4	26,305.8	
	BL5	29,619.3	B5	29,619.3	
	BL6	45,602.7	B6	45,602.7	
	BL7	33,246.0	B7	33,246.0	
	BL8	24,367.7	B8	24,367.7	
	BL9	49,207.0	B9	49,207.0	
	BL10	26,840.5	B10	26,840.5	
	BL11	22,945.9	B11	22,945.9	
	BL12	21,602.5	B12	21,602.5	
	BL13	16,835.0	B13	16,835.0	
		23,863.0		23,863.0	
	BL14	27,385.5	B14	27,385.5	
	BL15	29,559.5	B15	29,559.5	
	BL16	33,797.9	B16	33,797.9	
	BL17	22,220.7	B17	22,220.7	
	BL18	20,561.9	B18	20,561.9	
	BL19	18,044.4	B19	18,044.4	
	BL20	21,106.3	B20	21,106.3	

■ 가구계획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가구 - 중심지역 (목동중심지구)	•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BL ▸ B	• “목동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중심지역을 구분하여 가구번호 부여

나. 획지 계획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획지 결정 조서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신설	A1-①	A1	목동 900-4	3,302.8	-	-
신설	A1-②	〃	목동 900-2	657.0	-	공공청사
신설	A1-③	〃	목동 900-12	8,313.0	-	공공청사
신설	A1-④	〃	목동 900-11	4,327.2	-	공공청사
신설	A1-⑤	〃	목동 900	77,258.5	-	전기공급설비
신설	-	〃	목동 900-16	455.9	자율적공동개발	-
신설	-	〃	목동 900-17	1,169.5	자율적공동개발	-
신설	A2-①	A2	목동 901	163,197.4	특별계획구역1	1단지
신설	A3-①	A3	목동 902	155,041.1	특별계획구역2	2단지
신설	A4-①	A4	목동 903	146,538.1	특별계획구역3	3단지
신설	A5-①	A5	목동 904	101,514.5	특별계획구역4	4단지
신설	A6-①	A6	목동 913	70,485.4	특별계획구역5	5단지
신설	A7-①	A7	목동 912	108,854.4	특별계획구역5	5단지
신설	A8-①	A8	목동 911	94,634.5	특별계획구역6	6단지
신설	A11-①	A11	목동 925, 925-3	119,955.9	특별계획구역7	7단지
신설	A12-①	A12	목동 926, 926-2	38,208.7	특별계획구역7	7단지
신설	A13-①	A13	목동 927	21,985.3	특별계획구역7	7단지
신설	A13-②	〃	목동 927-3	800.3	-	종교시설
신설	A13-③	〃	목동 927-4	661.2	-	종교시설
기정	A14-①	A14	신정동 314, 314-5	72,108.0	특별계획구역8	8단지
신설	A14-②	〃	신정동 314-4	661.9	-	종교시설
신설	A15-①	A15	신정동 313	67,895.8	특별계획구역9	9단지
신설	A16-①	A16	신정동 312	99,278.3	특별계획구역9	9단지
신설	A17-①	A17	신정동 311	141,874.9	특별계획구역10	10단지
신설	A18-①	A18	신정동 310, 310-2	34,051.4	특별계획구역10	10단지
신설	A19-①	A19	신정동 325	64,555.7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신설	A20-①	A20	신정동 325-1	39,491.2	특별계획구역11	11단지
신설	A21-①	A21	신정동 326	121,591.9	특별계획구역12	12단지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신설	A22-①	A22	신정동 327	111,874.6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신설	A23-①	A23	신정동 50,265.1	50,265.1	특별계획구역13	13단지
신설	A24-①	A24	신정동 329-8	1,320.0	-	종교시설
신설	A24-②	〃	신정동 329-10	1,238.3	-	근생시설
신설	A24-③	〃	신정동 329-12	660.0	-	종교시설
신설	A25-①	A25	신정동 329	68,960.9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신설	A26-①	A26	신정동 332	34,004.1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신설	A26-②	〃	신정동 331	52,143.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신설	-	〃	신정동 332-4	310.0	자율적공동개발	-
신설	-	〃	신정동 332-5	313.3	자율적공동개발	-
신설	-	〃	신정동 332-6	318.6	자율적공동개발	-
신설	-	〃	신정동 332-7	308.6	자율적공동개발	-
신설	A27-①	A27	신정동 330	61,448.7	특별계획구역14	14단지

- 이하여백 -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1-1	B1	목동 910	12,816.8		목마공원
기정	2-1	B2	목동 909	10,772.8		
기정	2-2	〃	목동 909-12	10,352.7		
기정	2-3	〃	목동 909-2	1,676.1		
기정	2-4	〃	목동 909-3	641.3		
기정	2-5	B2	목동 909-4	1,295.9		
기정	2-6	〃	목동 909-5	1,009.7		
기정	2-7	〃	목동 909-6	540.1		
기정	2-8	〃	목동 909-7	540.1		
기정	2-9	〃	목동 909-8	540.1		
기정	2-10	〃	목동 909-9	671.9		
기정	3-1	B3	목동 908	1,319.8		
기정	3-2	〃	목동 908-25	697.9		
기정	3-3	〃	목동 908-26	1,052.9		
기정	3-4	〃	목동 908-27	1,052.6		
기정	3-5	〃	목동 908-29	1,458.1		
기정	3-6	〃	목동 908-31	728.2		
기정	3-8	〃	목동 908-33	1,007.6		
기정	3-7	〃	목동 908-32	1,013.7		
기정	3-9	〃	목동 908-34	6,258.9		
기정	3-10	〃	목동 908-28	6,482.1		
기정	4-1	B4	목동 907	4,136.9		
기정	4-2	〃	목동 907-4	1,442.9		
기정	4-3	〃	목동 907-5	1,650.1		
기정	4-4	〃	목동 907-6	899.9		
기정	4-5	〃	목동 907-8	1,188.4		
기정	4-6	〃	목동 907-7	900.3		
기정	4-7	〃	목동 907-10	1,275.5		공동개발 완료
		〃	목동 907-11	1,500.2		
기정	4-8	〃	목동 907-12	2,000.0		
기정	4-9	〃	목동 907-23	1,979.6		
기정	4-10	〃	목동 907-13	779.9		
기정	4-11	〃	목동 907-14	2,123.8		
기정	4-12	〃	목동 907-19	1,124.2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4-13	〃	목동 907-16	972.0		
기정	4-14	〃	목동 907-17	1,043.8		
기정	4-15	〃	목동 907-18	690.0		
기정	4-16	〃	목동 907-3	760.1		
기정	4-17	〃	목동 907-2	1,838.2		
기정	5	B5	목동 906	29,619.3		문화공원 (서고시 2021-127호)
기정	6-1	B6	목동 918	5,743.8		
기정	6-2	〃	목동 905-27	900.7		
기정	6-3	〃	목동 905-28	500.0		
기정	6-4	〃	목동 905-29	684.7		
기정	6-5	〃	목동 905-30, 목동 905-31	1,184.6		획지합병
기정	6-7	〃	목동 905-34	874.5		
기정	6-8	〃	목동 905-33	670.7		
기정	6-9	〃	목동 905-10	1,584.5		
기정	6-10	〃	목동 905-16	9,314.7		
기정	6-11	〃	목동 905	4,244.4		도서관 부지
		〃	목동 905-32	1,229.9		
기정	6-12	〃	목동 905-3	3,025.1		
기정	6-13	〃	목동 905-20	570.3		
기정	6-14	〃	목동 905-21	892.8		
기정	6-15	〃	목동 905-22	6,489.1		
기정	6-16	〃	목동 918-1	7,692.9		
기정	7-1	B7	목동 917-1	6,730.0		
기정	7-2	〃	목동 917	9,905.7		
기정	7-3	〃	목동 917-6	9,866.9		
기정	7-4	〃	목동 917-9	6,725.1		
		〃	목동 917-16	18.3		
기정	8-1	B8	목동 916	24,367.7		대지분할가능
기정	9-1	B9	목동 920	14,114.9		
기정	9-2	〃	목동 921	21,470.4		오목공원
기정	9-3	〃	목동 922	13,621.7		
기정	10-1	B10	목동 919-8	10,578.4	특별계획구역3	
기정	10-2	〃	목동 919-7	8,594.5	특별계획구역3	
기정	10-3	〃	목동 919-6	4,459.9		
기정	10-4	〃	목동 919	1,653.0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10-5	〃	목동 919-5, 919-3	1,544.7		양천구고시 제2019-43호
기정	11-1	B11	목동 924-5	4,359.5		공동개발 완료
			목동 924	6,459.9		
			목동 924-3	5,596.3		
기정	11-2	B11	목동 924-4	6,530.2		
기정	12-1	B12	목동 923-6	4,379.5		
기정	12-2	〃	목동 923-15	3,250.1		
기정	12-3	〃	목동 923	1,493.6		
기정	12-4	〃	목동 923-11	1,493.6		
기정	12-5	〃	목동 923-12	1,545.6		공동개발 완료
		〃	목동 923-13	1,545.5		
기정	12-6	〃	목동 923-14	3,250.2		
기정	12-7	〃	목동 923-5	4,644.4		
기정	13-1	B13	목동 406-5 일대	8,531.0	특별계획구역1	
기정	13-2	〃	목동 406-11 일대	8,304.0	특별계획구역1	
기정	13-3	〃	목동 405 일대	10,212.0	특별계획구역2-1	
기정	13-4	〃	목동 405 일대	13,651.0	특별계획구역2-1	
기정	14-1	B14	신정동 318-6	1,062.1		
기정	14-2	〃	신정동 318-5	901.5		
기정	14-3	〃	신정동 318-19	1,039.8		
		〃	신정동 318-17	927.6		
기정	14-4	〃	신정동 318-3	794.8		
기정	14-5	〃	신정동 318-2	852.0		
기정	14-6	〃	신정동 318-1	2,126.8		
기정	14-7	〃	신정동 318	3,593.7		
		〃	신정동1298-4	78.7		
기정	14-8	〃	신정동 318-10	8,621.1	특별계획구역2-2	
기정	14-9	〃	신정동 318-9	1,404.0		
기정	14-10	〃	신정동 318-8	908.7		
기정	14-11	〃	신정동 318-7	929.7		
기정	14-12	〃	신정동 318-12	4,145.0	특별계획구역2-2	
기정	15-1	B15	신정동 319-1	7,702.3		
기정	15-2	〃	신정동 319-17	591.4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15-3	〃	신정동 319-18	567.1		
기정	15-4	〃	신정동 319-19	567.5		
기정	15-5	〃	신정동 319-20	567.6		
기정	15-6	〃	신정동 319-21	865.1		
기정	15-7	〃	신정동 319-22	648.1		
기정	15-8	B15	신정동 319-23	647.9		
기정	15-9	〃	신정동 319	2,085.5		
기정	15-10	〃	신정동 319-26	1,076.4		
기정	15-11	〃	신정동 319-11	2,110.0		
기정	15-12	〃	신정동 319-12	4,067.9		
기정	15-13	〃	신정동 319-13	1,987.0		
기정	15-14	〃	신정동 319-15	1,954.5		
기정	15-15	〃	신정동 319-2	4,121.2		
기정	16	B16	신정동 320	33,797.9		양천공원
기정	17-1	B17	신정동 321-7	2,049.7		공동개발 완료
		〃	신정동 321-6	1,650.1		
기정	17-2	〃	신정동 321-5	2,249.5		
기정	17-3	〃	신정동 321-1	1,947.8		
기정	17-4	〃	신정동 321-4	7,461.4		
기정	17-5	〃	신정동 321	6,556.1		
		〃	신정동 321-2	306.1		
기정	18-1	B18	신정동 322	4,658.7		
기정	18-2	〃	신정동 322-15	1,360.1		
기정	18-3	〃	신정동 322-5	1,139.3		
기정	18-4	〃	신정동 322-1	742.0		
기정	18-5	〃	신정동 322-9	1,008.5		
기정	18-6	〃	신정동 322-10	6,877.1		
기정	18-7	〃	신정동 322-11	2,958.5		
기정	18-8	〃	신정동 322-2	660.2		
기정	18-9	〃	신정동 322-12	1,157.5		
기정	19-1	B19	신정동 323	614.0		
기정	19-2	〃	신정동 323-7	900.2		
기정	19-3	〃	신정동 323-6	900.3		
기정	19-4	〃	신정동 323-18	607.0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19-5	〃	신정동 323-4	720.9		
기정	19-6	〃	신정동 323-5	899.8		
기정	19-7	B19	신정동 323-9	700.0		공동개발 완료
		〃	신정동 323-22	700.1		
		〃	신정동 323-23	843.7		
		〃	신정동 323-26	794.3		
기정	19-8	〃	신정동 323-24	604.1		
기정	19-9	〃	신정동 323-25	726.5		
기정	19-10	〃	신정동 323-12	900.1		
기정	19-11	〃	신정동 323-20	614.0		
기정	19-12	〃	신정동 323-13	608.2		
기정	19-13	〃	신정동 323-11	900.0		
기정	19-14	〃	신정동 323-10	899.8		
기정	19-15	〃	신정동 323-16	719.7		
기정	19-16	〃	신정동 323-31	700.2		공동개발 완료
		〃	신정동 323-30	700.0		
		〃	신정동 323-29	843.0		
기정	19-17	〃	신정동 323-17	795.1		
기정	19-18	〃	신정동 323-33	749.2		
기정	19-19	〃	신정동 323-32	604.2		
기정	20-1	B20	신정동 324	1,672.5		
기정	20-2	〃	신정동 324-7	2,669.9		
기정	20-3	〃	신정동 324-8	2,670.2		
기정	20-4	〃	신정동 324-9	1,104.3		
기정	20-5	〃	신정동 324-2	660.2		
기정	20-6	〃	신정동 324-10	4,757.0		
기정	20-7	〃	신정동 324-11	4,912.1		
기정	20-8	〃	신정동 324-12	1,123.9		공동개발 완료
		〃	신정동 324-1	880.0		
기정	20-9	〃	신정동 324-5	656.2		

2. 건축물 용도 결정(변경)조서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허용 및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전 층	비 고
불허 용도	공통사항	A	• 해당 제2·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 용도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게임제공업소,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용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용도제한시설 • 지하층 주거시설	
	목동 900-4	B	• 허용용도 외 불허	
허용 용도	목동 900-4	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내지원시설중기숙사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의 ④항에 의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지원시설포함)은 건축 연면적의 30% 이내로 함)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관리청에 기부채납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위 용도외에 추가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가목, 라목(공연장, 전시장)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공공업무시설	서고시 제2020-239호

– 이하여백 –

■ 지정 및 권장용도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전 층	저층부 1층~2층	비 고
지정용도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특별계획구역)	a	• 공동주택 • 주택법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3조에 의한 "단지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을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에 설치
	종교용지	b	• 종교시설		건축물 연면적의 80% 이상으로 계획할 경우 지정용도 수용으로 간주
권장용도	기타지역 (기반시설 부지 제외)	1	-	•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저층부 가로활성화

※ 1) 상기 용도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분류를 말함

2) 권장용도 면적은 연면적 중 순수 당해용도에 사용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이때 연면적은 주차장, 부속시설(지하층 전기, 난방 등 기계실) 제외

3) 전층권장용도의 경우 권장용도의 연면적이 해당 지상층 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보며,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증가되는 전체연면적이 증가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당 지상층 연면적의 20%이상이 되어야 함. 이 경우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은 제외하고 지하층 및 공용면적은 포함하여 산정

4) 획지 중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용도는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규모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며 별도의 건축물 용도계획은 수립하지 않음

– 이하여백 –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분	불허용도 (도면표시 U1)	비고
기정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예식장 : 다만 B7~B12 제외)주1),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동·식물원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의 학원 중 입시학원	
	• 노유자시설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 창고시설 중 하역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주2)	
	• 쓰레기 처리장	
	• 교정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운수시설	

※ 1) 중심상업구역으로 설정한 B7 ~ B12의 경우 집회장(예식장) 불허용도 적용을 제외하되, 교통정체 및 주차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식장의 신축 혹은 용도변경 시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기준	상세사항
교통처리계획서의 제출	• 불법 주정차 문제 및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허가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함 • 교통처리계획서(조치계획서)의 내용 (예시) ① 셔틀버스의 운영 대수와 동선 ② 교통영향을 줄이기 위한 셔틀버스의 주정차 계획 ③ 인접 도로에서의 방문객 불법 주정차 방지계획 ④ 기타 원활한 교통 및 교통안전을 위한 계획

2)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포함) : 자동차관련시설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불허용도에 해당하나(단독으로 설치시),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시에는 부설주차장을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의 주차장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제12조의 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함

■ 권장용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획지번호	권장용도	비고
기정	1	B2 B3 B4 B19 B20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상업 · 주거 지원구역
	2	B6 B18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복지 및 근린상업구역
	3	B7 B8 B9 B11 B12	• 방송통신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중심상업구역 (상업 · 업무)
	4	B10	• 지역활성화 용도 :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주1), 소프트웨어진흥시설주1), 도시형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주1), 방송통신시설 • 수익성 확보 용도 : 관광숙박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공공성 확보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주민편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연구소 · 도서관, 운동시설	중심상업구역 (지역경제)
	5	B15 B17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행정 · 업무구역

※ 1)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상을 권장용도로 계획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2) 특별계획구역(B13) - 기결정
3) 특별계획3구역(BL10) - 별도 수립
주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지정용도 결정조서

구분	획지번호	위치	면적(㎡)	변경		비고
				도면 표시	지정용도	
기정	B2-3	목동 909-2	1,676.1	S1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B4-17	목동 907-2	1,838.2			
	B6-12	목동 905-3	3,025.1			
	B14-7	신정동 318	3,593.7			
	B14-9	신정동 318-9	1,404.0			
	B15-11	신정동 319-11	2,110.0			
	B18-4	신정동 322-1	742.0			
	B18-8	신정동 322-2	660.2			
	B19-16	신정동 323-29, 30, 31	2,243.2			
	B20-5	신정동 324-2	660.2			
	B20-8	신정동 324-1, 12	2,003.9			
	B11-2	목동 924-4	6,530.2	S2	전신전화국 · 통신용시설	
	B15-4	신정동 319-19	567.5	S3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1) 건축물 연면적의 80% 이상으로 계획할 경우 지정용도 수용으로 간주
2) 특별계획3구역(BL10) - 별도 수립

3.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폐율 계획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기타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50% 이하	서고시 제2020-239호 (1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건폐율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 따르며,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위치	계획내용	비고
상업지역	60% 이하	

※ 1) 특별계획구역(B13) - 기결정 : 건폐율 50% 이하

- 이하여백 -

나. 용적률계획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기타지역	준공업지역 (목동 900-4)	300% 이하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름 - 허용용적률 ×(1+1.3×가중치× α토지 +0.7× α건축물)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25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1) 주거지역(공동주택부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름.(향후, 기본계획변경 시 이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에 시행자가 기반(공공)시설을 조성 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합산하여 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순부담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유지면적)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서울시, 2022.10.)개정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식 적용
- 상한 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 α토지+1.0× α건축물)
: 허용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용적률 적용 산정
- α=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부담 면적)/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 면적
2) 기타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 α토지+(1.0~1.2)× α건축물) 이내] 적용
3)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용적률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 따르며,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인센티브 (용적률)</th></tr>
<tr><td>우수디자인</td><td colspan="3">15%</td></tr>
<tr><td>장수명주택</td><td>우수등급이상</td><td colspan="2">10%</td></tr>
<tr><td>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td><td colspan="3"><table><tr><th>구 분</th><th>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th><th>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th></tr><tr><td>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td><td>12%</td><td>8%</td></tr><tr><td>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td><td>8%</td><td>4%</td></tr></table></td></tr>
<tr><td>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td><td colspan="3"><table><tr><th>20% 초과</th><th>20% 이하 15% 초과</th><th>15% 이하 10% 초과</th></tr><tr><td>3%</td><td>2%</td><td>1%</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인센티브 (용적률)</th></tr>
<tr><td>지능형 건축물</td><td>
<table>
<tr><td>1등급</td><td>2등급</td><td>3등급</td><td>4등급</td></tr>
<tr><td>15%</td><td>12%</td><td>9%</td><td>6%</td></tr>
</table>
</td></tr>
<tr><td>역사문화보전</td><td>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전
옛길/물길 등 복원(재현)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td><td>5%</td></tr>
<tr><td>합 계</td><td colspan="2">최대 20% 이내</td></tr>
</table>

※ 서울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관련 지침 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

■ 기타지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친환경 인센티브 : 환경친화적 건축물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 이상 충족
• 계획유도 인센티브 :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등 규제적 성격의 인센티브 항목과 권장용도, 공개공지 추가확보 등 유도적 인센티브 항목으로서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 이내 충족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체계

허용용적률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친환경 계획 준수시 (30%이상)	유도 및 규제항목 준수시 (70%이내)

• 전층 권장용도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자율적 공동개발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30/100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을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불가
– 단, 연면적 5,0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30/100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가능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및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항 목	세 분	세 부 계 획 기 준		비 고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 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 0.06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신재생 에너지 2등급 : 기준용적률 × 0.10 신재생 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신재생 에너지 4등급 : 기준용적률 × 0.06 신재생 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 × 0.04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별표 1)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 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0.2		- 기준용적률 × 0.05 이내

②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항 목	세 분	세 부 계 획 기 준	비 고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 3	• 조성 형태(필로티, 개방형 구조등)에 따라 계수 조정 가능 (필로티, 개방형 구조 요율 = 1)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선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3	
건축물 용 도	지정 또는 권장	기준용적률 × (지정·권장용도 면적 / 연면적) × 1	• 20%이상 설치시 (주차장 제외)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연면적) × 1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 설치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함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기준용적률 × 0.1	• 저층부 상업시설 + 전시시설 등 •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시

항 목	세 분	세 부 계 획 기 준	비 고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 X 0.5	•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 / 연면적) X 4 이내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계획수립시 결정한 시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 포함)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 이하여백 –

■ 900-4번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계획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6호(2015.12.1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9호(2020.06.11.)로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름
- 아래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은 목동 900-4번지에 한하여 적용함
-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친환경 인센티브가 전체 인센티브의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가 전체 인센티브의 70% 이내이어야 함

① 친환경 인센티브

구분	항목 및 내용	완화기준		비고
기정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세 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 0.4이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 0.06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	공급률 20% 초과 : 3% 공급률 20% 이하 ~ 15% 초과 : 2% 공급률 15% 이하 ~ 10% 초과 : 1%		- 공급률 : 건축물의 총 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 비율
	중수도	기준용적률 x 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1		-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 개방형구조(필로티 제외)

※ 1) 상기 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2) '15.7.9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폐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항목 및 계획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② 계획유도 인센티브

구분	항목 및 내용		완화기준		계수설명
기정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a	a = 개방형구조 : 3.0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a = 개방형구조 : 4.0 (필로티 제외)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500% 이하	800% 이하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1) 특별계획구역(B13) - 기결정 :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633%
2)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비율,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3)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서울시, 2019.01)개정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식 적용

■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용적률 결정조서

• 용적률 결정조서의 용적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과 그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다음의 용적률을 적용함

위치	계획내용									비고
	오피스텔 연면적 비율(%)주1)	80이상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20미만	
목동 중심지역 (목동중심지구)	용적률(%)	500 이하	550 이하	600 이하	650 이하	700 이하	75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25호

※ 1)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시 본 지구단위계획의 밀도계획(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용적제)에 적합하여야 함
2) 용도변경 등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제3항에 의한 용적률 운용방식을 준용함
3) 특별계획3구역(BL10) - 별도 수립
주1) 공동주택 용도를 도입할 경우 "오피스텔 비율(%)"을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합계 연면적 비율"로 봄

- 이하여백 -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친환경 인센티브가 전체 인센티브의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가 전체 인센티브의 70% 이내이어야 함

① 친환경 인센티브 - 목동 중심지역 전 구역 공통

구분	항목 및 내용	완화기준		비고
기정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세 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기준용적률 X 0.4이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신재생 에너지 2등급 : 기준용적률 X 0.10 신재생 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신재생 에너지 4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신재생 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별표 1)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 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x 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 / 대지면적) X 0.2		- 기준용적률 X 0.05 이내

※ 1) 친환경 인센티브를 통해 총 인센티브 대비 30% 초과 달성 시 계획유도 인센티브를 대체 가능하나, 계획유도 인센티브의 초과 달성의 경우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는 적용 불가
2) 특별계획3구역(BL10) - 별도 수립

② 계획유도 인센티브 - A구역(상업 · 주거지원구역, 행정 · 업무구역)

구분	항목 및 내용		완화기준		계수설명
기정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a	필로티구조 : a=1.5 개방형구조 : a=2.0
		전면공지 (건축선)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1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a	필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0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기준용적률 X (조성연면적-기준연면적)/연면적	X0.5	-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X (조성연면적-기준연면적)/연면적	X0.5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주1)	기준용적률	X0.1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시
	도시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 투시형 벽면	기준용적률	X0.03	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 투시형 벽면 처리 시
		건축물 형태 - 투시형 셔터	기준용적률	X0.02	1층부 투시형 셔터 사용 시
		건축물 형태 - 아케이드	기준용적률	X0.05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 시주2), 주3)
		야간경관조명	기준용적률	X0.05	시공 전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
	보행개선	지하철 · 경전철 연결통로 설치	기준용적률	X0.1	준수 시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기준용적률	X0.05	준수 시
	건축물 개방	건물 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연면적)	X0.5	준수 시

※ 1) 아케이드 : 벽면과 기둥, 지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개방된 통로공간 (필로티 구조 또는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 구조로 조성된 연도형 아케이드에 한하며, 상세 기준은 시행지침을 따름)

주1) 가로활성화용도 : 가로의 보행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층 혹은 지상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를 지정한 것으로, 본 목동 중심지역의 경우 상업시설 집적화를 위하여 보행자의 가로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매점, 음식점, 기타 판매시설로서 아래과 같이 결정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가목에서 규정하는 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나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 차(茶) · 음식 · 빵 · 떡 ·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라목에서 규정하는 서점
  - 아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 차(茶) · 음식 · 빵 · 떡 ·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자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음식점

주2) 아케이드형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주3) 아케이드형 건축물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0%를 추가로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 준수

③ 계획유도 인센티브 - B구역(문화복지 및 근린상업구역, 주거복합구역)

구분	항목 및 내용			완화기준		계수설명
변경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a	필로티구조 : a=1.5 개방형구조 : a=2.0
		전면공지 (건축선)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1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a	필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0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기준용적률 X (조성연면적-기준연면적)/연면적	X0.5	-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X (조성연면적-기준연면적)/연면적	X0.5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주1)		기준용적률	X0.1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시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연면적)	X0.5	최상층 개방공간 설치 시
	도시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투시형 벽면	기준용적률	X0.03	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 투시형 벽면 처리 시
			투시형 셔터	기준용적률	X0.02	1층부 투시형 셔터 사용 시
			아케이드	기준용적률	X0.05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 시주2), 주3)
		야간경관조명		기준용적률	X0.05	시공 전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
	보행개선	지하철 · 경전철 연결통로 설치		기준용적률	X0.1	준수 시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기준용적률	X0.05	준수 시
	건축물 개방	건물 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연면적)	X0.5	준수 시

※ 1) 아케이드 : 벽면과 기둥, 지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개방된 통로공간 (필로티 구조 또는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 구조로 조성된 연도형 아케이드에 한하며, 상세 기준은 시행지침을 따름)

주1) 가로활성화용도 : 가로의 보행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층 혹은 지상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를 지정한 것으로, 본 목동 중심지역의 경우 상업시설 집적화를 위하여 보행자의 가로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매점, 음식점, 기타 판매시설로서 아래과 같이 결정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가목에서 규정하는 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나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 차(茶) · 음식 · 빵 · 떡 ·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라목에서 규정하는 서점
  - 아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 차(茶) · 음식 · 빵 · 떡 ·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자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음식점

주2) 아케이드형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주3) 아케이드형 건축물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0%를 추가로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 준수

④ 계획유도 인센티브 - C구역(중심상업구역)

구분	항목 및 내용			완화기준		계수설명
변경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a	필로티구조 : a=1.5 개방형구조 : a=2.0
		전면공지 (건축선)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2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a	필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0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기준용적률 X (조성연면적-기준연면적)/연면적	X0.5	-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X (조성연면적-기준연면적)/연면적	X0.5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주1)		기준용적률	X0.1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시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연면적)	X1.0	최상층 개방공간 설치 시
	도시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투시형 벽면	기준용적률	X0.03	1층부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 투시형 벽면 처리 시
			투시형 셔터	기준용적률	X0.02	1층부 투시형 셔터 사용 시
			아케이드	기준용적률	X0.05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 시주2), 주3)
		야간경관조명		기준용적률	X0.05	시공 전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자문받아 설치 시
	보행개선	지하철·경전철 연결통로 설치		기준용적률	X0.1	준수 시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기준용적률	X0.05	준수 시
	건축물 개방	건물 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주차장 제외 연면적)	X0.5	준수 시

※ 1) 아케이드 : 벽면과 기둥, 지붕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개방된 통로공간 (필로티 구조 또는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 구조로 조성된 연도형 아케이드에 한하며, 상세 기준은 시행지침을 따름)

주1) 가로활성화용도 : 가로의 보행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층 혹은 지상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를 지정한 것으로, 본 목동 중심지역의 경우 상업시설 집적화를 위하여 보행자의 가로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매점, 음식점, 기타 판매시설로서 아래과 같이 결정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에서 규정하는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나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에서 규정하는 서점
  아목에서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자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음식점

주2) 아케이드형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주3) 아케이드형 건축물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0%를 추가로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 준수

2) 특별계획3구역(BL10) - 별도 수립

다. 높이계획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구 분	적용지역		계획기준		비고
			기정	변경	
최고 높이 (층수)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기타지역

구 분	적용지역	계획기준		비고
		기정	변경	
최고높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층 이하	좌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좌동	
	제3종일반주거지역	-	간선부(20m 이상) : 60m 이하 이면부(20m 이하) : 40m 이하	
	준공업지역 (목동 900-4)	45m 이하	좌동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높이는 각 시설별 건축범위 결정조서에 따름

2) 중심지역 (목동중심지구)

가구번호		최고높이주1)	가구번호	최고높이주1)	비고
B2		50m 이하	B12	130m 이하	
B3		100m 이하	B13	180m 이하 (55층 이하)	
B4		100m 이하	B14	130m 이하	
B6		120m 이하	B15	80m 이하	
B7		170m 이하	B17	80m 이하	
B8		260m 이하	B18	80m 이하	
B9		170m 이하	B19	80m 이하	
B10		120m 이하	B20	80m 이하	
B11	획지11-1	155m 이하			
	획지11-2	130m 이하			

※ 1) 특별계획구역(B13) - 기결정

주1) 최고높이 한도 내에서 건축법 규정에 의한 사선제한(H=1.5D) 미적용

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선 계획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구 분	도변 표시	적용지역	계획기준(신설)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고
건축한계선	Ⅰ	이대목동병원 목동동로 연접부 오목로변	획지선으로부터 4m		중심지역 및 기존시가지 연접가로
	Ⅱ	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목동동로, 중앙로32길, 목동로3길 10·11·12단지 간 목동동로, 오목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8길, 목동서로10길, 목동서로12길,	획지선으로부터 6m		단지 간 사이가로 및 그 외 경계부
		그 외 이면부, 7단지 서측경계부, 9단지 북측경계부, 14단지 구역경계부	획지선으로부터 6m	-	
		안양천로변, 신월로,	-	획지선으로부터 6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
	Ⅲ	목동 900-4 안양천로변, 신정 313-1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
	Ⅳ	목동서로2길, 오목로52길, 신정 329-12 목동동로변, 목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1m	기타지역 변 가로
	Ⅴ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0m	획지선으로부터 6m	광역 통경축
고층부 벽면한계선 (15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적용)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3m	-	

※ 특별계획구역 내 저층부 건축지정선(2층이하) 적용구간은 적용 배제

2) 중심지역 (목동중심지구)

구분	적용지역	비고
건축한계선	목동동로 (대상지 동측)	1m, 3m, 4m(B13), 15m(B8)
	목동서로 (대상지 서측)	1m(주차장), 3m, 4m(B6,13)
	블록간 도로	3m, 4m, 5m(B13), 15m(B8)
	보행자전용도로	1m, 3m, 4m, 5m(B11)
	기타	2m, 6m(B8), 7m, 8m(B18), 10m, 12m(B9)

※ 1) 특별계획구역(B13) - 기결정

나.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색채 등 계획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배치 및 형태	공동주택	공동주택 용지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주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기존 시가지변 및 안양천변으로 접한 부분은 중저층(15층 이하)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는 고층으로 배치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 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동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통경축 확보를 위해 국회대로 · 목동로변으로 10m 건축선을 후퇴하고,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함 • 국회대로 · 목동로변으로 면한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최고 층수부터 4개 층 이상 층수변화를 주어 V자형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 개방감 있는 경관 연출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공동주택 용지	• 전면도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3층 이하, 1층부 층고는 4m 이상으로 계획	-
기타 외관 요소	옥외설비	구역 전체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가능한 별도의 설치 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인허가청의 승인을 받아 1m이하의 투시형 목책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광고물 설치제한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다음 기준을 준수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 완화(서울시고시2004-158호)”	

– 이하여백 –

2) 중심지역 (목동중심지구)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1층 바닥 높이	• 전 구역	• 1층 바닥면과 접한 보도나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경사지의 경우 높은 쪽을 기준) 30cm 이내로 함
개구부	• 폭25m 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한함	• 벽면의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하도록 설치 • 출입구는 점포1개당 2개소이하로 제한
벽면처리	• 폭12m 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	• 개구부가 없는 벽면 금지
투시벽	• 폭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 • 보행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	•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 처리
투시형 셔터	• 폭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 • 보행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	•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사용
아케이드	• 보행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	• 1층 전면부를 아케이드로 조성
건축물 외장	• 전 구역	•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품격 있는 색조 사용
	• 도로에 면한 획지	• 쇼윈도의 설치등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 권장 • 10층 이상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권장(상향)

※ 1) 특별계획구역(B13) - 기결정

■ 옥외광고물 계획

구분		계획내용
가로형 간판	색채	• 바탕색은 벽면과 어울리는 색 사용 (외벽과 보색관계, 또는 색상대비가 큰 색 사용금지) • 한 건물에 설치하는 여러 간판은 같은 계통의 바탕색을 사용하여야 함
	형상 및 크기	• 층별간 가로의 크기는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세로의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돌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 돌출폭은 30cm이하로 하되, 층별 간 돌출폭을 동일하게 설치 / 변형간판은 입체형만 허용
	위치 및 개수	• 1개업소당 1개만 설치 / 판류형은 1층에만 허용 (세로형간판 금지) • 입체형은 외벽 좌측 또는 우측설치
지주 이용 간판	색채	• 가로형 간판과 동일
	형상 및 크기	• 상단까지의 높이 : 10m이내 • 1면의 면적(입체형일 경우 가장 넓은 면)은 10㎡ 이내로 하고 간판 면적의 합계는 40㎡를 초과할 수 없음
	위치 및 개수	• 건물 주출입구변에 2개 업소 이상 통합 연립 형으로 1개를 설치 • 지주이용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때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 및 공공보행통로 부분 설치금지 / 네온, 전광, 점멸 금지 • 보도의 경계로부터 50㎝ 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 도로로부터 100㎝ 이상) 이격
돌출형 간판	색채	• 가로형 간판과 동일
	형상 및 크기	• 상단은 벽면높이 초과 금지 /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 초과 금지 • 세로길이 20m이내 / 간판두께는 50cm이내 • 이·미용업소 두께 : 지름 30cm이내, 길이 150cm이내 / 벽면과 간판간격 필요시 30cm이내
	위치 및 개수	•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 표시 / 2개 이상 업소가 간판을 표시할 경우 상·하로 일직선에 위치 • 2층이상부터 5층이하까지 허용 / 전면폭 10m이하인 건물은 한 줄로, 10m초과 시마다 다른 한 줄로 표시 • 부조건물, 가설 건축물은 표시 금지

다. 대지 안의 공지 계획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구 분	적용지역	계획기준(신설)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고
전면공지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	• 획지와 건축선 사이의 구간에 단지내의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된 보행공간 조성		결정도 참고
공공보행 통로	목동 900-4 안양천로변	-	• 폭원 4m : 1개소	결정도 참고
공개공지	목동 900-4	-	• 1개소 위치지정	결정도 참고 :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2) 중심지역 (목동중심지구)

구분	적용지역	계획기준(기정)	비고
공개공지	전 구역	• 보행자전용도로 활성화 및 근린공원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곳에 공개공지를 조성	주1)
전면공지	전 구역	• 건축한계선에 의해 전면공지 조성	주2)
공공보행 통로	간선가로변 세장비율 과다필지	• 도로변 및 인접대지사이에 건축한계선을 후퇴하여 1m, 3m, 6m폭의 통로 확보 • 접하는 보도 및 도로, 인접대지와 단차발생금지 • 담장, 계단, 화단, 간판 등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 1) 특별계획구역 (B13) - 기결정
주1) 공개공지 확보대상 건축물은 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의 규정(공개공지 등의 확보) 준수
주2)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중 필요한 곳에 공공보행통로 지정

- 이하여백 -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1	목동 901 일대	-	증) 165,496.9	165,496.9	목동 1단지
신설	특별계획구역2	목동 902 일대	-	증) 159,252.5	159,252.5	목동 2단지
신설	특별계획구역3	목동 903 일대	-	증) 150,543.5	150,543.5	목동 3단지
신설	특별계획구역4	목동 904 일대	-	증) 122,825.3	122,825.3	목동 4단지
신설	특별계획구역5	목동 912 일대	-	증) 204,003.2	204,003.2	목동 5단지
신설	특별계획구역6	목동 911 일대	-	증) 102,424.6	102,424.6	목동 6단지
신설	특별계획구역7	목동 925 일대	-	증) 225,141.5	225,141.5	목동 7단지
신설	특별계획구역8	신정동 314 일대	-	증) 88,599.0	88,599.0	목동 8단지
신설	특별계획구역9	신정동 312 일대	-	증) 183,057.8	183,057.8	목동 9단지
신설	특별계획구역10	신정동 310 일대	-	증) 194,686.2	194,686.2	목동 10단지
신설	특별계획구역11	신정동 325 일대	-	증) 128,668.4	128,668.4	목동 11단지
신설	특별계획구역12	신정동 326 일대	-	증) 127,339.5	127,339.5	목동 12단지
신설	특별계획구역13	신정동 327 일대	-	증) 178,919.9	178,919.9	목동 13단지
신설	특별계획구역14	신정동 329 일대	-	증) 250,722.1	250,722.1	목동 14단지

2) 중심지역 (목동중심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1	특별계획1구역 획지 (BL13-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6-5 일대	8,531.0	-	8,531.0	
		특별계획1구역 획지 (BL13-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6-11 일대	8,304.0	-	8,304.0	
기정	특별계획구역 2-1	특별계획2-1구역 획지 (BL13-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5 일대	10,212.0	-	10,212.0	
		특별계획2-1구역 획지 (BL13-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5 일대	13,651.0	-	13,651.0	
기정	특별계획구역 2-2	특별계획2-2구역 획지 (BL14-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8-10	8,621.1	-	8,621.1	
		특별계획2-2구역 획지 (BL14-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8-12	4,145.0	-	4,145.0	
기정	특별계획구역 3	특별계획3구역 (BL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9-7 외 1필지	19,172.9	-	19,172.9	

※ 특별계획구역(B13) : 기결정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신설)

■ 특별계획구역1 - 목동1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양천구 목동 901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165,496.9㎡			
획지면적			• 152,570.1㎡ (92.2%)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면적			• 12,926.8㎡ (7.8%)	소공원	8,324.0㎡ (5.0%)	
				도로	4,602.8㎡ (2.8%)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 세부개발계획 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완화 받은 허용용적률 40% 중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라 한다) 용도지역 변경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서로 : 28m(구역내 3m 확폭) - 목동중앙로 : 2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서로2길 : 18m(구역내 3m 확보) - 목동서로4길 : 18m(구역내 획지1 1.5m 확폭) • 소공원 신설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50% 이하			
	용적률		• 기준 / 허용 / 상한 용적률 : 190%이하 / 200%이하 / 250%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 / 허용 / 상한 용적률 : 190%이하 / 230%이하 / 250%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이상 설치
	높 이		• 최고높이 : 25층 이하 • 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16m/공공보행통로변 폭5m/목동중앙로변 폭4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40m/목동중앙로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중앙로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서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 목동중앙로변(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서로2길, 목동서로4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서로2길, 목동서로4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목동중앙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 목동서로2길, 목동서로4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3)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침 변경 가능

4)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5)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2 - 목동2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양천구 목동 902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159,252.5㎡			
획지면적			• 146,674.8㎡ (92.1%)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면적			• 12,577.7㎡ (7.9%)	소공원	8,978.7㎡ (5.6%)	
				도로	3,599.0㎡ (2.3%)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 세부개발계획 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완화 받은 허용용적률 40% 중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라 한다) 용도지역 변경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서로 : 2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중앙로 : 2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서로4길 : 18m (구역내 1.5~3m 확폭) - 목동서로6길 : 18m (구역내 1.5m 확폭) • 소공원 신설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50% 이하			
	용적률		• 기준 / 허용 / 상한 용적률 : 190%이하 / 200%이하 / 250%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 / 허용 / 상한 용적률 : 190%이하 / 230%이하 / 250%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이상 설치
	높 이		• 최고높이 : 25층 이하 • 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16m/공공보행통로변 폭5m/목동중앙로변 6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40m/목동중앙로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중앙로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서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 목동중앙로변(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서로4길, 목동서로6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서로2길, 목동서로4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목동중앙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 목동서로4길, 목동서로6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3)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침 변경 가능

4)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5)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3 - 목동3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양천구 목동 903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150,543.5㎡			
획지면적			• 137,318.1㎡ (91.2%)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면적			• 13,225.4㎡ (8.8%)	사회복지시설	2,591.5㎡ (1.7%)	
				소공원	7,820.1㎡ (5.2%)	
				도로	2,813.8㎡ (1.9%)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 세부개발계획 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완화 받은 허용용적률 40% 중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라 한다) 용도지역 변경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서로 : 2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중앙로 : 2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서로6길 : 18m (구역내 1.5m 확폭) - 목동서로8길 : 18m (구역내 1.5m 확폭) • 소공원 신설 / • 사회복지시설 신설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50% 이하			
	용적률		• 기준 / 허용 / 상한 용적률 : 190%이하 / 200%이하 / 250%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 / 허용 / 상한 용적률 : 190%이하 / 230%이하 / 250%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이상 설치
	높 이		• 최고높이 : 25층 이하 • 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16m/공공보행통로변 폭5m/목동중앙로변 폭6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40m/목동중앙로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중앙로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서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 목동중앙로변(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서로6길, 목동서로8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공동주택부지
			• 목동중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사회복지시설부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서로6길, 목동서로8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동주택부지
			• 목동중앙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4m)			사회복지시설부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대지내 공지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목동중앙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 목동서로6길, 목동서로8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부지의 용도·밀도는 해당시설의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3)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4)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침 변경 가능

5)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6)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4 - 목동4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양천구 목동 904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122,825.3㎡			
획지면적			• 96,046.4㎡ (78.2%)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면적			• 26,778.9㎡ (21.8%)	사회복지시설	2,957.3㎡ (2.4%)	
				소공원	8,577.6㎡ (7.0%)	
				녹지	12,944.1㎡ (10.5%)	
				도로	2,299.9㎡ (1.9%)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서로 : 28m (구역내 3m확폭) - 목동중앙로 : 28m (구역내 3m확폭) - 목동서로8길 : 18m (구역내 획지1 1.5m확폭) • 소공원 신설, 녹지(폭원 20m) 일부 변경 / • 사회복지시설 신설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16m/공공보행통로변 폭5m/목동중앙로변 폭6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40m/목동중앙로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중앙로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서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 목동중앙로변(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 국회대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서로8길, 소공원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공동주택부지
			• 국회대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목동중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사회복지시설부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 국회대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고층부 벽면한계선		• 국회대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국회대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서로8길, 소공원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동주택부지
		• 국회대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중앙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4m)	사회복지시설부지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국회대로,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목동중앙로변 • 국회대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 국회대로, 목동서로8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부지의 용도·밀도는 해당시설의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3)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4)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5)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5 - 목동5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양천구 목동 912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204,003.2㎡			
획지면적			• 169,653.9㎡ (83.2%)	획지1	93,969.3㎡ (46.1%)	공동주택부지
				획지2	75,684.6㎡ (37.1%)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면적			• 34,349.3㎡ (16.8%)	공공공지	13,395.4㎡ (6.6%)	
				녹지	10,478.0㎡ (5.1%)	
				도로	10,475.9㎡ (5.1%)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기반시설 설치			• 도로 신설 : 폭원 18m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 28m(구역내 3m 확폭) - 목동동로18길 : 18m (구역내 1.5m 확폭) • 공공공지 신설, 녹지(폭원 20m) 일부 변경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16m,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40m) - 15층 이하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동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 국회대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동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18길, 신설 도로, 공공공지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 국회대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고층부 벽면한계선		• 국회대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국회대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동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동로18길, 신설 도로, 공공공지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국회대로, 목동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동로변 • 국회대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동로, 국회대로, 목동동로18길, 신설 도로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입체 보행육교	• 목동운동장과의 연결을 위한 입체 보행육교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가로활성화 유도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 · 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3)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4)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6 - 목동6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양천구 목동 911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102,424.6㎡			
획지면적			• 89,519.5㎡ (87.4%)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면적			• 12,905.1㎡ (12.6%)	근린공원	11,548.1㎡ (11.3%)	
				도로	1,357.0㎡ (1.3%)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 28m (구역내 획지1 3m 확폭) - 목동동로18길 : 18m (구역내 1.5m 확폭) • 근린공원 신설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16m,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40m) - 15층 이하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동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 목동동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18길, 근린공원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동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동로18길, 근린공원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33~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국회대로, 목동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동로변 • 근린공원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동로, 국회대로, 목동동로18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입체 보행육교	• 목동운동장, 목동유수지, 안양천과의 연결을 위한 입체 보행육교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가로활성화 유도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3)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4)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7 - 목동7단지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 colspan="3">계 획 지 침</th><th>비 고</th></tr>
<tr><td colspan="3">위 치</td><td colspan="3">• 양천구 목동 925 일대</td><td></td></tr>
<tr><td colspan="3">특별계획구역 면적</td><td colspan="3">• 225,141.5㎡</td><td></td></tr>
<tr><td colspan="3" rowspan="2">획지면적</td><td rowspan="2">• 170,530.5㎡ (75.7%)</td><td>획지1</td><td>134,633.9㎡ (59.8%)</td><td>공동주택부지</td></tr>
<tr><td>획지2</td><td>35,896.6㎡ (15.9%)</td><td>공동주택부지</td></tr>
<tr><td colspan="3" rowspan="6">기반시설면적</td><td rowspan="6">• 54,611.1㎡ (24.3%)</td><td>문화시설</td><td>4,612.9㎡ (2.1%)</td><td></td></tr>
<tr><td>공공공지</td><td>12,597.1㎡ (5.6%)</td><td></td></tr>
<tr><td>소공원1</td><td>4,436.7㎡ (2.0%)</td><td></td></tr>
<tr><td>소공원2</td><td>6,116.0㎡ (2.7%)</td><td></td></tr>
<tr><td>녹지</td><td>557.2㎡ (0.2%)</td><td></td></tr>
<tr><td>도로</td><td>26,291.2㎡ (11.7%)</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td><td colspan="3">•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td><td></td></tr>
<tr><td colspan="3">기반시설 설치</td><td colspan="3">• 도로(하부 하수도) : 기존 단지 내 도로로 활용 →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로 변경
• 도로 폭원확장 : 목동서로 : 28m (구역내 획지1 북측에서부터 3m 확폭)
• 공공공지 및 소공원 2개소 신설 / • 문화시설 신설
※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 시 목동역 지하철 출입구 인접 도시계획시설(녹지-하수도-공원)부지를 구역에 편입을 검토하고 토지이용의 효율 및 시민 편의를 위해 지상부 통합적 관리 방안(공원 시설과의 통합, 하수도 중복결정 등) 마련 필요</td><td></td></tr>
<tr><td rowspan="5">건축물의 용도·밀도</td><td rowspan="2">용도</td><td>불허용도
A</td><td colspan="3">•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td><td></td></tr>
<tr><td>지정용도
a</td><td colspan="3">[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td><td>[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colspan="3">• 50% 이하</td><td></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colspan="3">•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td><td></td></tr>
<tr><td colspan="2">높 이</td><td colspan="3">•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 (목동서로변 폭 16m,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td><td></td></tr>
<tr><td rowspan="4">배 치</td><td colspan="2">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td><td colspan="3">• 목동서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건축한계선</td><td colspan="3">• 국회대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서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오목로, 신설 도로, 획지1의 서측경계부, 획지2의 소공원변 : 획지선으로부터 6m</td><td>공동주택부지</td></tr>
<tr><td colspan="3">•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td><td>문화시설부지</td></tr>
<tr><td colspan="2">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td><td colspan="3">• 국회대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td><td></td></tr>
<tr><td colspan="2">고층부
벽면한계선</td><td colspan="3">• 국회대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td><td></td></tr>
<tr><td rowspan="2">대지내 공지</td><td colspan="2" rowspan="2">전면공지</td><td colspan="3">• 국회대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서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오목로, 신설 도로, 획지1의 서측경계부, 획지2의 소공원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td><td>공동주택부지</td></tr>
<tr><td colspan="3">• 목동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td><td>문화시설부지</td></tr>
</table>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대지내 공지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국회대로,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 (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 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오목로, 신설 도로, 국회대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 특화방안” 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오목로, 목동서로, 신설 도로, 국회대로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복합개발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역세권을 활용한 복합개발 권장. – 생활권 계획에서 정하는 중심지(목동지역중심)의 목표에 부합하고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해 적정시설과 용도를 도입(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 복합화비율은 중심지 위계별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함 (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 토지의 효율적 복합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 등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1/2이상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 (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목동역 지하철 출입구를 대지 내 개설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기반시설(문화시설 등) 부지의 용도·밀도는 해당시설의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3)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4) 기존 지하 기반시설(하수도, 공동구 등)의 존치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5)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6)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8 - 목동8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14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88,599.0㎡			
획지면적			• 67,615.9㎡ (76.3%)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면적			• 20,983.1㎡ (23.7%)	근린공원	10,762.0㎡ (12.2%)	
				녹지	8,606.5㎡ (9.7%)	
				도로	1,614.6㎡ (1.8%)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서로 : 28m (구역내 3m 확보) • 근린공원 신설, 녹지(폭원 20m) 면적 축소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16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서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서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로8길, 근린공원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고층부 벽면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서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로8길, 근린공원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로,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목동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로, 목동서로, 목동로8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 · 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3)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4)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9 - 목동9단지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 colspan="3">계 획 지 침</th><th>비 고</th></tr>
<tr><td colspan="3">위 치</td><td colspan="3">• 양천구 신정동 312 일대</td><td></td></tr>
<tr><td colspan="3">특별계획구역 면적</td><td colspan="3">• 183,057.8㎡</td><td></td></tr>
<tr><td colspan="3" rowspan="2">획지면적</td><td rowspan="2">• 158,115.7㎡ (86.4%)</td><td>획지1</td><td>90,357.1㎡ (49.4%)</td><td></td></tr>
<tr><td>획지2</td><td>67,758.6㎡ (37.0%)</td><td></td></tr>
<tr><td colspan="3" rowspan="3">기반시설면적</td><td rowspan="3">• 24,942.1㎡ (13.6%)</td><td>근린공원</td><td>10,142.4㎡ (5.5%)</td><td>주차장 중복</td></tr>
<tr><td>녹지</td><td>6,906.2㎡ (3.8%)</td><td></td></tr>
<tr><td>도로</td><td>7,893.5㎡ (4.3%)</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td><td colspan="3">•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td><td></td></tr>
<tr><td colspan="3">기반시설 설치</td><td colspan="3">• 도로 폭원확장 :
- 목동서로 : 28m(구역내 획지1 3m 확폭 ,획지2 3m 확폭)
- 중앙로32길 : 18m(구역내 공원 변 3m 확폭)
- 목동서로10길 : 18m(구역내 획지1 1.5m 확폭, 획지2 1.5~3m 확폭)
- 목동서로12길 : 18m(구역내 획지1 1.5m 확폭)
• 근린공원 신설, 녹지(폭원 20m) 면적 증가</td><td></td></tr>
<tr><td rowspan="6">건축물의 용도·밀도</td><td rowspan="2">용도</td><td>불허용도
A</td><td colspan="3">•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td><td></td></tr>
<tr><td>지정용도
a</td><td colspan="3">[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td><td>[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colspan="3">• 50% 이하</td><td></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colspan="3">•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td><td></td></tr>
<tr><td colspan="2">높 이</td><td colspan="3">•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 (목동서로변 폭 16m,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40m)
- 15층 이하</td><td></td></tr>
<tr><td rowspan="4">배 치</td><td colspan="2">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td><td colspan="3">• 목동서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td><td></td></tr>
<tr><td colspan="2">건축한계선</td><td colspan="3">•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서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서로10길, 목동서로12길, 획지1 · 2의 북측경계부변 : 획지선으로부터 6m</td><td></td></tr>
<tr><td colspan="2">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td><td colspan="3">•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td><td></td></tr>
<tr><td colspan="2">고층부
벽면한계선</td><td colspan="3">•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td><td></td></tr>
</table>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서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서로10길, 목동서로12길, 획지1 · 2의 북측경계부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로,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로, 목동서로, 목동중앙로, 목동로10길, 목동로12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 · 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3)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4)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10 - 목동10단지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 colspan="3">계 획 지 침</th><th>비 고</th></tr>
<tr><td colspan="3">위 치</td><td colspan="3">• 양천구 신정동 310 일대</td><td></td></tr>
<tr><td colspan="3">특별계획구역 면적</td><td colspan="3">• 194,686.2㎡</td><td></td></tr>
<tr><td colspan="3" rowspan="2">획지면적</td><td rowspan="2">• 164,872.4㎡ (84.7%)</td><td>획지1</td><td>37,939.9㎡ (19.5%)</td><td>공동주택부지</td></tr>
<tr><td>획지2</td><td>126,932.5㎡ (65.2%)</td><td>공동주택부지</td></tr>
<tr><td colspan="3" rowspan="6">기반시설면적</td><td rowspan="6">• 29,813.8㎡ (15.3%)</td><td>유치원</td><td>730.7㎡ (0.4%)</td><td>학교부지</td></tr>
<tr><td>사회복지시설</td><td>2,532.3㎡ (1.3%)</td><td>사회복지시설부지</td></tr>
<tr><td>근린공원</td><td>13,813.8㎡ (7.1%)</td><td>주차장 중복</td></tr>
<tr><td>녹지</td><td>980.6㎡ (0.5%)</td><td></td></tr>
<tr><td>도로</td><td>11,756.5㎡ (6.0%)</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td><td colspan="3">•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td><td></td></tr>
<tr><td colspan="3">기반시설 설치</td><td colspan="3">• 도로 폭원확장:
- 목동동로 : 36m(구역내 획지2 3m 확폭)
- 목동서로 : 28m(구역내 획지2 3m 확폭)
- 중앙로30길 : 6m (구역내 획지1 2m 확폭)
- 중앙로32길 : 1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동로1길 : 18m (구역내 획지1 3m 확폭, 획지2 남측에서 3m 확폭)
- 목동서로12길 : 18m (구역내 획지2 1.5m 확폭)
• 근린공원 신설, 녹지 면적 증가 / • 사회복지시설 신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역과 인접한 현황공원(신트리공원)을 특별계획구역 내로 편입을 검토하고, 주변단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 외에 기반시설(지역필요시설) 확보 등을 검토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 내 위치한 존치 유치원은 교육청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공원 및 공공시설 부지와 연계한 배치 검토</td><td></td></tr>
<tr><td rowspan="5">건축물의 용도·밀도</td><td rowspan="2">용도</td><td>불허용도
A</td><td colspan="3">•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td><td></td></tr>
<tr><td>지정용도
a</td><td colspan="3">[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td><td>[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colspan="3">• 50% 이하</td><td></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colspan="3">•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td><td></td></tr>
<tr><td colspan="2">높 이</td><td colspan="3">•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 (목동서로변 폭 16m,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40m/중앙로32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중앙로32길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td><td></td></tr>
<tr><td rowspan="3">배 치</td><td colspan="2">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td><td colspan="3">• 목동서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 중앙로32길(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건축한계선</td><td colspan="3">• 목동서로, 중앙로32길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 목동서로12길, 목동동로1길, 근린공원, 획지1의 서측경계부변 : 획지선으로부터 6m</td><td>공동주택부지</td></tr>
<tr><td colspan="3">• 목동서로12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중앙로32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4m</td><td>사회복지시설부지</td></tr>
</table>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서로, 중앙로32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동로, 목동서로12길, 목동동로1길, 소공원, 획지1의 서측경계부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동주택부지
		• 목동서로12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중앙로32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4m)	사회복지시설부지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서로, 목동동로, 중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 (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 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중앙로32길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 특화방안” 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서로, 목동동로, 중앙로32길, 목동서로12길, 목동동로1길, 중앙로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복합개발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역세권을 활용한 복합개발 권장. – 생활권 계획에서 정하는 중심지(목동지역중심)의 목표에 부합하고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해 적정시설과 용도를 도입(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 복합화비율은 중심지 위계별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함 (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 토지의 효율적 복합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 등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1/2이상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 (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 시 지하철 출입구를 대지 내 개설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부지의 용도·밀도는 해당시설의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3)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4) 기존 지하 기반시설(하수도, 공동구 등)의 존치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5)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6)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11 - 목동11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25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128,668.4㎡			
획지면적			• 98,432.0㎡ (76.5%)	획지1	69,373.5㎡ (53.9%)	공동주택부지
				획지2	29,058.5㎡ (22.6%)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면적			• 30,236.4㎡ (23.5%)	사회복지시설	2,129.5㎡ (1.7%)	사회복지시설부지
				근린공원	18,329.6㎡ (14.2%)	
				소공원	6,765.0㎡ (5.3%)	
				도로	3,012.3㎡ (2.3%)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 42m (구역내 3m 확폭) - 목동로3길 : 18m(구역내 획지1 3m 확폭) - 목동동로2길 : 18m (구역내 획지1 1.5m 확폭) • 근린공원 및 소공원 신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역과 인접한 현황공원, 주변단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 외에 기반시설(지역필요시설) 확보 등을 검토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72m/목동로3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로3길(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 목동로3길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중앙로, 목동동로2길, 소공원, 목동남로, 획지2의 북측경계부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공동주택부지
			• 목동동로, 중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사회복지시설부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로3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중앙로, 목동동로2길, 소공원, 목동남로, 획지2의 북측경계부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동주택부지
		• 목동동로, 중앙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사회복지시설부지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동로, 중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로3길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 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로3길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중앙로, 목동동로, 목동동로2길, 목동로3길, 목동남로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부지의 용도·밀도는 해당시설의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3)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4)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5)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12 - 목동12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26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127,339.5㎡			
획지면적			• 114,653.0㎡ (90.0%)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면적			• 12,686.5㎡ (10.0%)	소공원	9,016.8㎡ (7.1%)	주차장 중복결정
				도로	3,669.7㎡ (2.9%)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 36m, 28m (구역내 1.5~3m 확폭) - 목동로3길 : 1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동로2길 : 18m (구역내 1.5m 확폭) - 목동동로4길 : 18m (구역내 1.5m 확폭) • 소공원 신설 (교통영향평가 내 수립된 통합환승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 중복결정)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16m/공공보행통로변 폭5m/목동로3길변 폭6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40m/목동로3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동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 목동로3길(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2길, 목동동로4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동로2길, 목동동로4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 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동로변 • 목동로3길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 특화방안” 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동로, 목동동로2길, 목동동로4길, 목동로3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복합개발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역세권을 활용한 복합개발 권장. – 생활권 계획에서 정하는 중심지(목동지역중심)의 목표에 부합하고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해 적정시설과 용도를 도입(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 복합화비율은 중심지 위계별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함(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 토지의 효율적 복합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 등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1/2이상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 (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지하철 출입구를 대지 내 개설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 · 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3)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4)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13 - 목동13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27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178,920.0㎡			
획지면적			• 151,950.5㎡ (84.9%)	획지1	101,252.1㎡ (56.6%)	공동주택부지
				획지2	50,698.4㎡ (28.3%)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면적			• 26,969.3㎡ (15.1%)	유치원	992.0㎡ (0.6%)	학교부지
				사회복지시설	2,443.0㎡ (1.4%)	사회복지시설부지
				소공원	6,944.3㎡ (3.9%)	주차장 중복결정
				녹지	6,654.3㎡ (3.7%)	
				도로	9,935.7㎡ (5.6%)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 2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로3길 : 1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동로4길 : 18m (구역내 획지1 1.5m 확폭) - 목동동로6길 : 18m (구역내 획지1 3m 확폭) • 소공원 신설, 녹지(폭원 20m) 면적 증가 (교통영향평가 내 수립된 통합환승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 중복결정) • 사회복지시설 신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 내 위치한 존치 유치원은 교육청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공원 및 공공시설 부지와 연계한 배치 검토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16m/공공보행통로변 폭5m/목동로3길변 폭6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40m/목동로3길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동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 목동로3길(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6길, 소공원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공동주택부지
			• 목동동로4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목동로3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사회복지시설부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고층부 벽면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동로, 목동로3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6길, 소공원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동주택부지
		• 목동동로4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6m) • 목동로3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4m)	사회복지시설 부지
대지내 공지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동로, 목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 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동로변 • 목동로3길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 방안” 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 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동로, 목동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6길, 목동로3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복합개발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역세권을 활용한 복합개발 권장. – 생활권 계획에서 정하는 중심지(목동지역중심)의 목표에 부합하고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해 적정시설과 용도를 도입(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 복합화비율은 중심지 위계별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함 (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 토지의 효율적 복합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 등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1/2이상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 (용도지역 상향시 의무) •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지하철 출입구를 대지 내 개설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부지의 용도·밀도는 해당시설의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3)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4)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5)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14 - 목동14단지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29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250,722.1㎡			
획지면적			• 202,689.0㎡ (80.8%)	획지1	69,445.7㎡ (27.7%)	공동주택부지
				획지2	36,512.7㎡ (14.6%)	공동주택부지
				획지3	35,645.8㎡ (14.2%)	공동주택부지
				획지4	61,084.7㎡ (24.4%)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면적			• 48,033.1㎡ (19.2%)	사회복지시설	3,012.7㎡ (1.2%)	사회복지시설부지
				근린공원	12,021.9㎡ (4.8%)	
				녹지	11,266.0㎡ (4.5%)	
				도로	9,739.9㎡ (3.9%)	
				철도	11,992.7㎡ (4.8%)	일부 도로 중복결정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동로 : 28m (구역내 획지1 3m 확폭) - 목동로3길 : 16~31m (구역내 획지1 일부 3m 확폭) - 목동동로8길 : 24m (구역내 획지1 6m 확폭, 획지4 3m 확폭, 획지3 3~6m 확폭) • 근린공원 신설, 녹지(폭원 20m) 면적 증가 • 사회복지시설 신설 ※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 시 구역 내 철도시설 상부 도로는 주변 도로체계, 주민들의 이용 행태 및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전환 검토하고 인접 단지와 연계하여 시민이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 (목동동로변 폭 16m, 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동로변 폭 40m/획지2의 의 공공보행통로 남측변 폭 45m) - 15층 이하 - 목동로3길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동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동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로3길, 목동동로8길, 획지2의 경계부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공동주택부지
			• 목동동로8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안양천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사회복지시설부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고층부 벽면한계선		•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동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로3길, 목동동로8길, 획지2의 경계부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동주택부지
		• 목동동로8길변 건축지정선 후퇴부(6m) • 안양천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4m)	사회복지시설부지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동로, 목동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동로변 • 목동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동로, 목동로, 목동로3길, 목동동로8길, 안양천로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입체 보행육교	• 안양천과의 연결을 위한 입체 보행육교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가로 활성화 유도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부지의 건축물의 용도·밀도는 해당시설의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3)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4)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5)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2) 중심지역 (목동중심지구)

■ 특별계획구역3

① 계획지침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 colspan="3">계 획 지 침</th><th>비 고</th></tr>
<tr><td colspan="3">위 치</td><td colspan="3">• 양천구 목동 919-7, 8호(2개필지)</td><td></td></tr>
<tr><td colspan="3">특별계획구역 면적</td><td colspan="3">• 19,172.9㎡</td><td>분할가능선</td></tr>
<tr><td colspan="3" rowspan="2">획지면적</td><td>10-1(목동 919-8)</td><td>10,578.4㎡</td><td rowspan="2"></td></tr>
<tr><td>10-2(목동 919-7)</td><td>8,594.5㎡</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td><td colspan="3">• 일반상업지역</td><td></td></tr>
<tr><td rowspan="6">건축물의 용도·밀도</td><td rowspan="3">용도</td><td>불허용도
A</td><td colspan="3">•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내 불허용도와 동일</td><td></td></tr>
<tr><td>권장용도
a</td><td colspan="3">•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 판매시설</td><td></td></tr>
<tr><td>지정용도
B</td><td colspan="3">•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방송통신시설
• 교육연구시설(입시학원 제외)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상기 용도 중 1가지 이상의 용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그 합은 전체연면적(주차장, 기계실 등 제외)의 50%이상</td><td></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colspan="3">• 60% 이하</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3">용적률</td><td>기준</td><td>• 500%</td><td></td><td></td></tr>
<tr><td>허용</td><td>• 800%</td><td></td><td></td></tr>
<tr><td>상한</td><td>•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td><td></td><td></td></tr>
<tr><td colspan="2">높 이</td><td colspan="3">• 최고높이 : 120m</td><td></td></tr>
<tr><td>배 치</td><td colspan="2">건축한계선</td><td colspan="3">• 북측(국회대로변) 10m~15m, 남측 3m, 동측 4m</td><td rowspan="2">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가능</td></tr>
<tr><td>대지내 공지</td><td colspan="2">공개공지</td><td colspan="3">• 지상부 전면공지와 연계하여 확보</td></tr>
<tr><td colspan="3">공공기여계획</td><td colspan="3">•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등 인근 주요 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및 적정 용도·규모 계획 수립</td><td>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td></tr>
<tr><td colspan="3">건축물 형태·외관 등</td><td colspan="3">• 도시 전체의 경관 및 국회대로 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매스 및 배치 고려</td><td></td></tr>
</table>

1) 방송통신시설은 사무시설로 사용되는 면적을 70%이상 유지(전체 및 동별 각 적용)
2) 교육연구시설 계획 시 지상연면적의 10% 이상
3) 관광숙박시설 계획 시 지상연면적의 15% 이상
4) 오피스텔 비율은 지상연면적의 30% 미만(오피스텔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 계획 준수)

②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중점 인센티브(30%이상)]

구 분	산 정 식	계수(α)	비 고
공동개발 권장	• 기준용적률× α	0.06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 / 연면적) × α	0.4	
지정용도	• 기준용적률× (지정용도면적/ 연면적) × α	0.2	- 연면적(주차장, 기계실 등 제외)의 5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70%이내)]

구 분	산 정 식	계수(α)	비 고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α**	1.2	- 개방형(조성형태) 설치 시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 × { (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 **α**	1.2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α**	1.2	- 개방형(조성형태) 설치 시
국회대로 지상공원과 연결	• 기준용적률 × **α**	0.06	- 국회대로 지상공원과 본 필지 내 건축물 직접 연결 시
특정층 개방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연면적) × **α**	3.2	- 국회대로와 연계 시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에 한함 - 설치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함
[의무]저층부 가로활성화 유도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연면적) × **α**	3.2	- 건축물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도입(지상1~2층) - 전면도로에 연접된 길이의 1/2이상 - 1~2층 바닥면적 합계의 1/2이상
건축물 형태	• 기준용적률 × **α**	0.02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물 형태, 재료 및 색채 사용 시

구 분		산정식	계수(α)	비 고
친환경	빗물이용시설	• 기준용적률 X **α**	0.02	- 빗물저류 · 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중수도 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X **α**	0.02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연면적) X **α**	0.55	-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30%까지만 인정
	저공해자동차	• 기준용적률 X **α**	0.02	[주거: 300세대 이상] -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 시 [비주거: 연면적 1만㎡이상] -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1% 이상 전기차충전기 설치 시
	에너지 효율등급, 녹색 건축물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 기준용적률 X **α**	0.06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상 의무사항을 초과하여 인증된 경우
지능형건축물 인증		• 기준용적률 X **α**	0.04	- 1등급 ~ 4등급으로 인증된 경우(5등급 제외)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대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철거 후 신축 시 적용)	결정도 참고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
단지 내 보행동선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세부 지침도 참고

2) 중심지역 (목동중심지구)

■ 보행자우선도로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보행자 우선도로	근린공원 주변	• 근린공원 인접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간선도로변 제외)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 가로변	• 간선가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불허(대지의 입지 상 차량출입이 불가피할 경우 허용)	
주차 출입구	전 구역	•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는 주차출입구가 표시된 지역에 설치 • 인접대지와 주차출입구를 공동으로 설치 유도	

※ 1) 포장재질, 색 및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2.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기여계획등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구분		내용
목동 900-4	공공기여내용	대상지 건축과 연계하여 공공기여 건축물 건립한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공공기여량	부지면적의 20% 이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28.8% 상당 제시)
	관리청	서울시 또는 자치구(시 또는 자치구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관리청 및 용도 결정)
	세부기준	공공기여량 산정 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운용기준" 준용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6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9호 기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것

■ 교통개선 대책에 따른 시행계획

본 사업 내·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소요되는 비용 부담의 주체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제20조 의거하여 각 사업단지별(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시행자가 향후 이행분담률을 제시하여 협의 후 진행토록 하겠음.

제20조(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 수립)

①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은 그 시행계획의 내용(규모), 시행시기, 개선비용, 시행주체, 비용부담주체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되 다수의 이행의무자(각각 사업을 달리하는 개별 사업자를 말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행분담률을 제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과교통 또는 자연적인 교통유발 등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본다. 다만, 이행분담률에 대하여 모든 이행의무자가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본문 전단에도 불구하고 정량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 시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 등을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에 따른 지표(별표 7)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하여 승인관청에게 취득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토지 등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승인관청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지구 외부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관련지역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구분		개선대책 내용	시행시기	시행주체	비용부담
사업지 외부	입체화시설	■ 안양천로 입체화 시설 설치(3개소) ① 목동테니스장 남측 : L=220m, B=20.5m(양방향 4차로) ② 목동종합운동장 삼거리 : L=260m, B=20.5m(양방향 4차로) ③ 양정고교앞~목마공원구간 : L=910m, B=20.5m(양방향 4차로)	재건축 추진완료시	서울시	단지별 사업자 협의후결정
		■ 안양천로 기능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입체화 - 기존 단일횡단보도 → 입체보행육교 설치(5개소)	재건축 추진완료시	양천구	양천구
	교량신설	■ 목동14단지 ~ 신도림동간 도로개설(단기안) - L=0.25km, 6차로	재건축 추진완료시	서울시	단지별 사업자 협의후결정
		■ 목동14단지~신도림동간 도로개설(장기안) 중 구로구 도로개설 구간 - L=0.35km, 6차로	신도림동 도시환경 정비사업 완료시	신도림동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	신도림동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
		■ 목동6단지~당산동 간 도로개설 - L=0.33km, 4차로	재건축 추진완료시	서울시	단지별 사업자 협의후결정
사업지 내부	도로확폭	■ 사업지구 내부 일방통행도로 확폭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① 대로3-151호선(목동서로) : L=1.2km, B=25.0 → 28.0m ② 대로3-148호선(목동서로) : L=2.1km, B=25.0 → 28.0m ③ 대로3-147호선(목동서로) : L=1.5km, B=25.0 → 28.0m ④ 대로3-149호선(목동동로) : L=1.4km, B=25.0 → 28.0m ⑤ 대로3-152호선(목동동로):L=1.0km, B=25.0→28.0m(5,6단지 구간) ⑥ 대로3-152호선(목동동로):L=0.6km,B=25.0→28.0m(목동운동장 구간)	①~⑤ :단지별 사업완료시 ⑥ : 재건축 추진완료시	①~⑤ :단지별 사업자 ⑥ : 서울시	①~⑤ :단지별 사업자 ⑥ : 단지별 사업자 협의후결정
		■ 사업지구 외부 연결도로 확폭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① 대로3-146호선(목동중앙로) : L=2.2km, B=25.0 → 28.0m ② 중로2-271호선(중앙로32길) : L=0.9km, B=15.0 → 18.0m ③ 중로2-276호선(목동로3길) : L=1.2km, B=15.0 → 18.0m ④ 대로2-73호선(목동동로) : L=0.3km, B=30.0 → 36.0m	①~③ :단지별 사업완료시 ④ :재건축 추진완료시	①~③ :단지별 사업자 ④ :서울시	①~③ :단지별 사업자 ④ :단지별 사업자 협의후결정

■ 사업지 외부개선대책 비용부담 세부추진내용

재건축 추진에 따른 예치금 절차



- 각 사업 단지별(목동아파트 14개단지)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 등으로 충당 예정임.
  ※ 사업시행자는 사업지 외부교통대책 비용을 교통개선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 기 납부한 교통개선분담금 공제
- 목동 14단지~신도림동 도로개설(장기안) 중 구로구 도로개설 구간은 해당 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부담 예정
  ※ 외부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비용 분담은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호』제20조를 준용함.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제20조 3항
  :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되 다수의 이행의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행분담률을 제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과교통 또는 자연적인 교통유발 등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본다.

■ 사업지 외부 교통개선대책 우선순위 방안
- 본 사업 외부개선대책으로 사업지와 외부지역을 연결하는 연결교량 2개소와 교통량이 집중되는 안양천로의 입체화를 계획하였음.
- 현 시점에서는 단지별 재건축 추진시기, 추진방법 등의 세부계획이 미 수립되어 외부개선대책을 위한 재원 조달비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우선순위 검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다만,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교통정체완화 측면에서는 별도의 도로점용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도로의 교통량 분산효과가 높은 안양천 연결교량 2개소를 우선 시공하고 이후 차로 점용이 불가피한 안양천로 입체화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교통악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단지별 재건축 추진(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개선대책 별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목동 오거리 지하차도 사업비에 준하는 대체사업에 대한 공공시설 부담계획
- 당초 목동오거리의 상습정체 해소 및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목동오거리 지하차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목동역사 하부 통과 및 강북횡단선 노선 중복 등의 문제에 따라 지하차도 계획을 삭제하였으며, 추정 개략공사비는 약 1,000억원으로 예측하였음
- 계획 삭제에 따라 사업비에 준하는 대체사업을 강구하였으나, 사업지 주변으로 이미 대규모 교통개선사업(국회대로 지하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사업 외부개선대책 【① 안양천로 입체화 시설 설치】 및 【② 목동14단지 ~ 신도림동간 연결도로, ③ 목동6단지 ~ 당산동간 연결도로】 이외의 추가적인 개선대책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당초 목동오거리의 추정공사비인 약 1,000억원에 해당하는 비용은 본 사업시행 시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공공 교통개선사업(목동선 경전철 사업 등)의 건립비용으로 대체토록 검토함.
- 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명확한 사업시행 시기를 가늠할 수 없으며, 상기 목동선 경전철 사

업 등과 같은 주변지역 교통개선사업 또한 구체적인 사업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사업 시기의 불일치에 따라 비용 부담방식은 예치금 형식을 통해 부담하도록 함

2) 중심지역 (목동중심지구)

위 치	공공기여 용도	공공기여 내용	세부계획	공공기여량	관리청
도시계획 시설 (공공청사) 목동 905-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박물관, 회의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폐지에 따른 시설 조성 후 관리청에 관리위탁	건축허가 전까지 공공기여 세부계획 (비용산정, 관리청 지원, 시설운영계획, 이행담보 방안 등)은 서울시 및 양천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부지면적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관리위탁(20년) (우체국 부속토지 면적 제외) [계획 : 20%]	건축허가, 심의 등 개발계획 확정시 결정 (서울시, 양천구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결정)
지정용도 (금융업소) 목동 907-7 외 7필지	공개공지 또는 쌈지형공지	지정용도 (금융업소) 해제에 따른 공적공간(공개공지 또는 쌈지형공지) 조성		공공성용도 (공개공지 또는 쌈지형공지) 부지면적 10% 이상 조성(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 제외)	
지정용도 (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목동 924 외 2필지	-	지정용도 (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해제에 따른 토지 또는 공공기여 건축물 건립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부지면적의 최대16%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기존 지정용도 연면적 유지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량 최대 10% 차감) 다만, 기존 지정용도 (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를 건축물 연면적의 80%이상 유지하면서 증축 (당해 면적이 500㎡이하에 한함),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 시 공공기여 미적용.	

※ 공공기여 용도 변경 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변경 가능
※ 목동 824 외 2필지 공공기여량 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71호에 따름
- 목동택지개발지구 계획 당시의 특수용도 지정취지, 규제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상제 운영기준의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기준 (20% 내외) 준용하되, 지정용도 면적기준(80%이상)을 감안하여 적용(최대16%)
→ 부지면적의 최대16% 이상으로 계획하고, 기존 지정용도 연면적 유지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량 최대 10% 차감.
다만, 기존 지정용도(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를 건축물 연면적의 80%이상 유지하면서 증축 (당해 면적이 500㎡이하에 한함),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 시 공공기여 미적용.
예시) 기존 용도 연면적 유지 비율 0% → 공공기여 16%
기존 용도 연면적 유지 비율 50% → 공공기여 11%
기존 용도 연면적 유지 비율 100% → 공공기여 6%

3.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법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계획의 입안) 제4항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함

경미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 ·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 · 용도지구 · 도시 · 군계획시설 · 가구면적 · 획지면적 ·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1)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나.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목동 주거지역 및 기타지역	목동 중심지역
1. 대지의 분할 · 교환에 관한 사항	1. 대지의 분할 · 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 쌈지형 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4.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통로의 성격 · 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변에서의 주차출입구 변경(신설)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공동개발 변경 또는 대지분할에 의한 경우)	7. 필지면적의 20% 이내에서의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 (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8. 통로의 성격 · 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전용 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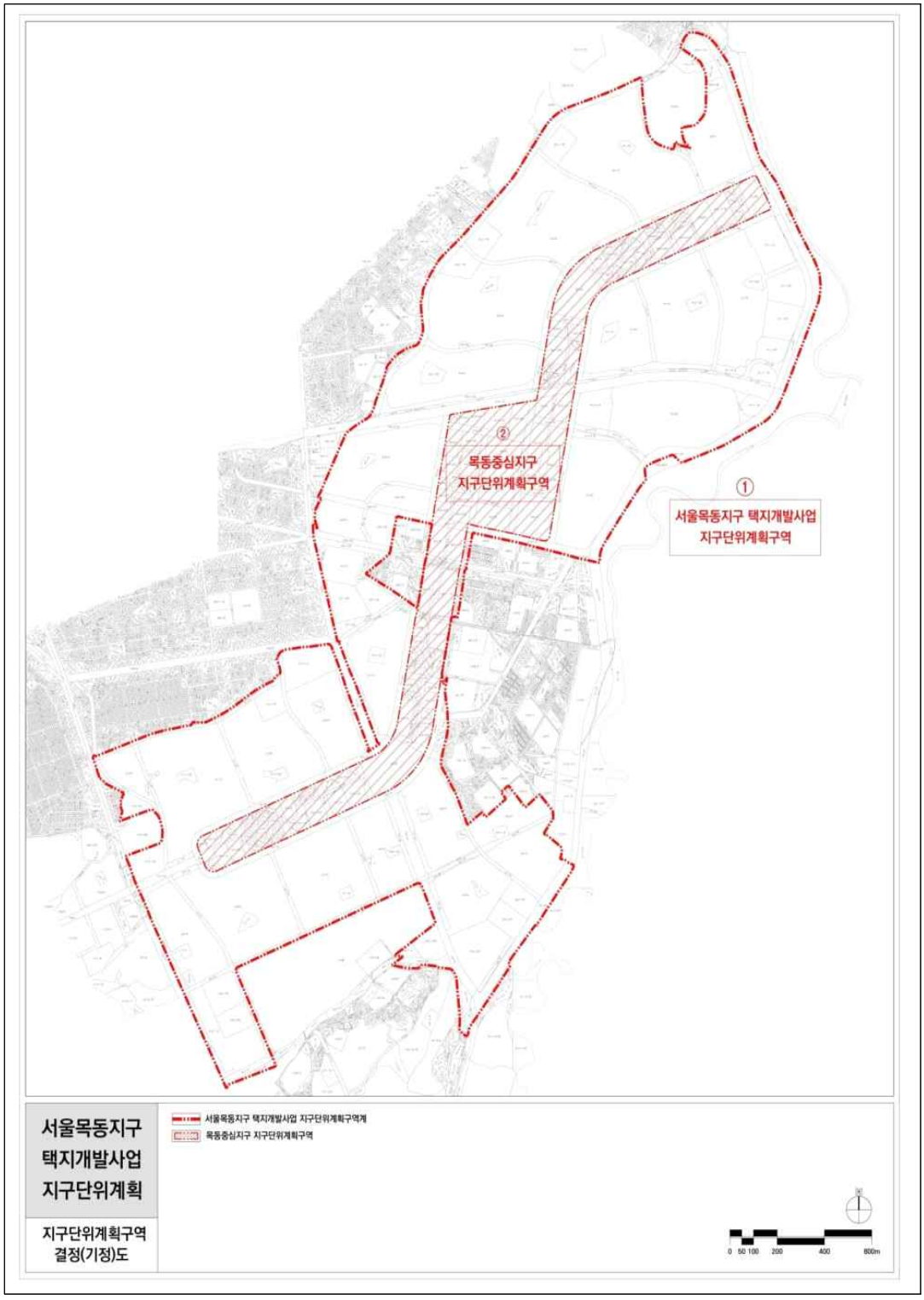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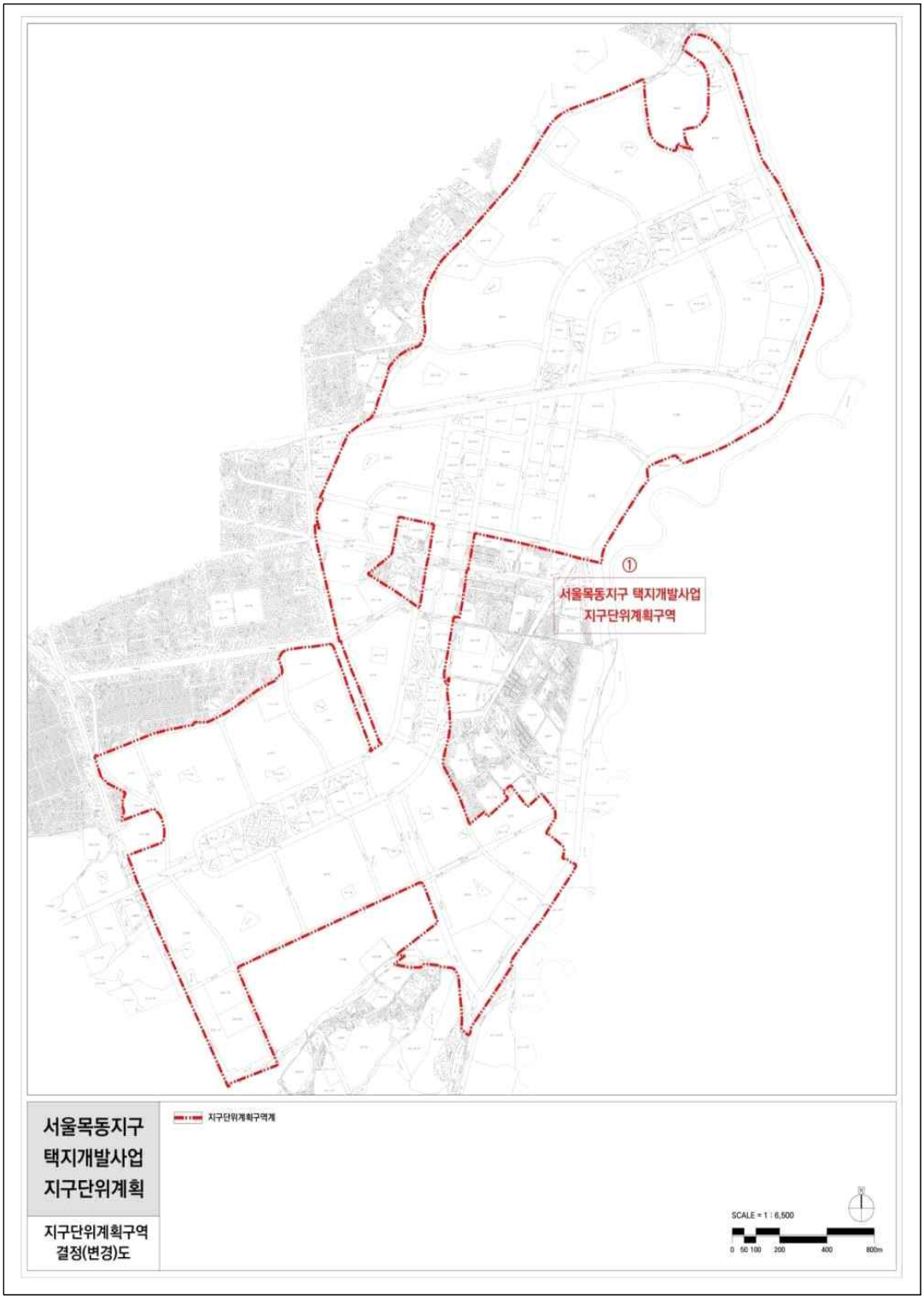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98), 양천구 도시계획과 (☎02-2620-3507)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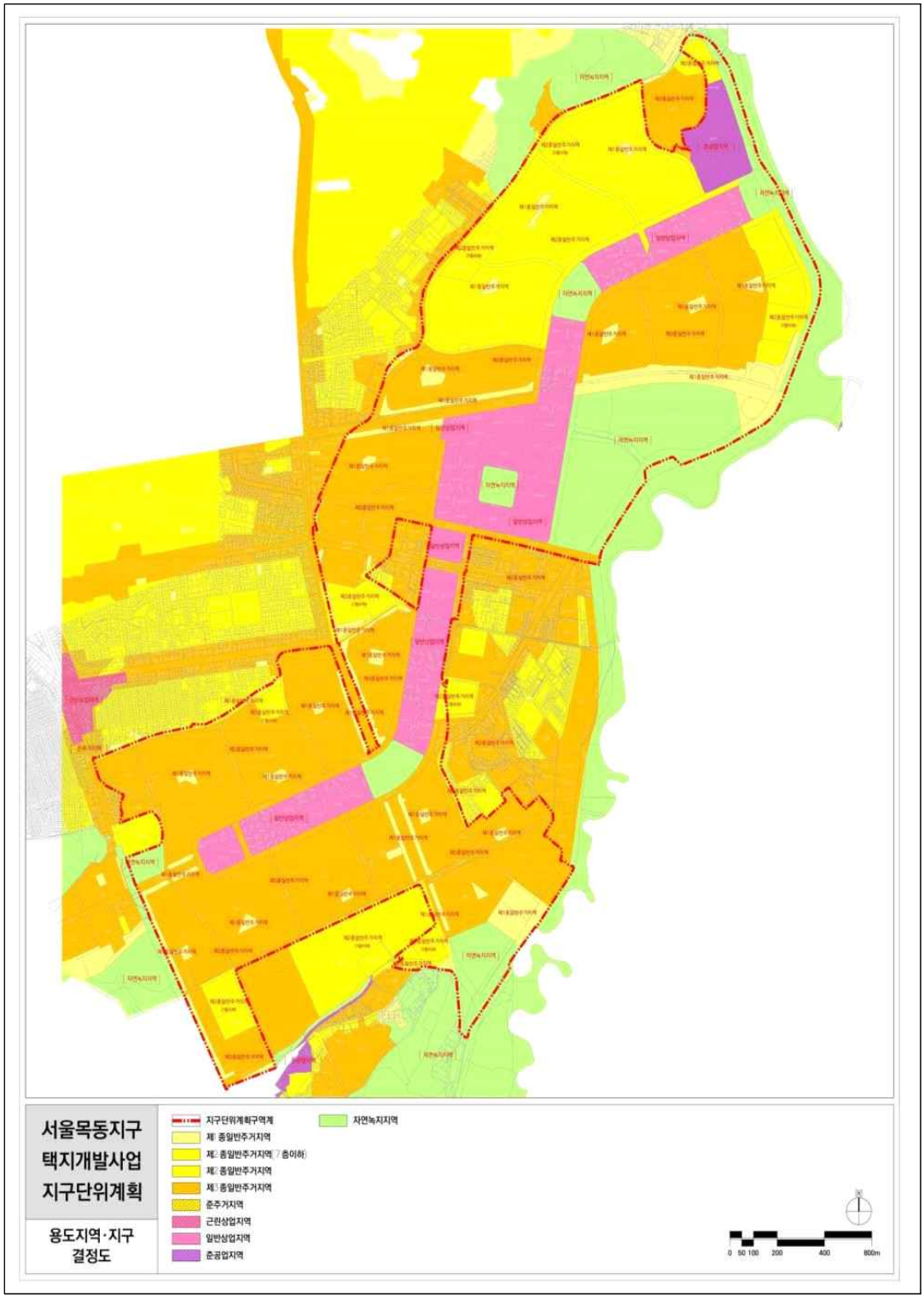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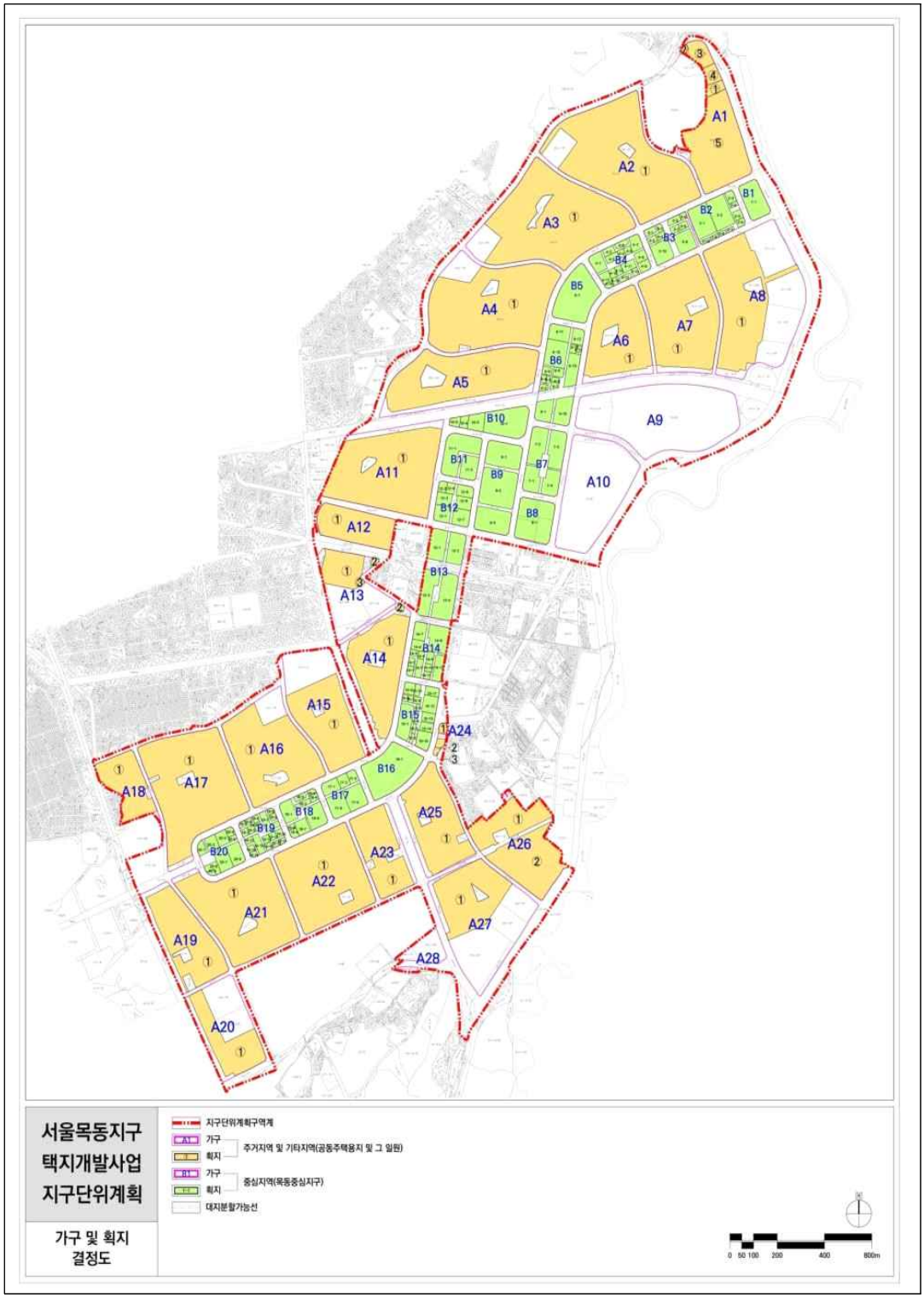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0 50 100 200 400 8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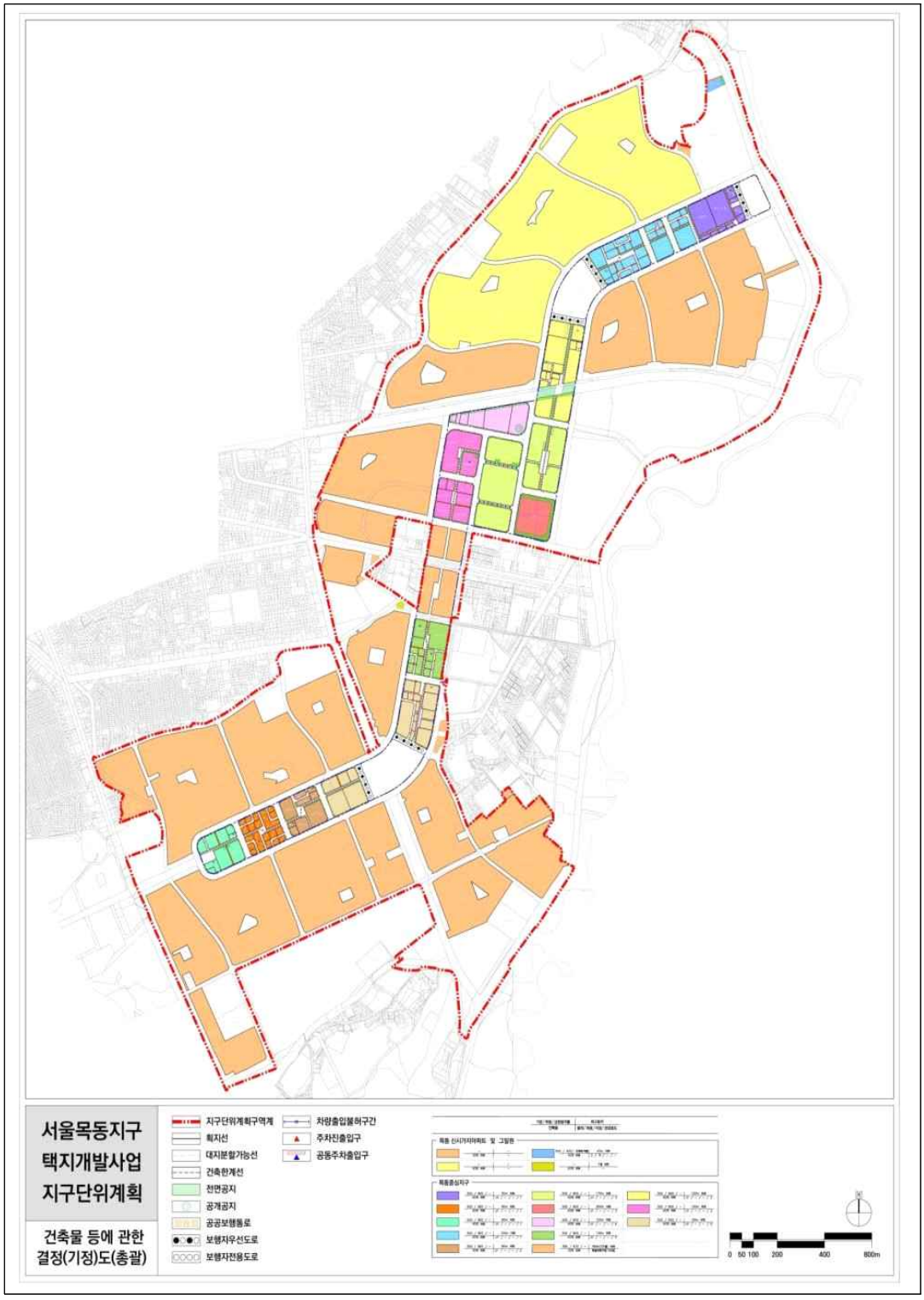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계
도시계획시설선
도로(대로 이상)
도로(중로 이하)
공원
녹지
체육시설
학교
유수지
주차장
그외 도시계획시설
0 50 100 200 400 8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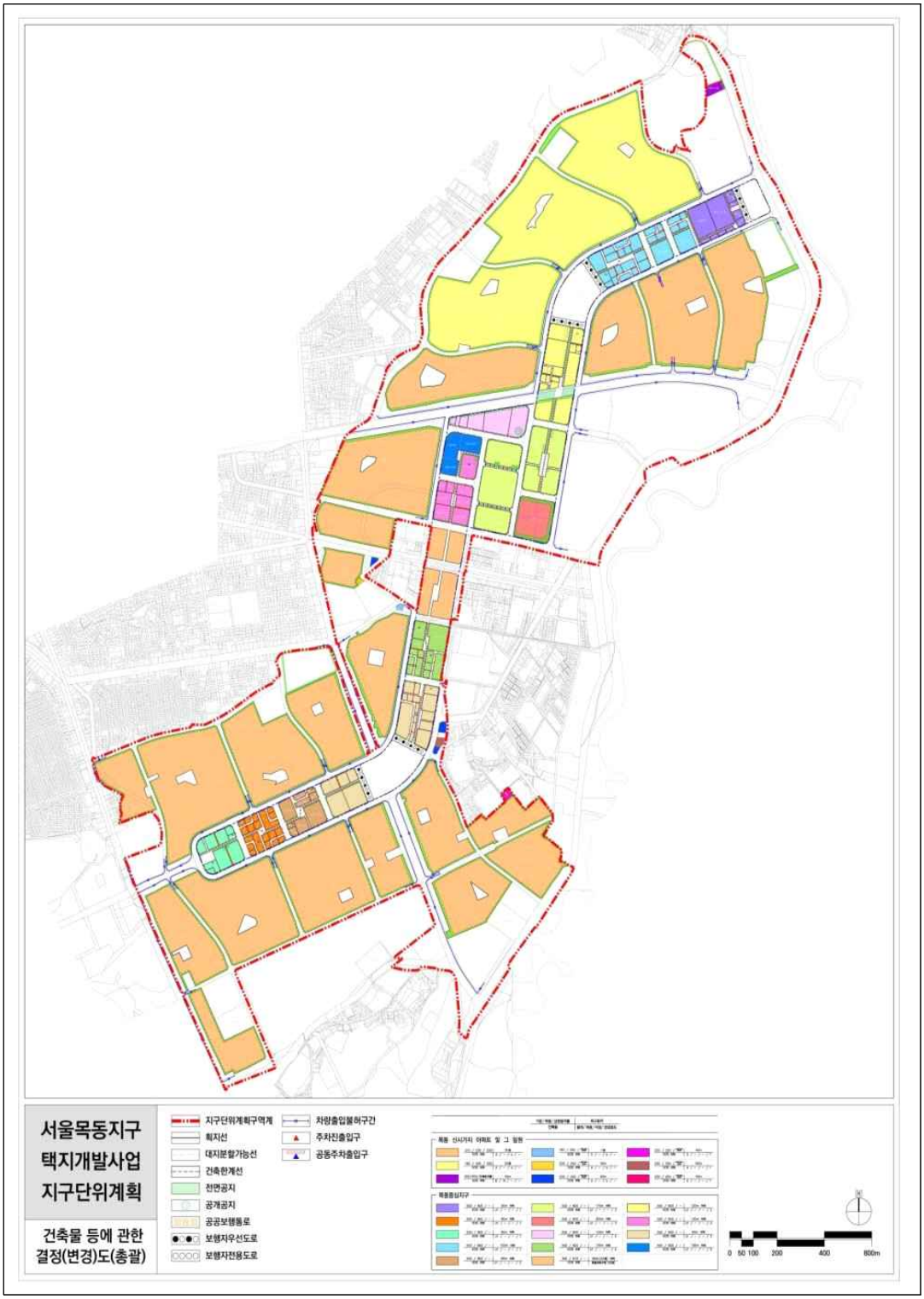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 결정도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가구 및 획지
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계
가구
획지
주거지역 및 기타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그 일원)
가구
획지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대지분할가능선
0 50 100 200 400 8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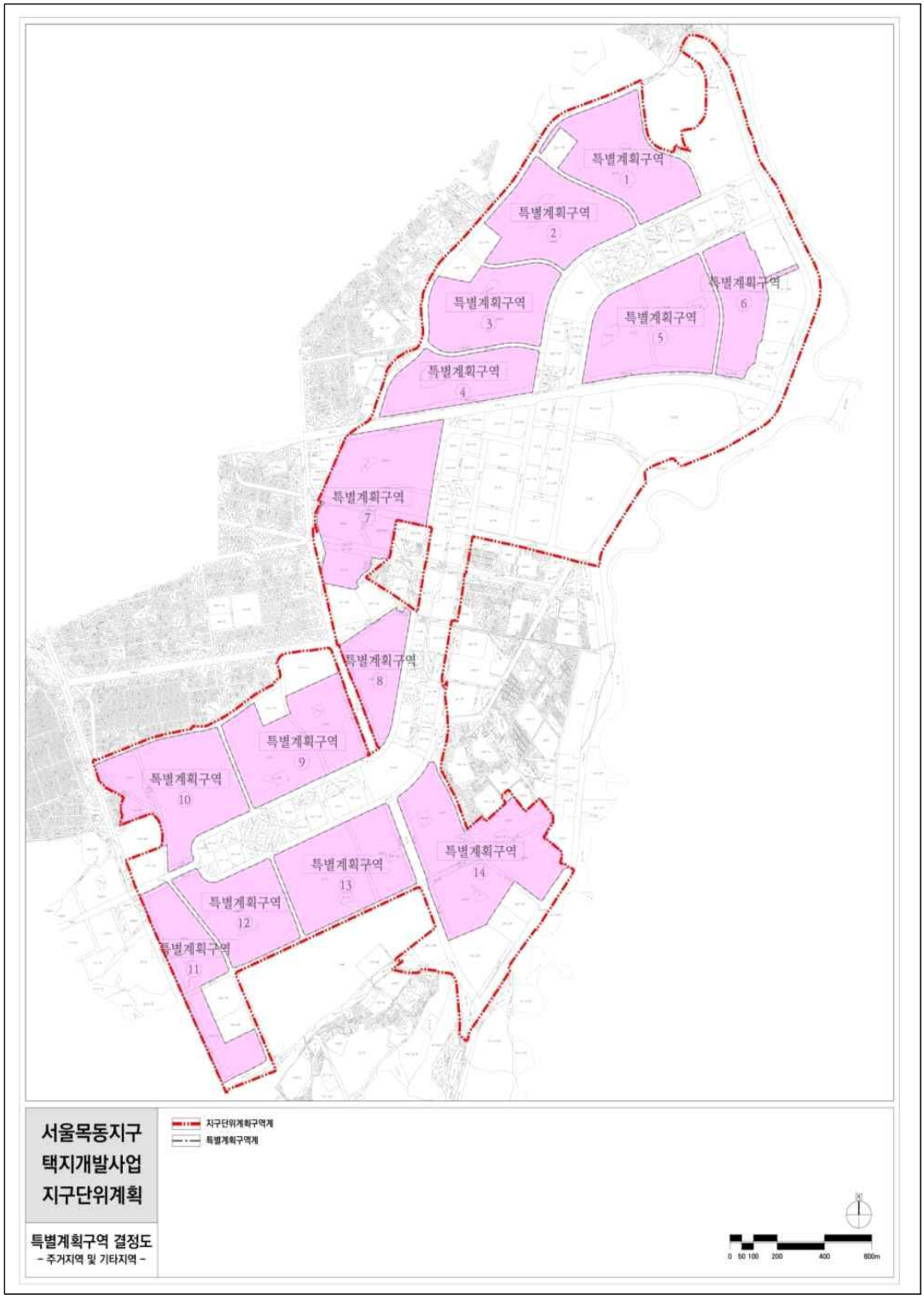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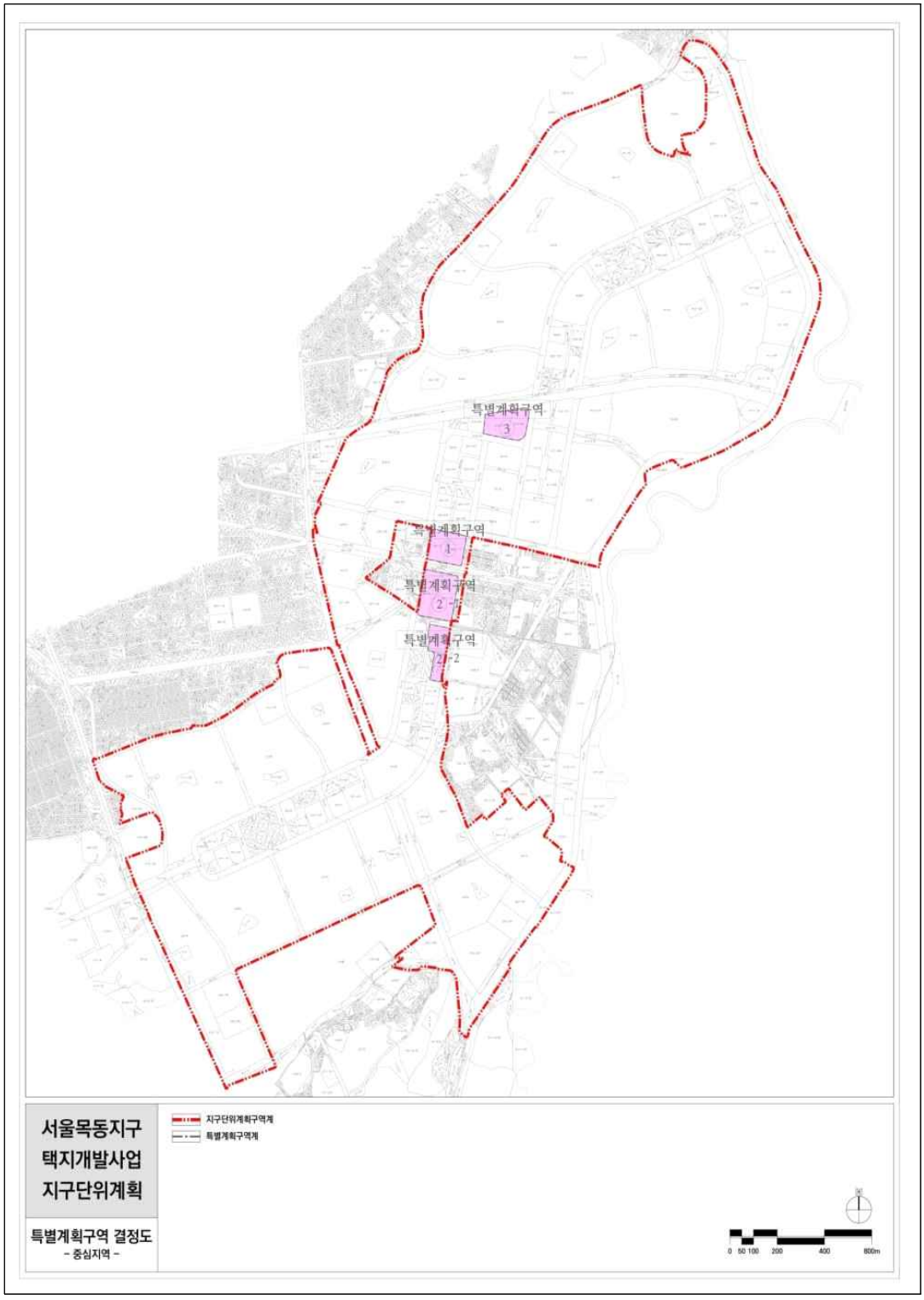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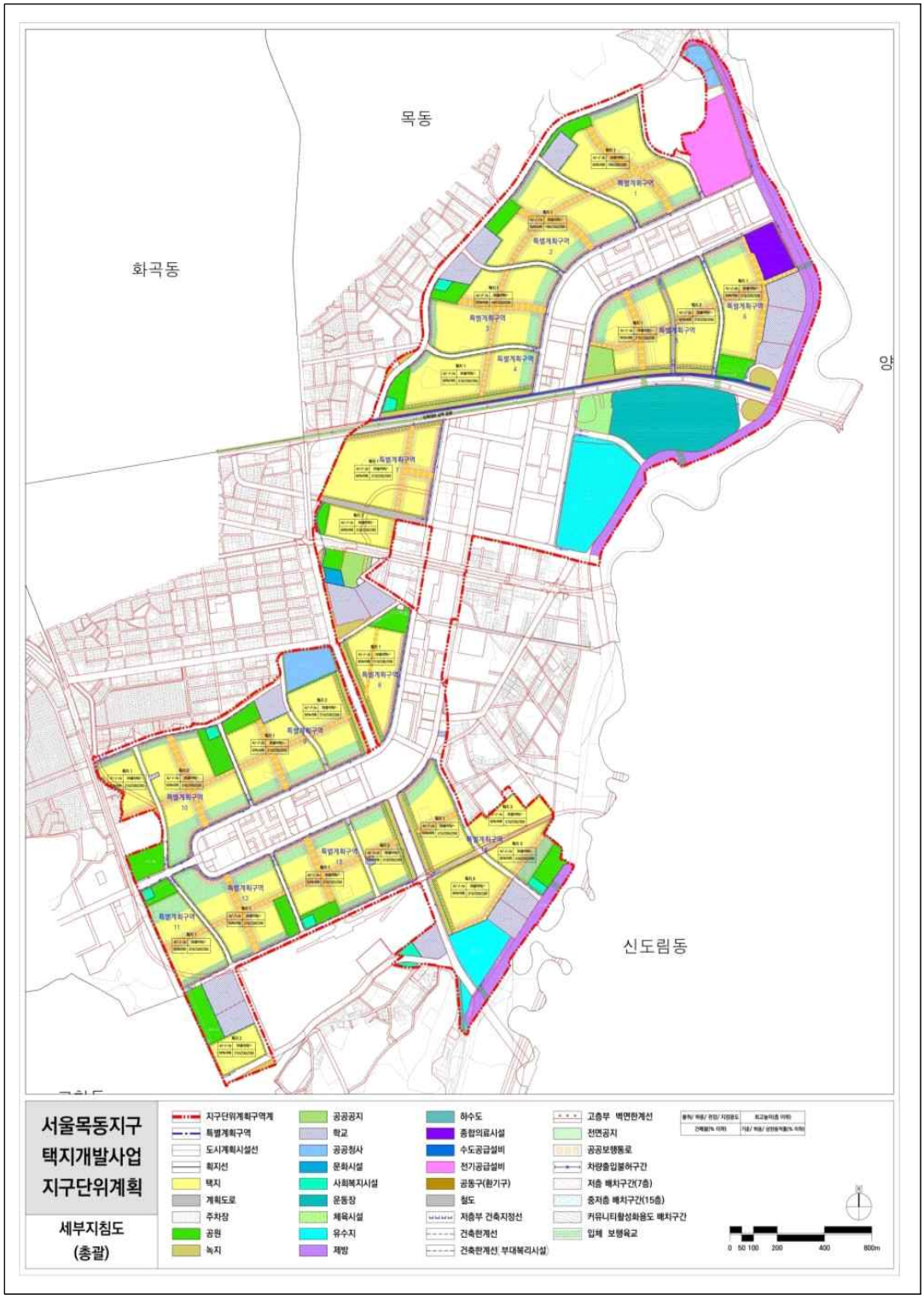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_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_중심지역 (목동중심지구)



■ 특별계획구역 세부지침도_총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9호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 개발계획 변경수립 ·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01호(2023.05.25.)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 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조 ·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1) 마곡 도시개발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마곡동 일원	3,668,796.0	증) 5.7	3,668,801.7	마곡 도시개발구역 면적오차 정정에 따른 변경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1)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 거점 및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육성하는 특화도시로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동북아 관문도시 조성

2) 차세대 서울 경제를 견인하는 융합산업의 전초지로서 첨단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산업 혁신기지 조성

3) 친환경,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향하는 미래의 녹색도시 조성

라.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2)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1) 사업시행 기간 : 2007년 12월 28일 ~ 2024년 12월 31일
2) 시 행 방 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바. 지구분할(변경)

1) 지구내 공구 분할

(단위 : ㎡)

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3,668,796.0	778,603.8	92,764.0	194,930.6	1,382,130.4	247,525.1	274,004.3	384,291.9	14,984.9	299,561.0
변경	3,668,801.7	778,603.8	92,764.0	232,217.2	1,382,130.4	247,525.1	236,723.4	384,291.9	14,984.9	299,561.0

※ 상기 공구 분할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분할이 아닌 사업(부분)준공 추진을 위한 공구 분할임

※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면적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사.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3,668,801.7	778,603.8	92,764.0	232,217.2	1,382,130.4	247,525.1	236,723.4	384,291.9	14,984.9	299,561.0	100.0	
소 계		1,819,774.0	513,428.3	-	117,078.4	837,164.5	186,889.8	165,213.0	-	-	-	49.6	
주거용지	계	620,167.3	503,088.9	-	117,078.4	-	-	-	-	-	-	16.9	
	단독주택용지	4,247.7	4,247.7	-	-	-	-	-	-	-	-	0.1	
	공동주택용지	615,919.6	498,841.2	-	117,078.4	-	-	-	-	-	-	16.8	
상업용지	일 반 상 업	82,806.3	10,339.4	-	-	72,466.9	-	-	-	-	-	2.3	
업무용지	업 무 용 지	305,302.1	-	-	-	183,528.7	121,773.4	-	-	-	-	8.3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729,006.0	-	-	-	539,202.3	54,946.7	134,857.0	-	-	-	19.9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82,492.3	-	-	-	41,966.6	10,169.7	30,356.0	-	-	-	2.2	
소 계		1,815,319.1	260,666.0	82,900.8	103,152.8	539,366.1	60,635.3	70,561.4	384,291.9	14,183.8	299,561.0	49.5	
도시기반시설용지	도 로	647,801.9 (8,851.0)	75,183.5	23,219.4	64,614.1	367,091.0	17,934.5	70,141.4	-	-	29,618.0 (8,851.0)	17.7	
	보행자도로	1,627.3 (647.0)	652.7	-	-	554.6	-	420.0	-	-	- (647.0)	0.0	
	철 도 용 지	16,733.0	-	-	-	-	7,333.0	-	-	-	9,400.0	0.5	
	의 료 시 설	33,363.8	-	-	-	33,363.8	-	-	-	-	-	0.9	
	공 공 청 사	47,092.8	21,669.0	23,948.8	1,475.0	-	-	-	-	-	-	1.3	
	학 교	110,009.4	47,749.8	16,752.0	24,311.0	21,196.6	-	-	-	-	-	3.0	
	보 육 시 설	991.6	-	-	-	991.6	-	-	-	-	-	0.0	
	사회복지시설	1,700.0	-	1,700.0	-	-	-	-	-	-	-	0.0	
	문 화 시 설	11,823.5	-	-	-	-	-	-	-	11,823.5	-	0.3	
	광 장	12,985.4	-	-	-	12,985.4	-	-	-	-	-	0.4	
	근 린 공 원	547,226.1 (35,884.0)	24,594.6	17,280.6	-	-	-	-	384,291.9	-	121,059.0 (35,884.0)	14.9	
	어린이공원/소공원	16,612.5	13,957.1	-	2,655.4	-	-	-	-	-	-	0.5	
	문 화 공 원	20,379.3	-	-	-	12,082.5	8,296.8	-	-	-	-	0.6	
	가 로 공 원	2,618.5	-	-	-	2,618.5	-	-	-	-	-	0.1	
	경 관 녹 지	2,826.2	1,579.5	-	369.9	559.1	-	-	-	317.7	-	0.1	

구분		면적(㎡) 계	1지구			2지구			3지구			구성비(%)	비고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연결녹지	171,844.2 (898.0)	69,768.4	-	7,231.4	67,773.4 (898.0)	27,071.0	-	-	-	-	4.7	
	주차장	25,661.0 (8,114.0)	5,511.4	-	-	20,149.6	-	-	-	-	- (8,114.0)	0.7	
	열공급설비	26,354.0	-	-	-	-	-	-	-	-	26,354.0	0.7	
	전기공급설비	2,042.6	-	-	-	-	-	-	-	2,042.6	-	0.1	
	방수설비	8,743.0 (7,885.0)	-	-	2,496.0	-	-	-	-	-	6,247.0 (7,885.0)	0.2	
	유수지	106,883.0	-	-	-	-	-	-	-	-	106,883.0	2.9	
	저류지	(50,000.0)	-	-	-	-	-	-	-	-	(50,000.0)	0.0	
소계		33,708.6	4,509.5	9,863.2	11,986.0	5,599.8	-	949.0	-	801.1	-	0.9	
기타시설용지	주유소	3,202.2	-	799.8	-	1,601.3	-	-	-	801.1	-	0.1	
	가스충전소	3,998.5	-	-	-	3,998.5	-	-	-	-	-	0.1	
	종교시설	2,994.4	2,994.4	-	-	-	-	-	-	-	-	0.1	
	편익시설	23,513.5	1,515.1	9,063.4	11,986.0	-	-	949.0	-	-	-	0.6	
	택시차고지	-	-	-	-	-	-	-	-	-	-	0.0	

※ 근린공원1 중복결정 : 저류지 및 공동구관리사무소(공동구), 중로2-37[( ) 면적 : 중복 결정된 면적임]
※ 유수지 중복결정 : 중로2-38, 소로3-4, 근린공원4, 방수설비2(면적:7,885㎡)[( ) 면적 : 중복 결정된 면적을 포함]
※ 입체도시계획시설(연결녹지) 결정 : 산업시설용지(산DP3)내 일부구간 상부(면적 : 598㎡), 산업시설용지(산D22-25)내 일부구간 상부(면적 : 300㎡를) [( ) 면적 : 지상부 연결녹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포함 면적]
※ 근린공원 점용 : 가스정압기(근린공원2), 변전소(근린공원3)
※ 토지이용계획 내 지하도로 면적(16,226.9㎡) 별도 미명기
※ 변경사유 : 택시차고지1,2 및 편익시설용지7,8의 공동주택 변경으로 인한 계획변경 및 면적오차 정정 결과 반영

2)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

가) 인구 및 주택별 계획(변경)

구 분	1지구		
	면 적(㎡)	가구수(호)	인구수(인)
합 계	620,167.3	12,444	34,844
단독주택용지	4,247.7	15	42
공동주택용지	615,919.6	12,429	34,802

나) 주택규모별 계획(변경)

구 분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임대	분양	임대	분양	
1지구	합계		6,214	6,230	17,400	17,444	
	단독주택		-	15	-	42	230~330㎡
	공동주택		6,214	6215	17,400	17,402	
		60㎡ 이하	5,202	1,665	14,565	4,663	60㎡이하:60~85㎡:85㎡초과 =55%:34%:11%
		60㎡ ~ 85㎡	964	3,286	2,701	9,200	
		85㎡ 초과	48	1,264	134	3,539	

3)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본 고시 조서 중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변경) 내용,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에 따른다.

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변경없음)

자.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도서 중 「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내용에 포함

차.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해당없음)

카. 관계 도서의 공람방법

1) 시민의 공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로 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 02) 2133-1568)
○ 강서구청 스마트도시과 (☎ 02) 2600-5286)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부 (☎ 02) 3410-7682)

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변경)

※ 본 항은 「도시개발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게 됨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기정	3,668,796.0	778,603.8	92,764.0	194,930.6	1,382,130.4	247,525.1	274,004.3	384,291.9	14,984.9	299,561.0	
		변경	3,668,801.7	778,603.8	92,764.0	232,217.2	1,382,130.4	247,525.1	236,723.4	384,291.9	14,984.9	299,561.0	
주거지역	소계	기정	1,291,597.0	759,211.6	89,194.4	194,930.6	177,192.9	-	44,713.5	-	-	26,354.0	
		변경	1,291,602.7	759,211.6	89,194.4	232,217.2	177,192.9	-	7,432.6	-	-	26,354.0	
	제1종일반 주거지역		10,578.5	8,139.0	2,439.5	-	-	-	-	-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26,354.0	-	-	-	-	-	-	-	-	26,354.0	
	제3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779,525.9	577,428.6	64,506.6	64,807.2	32,911.0	-	39,872.5	-	-	-	
		변경	779,534.2	577,428.6	64,506.6	102,096.4	32,911.0	-	2,591.6	-	-	-	
	준주거지역	기정	475,138.6	173,644.0	22,248.3	130,123.4	144,281.9	-	4,841.0	-	-	-	
		변경	475,136.0	173,644.0	22,248.3	130,120.8	144,281.9	-	4,841.0	-	-	-	
일반상업지역			559,928.0	19,392.2	3,569.6	-	303,892.2	174,111.9	58,962.1	-	-	-	
준공업지역			1,110,804.9	-	-	-	867,063.0	73,413.2	170,328.7	-	-	-	
녹지지역	자연녹지 지역		706,466.1	-	-	-	33,982.3	-	-	384,291.9	14,984.9	273,207.0	

※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면적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1지구	기정	-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57,931,000 (1,066,298.4)	서고제120호 (1977.4.22)	
	변경	-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57,931,000 (1,103,585.0)		
2지구	기정	-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57,931,000 (1,903,659.8)		
	변경	-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57,931,000 (1,866,378.9)		
3지구	기정	-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57,931,000 (698,837.8)		

※ ( )는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사항임

※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면적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마곡동 일원	3,668,796.0	증) 5.7	3,668,801.7	

※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면적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기정)

구분	류별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총계		-	116 (6)	32,202	661,279.6	27 (3)	4,225	75,836.2	2 (1)	726	23,219.4	5	2,096	59,825.6	69 (3)	20,354	367,645.6	3	698	17,934.5	11 (1)	2,435	77,702.3	-	-	-	-	-	-	4 (1)	1,668	39,116.0
일반도로	광로	계 -	3 (1)	1,850	99,042.7	1	-	398.3	-	-	-	1	618	32,029.7	-	-	-	-	-	-	1 (1)	1,232	66,614.7	-	-	-	-	-	-	-	-	-
		3류 45~50	3 (1)	1,850	99,042.7	1	-	398.3	-	-	-	1	618	32,029.7	-	-	-	-	-	-	1 (1)	1,232	66,614.7	-	-	-	-	-	-	-	-	-
	대로	계 -	6 (2)	5,052	169,838.5	-	-	-	1 (1)	703	23,063.3	-	-	-	5 (2)	3,175	107,120.5	1	260	10,036.7	-	-	-	-	-	-	-	-	-	1 (1)	914	29,618.0
		1류 36	1	1,427	54,979.7	-	-	-	-	-	-	-	-	-	1	1,427	54,979.7	-	-	-	-	-	-	-	-	-	-	-	-	-	-	-
		2류 30~53	3 (2)	1,877	64,929.0	-	-	-	1 (1)	703	23,063.3	-	-	-	2 (2)	-	2,211.0	1	260	10,036.7	-	-	-	-	-	-	-	-	-	1 (1)	914	29,618.0
		3류 25~31	2	1,748	49,929.8	-	-	-	-	-	-	-	-	-	2	1,748	49,929.8	-	-	-	-	-	-	-	-	-	-	-	-	-	-	-
	중로	계 -	84 (3)	23,032	373,795.9	16 (3)	3,466	68,460.1	-	-	-	4	1,478	27,795.9	61 (3)	16,625	257,331.8	2	438	7,897.8	2	385	3,459.3	-	-	-	-	-	-	2	640	8,851.0
		1류 20~23	13 (3)	6,092	130,290.9	6 (3)	1,881	42,264.3	-	-	-	1	661	15,316.7	8 (3)	3,307	67,782.7	1	243	4,927.2	-	-	-	-	-	-	-	-	-	-	-	-
		2류 15~18	29	7,408	125,188.0	8	1,504	25,162.6	-	-	-	1	314	6,513.4	17	4,679	83,217.4	-	-	-	1	271	1,443.6	-	-	-	-	-	-	2	640	8,851.0
		3류 12~14	42	9,532	118,317.0	2	81	1,033.2	-	-	-	2	503	5,965.8	36	8,639	106,331.7	1	195	2,970.6	1	114	2,015.7	-	-	-	-	-	-	-	-	-
	소로	계 -	17	1,918	16,328.2	7	604	6,325.1	1	23	156.1	-	-	-	2	508	2,638.7	-	-	-	7	783	7,208.3	-	-	-	-	-	-	-	-	-
		1류 10	6	777	8,469.10	4	428	4,809.1	-	-	-	-	-	-	-	-	-	-	-	-	2	349	3,660.0	-	-	-	-	-	-	-	-	-
		2류 8~10	7	966	6,749.0	3	176	1,516.0	-	-	-	-	-	-	1	414	1,978.3	-	-	-	3	376	3,254.7	-	-	-	-	-	-	-	-	-
		3류 4~6.5	4	175	1,110.1	-	-	-	1	23	156.1	-	-	-	1	94	660.4				2	58	293.6	-	-	-	-	-	-	-	-	-
보행자전용도로	중로	계 -	2	81	974.6	-	-	-	-	-	-	-	-	-	1	46	554.6	-	-	-	1	35	420	-	-	-	-	-	-	-	-	-
		3류 12	2	81	974.6	-	-	-	-	-	-	-	-	-	1	46	554.6	-	-	-	1	35	420	-	-	-	-	-	-	-	-	-
	소로	계 -	4	269	1,299.7	3	155	652.7	-	-	-	-	-	-	-	-	-	-	-	-	-	-	-	-	-	-	-	-	1	114	647.0
		3류 1.5~5	4	269	1,299.7	3	155	652.7	-	-	-	-	-	-	-	-	-	-	-	-	-	-	-	-	-	-	-	-	1	114	647.0

(나)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류별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총 계			-	114 (6)	96,303	647,802.9	25 (3)	39,543	75,185	4 (1)	1,229	23,219	8	10,361	71,823	68 (3)	27,650	367,091	3	745	17,935	4 (1)	9,298	62,932	-	-	-	-	-	-	4 (1)	7,477	29,618
일반도로	광로	계	-	3 (1)	53,086	98,652.1	1	35,306	398	-	-	-	1	8,890	39,200	-	-	-	-	-	-	1 (1)	8,890	59,054	-	-	-	-	-	-	-	-	-
		3류	45~50	3 (1)	53,086	98,652.1	1	35,306	398	-	-	-	1	8,890	39,200	-	-	-	-	-	-	1 (1)	8,890	59,054	-	-	-	-	-	-	-	-	-
	대로	계	-	6 (2)	17,888	155,311.6	-	-	-	1 (1)	703	18,589	-	-	-	4 (2)	10,425	106,566	1	260	10,037	-	-	-	-	-	-	-	-	-	1 (1)	6,500	20,120
		1류	36	1	1,427	54,425.1	-	-	-	-	-	-	-	-	-	1	1,427	54,425	-	-	-	-	-	-	-	-	-	-	-	-	-	-	-
		2류	30~53	3 (2)	14,713	50,956.7	-	-	-	1 (1)	703	18,589	-	-	-	1 (2)	7,250	2,211	1	260	10,037	-	-	-	-	-	-	-	-	-	1 (1)	6,500	20,120
		3류	25~31	2	1,748	49,929.8	-	-	-	-	-	-	-	-	-	2	1,748	49,930	-	-	-	-	-	-	-	-	-	-	-	-	-	-	-
	중로	계	-	84 (3)	23,336	375,236.7	14 (3)	3,466	67,808	2	503	4,474	2	975	25,414	61 (3)	16,671	257,332	2	485	7,898	2	373	3,459	-	-	-	-	-	-	2	863	8,851
		1류	20~23	13 (3)	6,092	133,223.2	4 (3)	1,881	41,613	-	-	-	1	661	18,901	8 (3)	3,307	67,783	1	243	4,927	-	-	-	-	-	-	-	-	-	-	-	-
		2류	15~18	29	7,631	125,188.0	8	1,504	25,163	-	-	-	1	314	6,513	17	4,679	83,217	-	-	-	1	271	1,444	-	-	-	-	-	-	2	863	8,851
		3류	12~14	42	9,613	116,825.5	2	81	1,033	2	503	4,474	-	-	-	36	8,685	106,332	1	242	2,971	1	102	2,016	-	-	-	-	-	-	-	-	-
	소로	계	-	15	1,618	16,328.2	7	591	6,325	1	23	156	5	496	7,209	2	508	2,639	-	-	-				-	-	-	-	-	-	-	-	-
		1류	10	6	777	8,469.1	4	428	4,809	-	-	-	2	349	3,660	-	-	-	-	-	-	-	-	-	-	-	-	-	-	-	-	-	-
		2류	8~10	5	666	6,749.0	3	163	1,516	-	-	-	1	89	3,255	1	414	1,978	-	-	-	-	-	-	-	-	-	-	-	-	-	-	-
		3류	4~6.5	4	175	1,110.1	-	-	-	1	23	156	2	58	294	1	94	660	-	-	-	-	-	-	-	-	-	-	-	-	-	-	-
보행자전용도로	중로	계	-	2	81	974.6	-	-	-	-	-	-	-	-	-	1	46	555	-	-	-	1	35	420	-	-	-	-	-	-	-	-	-
		3류	12	2	81	974.6	-	-	-	-	-	-	-	-	-	1	46	555	-	-	-	1	35	420	-	-	-	-	-	-	-	-	-
	소로	계	-	4	294	1,299.7	3	180	653	-	-	-	-	-	-	-	-	-	-	-	-	-	-	-	-	-	-	-	-	-	1	114	647
		3류	1.5~5	4	294	1,299.7	3	180	653	-	-	-	-	-	-	-	-	-	-	-	-	-	-	-	-	-	-	-	-	-	1	114	647

※ ( ) : 지구간 중복 노선수

※ 중복결정된 도로 포함 : 일반도로 중로2-37, 중로2-38, 보행자도로 소로3-4 (3지구 2공구)

(나)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광	3	16	45~50	주간선도로	제2한강교남단 마곡동730-62	김포공항 마곡동727-122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8,890 (1,850)	-	-	8,890 (618)	-	-	8,890 (1,232)	-	-	-	서고제603호 (1978.11.15)	
기정	광	3	19	40	주간선도로	삼전동	방화동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5,306	35,306	-	-	-	-	-	-	-	-		사업 구역외
기정	대	1	1	36	주간선도로	광3-16 마곡동 727-928	양천길 마곡동 229-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427	-	-	-	1,427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지하공공 보도시설 1 포함
기정	대	2	2	31~53	보조간선도로	대1-1 마곡동761-5	방화로 마곡동 731-169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963	-	703	-	-	260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대	2	38	30	보조간선도로	내발산동644-2 (가양동 709)	고척동 76-148 (가양동 1130)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7,250	-	-	-	7,250	-	-	-	-	-	`71. 4. 7	사업 구역외
기정	대	2	41	30~35	보조간선도로	양화교-광16 마곡동 55-15	개화동시계 마곡동 727-18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6,500 (914)	-	-	-	-	-	-	-	-	6,500 (914)	서고제1984-333호 (1984.6.5)	
기정	대	3	1	25~31	보조간선도로	광3-16 마곡동728-106	마곡동 728-67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19	-	-	-	419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대	3	2	28	보조간선도로	광3-16 마곡동727-1169	양천길 마곡동 727-18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329	-	-	-	1,329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	20	집산도로	양천길 마곡동224-7	대2-2 마곡동363-8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643	-	-	-	643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7	20	집산도로	광3-16 마곡동730-275	대2-2 마곡동 731-19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790	790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8	20	집산도로	광3-16 마곡동727-727	대2-2 마곡동 363-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743	-	-	-	743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1	20	집산도로	방화로 마곡동730-7	중1-7 마곡동 743-9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53	353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중	1	12	20	집산도로	중1-7 마곡동743-9	중1-8 마곡동 767-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66	266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3	20	집산도로	대1-1 마곡동 761-5	중1-8 마곡동 767-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43	-	-	-	-	243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지하공공보도시설 3 포함
기정	중	1	16	20	집산도로	대2-38 마곡동727-1268	대3-2 마곡동 727-50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46	-	-	-	446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7	20~23	집산도로	방화로 마곡동 730-226	광3-16 마곡동 730-33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661	-	-	661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8	20	집산도로	광3-16 마곡동 730-171	소1-6 마곡동 730-61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645	472	-	-	173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29	20	집산도로	대3-1 마곡동 728-67	중2-16 마곡동 808-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66	-	-	-	166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30	20	집산도로	대1-1 마곡동 761-5	대3-2 마곡동 775-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36	-	-	-	53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1	31	20	국지도로	대1-1 마곡동 761-5	대3-2 마곡동 775-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41	-	-	-	541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32	22	집산도로	우측지구계 마곡동 727-1273	중2-28 마곡동 796-8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9	-	-	-	59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2	18	집산도로	대2-2 마곡동 731-194	중3-45 마곡동 731-217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91	291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3	18	집산도로	중2-2 마곡동 736-2	마곡동 731-30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40	240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4	18	국지도로	중1-1 마곡동 754-6	마곡동 35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97	97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중	2	5	18	집산도로	방화로 마곡동 731-111	중1-7 마곡동 743-9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93	193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8	15	국지도로	중1-7 마곡동 743-9	방화뉴타운 마곡동 731-16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95	95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5	18	집산도로	광3-16 마곡동728-158	마곡동 728-35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26	-	-	-	426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6	18	집산도로	광3-16 마곡동728-11	마곡동 726-49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12	-	-	-	412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7	18	집산도로	방화로 마곡동730-85	중1-17 마곡동 730-42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14	-	-	314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8	18	집산도로	중1-17 마곡동 730-429	중1-18 마곡동 798-2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71	271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9	18	집산도로	중1-18 마곡동798-21	발산택지개발지구 마곡동 728-26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43	-	-	-	243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20	18	집산도로	발산택지개발지구 마곡동728-271	중2-15 마곡동 799-2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33	-	-	-	233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21	18	집산도로	대3-1 마곡동800-23	중2-15 마곡동 799-2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76	-	-	-	276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22	18	집산도로	대3-1 마곡동800-23	중2-16 마곡동 808-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66	-	-	-	166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23	18	집산도로	중1-1 마곡동754-6	중3-12 마곡동 756-10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96	-	-	-	9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24	18	집산도로	대1-1 마곡동761-5	중3-12 마곡동 756-10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31	-	-	-	131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25	16	집산도로	대1-1 마곡동761-5	중2-26 마곡동 771-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45	-	-	-	24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중	2	26	18	집산도로	광3-16 마곡동727-1118	중1-30 마곡동 770-8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10	-	-	-	210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27	16	집산도로	대3-2 마곡동775-3	중2-26 마곡동 771-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75	-	-	-	27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28	16	집산도로	대3-2 마곡동 775-3	중1-32 마곡동 794-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76	-	-	-	37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29	16	국지도로	중2-28 마곡동796-8	중3-36 마곡동 797-17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3	-	-	-	53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30	16	국지도로	중1-16 마곡동789-10	중2-28 마곡동 796-8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85	-	-	-	8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31	16	국지도로	중1-16 마곡동789-10	중2-32 마곡동788-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66	-	-	-	26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32	18	집산도로	강서로 마곡동727-1242	대3-2 마곡동775-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81	-	-	-	481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33	16	국지도로	양천길 마곡동727-202	중2-32 마곡동788-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705	-	-	-	70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34	18	집산도로	중2-2 마곡동736-2	중3-47 마곡동734-10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91	91	-	-	-	-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중	2	35	18(3)	집산도로	발산택지개발지구 마곡동728-356	중2-15 마곡동799-2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26	226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 )사업 구역내
기정	중	2	36	18(3)	집산도로	중2-15 마곡동728-351	대3-1 마곡동728-67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71	-	-	-	-	-	271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 )사업 구역내
기정	중	2	37	15	집산도로	대2-41 마곡동55-3	열공급설비 마곡동56-2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77	-	-	-	-	-	-	-	-	77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근린공원1 중복결정 구역내 선형변경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중	2	38	16~22 (2~18)	국지도로	가양동259-21	마곡동406-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786.2 (563.2)	-	-	-	-	-	-	-	-	786.2 (563.2)	서고제2019-337호 (2019.11.21.)	( ) 사업구역내 유수지1 중복결정
기정	중	3	1	12	국지도로	중1-11 마곡동742-4	방화뉴타운 마곡동730-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0	30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3	2	13	집산도로	중2-16 마곡동808-2	소2-2 마곡동808-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16	-	-	-	116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3	4	12	국지도로	중2-16 마곡동808-2	소2-2 마곡동808-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30	-	-	-	130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3	5	14	집산도로	대3-1 마곡동728-68	마곡동728-6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67	-	-	-	-	-	67	-	-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중	3	10	12	국지도로	대1-1 마곡동761-5	중1-1 마곡동54-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38	-	-	-	238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1	12	국지도로	대1-1 마곡동761-5	중3-14 마곡동764-1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94	-	-	-	194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2	12	국지도로	대2-2 마곡동367-3	중3-10 마곡동754-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60	-	-	-	560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3	12	국지도로	중3-17 마곡동762-9	중3-11 마곡동761-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00	-	-	-	400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4	12	국지도로	대1-1 마곡동761-5	대2-41 마곡동52-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769	-	-	-	769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5	12	국지도로	중1-1 마곡동754-6	중3-12 마곡동756-10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95	-	-	-	9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6	12	국지도로	대1-1 마곡동761-5	중3-12 마곡동756-10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32	-	-	-	132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중	3	17	12	국지도로	대1-1 마곡동761-5	중3-14 마곡동764-1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95	-	-	-	19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8	12	국지도로	대1-1 마곡동 761-5	중1-8 마곡동 767-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42	-	-	-	-	242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지하공공보도시설 2 포함
기정	중	3	19	12	국지도로	대3-2 마곡동775-3	중2-33 마곡동775-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66	-	-	-	16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0	12	국지도로	중2-33 마곡동775-5	중2-32 마곡동788-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679	-	-	-	679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1	12	국지도로	중3-20 마곡동776-9	중3-23 마곡동777-7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55	-	-	-	15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2	12	국지도로	대3-2 마곡동775-3	중2-33 마곡동775-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94	-	-	-	194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3	12	국지도로	중2-33 마곡동775-5	중3-20 마곡동776-9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34	-	-	-	234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4	12	국지도로	중3-28 마곡동781-15	중2-33 마곡동775-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13	-	-	-	213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5	12	국지도로	중3-28 마곡동781-15	중3-23 마곡동777-7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89	-	-	-	189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6	12	국지도로	동측구역계 마곡동 727-30	중3-20 마곡동776-9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5	-	-	-	4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7	12	국지도로	대3-2 마곡동775-3	중2-33 마곡동775-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69	-	-	-	169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8	12	국지도로	중2-33 마곡동775-5	중3-20 마곡동776-9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65	-	-	-	26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9	12	국지도로	중2-32 마곡동788-5	중3-28 마곡동781-1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80	-	-	-	180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중	3	30	12	국지도로	중2-32 마곡동788-5	중3-28 마곡동781-1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80	-	-	-	180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1	12	국지도로	중1-16 마곡동789-10	중2-32 마곡동788-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66	-	-	-	266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2	12	국지도로	중1-16 마곡동789-10	중2-32 마곡동788-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65	-	-	-	26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3	12	국지도로	중1-16 마곡동789-10	중2-32 마곡동788-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65	-	-	-	26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4	12	국지도로	중1-16 마곡동789-10	중2-28 마곡동796-8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02	-	-	-	102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5	12	국지도로	대3-2 마곡동775-3	중2-26 마곡동771-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73	-	-	-	273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6	12	국지도로	대3-2 마곡동775-3	소3-2 마곡동797-18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65	-	-	-	36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7	12	국지도로	발산택지지구 마곡동728-245	중1-18 마곡동798-2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34	-	-	-	234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8	12	국지도로	발산택지지구 마곡동728-250	중2-15 마곡동799-2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37	-	-	-	237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9	12	국지도로	대3-1 마곡동800-23	중2-15 마곡동799-2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74	-	-	-	274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40	12	국지도로	대3-1 마곡동800-23	중2-16 마곡동808-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68	-	-	-	168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41	12	국지도로	중2-15 마곡동799-23	중3-42 마곡동803-8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5	-	-	-	4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42	12	국지도로	중2-21 마곡동800-22	남측구역계 마곡동728-35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59	-	-	-	259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중	3	43	12	국지도로	대3-1 마곡동800-23	중3-42 마곡동803-8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18	-	-	-	218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44	12	국지도로	대3-1 마곡동800-23	중2-16 마곡동808-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70	-	-	-	170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45	12	집산도로	중2-2 마곡동731-7	북측구역계 마곡동731-27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58	-	258	-	-	-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중	3	46	12	집산도로	중2-2 마곡동731-14	동측구역계 마곡동731-23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45	-	245	-	-	-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중	3	47	12	집산도로	중2-34 마곡동734-7	중3-46 마곡동731-24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1	51	-	-	-	-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소	1	1	10	국지도로	양천길 마곡동222-30	마곡동222-20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7	-	-	27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1	2	10	국지도로	중1-1 마곡동317	양천길 마곡동222-4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22	-	-	322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1	6	10	국지도로	중1-18 마곡동749-11	중1-17 마곡동730-547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37	137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1	7	10	국지도로	중1-7 마곡동743-9	중2-5 마곡동739-7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88	188	-	-	-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소	1	8	10	국지도로	대2-2 마곡동731-48	마곡동731-44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2	52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1	9	10	국지도로	중1-7 마곡동743-9	공공청사6-3 마곡동730-260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1	51	-	-	-	-	-	-	-	-	서고제2017-161호 (2017.05.04)	
기정	소	2	2	8 (5)	국지도로	광3-16 마곡동728-6	마곡동728-29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14	-	-	-	414	-	-	-	-	-	-	( )사업 구역내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소	2	21	8	국지도로	중1-1 마곡동322-1	소1-2 마곡동325-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60	-	-	-	-	-	160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폐지	소	2	21	8	국지도로	중1-1 마곡동322-1	소1-2 마곡동325-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	-	-	-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소	2	22	8	국지도로	중1-1 마곡동319-1	소1-2 마곡동323-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27	-	-	-	-	-	127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폐지	소	2	22	8	국지도로	중1-1 마곡동319-1	소1-2 마곡동323-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	-	-	-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소	2	23	8~10	국지도로	소1-2 마곡동 325-8	소1-1 마곡동 222-1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89	-	-	89	-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소	2	25	9	국지도로	소로1-8 마곡동 737-22	소공원1 마곡동 737-1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74	74	-	-	-	-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소	2	26	9	국지도로	편익4 마곡동 737	소로1-8 마곡동 737-2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7	57	-	-	-	-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소	2	27	8	국지도로	마곡동 737-22	마곡동360-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2	32	-	-	-	-	-	-	-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소	3	2	6.5	국지도로	광3-16 마곡동 727-1277	중로1-32 마곡동 794-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94	-	-	-	94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3	4	4	국지도로	소1-1 마곡동 222-12	마곡동 221-18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2	-	-	32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3	5	6	국지도로	소2-23 마곡동 325-9	마곡동 327-9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6	-	-	2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소	3	7	6	국지도로	편익10 마곡동 738-2	편익10 마곡동 738-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3	-	23	-	-	-	-	-	-	-	서고제2014-183호 (2014.05.08)	
기정	중	3	1	12	특수도로	동측구역계 마곡동 727-1229	중3-20 마곡동 727-1229	보행자도로	마곡구역내	46	-	-	-	4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6	12	특수도로	중3-11 마곡동761-4	근린공원1 마곡동812	보행자도로	마곡구역내	35	-	-	-	-	-	35	-	-	-	서고제2020-593호 (2020.12.24)	
기정	소	3	1	5	특수도로	대2-2 마곡동 731-123	소1-7 마곡동 739-6	보행자도로	마곡구역내	30	30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3	2	5	특수도로	중2-34 마곡동 734-7	경관녹지10 마곡동 731-245	보행자도로	마곡구역내	88	88	-	-	-	-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소	3	3	1.5~2.3 (1.5)	특수도로	중2-4 마곡동 738-6	한솔솔파크APT 마곡동 341-9	보행자도로	마곡구역내	62 (37)	62 (37)	-	-	-	-	-	-	-	-	서고제2017-161호 (2017.05.04)	
기정	소	3	4	5	특수도로	중2-38 마곡동811-5	마곡동811-5	보행자도로	마곡구역내	114	-	-		-	-	-	-	-	114	서고제2019-337호 (2019.11.21.)	유수지1 중복결정

(다)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21	-	· 소로 2-21 폐지 - L = 160m, B = 8m	· 도로 -> 공동주택 용지 변경에 따른 기존 도로 폐지
소로2-22	-	· 소로 2-22 폐지 - L = 127m, B = 8m	· 도로 -> 공동주택 용지 변경에 따른 기존 도로 폐지 · 공동주택용지(Ⓐ) 및 연결녹지40(Ⓑ)로 변경 · Ⓐ(103m):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변경 · Ⓑ(24m): 일부도로(Ⓐ)의 공동주택용지 편입으로 인해 도로 기능 상실. 기존 녹지의 연결성 증진을 위한 변경

(2) 도로(지하도로)

(가) 도로(지하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3)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4) 철도

(가) 철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철도 입체적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공간시설

(1) 광장(변경없음)

(2) 공원

(가) 공원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총계	-	-	586,836.4 (35,884)	38,551.7	17,280.6	2,655.4	14,701.0	8,296.8	-	384,291.9	-	121,059.0 (35,884)	-	
기정	계	근린공원	-	547,226.1 (35,884)	24,594.6	17,280.6	-	-	-	-	384,291.9	-	121,059.0 (35,884)	-	
기정	1	근린공원	마곡동 812 일원	505,350.9	-	-	-	-	-	-	384,291.9	-	121,059.0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열공급설비 진입도로, 유수지2, 지하공공보도시설1 중복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2	근린공원	마곡동 743-3	17,280.6	-	17,280.6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가스정압기 점용
기정	3	근린공원	마곡동 749-4	24,594.6	24,594.6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전소 점용
기정	4	근린공원	마곡동 811-5일원	(35,884)	-	-	-	-	-	-	-	-	(35,884)	서고제2019-377호 (2019.11.21.)	유수지 내 중복결정
기정	계	어린이공원/ 소공원	-	16,612.5	13,957.1	-	2,655.4	-	-	-	-	-	-	-	
기정	1	어린이공원	마곡동 750-1	2,000.0	2,000.0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2	어린이공원	마곡동 751-1	2,066.0	2,066.0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	어린이공원	마곡동 738-1	1,492.3	1,492.3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4	어린이공원	마곡동 741-1	2,015.3	2,015.3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5	어린이공원	마곡동 742-3	511.0	511.0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6	어린이공원	마곡동 743-6	2,852.6	2,852.6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7	어린이공원	마곡동 730-60 일원	2,658.0	-	-	2,658.0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7	어린이공원	마곡동 730-60 일원	2,655.4	-	-	2,655.4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8	어린이공원	마곡동 748-2	1,934.7	1,934.7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1	소공원	마곡동 737-16	1,085.2	1,085.2	-	-	-	-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계	문화공원	-	20,379.3	-	-	-	12,082.5	8,296.8	-	-	-	-	-	
기정	1	문화공원	마곡동 800-7	3,836.6	-	-	-	3,836.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	문화공원	마곡동 772	8,296.8	-	-	-	-	8,296.8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3	문화공원	마곡동 790-6	2,574.7	-	-	-	2,574.7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4	문화공원	마곡동 756-4	3,089.9	-	-	-	3,089.9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5	문화공원	마곡동 778-4	2,581.3	-	-	-	2,581.3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계	가로공원	-	2,618.5	-	-	-	2,618.5	-	-	-	-	-	-	
기정	1	가로공원	마곡동 797-5	2,618.5	-	-	-	2,618.5	-	-	-	-	-	서고제2019-332호 (2019.10.4)	

(나)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7	어린이공원	· 측량결과 반영 - A = 2,658.0㎡ → 2,655.4㎡ (감 2.6㎡)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3) 녹지

(가) 녹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총 계	-	-	174,670.4	71,347.9	-	7,601.3	68,332.5	27,071.0	-	-	317.7	-	-	
	계	연결녹지	-	171,844,2	69,768.4	-	7,231.4	67,773.4	27,071.0	-	-	-	-	-	
기정	1	연결녹지	마곡동 749-1	6,903.0	6,903.0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2	연결녹지	마곡동 746-2	8,903.8	8,903.8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	연결녹지	마곡동 745-2	15,698.4	15,698.4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4	연결녹지	마곡동 743-7	22,415.3	22,415.3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5	연결녹지	마곡동 767-3	23,299.1	-	-	-	-	23,299.1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지하공공보도시설1 중복결정
기정	6	연결녹지	마곡동 770-2	2,184.9	-	-	-	2,184.9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7	연결녹지	마곡동 780-8	5,509.0	-	-	-	5,509.0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8	연결녹지	마곡동 779-3	7,123.1	-	-	-	7,123.1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9	연결녹지	마곡동 775-2	2,562.6	-	-	-	2,562.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0	연결녹지	마곡동 776-7	2,199.0	-	-	-	2,199.0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1	연결녹지	마곡동 777-6	1,720.6	-	-	-	1,720.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2	연결녹지	마곡동 776-8	499.8	-	-	-	499.8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13	연결녹지	마곡동 782-7	2,460.2	-	-	-	2,460.2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4	연결녹지	마곡동 786-6	2,122.7	-	-	-	2,122.7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5	연결녹지	마곡동 791-10	3,579.7	-	-	-	3,579.7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6	연결녹지	마곡동 795-9	1,024.1	-	-	-	1,024.1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7	연결녹지	마곡동 789-8	629.7	-	-	-	629.7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8	연결녹지	마곡동 790-12	725.2	-	-	-	725.2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9	연결녹지	마곡동 792-12	1,118.5	-	-	-	1,118.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0	연결녹지	마곡동 793-5	525.0	-	-	-	525.0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1	연결녹지	마곡동 769-2	3,771.9	-	-	-	-	3,771.9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지하도로4 (181.8㎡) 중복결정
기정	22	연결녹지	마곡동 773-4	6,026.1	-	-	-	6,026.1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3	연결녹지	마곡동 774-14	894.6	-	-	-	894.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4	연결녹지	마곡동 772-4	5,020.6	-	-	-	5,020.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5	연결녹지	마곡동 796-2	3,808.4	-	-	-	3,808.4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6	연결녹지	마곡동 795-8	511.8	-	-	-	511.8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7	연결녹지	마곡동 797-13	2,269.3	-	-	-	2,269.3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9	연결녹지	마곡동 774-13	525.0	-	-	-	525.0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30	연결녹지	마곡동 800-6	561.5	-	-	-	561.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31	연결녹지	마곡동 804-5	1,687.3	-	-	-	1,687.3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32	연결녹지	마곡동 805-4	1,554.9	-	-	-	1,554.9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최초결정일	비고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33	연결녹지	마곡동 750-2	9,064.7	9,064.7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4	연결녹지	마곡동 751-2	4,721.1	4,721.1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5	연결녹지	마곡동 806-4	2,044.4	-	-	-	2,044.4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36	연결녹지	마곡동 807-3	1,643.0	-	-	-	1,643.0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7	연결녹지	마곡동 741-2	2,062.1	2,062.1	-	-	-	-	-	-	-	-	서고제2011-418호 (2011.12.29)	
변경	38	연결녹지	마곡동 222-41 일원	1,642.0	-	-	1,642.0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9	연결녹지	마곡동 327-98 일원	1,189.0	-	-	-	-	-	1,189.0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변경	39	연결녹지	마곡동 327-98 일원	1,188.8	-	-	1,188.8	-	-	-	-	-	-	-	
기정	40	연결녹지	마곡동 324-14 일원	1,307.0	-	-	-	-	-	1,307.0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변경	40	연결녹지	마곡동 324-14 일원	4,400.6	-	-	4,400.6	-	-	-	-	-	-	-	
기정	41	연결녹지	마곡동 323-5 일원	2,883.0	-	-	-	-	-	2,883.0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폐지	41	연결녹지	마곡동 323-5 일원	-	-	-	-	-	-	-	-	-	-	-	
기정	42	연결녹지	마곡동 755-4	1,135.2	-	-	-	1,135.2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43	연결녹지	마곡동 756-3	785.4	-	-	-	785.4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45	연결녹지	마곡동 763-3	789.5	-	-	-	789.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49	연결녹지	마곡동 770-4	1,283.0	-	-	-	1,283.0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50	연결녹지	마곡동 770-6	2,150.9	-	-	-	2,150.9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51	연결녹지	마곡동 789-12	624.2	-	-	-	624.2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52	연결녹지	마곡동 789-13	474.2	-	-	-	474.2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변경	계	경관녹지	-	2,826.2	1,579.5	-	369.9	559.1	-	-	-	317.7	-	-	
기정	2	경관녹지	마곡동 222-15 일원	369.0	-	-	-	-	-	369.0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2	경관녹지	마곡동 222-15 일원	369.9	-	-	369.9	-	-	-	-	-	-	-	
기정	4	경관녹지	마곡동 734-2	551.5	551.5	-	-	-	-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5	경관녹지	마곡동 809-1	559.1	-	-	-	559.1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6	경관녹지	마곡동 813-2	317.7	-	-	-	-	-	-	-	317.7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7	경관녹지	마곡동 737-17	615.7	615.7	-	-	-	-	-	-	-	-	서고제2014-183호 (2014.05.08)	
기정	8	경관녹지	마곡동 737-18	412.3	412.3	-	-	-	-	-	-	-	-	서고제2014-183호 (2014.05.08)	

(나)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39	연결녹지	· 측량결과 반영 - A = 1,189.0㎡ → 1,188.8㎡ (감 0.2㎡)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40	연결녹지	· 연결녹지 연장 및 측량결과 반영 - A = 1,307.0㎡ → 4,400.6㎡ (증 3,094.1㎡)	· 연결녹지 연장 및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2	경관녹지	· 측량결과 반영 - A = 369.0㎡ → 369.9㎡ (증 0.9㎡)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다) 연결녹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열공급설비

(가) 열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2) 전기공급설비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3) 공동구

(가) 공동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없음)

(2) 학교

(가) 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3) 사회복지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4) 문화시설

(가) 문화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1) 방수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2) 유수지

(가) 유수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바) 보건위생시설

(1) 종합의료시설

(가) 종합의료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사)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간선하수도)

(가) 하수도(간선하수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2)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파. 기타 개발계획(도시관리계획 포함) 사항은 「2.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변경) 내용을 따른다.

2.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나.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마곡동 일원	3,668,796.0	증) 5.7	3,668,801.7	마곡 도시개발구역 면적오차 정정에 따른 변경

라. 시행자(변경없음)

마. 시행기간

1) 사업시행 기간 : 2007년 12월 28일~2024년 12월 31일

바. 시행방식(변경없음)

사. 지구분할(변경)

1) 지구내 공구 분할

(단위 : ㎡)

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3,668,796.0	778,603.8	92,764.0	194,930.6	1,382,130.4	247,525.1	274,004.3	384,291.9	14,984.9	299,561.0
변경	3,668,801.7	778,603.8	92,764.0	232,217.2	1,382,130.4	247,525.1	236,723.4	384,291.9	14,984.9	299,561.0

※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면적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변경) 내용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기정	3,668,796.0	778,603.8	92,764.0	194,930.6	1,382,130.4	247,525.1	274,004.3	384,291.9	14,984.9	299,561.0	
		변경	3,668,801.7	778,603.8	92,764.0	232,217.2	1,382,130.4	247,525.1	236,723.4	384,291.9	14,984.9	299,561.0	
주거지역	소계	기정	1,291,597.0	759,211.6	89,194.4	194,930.6	177,192.9	-	44,713.5	-	-	26,354.0	
		변경	1,291,602.7	759,211.6	89,194.4	232,217.2	177,192.9	-	7,432.6	-	-	26,354.0	
	제1종일반 주거지역		10,578.5	8,139.0	2,439.5	-	-	-	-	-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26,354.0	-	-	-	-	-	-	-	-	26,354.0	
	제3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779,525.9	577,428.6	64,506.6	64,807.2	32,911.0	-	39,872.5	-	-	-	
		변경	779,534.2	577,428.6	64,506.6	102,096.4	32,911.0	-	2,591.6	-	-	-	
	준주거지역	기정	475,138.6	173,644.0	22,248.3	130,123.4	144,281.9	-	4,841.0	-	-	-	
		변경	475,136.0	173,644.0	22,248.3	130,120.8	144,281.9	-	4,841.0	-	-	-	
일반상업지역			559,928.0	19,392.2	3,569.6	-	303,892.2	174,111.9	58,962.1	-	-	-	
준공업지역			1,110,804.9	-	-	-	867,063.0	73,413.2	170,328.7	-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706,466.1	-	-	-	33,982.3	-	-	384,291.9	14,984.9	273,207.0	

※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면적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1지구	기정	-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57,931,000 (1,066,298.4)	서고제120호 (1977.4.22)	
	변경	-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57,931,000 (1,103,585.0)		
2지구	기정	-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57,931,000 (1,903,659.8)		
	변경	-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57,931,000 (1,866,378.9)		
3지구	기정	-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57,931,000 (698,837.8)		

※ ( )는 마곡 도시개발구역내 사항임

※ ( )는 마곡 도시개발구역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마곡동 일원	3,668,796.0	증) 5.7	3,668,801.7	

※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면적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기정)

구분 류별			폭원 (m)	합 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총 계			-	116 (6)	32,202	661,279.6	27 (3)	4,225	75,836.2	2 (1)	726	23,219.4	5	2,096	59,825.6	69 (3)	20,354	367,645.6	3	698	17,934.5	11 (1)	2,435	77,702.3	-	-	-	-	-	-	4 (1)	1,668	39,116.0
일반도로	광로	계	-	3 (1)	1,850	99,042.7	1	-	398.3	-	-	-	1	618	32,029.7	-	-	-	-	-	-	1 (1)	1,232	66,614.7	-	-	-	-	-	-	-	-	-
		3류	45~50	3 (1)	1,850	99,042.7	1	-	398.3	-	-	-	1	618	32,029.7	-	-	-	-	-	-	1 (1)	1,232	66,614.7	-	-	-	-	-	-	-	-	-
	대로	계	-	6 (2)	5,052	169,838.5	-	-	-	1 (1)	703	23,063.3	-	-	-	5 (2)	3,175	107,120.5	1	260	10,036.7	-	-	-	-	-	-	-	-	-	1 (1)	914	29,618.0
		1류	36	1	1,427	54,979.7	-	-	-	-	-	-	-	-	-	1	1,427	54,979.7	-	-	-	-	-	-	-	-	-	-	-	-	-	-	-
		2류	30~53	3 (2)	1,877	64,929.0	-	-	-	1 (1)	703	23,063.3	-	-	-	2 (2)	-	2,211.0	1	260	10,036.7	-	-	-	-	-	-	-	-	-	1 (1)	914	29,618.0
		3류	25~31	2	1,748	49,929.8	-	-	-	-	-	-	-	-	-	2	1,748	49,929.8	-	-	-	-	-	-	-	-	-	-	-		-	-	-	-
	중로	계	-	84 (3)	23,032	373,795.9	16 (3)	3,466	68,460.1	-	-	-	4	1,478	27,795.9	61 (3)	16,625	257,331.8	2	438	7,897.8	2	385	3,459.3	-	-	-	-	-	-	2	640	8,851.0
		1류	20~23	13 (3)	6,092	130,290.9	6 (3)	1,881	42,264.3	-	-	-	1	661	15,316.7	8 (3)	3,307	67,782.7	1	243	4,927.2	-	-	-	-	-	-	-	-	-	-	-	-
		2류	15~18	29	7,408	125,188.0	8	1,504	25,162.6	-	-	-	1	314	6,513.4	17	4,679	83,217.4	-	-	-	1	271	1,443.6	-	-	-	-	-	-	2	640	8,851.0

구분	류별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3류	12~14	42	9,532	118,317.0	2	81	1,033.2	-	-	-	2	503	5,965.8	36	8,639	106,331.7	1	195	2,970.6	1	114	2,015.7	-	-	-	-	-	-	-	-	-
	소로	계	-	17	1,918	16,328.2	7	604	6,325.1	1	23	156.1	-	-	-	2	508	2,638.7	-	-	-	7	783	7,208.3	-	-	-	-	-	-	-	-	-
		1류	10	6	777	8,469.10	4	428	4,809.1	-	-	-	-	-	-	-	-	-	-	-	-	2	349	3,660.0	-	-	-	-	-	-	-	-	-
		2류	8~10	7	966	6,749.0	3	176	1,516.0	-	-	-	-	-	-	1	414	1,978.3	-	-	-	3	376	3,254.7	-	-	-	-	-	-	-	-	-
		3류	4~6.5	4	175	1,110.1	-	-	-	1	23	156.1	-	-	-	1	94	660.4				2	58	293.6	-	-	-	-	-	-	-	-	-
보행자전용도로	중로	계	-	2	81	974.6	-	-	-	-	-	-	-	-	-	1	46	554.6	-	-	-	1	35	420	-	-	-	-	-	-	-	-	-
		3류	12	2	81	974.6	-	-	-	-	-	-	-	-	-	1	46	554.6	-	-	-	1	35	420	-	-	-	-	-	-	-	-	-
	소로	계	-	4	269	1,299.7	3	155	652.7	-	-	-	-	-	-	-	-	-	-	-	-	-	-	-	-	-	-	-	-	1	114	647.0
		3류	1.5~5	4	269	1,299.7	3	155	652.7	-	-	-	-	-	-	-	-	-	-	-	-	-	-	-	-	-	-	-	-	1	114	647.0

※ ( ) : 지구간 중복 노선수

※ 중복결정된 도로 포함 : 일반도로 중로2-37, 중로2-38, 보행자도로 소로3-4 (3지구 2공구)

(나)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류별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총계			-	114 (6)	96,303	647,802.9	25 (3)	39,543	375,185	4 (1)	1,229	23,219	8	10,361	71,823	68 (3)	27,650	367,091	3	745	17,935	4 (1)	9,298	62,932	-	-	-	-	-	-	4 (1)	7,477	29,618
일반버스	광버	계	-	3 (1)	53,086	98,652.1	1	35,306	398	-	-	-	1	8,890	39,200	-	-	-	-	-	-	1 (1)	8,890	59,054	-	-	-	-	-	-	-	-	-
		3류	45~50	3 (1)	53,086	98,652.1	1	35,306	398	-	-	-	1	8,890	39,200	-	-	-	-	-	-	1 (1)	8,890	59,054	-	-	-	-	-	-	-	-	-
	대버	계	-	6 (2)	17,888	155,311.6	-	-	-	1 (1)	703	18,589	-	-	-	4 (2)	10,425	106,566	1	260	10,037	-	-	-	-	-	-	-	-	-	1 (1)	6,500	20,120
		1류	36	1	1,427	54,425.1	-	-	-	-	-	-	-	-	-	1	1,427	54,425	-	-	-	-	-	-	-	-	-	-	-	-	-	-	-
		2류	30~53	3 (2)	14,713	50,956.7	-	-	-	1 (1)	703	18,589	-	-	-	1 (2)	7,250	2,211	1	260	10,037	-	-	-	-	-	-	-	-	-	1 (1)	6,500	20,120
		3류	25~31	2	1,748	49,929.8	-	-	-	-	-	-	-	-	-	2	1,748	49,930	-	-	-	-	-	-	-	-	-	-	-	-	-	-	-
	저버	계	-	84 (3)	23,336	375,236.7	14 (3)	3,466	67,808	2	503	4,474	2	975	25,414	61 (3)	16,671	257,332	2	485	7,898	2	373	3,459	-	-	-	-	-	-	2	863	8,851
		1류	20~23	13 (3)	6,092	133,223.2	4 (3)	1,881	41,613	-	-	-	1	661	18,901	8 (3)	3,307	67,783	1	243	4,927	-	-	-	-	-	-	-	-	-	-	-	-	-
		2류	15~18	29	7,631	125,188.0	8	1,504	25,163	-	-	-	1	314	6,513	17	4,679	83,217	-	-	-	1	271	1,444	-	-	-	-	-	-	2	863	8,851
		3류	12~14	42	9,613	116,825.5	2	81	1,033	2	503	4,474	-	-	-	36	8,685	106,332	1	242	2,971	1	102	2,016	-	-	-	-	-	-	-	-	-

구분	류별		폭원(m)	합 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소로	계	-	15	1,618	16,328.2	7	591	6,325	1	23	156	5	496	7,209	2	508	2,639	-	-	-				-	-	-	-	-	-	-	-	-
		1류	10	6	777	8,469.1	4	428	4,809	-	-	-	2	349	3,660	-	-	-	-	-	-	-	-	-	-	-	-	-	-	-	-	-	-
		2류	8~10	5	666	6,749.0	3	163	1,516	-	-	-	1	89	3,255	1	414	1,978	-	-	-	-	-	-	-	-	-	-	-	-	-	-	-
		3류	4~6.5	4	175	1,110.1	-	-	-	1	23	156	2	58	294	1	94	660	-	-	-	-	-	-	-	-	-	-	-	-	-	-	-
보행자전용도로	중로	계	-	2	81	974.6	-	-	-	-	-	-	-	-	-	1	46	555	-	-	-	1	35	420	-	-	-	-	-	-	-	-	-
		3류	12	2	81	974.6	-	-	-	-	-	-	-	-	-	1	46	555	-	-	-	1	35	420	-	-	-	-	-	-	-	-	-
	소로	계	-	4	294	1,299.7	3	180	653	-	-	-	-	-	-	-	-	-	-	-	-	-	-	-	-	-	-	-	-	-	1	114	647
		3류	1.5~5	4	294	1,299.7	3	180	653	-	-	-	-	-	-	-	-	-	-	-	-	-	-	-	-	-	-	-	-	-	1	114	647

※ ( ) : 지구간 중복 노선수

※ 중복결정된 도로 포함 : 일반도로 중로2-37, 중로2-38, 보행자도로 소로3-4 (3지구 2공구)

(나)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광	3	16	45~50	주간선도로	제2한강교남단 마곡동730-62	김포공항 마곡동727-122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8,890 (1,850)	-	-	8,890 (618)	-	-	8,890 (1,232)	-	-	-	서고제603호 (1978.11.15)	
기정	광	3	19	40	주간선도로	삼전동	방화동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5,306	35,306	-	-	-	-	-	-	-	-		사업구역외
기정	대	1	1	36	주간선도로	광3-16 마곡동 727-928	양천길 마곡동 229-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427	-	-	-	1,427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지하공공보도시설 1 포함
기정	대	2	2	31~53	보조간선도로	대1-1 마곡동761-5	방화로 마곡동 731-169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963	-	703	-	-	260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대	2	38	30	보조간선도로	내발산동644-2 (가양동 709)	고척동 76-148 (가양동 1130)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7,250	-	-	-	7,250	-	-	-	-	-	`71. 4. 7	사업구역외
기정	대	2	41	30~35	보조간선도로	양화교-광16 마곡동 55-15	개화동시계 마곡동 727-18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6,500 (914)	-	-	-	-	-	-	-	-	6,500 (914)	서고제1984-333호 (1984.6.5)	
기정	대	3	1	25~31	보조간선도로	광3-16 마곡동728-106	마곡동 728-67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19	-	-	-	419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대	3	2	28	보조간선도로	광3-16 마곡동727-1169	양천길 마곡동 727-18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329	-	-	-	1,329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	20	집산도로	양천길 마곡동224-7	대2-2 마곡동363-8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643	-	-	-	643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7	20	집산도로	광3-16 마곡동730-275	대2-2 마곡동 731-19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790	790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8	20	집산도로	광3-16 마곡동727-727	대2-2 마곡동 363-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743	-	-	-	743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1	20	집산도로	방화로 마곡동730-7	중1-7 마곡동 743-9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53	353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중	1	12	20	집산도로	중1-7 마곡동743-9	중1-8 마곡동 767-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66	266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3	20	집산도로	대1-1 마곡동 761-5	중1-8 마곡동 767-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43	-	-	-	-	243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지하공공보도시설 3 포함
기정	중	1	16	20	집산도로	대2-38 마곡동727-1268	대3-2 마곡동 727-50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46	-	-	-	446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7	20~23	집산도로	방화로 마곡동 730-226	광3-16 마곡동 730-33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661	-	-	661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8	20	집산도로	광3-16 마곡동 730-171	소1-6 마곡동 730-61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645	472	-	-	173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29	20	집산도로	대3-1 마곡동 728-67	중2-16 마곡동 808-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66	-	-	-	166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30	20	집산도로	대1-1 마곡동 761-5	대3-2 마곡동 775-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36	-	-	-	53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1	31	20	국지도로	대1-1 마곡동 761-5	대3-2 마곡동 775-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41	-	-	-	541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32	22	집산도로	우측지구계 마곡동 727-1273	중2-28 마곡동 796-8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9	-	-	-	59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2	18	집산도로	대2-2 마곡동 731-194	중3-45 마곡동 731-217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91	291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3	18	집산도로	중2-2 마곡동 736-2	마곡동 731-30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40	240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4	18	국지도로	중1-1 마곡동 754-6	마곡동 35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97	97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중	2	5	18	집산도로	방화로 마곡동 731-111	중1-7 마곡동 743-9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93	193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8	15	국지도로	중1-7 마곡동 743-9	방화뉴타운 마곡동 731-16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95	95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5	18	집산도로	광3-16 마곡동728-158	마곡동 728-35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26	-	-	-	426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6	18	집산도로	광3-16 마곡동728-11	마곡동 726-49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12	-	-	-	412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7	18	집산도로	방화로 마곡동730-85	중1-17 마곡동 730-42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14	-	-	314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8	18	집산도로	중1-17 마곡동 730-429	중1-18 마곡동 798-2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71	271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9	18	집산도로	중1-18 마곡동798-21	발산택지개발지구 마곡동 728-26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43	-	-	-	243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20	18	집산도로	발산택지개발지구 마곡동728-271	중2-15 마곡동 799-2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33	-	-	-	233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21	18	집산도로	대3-1 마곡동800-23	중2-15 마곡동 799-2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76	-	-	-	276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22	18	집산도로	대3-1 마곡동800-23	중2-16 마곡동 808-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66	-	-	-	166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23	18	집산도로	중1-1 마곡동754-6	중3-12 마곡동 756-10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96	-	-	-	9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24	18	집산도로	대1-1 마곡동761-5	중3-12 마곡동 756-10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31	-	-	-	131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25	16	집산도로	대1-1 마곡동761-5	중2-26 마곡동 771-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45	-	-	-	24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중	2	26	18	집산도로	광3-16 마곡동727-1118	중1-30 마곡동 770-8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10	-	-	-	210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27	16	집산도로	대3-2 마곡동775-3	중2-26 마곡동 771-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75	-	-	-	27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28	16	집산도로	대3-2 마곡동 775-3	중1-32 마곡동 794-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76	-	-	-	37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29	16	국지도로	중2-28 마곡동796-8	중3-36 마곡동 797-17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3	-	-	-	53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30	16	국지도로	중1-16 마곡동789-10	중2-28 마곡동 796-8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85	-	-	-	8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31	16	국지도로	중1-16 마곡동789-10	중2-32 마곡동788-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66	-	-	-	26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32	18	집산도로	강서로 마곡동727-1242	대3-2 마곡동775-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81	-	-	-	481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33	16	국지도로	양천길 마곡동727-202	중2-32 마곡동788-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705	-	-	-	70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34	18	집산도로	중2-2 마곡동736-2	중3-47 마곡동734-10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91	91	-	-	-	-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중	2	35	18(3)	집산도로	발산택지개발지구 마곡동728-356	중2-15 마곡동799-2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26	226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 )사업 구역내
기정	중	2	36	18(3)	집산도로	중2-15 마곡동728-351	대3-1 마곡동728-67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71	-	-	-	-	-	271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 )사업 구역내
기정	중	2	37	15	집산도로	대2-41 마곡동55-3	열공급설비 마곡동56-2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77	-	-	-	-	-	-	-	-	77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근린공원1 중복결정 구역내 선형변경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중	2	38	16~22 (2~18)	국지도로	가양동259-21	마곡동406-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786.2 (563.2)	-	-	-	-	-	-	-	-	786.2 (563.2)	서고제2019-337호 (2019.11.21.)	( ) 사업구역내 유수지1 중복결정
기정	중	3	1	12	국지도로	중1-11 마곡동742-4	방화뉴타운 마곡동730-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0	30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3	2	13	집산도로	중2-16 마곡동808-2	소2-2 마곡동808-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16	-	-	-	116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3	4	12	국지도로	중2-16 마곡동808-2	소2-2 마곡동808-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30	-	-	-	130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3	5	14	집산도로	대3-1 마곡동728-68	마곡동728-6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67	-	-	-	-	-	67	-	-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중	3	10	12	국지도로	대1-1 마곡동761-5	중1-1 마곡동54-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38	-	-	-	238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1	12	국지도로	대1-1 마곡동761-5	중3-14 마곡동764-1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94	-	-	-	194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2	12	국지도로	대2-2 마곡동367-3	중3-10 마곡동754-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60	-	-	-	560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3	12	국지도로	중3-17 마곡동762-9	중3-11 마곡동761-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00	-	-	-	400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4	12	국지도로	대1-1 마곡동761-5	대2-41 마곡동52-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769	-	-	-	769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5	12	국지도로	중1-1 마곡동754-6	중3-12 마곡동756-10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95	-	-	-	9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6	12	국지도로	대1-1 마곡동761-5	중3-12 마곡동756-10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32	-	-	-	132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중	3	17	12	국지도로	대1-1 마곡동761-5	중3-14 마곡동764-1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95	-	-	-	19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8	12	국지도로	대1-1 마곡동 761-5	중1-8 마곡동 767-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42	-	-	-	-	242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지하공공보도시설 2 포함
기정	중	3	19	12	국지도로	대3-2 마곡동775-3	중2-33 마곡동775-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66	-	-	-	16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0	12	국지도로	중2-33 마곡동775-5	중2-32 마곡동788-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679	-	-	-	679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1	12	국지도로	중3-20 마곡동776-9	중3-23 마곡동777-7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55	-	-	-	15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2	12	국지도로	대3-2 마곡동775-3	중2-33 마곡동775-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94	-	-	-	194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3	12	국지도로	중2-33 마곡동775-5	중3-20 마곡동776-9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34	-	-	-	234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4	12	국지도로	중3-28 마곡동781-15	중2-33 마곡동775-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13	-	-	-	213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5	12	국지도로	중3-28 마곡동781-15	중3-23 마곡동777-7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89	-	-	-	189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6	12	국지도로	동측구역계 마곡동 727-30	중3-20 마곡동776-9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5	-	-	-	4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7	12	국지도로	대3-2 마곡동775-3	중2-33 마곡동775-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69	-	-	-	169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8	12	국지도로	중2-33 마곡동775-5	중3-20 마곡동776-9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65	-	-	-	26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9	12	국지도로	중2-32 마곡동788-5	중3-28 마곡동781-1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80	-	-	-	180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중	3	30	12	국지도로	중2-32 마곡동788-5	중3-28 마곡동781-1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80	-	-	-	180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1	12	국지도로	중1-16 마곡동789-10	중2-32 마곡동788-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66	-	-	-	266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2	12	국지도로	중1-16 마곡동789-10	중2-32 마곡동788-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65	-	-	-	26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3	12	국지도로	중1-16 마곡동789-10	중2-32 마곡동788-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65	-	-	-	26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4	12	국지도로	중1-16 마곡동789-10	중2-28 마곡동796-8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02	-	-	-	102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5	12	국지도로	대3-2 마곡동775-3	중2-26 마곡동771-6	일반도보	마곡구역내	273	-	-	-	273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6	12	국지도로	대3-2 마곡동775-3	소3-2 마곡동797-18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65	-	-	-	36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7	12	국지도로	발산택지지구 마곡동728-245	중1-18 마곡동798-2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34	-	-	-	234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8	12	국지도로	발산택지지구 마곡동728-250	중2-15 마곡동799-2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37	-	-	-	237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9	12	국지도로	대3-1 마곡동800-23	중2-15 마곡동799-2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74	-	-	-	274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40	12	국지도로	대3-1 마곡동800-23	중2-16 마곡동808-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68	-	-	-	168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41	12	국지도로	중2-15 마곡동799-23	중3-42 마곡동803-8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5	-	-	-	45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42	12	국지도로	중2-21 마곡동800-22	남측구역계 마곡동728-35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59	-	-	-	259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중	3	43	12	국지도로	대3-1 마곡동800-23	중3-42 마곡동803-8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18	-	-	-	218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44	12	국지도로	대3-1 마곡동800-23	중2-16 마곡동808-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70	-	-	-	170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45	12	집산도로	중2-2 마곡동731-7	북측구역계 마곡동731-27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58	-	258	-	-	-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중	3	46	12	집산도로	중2-2 마곡동731-14	동측구역계 마곡동731-23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45	-	245	-	-	-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중	3	47	12	집산도로	중2-34 마곡동734-7	중3-46 마곡동731-245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1	51	-	-	-	-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소	1	1	10	국지도로	양천길 마곡동222-30	마곡동222-20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7	-	-	27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1	2	10	국지도로	중1-1 마곡동317	양천길 마곡동222-4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22	-	-	322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1	6	10	국지도로	중1-18 마곡동749-11	중1-17 마곡동730-547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37	137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1	7	10	국지도로	중1-7 마곡동743-9	중2-5 마곡동739-7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88	188	-	-	-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소	1	8	10	국지도로	대2-2 마곡동731-48	마곡동731-444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2	52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1	9	10	국지도로	중1-7 마곡동743-9	공공청사6-3 마곡동730-260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1	51	-	-	-	-	-	-	-	-	서고제2017-161호 (2017.05.04)	
기정	소	2	2	8 (5)	국지도로	광3-16 마곡동728-6	마곡동728-29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14	-	-	-	414	-	-	-	-	-	-	( )사업 구역내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소	2	21	8	국지도로	중1-1 마곡동322-1	소1-2 마곡동325-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60	-	-	-	-	-	160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폐지	소	2	21	8	국지도로	중1-1 마곡동322-1	소1-2 마곡동325-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	-	-	-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소	2	22	8	국지도로	중1-1 마곡동319-1	소1-2 마곡동323-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27	-	-	-	-	-	127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폐지	소	2	22	8	국지도로	중1-1 마곡동319-1	소1-2 마곡동323-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	-	-	-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소	2	23	8~10	국지도로	소1-2 마곡동 325-8	소1-1 마곡동 222-1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89	-	-	89	-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소	2	25	9	국지도로	소로1-8 마곡동 737-22	소공원1 마곡동 737-1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74	74	-	-	-	-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소	2	26	9	국지도로	편익4 마곡동 737	소로1-8 마곡동 737-2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7	57	-	-	-	-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소	2	27	8	국지도로	마곡동 737-22	마곡동360-1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2	32	-	-	-	-	-	-	-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소	3	2	6.5	국지도로	광3-16 마곡동 727-1277	중로1-32 마곡동 794-3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94	-	-	-	94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3	4	4	국지도로	소1-1 마곡동 222-12	마곡동 221-18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2	-	-	32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3	5	6	국지도로	소2-23 마곡동 325-9	마곡동 327-96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6	-	-	2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소	3	7	6	국지도로	편익10 마곡동 738-2	편익10 마곡동 738-2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3	-	23	-	-	-	-	-	-	-	서고제2014-183호 (2014.05.08)	
기정	중	3	1	12	특수도로	동측구역계 마곡동 727-1229	중3-20 마곡동 727-1229	보행자도로	마곡구역내	46	-	-	-	4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중	3	6	12	특수도로	중3-11 마곡동761-4	근린공원1 마곡동812	보행자도로	마곡구역내	35	-	-	-	-	-	35	-	-	-	서고제2020-593호 (2020.12.24)	
기정	소	3	1	5	특수도로	대2-2 마곡동 731-123	소1-7 마곡동 739-6	보행자도로	마곡구역내	30	30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3	2	5	특수도로	중2-34 마곡동 734-7	경관녹지10 마곡동 731-245	보행자도로	마곡구역내	88	88	-	-	-	-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소	3	3	1.5~2.3 (1.5)	특수도로	중2-4 마곡동 738-6	한솔솔파크APT 마곡동 341-9	보행자도로	마곡구역내	62 (37)	62 (37)	-	-	-	-	-	-	-	-	서고제2017-161호 (2017.05.04)	
기정	소	3	4	5	특수도로	중2-38 마곡동811-5	마곡동811-5	보행자도로	마곡구역내	114	-	-		-	-	-	-	-	114	서고제2019-337호 (2019.11.21.)	유수지1 중복결정

(다)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21	-	· 소로 2-21 폐지 - L = 160m, B = 8m	· 도로 -> 공동주택 용지 변경에 따른 기존 도로 폐지
소로2-22	-	· 소로 2-22 폐지 - L = 127m, B = 8m	· 도로 -> 공동주택 용지 변경에 따른 기존 도로 폐지 · 공동주택용지(Ⓐ) 및 연결녹지40(Ⓑ)로 변경 · Ⓐ(103m):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변경 · Ⓑ(24m): 일부도로(Ⓐ)의 공동주택용지 편입으로 인해 도로 기능 상실. 기존 녹지의 연결성 증진을 위한 변경

(2) 도로(지하도로)

(가) 도로(지하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3)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4) 철도

(가) 철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철도 입체적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공간시설

(1) 광장(변경없음)

(2) 공원

(가) 공원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총계	-	-	586,836.4 (35,884)	38,551.7	17,280.6	2,655.4	14,701.0	8,296.8	-	384,291.9	-	121,059.0 (35,884)	-	
기정	계	근린공원	-	547,226.1 (35,884)	24,594.6	17,280.6	-	-	-	-	384,291.9	-	121,059.0 (35,884)	-	
기정	1	근린공원	마곡동 812 일원	505,350.9	-	-	-	-	-	-	384,291.9	-	121,059.0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열공급설비 진입도로, 유수지2, 지하공공보도시설1 중복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2	근린공원	마곡동 743-3	17,280.6	-	17,280.6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가스정압기 점용
기정	3	근린공원	마곡동 749-4	24,594.6	24,594.6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전소 점용
기정	4	근린공원	마곡동 811-5일원	(35,884)	-	-	-	-	-	-	-	-	(35,884)	서고제2019-377호 (2019.11.21.)	유수지 내 중복결정
기정	계	어린이공원/소공원	-	16,612.5	13,957.1	-	2,655.4	-	-	-	-	-	-	-	
기정	1	어린이공원	마곡동 750-1	2,000.0	2,000.0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2	어린이공원	마곡동 751-1	2,066.0	2,066.0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	어린이공원	마곡동 738-1	1,492.3	1,492.3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4	어린이공원	마곡동 741-1	2,015.3	2,015.3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5	어린이공원	마곡동 742-3	511.0	511.0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6	어린이공원	마곡동 743-6	2,852.6	2,852.6	-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7	어린이공원	마곡동 730-60 일원	2,658.0	-	-	2,658.0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7	어린이공원	마곡동 730-60 일원	2,655.4	-	-	2,655.4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8	어린이공원	마곡동 748-2	1,934.7	1,934.7	-		-	-	-	-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1	소공원	마곡동 737-16	1,085.2	1,085.2	-	-	-	-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계	문화공원	-	20,379.3	-	-	-	12,082.5	8,296.8	-	-	-	-	-	
기정	1	문화공원	마곡동 800-7	3,836.6	-	-	-	3,836.6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	문화공원	마곡동 772	8,296.8	-	-	-	-	8,296.8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3	문화공원	마곡동 790-6	2,574.7	-	-	-	2,574.7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4	문화공원	마곡동 756-4	3,089.9	-	-	-	3,089.9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5	문화공원	마곡동 778-4	2,581.3	-	-	-	2,581.3	-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계	가로공원	-	2,618.5	-	-	-	2,618.5	-	-	-	-	-	-	
기정	1	가로공원	마곡동 797-5	2,618.5	-	-	-	2,618.5	-	-	-	-	-	서고제2019-332호 (2019.10.4)	

(나)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7	어린이공원	· 측량결과 반영 - A = 2,658.0㎡ → 2,655.4㎡ (감 2.6㎡)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3) 녹지

(가) 녹지 결정 조서(변경)

(나)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39	연결녹지	· 측량결과 반영 - A = 1,189.0㎡ → 1,188.8㎡ (감 0.2㎡)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40	연결녹지	· 연결녹지 연장 및 측량결과 반영 - A = 1,307.0㎡ → 4,400.6㎡ (증 3,094.1㎡)	· 연결녹지 연장 및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2	경관녹지	· 측량결과 반영 - A = 369.0㎡ → 369.9㎡ (증 0.9㎡)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다) 연결녹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열공급설비

(가) 열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2) 전기공급설비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3) 공동구

(가) 공동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없음)

(2) 학교

(가) 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3) 사회복지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4) 문화시설

(가) 문화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1) 방수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2) 유수지

(가) 유수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바) 보건위생시설

(1) 종합의료시설

(가) 종합의료시설 결정 조서 (변경없음)

사)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간선하수도)

(가) 하수도(간선하수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2)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5)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마곡 도시개발구역내 획지계획은 필지계획으로 대체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1지구	1공구	A1		12,986.9	A1	12,986.9	
		A2		23,168.1	A2	23,168.1	
		A3		20,524.3	A3	20,524.3	
		A4		25,011.9	A4	25,011.9	
		A5		27,713.7	A5	27,713.7	
		A6		75,036.4	A6	75,036.4	
		AC7		56,329.7	AC7	56,329.7	
		A8		28,664.5	A8	28,664.5	
		AC10-1		23,213.0	AC10-1	23,213.0	
		AC11		14,864.1	AC11	14,864.1	
		AC12		15,261.8	AC12	15,261.8	
		A13		58,829.3	A13	58,829.3	
		A14		62,516.5	A14	62,516.5	
		A15		54,721.0	A15	54,721.0	
		계		-	-	498,841.2	
	3공구	AC10-2		23,057.0	AC10-2	23,057.0	
		AC9		69,122.0	AC9	69,122.0	
		A16		24,899.4	-	24,899.4	신설
		계	기정	92,179.0		92,179.0	
			변경	117,078.40		117,078.40	
2지구		-		-	-	-	
3지구		-		-	-	-	

(3) 상업용지(변경없음)

(4) 업무용지(변경없음)

(5)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6)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7)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8) 공공청사(변경없음)

(9) 학교(변경없음)

(10)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11) 주차장(변경없음)

(12) 열공급설비(변경없음)

(13)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14) 방수설비(변경없음)

(15) 종교시설(변경없음)

(1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17) 편익시설(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지		비고
					위치	면적(㎡)	
1지구	1공구	S4		1515.1	S4	1515.1	
		계		1515.1	-	1515.1	
	2공구	S3		6,473	S3	6,473	
		S9		743.6	S9	743.6	
		S10		302.9	S10	302.9	
		S11		800	S11	800.0	
		S12		743.9	S12	743.9	
		계		9,063.4	-	9,063.4	
	3공구	S2		6,709	S2	6,709.0	
		S6		5,277	S6	5,277.0	
		계		11,986	-	11,986.0	
2지구	1공구	-		-	-	-	
	2공구	-		-	-	-	
	3공구	S7	기정	7,873	S7-1	2,689.0	
					S7-2	2,592.0	
					S7-3	2,592.0	
			폐지	-	-	-	
		S8	기정	4,872	S8-1	2,427.0	
					S8-2	2,445.0	
			폐지	-	-	-	
		S13		949	S13	949.0	
		계	기정	13,694	-	13,694	
			변경	949	-	949.0	
3지구	1공구	-		-	-	-	
	2공구	-		-	-	-	

(18) 택시차고지(폐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지		비고
					위치	면적(㎡)	
1지구		-		-	-	-	
2지구	1공구	-		-	-	-	
	2공구	-		-	-	-	
	3공구	T1	기정	5,021.0	T1-1	1,386.0	
					T1-2	1,307.0	
					T1-3	1,449.0	
					T1-4	879.0	
			폐지	-	-	-	
		T2	기정	4,984.0	T2-1	1,527.0	
					T2-2	1,400.0	
					T2-3	2,057.0	
			폐지	-	-	-	
		계	기정	10,005.0	-	10,005.0	
			폐지	-	-	-	
3지구		-		-	-	-	

(19) 보육시설(변경없음)

(20) 문화시설(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	A1~A6, A8, A13~A15, A16〈신설〉	1지구	1공구	A1~A6, A8, A13~A15	
			2공구	-	
			3공구	A16	신설
		2지구	1공구	-	
			2공구	-	
			3공구	-	
		3지구	1공구	-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2공구	-	
		허용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와 동법 영 제6조, 제7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공항시설보호지구(해발57.86m) 미만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별표1>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한다.	
		배치	•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중정형아파트 권장구간 : A1, A2, A3, A6, A8, A13~A15 • 통경 구간 - 권장 - A6, A13~A15 : 10m •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 A1, A3, A5, A6, A13 : 20m - A14~A15 : 10m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광3-19, 대2-2, 대2-41, 중2-8, 중2-17, 중2-19, 중2-20) : 5m - 도로변(광3-19, 중1-1, 중1-7, 중1-11, 중1-17, 중1-18, 중2-2, 중2-3, 중2-4, 중2-5, 중2-15, 중2-34, 중 1-1, 소 1-2) : 3m - 연결녹지변(연결녹지4, 발산지구 완충녹지 : 3m, 연결녹지37: 5m) - 공원변(근린공원2, 어린이공원4, 어린이공원6) : 3m - 학교변((학교2) : 5m, (학교3, 학교4) : 3m) • 외곽녹지 - A2 : 5m이내 - A4, A5, A8 : 5m - A13 : 5~10m • 공공조경 - A1 : 5m이내 - A13~A15 : 5m	
		형태	• 융통형구조를 권장한다. •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 을 따른다.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 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C	AC7, AC9~ AC12	1지구	1공구	AC7, AC10-1, AC11, AC12	
			2공구	-	
			3공구	AC9, AC10-2	
		2지구	1공구	-	
			2공구	-	
		3지구	1공구	-	
			2공구	-	
		허용용도		•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상점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주) 주상복합용지에서 건축물의 비주거용도(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계획한다. ※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2013.11.14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고제2013-379호)이전 협의완료 혹은 승인, 인가(변경승인, 인가 등 포함)된 건축물은 기정지침을 적용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공항시설보호지구(해발57.86m) 미만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별표1>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한다.	
		배치		• 주거와 주거외 용도를 복합 건축하는 경우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3층(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까지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탑상형 권장구간 : AC9, AC10-1, AC10-2, AC11, AC12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광3-19, 광3-16, 대2-2, 중2-17, 중2-18) : 5m - 도로변(중1-7, 중1-8, 중1-11, 중1-17, 중1-18) : 3m - 연결녹지변, 공원변(연결녹지2, 연결녹지4, 근린공원2) : 3m • 공공보행통로 : - AC7 : 10m - AC10-1, AC10-2 : 5m - AC9 : 15m • 공개공지 : AC9	
		형태 및 외관	• 융통형구조를 권장한다. •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 을 따른다.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 을 따른다.	

주)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성인용품판매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용도 불허
주)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 및 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 (단, 상대정화구역은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 별표 1>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별 규모·가구수·건폐율·용적률·세대수(변경)

구분	도면표시	면 적(㎡)	건설호수(호)		용적률(%)	건폐율(%)	비고
	합계	615,919.60	12,429		-	-	-
기정	A1	12,986.9	소 계	237	230	50	1단지
			60㎡ 이하	130			
			60㎡ 초과 ~85㎡ 이하	107			
			85㎡ 초과	-			
기정	A2	23,168.1	소 계	408	230	50	2단지
			60㎡ 이하	183			
			60㎡ 초과 ~85㎡ 이하	129			
			85㎡ 초과	96			
기정	A3	20,524.3	소 계	315	230	50	3단지
			60㎡ 이하	153			
			60㎡ 초과 ~85㎡ 이하	72			
			85㎡ 초과	90			
기정	A4	25,011.9	소 계	420	230	50	4단지
			60㎡ 이하	258			
			60㎡ 초과 ~85㎡ 이하	78			
			85㎡ 초과	84			
기정	A5	27,713.7	소 계	439	230	50	5단지
			60㎡ 이하	103			
			60㎡ 초과 ~85㎡ 이하	137			
			85㎡ 초과	199			
기정	A6	75,036.4	소 계	1,466	230	50	6단지
			60㎡ 이하	675			
			60㎡ 초과 ~85㎡ 이하	588			
			85㎡ 초과	203			
기정	AC7	56,329.7	소 계	1,004	300	60	7단지
			60㎡ 이하	191			
			60㎡ 초과 ~85㎡ 이하	325			
			85㎡ 초과	488			
기정	A8	28,664.5	소 계	531	230	50	8단지
			60㎡ 이하	345			
			60㎡ 초과 ~85㎡ 이하	186			
			85㎡ 초과	-			
기정	AC9	69,122.0	소 계	1,529	300	60	9단지
			60㎡ 이하	1,000			
			60㎡ 초과 ~85㎡ 이하	529			
			85㎡ 초과	-			
기정	AC10-1	23,213.0	소 계	550	300	60	10단지
			60㎡ 이하	492			
			60㎡ 초과 ~85㎡ 이하	58			
			85㎡ 초과	-			

구분	도면표시	면 적(㎡)	건설호수(호)		용적률(%)	건폐율(%)	비고
기정	AC10-2	23,057.0	소 계	577	300	60	10-2 단지
			60㎡ 이하	538			
			60㎡ 초과 ~85㎡ 이하	39			
			85㎡ 초과	-			
기정	AC11	14,864.1	소 계	347	300	60	11단지
			60㎡ 이하	295			
			60㎡ 초과 ~85㎡ 이하	52			
			85㎡ 초과	-			
기정	AC12	15,261.8	소 계	363	300	60	12단지
			60㎡ 이하	319			
			60㎡ 초과 ~85㎡ 이하	44			
			85㎡ 초과	-			
기정	A13	58,829.3	소 계	1,194	230	50	13단지
			60㎡ 이하	393			
			60㎡ 초과 ~85㎡ 이하	801			
			85㎡ 초과	-			
기정	A14	62,516.5	소 계	1,270	230	50	14단지
			60㎡ 이하	582			
			60㎡ 초과 ~85㎡ 이하	600			
			85㎡ 초과	88			
기정	A15	54,721.0	소 계	1,171	230	50	15단지
			60㎡ 이하	729			
			60㎡ 초과 ~85㎡ 이하	378			
			85㎡ 초과	64			
신설	A16	24,899.4	소 계	608	230	50	16단지
			60㎡ 이하	483			
			60㎡ 초과 ~85㎡ 이하	125			
			85㎡ 초과	0			

주)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3)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4) 상업용지(변경없음)

(5) 업무용지(변경없음)

(6)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7) 도시계획시설 용지

(가)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나) 공공청사(변경없음)

(다) 학교(변경없음)

(라)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마) 주차장(변경없음)

(바) 열공급설비(변경없음)

(사)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아) 방수설비(변경없음)

(자) 문화시설(변경없음)

(8) 기타시설 용지(변경없음)

(가)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나) 편익시설(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S	S2~S4, S6~S13	1지구	1공구	S4		
			2공구	S3, S9, S10~S11, S12		
			3공구	S2, S6		
		2지구	1공구	-		
			2공구	-		
			3공구	S7, S8〈삭제〉, S13		
		3지구	1공구	-		
			2공구	-		
		허용 용도		S2~S4, S6~S13	•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제외) • 판매시설(상점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 의료시설 중 병원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S2~S4, S6~S13	50%이하	
		용적률		S2~S4, S6~S13	250%이하	
		높이		S3, S6	7층이하	
				S4	6층이하	
				S10~S11	4층이하	
				S2, S7, S8〈삭제〉, S9, S12, S13	공항시설보호지구(해발57.86m) 미만	
		배치		• 건축물의 지하층 형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9조"를 따른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광3-19, 대2-41, 대3-2, 중2-17) : 5m - 도로변(대2-2, 중1-1〈삭제〉, 중1-11, 중1-17, 중2-2, 중2-36, 중3-5, 중2-34, 중3-45, 중3-46, 중3-47, 소2-22〈삭제〉, 소2-27, 소1-6) : 3m - 녹지변(연결녹지40, 연결녹지41〈삭제〉, 경관녹지8) : 3m - 인접대지경계(T2, R2, R4, G1, F1, F3, K1) : 3m - 공원변(근린공원1, 3) : 3m - 구역경계 변 : 3m(S3) - 구역경계 변 : 1m(S4)		
		형태 및 외관		•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 •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		

주)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성인용품판매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용도 불허
주)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 및 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 (단, 상대정화구역은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라) 택시차고지(폐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T	T1 T2	1지구	1공구	-	
			2공구	-	
		2지구	1공구	-	
			2공구	-	
			3공구	-	
		3지구	1공구	-	
			2공구	-	
		허용용도		• ~~지동차관련시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차고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2층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대2-41, 중1-1, 소1-2, 소2-21) : 3m~~ ~~- 연결녹지변(연결녹지40) : 3m~~ ~~- 인접대지경계(S7) : 3m~~	
		형태 및 외관		•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 를 따른다.~~ •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 을 따른다.~~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 을 따른다.~~	

(마) 보육시설(변경없음)

(9) 건축심의(자문) 시 자문의견 제시

(가) 해당 심의기관이 건축심의(자문) 단계에서 서울시 서부권사업과로 업무 협의 시 서부권사업과 자문을 거쳐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10)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준수

(가)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 및 건축물 등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외부공간 및 외관 형성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한다.

(11) 에너지사용계획

(가) 국내 최저 에너지소비형 도시, 저탄소 배출의 친환경도시,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을 위하여 에너지 저소비 도시설계로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

지 이용을 극대화하여 계획한다.

(나)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12) 기타사항

· 상기 명기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구단위계획「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Ⅰ(변경없음)

(가)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

(나) 가구 및 필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Ⅱ(변경없음)

(가)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가구 및 필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Ⅲ(변경없음)

(가)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가구 및 필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특별계획구역Ⅳ(변경없음)

(가)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가구 및 필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Ⅴ(변경없음)

(가)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가구 및 필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특별계획구역Ⅵ(변경없음)

(가)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가구 및 필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 승인권자(인가권자)의 협의 등을 통해 세부개발계획을 작성하고,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법정절차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다.

(8) 건축심의(자문) 시 자문의견 제시

(가) 해당 심의기관이 건축심의(자문) 단계에서 서울시 서남권사업과로 업무 협의시 서남권사업과에서 자문을 거쳐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9)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준수

(가)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 및 건축물 등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외부공간 및 외관 형성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한다.

(10) 에너지사용계획

(가) 국내 최저 에너지소비형 도시, 저탄소 배출의 친환경도시,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을 위하여 에너지 저소비 도시설계로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극대화하여 계획한다.

(나)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11) 기타사항

·상기 명기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구단위계획「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및「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자. 무상귀속 및 대체에 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성 총괄 (변경없음)

차.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1)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 공람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 02) 2133-1568)

○ 강서구청 스마트도시과 (☎ 02) 2600-5286)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부 (☎ 02) 3410-7682)

카.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관계 기관(부서)과 사전협의사항 이행} (변경없음)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수도법」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3)「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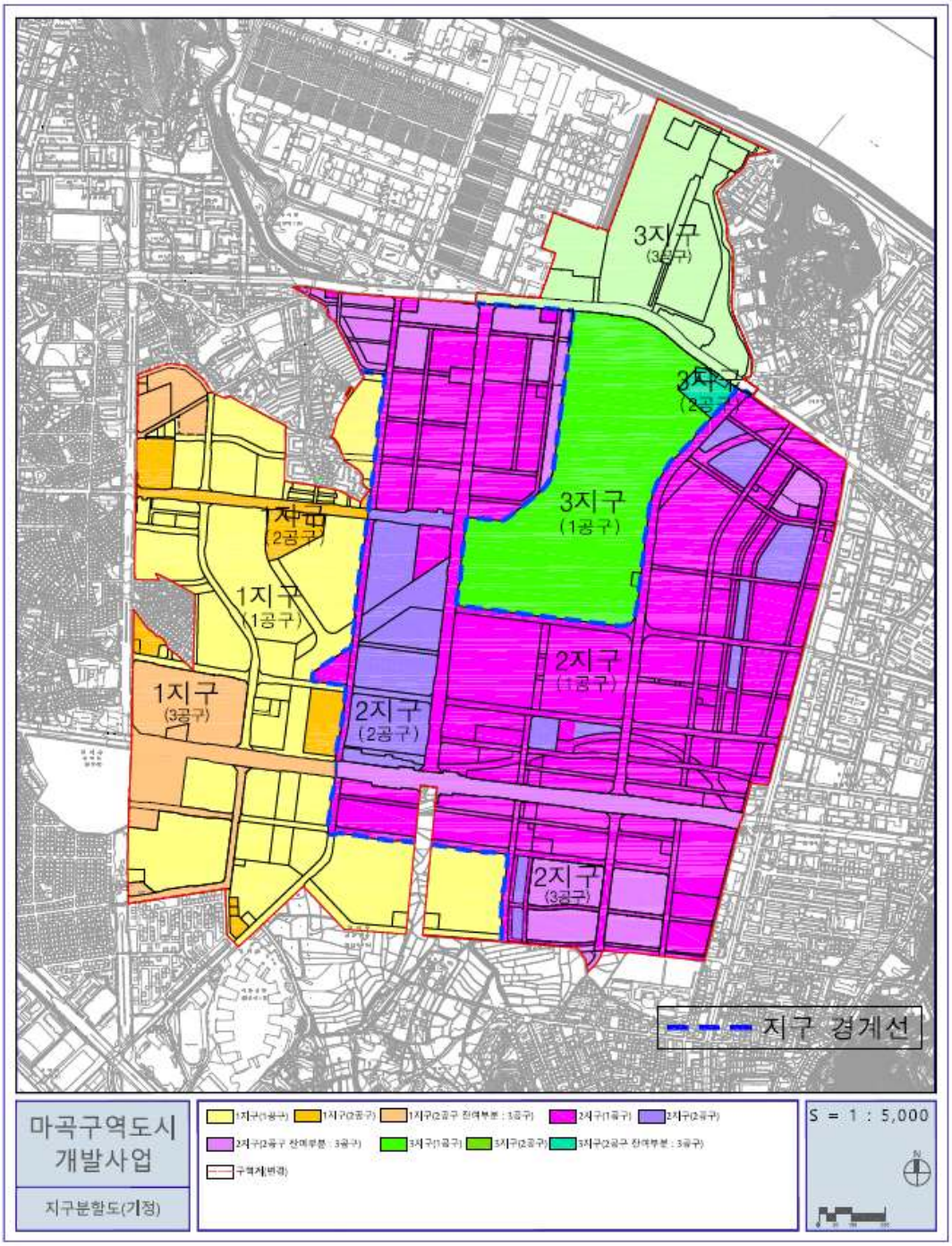
4)「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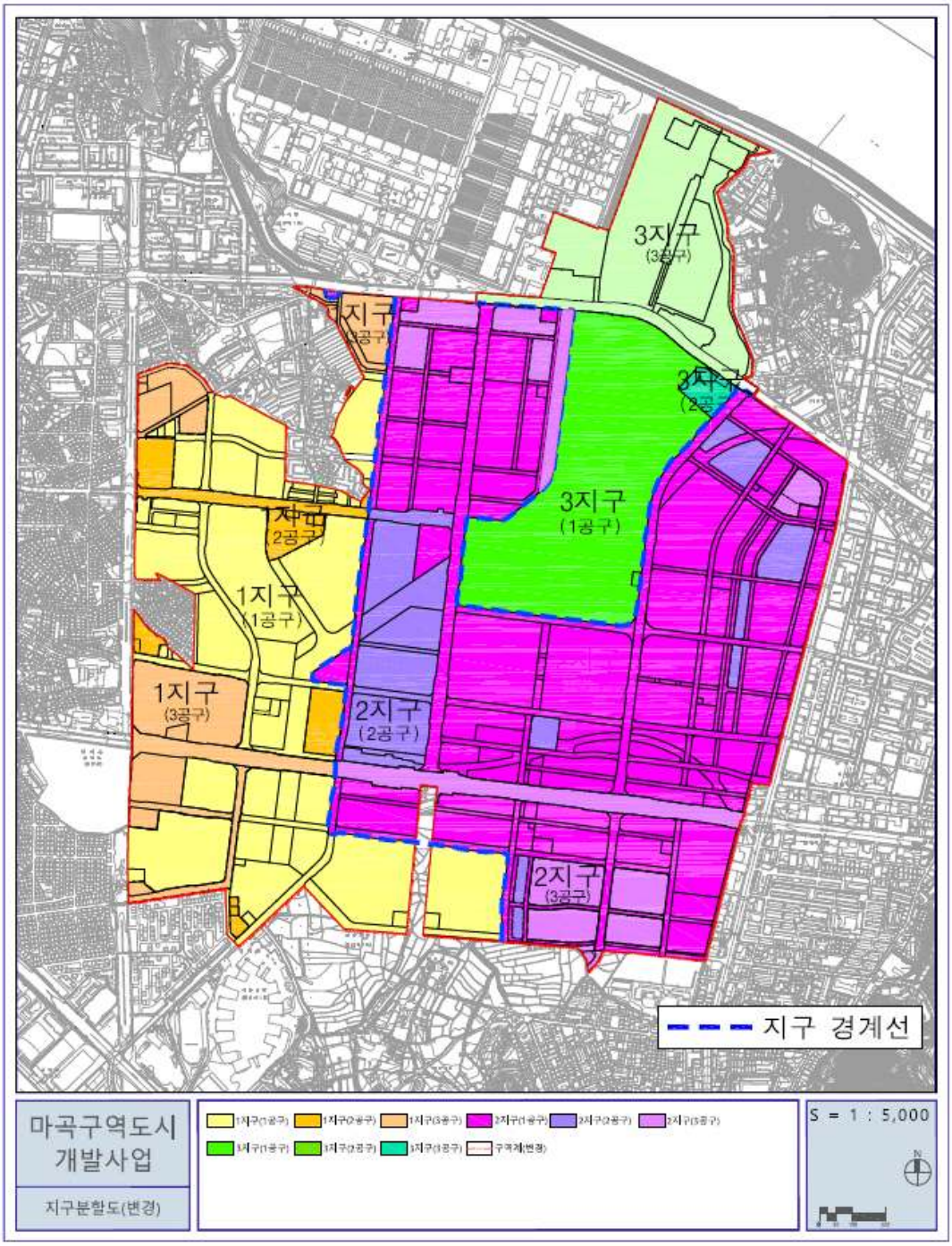
6)「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별첨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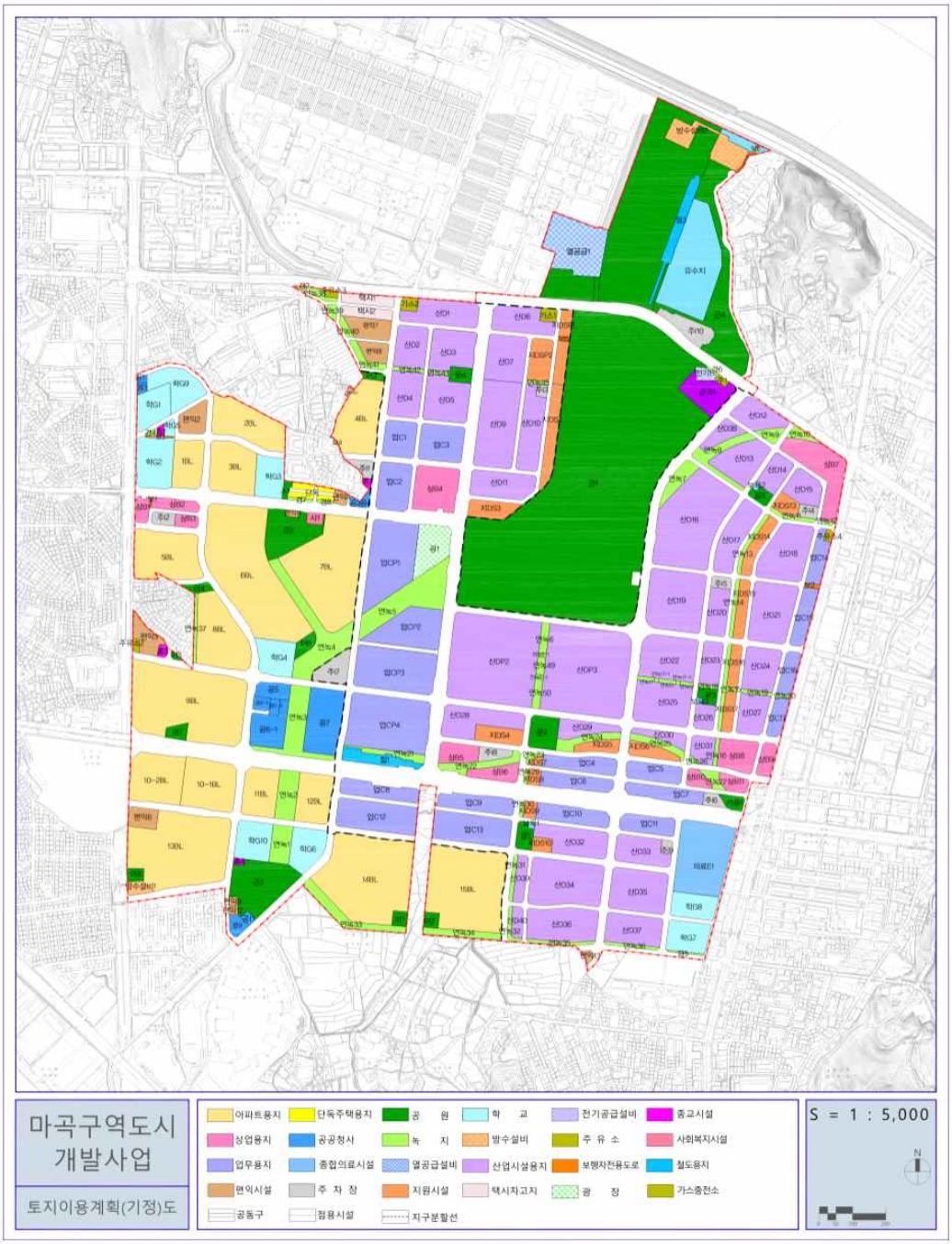
1. 지구분할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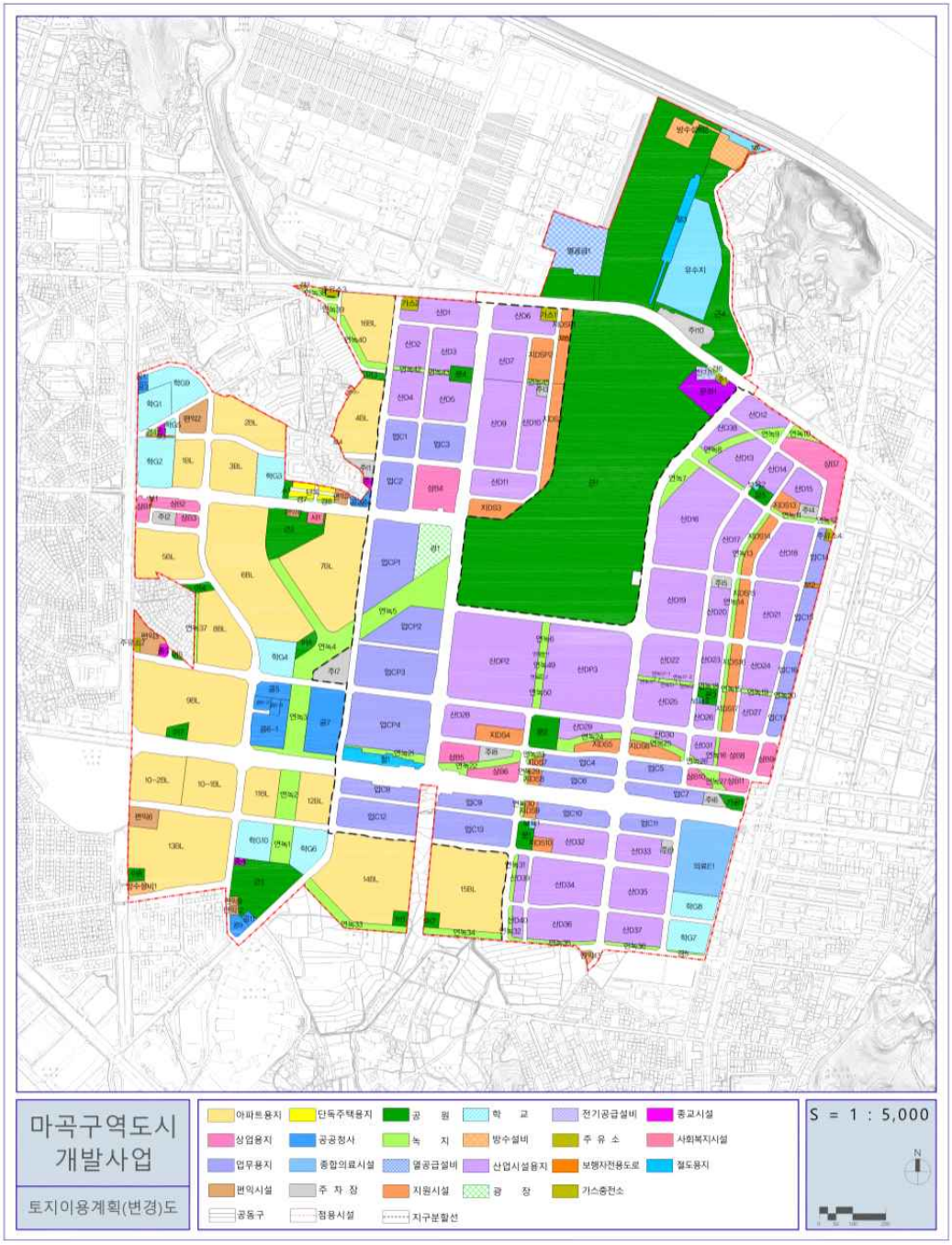
1. 지구분할도 - 변경


3지구
(3공구)
3지구
(2공구)
3지구
(1공구)
1지구
(2공구)
1지구
(1공구)
1지구
(3공구)
2지구
(2공구)
2지구
(3공구)
지구 경계선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지구분할도(변경)
S = 1 :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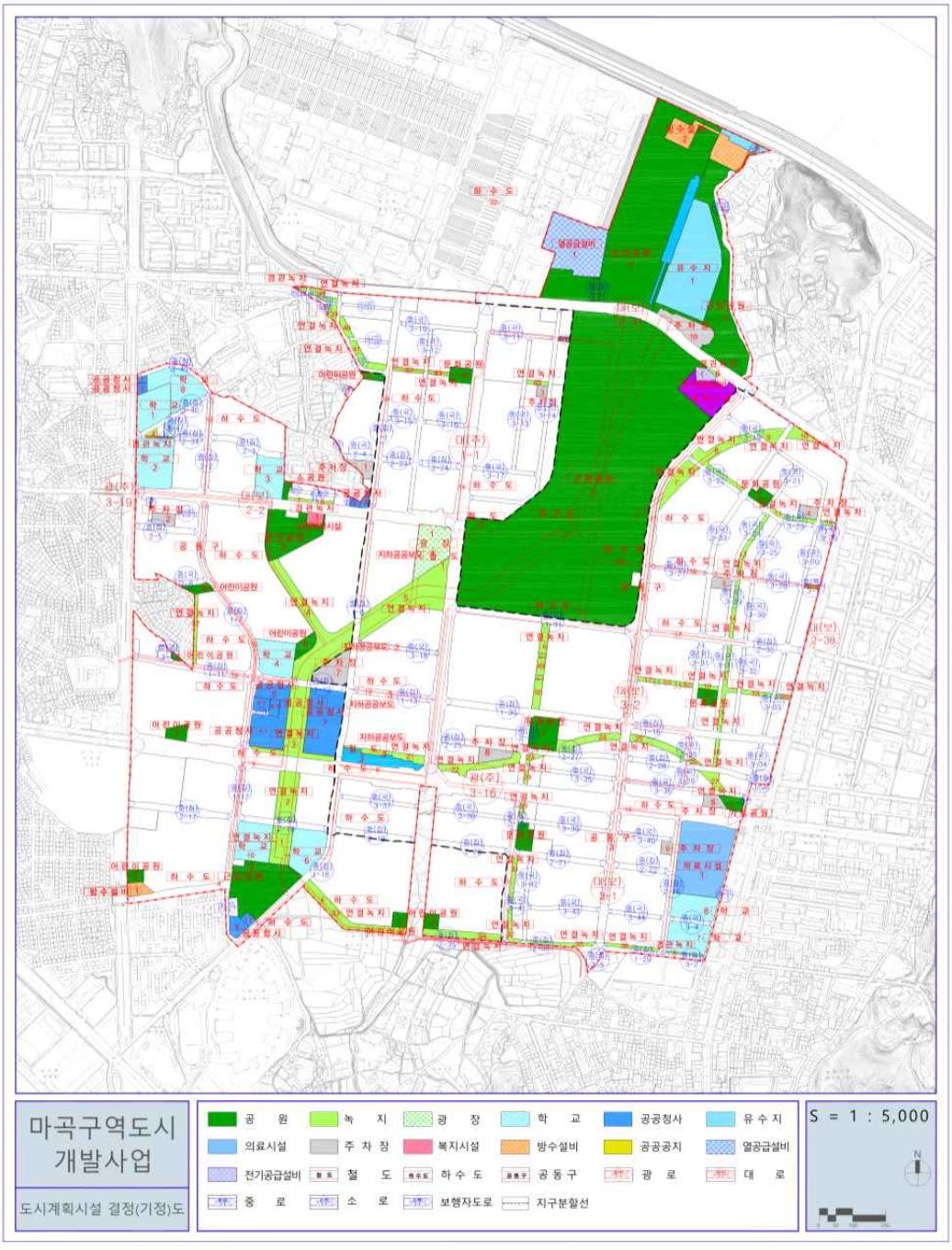
2. 토지이용계획도 – 기정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기정)도
아파트용지
단독주택용지
공 원
학 교
전기공급설비
종교시설
상업용지
공공청사
녹 지
방수설비
주 유 소
사회복지시설
업무용지
종합의료시설
열공급설비
산업시설용지
보행자전용도로
철도용지
편익시설
주 차 장
지원시설
택시자고지
광 장
가스충전소
공동구
점용시설
지구분할선
S = 1 : 5,000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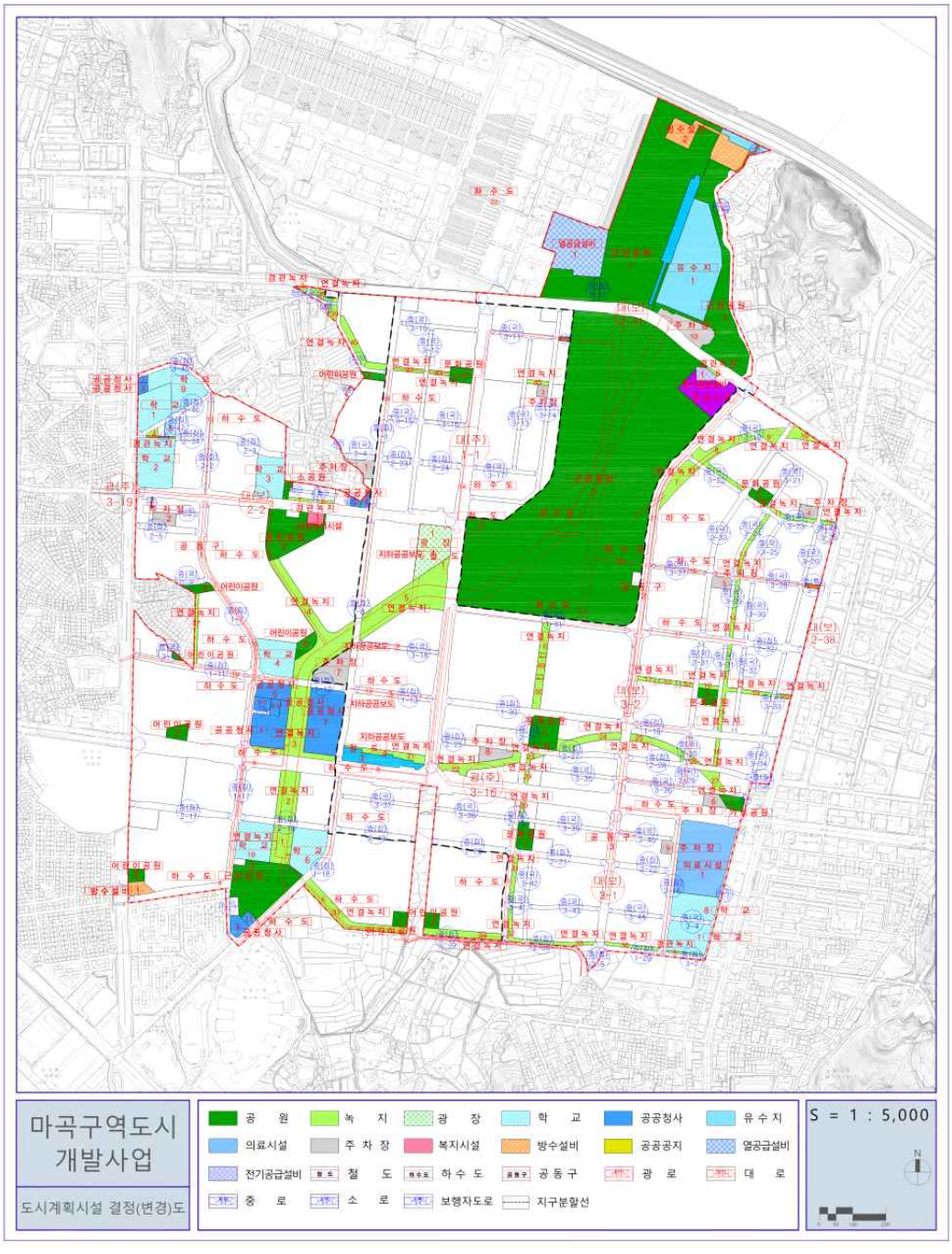
2.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변경)도
아파트용지
단독주택용지
공 원
학 교
전기공급설비
종교시설
상업용지
공공청사
녹 지
방수설비
주 유 소
사회복지시설
업무용지
종합의료시설
열공급설비
산업시설용지
보행자전용도로
철도용지
편익시설
주 차 장
자원시설
광 장
가스충전소
공동구
점용시설
지구분할선
S = 1 : 5,000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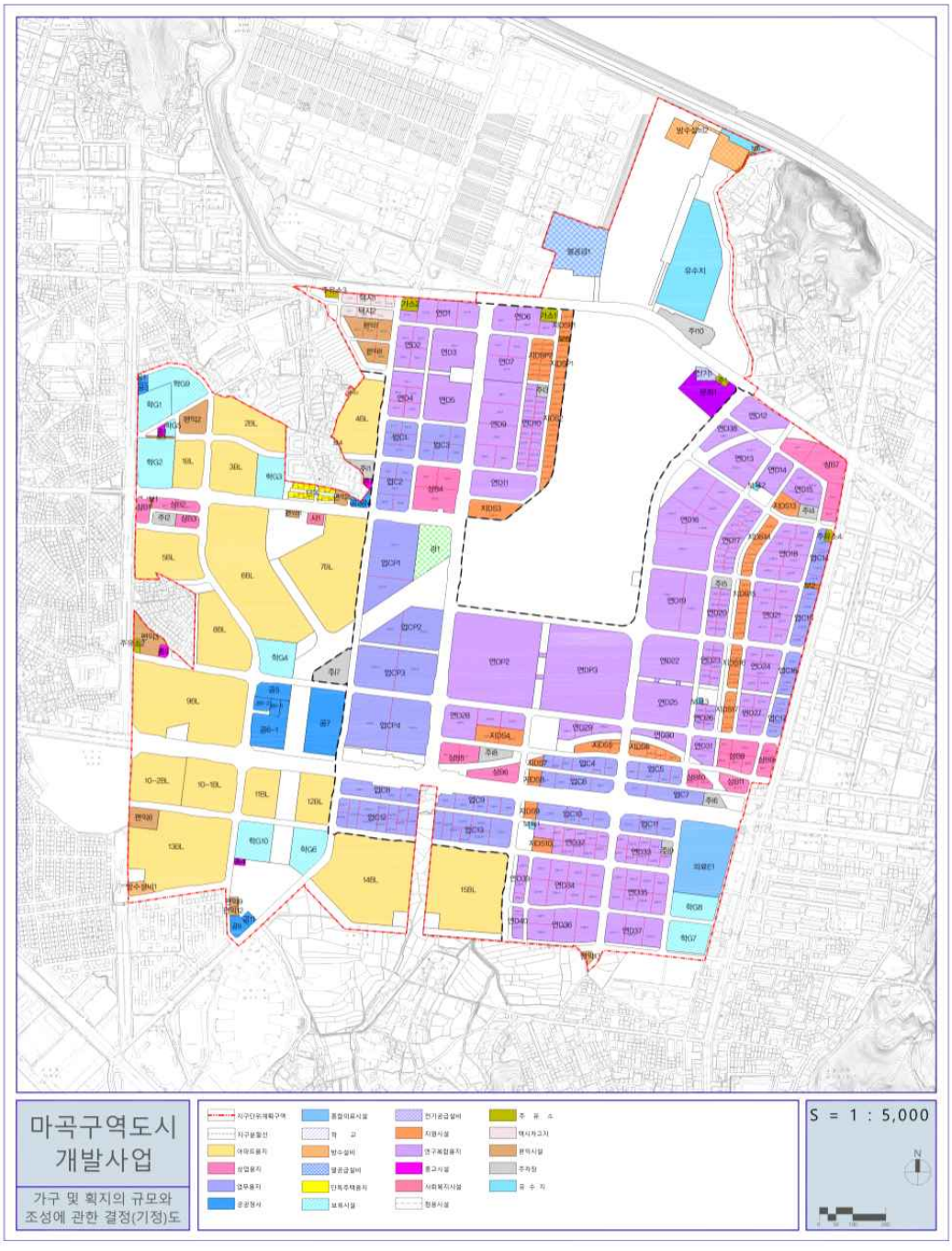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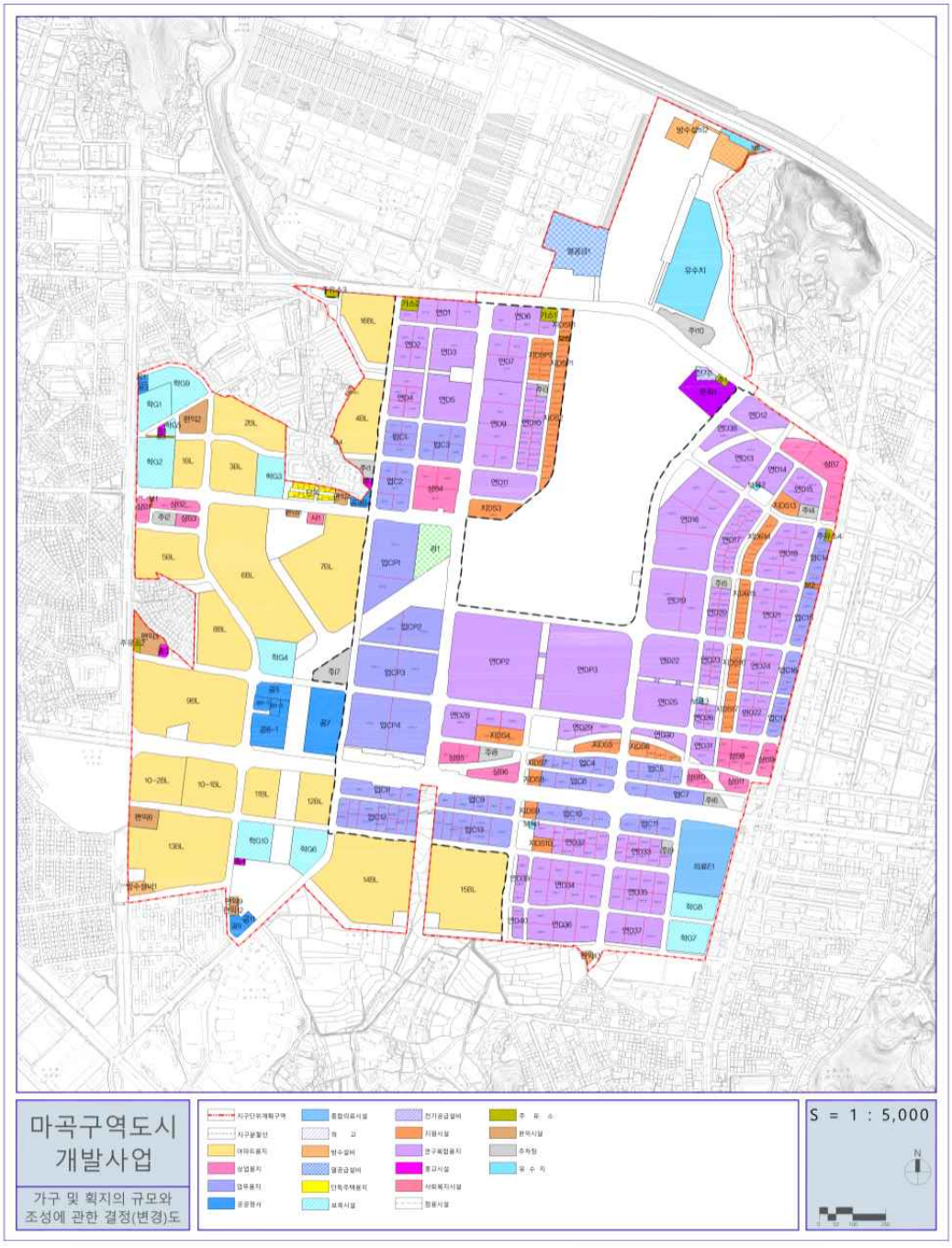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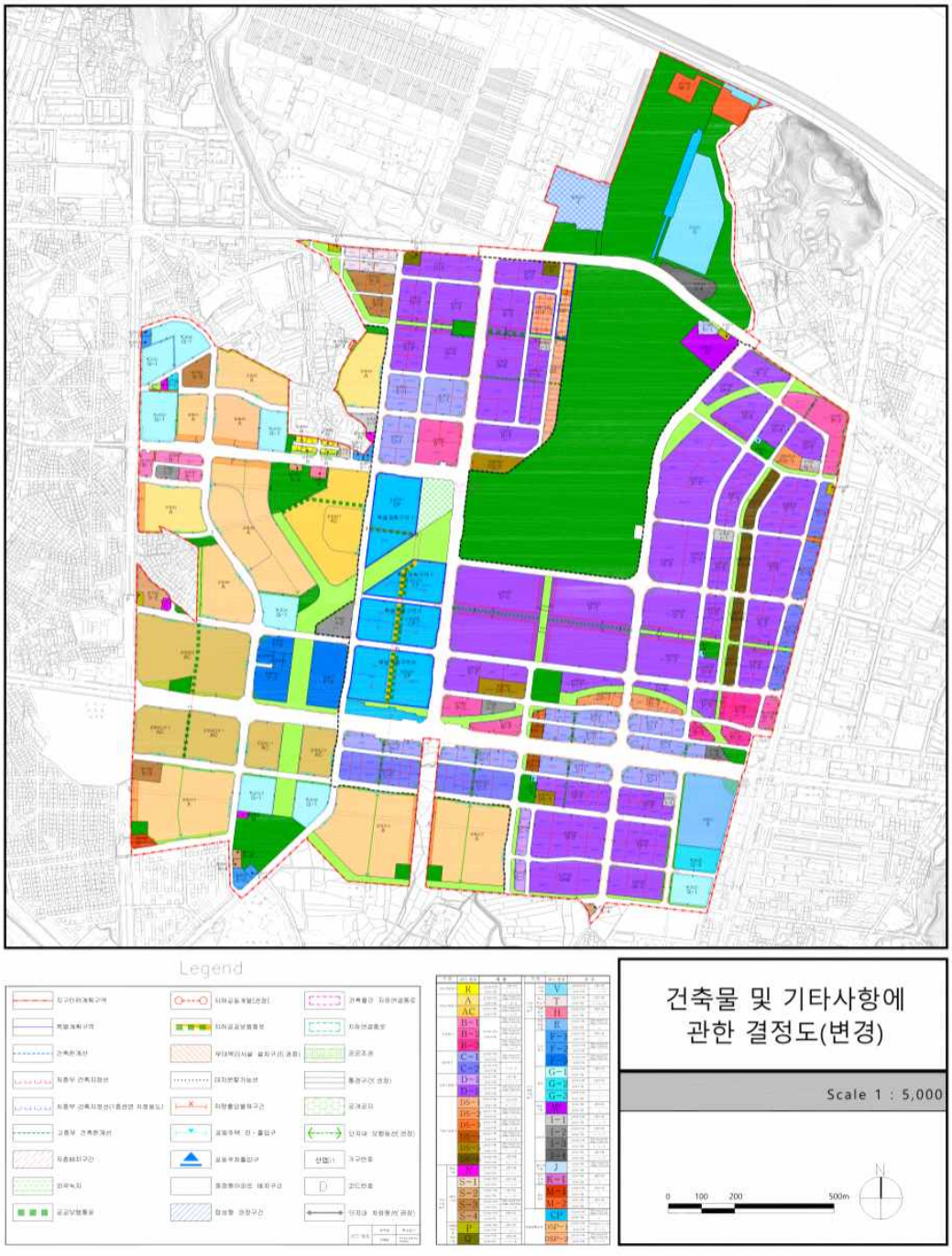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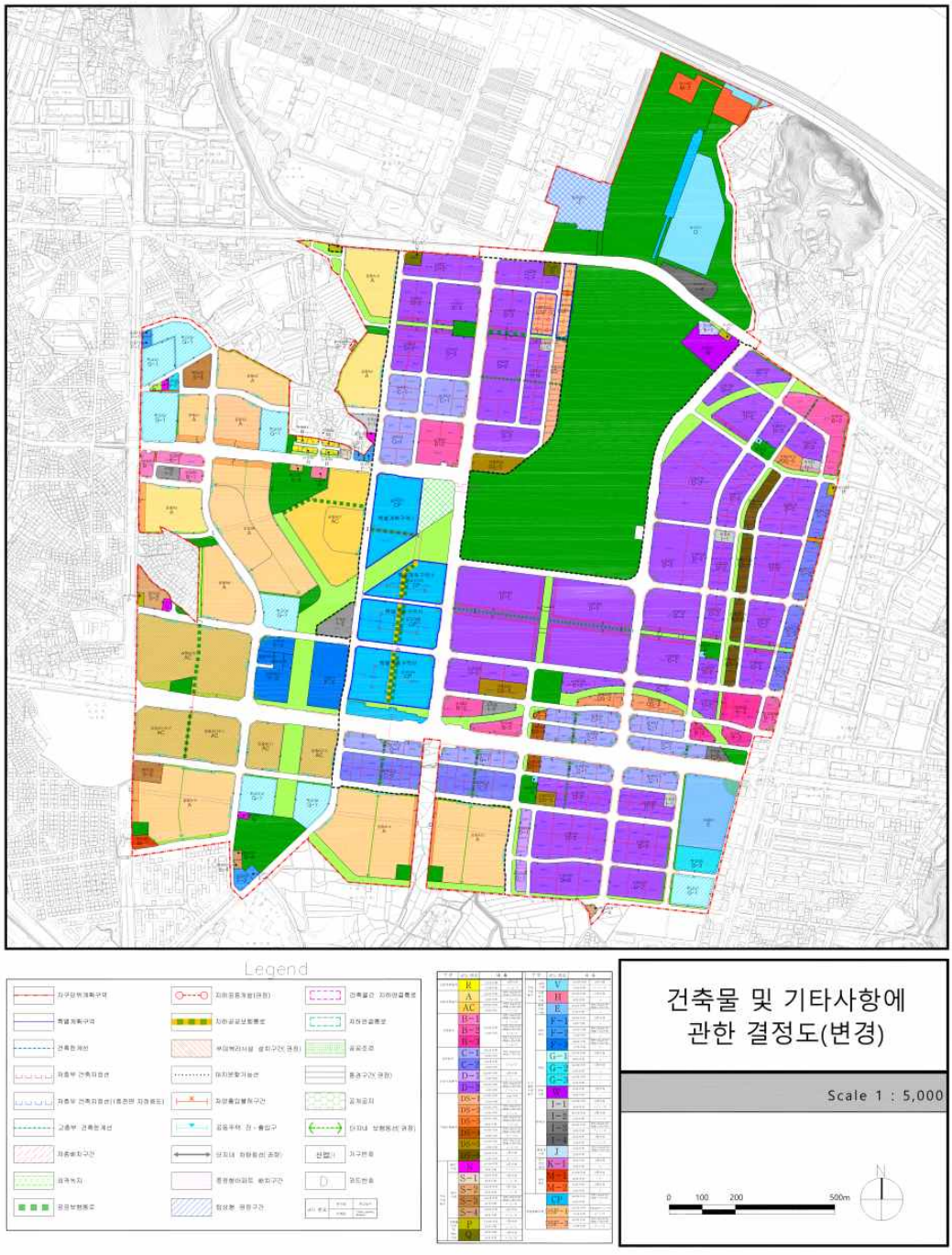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 기정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1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313호(1982.8.12)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42호(2007.12.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일괄 결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34-12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2023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3.7.5)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서울연은초등학교 이전 및 각종학교 설치에 따른 학교시설의 종류 변경과 교내 급식실 및 실습실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의 건축 범위 변경을 통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학 교	초등학교	각종학교	은평구 응암동 334-12 외 2필지	5,463	-	5,463	서고시 제313호 (1982.8.12)	

○ 건축범위 결정(변경)조서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0이하	45이하	120이하	155이하	5층이하	5층이하	면적 5,001㎡
제3종일반주거지역		10이하		10이하		1층이하	면적 462㎡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학교	• 시설의 종류 변경 - 기정 : 초등학교 - 변경 : 각종학교		• 서울연은초등학교가 2013년도에 응암동 242-424로 이전 후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로 설립인가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시설의 종류를 초등학교 → 각종학교로 변경하고자 함.
		• 건축범위 변경		• 학생들의 급식 환경개선 및 부족한 실습실을 증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 범위를 변경하고자 함.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건폐율: 30%→45%이하 용적률: 120%→155%이하 높 이: 5층이하	
		제3종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10%이하 용적률: 10%이하 높 이: 1층이하	

※ 실시계획인가(건축인허가) 시 2023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23. 7. 5, 조건부 가결)에 따른 다음 조건 사항 반영을 검토
- 교사증축계획(급식실, 실습실)은 학생식당이 기존 시설과 분리되는 등 평면계획이 불합리한 바, 별동 증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 수평증축 개념으로 조정 검토 할 것.
- 향후 공공건축 심의 시 증축 부분은 북측 주거지로부터 최대한 이격하여 일조, 소음, 프라이버시 등의 부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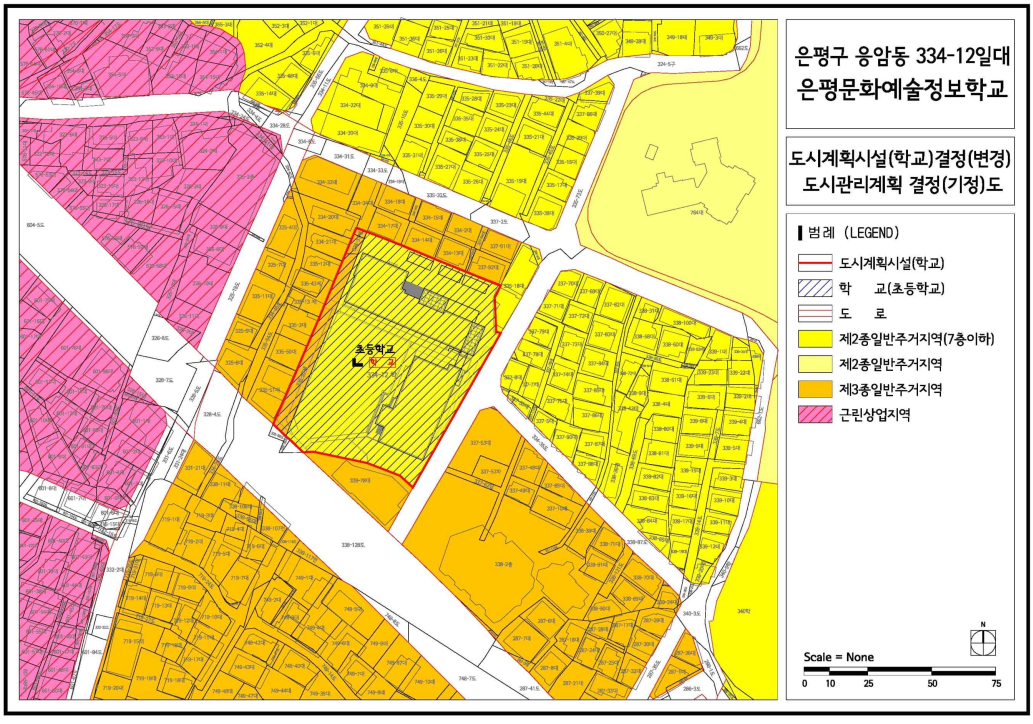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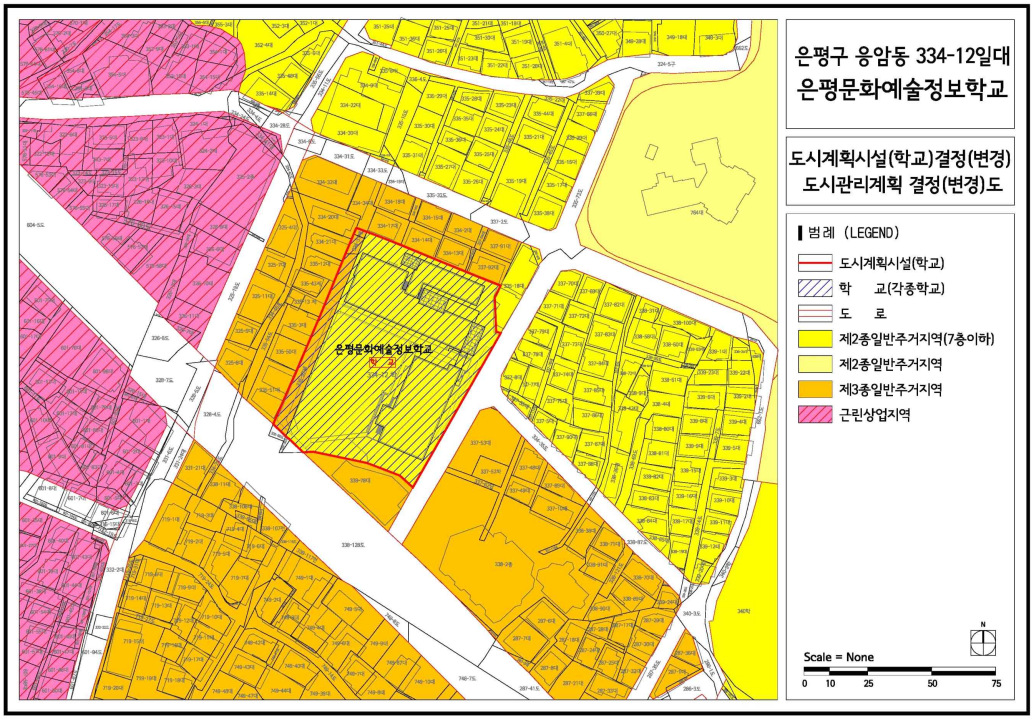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13), 은평구 도시계획과(☎351-7407)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561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따라 부과한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재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한 사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9. 14. ~ 9. 28. (14일간)

3. 안내사항
   - 납부기한 : 2023. 10. 12.
   - 공고대상자는 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운영팀(031-960-0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대상 : 따로붙임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	봉안	19910901 -002	12-17-12866	조남옥	이*숙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100,000
2	봉안	19911106 -002	11-12-08775	김종진	김*찬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광명시 안현로	180,000
3	봉안	19911203 -003	11-12-08975	변종도	변*수	2023-08-07	폐문부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180,000
4	봉안	19930816 -002	11-13-09118	허광	양*이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누원로	100,000
5	봉안	19930831 -003	11-12-09015	백연순	김*은	2023-08-07	수취인불명	강원 횡성군 생운길	100,000
6	봉안	19931007 -002	11-14-09300	김기환	김*환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60가길	100,000
7	봉안	19931113 -003	11-19-10080	신양순	김*호	2023-08-08	이사불명	서울 강서구 등촌로13자길	100,000
8	봉안	19931121 -003	11-16-09650	윤의원	정*호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06길	100,000
9	봉안	19931201 -005	11-13-09127	이종필	이*원	2023-08-07	수취인불명	서울 중랑구 면목동	100,000
10	봉안	19931220 -003	11-17-09695	구판용	구*회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서달로1길	100,000
11	봉안	19931221 -006	12-19-13077	안명식	박*덕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까치로95번길	100,000
12	봉안	19980802 -013	12-17-12623	권일주	권*현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평택시 용죽2로	100,000
13	봉안	19980804 -004	12-13-11993	김통료	홍*규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00,000
14	봉안	19980815 -018	12-13-11904	김광희	유*준	2023-08-07	주소불명	서울 도봉구 쌍문동	180,000
15	봉안	19980816 -011	12-23-14061	김정숙	정*성	2023-08-04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1나길	100,000
16	봉안	19980820 -012	12-14-12275	김성옥	조*자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시흥시 승지로	180,000
17	봉안	19980822 -010	12-14-12097	김창기	김*주	2023-08-07	폐문부재	전북 군산시 임사안2길	100,000
18	봉안	19980824 -022	12-13-12053	박동우	박*신	2023-08-07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행원용사촌길	100,000
19	봉안	19980826 -006	12-18-12946	정진홍	정*린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동일로198가길	180,000
20	봉안	19980826 -020	12-15-12393	유경욱	우*정	2023-08-04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자운서원로	100,000
21	봉안	19980831 -029	12-19-12996	이상순	김*석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16번길	180,000
22	봉안	19980902 -004	12-15-12412	김명관	김*구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85길	100,000
23	봉안	19980904 -001	12-24-14134	이시정	이*영	2023-08-07	주소불명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00,000
24	봉안	19980906 -005	12-24-14143	김순옥	김*오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양주시 삼숭로38번길	180,000
25	봉안	19980907 -025	12-19-12994	박기달	이*현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여주시 멱곡2길	18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26	봉안	19980910-019	12-15-12433	김준자	김*희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평택시 특구로5번길	100,000
27	봉안	19980912-026	12-16-12468	장복덕 개장	정*영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봉현로36번길	180,000
28	봉안	19980912-027	12-16-12469	윤흥분 개장	정*영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봉현로36번길	180,000
29	봉안	19980915-019	12-17-12674	정봉섭	정*현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부천로420번길	100,000
30	봉안	19981003-003	12-17-12707	최종구	최*영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0,000
31	봉안	19981009-012	12-22-13677	송진갑	송*철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00,000
32	봉안	19981009-033	12-16-12619	이호수	이*호	2023-08-07	수취인불명	서울 관악구 신림3동	100,000
33	봉안	19981011-025	12-25-14225	장재훈	장*현	2023-08-07	폐문부재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28번길	100,000
34	봉안	19981014-023	12-17-12841	최길분	유*용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0,000
35	봉안	19981015-005	12-17-12843	정태문	정*권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역말로	100,000
36	봉안	19981016-017	12-17-12844	김덕열	김*섭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상봉로16길	100,000
37	봉안	19981016-045	10-04-00670	김화엽	김*호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180,000
38	봉안	19981018-010	10-12-02107	박경자	이*철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2가길	100,000
39	봉안	19981019-002	11-03-02923	박정희	백*기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시흥시 대골안길	180,000
40	봉안	19981024-015	11-14-09246	이옥인	허*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창동	100,000
41	봉안	19981024-016	11-14-09247	선창용	선*준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도봉동	100,000
42	봉안	19981026-020	12-17-12748	안문섭	안*석	2023-08-04	이사불명	경기 포천시 부마로282번길	180,000
43	봉안	19981028-048	41-01-02229	백응열	백*진	2023-08-07	수취인불명	경기 시흥시 정왕천로369번길	180,000
44	봉안	19981029-009	41-01-02242	이경복	정*영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신내로	180,000
45	봉안	19981029-016	41-01-02248	서상지	서*훈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길	100,000
46	봉안	19981031-008	41-01-02292	정정순	우*민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봉서산로	100,000
47	봉안	19981105-001	41-01-02416	이하영	이*용	2023-08-04	폐문부재	인천 서구 고산로	100,000
48	봉안	19981108-015	41-01-02503	허정열	허*규	2023-08-07	이사불명	경북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	100,000
49	봉안	19981109-013	41-01-02521	김용태	김*봉	2023-08-07	폐문부재	전남 목포시 산양로	100,000
50	봉안	19981118-012	41-01-02746	김경조	김*진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포천시 태봉로	100,000
51	봉안	19981122-003	41-01-02840	최복인	안*웅	2023-08-07	수취인불명	서울 은평구 은평로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52	봉안	19981123 -005	41-01-02853	이성훈	이*구	2023-08-07	폐문부재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00,000
53	봉안	19981124 -016	41-01-02890	김영득	김*수	2023-08-07	수취인불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170번길	180,000
54	봉안	19981124 -019	41-01-02892	이종환	이*수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둘레7길	90,000
55	봉안	19981127 -002	41-01-02944	정진석	정*준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100,000
56	봉안	19981128 -007	41-01-02965	유춘자	이*래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삼양로20길	180,000
57	봉안	19981128 -022	41-01-02976	우희정	우*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000
58	봉안	19981202 -005	41-01-03053	성주옥	성*호	2023-08-07	수취인불명	서울 광진구 광장로	100,000
59	봉안	19981203 -001	41-01-03071	박용대	박*기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100,000
60	봉안	19981205 -015	41-01-03127	정기성	정*훈	2023-08-04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22길	100,000
61	봉안	19981205 -022	41-01-03134	장홍교	장*	2023-08-07	수취인불명	서울 용산구 이촌동	25,000
62	봉안	19981209 -009	41-01-03216	김진환	김*웅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중구 동호로	25,000
63	봉안	19981212 -001	41-01-03295	조강월	최*원	2023-08-04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00,000
64	봉안	19981216 -011	41-01-03409	김충산	김*일	2023-08-07	수취인불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0,000
65	봉안	19981216 -017	41-01-03415	김재정	임*호	2023-08-07	수취인불명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6가길	180,000
66	봉안	19981222 -021	41-01-03571	임봉근 개장	임*재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142번길	90,000
67	봉안	19981226 -020	41-01-03681	정덕기	정*명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소향로	100,000
68	봉안	19981226 -028	41-01-03689	이동준	이*호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시흥시 봉우재로11번길	45,000
69	봉안	19981226 -030	41-01-03686	맹오남	조*자	2023-08-07	폐문부재	대구 북구 성북로	180,000
70	봉안	19981227 -003	41-01-03698	설병제	설*혜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00,000
71	봉안	19981228 -015	41-01-03738	김춘란	이*호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호암로22가길	100,000
72	봉안	19981230 -025	12-01-04340	박주우	박*흥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100,000
73	봉안	20030812 -001	73-04-22693	박동규	박*일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75,000
74	봉안	20030814 -006	73-04-22700	이병창	서*숙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매봉길	75,000
75	봉안	20030819 -006	73-04-22714	정일랑	김*자	2023-08-07	주소불명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75,000
76	봉안	20030820 -001	73-04-22717	이양덕	채*조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15번길	75,000
77	봉안	20030822 -001	73-04-22722	노현영	정*원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486번길	7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78	봉안	20030823-001	66-01-31064	박애지	전*호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갈현로27길	200,000
79	봉안	20030825-009	73-04-22732	김창부	김*범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군포시 곡란로90번길	75,000
80	봉안	20030828-001	63-01-22724	김이달	김*수	2023-08-07	수취인불명	서울 마포구 양화로	75,000
81	봉안	20030829-003	66-01-31066	김원진	김*근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입석로70번길	165,000
82	봉안	20030902-009	73-04-22760	이수상	이*호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임원로	75,000
83	봉안	20030903-001	66-01-31080	나영선	나*이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000
84	봉안	20030905-005	73-04-22766	최동철	최*준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북한산로	75,000
85	봉안	20030915-006	73-04-22792	김연옥	전*용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1안길	75,000
86	봉안	20030920-003	73-04-22808	박종옥	조*찬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월정로11길	75,000
87	봉안	20030922-005	73-04-22816	임영환	임*학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35길	75,000
88	봉안	20030925-003	73-04-22827	이옥순	운*진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망우동	75,000
89	봉안	20030928-008	66-01-31116	김판례	김*길	2023-08-07	수취인불명	서울 동작구 흑석한강로	75,000
90	봉안	20031001-001	73-04-22849	김희선	남*희	2023-08-07	폐문부재	충남 논산시 시민로307번길	75,000
91	봉안	20031002-001	73-04-22853	구희연	구*규	2023-08-07	주소불명	서울 강서구 화곡로42나길	75,000
92	봉안	20031012-001	73-04-22892	호기창	호*능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안성시 장미길	75,000
93	봉안	20031012-004	73-04-22895	이정순	김*경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개포로109길	75,000
94	봉안	20031013-005	66-01-31138	박찬수	박*우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43길	480,000
95	봉안	20031016-004	73-04-22913	홍사길	홍*의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44번길	75,000
96	봉안	20031018-002	73-04-22917	이경오	이*규	2023-08-07	폐문부재	경북 포항시 남구 문덕로24번길	75,000
97	봉안	20031022-004	73-04-22928	김동범	김*비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책향기로	75,000
98	봉안	20031022-006	73-04-22930	서재규	조*례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화랑로13길	75,000
99	봉안	20031023-005	73-04-22934	최영애	전*선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도봉로145길	75,000
100	봉안	20031030-012	66-01-31171	정권덕	정*명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광진구 면목로7길	200,000
101	봉안	20031107-006	73-04-22984	염정산	도*란	2023-08-07	수취인불명	서울 노원구 노원로1길	75,000
102	봉안	20031120-004	73-04-23031	이덕형	이*건	2023-08-07	주소불명	서울 광진구 능동로17길	75,000
103	봉안	20031121-005	66-01-31208	최용주	나*홍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별내5로23번길	48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04	봉안	20031123 -008	73-04-23043	우영제	우*태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광명시 광명동	75,000
105	봉안	20031124 -001	66-01-31215	김막동	김*범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암사길	200,000
106	봉안	20031127 -005	73-04-23060	정해식	정*순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로10길	75,000
107	봉안	20031201 -006	73-04-23083	최성호	최*희	2023-08-07	폐문부재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75,000
108	봉안	20031203 -001	73-04-23093	최봉희	최*의	2023-08-07	폐문부재	경북 칠곡군 평원2길	75,000
109	봉안	20031205 -002	73-04-23100	염진철	염*애	2023-08-07	폐문부재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75,000
110	봉안	20031210 -003	73-04-23117	이미영	신*재	2023-08-18	폐문부재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32번길	75,000
111	봉안	20031212 -005	73-04-23123	전분태	전*재	2023-08-07	수취인불명	충남 아산시 배방로	75,000
112	봉안	20031222 -001	66-01-31245	이재복	금*동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286번길	200,000
113	봉안	20031226 -007	66-01-31254	김창희	황*인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14길	480,000
114	봉안	20031228 -001	66-01-31257	김동죽	곽*식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경인로	200,000
115	봉안	20031231 -008	73-04-23203	백안임	장*기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광명시 광명로857번길	75,000
116	봉안	20060712 -001	66-01-31350	박영진	박*민	2023-08-07	주소불명	서울 강서구 화곡동	75,000
117	봉안	20080815 -003	63-01-17828	석성균	최*순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삼양로19길	50,000
118	봉안	20080817 -002	63-01-17917	이순이	윤*숙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광진구 동일로76가길	25,000
119	봉안	20080818 -003	63-01-18082	장운용	장*준	2023-08-08	수취인불명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로	25,000
120	봉안	20080824 -001	63-01-18866	정순원	이*빈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8길	25,000
121	봉안	20080911 -001	63-01-20032	손창길	김*태	2023-08-07	수취인불명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7길	25,000
122	봉안	20080914 -002	63-01-20176	안용덕	안*훈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000
123	봉안	20080919 -002	63-01-20295	박정일	박*해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구리시 검배로	25,000
124	봉안	20081120 -001	63-01-23577	최간란	이*덕	2023-08-07	주소불명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25,000
125	봉안	20081122 -001	63-01-23661	한현우	한*규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월계로55길	25,000
126	봉안	20081210 -001	63-01-24566	장귀녀	윤*도	2023-08-07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5,000
127	봉안	20081214 -002	63-01-24698	이하자	강*남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도봉로139길	50,000
128	봉안	20130804 -002	12-18-12988	이구연	한*례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25,000
129	봉안	20130809 -012	12-20-13383	김상호	김*빈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1길	2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30	봉안	20130823-007	41-01-00470	김인수	김*택	2023-08-07	폐문부재	대전 동구 백룡로21번길	25,000
131	봉안	20130827-003	41-01-00661	박영채	오*석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25,000
132	봉안	20130904-003	41-01-01356	서계식	이*주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도봉로	25,000
133	봉안	20130909-004	41-01-02326	안승철	안*용	2023-08-04	폐문부재	경남 거제시 옥포중앙로	25,000
134	봉안	20130913-006	41-01-02714	정연웅	정*희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허준로	25,000
135	봉안	20130916-001	41-01-02863	김정희	김*은	2023-08-07	폐문부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276번길	25,000
136	봉안	20131002-003	41-01-04424	김소희	윤*석	2023-08-04	수취인불명	경기 구리시 경춘로	25,000
137	봉안	20131102-014	41-01-07206	이희준	이*원	2023-08-07	주소불명	경기 부천시 범안로	25,000
138	봉안	20131121-002	51-01-01039	정종규	장*희	2023-08-07	수취인불명	서울 송파구 오금로15길	25,000
139	봉안	20131128-004	51-01-01733	박용준	박*민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허준로	25,000
140	봉안	20131129-001	51-01-01789	윤경구	윤*군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4길	25,000
141	봉안	20131201-006	51-01-02240	김상일	김*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면목로48길	25,000
142	봉안	20131210-001	51-01-03224	신동국	신*천	2023-08-07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8길	50,000
143	봉안	20131225-006	51-01-04451	강억길	손*배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진관4로	25,000
144	봉안	20131229-002	51-01-04844	김용범	정*철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가운로2길	25,000
145	봉안	20160323-005	66-01-31612	임계순	임*화	2023-08-07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25,000
146	봉안	20170928-005	66-01-31660	김계송	김*일	2023-08-07	수취인불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50,000
147	분묘	19980831-001	18180001	유병용	유*춘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평택시 소사3로	137,500
148	분묘	19980905-006	18180025	김옥순	이*용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독산3동	137,500
149	분묘	19980907-017	2006323	한일성	한*철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오산시 청호로	228,250
150	분묘	19980914-004	18180082	유입분	최*하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137,500
151	분묘	19980914-020	18180098	남난초	박*식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화성시 남양중앙로	137,500
152	분묘	19980920-004	18170053	최우예	오*환	2023-08-07	주소불명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137,500
153	분묘	19980920-005	18170054	오찬용	오*환	2023-08-07	주소불명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137,500
154	분묘	19980927-004	18170085	허외덕	박*완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오리로13길	137,500
155	분묘	19981001-001	18170099	서부용	이*식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문화촌2길	137,5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56	분묘	19981012 -001	18170112	이희성	이*남	2023-08-07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18가길	137,500
157	분묘	19981026 -006	18170138	박봉오	오*순	2023-08-07	수취인불명	서울 강남구 도곡로77길	137,500
158	분묘	19981028 -002	18170141	김애순	김*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양지로240번길	137,500
159	분묘	19981115 -001	18170151	김부경	김*수	2023-08-07	폐문부재	경기 동두천시 강변로664번길	137,500
160	분묘	19981119 -003	18170152	박원엽	박*훈	2023-08-17	폐문부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49길	137,500
161	분묘	19981220 -002	18170157	김기순	김*철	2023-08-07	수취인불명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37,500
162	분묘	20031208 -001	2003251	이임순	김*용	2023-08-07	폐문부재	경남 진주시 개양로	228,250
163	봉안	19980808 -024	12-13-12020	손혜영	손*현	주소불명(발송불가)			180,000
164	봉안	19981214 -018	41-01-03361	서종석	고*선	주소불명(발송불가)			100,000
165	봉안	19981214 -022	41-01-03364	신철규	신*주	주소불명(발송불가)			100,000
166	봉안	20031130 -005	73-04-23078	이옥랑	차*수	주소불명(발송불가)			75,000
167	분묘	19980916 -003	18170040	장용례	박*수	주소불명(발송불가)			137,500
168	봉안	19871115 -003	12-17-12862	황선도	황*영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100,000
169	봉안	19910219 -002	12-18-12910	조복순	신*규	2023-08-17	주소불명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00,000
170	봉안	19910808 -002	11-14-09288	한금화	윤*억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0,000
171	봉안	19930112 -001	11-15-09419	백봉목	박*철	2023-08-17	주소불명	서울 마포구 창전동	100,000
172	봉안	19930206 -004	12-19-13018	김창화	김*철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덕릉로	180,000
173	봉안	19930207 -002	11-14-09253	장복순	장*홍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266번길	180,000
174	봉안	19930219 -001	11-15-09521	주복심	장*덕	2023-08-18	폐문부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743번길	100,000
175	봉안	19930227 -004	12-19-13177	김달선	김*구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113번길	100,000
176	봉안	19930227 -006	11-17-09684	서병조	서*훈	2023-08-17	폐문부재	충남 예산군 창신로	100,000
177	봉안	19980204 -011	63-01-23938	방호선	방*선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비룡로수자1길	100,000
178	봉안	19980206 -003	63-01-25275	이설자	최*정	2023-08-18	폐문부재	인천 미추홀구 주승로	180,000
179	봉안	19980206 -008	63-01-25267	전용덕	이*화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강남구 삼성로120길	180,000
180	봉안	19980209 -009	63-01-24415	김진숙	류*선	2023-08-18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180,000
181	봉안	19980212 -008	63-01-25185	전영순	전*철	2023-08-18	폐문부재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82	봉안	19980212-013	63-01-24195	유래식	유*민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21길	100,000
183	봉안	19980215-006	63-01-25051	이동훈	이*천	2023-08-18	폐문부재	인천 계양구 향교로28번길	100,000
184	봉안	19980215-007	63-01-24769	이봉순	최*성	2023-08-17	폐문부재	충남 보령시 충서로	100,000
185	봉안	19980216-009	63-01-25321	홍삼순	김*한	2023-08-17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1595번길	90,000
186	봉안	19980217-008	63-01-25425	김수동	전*숙	2023-08-17	이사불명	서울 관악구 신림3동	100,000
187	봉안	19980217-009	63-01-24834	이종우	이*윤	2023-08-17	폐문부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00,000
188	봉안	19980218-003	63-01-25295	이강석	전*심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경인로	100,000
189	봉안	19980218-005	63-01-24334	신혜진	김*웅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시흥시 은계남로	100,000
190	봉안	19980218-008	63-01-24314	이승철	이*종	2023-08-17	폐문부재	인천 서구 경서로31번길	25,000
191	봉안	19980219-015	63-01-24779	정흥진	송*숙	2023-08-18	폐문부재	인천 부평구 충선로	180,000
192	봉안	19980220-011	63-01-25571	마호일	마*잉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2동	100,000
193	봉안	19980221-002	63-01-25372	허영복	문*혁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00,000
194	봉안	19980221-003	63-01-25329	윤길식	윤*식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시흥시 승지로69번길	180,000
195	봉안	19980223-008	41-01-02374	채수완	채*병	2023-08-18	폐문부재	인천 연수구 독배로40번길	45,000
196	봉안	19980226-008	41-01-01441	백삼석	백*원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길음로	45,000
197	봉안	19980227-013	63-01-24957	이향이	권*현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해밀예당1로	100,000
198	봉안	19980228-003	63-01-24964	조소의	조*주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우마2가길	100,000
199	봉안	20030201-014	63-01-25510	지상용	지*우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소월로20길	25,000
200	봉안	20030202-002	73-03-19291	윤여선	민*식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100,000
201	봉안	20030202-017	73-03-19304	김태석	김*수	2023-08-17	수취인불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00,000
202	봉안	20030202-019	73-03-19306	장성국	장*기	2023-08-17	폐문부재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100,000
203	봉안	20030203-028	73-03-19332	정만화	정*철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광주시 봉골길	100,000
204	봉안	20030203-033	66-01-30720	강찬근	강*진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나길	25,000
205	봉안	20030204-001	73-03-19342	박이성	곽*익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솔샘로17길	100,000
206	봉안	20030204-004	73-03-19345	백선영	백*진	2023-08-17	수취인불명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극동아파트	100,000
207	봉안	20030204-005	73-03-19346	장정자	이*호	2023-08-17	폐문부재	경기 시흥시 신천로104번길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208	봉안	20030204 -007	73-03-19348	조흥준	신*호	2023-08-17	폐문부재	충북 진천군 화랑4안길	25,000
209	봉안	20030204 -013	73-03-19353	한수현	이*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48길	100,000
210	봉안	20030204 -030	73-03-19364	조인태	조*철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12길	100,000
211	봉안	20030205 -002	73-03-19379	원순기	원*식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겸재로30길	100,000
212	봉안	20030205 -007	73-03-19382	김금순	김*흥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0,000
213	봉안	20030205 -033	73-03-19402	최중순	장*근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신림4동	100,000
214	봉안	20030205 -040	73-03-19409	박상렬	박*록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11길	25,000
215	봉안	20030206 -025	73-03-19439	강희선	박*철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동작구 흑석한강로	25,000
216	봉안	20030206 -028	73-03-19442	이병돌	김*태	2023-08-17	폐문부재	경기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100,000
217	봉안	20030206 -032	73-03-19446	정남원	정*만	2023-08-17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신정로13길	100,000
218	봉안	20030206 -044	73-03-19456	배재덕	배*근	2023-08-16	이사불명	충남 논산시 금곡2길	100,000
219	봉안	20030206 -046	73-03-19458	이병덕	이*삼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100,000
220	봉안	20030206 -049	73-03-19461	최병옥	최*녀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민락로	25,000
221	봉안	20030208 -001	73-03-19503	유병철	유*호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노원구 노원로	25,000
222	봉안	20030208 -005	73-03-19507	채명진	채*련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갈현동	100,000
223	봉안	20030208 -016	73-03-19516	성지환	성*중	2023-08-17	이사불명	서울 강북구 삼양로136길	25,000
224	봉안	20030208 -027	73-03-19524	윤기옥	김*식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문정로	100,000
225	봉안	20030208 -030	66-01-30728	최이석	최*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도약로	45,000
226	봉안	20030210 -006	73-03-19567	손용길	손*수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송산로307번길	100,000
227	봉안	20030210 -009	73-03-19569	백진엽	백*욱	2023-08-16	수취인불명	전북 부안군 연곡안길	25,000
228	봉안	20030210 -029	73-03-19584	양명순	이*기	2023-08-17	수취인불명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00,000
229	봉안	20030210 -038	73-03-19592	최영옥	민*진	2023-08-17	이사불명	강원 삼척시 교동로	100,000
230	봉안	20030210 -040	73-03-19594	김리중	김*원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장현로87번길	100,000
231	봉안	20030211 -013	73-03-19614	이입분	신*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만양로	100,000
232	봉안	20030211 -014	73-03-19615	홍만식	홍*민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29번서길	100,000
233	봉안	20030211 -037	73-03-19630	김준기	김*기	2023-08-16	수취인불명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234	봉안	20030211 -045	73-03-19638	문만걸	김*분	2023-08-17	폐문부재	경기 의왕시 부곡중앙남5길	100,000
235	봉안	20030212 -014	73-03-19650	구남서	구*완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벚꽃로	100,000
236	봉안	20030212 -018	73-03-19654	임순경	이*희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103번길	100,000
237	봉안	20030212 -020	73-03-19656	현영순	김*태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00,000
238	봉안	20030212 -034	73-03-19670	조병석	조*희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교하로	100,000
239	봉안	20030213 -002	73-03-19678	박정자	우*진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100,000
240	봉안	20030213 -017	73-03-19693	최미숙	최*식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상금로	100,000
241	봉안	20030213 -019	73-03-19695	정연화	김*훈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중앙로52길	100,000
242	봉안	20030213 -026	73-03-19702	김순분	최*옥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45길	100,000
243	봉안	20030214 -005	73-03-19711	신영순	김*배	2023-08-18	폐문부재	인천 부평구 갈월동로29번길	100,000
244	봉안	20030214 -006	73-03-19712	이상섭	이*선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0,000
245	봉안	20030215 -014	73-03-19752	신재웅	신*일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구리시 코스모스길215번길	100,000
246	봉안	20030215 -016	73-03-19754	서동진	서*욱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솔매로39길	100,000
247	봉안	20030215 -025	73-03-19763	우후락	우*민	2023-08-17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00,000
248	봉안	20030216 -026	73-03-19806	강우신	강*진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해등로	100,000
249	봉안	20030216 -028	73-03-19808	이영선	이*규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1길	25,000
250	봉안	20030216 -034	73-03-19814	이거종	이*주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100,000
251	봉안	20030217 -001	73-03-19817	정진희	정*삼	2023-08-17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2길	100,000
252	봉안	20030217 -042	73-03-19849	박덕광	박*노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5,000
253	봉안	20030218 -014	73-03-19866	김봉용	김*구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노원로	100,000
254	봉안	20030218 -019	73-03-19871	정준규	정*민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819번길	100,000
255	봉안	20030218 -022	73-03-19874	최승양	최*중	2023-08-16	이사불명	서울 서대문구 간호대로3길	100,000
256	봉안	20030219 -011	66-01-30740	최옥연	박*철	2023-08-17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59길	100,000
257	봉안	20030219 -016	73-03-19904	김광석	김*자	2023-08-17	폐문부재	경기 과천시 문원청계길	25,000
258	봉안	20030219 -021	73-03-19909	이원일	이*철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00,000
259	봉안	20030219 -027	73-03-19915	엄대성	엄*준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구로구 경인로55길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260	봉안	20030219 -033	73-03-19920	문정희	문*원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벚꽃로46가길	100,000
261	봉안	20030219 -038	73-03-19925	함석태	함*철	2023-08-18	수취인불명	부산 남구 동명로101번다길	25,000
262	봉안	20030220 -004	73-03-19934	김정례	류*웅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하남시 아리수로	100,000
263	봉안	20030220 -007	73-03-19937	전경용	전*원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광진구 뚝섬로41길	100,000
264	봉안	20030220 -012	73-03-19942	이정숙	김*준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중랑구 동일로144길	100,000
265	봉안	20030220 -018	73-03-19948	신일색	정*용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21길	25,000
266	봉안	20030221 -001	73-03-19962	윤용구	윤*택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신흥로23길	100,000
267	봉안	20030221 -011	73-03-19972	박성환	박*원	2023-08-18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도리중길	100,000
268	봉안	20030221 -013	73-03-19974	최명자	김*석	2023-08-18	폐문부재	전북 군산시 미룡로	100,000
269	봉안	20030221 -025	73-03-19981	이정빈	이*현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숲속노을로	100,000
270	봉안	20030221 -036	73-03-19988	박완석	박*열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평택시 통복시장로16번길	100,000
271	봉안	20030222 -031	73-03-20019	김순대	박*정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00,000
272	봉안	20030222 -032	73-03-20020	김기배	정*철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면목천로23길	100,000
273	봉안	20030223 -038	73-03-20064	이종철	이*한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백범로37길	100,000
274	봉안	20030224 -015	73-03-20078	정동열	정*재	2023-08-17	폐문부재	대전 서구 관저남로	25,000
275	봉안	20030224 -027	73-03-20090	정기진	홍*찬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00,000
276	봉안	20030224 -033	73-03-20095	홍명덕	정*진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성동구 옥수2동 중앙하이츠아파트	100,000
277	봉안	20030224 -041	73-03-20099	임점례	정*호	2023-08-18	폐문부재	인천 부평구 서촌로	100,000
278	봉안	20030224 -048	73-03-20109	김영숙	최*식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100,000
279	봉안	20030225 -007	73-03-20117	안숙희	정*선	2023-08-17	폐문부재	인천 서구 검암로10번길	100,000
280	봉안	20030225 -024	73-03-20130	모문철	모*환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0길	100,000
281	봉안	20030225 -036	73-03-20140	김기대	김*도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오산시 성산새싹16번길	100,000
282	봉안	20030227 -002	73-03-20170	조병만	조*형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양주시 옥정동로	100,000
283	봉안	20030227 -003	73-03-20171	황순용	박*석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39길	100,000
284	봉안	20030227 -004	73-03-20172	정길락	정*근	2023-08-18	폐문부재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000
285	봉안	20030227 -009	73-03-20177	박태선	박*현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불광로2길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286	봉안	20030228-002	73-03-20190	이권주	이*종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00,000
287	봉안	20030228-018	73-03-20206	김상호	김*정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공릉로59길	100,000
288	봉안	20030228-028	73-03-20216	김창균	김*현	2023-08-18	폐문부재	인천 미추홀구 주안중로50번길	100,000
289	봉안	20030228-029	73-03-20217	김채식	김*훈	2023-08-21	수취인불명	전남 무안군 월암길	100,000
290	봉안	20030228-038	73-03-20226	조영자	박*환	2023-08-18	폐문부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0,000
291	봉안	20080201-004	62-01-09186	박길호	박*영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노원로16길	75,000
292	봉안	20080206-001	62-01-09429	김종연	이*만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노원로	75,000
293	봉안	20080208-005	62-01-09631	김숙규	김*규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광진구 뚝섬로32길	75,000
294	봉안	20080210-004	66-01-31652	홍종철	홍*필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4길	75,000
295	봉안	20080214-006	62-01-09834	최유철	최*한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8나길	75,000
296	봉안	20080215-002	62-01-09856	이난복	이*자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호암로	75,000
297	봉안	20080215-008	62-01-09935	최정국	최*희	2023-08-18	폐문부재	울산 동구 대송5길	75,000
298	봉안	20080223-002	62-01-10189	김용하	김*범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동일로99길	75,000
299	봉안	20080224-002	62-01-10217	이종림	이*진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75,000
300	봉안	20080224-004	62-01-10222	노형만	노*자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75,000
301	봉안	20080225-009	62-01-10381	김종태	김*민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75,000
302	봉안	20080227-007	62-01-10473	박현의	김*신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5,000
303	봉안	20080228-004	62-01-10524	오칠근	오*환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2가길	75,000
304	봉안	20080229-010	62-01-10641	백야음전	조*현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91번길	75,000
305	봉안	20080229-011	62-01-10643	박문자	김*영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75,000
306	봉안	20130206-006	11-03-02801	김영학	김*용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200번길	25,000
307	봉안	20130207-005	11-03-02876	이장수	이*남	2023-08-17	주소불명	서울 마포구 임정로21길	25,000
308	봉안	20130210-002	11-04-03023	유응기	유*기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부용로	25,000
309	봉안	20130212-003	11-04-03036	김봉례	이*례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장위로21다길	50,000
310	봉안	20130215-001	11-04-03122	윤복화	김*회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부일로	25,000
311	봉안	20130218-001	11-05-03226	김정엽	민*관	2023-08-18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312	봉안	20130222 -011	11-06-03379	최선례	권*	2023-08-17	수취인불명	인천 계양구 벌말로565번길	25,000
313	봉안	20130224 -001	11-06-03431	김정순	선*수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송파구 마천로51길	25,000
314	봉안	20130225 -007	11-07-03476	허차복	김*형	2023-08-17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4길	25,000
315	봉안	20130225 -008	11-07-03479	엄수남	엄*령	2023-08-18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5,000
316	봉안	20130227 -010	11-07-03544	심현택	이*록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광신길	25,000
317	봉안	20130228 -001	11-07-03561	정봉학	정*중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다길	25,000
318	봉안	20130228 -007	11-08-03616	이상원	이*희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14길	25,000
319	봉안	20180203 -002	71-08-05763	정상학	정*욱	2023-08-17	주소불명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서로6길	25,000
320	봉안	20180207 -004	11-08-03656	김유섭	김*진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호암로20길	25,000
321	봉안	20180208 -002	72-10-07475	김용귀	김*희	2023-08-17	수취인불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5,000
322	봉안	20180212 -001	72-11-08276	최문주	최*남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신월로20길	25,000
323	봉안	20180212 -014	72-11-08485	장정환	장*성	2023-08-18	폐문부재	인천 서구 청라한내로72번길	25,000
324	봉안	20180213 -003	72-11-08580	강승호	강*일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29길	25,000
325	봉안	20180218 -008	72-12-09908	김미숙	이*일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06길	25,000
326	봉안	20180218 -010	72-12-10031	이현배	박*희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가평군 보납로	25,000
327	봉안	20180219 -002	72-12-10084	민형일	민*라	2023-08-21	수취인불명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441번길	25,000
328	봉안	20180219 -007	72-12-10167	장상진	장*일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9길	50,000
329	봉안	20180221 -010	72-13-10404	한춘자	유*길	2023-08-17	폐문부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남로483번길	25,000
330	봉안	20180223 -015	61-01-00661	김용임	윤*호	2023-08-18	폐문부재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25,000
331	봉안	20180226 -001	72-14-11316	김선영	김*성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연서로29길	25,000
332	분묘	19980215 -001	18060718	이문식	이*민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상봉로	181,500
333	분묘	19980216 -001	18060719	한경운	한*영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평천로721번길	181,500
334	분묘	19700308 -002	107214	안중현	안*순	2023-08-22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3길	235,060
335	분묘	19760823 -005	100072	강분예	서*상	2023-08-18	폐문부재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32길	141,600
336	분묘	19810119 -004	201308	송계섭	송*성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46길	280,370
337	분묘	19820809 -004	304221	김용득	김*영	2023-08-18	수취인불명	인천 계양구 장제로1025번길	280,37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338	분묘	19920130 -002	403865	김재봉	김*성	2023-08-17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23길	280,370
339	분묘	19931030 -002	16010231	박주흥	박*익	2023-08-18	폐문부재	인천 강화군 덕진로	1,221,000
340	분묘	19931111 -003	16020034	이원진	이*준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168번길	610,500
341	봉안	19930602 -001	11-15-09427	김양순	심*길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먹갓로37번길	100,000
342	봉안	19930604 -001	11-16-09562	안택용	안*환	2023-08-17	폐문부재	경북 칠곡군 서중리7길	180,000
343	봉안	19930609 -002	11-12-08806	정영화	안*의	2023-08-18	폐문부재	인천 연수구 청학동	100,000
344	봉안	19930609 -003	12-19-13161	고선자	김*풍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15길	180,000
345	봉안	19930611 -001	11-15-09346	조남례	김*철	2023-08-17	수취인불명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00,000
346	봉안	19930619 -002	12-20-13287	박호윤	박*원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덕송3로	180,000
347	봉안	19930621 -003	11-16-09627	이동희	엄*식	2023-08-17	이사불명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100,000
348	봉안	19980601 -001	11-04-03084	조분순	강*차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19길	180,000
349	봉안	19980602 -004	11-10-04129	이명희	노*경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방학로8길	100,000
350	봉안	19980602 -005	11-10-04209	강화덕	김*진	2023-08-17	폐문부재	경남 거제시 중곡로2길	180,000
351	봉안	19980602 -016	12-08-05601	한용하	한*선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100,000
352	봉안	19980603 -002	12-10-05867	배순도	배*환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80,000
353	봉안	19980603 -008	12-10-06024	서풍운	서*돈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대학7가길	100,000
354	봉안	19980603 -016	12-11-11618	최광천	최*균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00,000
355	봉안	19980603 -018	11-24-11247	권영선	백*자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00,000
356	봉안	19980604 -001	12-11-11540	윤윤상	윤*은	2023-08-17	폐문부재	경기 구리시 원수택로64번길	100,000
357	봉안	19980606 -003	63-01-24955	송경태	송*현	2023-08-17	이사불명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5,000
358	봉안	19980607 -003	11-24-11431	최송월	최*희	2023-08-18	수취인불명	서울 도봉구 도봉로136나길	100,000
359	봉안	19980607 -005	12-11-11548	김기옥	조*오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50,000
360	봉안	19980608 -002	12-23-13897	박현숙	함*철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송양로	100,000
361	봉안	19980609 -008	12-23-13918	김명수	김*백	2023-08-17	수취인불명	전남 순천시 친환경길	100,000
362	봉안	19980609 -009	12-23-13919	김순자	김*원	2023-08-18	폐문부재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88번길	180,000
363	봉안	19980609 -014	12-23-13922	안덕희	안*호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월계로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364	봉안	19980610-001	12-23-13925	유옥기	김*종	2023-08-17	이사불명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9길	100,000
365	봉안	19980610-009	12-01-04389	안용례	최*배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노원구 월계동	100,000
366	봉안	19980610-010	12-23-13932	김형중	김*일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등원로	100,000
367	봉안	19980610-012	12-23-13933	정성환	정*종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늘을3로	180,000
368	봉안	19980611-008	12-14-12070	이애숙	권*호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100,000
369	봉안	19980612-003	12-14-12073	조정복	조*성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섬밭로	100,000
370	봉안	19980612-011	12-22-13592	정혜옥	김*중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	100,000
371	봉안	19980612-014	12-11-11558	박원희	김*경	2023-08-18	폐문부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748번길	100,000
372	봉안	19980613-005	12-12-11700	강경환	강*진	2023-08-18	폐문부재	강원 동해시 수원지2길	100,000
373	봉안	19980614-013	11-21-10500	김명한	김*정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2로	180,000
374	봉안	19980614-018	11-24-11397	곽중석	곽*영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시흥시 봉우재로61번길	100,000
375	봉안	19980616-010	12-22-13615	김경완	이*자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월계로	100,000
376	봉안	19980621-005	12-23-14031	김준이	김*근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100,000
377	봉안	19980621-013	12-23-13950	고봉균	우*훈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학동로20길	100,000
378	봉안	19980623-013	12-13-11817	조덕순	조*홍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100,000
379	봉안	19980623-014	12-12-11716	박은묵	박*경	2023-08-18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0,000
380	봉안	19980623-016	12-12-11717	유희종	유*우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장위2동	100,000
381	봉안	19980624-009	12-11-11646	이인우	이*훈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100,000
382	봉안	19980624-010	12-11-11647	홍춘순	최*민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8길	100,000
383	봉안	19980625-002	11-24-11451	김순임	정*연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00,000
384	봉안	19980625-011	12-23-13958	박순종	신*자	2023-08-18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00,000
385	봉안	19980625-012	63-01-18471	김복순	장*식	2023-08-17	폐문부재	경기 구리시 갈매중앙로	100,000
386	봉안	19980626-006	12-11-11610	정일성	정*우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섬밭로	180,000
387	봉안	19980626-010	12-13-11818	김병출	장*수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노원로	100,000
388	봉안	19980627-003	12-12-11721	윤영철	윤*권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	180,000
389	봉안	19980628-003	12-11-11651	이영재	이*찬	2023-08-18	수취인불명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18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390	봉안	19980629 -001	11-12-08856	박하종	박*영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금하로9길	100,000
391	봉안	19980629 -002	11-16-09625	정해용	장*수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100,000
392	봉안	19980629 -006	12-12-11739	정명철	정*도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노원구 월계1동	100,000
393	봉안	19980630 -004	12-22-13608	하태욱	하*민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상계2동	100,000
394	봉안	20030601 -001	73-04-22448	최명자	김*화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포이동	75,000
395	봉안	20030601 -004	73-04-22451	최일평	최*준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종로구 송월길	75,000
396	봉안	20030601 -009	66-01-30955	구자설	이*영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1길	75,000
397	봉안	20030605 -003	66-01-30960	홍계남	김*원	2023-08-18	수취인불명	서울 송파구 오금로61길	200,000
398	봉안	20030606 -001	73-04-22468	안병철	김*경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75,000
399	봉안	20030607 -005	66-01-30962	안화순	채*준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백석로	480,000
400	봉안	20030607 -007	66-01-30963	양정순	박*재	2023-08-17	수취인불명	경기 파주시 평화로	200,000
401	봉안	20030608 -004	73-04-22477	박인옥	박*환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수레로	75,000
402	봉안	20030609 -005	66-01-30969	한정숙	이*	2023-08-18	수취인불명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3길	200,000
403	봉안	20030610 -009	73-04-22486	전영주	전*련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123번길	75,000
404	봉안	20030610 -010	73-04-22487	박홍조	박*수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68길	75,000
405	봉안	20030610 -011	73-04-22488	강명자	김*우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갈현로31길	75,000
406	봉안	20030613 -001	73-04-22497	김병삼	김*희	2023-08-17	폐문부재	인천 서구 서달로116번길	75,000
407	봉안	20030615 -001	73-04-22500	윤대덕	윤*복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27길	75,000
408	봉안	20030617 -004	66-01-30979	한형숙	이*준	2023-08-17	이사불명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200,000
409	봉안	20030617 -006	66-01-30980	이준영	이*훈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성내로14길	200,000
410	봉안	20030618 -001	73-04-22503	정종래	강*자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문성로16다길	75,000
411	봉안	20030618 -002	66-01-30981	김종대	김*태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인현1길	480,000
412	봉안	20030619 -002	73-04-22505	현진우	현*우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면목로64길	75,000
413	봉안	20030621 -001	73-04-22508	정찬식	정*근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진흥로3길	75,000
414	봉안	20030623 -001	73-04-22513	김호창	김*숙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용답길	75,000
415	봉안	20030623 -002	73-04-22514	김미나	이*명	2023-08-22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경인로20나길	7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416	봉안	20030625-002	73-04-22522	정민상	홍*표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30번길	75,000
417	봉안	20030625-004	73-04-22524	김기영	김*용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64길	75,000
418	봉안	20030625-005	73-04-22525	박교심	김*완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목동로3길	75,000
419	봉안	20030625-008	73-04-22528	김읍단	김*엽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상도동	75,000
420	봉안	20030625-009	66-01-30992	주혜자	김*수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80,000
421	봉안	20030626-001	73-04-22529	박우순	박*희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4길	75,000
422	봉안	20030626-003	66-01-30993	권정자	이*우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167번길	480,000
423	봉안	20030627-001	66-01-30994	김택준	홍*창	2023-08-17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2길	200,000
424	봉안	20030629-005	73-04-22541	김일인	양*석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75,000
425	봉안	20030629-006	73-04-22542	심병철	심*무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479번길	75,000
426	봉안	20030629-008	66-01-30998	최라비	박*회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3길	75,000
427	봉안	20080601-002	63-01-14949	정경수	정*영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동두천시 강변로664번길	75,000
428	봉안	20080604-001	63-01-14979	강우규	강*규	2023-08-17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3길	75,000
429	봉안	20080604-004	63-01-15010	권갑용	권*형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천중로35길	75,000
430	봉안	20080605-005	63-01-15064	조화자	최*진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285번길	75,000
431	봉안	20080609-002	63-01-15217	김신선	오*영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75,000
432	봉안	20080609-003	63-01-15252	엄순자	이*만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47길	75,000
433	봉안	20080619-002	63-01-15569	윤광옥	원*연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갈현로33가길	75,000
434	봉안	20080619-006	63-01-15614	윤영원	윤*남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75,000
435	봉안	20080620-001	63-01-15631	주창린	주*옥	2023-08-18	폐문부재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5,000
436	봉안	20080624-006	63-01-15757	박판순	장*규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허준로	75,000
437	봉안	20080629-001	63-01-15918	이복순	안*호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월계로	75,000
438	봉안	20080630-003	10-01-00013	홍윤열	김*옥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75,000
439	봉안	20080630-006	63-01-16036	하영규	하*남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91길	75,000
440	봉안	20110605-002	66-01-31469	양종만	양*석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75,000
441	봉안	20130601-007	12-06-05184	정숙현	이*택	2023-08-18	폐문부재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2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442	봉안	20130603 -008	12-06-05261	천분순	서*교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가람로	50,000
443	봉안	20130605 -005	12-07-05306	배선제	배*철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광진구 능동로36길	50,000
444	봉안	20130609 -001	12-07-05411	전두성	전*환	2023-08-21	기타(반송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50,000
445	봉안	20130609 -004	12-07-05444	김분옥	김*숙	2023-08-17	이사불명	서울 강북구 도봉로41길	25,000
446	봉안	20130610 -001	12-07-05446	이병욱	이*섭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동일로210길	25,000
447	봉안	20130610 -003	12-07-05460	이정오	이*늘	2023-08-18	폐문부재	인천 남동구 서창남로	25,000
448	봉안	20130610 -009	12-08-05470	박금강	박*현	2023-08-17	주소불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길	50,000
449	봉안	20130610 -012	12-08-05485	장천순	노*욱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동일로109길	25,000
450	봉안	20130611 -004	12-08-05510	윤재도	윤*연	2023-08-17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000
451	봉안	20130611 -005	12-08-05513	지화천	석*희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강서로47라길	25,000
452	봉안	20130612 -004	12-08-05555	김성남	김*주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평택시 은실5길	25,000
453	봉안	20130614 -009	12-08-05616	정명해	박*일	2023-08-18	폐문부재	인천 서구 완정로165번길	25,000
454	봉안	20130618 -004	12-09-05730	이운수	이*태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465번길	50,000
455	봉안	20130620 -002	12-09-05813	백정애	오*봉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양지5길	25,000
456	봉안	20130620 -003	71-02-00559	방진배	방*석	2023-08-17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가구단지중앙길	25,000
457	봉안	20130621 -006	12-09-05845	예석영	예*영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1길	25,000
458	봉안	20130623 -002	12-09-05861	김덕언	김*재	2023-08-16	수취인불명	서울 서초구 효령로77길	50,000
459	봉안	20130626 -005	12-10-05908	김태선	박*호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23번길	25,000
460	봉안	20180601 -014	51-01-04852	조윤행	조*민	2023-08-16	이사불명	전남 진도군 서망항길	25,000
461	봉안	20180601 -016	51-01-04872	조용찬	조*영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25,000
462	봉안	20180602 -003	51-01-04953	임봉한	임*연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연서로26길	50,000
463	봉안	20180603 -001	51-01-04990	최병삼	최*호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중구 다산로	25,000
464	봉안	20180603 -004	51-01-05105	서연학	서*호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통일로88가길	25,000
465	봉안	20180603 -006	51-01-05247	김혜자	윤*훈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2로	25,000
466	봉안	20180604 -001	61-01-00757	최민규	최*석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연서로54길	25,000
467	봉안	20180604 -006	61-01-02005	정준섭	정*식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5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468	봉안	20180605 -011	61-01-02894	정성모	정*성	2023-08-17	폐문부재	대전 대덕구 중리북로31번길	25,000
469	봉안	20180609 -006	62-01-05330	심윤수	심*선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5,000
470	봉안	20180609 -010	62-01-06224	신승호	신*주	2023-08-18	폐문부재	광주 서구 풍암중앙로91번길	50,000
471	봉안	20180612 -001	62-01-07065	김성자	서*석	2023-08-18	폐문부재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50,000
472	봉안	20180612 -005	62-01-07365	정치랑	김*석	2023-08-17	이사불명	제주 서귀포시 수산서남로51번길	25,000
473	봉안	20180612 -009	62-01-07416	박태규	허*심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36길	25,000
474	봉안	20180615 -001	62-01-08427	정임선	노*준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늘을1로	25,000
475	봉안	20180618 -003	62-01-09764	최광식	최*욱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28길	50,000
476	봉안	20180618 -009	62-01-10026	최장홍	최*기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관악구 신림로	25,000
477	봉안	20180619 -002	62-01-10562	김옥경	이*열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동일로193가길	25,000
478	봉안	20180619 -016	62-01-11515	성영호	성*지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광주시 도곡길21번길	25,000
479	봉안	20180620 -002	62-01-11820	임한도	임*철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관악구 솔밭로7길	50,000
480	봉안	20180620 -007	62-01-12236	이계향	전*진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67길	25,000
481	봉안	20180621 -005	62-01-13049	임순옥	이*호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삼양로20길	25,000
482	봉안	20180625 -003	63-01-15814	임기은	임*민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역삼로90길	25,000
483	봉안	20180628 -002	63-01-17816	김용옥	김*중	2023-08-17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50,000
484	봉안	20180628 -011	63-01-18404	진동길	진*경	2023-08-17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37길	25,000
485	봉안	20180629 -007	63-01-20037	김광태	민*현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동남로6길	25,000
486	봉안	20180630 -004	63-01-20217	이철분	김*헌	2023-08-17	이사불명	서울 동작구 사당로	25,000
487	분묘	19980602 -005	18090153	김장호	김*수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광주시 천진암로	137,500
488	분묘	19980604 -004	18090155	이동권	이*일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양주시 화합로	137,500
489	분묘	19980605 -002	18090160	박동호	박*근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6길	137,500
490	분묘	19980605 -003	18090161	김양금	조*종	2023-08-18	폐문부재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137,500
491	분묘	19980609 -007	18030640	조귀순	최*규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양천로75길	181,500
492	분묘	19980611 -001	18100010	유창임	김*중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새꽃로	137,500
493	분묘	19980611 -004	18100013	이씨	이*오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원신2길	137,5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명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494	분묘	19980611-005	18100014	박정희	오*양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외미로	137,500
495	분묘	19980613-005	18100028	노영효	박*애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방화3동	137,500
496	분묘	19980614-003	18100031	백설화	이*경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양지로	137,500
497	분묘	19980615-007	18100042	김양진	이*섭	2023-08-18	주소불명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37,500
498	분묘	19980616-003	18100046	김형순	김*석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고척2동	137,500
499	분묘	19980618-001	18100052	박경우	박*철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청석로	137,500
500	분묘	19980620-002	18100056	박호복	장*호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6번길	137,500
501	분묘	19980620-006	18100059	정해철	정*수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강서로17길	137,500
502	분묘	19980621-005	18100067	김순곤	이*철	2023-08-21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도봉로114길	137,500
503	분묘	19980625-011	18100084	서서운	김*차	2023-08-18	폐문부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하거마3길	137,500
504	분묘	20130611-001	2001283	김한섭	김*곤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장곡로	228,250
505	분묘	19680722-008	400373	김홍배	김*종	2023-08-18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8길	2,336,400
506	분묘	19700820-022	400594	김형남	김*철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4,686,960
507	분묘	19720307-007	600781	박영찬	박*수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양지로	235,060
508	분묘	19901229-014	302165	노수계	노*문	2023-08-17	수취인불명	서울 마포구 동교동 113-78	280,370
509	분묘	19960925-008	18070471	길준근	길*종	2023-08-21	폐문부재	경기 양평군 북한강로1288	610,500
510	분묘	19961216-001	11060438	김만식	김*열	2023-08-18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126	283,200
511	봉안	20030204-029	73-03-19363	김영수	김*현	주소불명(발송불가)			100,000
512	봉안	20030223-002	73-03-20033	표옥순	유*섭	주소불명(발송불가)			100,000
513	봉안	20130203-001	11-02-02657	김재식	김*근	주소불명(발송불가)			25,000
514	봉안	20130222-005	11-06-03347	김병옥	김*현	주소불명(발송불가)			25,000
515	봉안	19980606-013	11-18-10049	이경월	이*진	주소불명(발송불가)			100,000
516	봉안	19980626-016	12-12-11720	이상례	김*수	주소불명(발송불가)			100,000
517	봉안	20080619-004	63-01-15585	강봉석	강*우	주소불명(발송불가)			75,000
518	분묘	19980620-007	18100061	유영근례	유*환	주소불명(발송불가)			137,5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589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3. 9. 14. ~ 2023. 9. 28.(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의신청 기간 : 최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후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납세번호	차량번호	차종	주차장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자	납부자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총6건															
1	20219255	0000473392142012 0230525003775	161허4302	G4 렉스턴	구파발역	2023-04-15	14:13	2023-04-15	14:42	1,000	1,000	0	장O수	경기도포천시영중면양문로	수취인불명	2023-09-19
2	20219440	0000473392142012 0230625004137	09하5498	K7	종묘	2023-05-04	12:52	2023-05-04	13:39	4,000	4,000	0	양O희	경기화성시경기대로990	수취인불명	2023-09-19
3	20219615	0000473392142012 0230625004074	49버5898	E220 d Coupe	사당노외	2023-05-07	19:50	2023-05-08	04:16	40,800	40,800	0	안O진	경기화성시지산1길25-3	수취인불명	2023-09-19
4	20219772	0000473392142012 0230625003194	06수4770	Model Y Long Range	세종로	2023-05-14	13:24	2023-05-14	14:18	2,300	2,300	0	리드(박O홍)	서울강북구오현로56	수취인불명	2023-09-19
5	20219802	0000473392142012 0230625002927	160허8100	K8 하이브리드	마포유수지	2023-05-21	20:05	2023-05-21	23:11	8,300	8,300	0	주식회사 제이테크놀러지	경기군포시공단로140번길 46	수취인불명	2023-09-19
6	20219902	0000473392142012 0230625002033	160허8100	K8 하이브리드	잠실역	2023-05-19	19:05	2023-05-20	05:18	15,000	15,000	0	주식회사 제이테크놀러지	경기군포시공단로140번길 46	수취인불명	2023-09-1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11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내역

연번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비고
1	합병된 법인	110716	(주)삼정전기통신 김상민 110111-0335863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중앙로 15(신림동)	23. 9. 6.	분할합병
	합병된 법인	-	주식회사 두배라 김왕섭 110111-269702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19길 15(개화동)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 법인	110716	주식회사 두배라 김왕섭 110111-269702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19길 15(개화동)		
2	합병된 법인	530110	주식회사 태성시스템 현기섭 170111-0345282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농공신동길 17	23. 9. 6.	분할합병
	합병된 법인	-	키엠컴아이엔씨 주식회사 이현지 180111-106223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73, 4층(역삼동)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 법인	530110	키엠컴아이엔씨 주식회사 이현지 180111-106223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73, 4층(역삼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8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12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874	23. 9. 6.	주식회사 비에이치에스 최은선 110111-4357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15, 201호(인의동, 세일빌딩)
2	203875	23. 9. 6.	주식회사 브이티스트렙 한창해 110111-6440369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에이동 20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 지식산업센터)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8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21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표 등 · 초본상) 및 본점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9. 14. ~ 2023. 9. 28.(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체납내역 및 압류에 관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

<table>
<tr><td rowspan="2">고객번호</td><td rowspan="2">급수설비 소재지</td><td colspan="5">체납내역</td><td rowspan="2">등기우편
송달내역</td><td rowspan="2">비 고</td></tr>
<tr><td>과 목</td><td>체납납기</td><td>체납횟수</td><td>체납액</td><td>예고서상
납부기간</td></tr>
<tr><td>000233884</td><td>종로구 창덕궁3길 47-5
(원서동 76-37)</td><td>수도요금</td><td>2022. 3. 31. 외 8납기</td><td>9회</td><td>1,146,540원</td><td>2023. 8. 4.
~ 2023. 8. 18.
2023. 8. 21.~
(당초 압류예정일)</td><td>·등기번호 :
1152101209160
·반송사유 :
폐문부재</td><td></td></tr>
<tr><td rowspan="2">압류물건</td><td rowspan="2">압류물건 소재지</td><td colspan="3">압류물건 소유자</td><td rowspan="2">압류액</td><td rowspan="2">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td></tr>
<tr><td>성 명</td><td>주민등록번호</td><td>주민등록주소지</td></tr>
<tr><td>부동산
(건물)</td><td>종로구 창덕궁3길 47-5
(원서동 76-37)</td><td>이*례</td><td>520116-2******</td><td colspan="2">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3길 (봉천동)</td><td>1,146,540원</td><td>2023. 10. 4. ~</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고객번호</td><td rowspan="2">급수설비 소재지</td><td colspan="5">체납내역</td><td rowspan="2">등기우편
송달내역</td><td rowspan="2">비 고</td></tr>
<tr><td>과 목</td><td>체납납기</td><td>체납횟수</td><td>체납액</td><td>예고서상
납부기간</td></tr>
<tr><td>007188088</td><td>성북구 삼양로9길 4-15
(길음동 1170-13)</td><td>수도요금</td><td>2021. 10. 31. 외 18
납기</td><td>19회</td><td>584,240원</td><td>2023. 8. 4.
~ 2023. 8.
31.
2023. 9.
1.~
(당초
압류예정일)</td><td>‣등기번호 :
1152101207021
‣반송사유 :
폐문부재</td><td></td></tr>
<tr><td rowspan="2">압류물건</td><td rowspan="2">압류물건 소재지</td><td colspan="3">압류물건 소유자</td><td rowspan="2">압류액</td><td rowspan="2">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td></tr>
<tr><td>성 명</td><td>주민등록번호</td><td>주민등록주소지</td></tr>
<tr><td>부동산
(건물)</td><td>성북구 삼양로9길 4-15
(길음동 1170-13)</td><td>장*종</td><td></td><td colspan="2">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9길 (길음동)</td><td>584,240원</td><td>2023. 10. 4. ~</td></tr>
</table>

3.「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재산압류예고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 발생일(2023. 9. 28.)이 납부기한임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예정일 전 체납액을 납부하실 의사가 있으신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주형 주무관(☎ 02-3146-2107)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22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등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업 체 명 : 주식회사 블루텍

2. 대 표 자 : 하준수(1965. 09. 22.)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3길 101-9, 101동 비201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26호

6. 등록취소일자 : 2023. 8. 10.

7.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23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소 소재지
1	㈜켐커렌트	제6110000-20-2023-00017호	' 23.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1, 8층 814호(당산동3가,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	㈜그리너리	제6110000-20-2023-00018호	' 23.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4,5,6,8,17,19층(여의도동, 오투타워)
3	㈜에코 프런티어	제6110000-20-2023-00019호	' 23.8.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5, 5층 502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2차)
4	시알시피㈜	제6110000-20-2023-00020호	' 23.8.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두산더랜드타워 A동 313호 (마곡동)
5	리켐프로㈜	제6110000-20-2023-00021호	' 23.8.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30, 6층 601호(양평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3)
6	안진회계법인	제6110000-20-2023-00022호	' 23.8.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 원아이에프씨빌딩 9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2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를 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2.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 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4. 대상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1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부서
1	(사)한국자전거미캐닉협회서울본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9-1번지 4층	이상훈	2011-09-14	보행자전거과

5. 처분(말소) 일자: 2023. 9. 7.
6. 공고 및 게시장소: 서울시보 및 서울시청 누리집
7. 기타 사항
   ○ 동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서울특별시청 보행자전거과(담당: 이경주, ☎02-2133-241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28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계획 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을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계획
가.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 예정 종별	지정 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 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악학궤범 (樂學軌範)	9권 3책	25×30	1743년 (영조 19)	서초구 (국립국악원)
	채용신 필 오계엽 초상 (蔡龍臣筆 吳啓曄 肖像)	1점	105.5×54.8 (초상 부분) 123.0×62.0 (전체 족자)	1928년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
	내교인 · 소내교인 (內敎印 · 小內敎印)	2점	내교인: 너비 4×4, 높이 5.5 소내교인: 너비 2×2, 높이 2.9	조선 후기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국유])

나. 예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함.

■ 유형문화재

【악학궤범(樂學軌範)】

『악학궤범』은 조선 성종 당시까지의 음악 이론은 물론이거니와 아악, 당악, 향악의 설행을 위해 필요한 악조(樂調), 악기 진설 방법과 정재 연행 방식 및 소요 악기나 의물, 복식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궁중 음악의 필수적인 사항들을 도설과 함께 수록한 최고의 악서(樂書)이다. 이를 통해 실제로 전란을 겪은 조선에서는 다시금 궁중 예악을 재현할 수 있었다. 『악학궤범』의 가치는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문학, 미술, 복식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려가요의 가사를 수록하고 있어 15세기의 악장문학(樂章文學) 연구의 중요 자료가 되며, 악기, 의물, 복식이 도설되어 있어 미술사 및 복식사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문헌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2022년 국립국악원의 『악학궤범』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과학기술사 분야에 등록되었듯이 이는 도량형, 율관 제작법, 악기 제작법 등 전통 음악 속 다양한 과학기술이 『악학궤범』에 체계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었다.

국립국악원 『악학궤범』은 영조의 '어제서문' 이 수록된 판본으로 1743년(영조 19)에 간행된 것이다. 이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지만, 궁중음악을 실제적으로 다루었던 장악원의 관리들과 악공들의 손때가 묻었던 국립국악원 소장본은 그 자체로 전승 유래가 명확한 유일 판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채용신 필 오계엽 초상(蔡龍臣筆 吳啓曄 肖像)】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채용신 필 오계엽 초상>의 주인공 오계엽(吳啓曄, 1857-?)은 호가 영화당(迎和堂)이고 고종 대인 1903년 중추원 의관을 지냈으며, 최익현 등과 독립운동을 벌였다. 이 그림은 한 점 내리닫이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상화의 주인공은 호피를 덮은 의자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오사모에 단령을 착용하고 있는데, 가슴에는 당상관을 나타내는 쌍학흉배가 붙어 있고, 허리에는 삽은대를 둘렀다. 두 손으로 쥘부채를 들고 있는데 불수 모양의 선추가 분홍색 술에 달려있다. 무릎 사이로는 목재 호패가 붙은 풍성한 붉은색 술이 보인다. 바닥에는 화려한 화문석이 깔려있다. 얼굴, 의복, 장신구 등의 묘사는 매우 정교하며, 화려한 색채를 다양하게 구사했으며, 서양화법에 해당하는 명암법과 음영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매우 실감 나는 초상화가 되었다.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채용신 필 오계엽 초상>은 20세기 초 전라도 정읍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오계엽의 모습을 알려주며, 의친왕 이강의 찬문이 적혀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또한 이 시기 초상화가로서 이름이 높던 채용신이 그린 것으로, 정교하고 화려하여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제작 당시의 원형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로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내교인 · 소내교인(內敎印 · 小內敎印)】

내교인(內敎印) · 소내교인(小內敎印)은 조선시대 왕비가 공무에 사용한 인장으로, 내명부 수장으로서 왕비의 지위와 역할을 비롯하여 왕실의 인제(印制), 전각(篆刻), 금속공예 등 왕실 문화를 보여주는 유물로서 가치가 높다. 조사 대상은 2018년 서울 종로 통의동(70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에서 출토되었으며, 2020년 서울시로 위임(한성백제박물관으로 재위임)되었다. 조사 대상은 대소(大小) 내교인(內敎印) 2과로 형태가 유사하며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 재질은 숙황동이며, 전체적으로 부식이 있다. 내교인은 사자를 형상화한 것으로 솟은 꼬리와 목까지 늘어진 귀에는 세밀한 선조로 세부 묘사가 되어 있다. 소내교인도 유사한 형상인데, 사자의 고개가 정면이 아닌 약간 위를 향한 모습이다. 소내교인은 화재 등의 고열로 인한 녹아내림과 뒤틀림 현상이 보인다.

조사 대상 <내교인 · 소내교인(內敎印 · 小內敎印)은 출토유물로서 제작과 전승 경위가 분명하고, 『보인부신총수』의 도설 비교를 통해 조선 후기 왕비 결제 인장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유물이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2. 의견 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① 전화 : (02) 2133-2632

② 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4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악학궤범】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악학궤범(樂學軌範)
수 량	9권 3책	규 격 (cm)	25×30
재 료	종이	소유자	국립국악원
시 대	1743년(영조 19년)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국립국악원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 『악학궤범』(樂學軌範)은 1493년(성종 24)에 예조판서 성현(成俔), 장악원 제조 유자광(柳子光), 장악원 주부 신말평(申末平), 전악 박곤(朴棍) · 김복근(金福根) 등이 왕명을 받아 장악원에 있던 의궤와 악보가 오래되어 헐고, 남은 것들도 모두 엉성하고 틀려, 그것을 수교(讎校)하기 위해 편찬한 새로운 악규책(樂規冊)이라 할 수 있다.

○ 『악학궤범』은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1493년 초간(初刊) 이래 임진왜란(1592) 이후 1610년(광해군 2) 재간(再刊), 병자호란(丙子胡亂) 이후 1655년(효종 6) 삼간(三刊), 1743년(영조 19)에 네 번째로 복간(復刊)된다.

판본		소장처	소장 번호
초간본(1493)		일본 나고야(名古屋) 소재 봉좌문고(蓬左文庫)	
재간본(1610)	간지 미상 (太白山史庫藏)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貴1807-v.1-3
	간지 미상(영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1812-v.3(7/9)
	간지 미상 (五臺山史庫藏)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1854-v.1-3
	간지 미상 (五臺山史庫藏) 추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3-588(4/6)
	간지 미상(영본)	고려대학교 도서관	만송 貴 312A 1 만송 貴312 3
삼간본(1655)	간지 미상 (江都史庫藏)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91-v.1-3
	간지 미상 (五臺山史庫藏)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1817-v.1-3
	간지 미상 (太白山史庫藏)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1818-v.1-3

판본		소장처	소장 번호
	간지 미상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11677-v.1-3
사간본(1743) 사간본(1743)	간지 미상	국립국악원	
	간지 미상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85-4

위 표와 같이 초간본(初刊本)은 일본 나고야(名古屋) 소재 봉좌문고(蓬左文庫)에 소장되어 있고, 1610년 재간본은 태백산(太白山)·오대산(五臺山)·마니산(摩尼山)·묘향산(妙香山)의 사고에 분장되었는데, 그중 태백산본(太白山本)과 오대산본(五臺山本)이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奎章閣圖書館)에 소장되어 있고, 다른 오대산본이 또 장서각(藏書閣)에 남아있다. 1655년 삼간본은 강도 사고본(江都史庫藏), 오대산 사고본, 태백산 사고본이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743년 사간본은 국립국악원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악학궤범』은 옛 장악원 소장본으로 이왕직 아악부(李王職雅樂部)를 거쳐 국립국악원으로 전해진 것이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조선총독부 고서 분류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조선총독부 소장이었던 것이 이관된 것으로 보인다.
국립국악원『악학궤범』은 한지 목판본이다. 사주쌍변(四周雙邊)이며, 반엽광곽(半葉匡郭)의 크기는 27.4×18.7cm이다. 유계(有界)로 11행(行) 24자(字)며, 주(注)는 쌍행(雙行)을 쓴다. 판구(版口)는 흑구(黑口)이며, 판심(版心)은 내향(內向) 3엽화문어미(葉花紋魚尾)를 가진다. 전체 크기는 38.5×25cm이며, 5침 선장본이다.

○ 국립국악원 소장『악학궤범』은 1743년 악서청(樂書廳)을 설립하여 재간본인 1610년 간행된 광해본을 저본으로 삼아 9권 3책으로 간행된 것이다. 이전 판본과 다른 점은 영조의 '어제악학궤범소서'(御製樂學軌範小序), '어제하황은삼장'(御製荷皇恩三章), '하황은족자도'(荷皇恩簇子圖)를 권두에 새로 추가하였고, 앞쪽에 위치하던 성현의 서문을 본문 뒤로 옮겼다. 따라서 기존 판본과는 다르게 '어제악학궤범소서', '어제하황은삼장'(御製荷皇恩三章), '하황은족자도'(荷皇恩簇子圖), 목록, 본문, 서문, 발문 순서로 구성되었다.

○『악학궤범』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본다. 서문에서는 예악정신에 기초해서 음악의 생성(生成), 중요성, 효용성, 국가적 필요성 등을 피력하고 있다.
권1은 12율과 5음으로 구성된 60조 이론과 12율 4청성 이론, 율관 산출 및 응기 이론, 12율 위장 및 반지 상생 이론, 변치·변궁 이론, 재료에 따른 악기 분류인 팔음 이론, 당악(唐樂)의 28조 이론 및 삼궁(三宮) 및 삼대사강신악조(三大祀降神樂調)', 향악 악조(樂調)를 설명한 '악조총의(樂調總義)', 세조가 창안하여 기보(記譜) 방식에 따른 '오음배속호(五音配俗呼)' 및 공척보(工尺譜)에 쓰이는 음의 음고를 향악기인 대금(大笒)의 음으로 예시한 '12율배속호(十二律配俗呼)'가 수록되었다.
권2는 '아악진설도설(雅樂陳設圖說)'과 '속악진설도설(俗樂陳設圖說)'로 성종 당시의 여러 제향 및 조회·연향 시 악기 진설법을 이전의 오례의(五禮儀)와 세종 때의 것들과 비교하고 있다. 제향에 쓰이는 아악의 악보와 악장(樂章), 성종 당시 조회·연향에 쓰이는 음악의 절차·곡목·춤 명칭을 세종 때의 회례연의(會禮宴儀)와 비교·기술하였다.
권3에서는『고려사』악지의 당악정재(唐樂呈才)와 속악정재(俗樂呈才)를 정리하고 있다. 권4에서는 성종조 당악정재도의(唐樂呈才圖儀)를 소개하고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없었던 박(拍)이 추가되어 변화된 구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권5에서는 성종대 향악정재도의(鄕樂呈才圖儀)를 수록하였다. 향악정재를 도식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동동〉, 〈정읍〉, 〈처용가〉, 〈진작(眞勺)〉 등 향악정재에 사용된 향악의 한글 가사도 수록하고 있다.
6권은 아부악기도설(雅部樂器圖說), 7권은 당부악기도설(唐部樂器圖說), 향부악기도설(鄕部樂器圖說)이다.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 악기 도설을 제시하고 그 유래, 제작 재료, 악기 치수 등 악기와 관련된 제반 내용을 정리하였다.
8권은 당악정재의물도설(唐樂呈才儀物圖說)과 향악정재악기도설(鄕樂呈才樂器圖說)이

다. 당악정재의물도설은 당악정재에 사용하는 의물과 복식을, 향악정재악기도설은 향악정재에 사용되는 의물과 복식을 기록하고 있다. 9권은 관복도설(冠服圖說)이다. 악사(樂師)와 악공(樂工)들이 입었던 관복과 처용과 무동(舞童) 등이 입었던 복식을 도설로 제시하고 그 치수를 기록하였다.

책	권	내용	
一冊	卷之一	六十調, 時用雅樂十二律七聲圖, 律呂隔八相生應氣圖說, 十二律圍長圖說, 在位圖說, 五音圖設, 八音圖設, 五音律呂十二八調圖說, 三宮, 三大祀降神五音配俗乎, 十二律配俗乎	
	卷之二	雅樂陳設圖說	五禮儀登歌, 五禮儀軒歌, 時用登歌, 時用軒架, 世世宗朝會禮宴軒架, 文舞, 武舞
		俗樂陳說圖說	五禮儀宗廟永寧殿登歌, 五禮儀宗廟永寧殿軒架, 時歌, 時用宗廟永寧殿軒架, 保太平之舞, 定大業之舞, 樂, 文昭殿親行殿庭樂, 文昭殿攝行殿上樂, 文昭殿攝殿親行殿上樂, 延恩殿親行殿庭樂, 延恩殿攝行殿上樂庭樂, 昭敬殿殿上樂, 昭敬殿殿庭樂, 纛祭, 五禮儀軒歌, 五禮儀鼓吹, 時用殿庭鼓吹, 殿後鼓吹, 前部正殿禮宴女妓樂工排立, 時用雅部祭樂, 時用俗部祭享樂, 世宗朝會禮宴儀, 世宗朝隨月用律
	卷之三	高麗史樂志 唐樂呈才	獻仙桃, 壽延長, 五羊仙, 抛毬樂, 蓮花臺
		高麗史樂志 俗樂呈才	舞鼓, 動動, 無导
二冊	卷之四	時用唐樂 呈才圖說	獻仙桃, 壽延長, 五羊仙, 抛毬樂, 蓮花臺 , 金尺, 受明命, 荷皇恩, 聖澤, 六花隊, 曲破
	卷之五	時用鄕樂 呈才圖說	保太平, 定大業, 鳳來儀, 牙拍, 響鈸, 舞鼓, 鶴舞, 設, 敎坊歌謠, 文德曲
	卷之六	雅部樂器圖說	特鐘, 特磬, 編鐘, 編磬, 建鼓, 朔鼓, 應鼓, 雷鼓, 靈靈鼗, 路鼗, 鼗, 節鼓, 晋鼓, 柷, 敔, 管, 籥, 和, 笙塤, 篪, 瑟, 琴, 纛, 旌, 麾, 照燭, 錞, 鐲, 鐃, 鐸, 翟, 籥, 干, 戚
三冊	卷之七	唐部樂器圖說	方響, 拍, 敎坊鼓, 月琴, 仗鼓, 唐琵琶, 奚琴, 大箏, 觱篥, 洞簫, 太平簫
		鄕部樂器圖說	玄琴, 鄕琵琶, 伽耶琴, 大笒, 小管子, 草笛, 鄕觱篥
	卷之八	唐樂呈才儀物圖說	竹竿子, 引入代, 龍扇, 鳳扇, 旌節, 雀扇, 尾扇, 蓋毬附), 仙桃盤(卓子附), 金尺, 簇子
		蓮花臺服飾圖說	蛤笠(黃紅薔薇附), 流蘇, 結神, 丹衣, 裳, 襪裙, 帶
		定大業呈才 儀物圖說	甲, 胄, 劍, 槍, 弓(矢附), 大角, 紅大纛, 螺, 大鼓(金附), 黃龍旗, 靑龍旗, 朱雀旗, 白虎旗, 玄武旗,
		鄕樂呈才樂器圖說	牙拍, 響鈸, 舞鼓, 銅鈸, 鶴, 沈香山, 池塘板, 纛祭槍
	卷之九	冠服圖說	僕頭, 介幘, 進賢冠, 皮弁, 武弁, 烏冠, 草笠, 頭巾衫, 緋鸞衫, 紅錄紬衣, 白紬中單, 紅錦臂韝, 緋白大袴, 赤裳, 黑團領, 單帖裏, 白紬抹帶, 金銅錄革帶, 白布襪, 黑皮靴, 烏皮履, 黃畵甲, 豹文大口袴, 起
		處容冠服圖說	紗帽(假面及牧丹花桃實枝耳環附), 衣, 天衣, 吉慶

<table>
<tr><td></td><td>
<table>
<tr><td></td><td></td><td></td><td>帶, 鞋</td></tr>
<tr><td></td><td></td><td>舞童冠服圖說</td><td>銅蓮花冠(假面附), 會禮宴時芙容冠, 公宴時芙容冠裳, 纛祭服 防衣, 纏帶, 回鉸, 雲鞋</td></tr>
<tr><td></td><td></td><td>女妓服飾圖說</td><td>箴, 流蘇(俗稱마리사니), 釵, 臺腰(首花附), 丹衣, 帶, 黑長衫, 鞋兒, 襪裙, 藍赤古里</td></tr>
</table>
2. 원형 유지 정도
ㅇ 국립국악원『악학궤범』의 표지는 낡은 편이지만, 9권 3책의 내용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이는 국립국악원의『악학궤범』은 장악원에서 사용되던『악학궤범』이 이왕직아악부를 통해 현재까지 내려온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궁중음악의 전승을 위해 활용되었던 것임을 말해준다. 1988년 국립국악원에서『韓國音樂學資料叢書 제26집 영조판 악학궤범』으로 영인 발간한 바 있는데, 당시 영인되었던 표지와 동일한 모습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td></tr>
<tr><td>조사 결과</td><td>3. 지정 여부: 可

ㅇ『악학궤범』은 조선 성종 당시까지의 음악 이론은 물론이거니와 아악, 당악, 향악의 설행을 위해 필요한 악조(樂調), 악기 진설 방법과 정재 연행 방식 및 소요 악기나 의물, 복식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궁중 음악의 필수적인 사항들을 도설과 함께 수록한 최고의 악서(樂書)이다. 이를 통해 실제로 전란을 겪은 조선에서는 다시금 궁중 예악을 재현할 수 있었다.

ㅇ『악학궤범』의 가치는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문학, 미술, 복식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려가요의 가사를 수록하고 있어 15세기의 악장문학(樂章文學) 연구의 중요 자료가 되며, 악기, 의물, 복식이 도설되어 있어 미술사 및 복식사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문헌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2022년 국립국악원의『악학궤범』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과학기술사 분야에 등록되었듯이 이는 도량형, 율관 제작법, 악기 제작법 등 전통음악 속 다양한 과학기술이『악학궤범』에 체계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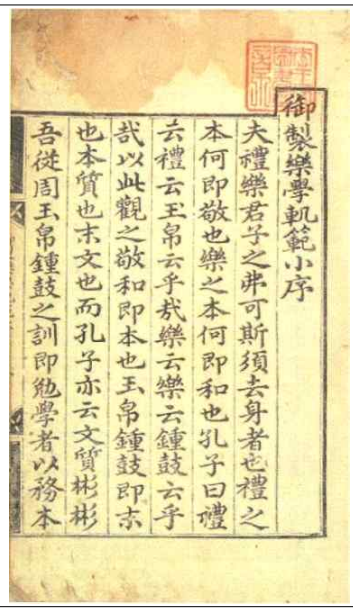
ㅇ 국립국악원『악학궤범』은 영조의 ‘어제서문’이 수록된 판본으로 1743년(영조 19)에 간행된 것이다. 이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지만, 궁중음악을 실제적으로 다루었던 장악원의 관리들과 악공들의 손때가 묻었던 국립국악원 소장본은 그 자체로 전승 유래가 명확한 유일 판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td></tr>
</table>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표지



'어제악학궤범소서' 부분



『악학궤범』 권1 '변율' 부분



【채용신 필 오계엽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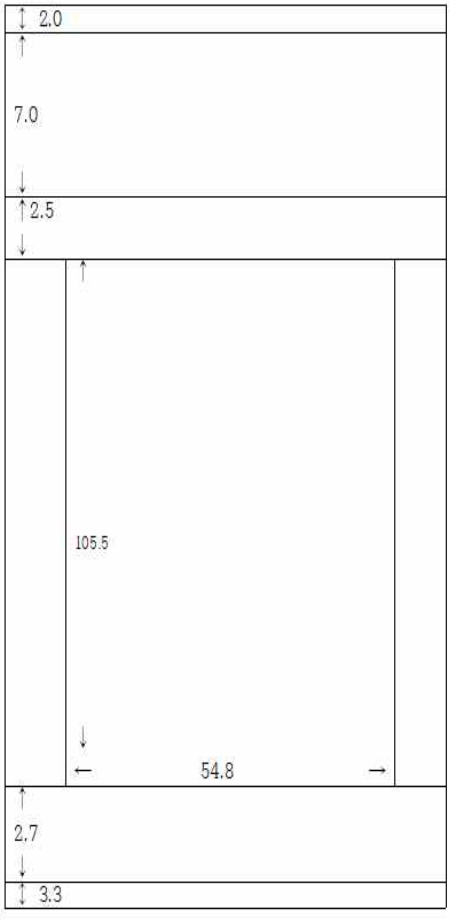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채용신 필 오계엽 초상 (蔡龍臣筆 吳啓曄 肖像)
수 량	1점	규 격 (㎝)	105.5×54.8 (초상 부분) 123.0×62.0 (전체 족자)
재 료	비단에 채색	소유자	서울공예박물관
시 대	1928년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 현황 한 점 내리닫이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상회장과 하회장은 가운데 꽃무늬가 있는 마름모 격자문의 어두운 남색 비단을 사용했는데, 상회장은 마름모가 세로로 길게, 하회장은 가로로 길게 보이도록 했다. 상단과 좌우의 변아(邊兒)는 별도의 천을 붙이지 않고 초상화 부분과 같은 비단에 먹선으로 네모난 윤곽선을 둘러친 후 흰색을 칠해서 표현했다. 상단 변아에는 국화문과 팔보문을 흰 물감으로 그렸다. 좌측 변아에는 국화문, 팔보문에 전서체로 수(壽), 복(福), 강(康)을 흰 물감으로 그렸고, 우측 변아에는 국화문, 팔보문에 전서체로 복(福), 수(壽), 녕(寧)을 그렸다. 하단에는 변아가 없다. 족자 상축의 단면은 반달 모양이고, 하축은 원통형인데 둘 다 양쪽 마구리는 색지를 감싼 후, 붉은 비단으로 마감했다. 상축 전면에는 꽃모양 금구가 두 개 붙어 있는데, 가운데 금색 금속으로 꽃술을 덧붙였다. 이 꽃술 모양 금구는 하축 양옆에도 하나씩 부착되어있다. 화면 우측 상부에는 가는 먹선으로 이중의 테두리를 두르고 그 안에 묵서로 “迎和堂吳公影幀讚” 이라는 묵서가 있으며, 우측 하부에는 나뭇잎 모양의 유인(遊印)을 찍고 “戊辰五月上澣從二品蔡石芝摹寫” 라는 묵서를 적은 후 “蔡龍臣章” 이라는 주문방인을 찍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어진을 그린 화사였으며, 한일합방 후 정읍에서 활동하며 항일우국지사의 초상화를 많이 그린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이 1928년 5월에 제작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화면 좌측 상부에는 “名垂竹帛遺像生輝 春晝雪夜勉鉢勉衣 義王春菴” 이라는 찬문과 백문방인 “春菴” 과 주문방인 “李堈之印” 을 찍었다. 이것은 고종의 다섯째 아들인 의친왕 이강(義親王 李堈, 1877~ 1955)이 쓴 것이다. 찬문의 해석은 “그 이름 청사에 기록되시니 그 화상에 광채가 가득하네, 봄 낮과 눈 내리는 밤에 줄곧 학문의 진수를 계승하려 힘쓰네. 의왕 이강.” 이다. 서체로 보아 우측 상부 표제도 이강이 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술 사이 삐져나온 호패에는 주서로 “入仕” 라고 적혀있다. ■ 특징 및 평가 초상화의 주인공은 호피를 덮은 의자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오사모에 단령을 착용하고 있는데, 가슴에는 당상관을 나타내는 쌍학흉배가 붙어 있고, 허리에는 삽은대를 둘렀다. 두 손으로 쥘부채를 들고 있는데 불수 모양의 선추가 분홍색 술에 달려있다. 무릎 사이로는 목재 호패가 붙은 풍성한 붉은색 술이 보인다. 바닥에는 화려한 화문석이 깔려있다. 얼굴, 의복, 장신구 등의 묘사는 매우 정교하며, 화려한 색채를 다양하게 구사했으며, 서양화법에 해당하는 명암법과 음영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매우 실감나는 초상화가 되었다.

	이 초상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오계엽(吳啓曄, 1857-?)으로 호는 영화당(迎和堂)이며 고종대인 1903년 중추원 의관을 지냈고, 최익현 등과 독립운동을 벌였다. 1928년 전라도 정읍에서 유림들이 발의하여 하청사(河淸祠)를 세우고 최익현(崔益鉉), 임병찬(林炳鑽), 오계엽(吳啓曄), 박재규(朴在珪), 박재구(朴在救)를 모셨으며, 이듬해 이들의 항일행적을 기록한 동의기념비(同義紀念碑)를 세웠는데, 그 글씨를 의친왕 이강이 썼다. 최익현을 따랐던 임병찬(林炳贊, 1851-1916)을 1911년 채용신이 그린 초상화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의친왕 이강의 찬문이 적혀있다. 따라서 두 초상화가 함께 하청사에 봉안되어 있었고, 이곳을 방문한 이강이 찬문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 하청사는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다. 2. 원형 유지 정도 이 작품은 2018년 7월 케이옥션에 출품되었는데, 당시에는 화면에 다소 오염이 있었으며, 족자가 낡아서 부분적인 손상이 있었다. 이를 현 소장처에서 2019년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는데, 족자의 원형은 변함없이 그대로 둔 채로 수리했다. 현재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조사 결과	3. 지정 여부 : 가 - 20세기 초 전라도 정읍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오계엽의 모습을 알려주며, 의친왕 이강의 찬문이 적혀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 이 시기 초상화가로서 이름이 높던 채용신이 그린 것으로, 정교하고 화려하여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 제작 당시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 참고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김동효 초상〉(1926년)과 매우 비슷한 형상을 보여준다. - 따라서 시 유형문화재로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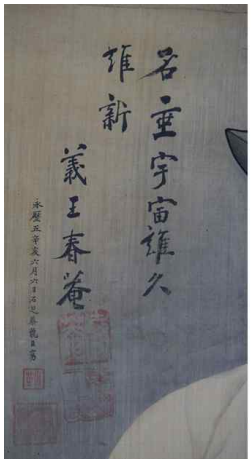


<오계엽 초상화 작품 크기 (단위 cm) >
족자 123.0×62.0 (상축 63.8)
초상 부분 105.5×54.8


遯和堂吳公影幀讚
戊辰五月上澣從二品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兼知義禁府事世子師傅義興君春菴書
名垂竹帛遺像生輝春
畫雪夜勉鉢勉衣
義王春菴


김동효 초상


遯軒林公影幀讚
山嶽正氣忠義一身
名垂宇宙誰人作新
義王春菴


名垂宇宙誰人作新
義王春菴


遯軒林公影幀讚
山嶽正氣忠義一身

<임병찬 초상>

【내교인 · 소내교인】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내교인 · 소내교인 (內敎印 · 小內敎印)
수 량	2점	규 격 (㎝)	내교인: 너비 4×4, 높이 5.5 소내교인: 너비 2×2, 높이 2.9
재 료	숙황동(熟黃銅)	소유자	국유 (관리자: 한성백제박물관)
시 대	조선 후기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한성백제박물관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및 조사 내용

○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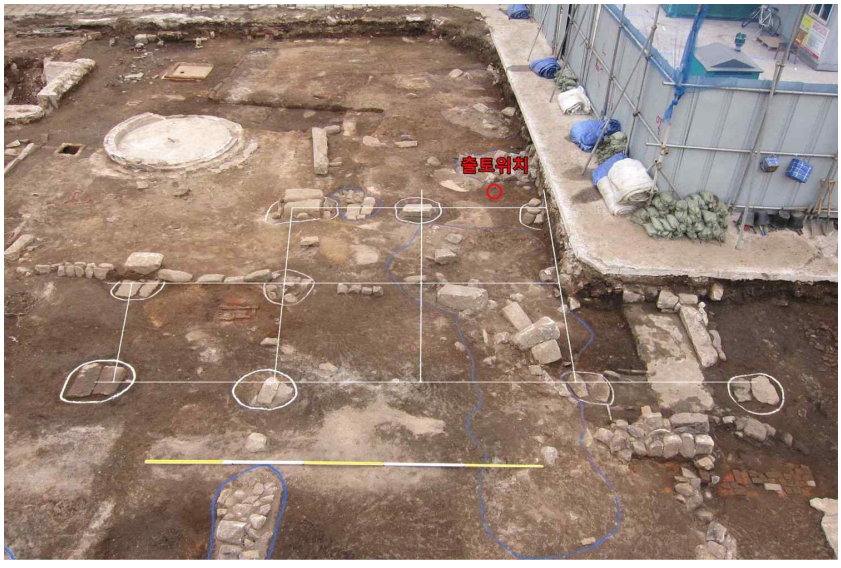
	내교인				소내교인			
	『보인부신총수』	환산(2.76㎝)	실측	편차	『보인부신총수』	환산(2.76㎝)	실측	편차
方	1촌 5푼	4.1㎝	4.1㎝	0	7푼 2리	1.98㎝	1.9㎝	0
臺高	5푼	1.4㎝	1.7㎝	+0.3㎝	2푼 5리	0.7㎝	0.9㎝	+0.2㎝
上臺高	1푼	0.3㎝	0.3㎝	0	8리	0.2㎝	0.1㎝	-0.1㎝
鈕體高	9푼	2.5㎝	3.7㎝	+1.2㎝	4푼 5리	2.5㎝	1.9㎝	-0.6㎝
頭高	4푼	1.1㎝	1.9㎝	+0.8㎝	1푼 5리	1.2㎝	0.9㎝	-0.3㎝
鈕長	1촌 5푼	4.1㎝	3.8㎝	-0.3㎝	7푼	1.9㎝	1.9㎝	0
鈕廣	7푼	1.9㎝	1.8㎝	-0.1㎝	4푼	1.1㎝	1.1㎝	0
刻深	2푼	0.6㎝	0.2㎝	-0.4㎝	1푼 5리	0.4㎝	0.1㎝	-0.3㎝
郭廣	1푼	0.3㎝	0.2㎝	-0.1㎝	5리	0.13㎝	측정불가 (변형)	

○ 내교인 2점의 현상

유물 명칭	내교인(內敎印)·소내교인(小內敎印)
수 량	각 1점
재 질	숙황동(熟黃銅)
뉴 식	사자뉴(獅子鈕)
크 기	내교인: 너비 4×4㎝, 높이 5.5㎝ 소내교인: 너비 2×2㎝, 높이 2.9㎝
중 량	내교인: 318g(부식물 제거 전) 소내교인: 41.41g(부식물 제거 전)

사 진	 내교인	 소내교인

○ 2018년 서울 종로 통의동(70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에서 출토되었으며, 2020년 서울시로 위임(한성백제박물관으로 재위임)되었다. 지정 신청 대상은 대소(大小) 내교인(內敎印) 2과로 형태가 유사하며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 재질은 숙황동이며, 전체적으로 부식이 있다.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내교인이 출토된 통의동 70번지 서측의 '건물지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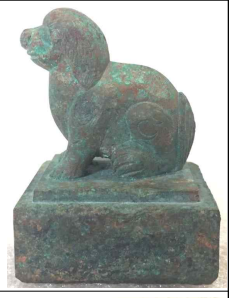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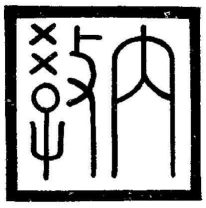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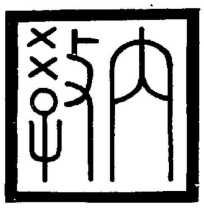
○ '건물지9'에서는 '내교(內敎)' 인장과 '소내교(小內敎)' 인장 1쌍이 출토되었다. 내교인은 2단으로 구성된 정사각형의 인신(印身) 위에 뒷다리는 구부리고 앞다리는 곧게 펴 정면을 보고 있는 동물 형상의 인뉴(印鈕)가 얹혀 있다. 발굴 당시 신문기사에서 이 동물을 '충견(忠犬)'으로 추정하였으나 장서각 소장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K3-566)의 기록을 통해 사자로 확정할 수 있다. 솟은 꼬리와 목까지 늘어진 귀에는 세밀한 선조로 세부 묘사가 되어 있다. 특히 앞다리와 뒷다리에는 각각 화염문(火炎文)이 시문되어 있다.

○ 소내교인도 유사한 형상인데, 사자의 고개가 정면이 아닌 약간 위를 향한 모습이다. 인면에는 소전(小篆)으로 각각 '내교(內敎)'라는 인문이 새겨져 있다. 숙황동으로 제작되었으나 부식이 심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형이 가해진 상태이다. 화재 등의 고열로 인한 녹아내림과 뒤틀림 현상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전하는 내교인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대한제국기 대·소내교인 2점이 알려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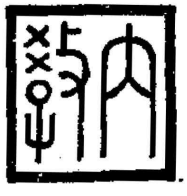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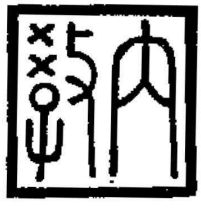
○ 출토된 두 인장은 지하에 오래 묻혀 부식이 심하고, 특히 소내교인의 경우 인문(印文)과 곽(郭)이 뭉개지고 인대(印臺)가 뒤틀리는 등 매장 이전 화재 등으로 인한 변형을 보인다.

○ 대한제국기에 제작한 『보인보신총수(寶印符信總數)』 중궁전(中宮殿) 항목에 내교도(內敎圖)와 소내교도(小內敎圖)가 실려 있으나 발굴한 인장과는 아래와 같이 차이를 보인다.

내교인(內敎印) 비교표

자료명	『보인부신총수』 (1890년 이전) (K3-567)	『보인부신총수』 (1902~1907 사이) (K3-566)	출토유물
인신의 측면			
인문			

소내교인(小內敎印) 비교표

자료명	『보인부신총수』 (1890년 이전) (K3-567)	『보인부신총수』 (1902~1907 사이) (K3-566)	출토유물
인신의 측면			
인문			

	1. 『보인부신총수』에 기재된 인장의 척수를 환산하고, 발굴된 인장을 실측하여 비교한 결과 다소의 크기 차를 보임. 가장 큰 차이로 발굴한 내교인의 경우 사자뉴의 높이가 1.2㎝ 높고, 인대와 인뉴를 합친 높이가 1.5㎝ 높음. 발굴한 소내교인의 경우 총 높이에서 5㎜ 낮음. 작은 유물에서 1.5㎝~5㎜의 차이는 큰 차이로 보아야 함. 2. 『보인부신총수』에 실린 도설(圖說)과 발굴한 유물을 비교한 결과 사자귀에 음각된 문양, 뒷다리에 음각된 서수문양(瑞獸紋樣),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의 간격, 뒷다리와 발, 발톱의 비율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임. 위와 같은 이유로 발굴유물은 『보인부신총수』에 기재된 중궁전의 인장으로 보기 어려움. ○ 발굴된 인장들은 본래 제작되었던 형태에 비해 변형이 심하다. 특히 소내교인은 변형이 매우 심하여, 그 변형이 땅 속에 오래 묻힌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 이 정도의 변형은 매장되기 이전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1876년(고종 13) 11월 4일 있었던 경복궁 화재와 관련하여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고종실록』에 의하면 “경복궁(景福宮)에 화재가 일어났다. 【교태전(交泰殿), 인지당(麟趾堂), 건순각(健順閣), 자미당(紫薇堂), 덕선당(德善堂), 자경전(慈慶殿), 협경당(協慶堂), 복안당(福安堂), 순희당(純熙堂), 연생전(延生殿), 경성전(慶成殿), 함원전(含元殿), 흠경각(欽敬閣), 홍월각(虹月閣), 강녕전(康寧殿)이다.】 830여 간이 연달아 불길에 휘감겼다. 화재가 갑자기 일어났으며 불기운이 매우 빨랐다. 순식간에 여러 전각(殿閣)이 몽땅 재가 되었으며, 열조(列朝)의 어필(御筆)과 옛 물건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대보(大寶)와 세자의 옥인(玉印) 외에 모든 옥새와 부신(符信)이 전부 불탔다.(고종 13년 11월 4일)” 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에 의하면 이때의 화재로 소실된 왕실의 국새와 어보 등은 같은 해 12월 보수하거나 다시 제작하여 왕실에 내입했음을 알 수 있지만, 이 의궤에 ‘대·소내교인’ 을 다시 제작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듬해인 1877년 4월 19일 『승정원일기』 기사에 의하면 “큰 어압(御押) 인장과 작은 어압 인장, 큰 계(啓) 자 인장과 작은 계 자 인장, 큰 제승(制勝) 인장과 작은 제승 인장, 큰 내교(內敎) 인장과 작은 내교 인장, 큰 달(達)자 인장과 작은 달 자 인장, 큰 성(省) 자 인장과 작은 성 자 인장, 부신(符信)을 지금 이미 다 만들어서 안으로 들여왔다.(고종 14년 4월 19일)” 는 기록이 보이므로, 경복궁에 화재가 난 해 겨울에 국가와 왕실의 주요한 의물(儀物)인 국새와 어보 등을 황급히 제작하고, 이듬해 봄 왕실의 공무에 사용하는 각종 인장과 부신 등을 다시 제작하였음이 확인된다. 조사대상 대·소내교인, 특히 소내교인의 경우 매립 이전에 있었을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형이 심하므로 이때의 경복궁 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의 왕비는 고종의 비 명성황후(1851~1895)이다.
조사 결과	2. 지정 여부: 可 ○ 내교인(內敎印)·소내교인(小內敎印)은 조선시대 왕비가 공무에 사용한 인장으로, 내명부 수장으로서 왕비의 지위와 역할을 비롯하여 왕실의 인제(印制), 전각(篆刻), 금속공예 등 왕실 문화를 보여주는 유물로서 가치가 높다. ○ 조사 대상은 출토유물로 제작과 전승 경위가 분명하고, 『보인부신총수』의 도설 비교를 통해 조선 후기 왕비 결제 인장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유물이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34호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기반과(☎02-2133-8645),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3-9353)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주요변경 내용

○ (F1,F2 공동건축시)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구분	용도	용도비율		증감
		기정	변경(안)	
지정용도 (50% 이상)	①숙박시설	20%이상	12%이상	감) 8%
	②문화 및 집회시설	5%이상	3%이상	감) 2%
	③기타 지정용도	20%이상	30%이상	증) 10%
비지정 용도	주거시설(제한용도)	20%이하	30%이하	증) 10%
(50% 이하)	기타용도(상업 등)	30%이하	20%이하	감) 10%

2) 기타사항 : 변경없음

라.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상암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도서

마. 기타사항

- 세부내용, 도면 등의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본 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기반과(☎02-2133-8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35호

20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대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 2011.11.25. 법 개정으로 영리법인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2. 신청자격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중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3. 자격 기준일 : 공고일 이전 등록 · 허가된 사항

4. 접수기간: 2023. 10. 11.(수) ~ 10. 13.(금) 【09:00 ~ 18:00】
   ※ 방문접수는 점심시간 제외하며 우편접수분은 2023. 10. 13.(금)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한국프레스센터 4층)
   - 주소: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서울시 문화예술과(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 지정 신청서 서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메인화면 ⇒ 서울소식 ⇒ 공고/고시공고)에서 직접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별도의 수정 및 보완요청을 하지 아니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는 서류 원본을 기준으로 하되 전자우편 제출을 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 원본과

전자우편 사본 불일치로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해당 법인 · 단체에 있습니다.
(제출 전자우편 주소 : lucia77@seoul.go.kr)

6. 신청시 제출서류 : 지정 신청서 및 지정 신청서에 기재된 증빙서류
※ 자세한 작성 방법 및 제출 서류는 지정신청서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 원본 서류를 우편등기 또는 방문제출, 전자우편 파일 제출 병행

7. 지정절차
가. 1차 서류심사 : 10.16.(월)~10.20.(금)
나. 서류심사 발표 및 현장실사 등 안내 : 별도 안내(10.20 예정)
다. 현장실사 : 10.23(월)~11.3.(금)
라.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 11월 중(서류심사 합격 법인 · 단체 대상)
마. 최종 지정 발표 : 11.30.(목)
※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전화: 02-2133-2560, 전자우편: lucia7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43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 · 훈련 미이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에게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9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 9. 14. ~ 2023. 9. 28.(15일간)

5. 납부기한 : 2023. 10. 31.

6. 유의사항
   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부과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54, 이메일 : kys82@seoul.go.kr)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반 송 내 역		발송물 구 분
	성명	주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1	권*웅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3길 16-3	건설기술인교육이수기한내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위반)	250,000원	이사불명	2023-07-25	부과고지서
2	박*혁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0길 18, 501호(월계동, 목화빌라)	건설기술인교육이수기한내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위반)	250,000원	폐문부재	2023-07-28	부과고지서
3	김*연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36길 15, 114동 808호(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건설기술인교육이수기한내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위반)	250,000원	폐문부재	2023-07-28	부과고지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45호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 및 가맹점 관리를 전담할 판매대행점을 공모·선정하여 상품권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과 업 명 :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공모

2.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2년)

3. 참여자격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만 참여(컨소시엄만 가능)

4.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3. 9. 11.(월)~ 9. 22.(금)
   나. 제 출 일 : 2023. 9. 22.(금) 10:00~17:00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공모 제안서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FAX 접수 불가)
   마.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6층 소상공인담당관

5. 선정자 발표 : 2023.9.27.(수) 제안서평가 결과 등록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선정 업체 개별 통보)

6. 문의 :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김승희 주무관
   (02-2133-5137, included@seoul.go.kr)

붙임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공모 제안요청서 1부.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46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3.9.14. ~ 2023.9.28.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디에스아키 종합건설 (대표 김양열)	건축공사업 01-43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4길 11, 2층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보증가능금액)	법 제10조 제4호	등록말소 (2023.10.20.)	법 제83조 제3호의2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47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 등록 및 등록 말소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사항 -

대상 기간: 2023.4.1.~2023.6.30.
대상 단체: 13개 단체

등록 번호	신규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586	2023-06-26	사단법인 한국소방산업협회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6길 37 (방배동)2층	1. 국내·외 소방산업관련 제도의 조사, 연구 및 개선 건의 2.소방산업계의애로와고충해소 3.첨단기술과디자인개발및품질개선지원 4.신기능및우수품질제품인증 5.소방용품·장비의검사제도개선및단체표준제정운영 6.개발·시험장비및제조등산업장비임대알선및임대사업 7.소방시설에대한지원용품·장비의기능및성능인증 8.소방시설기준및내용연수의합리적기준에관한연구 9.소방산업정보D/B구축및각종간행물발간및홍보활동 10.정부,관련기관및단체로부터의위탁사업수행 11.소방용품등의개발도상국지원등해외진출기반조성 12.소방산업의발전기금등조성및지원 13.기타소방산업체의공동이익과본회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부대사업 14.화재,재난관련피해자(소방관포함)및그유자녀에대한지원사업(장학금,질병,부상에대한치료비등)	박종원

등록 번호	신규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585	2023-06-21	사단법인 세컨하프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여의도동)301호	○ 해외 각국의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재외동포, 재외국민들과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 교육 지원 사업 ○ 해외각국의교정기관에수용되어있다가추방된재외동포,재외국민이국내교정기관에재수감되었을시 연계지원사업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위탁,요청하는재외동포, 재외국민재소자,출소자의각종지원사업 ○ 기타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안홍기
2584	2023-06-16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9 (종로2가)601호	○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 사업 ○ 장애인동료상담및자립생활교육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및근로지원사업 ○ 장애인직업개발,연구및재활지원사업 ○ 거주시설장애인의탈시설및주거복지지원사업 ○ 문화예술및평생교육콘텐츠제작,연구,운영지원사업 ○기타본센터의목적에부합하는사업	현주연
2583	2023-06-14	그리닝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80-2, 2층 (종로2가)2층	○ 기후변화 등 환경관련 위기에 따른 인류의 피해 완화를 위한 공익캠페인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진행 ○ 환경관련지식의정보공유를위한민관기관과정기 교류추진 ○ 각종교육봉사활동진행 ○ 환경및각종교육을위한비영리온라인플랫폼사업 ○ 기타이단체의목적을수행하기위한사업	강건형

등록 번호	신규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582	2023-06-02	서울특별시요트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길 128-28, 2층 (온수동)2층	○ 요트 영역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요트대회에관한자문및건의 ○요트대회에관한전국대회,국제대회개최및참가등	박세철
2581	2023-05-26	전순의기념사업회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0길 24, B201호 (예장동, 예장동 삼익아파트)B201호	1. 전순의 의관 한의학적 업적을 선양하는 사업 2.전순의의관정신을계승하는사업 3.전순의의관저술관련시민건강교육및재현축제개최 4.전순의의관식료건강체험관운영 5.그밖에필요한기타사업	전병하
2580	2023-05-16	사단법인 과학관과문화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 113, 404호 (신길동)404호	○ 국립항공우주과학관 건립추진운동 전개 ○국립자연사박물관연구소의설립추진운동전개 ○과학관의전시및교육프로그램개발,학교교육과의 연계커리큘럼표준화운동 ○KNSRC(KoreaNationalScienceResourceCenter)를설립하여체험(Hands-on)학습과탐구(Inquiry-based)기반학습을위한컨텐츠,교재,키트및교수능력향상프로그램개발보급 ○과학소양인증제도입추진 ○기존박물관에과학관으로서의역할추가하기운동 ○스포츠과학관의건립추진운동 ○기업및단체를대상으로'과학관및과학교육후원운동'전개 ○사이언스,네이쳐등과학관련해외유력학술지또는잡지한국어판발간운동 ○국내외과학관투어및연수프로그램개발 ○국민의과학적소양제고를위한강연및이벤트개발,출판홍보및캠페인전개 ○인터넷뉴스,과학관미디어사업 ○위사업을수행하기위한재원조달사업 ○기타이법인의목적달성을위한부대사업등	권기균

등록 번호	신규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579	2023-05-10	나라사랑희망포럼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 1차)910호	1.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책 실현 2.순국선열과애국지사정신선양사업 3.호국안보활동 4.경로사상과봉사활동	김태인
2578	2023-04-19	사단법인 위드탱크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구의동, 테크노-마트21)11층 3호	○ 취약계층 자립회생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나눔 사업 ○취약계층생계안정을위한정보제공및맞춤형취업나눔지원사업 ○자원봉사나눔활성화를위한조사,연구및홍보사업 ○자원봉사자자질향상연수회개최및유관단체와의협업 ○그밖의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이현민
2577	2023-04-19	사단법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54 (대흥동, TAF빌딩)4층	○ 지구촌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조정 및 연대활동 ○지구촌지속가능한개발및인도적지원을위한역량강화및책무증진활동 ○국제개발협력사업에관한애드보커시활동 ○국제개발협력사업에관한조사연구및홍보 ○모금및배분 ○국제개발협력분야시민참여촉진 ○목적사업수행을위한수익사업 ○그밖의이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유원식

등록 번호	신규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576	2023-04-11	금융사기피해지원협의회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3 (구로동, 에이스트윈타워 2차)907호	○ 금융범죄사기피해자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금융범죄사기피해자단체고소무료지원 ○금융범죄사기예방홍보	백기남
2575	2023-03-17	사단법인 글로벌한상드림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서초동, 외교타운)4층 406호	○ 국내 소외계층 청소년 장학사업과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세계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사업 ○한상강연을통한성공노하우및정보공유사업 ○국내외한상간의교류활동사업 ○차세대한상발굴및육성관련사업 ○기타법인의목적달성에필요한관련사업	정영수
2574	2023-04-10	사단법인 몸펴기생활운동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3가길 5 (사당동, 삼정빌딩)201호	○ 생활 속에 몸을 펴는 운동법을 보급하는 활동(일반,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수련법지도및교육,대외강연및강의활동 ○지도자양성,교재및간행물발행,운동도구개발및보급	권승복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

대상 기간: 2023.4.1.~2023.6.30.

대상 단체: 72개 단체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536	2023-06-29	한국상생협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4길 9 (거여동)b1층	1. 한국인과 한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2.한국인과한국인그리고외국인과한국인이아플때가까운 병원을소개또는약국을같이방문해준다. 3.한국인과한국인그리고외국인과한국인이직업을구할때 적합한구인구직그룹추천및직업추천을해준다.	박은상
930	2023-06-29	생태공감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34길 70 (용두동)616호	o 자연자원 현황 연구조사사업 o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 o 자연환경 교육사업 등	김명철
2321	2023-06-28	동서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27 (중곡동, 신성그랜드타워)210호(중곡동)	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나.서울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 다.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주정수
1935	2023-06-28	(사)한반도평화포럼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여의도동)506호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학술연구, 교육문화 사업 등	김연철
866	2023-06-27	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8길 92 (구로동, 중앙구로하이츠아파트)상가동 114호	수질보전 활동	최선예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627	2023-06-22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변인 언론담당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낙원동, 종로오피스텔)1020호	❍ 언론소비자의 주권을 실현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활동 ❍ 언론제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종 연구 및 실천사업 ❍ 왜곡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활동 및 이와 연계된 소비자운동 ❍ 언론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교육, 언론피해 구제, 문화 및 선전홍보사업 ❍ 언론소비자운동에 필요한 국내·외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에 관한 사업 연구 및 활동 ❍ 기타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김종학
2541	2023-06-15	안토나눔봉사단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231 (길동)1층	○ 소외된 어르신에 대한 특별물품 기부사업 ○건강증진활동및교육사업 ○독거어르신대상반찬나눔사업 ○재해발생시자원봉사활동및복구지원사업 ○서울시어르신문화예술효축제행사및체험학습사업 ○자원봉사활동에대한인증제도(1365자원봉사)운영등	정영선
593	2023-06-15	대안교육연대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8 (묵정동)혁신파크 1-309	청소년의 건강한 공동체 문화개방 및 확산 청소년의 개성중시, 자기 개발을 위한 인성교육 및 체험학습 대안적 교육 및 문화의활성화	전정일
459	2023-06-13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9층 사무국 (도화동)9층 사무국	여성경제인의 권익보호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	이웅경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06	2023-06-13	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46길 46, 대한어머니회관 302호 (논현동)대한어머니회관 302호	교육문화사업, 사회복지사업, 의식개혁사업, 소비자운동 및 환경사업, 조사연구 및 출판사업, 홍보및후원사업, 취업알선사업, 국제교류사업 등	이혜배
2216	2023-06-12	또보자 마을학교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9길 36 (망원동)1층 202호	○ 마을과 학교 연계 사업 ○청소년동아리사업,학부모교육진행	조윤지
279	2023-06-12	서울국학운동 시민연합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 (재동)3층	민족정신 함양 및 밝은사회 구현	김산태
2442	2023-06-05	관악구장애인 단체연합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4 (봉천동,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8층	1. 관내 장애인들의 각종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직업및복지시설(장애인회관등)의설치유치및운영 3.연합회의활동과올바른복지정책을위한홍보사업 4.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점검및정보화교육사업 5.각종장애인복지기금사업및수익사업 6.기타연합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송낙규
224	2023-06-05	광진주민연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41 (중곡동, 대화탕)광진주민연대 4층	1. 참여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한 사업 2.주민자치의정착과발전을위한사업 3.환경적으로건강하고지속가능한지역사회를만들기위한 사업 4.자원봉사활동과복지사업 5.전통문화의전승및문화사업 6.사회정의와공익을실현하기위한사업 7.지역의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사회적경제사업 8.호혜적관계망형성을위한마을공동체사업 9.활동가및주민역량강화교육사업	박용수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174	2023-05-31	희망나눔센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40-1 (성수동2가) 403호(삼원빌딩)	o 취약장애인가정의 주거환경개선/대청소후원활동 o사회복지모금행사후원활동	배희숙
2030	2023-05-31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8 (봉천동)2층	정신장애인 동료상담,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립생활기술교육및정보제공, 활동보조파견서비스,체험홈운영	강욱성
1381	2023-05-30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0길 65, 301호 (쌍문동, VILLA VERDE)301호	○ 학술연구 발표, 심포지엄 및 전시회 개최 ○학회지및기타출판물의발간에관한사항 ○임상미술치료분야공공활동지원등 ○국제회와의교류및유대강화에관한사항 ○기타본회목적달성에필요한사항 ○임상미술자격에관한사항	김선현
1826	2023-05-25	한반도프로세스포럼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26, 고덕빌딩 503호 (명일동)고덕빌딩 503호	◦ 동서화합 및 국민통합 운동 ◦탈북동포지원활동 ◦사회정화및치유활동	김충립
1062	2023-05-25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길 11, 서대문세무서, 2층 205호 (홍제동)서대문세무서, 2층 205호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옹호 ○역량강화를위한정보제공및자립생활기술훈련 ○동료상담교육및자조모임 ○지역사회장애인편의시설조사및점검 ○지역사회내장애인자립생활에대한인식개선사업 ○활동보조파견사업 ○지역사회내의문화향유권보장을위한참여및행사 ○기타자립생활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제반사업	오문영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428	2023-05-24	함께웃는 마을공동체 '즐거운 가'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49, 지층 (문정동)지층	- 청소년과 어른이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문화의 활성화 -문화예술활동참여와공간의제공 -다양한계층의상호문화예술의교류 -마을문화예술교육사업및정책의개발 -기타본회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이윤복
2029	2023-05-23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B동 1102호 (마곡동)B동 1102호	◦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 평생교육사 관련 제반 연구 및 자료 제작 ◦ 기관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회원들의 정보 공유 ◦ 평생교육사 현장 실습 및 지원 활동	이재주
382	2023-05-19	자동차시민연합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3동 302호(에이스하이테크시티) (문래동3가)3동 302호(에이스하이테크시티)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 안전운전 문화 캠페인을 통한 교통사고방지운동 등	임기상
2454	2023-05-18	송파구장애인체육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방이동, 올림픽공원)139호	1.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2.각종대회및동하계캠프개최운영 3.장애인인식개선 4.장애인체육시설위탁운영	서강석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682	2023-05-18	(사)대한민국 부사관총연합회 서울지부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38, 영흥빌딩 201호 (석촌동)영흥빌딩 201호	-국가안보 및 사회봉사활동, - 안보관련 우수, 선행사례 발굴 및 전파, - 순국회원에 대한 추모 및 선양, - 호국정신 함양 및 계도, - 회원 및 자녀(가족) 취업알선 등 회원의 복지증진, - 기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김순태
2010	2023-05-17	한국모금가협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1길 13 (원서동)306호	○ 모금가 및 모금활동의 표준 및 윤리성 확보 ○건전한기부환경조성을위한정책사업 ○모금분야의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과훈련사업	허탁
950	2023-05-17	케어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31, 1층 (양평동5가)1층	-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캠페인, 홍보 활동 -유기동물보호를위한사업 -동물학대방지를위한대책마련및계몽활동	김영환
2438	2023-05-16	사단법인 발휘재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3, 1320호 (도화동)1320호	1. 남북교류 경제협력 지원 사업 2.남북경제공동체발전에관한연구,조사,정보제공및컨설팅교육사업 3.동북아평화문화,경제교류협력사업세미나,포럼,토론회,강연및행사	강경국
2132	2023-05-16	서울지구시민연합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59, 810호 (천호동)810호	○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환경에대한시민들의인식을높이기위한교육및홍보사업 ○환경문제에대한조사,연구및정책제시사업등	인덕찬
1737	2023-05-16	민달팽이유니온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4-1 (북아현동)2층	-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사업 -주거문제관련법령제정,개정 -청년주거상담	김솔아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380	2023-05-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	행정국 총무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 12층 1207 호(공덕동, 제일빌딩)제일빌딩 12 층 1207 호	기초질서지키기 및 환경보호 대시민 캠페인 사업 등	최창식
398	2023-05-16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 서울연합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28, 거성빌딩 5층 (대방동)402-3 거성빌딩 5층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교통질서, 청소년선도캠페인 재난시 인명구조활동 등	박혁
101	2023-05-16	관악사회복지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3길 96, 103호 (신림동, 에어스페이스)103호	제가노인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등	박승한
98	2023-05-16	은빛샘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24 (견지동)74-2	노인복지 사업	박병섭
2414	2023-05-11	희망키움넷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24, 1026호 (다동)1026호	1. 국내외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성장자립을 돕는 결연사업 2.소외계층(다문화가정,탈북가정,이주가정등)청소년을 위한성장자립지원 3.법인목적관련된프로그램기획개발보급,장학금지원사업,도서및간행물발간등	노순백
2186	2023-05-11	평화나눔재단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연지동)한국교회100주년기념회관 308호	-평화 시민대학 운영 -평화봉사단운영 -통일박람회참여 -평화나눔바자회개최 -평화나눔학술제개최	윤현기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321	2023-05-11	한국청소년재단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82, 3층 3호 (연희동)3층 3호	청소년 관련 상담, 정보화사업, 청소년 수련활동 등	김병후
2316	2023-05-09	한누리예술협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43 (수유동)B1	○ 한국전통예술과 예술에 관련한 사업 ○ 한국전통무용 발굴, 계승, 연구, 공연, 교육, 학술진흥 사업 ○ 한국전통무용 정보교환 및 교육을 위한 영상·음반·출판사업 ○ 한국 연예 예술 문화진흥 사업 ○ 한누리 예술단 설립 및 운영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유미애
1650	2023-05-09	북한이탈주민문화복지진흥원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9길 24 (영등포동)미디어빌딩 3층	◦ 통일예술인대회 개최, 국제 인권단체 및 평화단체 교류 ◦북한이탈주민자립정착을위한각종사업개발및홍보 ◦북한이탈주민정보화교육,북한이탈주민을위한문화·복지사업등	김충성
21	2023-05-02	세계평화여성연합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19 (청파동1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4층	UN NGO활동및 NGO간의 연대활동	최영선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528	2023-04-28	평생교육 봄날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녹번동, 서울기록원)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 3층 공유사무실	1. 행복을 주는 공간 인문학, 정리와 인생 등 주거와 삶의 질 향상 시민교육 2.경력단절여성의주거공간정리컨설턴트양성등취업활동지원교육 3.주거환경어려운가족,복지시설등주거복지서비스,사회봉사단양성교육 4.청소년정리습관,정리와자원환경보호등정리를통한청소년인성교육 5.위생업소,소상공인정리컨설팅자영업자정리전문교육서비스 6.기타개인의공간의가치를사회적가치전환등시민평생교육	권혜린
2430	2023-04-28	디딤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53-1 (사당동)4층	1. 여성 · 청년 신진작가 미술활동 지원(기획, 전시) 2.문화소외계층미술 · 공예교육,체험행사개최및홍보 3.청년장애인미술발전을위한연구개발 4.그밖의단체의목적달성에필요한문화예술관련사업	김도현
1928	2023-04-28	새로운 백년을 여는 통일의병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1길 42 (서초동, 정토회관)10층	올바른 역사관 · 통일관 정립을 위한 다양한 시민교육	정영수
1824	2023-04-28	진보교육연구소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43-53 (합동)예랑빌딩 302호	∘교육발전 및 사회개혁을 위한 사회적 실천 ∘교육발전및사회개혁을위한토론및출판 ∘교육발전및사회개혁을위한연구	천보선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681	2023-04-26	열린치과봉사회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충정로대우디오빌 402호 (합동)117번지 충정로대우디오빌 402호	1. 치과의료봉사에 관한 사업 2.학술대회,강연회,강습회및연구발표회개최 3.회원간의친목과복지도모 4.언론및홍보에관한사항 5.기타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채규삼
2480	2023-04-25	행복나눔옹달샘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24길 8 (신월동, 기쁜소식사사옥)3층	1. 지역 청소년 및 저소득층 아동 인성교육 지원사업 2.지역발전을위한제반봉사사업 3.기타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부대사업	황계진
1026	2023-04-24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도화동, 성지빌딩)1107호	○ 보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홍보 ○보육에관한영유아의권익보호 ○보육사업에관한정책건의 ○보육교직원의복리증진및회원상호간의정보교류 ○이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수익사업 ○지역사회연계활동및공익사업에기여 ○유관단체와의협력을통한보육친화적환경조성 ○그밖의어린이집간의국제교류등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항	강원미
2255	2023-04-21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5길 22-6 (충무로5가, 일호빌딩)301호	1. 서울시민의 민주시민성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포럼 등의 개최 2.서울시민의민주시민교육강화를위한민주시민교육활동 가발굴및역량강화 3.서울시'민주시민교육센터'와의거버넌스 운영을통한서울시민주시민교육강화 4.기타목적에부합하는사업	이창국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973	2023-04-20	한국장애인자립생활교육센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5길 17 (창동, 중앙빌딩)403호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컨설팅 사업 ○장애인의사회적응을위한교육사업 ○장애인에대한지원사업 ○장애인과사회,문화,예술등각분야전문가간의교류사업 등	이경식
41	2023-04-20	서울특별시새마을교통봉사대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새마을회관 6층 (장안동)415-9 새마을회관6층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김식
2485	2023-04-19	사단법인 상상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16 (가산동)3층 310호	1. STEAM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활성화하는 사업 2.ICT기술을응용한로봇대회등대회개최 3.STEAM과관련한정보를공유하는사업 4.기타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김성애
2425	2023-04-19	학교안전사회공헌운동본부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6길 46 (신사동)5층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사회공헌운동 및 사회봉사	여지윤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086	2023-04-19	도봉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3길 21 (쌍문동)1층	o 중증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동료상담 o 중증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활동 o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활동보조인 파견과 자원 활동가 양성사업 o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개조와 편의시설 조사연구 사업 o 자립생활 홍보를 위한 회보 발간 및 교육 사업 o 자립생활 훈련을 위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및 그룹홈, 단기체험홈 설치운영사업 o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운동 o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o 자립생활 기술교육 o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사업 o 장애인의 문화향유 권리 확대를 위한 문화운동 사업 o 국내외 자립생활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o 기타 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업	김남석
1230	2023-04-19	문화재제자리찾기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6 (금호동1가, 신세계오피스텔)601호	일본 국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 반환운동 우리문화재를제자리로되돌리기위한사업및후원등	김영준
1574	2023-04-18	대한교통장애인연합회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동, 시흥유통상가)3동 225호	◦ 교통사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교육사업,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사업 ◦교통사고장애인가족돕기및경로효친사상캠페인등어르신들돕기사업	송병헌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89	2023-04-18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서울지부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33, (어린이교통공원내) (신천동)7-15 (어린이교통공원내)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활동 교통사고예방관련행사및유인물제작배포 교통사고유자녀돕기행사	박종팔
811	2023-04-17	노원 나눔의집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37다길 24 (상계동)111-340	1. 독거노인들의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사업 2.빈곤계층아동들의결연사업 3.지역자원개발네트워크구축사업 4.저소득주민들의일자리창출사업	박순진
1649	2023-04-14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지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목동)1017 호	- 회원의 복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업 -기관지발행 -평생교육원서립,연구발표회,강연회개최 -문학상운영 -외국작가와의교류등	김호운
190	2023-04-14	살기좋은우리구(금천)만들기 여성회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11 (시흥동, 무지개아파트)109-1 무지개상가 401호	여성사회교육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박은실
1896	2023-04-13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420-6 (신길동)서울여성플라자 4 층 NGO돋움터 호	풀뿌리 여성활동가 교육 및 훈련, 풀뿌리 여성운동 상담 등	김선희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995	2023-04-1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4길 48, 1층 (북아현동)117-7 (1층)	- 동물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 -동물학대방지및유기동물보호활동 -실험동물관련계몽및입법활동	박창길
81	2023-04-13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25길 33 (봉천동, 구암프라자)5층	환경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 도모	이진종
2405	2023-04-12	스마일건강교육아카데미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22 (독산동)2층	1.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2.인적성측정관리사육성 3.인적성검사지개발및검사	조현수
1868	2023-04-12	캠퍼스 에너지 세이버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3길 15 (양재동, 로얄퀸클러하우스)5층	1. 건물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 대학교 건물의 경제적 가치 향상 및 유지비용 절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환경 제공 2.그린캠퍼스컨설팅-서울소재40여개대학교의에너지이용현황파악,손실요인발굴및에너지절감을위한개선안제시 3.캠퍼스전력에너지절감솔루션보급-기획,제안,시공,사후관리를통한에너지절감모델개발및실질적인에너지감축활동수행 4.정부주도친환경에너지캠페인협력-학생,대학교,자체간네트워크확립을통한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사업홍보및탄소배출억제를권장하는대국민홍보수행	김규리
1455	2023-04-12	시니어앤워크스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09 (당산동2가, 영등포유통상가)1층 마열19호	시니어에 의한, 시니어를 위한 공익적성격의 사회공헌활동 NPO,사회적기업,협동조합등의공익적활동지원 교육,세미나,포럼,강연,토론회,조사연구,출판등학술및능력개발활동 행복설계아카데미의활동지원및공동사업참여 회원상호간의정보교류 기타위사업활동과관련된부대사업등	박수천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138	2023-04-11	더체인지마인드인성교육원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7 (충무로4가, 진양상가, 진양아파트)571-3호	○ 국내외 인성마인드, 마인드레크리에이션 교육 ○초 · 중 · 고 · 대학생을위한맞춤형인성교육참여및지원 ○소외계층(장애인,노인,다문화,소년소녀가장등)을위한 마인드교육 ○본원을후원하고자하는곳과의업무협약	이정윤
1915	2023-04-07	국인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08 (개포동)216 호	◦ 청소년 대상 다양한 국내 · 외 글로벌 리더십 교육 및 연수 ◦교육기부활동을주축으로하는초 · 중등대상국내 · 외재능나눔활동 &#9702:다양하고창조적인재능나눔컨텐츠개발및배포 ◦자기계발과네트워크를활용한차세대집단지성 커뮤니티구축	정다우/ 김수현
1103	2023-04-06	희망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76 (수유동, 민스빌)2층	○ 자립생활의 이념보급을 위한 사업 ○장애인의권익옹호를위한사업 ○동료상담가교육및파견사업 ○자립생활기술교육및정보의제공과의뢰사업 ○장애인당사자의역량강화를위한사업 ○활동보조인교육및파견사업 ○자립생활센터간연계및장애인운동활동가지원 ○기타센터의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사업	허영택
2410	2023-04-05	건강취약청소년교육지원센터 캔틴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3길 72 (연남동)2층	1. 건강취약청소년들에 대한 대안교육 제공 및 지원사업 2.건강취약청소년들에대한심리정서지원사업 3.건강취약청소년과가족을종합적으로지원하는서비스프로그램및협력증진사업 4.건강취약청소년에대한조사,제도및정책연구및교육훈련사업 5.건강취약청소년후원에관한계몽,홍보사업및간행물발행사업 6.건강취약청소년과가족의직업훈련및자립활동지원사업 7.건강취약청소년지원관련국내외교류사업 8.기타이단체의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사업	김미경

등록 번호	변경 등록일	단체명	주관 부서	소재지 (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916	2023-04-05	서울 국학원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 (재동)3층	- 민족고유의 정신문화를 통한 국민정신 -홍익정신및홍익문화의연구및개발,보급 -홍익정신회복을위한상담및지도활동 -홍익정신및홍익문화발전을위한인력개발프로그램개발 및보급 -민족정신광복과개천정신회복을위한각종이벤트의개최 및후원 -홍익정신,홍익문화의세계화를위한해외활동지원 -목적달성에필요한각종홍보사업 -유관기관과의교류및협력사업및기타목적달성에필요한 사업 -국학진흥을위한학술활동지원	성배경
199	2023-04-05	한국미술가교 류협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0 (관훈동)3층	미술문화사업	김백수
639	2023-04-04	희망세상일구 는 구로여성회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7길 95-1 (고척동, 정형빌딩)402호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개선활동 사업, 여성의자원활동사업, 지역사업및어린이보육사업, 가족지원상담센터사업, 국내및국제여성단체사회단체교류사업등	이근미
1300	2023-04-03	서울특별시 재향소방동우 회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14길 42 (성내동)2층 201호	○ 불우이웃돕기 사업 ○산불예방홍보및한강청결유지사업 ○순직?공상소방공무원유가족돕기사업 ○그밖에단체의목적에부합하는사업	장인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 –

대상 기간: 2023.4.1.~2023.6.30.

대상 단체: 509개 단체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917	2023-06-30	마을웨딩지원센터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3길 164-12 (성북동)상세주소[미입력]	- 지역중심 마을웨딩 지원 사업 - 취약계층 가족 무료결혼식 복지 사업 - 마을웨딩 관련 예비 가족 교육 및 정보서비스 사업 - 마을지역 네트워크 및 관련 단체사업	이경재
1855	2023-06-30	위기이주여성 긴급보호쉼터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21길 14 (상도동).	○ 위기이주여성 및 그 가족의 한시적 긴급보호 · 주거 · 법률 · 의료 · 귀국사업 ○ 개인 · 부부 · 가족 상담 사업 ○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 사업 ○ 동반자녀 지원 사업 ○ 기타 조직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권오희
1686	2023-06-30	이혼가족지원 전문가협의체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1길 51)(,)))	가. 자녀집단프로그램, 부모교육, 가족캠프, 자조모임 등 이혼가족지원 사업 나. 이혼위기가족 및 이혼가족 대상 상담 및 자원연계 다. 이혼가족지원 전문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라. 회원기관 실무자 대상 교육 및 슈퍼비전 마. 사회복지사 대상 교육 바. 이혼가족지원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 기타 본 화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최선희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674	2023-06-30	국제평생교육센터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30 (연희동, NGO센터)NGO센터	○ 외국인․다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 ○외국인․다문화가족인권존중사업 지원 ○국제교류협력사업,세계시민STEAM교육공동체조직 ○ '세계역사․문화지킴이', '평생학습' 동아리지원 ○외국인․다문화가족지원자원봉사활동 ○해외봉사활동조직및개발	변명선
1495	2023-06-30	국제한국어교육자협회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17-1 , 5 층(구로동, 미성빌딩)미성빌딩 5 층	외국인 대상 한국어 / 한국문화 교육 한국어교육관련활동및자료공유 한국어교육에관심있는모든회원의네트워크활성화	김상경
1208	2023-06-30	한국여성인디저널협회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NGO 돋움터 4층	콘텐츠개발, 미디어 교육	이정임
1150	2023-06-30	다문화사회진흥원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4, 202동 1015호(사직동, 광화문스페이스본오피스텔)9번지 광화문스페이스본 오피스텔 202동 1015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사업 자원봉사자훈련및시민문화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사업 국외의다양한커뮤니티와의교류를통한문화사업 다문화가족상담및교육을위한상담전문인력양성사업	이영옥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144	2023-06-30	열린세계다문화센터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7길 29 , 703 호(소공동, 복창빌딩)복창빌딩 703 호	지역복지 : 거주 외국인 사회교육, 후원자 개발, 자원봉사자 개발, 사회조사, 편의 시설제공, 주민참여프로그램개발외 가정복지:중장기적으로다문화가정의2세들의 교육프로그램개발외 특화사업:거주외국인유학생문화연수교육실시,명예시민행사외	정애리
1120	2023-06-30	프롬하트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99-12, 대흥오피스 202호, 301호 (대흥동)167 대흥오피스 202호, 301호	- 사회적 취약계층 및 일반시민의 심리정서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사업 -건강한가정,여성을위한가족심리정서지원사업 -아동,청소년의전인적성장을위한발달지원사업 -영유아대상치료놀이지원사업 -단체사업의활성화를위한자원봉사육성등지역사회조직사업 -출판홍보사업및후원사업 -기타본단체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사업	신영섭
996	2023-06-30	결혼이민자여성평등찾기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4층 돋움터 (대방동)한숲길22 서울여성플라자 4층 돋움터	○ 여성의 권익을 위한 역량강화와 경제세력화 사업 ○ 이주여성 인적자원 개발, e리더 양성 프로그램 ○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및 여성인권 증진 사업 ○ 여성환경 및 여성 건강사업	김혜련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919	2023-06-30	웃음꽃피는 가정사랑학교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7길 10-5 (풍납동)258-1	◦ 월간 “웃음 꽃 피는 가정” 회지를 발간 및 배포 ◦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각종 세미나 ◦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각종 문화행사 ◦ 사회 안전망을 통한 함께사는 세상 실천 ◦ 행복한 가정 만들기 교육 1) 어머니 대학(젊은 여성) 2) 아버지 대학(젊은 남성) 3) 성폭력 상담소 설치 및 운영 4) 가정 폭력 상담소 설치 및 운영 ◦ 학교건립 추진	최상철
900	2023-06-30	열린가족상담센터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47길 30-15 (독산동)147-56	◦ 빈곤가족 정서지원 상담사업 ◦ 한부모 여성가장과 자녀를 위한 움직이는 상담 ◦ NGO단체 활동가를 위한 정서지원상담가 양성과정 ◦ 빈곤가족 한의원 무료진료 연계사업 등	한선영
618	2023-06-30	한국가정문제개발연구원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8길 7, 세영빌딩 (송파동)8-13 세영빌딩	위기가정의 상담을 통한 건전 사회회복과 전문상담사 양성 및 바른사회성 회복 등	주계영
557	2023-06-30	한국가족문화원 서울시지부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현대리버스텔 715호 (청담동)130-9 현대리버스텔 715호	민주적이고 건전한 가족관계 정착을 위한 교육사업 등	김종숙
251	2023-06-30	관악전진상공동체 참사랑사회복지센타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1다길 17-4 (봉천동)66-3	개인.가정상담.저소득층 방과후 공부방	천효숙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536	2023-06-29	한국상생협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4길 9 (거여동)b1층	1. 한국인과 한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2.한국인과한국인그리고외국인과한국인이아플때가까운병원을소개또는약국을같이방문해준다. 3.한국인과한국인그리고외국인과한국인이직업을구할때적합한구인구직그룹추천및직업추천을해준다.	박은상
1947	2023-06-29	지금여기에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39 (망원동)2층	○ 유죄, 무죄 판결에 이어 상담치유에 이르기까지의 기록 정리 및 출판 ○상담등을통한트라우마치료 ○관계회복과사회성회복을위한회원간의친목도모 ○인권을위한단체와의연대및지원 ○재심지원등기타이단체의목적을수행하기위한사업	이명춘
1604	2023-06-29	서대문주민 참여예산 모임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9길 70 , 3층 305 호(홍제동, 현대상가)현대상가 3층 305 호	ㅇ서대문 참여예산학교 운영 ㅇ찾아가는참여예산설명회개최및동별설명회개최 ㅇ참여예산주민활동가양성및예산사업분석, 자료연구등	오민조
1570	2023-06-29	서울도시농업 네트워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98 , 2층(연남동, 대원빌딩)대원빌딩 2층	◦ 도시농부학교 ◦생태텃밭강사및도시농업전문가양성과정 ◦토종종자보급및활성화 ◦농촌공동체와직거래및자재공급	민동욱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539	2023-06-29	함께하는 도농원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118(남가좌동)함께하는 도농원	- 도시농부교육 -도시농업작목반운영및육성 -도시농업마을공동체지원	안종수
1372	2023-06-29	한국인권재단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32 , 4층(서교동, 서문빌딩)서문빌딩 4층	인권교육 및 인권연구사업	고광헌
1196	2023-06-29	한국학습코치협회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길 9 (상도동)346-1	◦직업능력개발 증진을 위한 코칭 기법에 대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평생교육을실천할수있는국내외전문기관국제단체들과의교류협력사업 ◦학부모,교사,학생의자질향상을위한 캠프및연수등지원사업 ◦자기주도학습코칭을통한사회적소외계층자기주도적삶과직업능력개발기여사업 및취업창업교육및취업창업지원사업지원	조기원
930	2023-06-29	생태공감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34길 70 (용두동)616호	o 자연자원 현황 연구조사사업 o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 o 자연환경 교육사업 등	김명철
266	2023-06-29	한국교원나라꽃 무궁화연구협의회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7, 111동 1401호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111동 1401호	우량종무궁화의 국내생산보급 및 월드컵 경기장주변과 시범가로지 식재관리등	김교모
8	2023-06-29	한국무궁화선양회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11길 26 (화곡동)50-77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관리	박순옥
2321	2023-06-28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27 (중곡동, 신성그랜드타워)210호(중곡동)	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나.서울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 다.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주정수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935	2023-06-28	(사)한반도평화포럼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여의도동)506호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학술연구, 교육문화 사업 등	김연철
1312	2023-06-27	행복나눔 자전거연합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8-1 (천호동, 대영빌딩)2층	자전거 생활화를 위한 교육 자전거이벤트행사 자전거봉사활동	박상돈
866	2023-06-27	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8길 92 (구로동, 중앙구로하이츠아파트)상가동 114호	수질보전 활동	최선예
1862	2023-06-25	사단법인 대한교통안전협회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 1404호(역삼동, 두꺼비빌딩)두꺼비빌딩 1404 호	-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운동 -교통안전을위한조사,연구및제도화 -교통안전에관련된시민사회단체와의교류,협력 -교통안전교재출간,보급및교육	이영호
1707	2023-06-25	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문화교육협회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128 , 325호(대방동, 유정빌딩)유정빌딩 325 호	◦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교통안전문화 기여 사업 ◦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운수종사자 및 운수관련단체 및 산업종사자 교육사업 ◦ 교통사고 발생 원인분석 및 예방과 홍보 사업 ◦ 교통사고 장애인 및 피해자 가족 지원과 결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 ◦ 교통질서에 대한 사회의식 개선과 개선활동을 위한 간행물 발행 사업 ◦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봉형종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706	2023-06-25	사단법인 녹색교통장애인협회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611 (시흥동, 금성빌딩)2층	◦ 교통문화 교육사업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홍보사업 ◦ 장애인회원 무료법률상담 무료취업상담 사업 ◦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박종화
383	2023-06-25	한국교통시민협회 관악지부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4길 23 (봉천동)41-253	뺑소니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운동	전사차
341	2023-06-25	한국교통시민협회 송파지부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34길 12 (마천동)194-1	뺑소니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운동	윤정원
43	2023-06-25	삼운회교통봉사대 서울시본부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59길 4, 1층 (녹번동)28-36 1층	교통사고로부터 재산과 생명지키기	심태현
34	2023-06-25	어린이교통안전협회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41 (능동, 육영재단어린이회관) 18-1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박서영
2559	2023-06-23	세계자유북한인총연맹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신문로1가, 광화문오피시아빌딩) 제18층 제1804호	○ 자유통일을 위한 세계평화의 보편적 가치 확산 ○자유북한인들의권익및정부의처우개선 ○자유북한인들의경제적자립지원 ○국제글로벌네트워크구축및정보교류 ○기타자유민주주의공고화실현에부합되는활동	장현철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415	2023-06-23	도봉구가정폭력상담소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260 (창동)4층	1. 양성평등상담사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2.가정폭력관련전문상담사교육및역량강화, 전문가양성사업 3.아동여성지역연대가정폭력,성폭력예방교육및캠페인 4.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심리지원사업 5.아동청소년상담,청소년비행예방및회복프로그램	정순례
1261	2023-06-23	여성그린네트워크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3길 7 (서초동)1534-1	녹색생활실천, 여성친화문화 확산, 여성단체 소통	이은령
1245	2023-06-23	유쾌한 섹슈얼리티 인권센터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6길 27 (서교동)지하 1층	청소년을 포함한 성인의 성교육, 성상/담 등 성관련 사업 및 연구를 통해 성문화 변화와 대안적 관계를 모색한다.	남승현
870	2023-06-23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2길 28, 신일빌딩 4층 (안암동3가)86 신일빌딩 4층	ㅇ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 등 여성문제에 관한 피해자.가해자 상담사업 ㅇ부부관계회복을위한부부상담사업 ㅇ상담관련종사자및상담전문가양성교육사업 ㅇ인권활동,홍보출판활동,국내외관련단체와의교류와연대활동등	채규만
589	2023-06-23	한국여학사협회 서울시지부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61, 수유프라자 411호 (수유동)63 수유프라자 411	공개토론회 및 정기 토론 독서회,시낭송회개최 문화유적답사활동등	한영자
405	2023-06-23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0, 중앙빌딩 3층 (구로동)142-75 중앙빌딩 3층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과 진료, 일시보호 시설운영, 성폭력 예방 교육 사업등	박금자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380	2023-06-23	산돌여성모임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6길 20-9 (방학동)697-15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사업등	유미란
293	2023-06-23	여성사회교육원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길 37, 천성빌딩 3층 (장충동1가)38-31 (천성빌딩 3층)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연구, 조사사업, 사회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실시 ,보급등	김주숙
265	2023-06-23	마들주민회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2길 27 (상계동)1층	주민자치와 공동체운동, 저학력 여성을 위한 교육사업 등	이지현
109	2023-06-23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서울여성의전화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도로명[미입력]38-84	여성인권 상담	이문자
1841	2023-06-22	사단법인 한국산림보호협회 서울특별시협의회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19길 4 (양재동)1 층	인위적인 산림피해 도남벌 및 부정임산물의 예방 및 계도 불법산림형질변경의예방및계도 산림병해충예찰방제운동전개 산지정화및등산객질서계도 산불예방및방지운동전개 조림육림운동전개및산림소득사업추진 산림내불법묘지조성금지운동전개 공익기능의증진을위한식재조경등의사업등	조상의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627	2023-06-22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변인 언론담당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낙원동, 종로오피스텔)1020호	❍ 언론소비자의 주권을 실현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활동 ❍ 언론제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종 연구 및 실천사업 ❍ 왜곡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 활동 및 이와 연계된 소비자운동 ❍ 언론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교육, 언론피해 구제, 문화 및 선전홍보사업 ❍ 언론소비자운동에 필요한 국내·외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에 관한 사업 연구 및 활동 ❍ 기타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김종학
1347	2023-06-22	매봉산 지킴이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4길 6 , 305호(신당동, 로얄빌딩)로얄빌딩 305 호	1. 매봉산 체육시설 안전순찰 2.아름다운길만들기 3.매봉산환경정비 4.공원우범지역방법순찰	이현구
1345	2023-06-22	노을공원시민모임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2층(누하동, 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2 층	노을공원을 생태.문화적으로 더욱 가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들에게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교육하며, 방문자에게 생태복원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생태계관리 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이재석 외 1명
1317	2023-06-22	푸른문화연합회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힐탑오피스텔 618호 (천호동)449-49 힐탑오피스텔 618호	❍ 자연 친화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자연체험 교육과 프로그램의 정책의 개발, 도서등의 자료를 개발하며 수련활동 교육장 개설 운영 ❍자연생태대동여지도제작 ❍자연체험학습교사양성교육 ❍역사와전통문화속의자연생태교육	이숙희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290	2023-06-22	솔이자연사랑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3길 52-12 (가락동, 현대빌라)307호	ㅇ 생태환경을 고려한 각종 개발과 파괴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활동 ㅇ멸종되어가는동식물을보전하기위한조사연구및실천적활동 ㅇ생태적생활양식을받아들이기위한교육과홍보 ㅇ생태환경을보전하기위한단체와의연계사업	임홍순
1179	2023-06-22	선문화진흥원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46 (안국동)52-6	1.숲명상 프로그램개발, 보급 및 전문가 양성 2.생태공동체및생태탐방로지원사업 3.선문화교육센터 4.시민참여사업,소외계층지원사업	강진구
1094	2023-06-22	종로그린봉사대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12길 45 (무악동)46-915	❍ 종로구 관내 공원의 친환경 유지를 위한 주민홍보 및 공동안전망 구성 ❍ 환경봉사단체로서 종로구 관내 환경감시 및 보호활동 ❍ 종로구 관내 공원 운영에 관한 구심체 역할 및 활동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 각 지역 환경인 및 주민연대 환경감시활동 전개	최복연
981	2023-06-22	대한시니어숲해설가클럽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2 (현저동)산5-5	- 초중고 학생들에게 숲 현장 체험학습 -숲해설가양성을위한전문교육 -자연보호의식고취를위한숲생태교육 -공원관리및산림보호지도사업등	전성장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895	2023-06-22	국토청결 환경운동 산불조심 자연보호사업회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64, 통일회관 117호 (구기동)139 통일회관 117호실	구기동 유원지 지역 정화운동 산불예방캠페인 자라나는나무보호하기 자연으로의꽃나무,취식나물보호하기	박상준
861	2023-06-22	강북구 솔밭근린공원 사랑모임회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0길 21 (수유동)176-57	○ 솔밭근린공원의 생태유지 및 환경발전 사업 ○ 강북구의 자연생태와 친환경적 생활환경 유지 ○ 환경공해 감독 및 모니터링 ○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이동환
841	2023-06-22	북한산 우이령 보존 해룡봉사회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247 (미아동)1348-1	○ 북한산 환경보존 및 우이천 살리기 ○ 자연환경 훼손예방 및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 ○ 거리질서 교통캠페인, 야간 방범, 기동순찰, 산악 구조활동 전개	최태준
832	2023-06-22	서달산자연환경지킴이봉사단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방배빌딩 203호 (방배동)767-1 방배빌딩 203호	○ 서달산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류, 포유류 등에 대한 조사연구 ○ 자연환경 훼손예방 및 보존에 대한 연구 실행 ○ 과실류 및 희귀식물 무단 채취방지 예방활동 ○ 서달산 중심으로 현충원 경계 및 녹지 보호 운동 ○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최만호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829	2023-06-22	불암산사람들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814, 재원빌딩 B1호 (상계동)76-9 재원빌딩 B1	- 도시자연 숲에 대한 학습, 연구, 조사사업 - 식물, 곤충, 새, 동물, 산림 등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 - 불암산 생태공원 지정 및 관리 활동 - 여타의 시민환경 단체와의 교류사업 -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김종철
724	2023-06-22	(사)유명산숲학교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3길 9, 101호 (신당동)316-14 101호	초중등학생 자연현장체험 학습 산림교육및산림문화창달 숲해설프로그램개발 청소년산불방지요원및숲관리요원양성 학교및지역숲가꾸기운동전개등	최노석
719	2023-06-22	환경지기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하월곡동, 동덕여자대학교)과학관 101호	○ 환경교육 이론과 적용 프로그램의 원활한 활용방안 개발 ○환경교육을위한전문성과소양을갖춘인적자원발굴및양성과재교육 ○대학과지역사회환경교육활성화지원 ○지역환경의환경교육기반모색(이론,현장)	임혜연
688	2023-06-22	노원마을숲가꾸기 시민모임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18길 17, 일신상가 307호 (상계동)726-1 일신상가 307호	나무이름표 달아주기, 숲강좌, 지정공원싸이트생태교육, 숲체험을통한환경의식증대사업 학교-주거공간-근린공원을잇는환경친화적인공동체형성사업 기타모임의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사업	김재현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548	2023-06-22	습지를 가꾸는 사람들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243 (둔촌동)511-3	자연생태습지 보전 및 관리 자연학습과생태학습프로그램운영	최경희
354	2023-06-22	한국자연생물 보호협회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28 (신사동, RAPHA 빌딩)592-2 402호	생츄리 신개척사업 자연동식물 보호감시	김종철
317	2023-06-22	녹색환경운동 모임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39길 4, 삼호연립 101호 (도림동)32-31 삼호연립 101호	우리식탁 안전하게 지키기 자연생태계보존운동 갯벌,철새도래지미생물관찰	최연봉
274	2023-06-22	관악산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17길 33, 2층 (봉천동)178-77 2층	환경운동(관악산 보존)	이후용
2541	2023-06-15	안토나눔봉사단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231 (길동)1층	○ 소외된 어르신에 대한 특별물품 기부사업 ○건강증진활동및교육사업 ○독거어르신대상반찬나눔사업 ○재해발생시자원봉사활동및복구지원사업 ○서울시어르신문화예술효축제행사및체험학습사업 ○자원봉사활동에대한인증제도(1365자원봉사)운영등	정영선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104	2023-06-15	서대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543-2 (홍은동)상세주소[미입력]	1. 자립생활 교육 및 기술훈련 2. 동료상담 교육 및 서비스 3.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4. 활동보조인 중계사업 및 활동지원 5. 남녀평등촉진 및 사회참여 활동 6. 정보제공 및 의뢰 7. 이동지원서비스 8. 자립주택운영 및 주거지원서비스 9. 장애인보장구 및 보조기기 관련 10. 그 밖의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오경석
1837	2023-06-15	사단법인 서울재가장애인협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용두동, 다사랑행복센터)4층	영세 재가 장애인 후원 사업 영세재가장애인자녀들에대한장학사업 재가장애인을위한구인,구직연계사업 재가장애인의자질향상,재활훈련및교육증진사업 재가장애인을위한각종봉사활동연계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및장애인복지운영사업	장금영
1766	2023-06-15	해피드림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라길 5 (구로동)1,2 층	○ 장애인 직업체험, 전환기 장애인과 지역 청소년 통합 커피교육 ○ 장애인 교육, 위기 청소년 학습심리정서 상담, 부모교육 ○ 성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커피드림, 와플드림, 떡드림, 피자드림 등 ○ 장애인, 전업주부, 학업포기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안경미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691	2023-06-15	구로장애인부모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19길 23 (오류동)1 층	○ 단체의 프로그램 유지, 발전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발달장애 성인의 직업교육 및 자립실현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회원간의 발전적인 교류	고봉자
1618	2023-06-15	사단법인 장애인유니버설디자인협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0길 10 , 411 호(방이동, 동산빌딩)동산빌딩 411 호	○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발, 지원, 연구, 홍보 사업 ○ 재활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 출판, 정보 제공사업 ○ 국내 및 국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단체와의 교류, 협력사업	임창덕
987	2023-06-15	사단법인 참사랑복지중앙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4길 21, 지하1층 (신정동)120-24 지하1층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장애인취업,교육,결혼등의상담사업 지체,시각,청각장애인들과함께하는공원산책 프로그램 장애인컴퓨터교실운영 중증장애인가정방문자원봉사활동	허환
899	2023-06-15	청각장애여성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6길 1, 정동빌딩 2층 (신림동)1652-9 정동빌딩 2층	청각장애 여성들을 위한 교육 및 복지증진 사업	조태순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768	2023-06-15	시각장애인재활복지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도로명[미입력]133-6 한중빌딩 308호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복지사업 2.장애인재활복지를위한지도자훈련사업 3.장애인자녀를위한조기교육사업 4.재활상담,직업상담,청소년상담,가족상담등을위한상담소운영사업 5.도서관운영및도서출판사업 6.자원봉사자들을통한시각장애인사랑실천운동전개사업 7.시각장애인문화창달을위한문화사업 8.국내외유관단체와의유대증진사업 9.기타본회목적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각종사업	신인식
698	2023-06-15	재밌다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9나길 16 (사당동)1034-9 B02호	-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취미활동 등을 통한 문화사업 -장애인에대한사회.심리.교육.문화.재활등의서비스제공 -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사업 -부모및가족과의관계증진을위한교육및권익보호 -지역사회내의자원개발및관리 -기타본단체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최우정
652	2023-06-15	더불어 함께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43, 바우뫼복지문화회관 401호 (우면동)68-1 바우뫼복지문화회관 401호	- 독립생활 관련 정책개발 및 도입화 활동 -동료상담 -정보제공과의뢰 -장애인권익옹호및지역사회운동 -활동보조서비스등	고관철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593	2023-06-15	대안교육연대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8 (묵정동)혁신파크 1-309	청소년의 건강한 공동체 문화개방 및 확산 청소년의 개성중시, 자기 개발을 위한 인성교육 및 체험학습 대안적 교육 및 문화의활성화	전정일
564	2023-06-15	서울장애인생활체육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34-11 (북가좌동)385-32 2층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및 동호회 육성지원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보급등	윤석용
516	2023-06-15	대한농아인노인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227-11 (연남동)373-10	무의탁농아인을 위한 결연사업, 무료급식, 취업알선, 계몽및 재교육사업 정기간행물 발행사업, 농아노인 체육활동에 관한 전반 사업	오재근외1
423	2023-06-15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7길 7 (당산동4가, 태경빌딩)119-2 효자하우스 1층	뇌성마비장애인인권보호 및 정책제안 연구사업, 재활 및 고용촉진 운동	유흥주
411	2023-06-15	곰두리봉사협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9, 세양빌딩 (중계동)434-1 세양빌딩	장애인 개인, 단체 및 국가사회의 공익행사 무료차량 지원 사업등	오옥용
410	2023-06-15	장애인실업자대책협의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12길 11, 대병빌딩 1층 (대방동)32-23 대병빌딩 1층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도장애인 환자 후원사업, 공용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박석한
369	2023-06-15	장애인문화사랑 국민운동본부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6, 한통빌딩 10층 (한강로3가)148-73 신화빌딩 401호	안식개선을 위한 연극, 뮤지컬, 무용, 영상물, 제작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등	곽노흥
359	2023-06-15	한국뇌성마비부모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72, 원광빌딩 2층 (능동)283-4 원광빌딩 2층	뇌성마비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등	이규철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337	2023-06-15	한국장애인의상 연구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27, 현대빌딩 B14호 (삼성동)109-17 현대빌딩 B14	장애인 패션문화 복지사업	김성윤
330	2023-06-15	해맑은 벗들의 운동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320 (항동, 성공회대학교)대한성공회대학교내	정신지체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사업, 진흥 사업 등	김성수
318	2023-06-15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5길 6 (신길동)651	장애여성의 권익보호 및 의식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장애성극단 끽판 운영	김미연
281	2023-06-15	장애여성공감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101동 411호(천호동, 대우한강베네시티)425-5 대우한강베네시티 101동 411호	장애여성문제홍보 장애여성 인권, 문화관련 책자발간. 프로그램 개발 등	배복주
194	2023-06-15	사랑의로바스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2길 3 (거여동)31-9	발달장애아동교육, 치료, 보호, 무료급식	김근원
19	2023-06-15	장애인 실업자연대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도로명[미입력]409-74	실업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일자리 창출	이안중
14	2023-06-15	한국맹인이료연구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319 (마장동)769-8	시각장애인의 침술 재활교육	김필년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2	2023-06-15	한벗장애인이동봉사대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69길 42-3 (효창동)5-134	- 장애인 등의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 -장애인등의각양의사회활동을향유하기위한 교육,훈련및편의시설제공 -장애인등의사회활동을촉진시킬수있는홍보 및출판사업등	백진앙
459	2023-06-13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9층 사무국 (도화동)9층 사무국	여성경제인의 권익보호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	이웅경
106	2023-06-13	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46길 46, 대한어머니회관 302호 (논현동)대한어머니회관 302호	교육문화사업, 사회복지사업, 의식개혁사업, 소비자운동 및 환경사업, 조사연구 및 출판사업, 홍보및후원사업, 취업알선사업, 국제교류사업 등	이혜배
2216	2023-06-12	또보자 마을학교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9길 36 (망원동)1층 202호	○ 마을과 학교 연계 사업 ○청소년동아리사업,학부모교육진행	조윤지
507	2023-06-12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 중앙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협력과	도로명[미입력]322-6 혜화빌딩 310호	범죄예방 순찰및 방범순찰, 청소년 선도사업, 불우독거노인에 대한 봉사	박일선
279	2023-06-12	서울국학운동시민연합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 (재동)3층	민족정신 함양 및 밝은사회 구현	김산태
147	2023-06-12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 강북연합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협력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009-5 (번동)외 1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과 청소년 선도	안태식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823	2023-06-09	(사)젊은농촌살리기운동본부	행정국 대외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1 (당주동)영진빌딩 401호	○ 젊은이들의 귀농 · 이주정착의 방법 및 대책에 관한 연구와 교육사업 ○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연구와 교육사업 ○ 젊은농촌살리기 강좌개설 및 시행 신청 ○ 농촌산업단지(기지)화 특별법 입법추진 및 공청회	박흥서
912	2023-06-09	농어촌진흥회	행정국 대외협력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 58 , 1층(개봉동, 농어촌진흥회)1 층 농어촌진흥회	-친환경 영농단지 조성 및 연구,교육사업 -귀농희망자영농실습장운영사업 -농수축산물유통망혁신사업	김경운
908	2023-06-09	서초구바른선거시민모임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8층 (양재동, 금성빌딩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11-2(금성빌딩 8층),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내	"바른 선거 좋은 나라" 구현하기 위한 사업	유동란
597	2023-06-09	동작구 바른선거 시민모임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12길 6 (노량진동)40-28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계도, 지방자치 의정참여	박사윤
546	2023-06-09	관악구 바른선거 시민모임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길 5 (봉천동)14-41	바른선거실천을 위한 시민운동	문옥자
545	2023-06-09	공명선거 실천 시민연대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86, 한독빌딩 3층 (홍은동)426 한독빌딩 3층	정책선거 실현, 흑색선거 근절, 금품향응선거 척결	이청영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107	2023-06-08	퇴직공무원재능기부강사상록자원봉사단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2길 61 (길음동, 길음동동부센트레빌아파트)제분산상가동 제1층 제105호	◦ 전문교육으로 재능기부 강사양성을 통한 퇴직자 인력풀을 관리 ◦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 및 재능기부와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정보제공 ◦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강사 및 인력의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관련 사업 ◦ 재능기부강사단 참여자 모집, 교육, 현장배치 등 퇴직자 경력 활용 일자리 관련 제반 업무	한근수
1974	2023-06-08	종로구 자원봉사단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73 (명륜1가, 르느와르5)상세주소[미입력]	◦ 독거어르신 대상 나눔 봉사활동 ◦청소년선도및소외계층가정방문 ◦환경보호및기초질서바로세우기운동	이유희
1951	2023-06-08	(사)바른선거시민모임 강동지회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4-12 (천호동)상세주소[미입력]	1. 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유권자 의식 개혁운동 2.불법타락정치문화감시고발활동 3.정책선거를위한매니페스토추진운동	이용희
1556	2023-06-08	참사랑실천운동본부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101가길 77 , 1 층(장위동, 1)1 층	◦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배치, 상담, 교육 ◦자원봉사활동의수요처모집과개발 ◦자원봉사프로그램의개발과보급 ◦자원봉사관련정보수집과제공 ◦자원봉사유관단체와의교류,협력으로하는공조사업 ◦자원봉사기금조성과관리 ◦대상자자기자신이대처능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원조 ◦자원에대한정보제공,자원의연결등을통해사회자원을얻을수있도록원조	기노선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461	2023-06-08	우리가 주인이다!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 1009호(역삼동, 성지하이츠-11)성지하이츠-11 1009 호	◦ 평생투표서약운동 ◦투개표제도개선운동 ◦10만시민참관인단구성운동 ◦토론회및단합대회	김영신
1310	2023-06-08	동작자원봉사은행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5가길 23, 한성빌딩 302호 (대방동)387-1 한성빌딩 302호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 자원봉사활동	김진국
886	2023-06-08	강서자원봉사단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9, 열린빌딩 503호 (방화동)487-12 열린빌딩 503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지원,육성	유영
536	2023-06-08	강북구 바른선거시민모임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13, 파스칼빌딩 4층 (번동)443-8 파스칼빌딩 4층	공명선거추진 및 바른선거 문화정착	양옥희
532	2023-06-08	양천구 바른선거시민모임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13길 25 (목동)128-18	유권자의식개선운동 의정활동 감시 선거관련 심포지움 개최	권태근
524	2023-06-08	노원구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모임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28길 15, 상가동 106호 (상계동, 상계1차중앙하이츠아파트) 1279 중앙하이츠 (아)상가 106호	바른선거 문화정착을 위한 시민계도 및 홍보	김정옥
512	2023-06-08	영등포구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모임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6가길 21 (신길동)95-101	공명선거계도, 의정감시, 선거 관련 심포지움 개최	조창숙
488	2023-06-08	중랑구 바른선거 시민모임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25가길 2, 현동빌딩 4층 (묵동)2번지 현동빌딩 4층	공명선거추진및 바른선거문화 정착	정성화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463	2023-06-08	동대문구 바른선거시민 모임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20, 경동웨딩프라자 4층 (용두동)26-14 경동웨딩프라자4층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계도 지방자치 의정참여	김대일
429	2023-06-08	강남구 바른선거 실천시민모임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7, 논현문화복지관 2층 (논현동)114-24 논현문화복지관 2층	바른선거문화 정착	최안섭
329	2023-06-08	금천구 바른선거실천 시민모임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29길 29 (시흥동)244-43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계도 지방자치 의정 참여	이광수
151	2023-06-08	서울특별시 바른선거시민 모임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12길 6 (노량진동)40-28	주민의식 개혁을 통한 바른선거 문화 실현	유동란
2442	2023-06-05	관악구장애인 단체연합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4 (봉천동,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8층	1. 관내 장애인들의 각종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직업및복지시설(장애인회관등)의설치유치 및운영 3.연합회의활동과올바른복지정책을위한홍보 사업 4.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점검및정보화교육사업 5.각종장애인복지기금사업및수익사업 6.기타연합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송낙규
1244	2023-06-05	해병대 특수수색대전우회 환경봉사단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54 (서초동)1459-5 서정빌딩 302호	한강, 하천, 해양 환경보호, 감시 및 홍보활동	최상학
1072	2023-06-05	(사)수중환경 정화연합회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0길 28 (수하동, 우석빌딩)우석빌딩	수중환경정화활동	이 우 열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936	2023-06-05	사단법인 환경21연대 서울본부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8, 건영빌딩 2층 (동선동3가)134번지 건영빌딩2층	- 수질보전 및 물절약 운동에 관한 연구 조사 -환경보존과유지에필요한활동지원사업및봉사활동 -기타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사업등	서두정
911	2023-06-05	당현천지킴이 봉사단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3길 28, 관리사무소 3층 (중계동, 양지대림아파트) 양지대림2차아파트 관리사무소3층	- 당현천 자연 보호, 생태체험 및 교육 -당현천주변자율방범순찰등	한익섭
814	2023-06-05	NGO환경보호 국민운동서울 특별시본부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412호 (가산동)327-32 대륭테크노타운12차412호	ㅇ샛갈살리기, 상수원살리기, 물절약운동캠페인 실시 ㅇ환경청소년단및환경기동봉사단등구성하여 하천순찰감시와홍보교육캠페인실시 ㅇ국내관련단체등과연계학술회의개최 ㅇ회원대상의대기,수질등의환경교육실시등	한남영
737	2023-06-05	환경수질보호 국민운동연맹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3, 동승빌딩 503호 (숭인동)178-142 동승빌딩 503호	- 전국토 환경과 수자원 오염예방 보호를 위한 조직 -환경과수질오염에대한예방,정화교양교육프로그램운영 -환경오염수자원오염감시및정화홍보활동 -본연맹과뜻을같이하는시민단체와연대활동 -기타본연맹목적에부합하는예방,보호,감시,정화활동	김경철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731	2023-06-05	UDU환경봉사단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3, 향군회관 (신천동) 7-13 향군회관	- 환경에 대한 국민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하여 교육사업 및 홍보사업 -전국토댐,강,하천,저수지,바다,수중,수상,산과들의오염된쓰레기와침전물을수거하며 가꾸는 사업 -맑고깨끗한친환경속에서국민모두의삶을영위하며자연그대로를가꾸고보존하며후손에게 물려주는 환경캠페인 운동 및 불법 환경오염 행위와 예방 감시 활동 -전국민모두가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모범적이고규칙있는환경조직구성 -소외된계층과회원들의복지사업 -본회및환경보존교육,운동에대한각종홍보물및책자발행	김낙윤
604	2023-06-05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유공자 환경봉사단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숭문길 219 (대흥동)2-8	환경보존및 환경오염 감시 활동 수질오염예방사업 환경봉사활동및복지사업	이동우
554	2023-06-05	환경수자원시민연합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88, 효성올림픽카운티Ⅱ 205호 (잠실동)175-12 효성올림픽카운티Ⅱ(205)	환경수자원 및 생태계보전 오염원감시관리등	박헌권
365	2023-06-05	한국맑은물보전 협의회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31길 28 (목동)505-9	맑은물 보전 등 환경 공익활동 등	안규홍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24	2023-06-05	광진주민연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41 (중곡동, 대화탕)광진주민연대 4층	1. 참여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한 사업 2.주민자치의정착과발전을위한사업 3.환경적으로건강하고지속가능한지역사회를 만들기위한사업 4.자원봉사활동과복지사업 5.전통문화의전승및문화사업 6.사회정의와공익을실현하기위한사업 7.지역의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사회적경제사업 8.호혜적관계망형성을위한마을공동체사업 9.활동가및주민역량강화교육사업	박용수
207	2023-06-05	녹색환경감시단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6길 27 (광장동, 광나루현대아파트)567	환경보전을 위한 감시 및 계도	석순길
2174	2023-05-31	희망나눔센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40-1 (성수동2가)403호(삼원빌딩)	o 취약장애인가정의 주거환경개선/대청소후원활동 o사회복지모금행사후원활동	배희숙
2030	2023-05-31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8 (봉천동)2층	정신장애인 동료상담,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립생활기술교육및정보제공, 활동보조파견서비스,체험홈운영	강욱성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930	2023-05-31	생명미디어센터	대변인 언론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1길 22 , 301 호(삼성동, 현대빌라)현대빌라 301 호	○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교육 활동 ○미디어기업및콘텐츠에대한비판적철학및이론의확립 ○미디어콘텐츠에대한모니터링및비평활동 ○생명과평화,정의와사랑을위한미디어의발전방안에대한연구활동 ○사업을위한출판,홍보사업 ○기타생명미디어센터의목적에부합하는제반사업	최성주
1803	2023-05-31	복합리조트산업발전포럼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55 , A 동 505 호(서초동, 강남태영데시앙루브) 강남태영데시앙루브 A 동 505 호	- 복합리조트산업이 경제, 사회, 문화등에 미치는 연구 및 각국 사례연구 - 국제 학술 심포지움 / 포럼 주관 및 참여 - 복합리조트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그룹과의 교류	박내회
1319	2023-05-31	한국언론사협회	대변인 언론담당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12길 1, 2층 (도림동)144-124 2층	1. 각 언론사와 인터넷언론사 발전을 위한 사업 2.언론사운영에필요한각종협력사업 3.언론자유수호및언론인권익옹호및뉴스와정보공유사업 4.언론과협회발전에기여한공이큰언론인과일반인에대한표창사업	최종옥
754	2023-05-31	사단법인 미디어연대	대변인 언론담당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6, 2층 (연남동)373-15번지 2층	미디어아카데미 교육, 풀뿌리 시민미디어 사업, 소출력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제반 사업	정준성
752	2023-05-31	사단법인 서울컨벤션뷰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센터 2205호 (삼성동)159-1 트레이드센터 2205호	- 컨벤션 서울 유치 및 개최 지원 -해외마케팅및도시브랜드홍보 -컨벤션인력개발활용(자원봉사자운영등) -컨벤션네트워크구축(홈페이지운영등)	정재관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501	2023-05-31	디지털방송 시청자모임	대변인 언론담당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125, 18동 141호(한강로2가, 나진상가)15-2 나진상가 18동 141호	올바른 디지털 영상 발전을 위한 시청자의견 수렴 시민을위한디지털방송홍보,HD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	김기완
486	2023-05-31	자유언론수호 국민포럼	대변인 언론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12, 나진빌딩 302호 (다동)117 나진빌딩 302호	자유언론 창달을 위한 캠페인과 현대사 왜곡 교육에 의한 의식작업에 대한 바른역사교육 운동	이경식
400	2023-05-31	미디어세상 열린 사람들	대변인 언론담당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NGO 폴침터 305호	방송모니터를 통한 수용자 주권확대, 미디어 환경 정화 운동 등	서문하
366	2023-05-31	대한전문기자 협회	대변인 언론담당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빌딩 911호 (구의동)252-14 성지하이츠빌딩 911호	전문단체 정보제공 및 기술조언, 전문언론의 분야별 전문교육	심기철
22	2023-05-31	한국시청자연 대회의	대변인 언론담당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9층 (목동)923-5 한국방송회관 9층	시청자 의견을반영하기 위한 모니터 미디어 교육 사업	김상근
1677	2023-05-30	한국당뇨환우 연합회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150 (신계동)3층	- 당뇨환우 및 관련인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 -당뇨환우커뮤니티운영및활성화 -당뇨환우후원사업 -당뇨신문및정기간행물발행및배포사업 -당뇨환우의사회복지증진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정책연구사업	염동식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381	2023-05-30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0길 65, 301호 (쌍문동, VILLA VERDE)301호	○ 학술연구 발표, 심포지엄 및 전시회 개최 ○학회지및기타출판물의발간에관한사항 ○임상미술치료분야공공활동지원등 ○국제회와의교류및유대강화에관한사항 ○기타본회목적달성에필요한사항 ○임상미술자격에관한사항	김선현
902	2023-05-30	한국 DRT 실천본부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49, 운석빌딩 5층 (성북동)132-3호 운석빌딩 5층	무료 의료진료 봉사	이은년
2208	2023-05-26	(사)한민족예술문화진흥협회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59 (냉천동)4층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북한이탈주민자립정착을위한각종사업개발 및일자리창출,교육사업및보급사업 ○문화예술인들의예술문화교류및정보공유, 남북한차이극복을위한공연활동사업 ○소외계층들과목적사업관련각종시설자원봉사활동등	이학철
2194	2023-05-26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포럼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동, 진미파라곤)601호	○ 남북경제 및 교류협력에 대한 조사 연구 ○남북경협에관한정책연구,세미나,토론회,남북경제협력현장답사등	이오영
1932	2023-05-26	평화복지협회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264 (월계동)3층 층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사업, 어르신건강관리, 여성출산장려, 탈북아동관련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조영남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297	2023-05-26	세계평화유지군 국가유공자연합 서울전우회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서길 82, 2층 (증산동)186-11(2층)	ㅇ 조국의 안보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한 국민정신의 공감대 계도사업 ㅇ회원상호간의친목도모와권익보호및복리증진사업 ㅇ월남참전제대군인의참전연금수혜혜택사업 ㅇ기타본회설립목적을위한사업	김유경
1282	2023-05-26	맥아더장군기념사업회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60, 대림빌딩 571호 (산림동)207-1 대림빌딩 571호	ㅇ 인천상륙작전 및 서울수복기념행사 ㅇ KLO부대 행방불명된 부대원 찾기운동 ㅇ 한국전쟁과 KLO부대의 재조명 심포지엄 개최 ㅇ KLO부대 전승지 찾기 및 순례행사	최규봉
1250	2023-05-26	대한해외참전전우회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2길 57 (신정동)276-1	국가안보, 사회유지봉사활동	안태훈
1210	2023-05-26	하나희망연대(구 사단법인 탈북인연합회)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2길 91 (공릉동)3층	◦ 자체 및 복지와 성금모금 ◦북한정권실체와실상전파및국민홍보를위한계간지발간 ◦북한실상을소개하는공개강연,셈니나등개최 ◦북한주민돕기지원금및지원물자전달 ◦북한주민의식변화유도사업추진	김윤재
1135	2023-05-26	고향쉼터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101 (신월동)235-7	탈북자,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상담, 교육, 자활, 취업지원 등	엄명희
1082	2023-05-26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서울특별시지부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5, 강원도민회관 305호 (서교동)447-4 강원도민회관 305호	전몰, 무연고호국영령모사/애국안보의식강화교육	김영택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679	2023-05-26	(사단법인)베트남참전전우회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 5, 3층 (합정동)396-4(3층)	베트남전에 관한 기념사업, 사회봉사 사업, 청소년 선도사업,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기타 위 목적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김만수
663	2023-05-26	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도로명[미입력]324-839(그린생활시설B/D301호)	.무훈을 기리고 영령을 추모하며 유족과 전산자 원호사업 .친목단결로 조국통일 역량 결집 .사회질서 확립	박부서
642	2023-05-26	대한민국애국청년동지회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 5층 (여의도동)14-2 동아빌딩 5층	대국민 인터넷 안보계몽 및 호국정신 함양, 애국지사,열사등국가발전공로자의명예선양, 기타안보와관련된부대사업	오복섭
605	2023-05-26	국가유공자 호국 6.25 전상동지회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0길 28, 우석빌딩 1003호 (수하동)40-2 우석빌딩 1003	국가안보 및 통일역량결집사업 회원친목도모사업 사회질서확립사업등	이희달
583	2023-05-26	북한자유화국민협의회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6길 13 (방배동)1021-14	탈북자지원 및 북한자료 제공	강병규
342	2023-05-26	해병한마음자원봉사단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19, 2층 (중곡동)648-17(2층)	불우이웃돕기 및 주변환경 정화운동, 관민합동 민방위, 봉사활동 등	정태수
186	2023-05-26	서울특별시 한국전쟁참전자회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3, 향군회관 7층 (신천동) 7-13 향군회관 7층	한국전 참전국과 국제교류등	천석길
1826	2023-05-25	한반도프로세스포럼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26, 고덕빌딩 503호 (명일동)고덕빌딩 503호	◦ 동서화합 및 국민통합 운동 ◦탈북동포지원활동 ◦사회정화및치유활동	김충립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062	2023-05-25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길 11, 서대문세무서, 2층 205호 (홍제동)서대문세무서, 2층 205호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옹호 ○역량강화를위한정보제공및자립생활기술훈련 ○동료상담교육및자조모임 ○지역사회장애인편의시설조사및점검 ○지역사회내장애인자립생활에대한인식개선사업 ○활동보조파견사업 ○지역사회내의문화향유권보장을위한참여및 행사 ○기타자립생활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제반사업	오문영
1005	2023-05-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단체연합협의회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9나길 17 , 102 호(영등포동, 윤석빌딩)윤석빌딩 102 호	1. 회원간의 사업협의 및 자료와 정보교환 2.여성의자질향상을위한교육의실시및홍보활동 3.여성지도자상호간의유대강화 4.각여성단체업무조정및지도육성과지원 5.지역사회발전을위한자원봉사활동전개	박계석
847	2023-05-25	동작구여성단체연합회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110 (신대방동)355-16	- 회원단체간의 사업협의 및 자료와 정보교환 -여성의자질향상을위한교육의실시및홍보활동 -각여성단체업무조정및지도육성 -단체간의친목증진및홍보활동등	정문자
727	2023-05-25	서울서초지역생활안전교육협의회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도로명[미입력]87-19 2층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간영애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707	2023-05-25	한국영신회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0길 66 (신사동)598-8	.사회봉사 및 개발사업 .복지,상담및구제,교육사업 .가정폭력,성폭력,청소년상담및구제사업	이종승
519	2023-05-25	자립지지공동체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43가길 13 (길음동)919-9	성매매현장 여성들의 자립지원, 피난처운영 생활공동체 운영 인권증진을위한복지사업등	김미령
517	2023-05-25	서울여성해방연대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20길 10 (대흥동)32-24	여성캠프개최, 3.8여성대회, 반성매매캠페인 대학여성 주의자모임결성 및 지원 정기적인반전평화활동등	유희정
500	2023-05-25	딸사랑 아버지모임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도로명[미입력]63-46 (2층)	평등한 아버지모임 활성화를 위한 조직 사업, 성차별 없는 사회, 평등한 아버지가 되기 위한 교육사업 등	김병후, 정채기
498	2023-05-25	한국핸드메이드협회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대우디오빌빌딩캔두비즈니스센터 140호 (합동)117 대우디오빌빌딩 캔두비즈니스센터140호	공예 전문인력 개발, 여성인력개발, 공예인 권익보호 등	문석만
447	2023-05-25	드림사회복지회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4 (동숭동)1-124	가출여성 및 청소년을 위한 상담실 운영 가출여성및청소년을위한보호시설운영	김지영
189	2023-05-25	한국여성정보원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906호 (공덕동)256-13 제일빌딩 906호	여성정보화를 위한 제반교육사업 및 정책개발사업	김현자
1	2023-05-25	한국여성능력개발원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42, 삼천리빌딩 2층 (여의도동)35-6 삼천리빌딩 2층	여성직업능력개발, 여성교양교육등	전재호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428	2023-05-24	함께웃는 마을공동체 '즐거운 가'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49, 지층 (문정동)지층	- 청소년과 어른이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 -문화예술활동참여와공간의제공 -다양한계층의상호문화예술의교류 -마을문화예술교육사업및정책의개발 -기타본회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이윤복
2486	2023-05-23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시민모임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24길 53 (정릉동)105호	1.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2.온실가스감축에너지절약실천을위한캠페인 개최 3.온실가스감축에너지절약실천을위한지역민 주시민교육지원 4.환경을우선하는나눔과봉사를통한지역공동 체복원 5.환경문제에대한지역현안분석과대안마련 6.지역시민문화의질을향상하기위한환경운동 의전개 7.기타에너지절약시민모임의목적달성을위해 필요한사업	김기순
2407	2023-05-23	얼쓰플러스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54길 16-5 (한남동)3호	1.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미래세대 양성 및 교육 2.환경생태계에대한교육으로생명감수성증진 3.환경관련컨텐츠를제작배포하여구독자중심 커뮤니티를기반으로 토론장 형성	이병한
2245	2023-05-23	(사)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관악구지역본부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35-38 (봉천동, 행복타워)7층	○ 지역의 푸른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환경보호에대한주민의식을높이기위한교육 및홍보사업 ○지역환경문제에대한조사및정책사업 ○환경피해지역의사업을지원하는연대사업등	이도경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224	2023-05-23	우리가 그린(green) 은평 네트워크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서울혁신센터 1동 316호	○ 환경보전에 대한 조사·연구 ○환경보전의식고취를위한대국민홍보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위탁하는환경보전 관련업무 ○환경관련법령·제도및시책의조사연구와개선건의등	홍순동
2195	2023-05-23	사단법인 한국환경체육 청소년연맹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6 (여의도동, 리버타워)602호	○ 환경보전생활화와 청소년 학교체육을 위한 교육훈련 및 봉사활동 ○ 청소년 환경보호활동과 체육에 관련된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 환경 문화 체육조사 및 연구활동 ○ 청소년 환경, 체육지도자 연수 및 인재양성 등	유범진
2029	2023-05-23	(사)한국평생 교육사협회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B동 1102호 (마곡동)B동 1102호	◦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 평생교육사 관련 제반 연구 및 자료 제작 ◦ 기관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회원들의 정보 공유 ◦ 평생교육사 현장 실습 및 지원 활동	이재주
2027	2023-05-23	에너지히어로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59-1 (한강로1가)201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부 플랫폼 제공 에너지절약을위한시민참여유도 에너지빈곤층을위한에너지복지활동및일자리창출	윤태환
1994	2023-05-23	서울시녹색산업협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72 (구로동)413호	- 녹색산업 신기술 정보 습득 및 공유 활동 -녹색기술을통한융복합과제수행 -녹색산업관련세미나,정책포럼및대국민교육홍보	조성식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985	2023-05-23	현대푸르미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8 (신대방동, 현대아파트)단지내 상가 지하 1층	○ 에너지 절약, 대체 에너지 보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에너지 관련 체험학습, 강의 프로그램 개발 ○ 에너지 생산과 절약을 위한 태양광, LED 등 설치 등 컨설팅 및 지원	허정자
1937	2023-05-23	서울에너지지킴이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4길 17 (개포동, 주공아파트)단지내 상가 지하 1층	○ 공동주택, 기업체, 상업시설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 실천활동 ○ 에너지 산업의 공신력 제고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및 공동대응 사업 ○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활동 및 일자리 창출 ○ 각 환경단체와 환경관련 사업 연대 활동 ○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환경교육 실시	임정숙
1921	2023-05-23	미래그린환경센터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9길 4 (석촌동, 유라빌딩)5층	○ 에너지산업에 관한 지식, 기술, 운영에 관한 개발 및 보급 ○에너지산업의기술향상을위한교육,지도,강습및연구회또는에너지학회운영 ○에너지산업에관한정보의수집,분석,평가및 자료.간행물의발간등조사 · 연구사업및용역사업 ○에너지산업민간활동가운영및교육 ○에너지산업의발전을위한관계법령및제도등의연구및개선방안의대정부건의 ○에너지산업관련정부또는서울특별시.광역시.지자체.공공기관등의위임 · 위탁업무 ○기후변화관련사업및해외관련산업국내외유관단체및기관과의유대강화 ○에너지산업국내외IR을통한투자유치및판로개척에관한사업 ○에너지산업공동기술개발및기술이전등 M&A지원사업	윤영철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842	2023-05-23	사)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관악구협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4 (봉천동)관악구시설관리공단	○ 환경 운동의 계획 수립 및 추진 ○ 환경 운동에 관한 자료정보의 교환 ○ 환경 감시 및 자연생태계 보존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지역내 유관 단체와의 협조 도모 ○ 회원 상호간 교류 및 친목도모를 통한 지역발전 추구 ○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봉사활동 사업 등	은준영
1731	2023-05-23	서울에너지닥터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2길 28 (방학동, 도봉여성센터, 보육정보센터)3층 여성창업지원실 내 창업보육실 2호	○ 에너지 복지 및 절약 관련 사업 ○환경및에너지관련실태조사및연구 ○에너지진단및컨설팅 ○환경및에너지관련교육 · 홍보및캠페인 ○환경보전및에너지절약실천을위한네트워크구축	오여주
1723	2023-05-23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4 (견지동)4 층	○ 기후변화 대응을 모색하는 콘텐츠 개발 ○환경오염과생태계파괴를방기하기위한사업 ○환경문제에대한조사연구및정책제시사업 ○환경피해지역과지역단위사업을지원하는제발활동 ○국내외환경단체및환경운동에뜻을같이하는사회단체와의연대사업	최원형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689	2023-05-23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중랑구지역본부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 360 (면목동, LKAP빌딩)201호	○ 환경분야 연구조사 및 학술회의 ○환경감시․계몽및환경교육 ○환경보호자원봉사및환경보호활동	홍중국
1598	2023-05-23	녹색환경자전거봉사단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918 (고덕동, 강동구자전거서비스센터)강동구자전거서비스센터	o 환경운동과 실천을 위한 사업 o환경에대한주민의인식을높이기위한교육,선전사업 o환경오염감시와이의해결을위한활동 o대기/수질/폐기물환경개선과이를위한활동 o본회와뜻을같이하는사회단체와의연대사업 o기타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김대유
1572	2023-05-23	(사)그린플루언서운동본부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49 (양평동5가, 선유도우림라이온스밸리A)1304호	○ 그린플루언서운동을 위한 계몽 및 홍보사업 ○GF스카웃창단및운영사업 ○그린플루언서운동을위한학술연구및교육사업 ○녹색생산․소비와관련된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및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대외교류 ○환경및기후변화대응관련기업,단체,지자체등의실천사항컨설팅 ○ 관련된 교육, 출판 및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유은희
1566	2023-05-23	환경사회책임연구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5길 11 (용강동, 인우빌딩)5층 101 호	o 환경정책 연구 조사 분석 o환경경영과에너지경영을통한산업의녹색화촉진사업 o교육사업및세미나개최 o전문서적출판사업 o국제교류및협력사업 o기타본연구소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	황상규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554	2023-05-23	글로컬그린네트워크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07 , 402호(원효로2가, 상완빌딩)상완빌딩 402 호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혁신 모델 개발을 위한 정부,시민,전문가 포럼 개최 -기후변화및에너지정책/기술연구,자문및제안	문지현
1531	2023-05-23	(사)블루환경교육센터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12 (가락동, 드림빌딩)2 층	○ 학교 및 사회에 대한 해양환경교육 및 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지원을위한청소년해양환경교육과환경교육지도사양성 ○사회해양환경교육및환경교육관련교육교재개발및연수 ○해양환경교육및환경교육교구,자료개발및출판 ○세계환경문제와환경교육가치관정립을위한연구개발사업 ○기타해양환경교육진흥을위하여필요한제반사업	박정희
1510	2023-05-23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마포지역본부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80 (구수동)상세주소[미입력]	○ 환경보호운동의 계획수립 및 추진 ○환경보호운동에관한자료및정보수집 ○환경보호감시및생태보전에관한봉사와교육활동 ○지역주민참여홍보와유관단체와의협력 ○생활속의환경보호의식고취 ○기타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소영철
1505	2023-05-23	녹색미래연대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봉천동, 관악센츄리타워)1317 호	○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 행동, 홍보, 출판사업 ○환경문제에대한조사연구및정책제시사업 ○환경및생물다양성의보호를위한국내외연대및실천활동 ○환경운동,환경교육및환경과생물을위한예술적표현활동 ○환경및생물관련국제기구의네트워크구축및국내유치 ○국․내외연관단체및연구소와연대한각종학술회의개최 ○기타본단체의목적실현에필요한사업	장영권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504	2023-05-23	열린환경교육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83 (인현동2가)국일빌딩 513 호	○ 이론과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과 보전활동 ○자연환경보전을위한봉사활동 ○교육과환경보전활동을위한행사지원및간행물발간 ○일반및청소년환경지도자양성 ○학교를대상을찾아가는환경교실운영 ○국내외환경교육단체와의교류협력및연대활동	이정희
1424	2023-05-23	환경사랑길잡이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길 6 (개포동)동선빌딩 2층	○ 환경관련 각계 인사 초청 강좌 및 정책 포럼 개최 ○환경보호에대한의식을높이기위한교육및홍보선전사업 ○환경피해지역의사업을지원하는연대사업 ○국내 · 외환경단체및사회단체와의연대활동 ○환경문제에대한조사및신고사업 ○그외환경보호운동에필요한사업	임승룡
1307	2023-05-23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서울특별시본부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74 (삼전동)1층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저 탄 소 녹 색 성 장 을 위 한 에 너 지 절 약 ․ 신재생에너지 홍보사업 ○맑은공기,깨끗한수질확보를위한국토환경정화운동사업	윤수길
1195	2023-05-23	환경인회관건립기금위원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23 (구로동, 비즈트위트그린)(환경빌딩6층)	- 공익사업을 위한 회관건립기금 조성 -환경기술인,일반시민물순환및재이용관련교육사업 -환경보전캠페인및환경보전을위한공익활동지원사업	박천상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151	2023-05-23	에코리더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0 (방배동, 기탄빌딩)2층	○ 환경캠프(체육교육) ○ 국내환경행사 참가 ○ 환경캠페인 계획서 작성 ○ 환경보전 오프라인 홍보 활동 ○ 환경교육실시	이경율
1142	2023-05-23	(사)자연사랑 실천운동본부 서울시지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58 (한강로1가)한길빌딩5층	물 예술제 자원재활용(3R)운동 우리꽃보급운동전개등 자연생태계탐사및환경파괴고발 자연사원운영,자연생태연구및조사	김기숙
1118	2023-05-23	사단법인 한국그린전략경영협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 61 (수유동)상세주소[미입력]	○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개발, 홍보 및 교육 ○ 그린전략, 지속가능경영 등에 관련한 연구개발, 세미나, 컨설팅 및 교육 ○ 그린전략, 지속가능경영 등에 관련한 전문가 양성 및 과정개발 ○ 청정생산, 환경경영, 갈등관리, 생태산업단지 등에 대한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교육 ○ 국내외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연구 및 협력 업무 ○ 협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배포 등 ○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정연돈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102	2023-05-23	그린피플서울 본부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1길 29 (인현동2가, 상오빌딩)505호	○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홍보 및 현장체험학습 교육사업 ○ 환경보전 홍보를 위한 신문발행 및 도서발행 ○ 환경오염사진전시회를 통한 『환경보전』 범시민 홍보사업 ○생활용품(1회용품)(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사업 ○ 자원절약과 에너지절약실천홍보사업 ○『그린피플환경감시단』 및 『그린피플청소년감시단』 조직관리 및 운영 ○ 연 2회이상 환경자체행사를 주관하여 시민들의 환경의식전환의기회 제공 ○ 민간재활용수거 및 처리체계 구축 사업 ○ 기타, 환경보전에 관련된 사업일체	김종수
1067	2023-05-23	성동 녹색자전거봉사단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도로명[미입력]3-10	o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o한강,탄천,성내천(방이습지)조사연구및정책제시 o환경을위한교육및홍보,캠페인등	최혜숙
1034	2023-05-23	서울환경협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방배동, 남부종합시장)방배빌딩 203호	환경정화운동 등	김영무
1014	2023-05-23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서울시직할단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4길 7 (을지로3가, 성진빌딩)503호	- 수자원 보존 및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사업 -수질오염예방활동 -지역사회봉사및복지사업	김응재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011	2023-05-23	중구 녹색자전거 봉사단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도로명[미입력]388-1 21	- 친환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남산길생태환경모니터링및환경보존활동 -시민자전거교육,홍보및환경캠페인	임태순
1008	2023-05-23	용산구 녹색자전거 봉사단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7길 4 (한강로1가, 세화빌딩)1층	- 친환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한강및용산가족공원생태보존활동 -시민자전거교육,홍보및환경캠페인	최정자
983	2023-05-23	금천생활환경 실천단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4길 102-82 (독산동, 독산 배드민턴 체육관)상세주소[미입력]	○ 환경오염 감시 및 대기환경 개선 ○생활환경개선및환경교육활동	박경춘
945	2023-05-23	두루미환경지킴이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94 (방학동, 방학3동주민센터)상세주소[미입력]	○ 환경의식 고양을 위한 대 주민홍보 및 활동 ○ 환경파괴 및 오염행위 감시 활동 ○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수열
924	2023-05-23	환경감시연합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89 (상계동, 하이베라스)214호	○ 환경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 지원 ○ 환경친화적인 지역환경 사업에 대한 연구 ○ 유사 활동 단체와 연대 활동 ○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강영석
913	2023-05-23	황막사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38 (양재동, 석봉빌딩)13-10 석봉빌딩 7층	- 황사를 막기 위해 사막에 나무를 심는 사업 - 북한 식수 사업	박준호
880	2023-05-23	사단법인 한국환경장애 연구협회 서울시협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0 (공덕동)2층	○ 환경장애적 요소 및 물질조사, 연구, 분석 ○ 환경장애 피해방지와 해결방안을 위한 연구 활동 ○ 환경 피해 구제 상담 및 환경장애발생 예방 활동 등	장석필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821	2023-05-23	생활환경지킴이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41나길 27-3 (문래동4가)상세주소[미입력]	○ 안양천의 수질개선과 공원화 조성 사업 참여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제반사업 만들기 ○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을 통한 환경의식 고취 ○ 회원확보를 위한 기본적 조직 확산 사업 ○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제반 사업	문종근
819	2023-05-23	성동환경연구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8 (행당동, 행당빌딩)상세주소[미입력]	○ 지역환경통신, 회원회보 발간 ○ 폐식용 이용 무공해 재활용비누 만들기 ○ 전염병예방 방역활동, 환경교실 운영, 지역환경모임 지원 ○ 학생인성교육 환경캠페인 전개, ○ 불우가정 김장담아주기, 독거노인 머리깍아주기 등 지역 봉사 ○ 기타 지역환경 문제 연구 등 보전에 필요한 사업	김희전
801	2023-05-23	환경감시중앙본부서울지역본부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3길 16 (묵동, 명보빌딩)2층	○ 환경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 지원 ○환경친화적인지역환경사업에대한연구 ○환경관련단체및기관과의공조유지 ○환경교육자료의개발과환경의식고양사업 ○환경및자연보호에필요한전국민계도및자연보호운동 ○기타목적에부합되는각종지도	오기수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728	2023-05-23	서울초등환경교육협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서초동, 서울교대초등학교)구 과학관 과학교육과 배영부 교수 연구실내	○ 환경교육의 연구와 연수활동 ○ 학교 환경교육의 질 향상 ○ 환경 보전 봉사활동 전개 ○ 일상생활의 환경 보전 생활화 ○ 정기 연차 및 수시 학술연구 회합의 개최 ○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 국내외의 환경교육 및 인접 학술단체와의 제휴 ○ 국내외 환경운동 단체와의 유대강화	배영부
674	2023-05-23	한국환경보전실천교육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7 (미근동, 베트남공화국 공관)계명빌딩 7층	· 환경보전의식 및 실천교육 실시 · 환경관련 학술연구 및 발표회 개최 · 회지및기타출판물간행 ·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정락윤
634	2023-05-23	영우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14길 1, 신정학마을2단지 (신정동)1294신정학마을2단지	어린이집 설치운영(학마을햇살, 신트리햇살)	김영석
592	2023-05-23	건설교통시민연대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1길 34 (등촌동, 플러스존)901호	건설유자녀돕기 복지사업, 환경친화적인건설정책건의 참건설친환경문화운동전개등	최용기
582	2023-05-23	한국자연경관보전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등촌로 118 (목동)301호	자연경관보전 캠페인 환경세미나개최 환경경찰신문발행	김원호
578	2023-05-23	도시환경정보연구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32 (방이동, 무교낙지해물탕)4층	도시환경관련 조사 연구, 환경친화적 지역개발, 도시환경정화 자연사랑 운동 전개 등	이용부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576	2023-05-23	천주교 환경연대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13 (동숭동,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상세주소[미입력]	환경묵상집 발간 환경교육및워샵 재생가능에너지정책전황등	이동훈
572	2023-05-23	월드그린 환경감시단 서울특별시 감시단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77길 9 (장안동)상문빌딩 3층	환경감시와 보호활동 환경친화적국민생활계도등	양지선
559	2023-05-23	실버그린 봉사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2길 42 (봉천동)상세주소[미입력]	환경정화및 자연보호 산불예방	황규복
535	2023-05-23	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46길 6 (한강로2가)정우빌딩 304	환경캠페인, 봉사, 감시 , 계몽개선 등	류민석
525	2023-05-23	녹색성장환경 교육진흥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4길 27 (계동)3층	1. 지역주민 대상으로 녹색생활의 활성화 및 홍보, 계몽을 통한 실천의식 고취 2.범시민을대상으로녹색성장의중요성을이해시키기위한교육 · 체험프로그램운영 3.탄소포인트스쿨시스템정착을위한프로그램연구개발,교육,교사양성 4.녹색성장,녹색산업활성화를위한조사,연구및정책실천프로그램형성 5.녹색성장관련법 · 정책등의제도적장치를도입 · 실현및모니터링활동진행 6.녹색생활정착을위해관련행정기관,기업등과협력체계구축 7.주민조직,시민환경단체,풀뿌리단체등과활동교류 8.평생교육시설설치및운영 9.환경교육센터및방과후학교위탁운영 10기타본단체의목적에부합하는사업 EMD	이경자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492	2023-05-23	환경보호국민운동 본부영등포지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86 (신길동)3층	자연환경 보호, 회원들 대상으로 환경교육 실시, 지역주민에 지속적인 환경보호운동 계몽, 기타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김주철
448	2023-05-23	한국교통시민협회 도봉지부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07-1 (도봉동)624-94	국가교통발전 및 시민교통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도, 계몽, 홍보 등	임관빈
381	2023-05-23	한국교통시민협회 서부지부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53 (북가좌동)392-5	국가교통발전 및 시민교통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도,계몽, 홍보 등	장환수
368	2023-05-23	환경통신원회 양천지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711 (신정동)상세주소[미입력]	환경분야 대기, 수질, 폐기물 현장활동 및 자체 봉사활동	김용배
357	2023-05-23	UNEP 한국위원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46 (양재동)블루필 빌딩 4 층	환경보호운동	김재범
275	2023-05-23	송파생활환경실천단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22길 15-6 (마천동)상세주소[미입력]	환경분야(대기,수질,폐기물)현장순찰 감시활동 및 정화운동 등	신만재
262	2023-05-23	환경통신원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0 (한강로3가)상세주소[미입력]	환경분야(대기,수질,폐기물)현장활동	김인영
259	2023-05-23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01 (등촌동, 강서구자원봉사센터및교통정보센터)NGO센터 3층	환경운동	선상규외1
258	2023-05-23	노원생활환경실천단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130 (공릉동, 영화교회)상세주소[미입력]	환경분야(대기,수질 폐기물)현장활동 및 자체봉사활동	이도수
255	2023-05-23	환경표준협의회 서울지부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현대리버스텔 1011호 (청담동)130-9 현대리버스텔 제1011호	자동차문화창출, 생태환경, 대기환경, 에너지 절약 주체 양성, 국가공인연비.배출가스 표준마련	이상진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39	2023-05-23	한국통신원회 용산지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0 (한강로3가)상세주소[미입력]	환경분야 대기, 수질, 폐기물 현장활동 및 자체 봉사활동	김인영
237	2023-05-23	한국통신원회 성동지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59가길 25-10 (응봉동)상세주소[미입력]	환경분야 대기,수질, 폐기물 현장활동 및 자체 봉사홛동	김판근
232	2023-05-23	환경통신원회 광진지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16길 40 (구의동, 이화그린빌리지)상세주소[미입력]	환경분야 대기,수질, 폐기물 현장활동 및 자체 봉사활동 등	임영복
229	2023-05-23	녹색강동연대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3길 10, 고운빌딩 5층 (효제동)287번지 (공영주차장내)	환경분야 대기.수질.폐기물 현장 활동 및 자체 봉사 활동	송진규
219	2023-05-23	주부환경도봉구연합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도로명[미입력]1-2	환경보존사업	고명자
217	2023-05-23	동작구 녹색환경 봉사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268 (상도1동, 상도1치안센터)상세주소[미입력]	환경보존 및 정화사업	윤묘순
201	2023-05-23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1, 중앙빌딩 404호 (저동1가)48 중앙빌딩 404호	환경모니터링, 에너지 절약, 쓰레기절약운동 등	최영호
200	2023-05-23	한국환경보호연합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8길 26 (창신동)201호	환경교육, 홍보, 조사 연구사업	오치선
195	2023-05-23	도시교통시민연대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109, 대륙빌딩 205호 (중화동)324-14 대륙빌딩 205	승용차자율요일제 캠페인 선진교통문화창달 결식이웃무료급식사업	김기만
91	2023-05-23	환경보호감시국민 운동본부 서울시지부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19 (불광동, 금성빌딩)3층	자원절약, 환경보전, 문화시민 자원봉사	서영수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86	2023-05-23	환경과 공해연구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사길 22-8 (신대방동)지층	연구활동, 환경교육, 정보제공, 연대활동.	이수경
85	2023-05-23	환경보호국민 운동본부 동작구지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46 (사당동)지하1층	광범위한 환경을 살리고 보호함	천인수
78	2023-05-23	시민환경정보 센터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누하동, 환경운동연합)251	환경정보, 가동 유통	최열
77	2023-05-23	환경과 공해연구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사길 22-8 (신대방동)지층	수질,대기,폐기물, 상태교육	김상종
45	2023-05-23	어린이교통안 전연구소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483, 어린이교통공원 (중계동)502번지 교통공원내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허억
44	2023-05-23	교통문화운동 본부 서울본부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2길 3-1, 오성빌딩 7층 (영등포동7가)104-5 오성빌딩 7층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고경복
40	2023-05-23	시민문화 발전모임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1214호 (낙원동)58-1 종로오피스텔 1214호	바로교통질서 확립 생활화 시민운동	윤만중
37	2023-05-23	교통문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22, 흥사단빌딩 3층 (동숭동)1-28 흥사단빌딩 3층	대중교통 제도개선	이광현
36	2023-05-23	시민의 교통권 연대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0-3, 상화빌딩 4층 206호 (잠원동)76-7 상화빌딩 4층 206호	카플매칭 및 재매칭 사업, 안전띠매기 범국민운동추진, 교통기초질서 확립운동 등	정규호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35	2023-05-23	녹색어머니회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0, 덕명빌딩 (반포동)113-3 덕명빌딩	자동차 매연 추방 운동	윤경섭
2304	2023-05-22	한국나눔교육포럼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신문로1가, 구세군회관)801호	○ 한국사회 나눔확산을 위한 한국나눔교육포럼 개최 ○나눔교육에필요한콘텐츠개발및배포 ○나눔교육확산을위한나눔교육강사양성및역량강화사업 ○나눔교육관련연구사업 ○그밖의단체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이문석
2144	2023-05-22	국제엔젤봉사단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봉천동, 관악센츄리타워)1314호	○ 국내외 나눔의 실천을 위한 사업 ○문화교류를위한교육출판사업 ○이웃사랑과환경보호를위한자원봉사 ○생명문화의실현을위한공동체사업 ○국제시니어가요제및재미있는가요제개최 ○구성원들의봉사활동을위한소모임활동	최정범
2114	2023-05-22	희망25시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27-2 (충무로4가)일우빌딩 2층	○ 비영리분야 임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비영리분야자원연계를통한지역사회나눔실천관련캠페인 ○비영리분야임직원들의네트워크활동지원 ○국내외지원및봉사활동 ○기타단체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김성만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054	2023-05-22	종로해병대전우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 (연지동)연지공원(1-38) 내	○ 관내 우범지역 순찰 ○관내행사지원(구민걷기대회,문화행사,민방위) ○청소년선도및계몽활동과유해환경업소단속 및감시활동 ○기타본회의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사업및봉사활동	김정선
1880	2023-05-22	국민사랑의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여의도동)909 호	○ 국회 등 공적기관 활동에 대한 감시와 참여, 입법연구 및 청원 ○여론형성과국회가추진하는법률,정책등에 민의를반영하기위한활동 ○국사회활동에필요한방송,신문및책자발간, 토론회,공청회개최,교육사업 ○기타국사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이원영
1703	2023-05-22	모금가 클럽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 309 , 4층(평창동, 비젼빌딩)비젼빌딩 4층	◦ 비영리단체 대상 모금 컨설팅 및 자문 ◦비영리단체실무자대상모금교육 ◦모금연구학술모임	이용수
1695	2023-05-22	떼알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6길 16-14 (정릉동)2 층	○ 친환경도시농업 교육 및 보급 ○살림살이,적정기술교육및보급	이봉금
1668	2023-05-22	은평e품앗이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177-13 (응암동, 한국도자기)지하1 층	지역주민들을 위해 재능, 품, 물품, 서비스, 재화 등을 공유 -은평공유장터:재능공연,수리병원 -은평물품공유센터:생활용품,전동공구,캠핑장비대여 -토요배움터:재능을이용한소그룹활동 -품앗이코칭교실:은평구동단위품앗이교육 및자원봉사자교육	차해옥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622	2023-05-22	참개인가치연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 , 714 호(가산동, 뉴티캐슬)뉴티캐슬 714 호	◦ TIVA 프로그램 :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가치운동 지원 ◦Mentoring:청소년과대학생을위한 멘토역할 ◦Blogging:자신의지식과정보를인터넷에서블로그로표현 ◦Wikiing:위키,즉 '사용자에의한지식형성네트워크' 에적극기여	박경귀
1620	2023-05-22	7080 아차산작은음악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90 , 202 호(자양동, 제일빌딩)제일빌딩 202 호	◦ 아차산 정기공연 ◦어린이대공원야간정기공연 ◦복지관 · 양로원 · 경로당등소외계층을위한찾아가는음악활동 ◦불우이웃돕기나눔희망콘서트	양병우
1615	2023-05-22	원코리아페스티벌 한국위원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 , 2 층(역삼동, 유창빌딩)유창빌딩 2 층	◦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사업 ◦어려운이웃을돕기위한사업 ◦평화와화해증진을위한사업 ◦다문화와다양성을존중하기위한의식개선사업등	김희정
1606	2023-05-22	한불성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66 (봉천동)3층	1.불우 가정 지원사업 2.문화재탐방및보호지원사업 3.취약계층(고아원,교도소,양로원등)지원사업 4.자연환경보호지원사업	오세중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595	2023-05-22	태평봉사단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5-1 , 5층(당주동, 쎄븐빌딩)쎄븐빌딩 5층	◦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의 회원들 정기후원 및 지원 ◦소외계층사업의일환으로독거어르신돌보기사업 ◦고아원,양로원의어르신말벗활동과 이발및지원사업 ◦저소득층이웃사랑연탄나눔및김장나누기봉사활동 ◦환경보호운동(폐휴대폰수집)등	한순분
1591	2023-05-22	발명계독도개발지원운동본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69 , 4층(와룡동,)4 층	◦ 독도지킴을 위한 사업 ◦회원상호간의친목도모	한송본
1576	2023-05-22	새솔교육센터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50 , 2층(대방동, 예수중심교회)예수중심교회 2 층	◦ 소외계층 자립자활지원사업 ◦소외계층정보화교육사업 ◦소외계층긴급지원사업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자원봉사자조직화사업 ◦평생교육시설운영사업	허서진
1567	2023-05-22	한국독도역사문화아카데미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74 (서교동, 원천빌딩)602호	◦ 독도 · 대마도 · 이어도에 관한 역사적 · 지리적 ·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활동 ◦국민인식제고를위한홍보및간행물제작 ◦전국지역순회강연회,교육,세미나,웅변대회,캠페인,의식조사 ◦독도 · 대마도순례운동프로그램운영등	이상우
1549	2023-05-22	독도NGO포럼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길 54 , 2층(신대방동, 홍우미술세계)홍우미술세계 2 층	독도 단체 간 유기적 협력으로 독도수호활동	손용해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522	2023-05-22	실버문화복지협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 4층(낙원동, 낙원상가)낙원상가 4층	-어르신을 위한 음악다실사업 -문화소외계층을위한공연및박물관이벤트업 -실버영화관협회사업 -어르신교육및상담업 -수익사업(영화상영,영화수입배급업,홍보업,인력대행업,공연,음식업,방문판매업,광고대행및디자인업,인쇄대행업) -저소득취약계층을위한모금사업 -기타본협회의목적을수행하기위한사업	김은주
1501	2023-05-22	사단법인 코리아정책연구원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 901호(순화동, 바비엥3)바비엥3 901호	◦ 한반도 평화 및 통일과 관련한 연구조사, 학술, 교육, 문화사업 ◦세계및동북아평화와관련한정부·민간교류및학술교류사업 ◦대한민국및한반도와관련한정책건의등의일련의사업 ◦평화와통일과관련된남북교류협력사업 ◦기타세계,동북아,한반도의평화와관련된사업	유호열
1477	2023-05-22	나라사랑청년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31 , 206호(북아현동, 백상빌딩)백상빌딩 206 호	-서대문 거주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반찬봉사활동 -서대문지역저소득,편부모가정아동대상사랑의몰래산타활동 -농촌봉사활동 -서대문지역마을을알리고주민들과함께지역사회발전을위한행사개최	김주현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464	2023-05-22	진보와 나눔의 2030 커뮤니티 노원청년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53길 89 , 1층(월계동,)1 층	◦ 노원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 ◦노원지역의청년들의공동체적삶을 위한교육사업 ◦본회의목적달성을위한기타사업	권명숙
1453	2023-05-22	서울양천청년회의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대로 530 , 5층(목동, 한양빌딩)한양빌딩 5층	지역사회개발, 지도역량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등	정선미
1415	2023-05-22	조선족연합회 우리집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5(홍제동)상세주소[미입력]	1. 재한조선족동포의 법적, 제도적 권익 향상 활동 2.재한조선족동포의정착과편의를위한쉼터'우리집'제공 3.재한조선족동포의교육,문화활동지원	유봉순
1412	2023-05-22	지역리더십센터 함께이룸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10 , 6 층 607 호(녹번동, 세민빌딩)세민빌딩 6층 607 호	지역리더 및 시민교육,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육전문가 양성	조재학
1386	2023-05-22	열린의정봉사단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 , 102 동 101 호(사당동, 극동아파트)극동아파트 102 동 101 호	◦ 기초의회, 광역의회의 의정 모니터링 및 의원의 공약실천 검증 활동 ◦지방봉사단조직의통합조정과전국적인문제의처리 ◦지방봉사단통합의견의공표및정부관계기관등에의건의 ◦지역사회개발을위한연구활동및사업의실시 ◦외국봉사단과의제휴및교류 ◦정치․경제․사회․문화및청년육성을위한연구활동및사업의실시	김영기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329	2023-05-22	한국범죄척결운동본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 37 (상봉동)208-1 지하1층	범죄예방, 안전한 거리 만들기 운동	이광희
1322	2023-05-22	성동주민자치운동센터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75 (행당동, 행당동 대림아파트)목련상가 B1호	주민단체 네트워크, 소통센터 활성화	이일순
1303	2023-05-22	강서까치자원봉사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39길 59 (등촌동)690	무의탁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병원이용시 차량무료이송 등	문용길
1275	2023-05-22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하남빌딩 508호 (여의도동)44-27 하남빌딩 508호	1.민주시민 교육사업 2.정치,선거제도 및 정책개발사업 3.의정모니터링과 정책평가사업 4. 글로벌인재양성사업 5.그밖에 연맹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이연주
1239	2023-05-22	포럼 주민광장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64길 2, 경성무역빌딩 2층 (효창동)5-103 경성무역 B/D 2층	-주민참여 활동을 통한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대안제시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을위한교육훈련및정보제공서비스	윤병우
1199	2023-05-22	새물결봉사단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79, 2층 (거여동)21-1, 2층	- 사회, 문화, 의료, 지식, 청년, 환경 분야 봉사활동 -기술,음식,상담,안전,후원,운영분야봉사활동 -기타사회전반에걸친다양한봉사와자원봉사자의배출	최세일
1192	2023-05-22	도봉사람들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212-22, 2층 (방학동) 445-1(2층)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의 성장과 자원연계(주민자원활동) 활성화	송 건
1189	2023-05-22	생명과평화포럼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2107호 (도화동, 마스터즈타워빌딩)2107호	생명과 평화사상을 근간으로 한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각개인사 초청강좌 및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장신규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181	2023-05-22	국민통합운동 본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17길 16, 2층 (현저동)1-87, 2층	시민의식개혁운동(시민강좌) 충효예실천고취운동 민주주의수호와조국평화통일을위한협력사업 국민화합을위한지역교류강연사업 기타본회의목적과관련된사업	정훈
1112	2023-05-22	동아시아역사 시민네트워크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51길 8 (청파동2가)98-4 1층	시민네트워크 조직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역사교육및정책개발연구 시민참여사업 기타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이장희
1110	2023-05-22	(사)선진화국 민연합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88 (마장동, 현대써비스)792번지 3층	국가선진화를 위한 국민의식개혁 캠페인 및 세미나 개최 국가선진화를위한정책개발및연구 기타설립취지에부합된제반사업	정건수
1085	2023-05-22	서초구 국제교류협의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과천대로 904-6, 2층 (방배동)2698 2층	- 서초구 자매결연 국내외 도시에 대한 서초구 홍보사업 -서초구관내거주외국인들을위한복지사업 -서초구관내불우이웃및소외계층에대한봉사활동 -기타서초구를국내외에알리는데필요한홍보사업	이보경
1075	2023-05-22	사랑나눔봉사단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81-3 (동교동)2 층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지역사회소외계층에대한문화복지사업 -청소년의건전육성을위한지도및지원사업 -재능나눔지원사업과문화나눔지원사업	김양진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074	2023-05-22	서울사랑봉사단 (舊 서울국학평화봉사단)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01 , 4층(역촌동, 성문빌딩)성문빌딩 4층	- 국내외 재난민 구조사업 -사회화합을위한나들이봉사및국학강연 -청소년의식개혁을위한해피스쿨운동전개 -지역사회건강증진과사회참여사업	김태연
1064	2023-05-22	한국범죄방지사협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1길 19-2 (구산동, 옥샘교회)1층	1. 범죄방지(지도)사 교육훈련 및 양성 2.범죄방지와피해자보호관련조사,연구및홍보 3.범죄방지에대한전문지식과기술의개발보급 4.기타범죄방지에기여하는사업	김용준
1036	2023-05-22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71 (마천동, 정안빌딩)정안빌딩	자원봉사모집.상담.연결을 통한 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운영으로지역사회문제해결등 장애인의사회보장및기회균등을위한복지사업으로제과제빵직업훈련서비스제공및사업운영	박희숙
975	2023-05-22	은평시민넷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02 (응암동)74-4	은평구 민원 및 구의회 모니터링활동 자원봉사활동및지역연대사업등	이용재
939	2023-05-22	ngo교육포럼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83 (구로동)104-9	- 시민교육 담당자 교육 기획 -시민운동가의정보및노하우공유와연대활동	곽형모
906	2023-05-22	은평사랑나눔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99, 2층 (갈현동)506-33 2층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외국인이주노동자야학교실운영등	김지숙
890	2023-05-22	강동시민연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84(천호동)상세주소[미입력]	-6.15공동선언정신 및 풀뿌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실천운동 -지역주민의생존권적삶의요구에부합하는나눔과연대활동 -아름다운지역공동체를만들기위한교육,문화,환경사업등	오재수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888	2023-05-22	청년평화센터 푸름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15길 19, 2층 (상암동)2-88 2층	-평화운동 전개를 위한 평화민주교육, 워크숍 모임 -평화실천활동,평화연구활동 -평화의비전을실천할수있는청년활동가육성사업등	정혁
884	2023-05-22	씨알평화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 809호 (남창동, 삼선빌딩) 809호	- 평화관련연구사업 -평화운동전개를위한교육,세미나,대화모임 -평화일꾼들의파송을통한평화교류및실천사업	김진
868	2023-05-22	생명인권운동본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72, 석운가빌딩 3층 (대치동)891-41 석운가빌딩 3층	- 생명인권에 대한 연구, 교육, 실천, 정책대안 마련 -폐쇄환경인권감시를위한연구,교육 -사회안전망과사회안전환경구축을위한실천프로젝트개발과운영	조용범외 1인
858	2023-05-22	새사회연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0길 21-9 , A 동 501 호(을지로6가, 쌍둥이빌딩)쌍둥이빌딩 A 동 501 호	인권정책 개발, 인권교육, 인권과제 및 현안해결 등을 위한 연대운동 인권관련법률제,개정활동	김도현 외 1
855	2023-05-22	풀무야간학교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3길 23, 202호 (쌍문동)103-200 202호	제도교육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교육사업 지역주민들을위한교양강좌등기타교육사업	손승권
817	2023-05-22	시민교육공동체에듀플랜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용비어천가 220호 (내수동)75 용비어천가 220호	- 시민의식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시민교육의내용과방법,학습조직운영등의연구개발사업 -시민교육전문가양성사업	신종원
813	2023-05-22	민족운동진영총연합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1311호 (경운동, 수운회관) 1311호	- 민족운동지도자 양성 -한민족의우수성과정체성을홍보하는문화예술사업 -한민족공동체조성사업등	김선적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807	2023-05-22	강동구자원봉사연합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15 (성내동)551-3	- 한마음 봉사의 날 개최 -강동구자원봉사연합창립회개최 -강동구자원봉사주간설정	김덕호
795	2023-05-22	교육문화공간 향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2길 16, 북한산현대렉시온 410호 (방학동)719-2 북한산현대렉시온410	- 교육자들의 만남과 소통 -여름숲학교 -통일교육사업	윤한탁
784	2023-05-22	한글통일문화진흥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10가길 60-18 (마장동) 460-25	- 초,중,고교학생 전방시찰 및 견학 후 이념교육 -통일교육협의회와공동으로합동포럼	김점태
760	2023-05-22	해병대전우회 흑룡봉사단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31 (창동)362	방범순찰, 질서지키기 캠페인, 청소년선도	김영진
756	2023-05-22	시나브로자원봉사연합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51길 22 (중곡동)172-80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주민복지프로그램	권영희
733	2023-05-22	의식개혁협의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7 (양평동4가)278-4	ㅇ월례발표회를 통한 시민의 선진의식 고취	정동화
722	2023-05-22	(사)범예의생활실천운동서울특별시구로구지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31길 18 (구로동)503-4	시민예의생활 실천운동의 교육및 전개 인성등윤리도덕성회복운동전개	김형춘
717	2023-05-22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서울시강동지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63길 21 (천호동)450-40	예의생활 실천 교양강좌및 한자교육	양만봉
704	2023-05-22	평화통일 이북7도연합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도로명[미입력]63-10 1(해룡빌딩 2층)	○ 지역사회 불우이웃돕기 운동 ○고향및새터민정나누기운동 ○주변환경정화운동	송병준
702	2023-05-22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서울특별시본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8-1 (명륜2가)209-4	- 시민예의생활실천운동의 교육및 전개 -인성등윤리도덕성회복운동전개등	조 성 근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644	2023-05-22	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50 (성산동)242-17	-정책연구,의회감시,교육 등 제반활동을 통해 참여민주주의 실현 -아름다운지역공동체를만들기위한교육,문화,환경사업 -지역의정체성찾기및지역발전방안제시를위한연구사업등	김성섭
623	2023-05-22	평화운동국민연합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39, 용산구민회관 2층 (한강로3가)63-379 용산구민회관 2층	평화사랑 국민참여 및 평화통일 기여운동	백남선
616	2023-05-22	홍익교육실현학부모연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46 (서교동)463-2	학부모, 학생의 건강한 의식함양캠페인 지역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봉사및 협력사업, 올바른 학교문화창조캠페인 관련단체와의 연대 및 교류	정영애
615	2023-05-22	한국퇴직교원협의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15, 202호 (중곡동)83-8 202호	퇴직교원들의 바람직한 활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관련 자원봉사활동.	이규삼
614	2023-05-22	인성교육지도봉사단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12-4, 천일빌딩 303호 (방배동)450-24 천일빌딩 303	학교, 가정,사회전반에 인성교육자료 개발, 보급, 국내외 체험학습 및 문화체험을 통한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조국래
607	2023-05-22	정의교육시민연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9길 7, 아로마빌딩 5-2 (역삼동)748-28 아로마빌딩 5-2	교육현장의 조사연구, 교육현장 개혁의 대안제시, 교육현장의 지원과 상담, 지역사회 교육활동	최현섭
588	2023-05-22	열린주민자원봉사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55길 8 (수유동)248-34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이상복
585	2023-05-22	새마음서훈중앙협의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3, 삼보빌딩 903호 (소공동)112-25 삼보빌딩 903	새마을 운동 계몽사업 청소년충효예교육사업 사랑의집고쳐주기등	양승용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570	2023-05-22	교육소비자연맹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둘레19길 5, 상가동 101호 (성수동2가, 강변임광아파트) 609-2 강변임광(아)제상가동 제101호	교육환경개선 사업 학부모교육사업 국제교류협력사업 단체목적사업에부합되는수익사업	김용길
566	2023-05-22	평화포럼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0, 환경빌딩 4층 (장충동1가)118 환경빌딩 4층	평화운동	강원용
520	2023-05-22	민족화합기도후원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51 (역삼동)654-3	민족화합 사업 및 도시빈민 후원 사업	정근모
505	2023-05-22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3길 26, 1층 (명륜3가)108-3 1층	인권관련 법제도 개혁 및 인권교육	이영
490	2023-05-22	사랑말국제자원봉사단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46길 24-2 (연남동)384-9	해외 자원봉사 사이트 번역, 교류사업 및 자원봉사 홍보	석화옥
489	2023-05-22	충,효,예실천운동서초구지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2 (염곡동)256	충효예 실천 국민운동 전개 회원교육및캠페인,충효예실천을통한도덕성회복과신용사회구축	신승임
483	2023-05-22	북방문제연구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252, 신삼송빌딩 3층 (신설동)117-5 신삼송빌딩 3층	통일관련 시민교육	최영택
478	2023-05-22	충,효,예실천운동 강서지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19, 오성빌딩 4층 (화곡동)1024-25 오성빌딩 4층	충,효,예 실천 범국민운동	이건홍
466	2023-05-22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5, 동신빌딩 301호 (안국동)139-1 동신빌딩 301호	통일홍보사업	임정순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462	2023-05-22	바른교육시민운동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대건빌딩 302호 (역삼동)822-5 대건빌딩 302호	교육바로살리기, 부모교육, 식생활 교육, 경제교육	조재욱
455	2023-05-22	평화인권 연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0, 기사연빌딩 5층 (충정로2가)35 기사연빌딩 5층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를 이루기 위한 시민사업등	손상열
454	2023-05-22	민족상생평화통일연합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4길 14 (응암동)81-93	민족상생과 공존 공영 및 후손들의 번영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평화통일 구현을 위한 통일관 정립	조양엽
437	2023-05-22	충효예실천운동 동대문구지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17길 29-3 (청량리동)205-30	충효예실천운동을 통한 도덕성회복과 신용사회구축전개 충효예실천자원봉사단조직운영	최용이
435	2023-05-22	충효예실천운동 양천구지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6 (신정동)117-25	충효예실천운동을 통한 도덕성 회복과 신용사회 구축전개, 충효예실천 자원봉사단 조직운영	신상원
432	2023-05-22	서울고향만들기모임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216 (신길동)159-3	새로운고향문화 발굴 및 창조, 지역간의 벽을 타파하기 위한 운동, 자연과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박상호
424	2023-05-22	미래준비서울지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5, 승보빌딩 5층 (서초동)1716-7 승보빌딩 5층	미래창조운동전개, 미래창조 정신의 실천, 미래창조 훈련 및 연수 전개	김순진
378	2023-05-22	한반도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217, 경김회관 502호 (만리동1가)53-8 경김회관 502호	정책감시 및 정책대안 제시 연구와출판활동 언론모니터연대활동등	정욱식
363	2023-05-22	한민족대국민화합연합회 서울특별시연합지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7, 서린빌딩 707-2 (여의도동)45-15 서린빌딩 707-2	대국민 통합을 위한 대화, 홍보, 서명사업, 고엽제 제2세 피해가족상이자와 3세들의 생계비지원 및 권익보호 등	최수식
361	2023-05-22	새천년남북통일운동본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39, 오산상가 111호 (대조동)6-9 오산상가111호	국내외 동포의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의지 확산, 남북한 학술.문화.예술.관광 등 교류	주명주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344	2023-05-22	동작자원봉사 은행 운영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상도동)176-3	자원봉사활동	함세웅
336	2023-05-22	공간문화센터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9길 21, 한스빌라 302호 (서교동)404-23 한스빌라302	디지털 시대의 도시문화 만들기, 지역문화개발 활성화 등	최정한
314	2023-05-22	교육환경 개선 실천운동 협의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1길 6 (대조동)84-6	청소년 보호법 실효화를 위한 활동 학교주변환경개선을위한활동 애교심갖기운동	권영오
296	2023-05-22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 서울시지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2길 88 (구의동)242-1	지역간 화합운동, 사회선도운동, 환경운동, 복지봉사등	김창남
295	2023-05-22	VJ시민방송단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1길 45 (합정동)447-8	인터넷 방송을 통한 공익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임덕재
273	2023-05-22	교육컨텐츠개발협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61, 덕수빌딩 3층 (봉천동)1673-21 덕수빌딩3층	교육컨텐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활동 교육컨텐츠 감시와 평가활동	문승훈
242	2023-05-22	한국여성자전거 자원봉사단연합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길 83-1 (명륜3가)1-1077	자전거를 이용한 자원봉사	구정미
210	2023-05-22	서울지역 한자교육연구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8길 30 (북가좌동)276-12	한자교육 자원봉사 활동	신현태
209	2023-05-22	삼청교육대인권운동 연합 서울특별시지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28길 10, 제2호동 제1층 제106호 (후암동)244-86 제2호동 제1층 제106호	인권신장을 위한 신문고행사 및 자료집 발간	전영순
188	2023-05-22	21세기인성교육 범국민운동본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8길 20, 허니문빌라 202호 (목동)525-8 허니문빌라 202호	바른교육을하기 위한 교육환경조성	이용주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87	2023-05-22	한국통일철학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70길 32, 광진연립 101호 (수유동)270-68 광진연립 101호	통일철학 및 대북정책 홍보	이경염
175	2023-05-22	인류도덕성회복 실천동지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06, 209호 (행당동, 한양대역) 산17 209호	인류의 타락된 도덕을 회복하기 위한 의식개혁운동전개	정삼선
160	2023-05-22	종로21자원봉사단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23길 52 (정릉동)405-6	자원봉사활동	정경화
159	2023-05-22	공동체의식개혁 국민운동 마포구 협의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1다길 20 (염리동)27-78	의식개혁 실천운동	홍성기
154	2023-05-22	한국기초사회연구회 서울시지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2-2 (을지로3가)291-42	기초질서 및 전통윤리 확립, 민족정신 고취	최창열
153	2023-05-22	포럼 2001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44 (혜화동)185	시민, 사회교육사업(시민강좌)	주재선
152	2023-05-22	한국노년유권자 연맹 서울시지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31길 39 (장위동)192-13	자원봉사 및 시민참여	진순옥
146	2023-05-22	사단법인 함께하는교육 시민모임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11 , 1 층 2 호(방배동,)1 층 2 호	바른교육 정립을 위한 의식개혁 실천운동	오성숙
144	2023-05-22	관악동작 학교운영 위원회 발전협의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78 (신림동)1416-1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사업 등	안영혁
143	2023-05-22	국민대화합전국연합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35, 107호 (논현동)145-16번지 107호	국민화합을 위한 도시빈민 복지사업, 사랑의 양서 보내기운동 및, 사랑의 네티즌운동등	김봉환
141	2023-05-22	나라정책연구원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9, 서호빌딩 4층 (서초동)1550-14 서호빌딩 4층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식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송해룡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40	2023-05-22	정의교육시민연합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7 , 103 동 602 호(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롯데캐슬클래식 103 동 602 호	사회참여 체험학습 현장교육 지원센터 교육정책 모니터링등	천희완
65	2023-05-22	정신개혁시민협의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305호 (경운동, 수운회관) 305호	의식개혁, 생활문화개혁, 부정.비리무능 추방 운동	이자현
63	2023-05-22	신사회공동선연합 서울특별시지부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57, 공덕빌딩 5층 (공덕동)385-63 공덕빌딩 5층	민주시민의식 공동선 실천운동	이범
382	2023-05-19	자동차시민연합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3동 302호(에이스하이테크시티) (문래동3가)3동 302호(에이스하이테크시티)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 안전운전 문화 캠페인을 통한 교통사고방지운동 등	임기상
2454	2023-05-18	송파구장애인체육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방이동, 올림픽공원)139호	1.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2.각종대회및동하계캠프개최운영 3.장애인인식개선 4.장애인체육시설위탁운영	서강석
1682	2023-05-18	(사)대한민국부사관총연합회 서울지부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38, 영흥빌딩 201호 (석촌동)영흥빌딩 201호	-국가안보 및 사회봉사활동, - 안보관련 우수, 선행사례 발굴 및 전파, - 순국회원에 대한 추모 및 선양, - 호국정신 함양 및 계도, - 회원 및 자녀(가족) 취업알선 등 회원의 복지증진, - 기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김순태
2010	2023-05-17	한국모금가협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1길 13 (원서동)306호	○ 모금가 및 모금활동의 표준 및 윤리성 확보 ○건전한기부환경조성을위한정책사업 ○모금분야의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과훈련사업	허탁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950	2023-05-17	케어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31, 1층 (양평동5가)1층	-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캠페인, 홍보 활동 -유기동물보호를위한사업 -동물학대방지를위한대책마련및계몽활동	김영환
2438	2023-05-16	사단법인 발휘재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3, 1320호 (도화동)1320호	1. 남북교류 경제협력 지원 사업 2.남북경제공동체발전에관한연구,조사,정보 제공및컨설팅교육사업 3.동북아평화문화,경제교류협력사업세미나, 포럼,토론회,강연및행사	강경국
2132	2023-05-16	서울지구시민연합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59, 810호 (천호동)810호	○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환경에대한시민들의인식을높이기위한교육 및홍보사업 ○환경문제에대한조사,연구및정책제시사업 등	인덕찬
1910	2023-05-16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0길 10 (응암동, 서문교회)서문교회	◦ 학교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와 실천 ◦ 지역학교,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교육콘텐츠 개발 및 시행 ◦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비교과 과목 지원 ◦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부대사업	손달익
1869	2023-05-16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109 , 4 층 415 호(한강로3가, 나진전자월드)나진전자월드 4 층 415 호	1.천문우주문화 확산에 필요한 교육,출판,게시,홍보,시설물 운영관리사업 2.국민을위한별축제개최 3.천문지도사교육및자격증발급 4.아마추어천문학연구및천문정보수집,배포 5.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에서지정또는 위탁받은사업	김두희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815	2023-05-16	프렌딩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11 , 13 층 1 호(여의도동, 메종리브르오피스텔) 메종리브르오피스텔 13 층 1 호	o 범청소년 참여를 위한 문화개발 및 보급 o 가출, 폭력, 학대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등 콘텐츠 개발, 환경조성 o 청소년 지원 장학사업 전개, 청소년 문제 관련 통계조사 및 연구 o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백두원
1805	2023-05-16	미래교실네트워크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1 (목동)KT정보전산센터 20층 2009호	o 해외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한 교육정책, 제도 등에 관한 제안 및 보급 o미래교실확산을위한토론회,세미나,심포지엄등개최 o미래교실실천방안전시및행사등	장혁
1737	2023-05-16	민달팽이유니온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4-1 (북아현동)2층	-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사업 -주거문제관련법령제정,개정 -청년주거상담	김솔아
1546	2023-05-16	건강학교연대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70길 27(효창동)상세주소[미입력]	◦ 학교폭력 및 학생자살 예방 사업 ◦학교환경개선및안전사고예방사업 ◦건강클럽운영및학생건강관리지원사업 ◦건강학교와관련된조사‧연구‧자료개발에관한사업 ◦학생‧학부모‧교사 등을대상으로하는교육및홍보사업 ◦학교‧가정‧지역사회와연관된건강증진사업추진 ◦기타단체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항	이주열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380	2023-05-1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	행정국 총무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 12 층 1207 호(공덕동, 제일빌딩)제일빌딩 12 층 1207 호	기초질서지키기 및 환경보호 대시민 켐페인 사업 등	최창식
1330	2023-05-16	강북주거복지센터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35길 34 (미아동)791-2341번지	○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및 주거환경 지원 ○임대보증금및월세지원사업 ○주민을위한주거상담사업 ○주거취약계층의주거환경개선(도배및장판 등) ○지역사회주거복지네트워크구축 ○지역주거복지정책대안마련	노대성
398	2023-05-16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 서울연합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28, 거성빌딩 5층 (대방동)402-3 거성빌딩 5층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교통질서, 청소년선도캠페인 재난시 인명구조활동 등	박혁
101	2023-05-16	관악사회복지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3길 96, 103호 (신림동, 에어스페이스)103호	제가노인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등	박승한
98	2023-05-16	은빛샘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24 (견지동)74-2	노인복지 사업	박병섭
2258	2023-05-12	더이음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10)1910-2호	○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인,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상담지원사업 ○통일인식개선사업 ○기타지역사회연계사업	이근혁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848	2023-05-12	케어라이츠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3길 18 (서초동, 한솔빌딩)한솔빌딩	- 노인 및 가족부양자를 위한 임종의료결정 교육 및 상담사업 -의료시설의전문의료인,관련의료서비스종사자를위한교육및훈련사업 -노인및가족부양자의임종의료결정권리옹호사업 -연구및교육,상담프로그램개발 -호스피스쉘터국제기구사업	한수연
1801	2023-05-12	한국시니어비전협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9길 29 , 303호(을지로3가, 우리빌딩)우리빌딩 303 호	- 어르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노노케어 선도사업 -어르신치매조기발견및사후관리에관한상담지원사업	이득우
1685	2023-05-12	행복한 하루 봉사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1길 6 , 4 층 1 호(역삼동, 영신빌딩)영신빌딩 4 층 1 호	독거 어르신들의 도시락 배달 봉사를 위한 사업 독거어르신들의안전손잡이,욕실미끄럼방지설치를위한사업 독거어르신들에게겨울철김장담가드리기봉사사업 그밖에회칙목적에적합한공익을위한사업	이규학
1634	2023-05-12	사랑식탁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44 , 302호(문래동3가, 영서교회)영서교회 302 호	영등포구내 지역 어르신 무료급식(주1회) 독거노인및소년소녀가장용돈나눔(월1회)	남상국
1553	2023-05-12	노노케어중부센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8길 5 , 213호(을지로4가, 무광빌딩)무광빌딩 213 호	독거노인 고독사예방 사업	윤금춘
1538	2023-05-12	사단법인 한국은빛소망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264 (독산동)지층	독거노인 및 불우노인에대한 무료급식 노인들에대한각종행사및위로공연	이영순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494	2023-05-12	부뚜막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가산동, 리더스 타워)리더스 타워	무료급식 밑반찬배달	김성식
1136	2023-05-12	아름다운사회 만들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가길 1, 2층 (동선동3가)247 2층	노인 교육 사업, 노인 무료 급식 사업, 불우이웃 돕기 사업	정광식
1042	2023-05-12	희망나눔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26, 쌍림빌딩 203호 (인의동)18번지 쌍림빌딩 203호	노인무료급식, 무의탁노인 보호사업 등	심인섭
1019	2023-05-12	인테리어 25시 봉사단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93-9 (번동)5층	홀몸어르신 및 불우이웃 주거환경 개선 시설봉사 홀몸어르신과중고등학교학생자원봉사자간의 가족만들기 홀몸어르신위로잔치및장수사진촬영 불우이웃을위한자원봉사활동 각지역복지관및시설등에물품지원(아나바다운동) 기타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김성환
921	2023-05-12	고향을 사랑하는 모임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77, 명빌딩 5층 (화곡동)1051-26 명빌딩 5층	◦ 독거노인 생계지원사업 ◦ 청소년 및 저소득 가정 지원사업	최태욱
905	2023-05-12	밝은희망봉사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31길 17, 동원빌딩 B1호 (신수동)85-23 동원빌딩 B01	○ 독거노인 집수리봉사 및 생활지원 ○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 청소년 장학사업 및 생계지원 ○ 장애우 사회활동 함께 하기 행사 등	소영철
901	2023-05-12	민들레 홈헬퍼 복지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3, 동숭빌딩 503호 (숭인동)178-142 동숭빌딩 503호	홈헬퍼 사업(가정봉사원파견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독거노인및장애인도우미사업	김경철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816	2023-05-12	노년기 희망 봉사단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6길 22-5 , 나 동 2 호(응암동, 은성빌라)은성빌라 나 동 2 호	◦ 노년기 자원봉사활동 정신과 가치 함양 및 봉사활동 전개 ◦노년기여가프로그램개발및청소년 선도,체험봉사지도 ◦윤리도덕인성교육사업등	용수택
790	2023-05-12	사랑과행복나눔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5층 (서초동)1362-14 해동빌딩 5층	○ 무의탁노인결연사업(후원자 결연 및 직접 후원금 지급) ○ 무의탁노인 취업알선사업(55세 이상의 노인) ○ 독거노인 생활용품 지원사업 및 결식노인 무료급식 사업 ○ 독거노인 전화말벗사업	박홍순
774	2023-05-12	제일노인대학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21길 132-24 (번동)148-242	o 노인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o건강무료급식및이.미용 o합동생신잔치,경로잔치및노래자랑,합동금혼혼례식 o정기건강검진	장두현
749	2023-05-12	다우리봉사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179 (신길동)3741-41	재가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등	이옥동
710	2023-05-12	노원사랑봉사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35, 두성빌딩 301호 (상계동)763-4 두성빌딩 301	독거노인 방문봉사활동	최옥희
640	2023-05-12	곰두리차량봉사대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1길 6, 삼승빌딩 301호 (문래동2가)36-6(삼승빌딩 301)	독거노인 및 노인문화탐방사업	박선영
575	2023-05-12	에스,티효림원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66 (충정로3가)1-39	어려운노인돕기사업 군부대지원등	김동금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555	2023-05-12	한국주례전문인협회 서울시지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2길 18 (신당동)333-111	전문주례인 양성 건전가정의례지도, 계몽, 생활예절 교육 등	은희권
530	2023-05-12	난곡노인복지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93, 신림7동 새마을 금고 3층 (신림동)678-20 신림7동 새마을 금고 3층	노인자활사업	윤호
515	2023-05-12	난곡노인쉼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도로명[미입력]640-44	불우노인돕기 지원사업, 병.의원 결연사업 및 무료침술봉사 연계사업	강남석
408	2023-05-12	한국노인복지전문가협의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24바길 36-16, 1층 102호 (염리동, 서울노인대학)23-78	전국민 경로,효도교육사업및 경로현장 보급사업	박계승
373	2023-05-12	시니어뉴비전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7길 30, 대학문화원 405호 (묵정동)192번지 대학문화원 405호	실버포럼 개최 및 나눔 봉사활동, 실버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등	원진희
352	2023-05-12	녹색치매환자보호협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11, B동 406호 (흑석동, 명수대상가) 9 명수대현아파트 상가B동 406호	치매환자보호 및 치매예방사업	공성록
270	2023-05-12	한국소리선교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285 (천호동)294-26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양로사업 아동복지발전을위한지역아동복지센터사업 지역사회노인무료급식사업	이형영
269	2023-05-12	사회복지아카데미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길 32 (노고산동)12-74	무의탁노인 자원봉사자 기능훈련실시 및 양성 무의탁노인 자원봉사 활동	임미동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68	2023-05-12	한우물봉사단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95, 9층 902호 (답십리동, 우창프라자아파트) 499-2호 우창플라자 9층 902호	수지침 봉사활동, 노인상담소 운영, 자원봉사자모집 및 관리	김맹기
120	2023-05-12	대한불교 조계종직할 조계사청년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조계사내 (견지동)45 조계사내	불우노인 식사제공 및 자원봉사, 실직자 취업알선	박희정
102	2023-05-12	사랑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1 (명륜3가, 성균관)53-7	독거노인, 모자가정, 청소년가장 가정지원사업	이명우
99	2023-05-12	작은사랑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80나길 56 (수유동) 49-7	경로잔치, 경로대학	강희섭
97	2023-05-12	사랑채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07 (인사동)110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무료양로원 취업센터 및 노인 통역도우미	김금복
96	2023-05-12	상록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도로명[미입력]독막길 333 성동빌딩 501호	노인복지사업	이달형
95	2023-05-12	대한적십자 서울특별시지사 강북,도봉적십자 봉사단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81 (수유동)47-3	강북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사업 전개	성선남
2414	2023-05-11	희망키움넷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24, 1026호 (다동)1026호	1. 국내외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성장자립을 돕는 결연사업 2.소외계층(다문화가정,탈북가정,이주가정 등)청소년을위한성장자립지원 3.법인목적관련된프로그램기획개발보급,장학금지원사업,도서및간행물발간등	노순백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186	2023-05-11	평화나눔재단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연지동)한국교회100주년기념회관 308호	-평화 시민대학 운영 -평화봉사단운영 -통일박람회참여 -평화나눔바자회개최 -평화나눔학술제개최	윤현기
1219	2023-05-11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연합회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293 , 2층(수유동, 서영프라자)서영프라자 2 층	○ 한강과 하천을 수중청소 하는 사회 봉사 활동 ○한강및하천내수질오염물수거와유해물질유입예방을위한봉사활동 ○청소년,지역주민에대한다양한환경체험교육등으로환경의식고취	장치석
321	2023-05-11	한국청소년재단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82, 3층 3호 (연희동)3층 3호	청소년 관련 상담, 정보화사업, 청소년 수련 활동 등	김병후
2316	2023-05-09	한누리예술협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43 (수유동)B1	○ 한국전통예술과 예술에 관련한 사업 ○ 한국전통무용 발굴, 계승, 연구, 공연, 교육, 학술진흥 사업 ○ 한국전통무용 정보교환 및 교육을 위한 영상 · 음반 · 출판사업 ○ 한국 연예 예술 문화진흥 사업 ○ 한누리 예술단 설립 및 운영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유미애
1650	2023-05-09	북한이탈주민문화복지진흥원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9길 24 (영등포동)미디어빌딩 3층	◦ 통일예술인대회 개최, 국제 인권단체 및 평화단체 교류 ◦북한이탈주민자립정착을위한각종사업개발및홍보 ◦북한이탈주민정보화교육,북한이탈주민을위한문화 · 복지사업등	김충성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777	2023-05-08	(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4길 27-14 , 5 층(장충동2가, 디오빌딩)디오빌딩 5 층	- 인체조직 기증문화 확산 -인체조직기증대상자지원	서종환
1643	2023-05-08	건강문화사람들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 101-3 호(신대방동, 삼성보라매옴니타워) 삼성보라매옴니타워 101-3 호	◦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금연,절주및마약류등유해약물관련 사업 ◦청소년,한부모가정,다문화가족등취약계층건강증진사업 ◦폐의약품수거및환경보전관련사업	이범식
1492	2023-05-08	(사)빗물모아 지구사랑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35 동 216 호(신림동,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35 동 216 호	수자원 부족문제의 해결과 대안개발, 빗물모으기에 관한 운동 전개 등	한무영
29	2023-05-08	한국장루협회 서울시지부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41-1 (종로5가)20-2	인공항문 보유자의 재활지원	유재희
9	2023-05-04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정동)15-5 정동빌딩	도시개혁시민운동, 공간권리찾기 등	이명호
21	2023-05-02	세계평화여성연합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19 (청파동1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4층	UN NGO활동및 NGO간의 연대활동	최영선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528	2023-04-28	평생교육 봄날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녹번동, 서울기록원)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 3층 공유사무실	1. 행복을 주는 공간 인문학, 정리와 인생 등 주거와 삶의 질 향상 시민교육 2.경력단절여성의주거공간정리컨설턴트양성 등취업활동지원교육 3.주거환경어려운가족,복지시설등주거복지서비스,사회봉사단양성교육 4.청소년정리습관,정리와자원환경보호등정리를통한청소년인성교육 5.위생업소,소상공인정리컨설팅자영업자정리전문교육서비스 6.기타개인의공간의가치를사회적가치전환등 시민평생교육	권혜린
2430	2023-04-28	디딤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53-1 (사당동)4층	1. 여성 · 청년 신진작가 미술활동 지원(기획, 전시) 2.문화소외계층미술 · 공예교육,체험행사개최및홍보 3.청년장애인미술발전을위한연구개발 4.그밖의단체의목적달성에필요한문화예술관련사업	김도현
1928	2023-04-28	새로운 백년을 여는 통일의병	행정국 남북협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1길 42 (서초동, 정토회관)10층	올바른 역사관 · 통일관 정립을 위한 다양한 시민교육	정영수
1824	2023-04-28	진보교육연구소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43-53 (합동)예랑빌딩 302호	∘교육발전 및 사회개혁을 위한 사회적 실천 ∘교육발전및사회개혁을위한토론및출판 ∘교육발전및사회개혁을위한연구	천보선
617	2023-04-28	국가발전연구포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503호 (적선동)156 광화문플래티넘 1503호	수도서울의 역사적 전통성과 국가기관의 중추적 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적 연구 및 지원활동	류동길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329	2023-04-27	사단법인 다산연구소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0 (서소문동, 중앙일보 구관)3층	- 다산 사상의 체계적 연구, 발굴 사업 및 재해석 사업 - 다산 사상의 보급을 위한 다산 저술의 한국어 번역 사업 - 다산 사상의 보급을 위한 다산 저술의 외국어 번역 사업 - 다산 사상 및 다산학 연구성과의 대중적 보급 사업	박석무
1980	2023-04-27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1동 3층 303호	- 모모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방문평화교육프로그램운영 -모모평화교육진행자양성 -교육청연계평화교육교원연수운영 -평화교육교재,교구출판및제작 -평화교육네트워크구축	문아영
1772	2023-04-27	한국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원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1길 25 , 5층(사직동, 한국사회과학도서관) 한국사회과학도서관 5층	o 평생교육자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강사 양성 사업 o평생교육학습자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대상별수요연구및조사사업 o평생교육활성화기여를위한워크숍사업 o본회의목적에부응하는사업	강인희
1364	2023-04-27	참여예산시민회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1길 66 , 지하1 층 55 호(등촌동, 세신종합상가)세신종합상가 지하1 층 55 호	서울시 및 강서구 예산참여 제반활동	최대현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316	2023-04-27	평생교육능력 개발원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9, 동화빌딩 611호 (필동1가)43-1(동화빌딩611호)	- 평생교육 안내 및 홍보활동 - 평생학습 관련기관 연계 및 평생학습 인프라구축, 네트워크 활성화 -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운영으로 전문가 육성 - 평생교육기관을 개설 운영 - 본 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	이종철
1286	2023-04-27	새날을 여는 지역사회 교육센터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6길 22, 2층 (자양동)13-42(2층)	- 제도교육에서 소외된 사람을 위한 기초교육사업 -지역아동,청소년을위한교육사업 -지역의다양한주민들을위한교육사업 -지역의민주적발전과민주의식을함양하기위한교육사업 -아동,청소년및지역주민을위한복지사업 -기타목적에준하는사업	이해삼
681	2023-04-26	열린치과봉사회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충정로대우디오빌 402호 (합동)117번지 충정로대우디오빌 402호	1. 치과의료봉사에 관한 사업 2.학술대회,강연회,강습회및연구발표회개최 3.회원간의친목과복지도모 4.언론및홍보에관한사항 5.기타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채규삼
2480	2023-04-25	행복나눔옹달샘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24길 8 (신월동, 기쁜소식사사옥)3층	1. 지역 청소년 및 저소득층 아동 인성교육 지원사업 2.지역발전을위한제반봉사사업 3.기타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부대사업	황계진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393	2023-04-25	사단법인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48 (신림동,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402호	- 정기연주회 - 각종단체 초청연주회 - 주1회 단원 역량 강화 훈련 - 찾아가는 음악회 -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참가	김민기
1907	2023-04-25	사단법인 예술과인간개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 , 1507 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성지하이츠3 1507 호	-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 중심의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가족단위문화예술체험교육프로그램 -청소년및어린이대상문화예술을응용한통합적교육프로그램 -문화예술체험활동을통한치유프로그램등문화예술을활용한다양한통합프로그램 -기타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이성낙
1829	2023-04-25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4길 86-1 (삼선동2가)지 층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참여거리극' 을 제작, 상연 -연극을통한시민연대활동 -시민대상교육연극프로그램 -문화소외계층과함께하는연극,다원예술등문화예술프로그램 -마을극장운영및극장사업을통해공동체문화를형성하고마을공동체의발전을도모 -극예술연구개발및상연등	신규환
1585	2023-04-25	아트라이징트리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6길 14 , 5 층(논현동,)5 층	- 임상미술상담을 통한 국내외 봉사활동 -임상미술및상담기법의발전을위한연구활동 -임상미술및상담기법의보급을위한인쇄및출판활동 -임상미술작품전시및홍보활동등	김선현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562	2023-04-25	사진아카이브 연구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 1104호(운니동, 오피스텔월드)오피스텔월드 1104 호	- 한국 근현대 사진자료의 수집과 사진아카이브 구축 -공적가치가있는사진기록물의보존과관리 -사진아카이브에대한학제적연구및학술활동 -사진아카이브관련연구활성화와시민의식계몽에필요한출판물기획 -전시및다양한문화예술행사기획과수행 -시민교육사업과시민친화적교육프로그램개발 -교육매체개발및제작과보급 -지역커뮤니티와의연대를통해지역아카이브 생산과구축 -지역아카이브네트워킹및문화교류등	이경민
1561	2023-04-25	문화나눔초콜릿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50 , 621호(노고산동, 신촌포스빌)신촌포스빌 621 호	- 문화공연을 위한 성우 프로젝트 그룹 V.ample 운영 -문화나눔발전을위한조사연구및개발 -문화예술인의역량강화를위한발굴과훈련 -지역발전을도모하는문화공감대형성을위한 봉사사업 -문화공연수익금을통한노숙여성등소외계층 기부활동 -기타본회의목적달성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활동	신혜원
1163	2023-04-25	메이드 인 랩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19길 88-5, 101호 (서초동)1643-56 101호	디지털 미디어 예술전시/공연기획 유니버셜디자인및보조공학시스템개발 다양한공공미술프로그램기획및진행 공공/민간기관의문화프로그램컨설팅	김민선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088	2023-04-25	문화예술NGO 예술과시민사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143호	- 건강한 비판적 담론의 활성화 사업 -시민의알권리구현을위한각종정보자료의공개및공유분석연구사업 -알릴책임의실천을위한각감시기관에의조사요구,언론보도채널활용사업 -시민사회와의네트워킹을통한대안철학및방법론제시사업 -본단체의목적에맞는개인국내외단체들과의연대활동사업 -화예술연구사업및교육사업,책자발간사업	오상길
889	2023-04-25	한국마술학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125 (불광동)지하1층(불광동)	마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공동조사사업 마술공연및교육관련학술,심포지엄,세미나개최 마술축제,마술관련박람회기획및연구조사 마술연구소설립등	임종기
793	2023-04-25	문화와사람들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17 (한남동, 현대안성타워)206호	지역문화예술계승 및 활성화사업 문화향수권증진사업 청소년을위한전통문화교육 문화환경및도시이미지연구사업 문화예술교육관련연구서발간사업 기타본단체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	김상숙
467	2023-04-25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6 (서초동, 래미안서초유니빌)509호	문화예술공연 및 교육사업, 문화예술프로그램개발	어미화
377	2023-04-25	대화문화아카데미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35 (수유동)산76	건전한 사회발전을 각종 대회모임, 문화 향상을 위한 일, 사회복지 및 지원사업 등	박종화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88	2023-04-25	서울지하철문화연구원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지하 310, (4호선 이수역내) (사당동)144-4 (4호선 이수역내)	각종음악회 상설공연, 초,중,고 대학생들 의 노래놀이 및 춤이 있는 마당 등	나석호
254	2023-04-25	운강이강년선생 기념사업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62길 35 (신사동)523-17	매년 추모 기념식 거행 묘소성역화 기념출판물 제작및 배포 등	김영진
1026	2023-04-24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도화동, 성지빌딩)1107호	○ 보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홍보 ○보육에관한영유아의권익보호 ○보육사업에관한정책건의 ○보육교직원의복리증진및회원상호간의정보교류 ○이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수익사업 ○지역사회연계활동및공익사업에기여 ○유관단체와의협력을통한보육친화적환경조성 ○그밖의어린이집간의국제교류등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항	강원미
2255	2023-04-21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5길 22-6 (충무로5가, 일호빌딩)301호	1. 서울시민의 민주시민성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포럼 등의 개최 2.서울시민의민주시민교육강화를위한민주시민교육활동가발굴및역량강화 3.서울시'민주시민교육센터'와의거버넌스운영을통한서울시민주시민교육강화 4.기타목적에부합하는사업	이창국
973	2023-04-20	한국장애인자립생활교육센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5길 17 (창동, 중앙빌딩)403호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컨설팅 사업 ○장애인의사회적응을위한교육사업 ○장애인에대한지원사업 ○장애인과사회,문화,예술등각분야전문가간의교류사업등	이경식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41	2023-04-20	서울특별시새마을교통봉사대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새마을회관 6층 (장안동)415-9 새마을회관6층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김식
2485	2023-04-19	사단법인 상상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16 (가산동)3층 310호	1. STEAM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활성화하는 사업 2.ICT기술을응용한로봇대회등대회개최 3.STEAM과관련한정보를공유하는사업 4.기타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김성애
2425	2023-04-19	학교안전사회공헌운동본부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6길 46 (신사동)5층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사회공헌운동 및 사회봉사	여지윤
2086	2023-04-19	도봉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3길 21 (쌍문동)1층	o 중증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동료상담 o 중증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활동 o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활동보조인 파견과 자원 활동가 양성사업 o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개조와 편의시설 조사연구 사업 o 자립생활 홍보를 위한 회보 발간 및 교육사업 o 자립생활 훈련을 위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및 그룹홈, 단기체험홈 설치운영사업 o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운동 o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o 자립생활 기술교육 o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사업 o 장애인의 문화향유 권리 확대를 위한 문화운동 사업 o 국내외 자립생활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o 기타 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업	김남석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230	2023-04-19	문화재제자리 찾기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6 (금호동1가, 신세계오피스텔)601호	일본 국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 반환운동 우리문화재를제자리로되돌리기위한사업및후원등	김영준
1574	2023-04-18	대한교통장애인연합회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동, 시흥유통상가)3동 225호	◦ 교통사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교육사업,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사업 ◦교통사고장애인가족돕기및경로효친사상캠페인등어르신들돕기사업	송병헌
289	2023-04-18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서울지부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33, (어린이교통공원내) (신천동)7-15 (어린이교통공원내)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활동 교통사고예방관련행사및유인물제작배포 교통사고유자녀돕기행사	박종팔
811	2023-04-17	노원 나눔의집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37다길 24 (상계동)111-340	1. 독거노인들의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사업 2.빈곤계층아동들의결연사업 3.지역자원개발네트워크구축사업 4.저소득주민들의일자리창출사업	박순진
1918	2023-04-14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 연합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2길 16 , 2층(역삼동, 초원빌딩)초원빌딩 2층	◦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활동 ◦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활동 ◦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에 대한 수련 및 문화 교류 지원 활동 ◦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 ◦ 위기 가정, 재혼 가정 해체예방 및 정착에 따른 지원 활동 ◦ 기타 관련 사업	이병철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649	2023-04-14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지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목동)1017 호	- 회원의 복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업 -기관지발행 -평생교육원서립,연구발표회,강연회개최 -문학상운영 -외국작가와의교류등	김호운
190	2023-04-14	살기좋은우리구(금천)만들기 여성회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11 (시흥동, 무지개아파트)109-1 무지개상가 401호	여성사회교육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박은실
1896	2023-04-13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420-6 (신길동)서울여성플라자 4 층 NGO돋움터 호	풀뿌리 여성활동가 교육 및 훈련, 풀뿌리 여성운동 상담 등	김선희
995	2023-04-1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4길 48, 1층 (북아현동)117-7 (1층)	- 동물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 -동물학대방지및유기동물보호활동 -실험동물관련계몽및입법활동	박창길
81	2023-04-13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25길 33 (봉천동, 구암프라자)5층	환경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 도모	이진종
2405	2023-04-12	스마일건강교육아카데미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22 (독산동)2층	1.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2.인적성측정관리사육성 3.인적성검사지개발및검사	조현수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868	2023-04-12	캠퍼스 에너지 세이버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3길 15 (양재동, 로얄퀸클러하우스)5층	1. 건물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 대학교 건물의 경제적 가치 향상 및 유지 비용 절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환경 제공 2.그린캠퍼스컨설팅-서울소재40여개대학교의에너지이용현황파악,손실요인발굴및에너지절감을위한개선안제시 3.캠퍼스전력에너지절감솔루션보급-기획,제안,시공,사후관리를통한에너지절감모델개발및실질적인에너지감축활동수행 4.정부주도친환경에너지캠페인협력-학생,대학교,자체간네트워크확립을통한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사업홍보및탄소배출억제를권장하는대국민홍보수행	김규리
1455	2023-04-12	시니어앤워크스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09 (당산동2가, 영등포유통상가)1층 마열19호	시니어에 의한, 시니어를 위한 공익적성격의 사회공헌 활동 NPO,사회적기업,협동조합등의공익적활동지원 교육,세미나,포럼,강연,토론회,조사연구,출판등학술및능력개발활동 행복설계아카데미의활동지원및공동사업참여 회원상호간의정보교류 기타위사업활동과관련된부대사업등	박수천
1326	2023-04-12	재단법인 환경재단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6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703호	○ 환경단체와 환경관련 연구기관 지원 및 환경 연구 프로젝트 지원 ○ 시민환경 의식의 고양을 위한 환경행사 지원 및 교육, 문화사업 ○ 제3세계 환경운동 지원을 위한 국제 학술교류 및 지원 ○ 친환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최열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138	2023-04-11	더체인지마인드인성교육원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7 (충무로4가, 진양상가, 진양아파트)571-3호	○ 국내외 인성마인드, 마인드레크리에이션 교육 ○초 · 중 · 고 · 대학생을위한맞춤형인성교육 참여및지원 ○소외계층(장애인,노인,다문화,소년소녀가장등)을위한마인드교육 ○본원을후원하고자하는곳과의업무협약	이정윤
2404	2023-04-07	5 · 18민주유공자단체 전국협의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여의도동, 라이프오피스텔)532호	1. 5 · 18민주화운동 기념 · 선양 및 추모사업 2. 5 · 18민주화운동정신계승사업 3. 5 · 18진상규명및올바른역사정립을위한 활동 4. 민주화운동관련자료의수집,연구,보존, 관리사업 5. 5 · 18민주화운동관련교육및학술,문화, 출판,전시,홍보사업 6. 5 · 18민주화운동관련유적의조사연구, 보존,활용사업 7. 5 · 18민주화운동기념공간조성,건립, 운영사업 8. 5 · 18민주유공자의복지증진사업 9. 민주주의발전과자주평화통일을위한 연대활동및사업 10. 민주 · 인권 · 평화발전을위한국내외 교류협력사업 11. 기타본회의목적에부합하는활동및사업	최윤
1955	2023-04-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용사회 봉사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508-1 (신길동)상세주소[미입력]	1.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이발 봉사 2.사회소외계층을위한먹거리나눔사업 3.기타단체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소근섭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915	2023-04-07	국인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08 (개포동)216 호	◦ 청소년 대상 다양한 국내 · 외 글로벌 리더십 교육 및 연수 ◦교육기부활동을주축으로하는초 · 중등대상국내 · 외재능나눔활동 ◦다양하고창조적인재능나눔컨텐츠 개발및배포 ◦자기계발과네트워크를활용한차세대집단지성커뮤니티구축	정다우/김수현
1830	2023-04-07	강서 한마음 자원봉사대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714-9 , 3층(염창동, 성우자동차)성우자동차 3 층	-서울 강서구 내 장애인 및 어르신 이동권 확보 -차량지원자원봉사활동	송기섭
1452	2023-04-07	순천향나눔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11길 31(한남동)상세주소[미입력]	- 저소득층 진료비지원사업 -의료취약지역지원사업 -소외계층에대한각종후원및자원봉사사업 -질병예방및보건,위생교육사업	한상우
1397	2023-04-07	카야(구 행복나눔세상)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13길 9-22(남가좌동)지층	1.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반찬나눔사업 2.소외취약계층노인,장애인들에대한이미용 및마사지봉사 3.자원봉사인력확충및일자리제공을위한이미용및마사지기술교육 4.불우모범청소년장학금지급 5.소외취약계층집수리지원 6.기타본단체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	최순태
1268	2023-04-07	천사의 열매 복지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대로 65 (풍납동, 토성빌딩).	- 노인, 장애인 등 소외지역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생필품 후원사업 및 지원활동 -차상위저소득층아동,청소년교육지원및자립지원사업 -기타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임순분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139	2023-04-07	좋은세상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8길 25, 평제빌딩 B1호 (신당동)112-8번지 평제빌딩 B01호	○ 재능, 자산, 지식기부와 저소득가정 아동과 국내외 소외계층을 지원사업 ○ 잉여물품의 기부와 매집, 매집물품의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및 배분사업 ○ 청소년 생활예술인 및 지역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운영사업 ○ 좋은 시 보급을 위한 도서발간 및 도서기증을 위한 〈時앗나눔〉 사업	조영순
1035	2023-04-07	사단법인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서울시지부 (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14길 15, 서광빌딩 1층 (서초동)1628-29 서광빌딩 1층	1.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 지원 2.베트남참전전우회회원및미망인복지지원사업 3.국가발전과지역사회발전을위한봉사	정진호
343	2023-04-07	촛불봉사단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3길 18-3 (원효로1가)12-7	사회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대국민계도활동 등	정금영
1103	2023-04-06	희망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76 (수유동, 민스빌)2층	○ 자립생활의 이념보급을 위한 사업 ○장애인의권익옹호를위한사업 ○동료상담가교육및파견사업 ○자립생활기술교육및정보의제공과의뢰사업 ○장애인당사자의역량강화를위한사업 ○활동보조인교육및파견사업 ○자립생활센터간연계및장애인운동활동가지원 ○기타센터의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사업	하영택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410	2023-04-05	건강취약청소년교육지원센터 캔틴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3길 72 (연남동)2층	1. 건강취약청소년들에 대한 대안교육 제공 및 지원사업 2.건강취약청소년들에대한심리정서지원사업 3.건강취약청소년과가족을종합적으로지원하는서비스프로그램및협력증진사업 4.건강취약청소년에대한조사,제도및정책연구및교육훈련사업 5.건강취약청소년후원에관한계몽,홍보사업 및간행물발행사업 6.건강취약청소년과가족의직업훈련및자립활동지원사업 7.건강취약청소년지원관련국내외교류사업 8.기타이단체의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사업	김미경
916	2023-04-05	서울 국학원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 (재동)3층	- 민족고유의 정신문화를 통한 국민정신 -홍익정신및홍익문화의연구및개발,보급 -홍익정신회복을위한상담및지도활동 -홍익정신및홍익문화발전을위한인력개발프로그램개발및보급 -민족정신광복과개천정신회복을위한각종이벤트의개최및후원 -홍익정신,홍익문화의세계화를위한해외활동지원 -목적달성에필요한각종홍보사업 -유관기관과의교류및협력사업및기타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국학진흥을위한학술활동지원	성배경

등록번호	말소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199	2023-04-05	한국미술가교류협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0 (관훈동)3층	미술문화사업	김백수
639	2023-04-04	희망세상일구는 구로여성회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7길 95-1 (고척동, 정형빌딩)402호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개선활동 사업, 여성의자원활동사업, 지역사업및어린이보육사업, 가족지원상담센터사업, 국내및국제여성단체사회단체교류사업등	이근미
1300	2023-04-03	서울특별시 재향소방동우회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14길 42 (성내동)2층 201호	○ 불우이웃돕기 사업 ○산불예방홍보및한강청결유지사업 ○순직?공상소방공무원유가족돕기사업 ○그밖에단체의목적에부합하는사업	장인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48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교통부고시 제695(’ 90.10.13.)호로 최초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해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열람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662-6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설치사업(도시철도: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
2) 명 칭 :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 2·3번 출입구 인근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1) 명 칭 : 서울교통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라. 사업의 규모 : 75㎡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2)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15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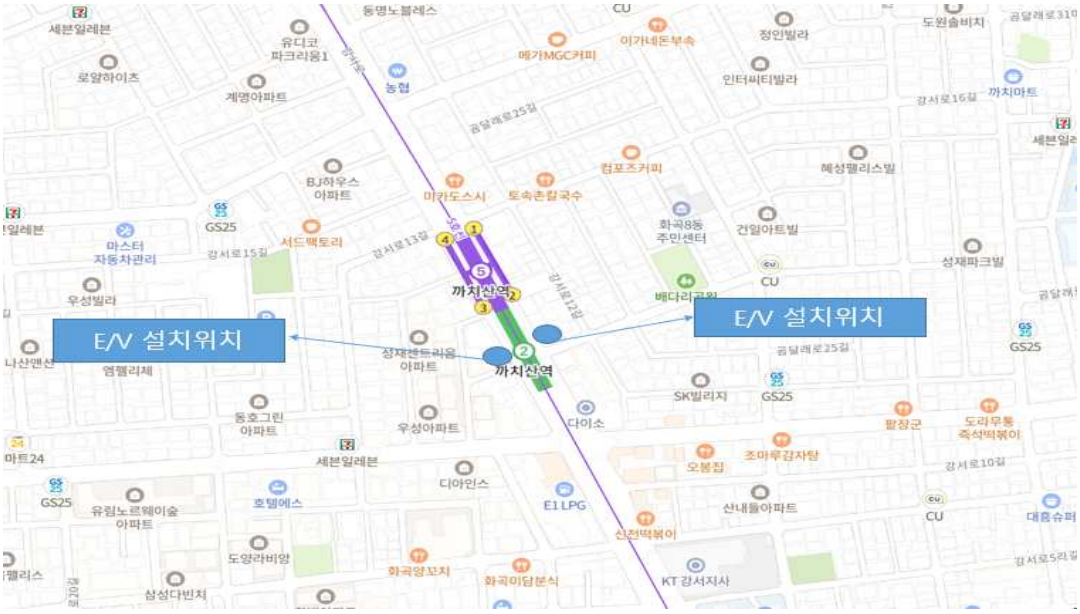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열람도서 참조

사. 열람기간 : 2023. 9. 14. ~ 2023. 9. 27.

아.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중구 덕수궁길 15, 6층)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2133-4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49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3.9.14. ~ 2023.9.28.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창조공간건설㈜ (대표 이종선)	건축공사업 01-3699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8, 5층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미달	법 제10조 제4호	영업정지 (2023.10.6.~2024.3.5.)	법 제83조 제3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5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미송달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9. 14. ~ 2023. 9. 28.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예정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6572138	마포구 노고산동 4-67	수도 요금	2023. 7 등 13납기	14회	725,770원	

압류구분	압류예정물건	물건소유자			압류 예정금액	압류 예정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67	김광식	721220-1****** (등기번호 1. 1105002429837 폐문부재 2. 1105002432261 폐문부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길 41-13 엔젤하우스, 302호	725,770원	2023. 10.5.부터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다영(☎02-3146-36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5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통지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미송달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9. 14. ~ 2023. 9. 28.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3624761	서대문구 연희로 189-39	수도 요금	2023. 4 등 6납기	7회	399,49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대문구 연희로 189-39 (연희동 132-16)	유현미	670608-2****** (등기번호 1. 1105002430248 폐문부재 2. 1105001563016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9-39, 1층	399,490원	2023. 7.2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36233780	서대문구 홍지문2길 7, 2층	수도 요금	2023. 5 등 15납기	16회	299,17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홍지문2길 7, 2층	이영자	471223-2****** (등기번호 1. 1105002430118 폐문부재 2. 1105001563017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지문2길 7	299,170원	2023. 7.18.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세영(☎02-3146-358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80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주)에스이에너지 등 921명
4. 공고기간 : 2023.9. 14 ~ 2023. 9. 28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3. 9. 14 ~ 2023. 9. 28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공시송달(사전통지서) 명단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1	175호15**	(*)*스*에*지	대전광역시	2023-05-17 17:37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	145허70**	김*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3-05-21 14:4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	172하82**	G*N*M*N*	경기도 남양주시	2023-05-27 08:1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	인천85배15**	김*호	인천광역시	2023-06-14 16:28	염창역~등촌역	전용차로위반	50,000
5	337거88**	한*석	전라남도 해남군	2023-06-18 10:2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6	72하57**	강*표	경기도 시흥시	2023-06-20 08:3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60,000
7	134호24**	J*N*I*G	서울특별시	2023-06-20 10: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	49하16**	허*석	경기도 부천시	2023-06-23 07:1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	10어82**	임*자	전라북도 전주시	2023-07-05 17:53	상일IC~상일2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0	134호24**	J*N*I*G	서울특별시	2023-07-11 18: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1	149호48**	주*회*해*	경기도 화성시	2023-07-11 18:59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2	29호40**	경*우	서울특별시	2023-07-11 20:4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13	01호83**	진*민	서울특별시	2023-07-13 17: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4	21라76**	김*준	서울특별시	2023-07-13 18:23	학여울역~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5	06하21**	이*호	충청남도 보령시	2023-07-13 21:2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6	150모64**	박*규	경기도 안양시	2023-07-18 08:42	남태령고개~남태령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7	194호54**	조*민	서울특별시	2023-07-19 11:3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8	07호64**	고*란	서울특별시	2023-07-21 18:35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9	40부22**	(*)*뇽	서울특별시	2023-07-24 14:5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0	104허64**	김*태	서울특별시	2023-07-25 01:5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21	101허39**	정*원	서울특별시	2023-07-25 17:3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2	172허89**	최*원	서울특별시	2023-07-26 08:0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	159하87**	(*)*늘*합*축*사*소	서울특별시	2023-07-26 09:12	복정역~장지교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4	152하31**	배*선	경기도 성남시	2023-07-26 11:0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25	208조60**	하*범	서울특별시	2023-07-26 11:3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6	231수56**	정*철	경기도 평택시	2023-07-26 19:0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7	140하83**	주*회*바*글*	서울특별시	2023-07-27 10:0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28	162호43**	웅*름	서울특별시	2023-07-27 12: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	50허28**	이*영	서울특별시	2023-07-27 18:5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0	101하97**	주*회*퓨*레*로	서울특별시	2023-07-27 20:2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31	193허41**	황*호	경기도 평택시	2023-07-28 08:0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2	157하78**	주*회*씨*너*	서울특별시	2023-07-28 08:4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3	41호09**	따*한*고*상	경기도 안산시	2023-07-28 09:5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4	159하94**	정*미	세종특별자치시	2023-07-28 13:13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5	101하71**	나*현	광주광역시	2023-07-28 15:50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6	115호16**	김*정	광주광역시	2023-07-28 18:1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37	193하47**	이*정	경기도 고양시	2023-07-28 18:5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38	163호12**	(*)*가*이*는*을	경기도 고양시	2023-07-28 19:0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9	12다97**	김*현	경기도 성남시	2023-07-31 07:51	복정역~장지역	전용차로위반	50,000
40	160허74**	(*)*국*제*브*	서울특별시	2023-07-31 10:2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1	31버62**	이*우	경상북도 상주시	2023-07-31 16:00	양화교~염창역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42	서울성북가84**	조*진	경기도 고양시	2023-07-31 18:12	안국동사거리~경복궁교차로	전용차로위반	40,000
43	87서44**	김*률	서울특별시	2023-08-01 07:5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4	172허89**	최*원	서울특별시	2023-08-01 08: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5	127두71**	(*)*이*에*그*	서울특별시	2023-08-01 12:54	강남소방서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6	126호41**	임*현	경기도 광명시	2023-08-01 16:3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7	101하31**	신*선	경기도 성남시	2023-08-01 20:04	압구정역~신사동주민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48	07호71**	이*송	경기도 용인시	2023-08-02 00:0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49	90수51**	정*구	서울특별시	2023-08-02 03:10	반포역~논현역	전용차로위반	50,000
50	163하22**	(*)*티*라*	경기도 안양시	2023-08-02 08: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1	15허69**	김*제	서울특별시	2023-08-02 09:1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2	서울71바45**	김*도	서울특별시	2023-08-02 17:22	논현역~신사역	전용차로위반	60,000
53	12다97**	김*현	경기도 성남시	2023-08-03 07:48	복정역~장지역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4	104하95**	요*프*소	서울특별시	2023-08-03 10: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5	149호22**	에*씨*업*발*식*사	인천광역시	2023-08-03 12:40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4-4	전용차로위반	50,000
56	153호97**	(*)*앤*인*내*날	경기도 성남시	2023-08-03 17:1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7	190허86**	홈*어*스*	경기도 고양시	2023-08-03 18:4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8	162허78**	하*점	서울특별시	2023-08-03 20:0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59	101하59**	김*환	서울특별시	2023-08-03 20:1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60	37허72**	이*직	서울특별시	2023-08-03 20:37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1	172버94**	김*수	경기도 고양시	2023-08-04 06:59	경문고교교차로~이수역	전용차로위반	50,000
62	171하12**	김*아	강원도 영월군	2023-08-04 16:0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63	127모80**	김*철	경기도 고양시	2023-08-04 17:33	연희동413-22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64	358두46**	조*진	경기도 성남시	2023-08-04 18:3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5	159하65**	이*재	서울특별시	2023-08-04 20:3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6	342오86**	(*)*램*	서울특별시	2023-08-05 09:3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7	57하80**	신*섭	경기도 성남시	2023-08-06 06:2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8	101하23**	이*호	인천광역시	2023-08-06 23:26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9	서울31자24**	오*진	경기도 성남시	2023-08-07 07:17	반포3동주민센터교차로~신동초교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0	12가06**	S*E*H*N*D*N*	경기도 성남시	2023-08-07 09:38	복정역~장지역	전용차로위반	50,000
71	서울32아14**	김*길	서울특별시	2023-08-07 09:39	수정아파트주변	전용차로위반	50,000
72	31우54**	김*진	경기도 성남시	2023-08-07 12:52	사당역~이수역	전용차로위반	50,000
73	172허29**	정*진	서울특별시	2023-08-07 19:2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4	36루54**	주*회*정*씨*	부산광역시	2023-08-07 22:1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75	137구56**	곽*영	전라남도 순천시	2023-08-07 23:32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76	54로25**	B*T*R*H*K*N*M*U*	충청북도 제천시	2023-08-08 00:53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7	19주22**	이*남	서울특별시	2023-08-08 07:1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8	35로91**	송*양	서울특별시	2023-08-08 08:0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9	840다28**	(*)*던*스*크	경기도 수원시	2023-08-08 08:1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0	353부59**	김*민	경기도 하남시	2023-08-08 08: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1	275조75**	신*미	경기도 파주시	2023-08-08 08:2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2	67도11**	이*억	서울특별시	2023-08-08 08:43	성내교 위	전용차로위반	50,000
83	서울87자31**	김*일	서울특별시	2023-08-08 08:43	성내교 위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84	27어50**	김*경	경기도 구리시	2023-08-08 08:5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5	21모25**	최*민	서울특별시	2023-08-08 09:0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6	12무91**	김*화	서울특별시	2023-08-08 09:1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7	38조83**	이*승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08 09:1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8	109버94**	영*건*주*회*	경기도 안양시	2023-08-08 09:2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9	55너71**	이*자	서울특별시	2023-08-08 09:3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0	59나08**	박*아	경기도 김포시	2023-08-08 09:3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1	149버71**	김*리	서울특별시	2023-08-08 09:51	녹번역~홍제역	전용차로위반	50,000
92	서울31바56**	김*기	서울특별시	2023-08-08 10:17	아차산역~아차산역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93	63도59**	김*남	서울특별시	2023-08-08 10:2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4	146루99**	김*희	서울특별시	2023-08-08 10:4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95	828나56**	박*기	인천광역시	2023-08-08 11:2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6	02두03**	최*광	서울특별시	2023-08-08 11:21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7	160허28**	(*)*카	경기도 수원시	2023-08-08 11:4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8	127러21**	이*진	서울특별시	2023-08-08 12:0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9	127러21**	이*진	서울특별시	2023-08-08 13:3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0	서울31아17**	김*평	서울특별시	2023-08-08 13:44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01	83조59**	주*회*마*플*스	서울특별시	2023-08-08 14:3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02	16더09**	S*N*O*G*U*N	경기도 시흥시	2023-08-08 15:36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3	서울38아10**	원*연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08 15:5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04	47나05**	오*길	경상북도 안동시	2023-08-08 15:5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105	06가72**	최*진	충청남도 천안시	2023-08-08 16:1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6	241거56**	이*희	인천광역시	2023-08-08 16:3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7	35라51**	윤*준	대구광역시	2023-08-08 17: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8	24더83**	곽*연	서울특별시	2023-08-08 17: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9	서울32아17**	진*형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08 17:1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10	28서56**	박*례	인천광역시	2023-08-08 17:1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11	서울31사59**	장*현	서울특별시	2023-08-08 17: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2	177조20**	안*순	충청북도 괴산군	2023-08-08 17:2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3	285어47**	권*숙	서울특별시	2023-08-08 17: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4	24루24**	주*엠*트	서울특별시	2023-08-08 17: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5	109우86**	형*건	충청남도 서산시	2023-08-08 17: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6	841수35**	오*율	전라북도 익산시	2023-08-08 17:32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7	서울31자68**	권*식	서울특별시	2023-08-08 17:3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8	64오33**	(*)*애*제*이*씨	서울특별시	2023-08-08 17: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9	101조18**	이*대	경기도 여주시	2023-08-08 17: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0	16조58**	L*U*H*N*A*	경기도 수원시	2023-08-08 17:5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1	서울31자30**	김*섭	서울특별시	2023-08-08 17:5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22	25가15**	한*인*이*주*회*	서울특별시	2023-08-08 18:0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23	27서07**	구*철	대구광역시	2023-08-08 18:0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4	81거60**	김*환	경기도 하남시	2023-08-08 18:0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5	서울31아51**	한*구	서울특별시	2023-08-08 18: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6	서울31바78**	김*권	서울특별시	2023-08-08 18:14	종합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127	60두70**	S*N*U*T*B*U*L*H	광주광역시	2023-08-08 18:2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8	343루41**	M*M*A*N*U*D*E*	서울특별시	2023-08-08 18:2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9	49마68**	이*숙	서울특별시	2023-08-08 18: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0	25무68**	A*Y*N	경기도 부천시	2023-08-08 18:3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31	28우94**	김*석	대전광역시	2023-08-08 18:3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2	37러26**	이*훈	서울특별시	2023-08-08 18: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3	20소31**	O*T*C*A*L*T*E	경상남도 창원시	2023-08-08 18:44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34	124소41**	유*현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08 18:4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5	10주57**	정*영	서울특별시	2023-08-08 19:2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136	154소25**	고*	서울특별시	2023-08-08 19:3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37	62거83**	김*영	서울특별시	2023-08-08 19:3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8	136우86**	정*선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08 19:43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39	서울31사89**	배*식	서울특별시	2023-08-08 20:0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40	26누03**	박*종	서울특별시	2023-08-08 20: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41	116수74**	송*철	경기도 고양시	2023-08-08 20:3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42	서울32사76**	이*범	서울특별시	2023-08-08 20:3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43	48가10**	신*수	경기도 수원시	2023-08-08 20: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44	07주40**	김*흥	서울특별시	2023-08-08 20: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45	37루62**	김*원	서울특별시	2023-08-08 20:4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46	42라25**	강*철	서울특별시	2023-08-08 20:4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47	서울32바52**	김*주	서울특별시	2023-08-09 01:0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148	서울32사71**	박*구	서울특별시	2023-08-09 01:1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49	46가58**	박*영	경기도 양평군	2023-08-09 07: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50	108루99**	최*정	전라북도 군	2023-08-09 07:35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51	64수93**	오*석	서울특별시	2023-08-09 08:02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52	275조75**	신*미	경기도 파주시	2023-08-09 08:2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53	서울31아70**	이*설	인천광역시	2023-08-09 08:2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54	255나36**	이*경	경기도 수원시	2023-08-09 08:33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55	13나76**	(*)*엔*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3-08-09 08:3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56	57다94**	유*순	서울특별시	2023-08-09 08:36	을지구장~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157	50보15**	최*열	경기도 시흥시	2023-08-09 08:4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58	359러92**	최*경	경기도 성남시	2023-08-09 08:44	송파대로 장지교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159	33모27**	조*남	서울특별시	2023-08-09 08:5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60	22조65**	김*진	서울특별시	2023-08-09 08:5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61	13저34**	정*규	경기도 안양시	2023-08-09 09:06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62	45더30**	오*교	인천광역시	2023-08-09 09:0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163	66노19**	이*번	경기도 김포시	2023-08-09 09:14	고촌ic~개화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64	280저11**	강*창	서울특별시	2023-08-09 09:1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165	164가18**	김*혜	경기도 수원시	2023-08-09 09:2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6	165부12**	김*철	서울특별시	2023-08-09 09:2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67	91주68**	장*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09 09:24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68	서울86자66**	엄*늠	서울특별시	2023-08-09 09:2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69	29무67**	이*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09 09:36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170	67구10**	김*희	서울특별시	2023-08-09 09:37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71	31더43**	이*수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09 09:37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2	36소09**	이*남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09 09:4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73	64저54**	김*수	경기도 안산시	2023-08-09 09:5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74	서울31사49**	김*욱	서울특별시	2023-08-09 09:57	복정역~장지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75	33루03**	L*X*Z*E	경기도 안산시	2023-08-09 10:11	도봉로 미아역-수유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76	20라15**	신*원	서울특별시	2023-08-09 10:53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파이어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77	21저01**	김*옥	경기도 부천시	2023-08-09 11: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78	96너91**	김*충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09 11:3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9	서울32자29**	김*길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09 11:46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80	23소13**	주*회*신*섬*	경기도 양주시	2023-08-09 11:48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위반	50,000
181	04고30**	이*희	충청북도 충주시	2023-08-09 12:1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82	93루66**	현*환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09 12: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83	25모47**	N*Y*Z*V*A*U*	경상북도 경산시	2023-08-09 13:0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84	25모47**	N*Y*Z*V*A*U*	경상북도 경산시	2023-08-09 13:0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85	46두04**	주*회*다*원	서울특별시	2023-08-09 13:1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86	123로19**	임*은	서울특별시	2023-08-09 13:4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87	서울85자10**	서*원	서울특별시	2023-08-09 14:0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88	82고33**	(*)*성*전*설	서울특별시	2023-08-09 14:3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89	11머37**	케*월*에*지*식*사	울산광역시	2023-08-09 14:3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190	서울32아42**	이*길	경기도 광주시	2023-08-09 15:30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91	서울31아20**	송*택	경기도 양주시	2023-08-09 15:5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92	68부91**	안*균	서울특별시	2023-08-09 16:5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93	50저88**	하*진	서울특별시	2023-08-09 17:1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94	141서76**	피*엘*발*식*사	서울특별시	2023-08-09 17:2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95	141서76**	피*엘*발*식*사	서울특별시	2023-08-09 17:2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96	36호63**	경*렌*카*주*	경기도 시흥시	2023-08-09 17:3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97	63로82**	김*남	서울특별시	2023-08-09 17:3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98	54누72**	임*득	서울특별시	2023-08-09 17:3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99	821노82**	만*소*엔*니*링*식*사	서울특별시	2023-08-09 17: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00	64러41**	문*준	서울특별시	2023-08-09 17:4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01	46수49**	양*수	경기도 용인시	2023-08-09 17: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02	61노23**	윤*영	경기도 성남시	2023-08-09 17: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03	03모69**	조*식	서울특별시	2023-08-09 17:4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04	서울38아34**	서*식	서울특별시	2023-08-09 17: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05	15루48**	(*)*원*프*씨	서울특별시	2023-08-09 18:0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06	35마13**	주*회*청*씨*씨	서울특별시	2023-08-09 18:0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07	18로52**	한*연	서울특별시	2023-08-09 18:1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08	13수83**	임*섭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09 18:2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09	49더52**	전*우	서울특별시	2023-08-09 18: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210	127우79**	최*환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09 18: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11	67가69**	정*화	경기도 성남시	2023-08-09 18:4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212	서울32사89**	진*훈	인천광역시	2023-08-09 19:0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13	378루98**	이*자	서울특별시	2023-08-09 19:1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14	345나69**	문*모	서울특별시	2023-08-09 19:2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15	194로61**	조*규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09 19:3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16	304누25**	M*R*O*O*B*L*G*O	경기도 광주시	2023-08-09 19:49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7	62라77**	박*영	경기도 화성시	2023-08-09 19:53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18	57너78**	엄*하	경기도 용인시	2023-08-09 20:0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19	55거91**	송*룡	인천광역시	2023-08-09 20:1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20	서울32사76**	최*훈	서울특별시	2023-08-09 20: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21	45누09**	(*)*부*패*	경기도 하남시	2023-08-09 20:3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22	274조75**	권*산	서울특별시	2023-08-09 20:3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23	247로18**	황*희	서울특별시	2023-08-09 20: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24	서울32사15**	전*재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09 20:4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225	03누14**	홍*범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09 20: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26	86너19**	(*)*록*기*	서울특별시	2023-08-10 07: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27	238루50**	박*식	서울특별시	2023-08-10 07:4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28	51누99**	윤*련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0 07:42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29	95마31**	이*용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10 07: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0	82다06**	(*)*이*에*	인천광역시	2023-08-10 07:5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231	70라88**	이*구	경기도 양주시	2023-08-10 08:1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60,000
232	08오76**	지*준	서울특별시	2023-08-10 08:2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33	서울89자21**	서*균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0 08:2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34	163러46**	방*준	경기도 의왕시	2023-08-10 08:2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5	19부49**	조*태	서울특별시	2023-08-10 08: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6	서울31바63**	장*환	서울특별시	2023-08-10 08:3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37	11가29**	(*)*버*	서울특별시	2023-08-10 08: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8	서울31바48**	박*일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10 08:4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39	12무91**	김*화	서울특별시	2023-08-10 08:4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0	서울32바43**	안*진	서울특별시	2023-08-10 08:5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1	57소47**	임*묵	경상남도 김해시	2023-08-10 08:58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42	22구18**	임*흥	경기도 성남시	2023-08-10 09: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3	84누05**	채*찬	서울특별시	2023-08-10 09: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4	22마49**	이*원	서울특별시	2023-08-10 09:4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45	17우56**	이*근	서울특별시	2023-08-10 09:42	노원역~중계역	전용차로위반	50,000
246	50하09**	(*)*일*트*	인천광역시	2023-08-10 09: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47	90두29**	박*아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0 09:4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248	31두35**	정*자	서울특별시	2023-08-10 09:5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49	36너26**	양*규	충청남도 서천군	2023-08-10 09:56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50	50부17**	신*철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0 10:1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1	37머81**	M*K*M*D*V*U*H*M*A*A*I*H*J*A*I*K*A*K*	충청북도 청주시	2023-08-10 10:2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252	35우30**	김*숙	서울특별시	2023-08-10 10:4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3	02수03**	최*일	경기도 안양시	2023-08-10 11:0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54	68우55**	김*범	서울특별시	2023-08-10 11:0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55	서울31사50**	김*형	서울특별시	2023-08-10 11:06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56	74도33**	삼*산*(*)	경기도 평택시	2023-08-10 11:45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60,000
257	89모86**	전*익	부산광역시	2023-08-10 12:3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258	180거82**	김*정	서울특별시	2023-08-10 12: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59	서울32사77**	배*리	서울특별시	2023-08-10 13:14	강남소방서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60	16루86**	Q*A*X*A*J*N	서울특별시	2023-08-10 13: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61	94가09**	주*회*피*엘	경기도 고양시	2023-08-10 14:0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62	104두70**	엘*비*마*트*이*주*회*	서울특별시	2023-08-10 14:1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3	104두70**	엘*비*마*트*이*주*회*	서울특별시	2023-08-10 14:1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4	52누84**	주*코*인*내*날	서울특별시	2023-08-10 14:50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65	45저46**	주*회*바*스	경기도 하남시	2023-08-10 14:54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66	51무40**	L*N*I*A*	경기도 수원시	2023-08-10 15:1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7	22머53**	주*회*일*알*디	서울특별시	2023-08-10 15:4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68	129소51**	쯔*?*이*제*출*	서울특별시	2023-08-10 15: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69	01고97**	최*현	서울특별시	2023-08-10 16:0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70	서울32아51**	이*제	경기도 의왕시	2023-08-10 16: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71	24모46**	이*배	경기도 여주시	2023-08-10 16:2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272	274조75**	권*산	서울특별시	2023-08-10 16:5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73	69머85**	김*영	부산광역시	2023-08-10 16:5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74	64나09**	T*N*Y*C*E*L*V	경기도 수원시	2023-08-10 16:5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75	74러77**	박*	인천광역시	2023-08-10 17: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60,000
276	17서72**	한*상*권*래*주*회*	서울특별시	2023-08-10 17:1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277	서울32자53**	김*술	서울특별시	2023-08-10 17:1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278	18조62**	박*재	부산광역시	2023-08-10 17: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79	06더03**	이*영	충청남도 서천군	2023-08-10 17:3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80	26부94**	김*수	경기도 용인시	2023-08-10 18:1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1	378소24**	박*란	서울특별시	2023-08-10 18:21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282	147머97**	전*현	서울특별시	2023-08-10 18:2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3	21무16**	양*은	서울특별시	2023-08-10 18:2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84	295보60**	음*영	서울특별시	2023-08-10 18: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85	116허71**	(*)*이*렌*카	충청남도 공주시	2023-08-10 18:5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86	47로02**	안*민	서울특별시	2023-08-10 18:5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7	26모46**	김*순	경기도 고양시	2023-08-10 18:5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88	93두23**	김*완	서울특별시	2023-08-10 18:54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89	35저60**	성*선	서울특별시	2023-08-10 18: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0	809부72**	이*주	충청남도 아산시	2023-08-10 19:0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291	47두37**	권*숙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10 19:2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92	57구38**	전*주	경기도 시흥시	2023-08-10 19:2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293	382나61**	민*영	서울특별시	2023-08-10 19:2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94	167마67**	정*연	서울특별시	2023-08-10 19:3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5	364거23**	J*N*E*F*N*	경기도 김포시	2023-08-10 19:3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96	31두36**	권*	경기도 고양시	2023-08-10 19:3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97	59주01**	한*주	서울특별시	2023-08-10 19:3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98	13누50**	김*우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10 19:4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9	서울31사14**	박*규	서울특별시	2023-08-10 19:54	사천교(연희ic방면)	전용차로위반	50,000
300	서울31자43**	조*종	서울특별시	2023-08-10 20:0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01	51라91**	이*숙	경기도 광주시	2023-08-10 20:1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02	15서71**	김*지	경기도 안양시	2023-08-10 20:1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03	74모88**	강*준	서울특별시	2023-08-10 20: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60,000
304	서울31사68**	진*영	서울특별시	2023-08-10 20: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05	104러85**	이*라	서울특별시	2023-08-10 20:38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306	29더95**	노*혁	서울특별시	2023-08-10 20:3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07	57우88**	장*희	인천광역시	2023-08-10 20:4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08	88오43**	김*영	서울특별시	2023-08-10 21:5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60,000
309	236라28**	이*진	충청북도 청주시	2023-08-10 21:57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10	23루84**	김*태	경기도 안산시	2023-08-10 22:00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11	30수60**	이*애	서울특별시	2023-08-10 22:44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312	89두44**	송*우	서울특별시	2023-08-10 23:09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13	27다85**	손*영	서울특별시	2023-08-10 23:3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14	87부90**	윤*건*주*회*	서울특별시	2023-08-11 01:5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15	361노34**	T*O*S*A*I*L*V	경기도 안산시	2023-08-11 06:02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16	34무92**	유*수	서울특별시	2023-08-11 06:5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17	19주22**	이*남	서울특별시	2023-08-11 07:1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18	43소32**	이*진	경기도 김포시	2023-08-11 07:17	삼육에코팜센터~담터지하차도	전용차로위반	50,000
319	12무91**	김*화	서울특별시	2023-08-11 07:5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20	15모51**	홍*정	서울특별시	2023-08-11 08:25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위반	50,000
321	60가55**	주*회*세*트*엔*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1 08:26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위반	50,000
322	60도46**	이*우	서울특별시	2023-08-11 08:27	개화교(개화사거리 방면)	전용차로위반	50,000
323	59너65**	오*순	서울특별시	2023-08-11 08:3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24	231무78**	최*성	서울특별시	2023-08-11 08:3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325	54오11**	신*애	인천광역시	2023-08-11 08:3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26	서울31바77**	박*근	서울특별시	2023-08-11 08:4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27	37서21**	김*옥	서울특별시	2023-08-11 08:5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28	25로94**	김*만	서울특별시	2023-08-11 09:0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29	19가16**	이*선	서울특별시	2023-08-11 09:0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30	196루11**	황*준	대전광역시	2023-08-11 09:1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31	56무30**	이*용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1 09:3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332	141러35**	전*식	서울특별시	2023-08-11 09:4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33	117소50**	유*현	서울특별시	2023-08-11 09: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34	서울32사52**	김*환	경기도 동두천시	2023-08-11 09:4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35	83라42**	박*수	서울특별시	2023-08-11 09:54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36	서울38아65**	정*채	인천광역시	2023-08-11 10:00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37	06가05**	박*수	서울특별시	2023-08-11 10:0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38	25노83**	서*시*등*구*회*지*의*	서울특별시	2023-08-11 10:08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39	128호51**	(*)*일*트*	인천광역시	2023-08-11 10:19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40	819서32**	주*회*센*럴*디*	서울특별시	2023-08-11 10:2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1	51버82**	곽*선	경기도 용인시	2023-08-11 10:4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342	27거62**	권*국	서울특별시	2023-08-11 11:1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43	88조29**	(*)*현*엔*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1 11:3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44	28더78**	E*R*M*E*I*	서울특별시	2023-08-11 11:4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5	48보40**	이*연	충청남도 홍성군	2023-08-11 11:4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346	49우05**	김*자	충청북도 진천군	2023-08-11 12:0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7	25가96**	김*호	서울특별시	2023-08-11 12:0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8	49우05**	김*자	충청북도 진천군	2023-08-11 12:0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9	81수72**	박*태	서울특별시	2023-08-11 12:18	잠실3사거리~잠실새내역	전용차로위반	50,000
350	09머77**	최*길	서울특별시	2023-08-11 12:5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351	13조07**	이*남	서울특별시	2023-08-11 13:2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52	348다73**	김*균	경기도 평택시	2023-08-11 13:2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353	348다73**	김*균	경기도 평택시	2023-08-11 13:3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54	62라53**	김*영	서울특별시	2023-08-11 13:35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55	266마97**	원*철	경기도 과천시	2023-08-11 13:4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56	49우05**	김*자	충청북도 진천군	2023-08-11 13: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57	61부48**	(*)*컴	서울특별시	2023-08-11 13:5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358	242우12**	한*경*개*(*)	부산광역시	2023-08-11 14:3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59	54무08**	박*수	경기도 군포시	2023-08-11 14:38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60	231부18**	손*경	경상남도 거제시	2023-08-11 15:0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61	06버54**	지*태	경기도 고양시	2023-08-11 15:2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62	경기81자83**	정*열	경기도 광주시	2023-08-11 15:5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63	12노65**	김*순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1 16:0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64	서울31아59**	이*오	서울특별시	2023-08-11 16:4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365	63노79**	서*혁	서울특별시	2023-08-11 16:4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366	159주99**	Y*N*Y*N*H*	서울특별시	2023-08-11 17:04	홍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67	69부53**	이*옥	서울특별시	2023-08-11 17: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68	59러92**	정*기	서울특별시	2023-08-11 17:05	상암월드컵경기장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69	31저80**	D*V*A*A*B*U*E*E*J*M*S	경기도 이천시	2023-08-11 17:0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370	서울31자33**	박*일	경기도 양평군	2023-08-11 17: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71	357두86**	김*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3-08-11 17: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72	59러92**	정*기	서울특별시	2023-08-11 17:19	월드컵경기장교차로~상암교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373	341수48**	최*경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3-08-11 17: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74	서울31자61**	최*덕	서울특별시	2023-08-11 17:34	삼성전자서비스~도봉보건소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75	경기93자40**	장*수	경기도 김포시	2023-08-11 17:4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76	30수56**	김*규	서울특별시	2023-08-11 17: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77	서울32자49**	곽*운	서울특별시	2023-08-11 17:5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30	전용차로위반	50,000
378	86우70**	기*율	서울특별시	2023-08-11 17:5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79	17무13**	배*미	서울특별시	2023-08-11 17:5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80	144고24**	김*균	서울특별시	2023-08-11 17:5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381	32다53**	추*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2023-08-11 17:5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82	373고55**	피*게*트*주*	서울특별시	2023-08-11 18:0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383	224머48**	유*희	인천광역시	2023-08-11 18:0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84	42로22**	신*규	서울특별시	2023-08-11 18:07	잠원ic~반포역	전용차로위반	50,000
385	228조67**	천*옥	서울특별시	2023-08-11 18:5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86	20부03**	이*희	경기도 하남시	2023-08-11 19:03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87	109마25**	김*영	서울특별시	2023-08-11 19: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88	13수94**	B*T*U*R*T*V*H*N*A*T*R	경기도 성남시	2023-08-11 19:3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89	152주51**	강*훈	서울특별시	2023-08-11 19:32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90	111너69**	박*화	경기도 평택시	2023-08-11 19:4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91	84버09**	김*기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11 19:4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92	184두72**	김*미	경기도 김포시	2023-08-11 20:0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93	05버09**	박*해	경기도 부천시	2023-08-11 20:0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394	54무85**	이*경	인천광역시	2023-08-11 20:1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395	163루92**	주*회*새*	서울특별시	2023-08-11 20:1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96	03조71**	최*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1 20:2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97	45더19**	유*이	서울특별시	2023-08-11 20:2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398	39수23**	김*옥	경상남도 함양군	2023-08-11 20:3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399	05저46**	임*자	서울특별시	2023-08-11 20:3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00	서울31자77**	박*규	서울특별시	2023-08-11 20:3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01	07모44**	김*완	서울특별시	2023-08-11 20: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2	61주24**	권*국	경기도 용인시	2023-08-11 20: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3	110오86**	서*균	서울특별시	2023-08-11 20: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4	40버26**	정*규	경상북도 예천군	2023-08-11 22:3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05	169고32**	N*N*O*G*H*N*J*N	서울특별시	2023-08-11 23:2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06	293버36**	디*이*프*식*사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2 11:4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407	129무72**	J*N*I*G*O*G	서울특별시	2023-08-12 12:1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08	225부69**	J*N*O*G*I	경기도 부천시	2023-08-12 12:2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409	239로26**	S*N*Y*F*N	경기도 안성시	2023-08-12 13:5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10	385두21**	I*I*A*E*T*A*S*I*F*X	경기도 평택시	2023-08-12 14: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11	97버61**	권*구	서울특별시	2023-08-12 15:2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12	289소49**	J*N*A*X*N*	충청북도 음성군	2023-08-12 17:54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13	184러70**	윤*준	광주광역시	2023-08-12 17:5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414	57오17**	김*구	충청북도 음성군	2023-08-12 18:00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15	159러53**	조*남	전라남도 순천시	2023-08-12 22:4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416	42거79**	박*수	충청남도 서산시	2023-08-13 07:46	교보타워사거리~논현역	전용차로위반	50,000
417	09버47**	이*애	서울특별시	2023-08-13 08:1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18	35가01**	추*훈	서울특별시	2023-08-13 08:2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19	34수10**	김*경	경기도 안양시	2023-08-13 09:17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20	59수59**	E*I*A*K*D*N*I*A*S*N*L	대전광역시	2023-08-13 10:5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421	324보84**	L*N*I*G	경기도 시흥시	2023-08-13 12:03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22	35가73**	박*근	서울특별시	2023-08-13 15:09	독립문역사거리~서대문역	전용차로위반	50,000
423	17부44**	윤*태	서울특별시	2023-08-13 15:10	송중초교앞교차로~이오부동산(우회전)	전용차로위반	50,000
424	04버91**	강*영	경기도 과천시	2023-08-13 15:25	미아사거리역~미아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425	50도34**	안*진	서울특별시	2023-08-13 17:34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위반	50,000
426	89다89**	(*)*이*포*	경기도 용인시	2023-08-13 17:4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427	11누51**	T*A*V*A*H*S*A*V*A*I*I*O*I*H	경기도 안성시	2023-08-13 18:0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28	245조10**	O*H*A*M*H*M*D*B*E*G*A*I*O*A*	충청북도 충주시	2023-08-13 19:0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29	49머62**	L*E*A*I*S*	서울특별시	2023-08-13 20:4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430	08주09**	김*희	경상남도 창원시	2023-08-14 03:0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431	143라87**	J*N*H*H*O	서울특별시	2023-08-14 05:29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32	46소29**	이*우	충청북도 영동군	2023-08-14 07:09	송중초교앞교차로~반석빌딩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433	62누05**	최*영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14 07: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34	33노04**	송*수	경기도 광주시	2023-08-14 07:2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35	308서17**	성*진	경기도 하남시	2023-08-14 07:2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36	서울83자71**	송*식	서울특별시	2023-08-14 07:4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37	64구78**	정*흥	서울특별시	2023-08-14 07: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38	97누20**	김*숙	충청남도 홍성군	2023-08-14 07:5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39	181무95**	김*윤	서울특별시	2023-08-14 07:5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440	04머65**	최*길	경기도 과천시	2023-08-14 07:55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41	74러77**	박*	인천광역시	2023-08-14 07:5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60,000
442	39무80**	김*현	서울특별시	2023-08-14 08:17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443	247거96**	이*현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4 09:1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44	343무62**	박*양	경기도 양주시	2023-08-14 09:1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45	224거23**	최*봉	경기도 군포시	2023-08-14 09:1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46	서울31사73**	민*배	서울특별시	2023-08-14 09:23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447	41누70**	신*자	서울특별시	2023-08-14 09:24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48	32도43**	정*진	경기도 파주시	2023-08-14 09:2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49	86소94**	강*숙	경기도 과천시	2023-08-14 09:41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50	83마77**	(*)*록*기*	서울특별시	2023-08-14 09: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51	115조93**	김*위	서울특별시	2023-08-14 09:50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52	34서70**	류*연	광주광역시	2023-08-14 11:3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53	34서70**	류*연	광주광역시	2023-08-14 11:4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454	279수56**	곽*례	서울특별시	2023-08-14 11:55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55	279수56**	곽*례	서울특별시	2023-08-14 11:5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56	315서41**	고*완	충청남도 천안시	2023-08-14 12:2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57	01조35**	이*구	서울특별시	2023-08-14 12:5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58	164모96**	박*현	경기도 시흥시	2023-08-14 13:0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59	경기80바33**	권*희	경기도 화성시	2023-08-14 13:17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위반	50,000
460	37도04**	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3-08-14 13:5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61	171라55**	백*필	경상북도 예천군	2023-08-14 13:5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462	01루18**	신*호	전라북도 전주시	2023-08-14 14:4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463	서울31바24**	김*신	서울특별시	2023-08-14 14:57	서울중랑우체국~시네마시티오피스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64	경기부천하89**	김*헌	경기도 부천시	2023-08-14 15:03	종각역~종로3가역	전용차로위반	40,000
465	27무50**	정*희	서울특별시	2023-08-14 15:46	봉원고가차도~연세대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66	83구54**	이*수	경기도 양주시	2023-08-14 15:4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67	143어79**	주*회*안*	경기도 광명시	2023-08-14 16:1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68	66소97**	주*회*헤*론*업	경기도 평택시	2023-08-14 16:1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469	51저71**	원*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3-08-14 16:3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70	293도87**	김*문	서울특별시	2023-08-14 16:3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71	293노83**	박*빈	서울특별시	2023-08-14 16: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72	379가73**	주*회*미*어*이*	서울특별시	2023-08-14 16:5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473	39다08**	곽*동	서울특별시	2023-08-14 17:1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474	89거05**	L*C*U*N*N	서울특별시	2023-08-14 17: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75	서울32사93**	박*식	서울특별시	2023-08-14 17:2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476	176노45**	장*경	경기도 평택시	2023-08-14 17:2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77	서울31사74**	홍*철	서울특별시	2023-08-14 17: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78	10마93**	정*은	경기도 이천시	2023-08-14 17:39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79	34호43**	(*)*신*트*여*사	서울특별시	2023-08-14 17:43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480	서울31바95**	김*득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4 17:44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81	50누18**	임*만	서울특별시	2023-08-14 17:4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82	69조82**	임*숙	서울특별시	2023-08-14 17:5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483	29머12**	J*N*I*G*A*	서울특별시	2023-08-14 17:58	시흥대로 말미사거리-시흥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484	11너25**	서*수	부산광역시	2023-08-14 18: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85	180마99**	양*헌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4 18:12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86	15가39**	H*I*A*S*E*I*A*O*L*G*H*O*A*E*	서울특별시	2023-08-14 18:1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87	서울광진파76**	유*옥	서울특별시	2023-08-14 18:16	석촌호수교차로~잠실역	전용차로위반	40,000
488	서울31자53**	최*열	경기도 광주시	2023-08-14 18:22	몽촌토성역~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89	382고95**	신*재	경기도 부천시	2023-08-14 18:23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90	178저53**	시*순	서울특별시	2023-08-14 18:2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91	30서28**	서*환	서울특별시	2023-08-14 18:2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92	227다24**	이*렬	서울특별시	2023-08-14 18:29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93	54두11**	전*훈	경기도 성남시	2023-08-14 18:3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94	63두02**	이*민	경기도 평택시	2023-08-14 18:3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95	69루45**	김*길	경기도 고양시	2023-08-14 18:4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96	15너01**	기*숙	서울특별시	2023-08-14 18:4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497	09마03**	이*은	서울특별시	2023-08-14 18:4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98	014가92**	최*옥	서울특별시	2023-08-14 18:50	을지구장~삼육에코팜센터	전용차로위반	60,000
499	07더47**	이*호	서울특별시	2023-08-14 19: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00	65거33**	이*리	서울특별시	2023-08-14 19:2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01	22구11**	주*회*허*아*아	경기도 고양시	2023-08-14 19:2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02	346주25**	오*근	경기도 포천시	2023-08-14 19:24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03	311우61**	조*준	인천광역시	2023-08-14 19:2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04	67마85**	주*회*피*씨*리*	경기도 용인시	2023-08-14 19:4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05	38로21**	김*영	경기도 성남시	2023-08-14 20:0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06	355우12**	박*희	인천광역시	2023-08-14 20:20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07	81너19**	농*회*법*주*회*지*	경기도 화성시	2023-08-14 20:2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08	43거05**	조*형	인천광역시	2023-08-14 20:2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09	148두55**	유*규	서울특별시	2023-08-14 20:3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10	130가90**	이*은	경기도 고양시	2023-08-14 20:40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11	29수63**	M*M*R*Z*K*V*A*L*N*E*E*G*S*B*Y*G*I	부산광역시	2023-08-14 20:4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512	56가52**	김*석	서울특별시	2023-08-14 20:4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13	134라94**	김*한	서울특별시	2023-08-15 01:37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14	205루83**	김*진	경기도 고양시	2023-08-15 08:4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15	67마85**	주*회*피*씨*리*	경기도 용인시	2023-08-15 10:1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516	67너23**	G*P*A*H*V*A*A*A*	경기도 수원시	2023-08-15 10:58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517	56무81**	유*수	충청북도 청주시	2023-08-15 12:16	연신내역~동명여고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18	373두86**	이*규	광주광역시	2023-08-15 13:1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19	373두86**	이*규	광주광역시	2023-08-15 13:2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20	52노13**	S*W*D*N*O*A*E*A*M*D*O*A*E*	서울특별시	2023-08-15 13:5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521	299루17**	P*R*J*C*I*J*E*Y*N*	서울특별시	2023-08-15 14:1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522	23모20**	최*인	서울특별시	2023-08-15 16:08	송중초교교차로~방천시장입구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23	11구48**	김*수	광주광역시	2023-08-15 16:5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524	325러92**	최*해	서울특별시	2023-08-15 17:3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25	08로51**	나*수	서울특별시	2023-08-15 19:30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26	16노28**	H*L*B*E*K*I*	서울특별시	2023-08-15 22:50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위반	50,000
527	서울31사46**	이*천	서울특별시	2023-08-15 22:59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위반	50,000
528	16더89**	홍*영	서울특별시	2023-08-15 23:4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529	24버39**	J*N*I*Z*E	서울특별시	2023-08-16 07:10	반포IC~하남IC	전용차로위반	50,000
530	86어38**	이*남	서울특별시	2023-08-16 07: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31	229고87**	정*희	경기도 수원시	2023-08-16 07:2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32	83거09**	정*희	경기도 광주시	2023-08-16 07: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33	94나07**	이*형	경기도 성남시	2023-08-16 07:4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534	37머48**	임*빈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6 07:5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35	57조38**	김*재	대전광역시	2023-08-16 07:54	개화교(개화사거리 방면)	전용차로위반	50,000
536	108우60**	유*기	경기도 김포시	2023-08-16 07:55	개화교(개화사거리 방면)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537	20머87**	오*희	서울특별시	2023-08-16 08:2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38	47오24**	김*규	경기도 성남시	2023-08-16 08:32	개봉사거리~오류IC	전용차로위반	50,000
539	17다07**	고*훈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6 08:35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40	183조92**	(*)*욘*플*스*	서울특별시	2023-08-16 08:40	은평지문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541	68고74**	장*	경기도 안산시	2023-08-16 08: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42	266두13**	오*석	서울특별시	2023-08-16 09:02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43	137무95**	안*혁	서울특별시	2023-08-16 09:3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16길 47	전용차로위반	50,000
544	65누35**	박*식	서울특별시	2023-08-16 09:32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위반	50,000
545	102로83**	강*묵	경기도 시흥시	2023-08-16 09:3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46	92가09**	박*학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6 09:42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47	08로67**	조*원	서울특별시	2023-08-16 09:4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48	304모30**	김*영	경기도 용인시	2023-08-16 09:59	복정역~장지역	전용차로위반	50,000
549	경기81자78**	이*훈	경기도 광주시	2023-08-16 09:59	복정역~장지역	전용차로위반	50,000
550	41부91**	김*태	서울특별시	2023-08-16 10:0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51	28러84**	장*나	경기도 평택시	2023-08-16 10:2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52	49우05**	김*자	충청북도 진천군	2023-08-16 11:2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53	49우05**	김*자	충청북도 진천군	2023-08-16 11:2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54	65보39**	김*선	충청북도 청주시	2023-08-16 11:3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555	163거98**	전*빈	경기도 광주시	2023-08-16 11:58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위반	50,000
556	24어18**	이*민	대전광역시	2023-08-16 12: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57	38머91**	박*봉	경기도 성남시	2023-08-16 12:02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558	386가57**	장*수	서울특별시	2023-08-16 12:1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59	66모34**	서*혜	서울특별시	2023-08-16 12:3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560	28루15**	성*용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2023-08-16 12:5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561	서울31사45**	이*원	서울특별시	2023-08-16 13:2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62	83무07**	J*N*A*F*N*	인천광역시	2023-08-16 14:1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563	12다71**	김*석	인천광역시	2023-08-16 14:1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564	49우05**	김*자	충청북도 진천군	2023-08-16 14:25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65	49우05**	김*자	충청북도 진천군	2023-08-16 14:2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66	135머41**	케*티*사*드*식*사	경기도 고양시	2023-08-16 14:40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67	46라40**	주*회*포*	경기도 양주시	2023-08-16 14: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68	175모96**	노*일	경기도 과천시	2023-08-16 16:07	남부순환로kt관악지점정류소부근	전용차로위반	50,000
569	57루55**	이*철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3-08-16 16: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70	서울32바64**	김*근	서울특별시	2023-08-16 16:5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571	03두06**	김*주	경기도 고양시	2023-08-16 17:01	사당IC교~사당역	전용차로위반	50,000
572	90보94**	김*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6 17:0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573	62소14**	김*훈	서울특별시	2023-08-16 17:0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74	61수11**	최*완	서울특별시	2023-08-16 17:1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575	90고62**	김*철	인천광역시	2023-08-16 17: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76	89서52**	주*회*동*일*콤	서울특별시	2023-08-16 17:2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77	51저83**	안*우	울산광역시	2023-08-16 17:32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578	서울31사68**	정*원	경기도 고양시	2023-08-16 17: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79	21두55**	(*)*림*엔*	경기도 수원시	2023-08-16 17:4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580	서울32사74**	황*선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16 17: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81	97어47**	최*규	서울특별시	2023-08-16 17:5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82	33너07**	김*석	경기도 광주시	2023-08-16 18:0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83	42주24**	정*식	서울특별시	2023-08-16 18:13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584	54더63**	조*동	서울특별시	2023-08-16 18:1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585	60마66**	심*은	서울특별시	2023-08-16 18:24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86	213오88**	김*환	서울특별시	2023-08-16 18:2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87	42서20**	정*희	서울특별시	2023-08-16 18: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88	127가59**	(*)*스*림*리*(*x* r*m*K*r*a*o*,*t* .*	서울특별시	2023-08-16 18:5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89	824조70**	김*호	서울특별시	2023-08-16 19:1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90	47거15**	유*정	서울특별시	2023-08-16 19:1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591	50무78**	김*환	서울특별시	2023-08-16 19: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92	68가29**	이*필	서울특별시	2023-08-16 19:2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93	56부29**	김*미	경기도 용인시	2023-08-16 19:2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94	142거88**	김*민	서울특별시	2023-08-16 19:2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95	68거16**	성*현	서울특별시	2023-08-16 19:5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596	23나36**	박*연	서울특별시	2023-08-16 19:5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97	40도16**	한*심	전라남도 무안군	2023-08-16 19:5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598	227로67**	임*정	서울특별시	2023-08-16 20:0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99	26버92**	조*희	서울특별시	2023-08-16 20:1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00	49다78**	김*우	서울특별시	2023-08-16 20:1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01	86버56**	(*)*창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6 20:2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602	서울31사15**	신*동	서울특별시	2023-08-16 20:3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03	227누17**	김*종	경기도 성남시	2023-08-16 20:4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04	83너25**	남*상	서울특별시	2023-08-16 20:4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05	서울31바90**	권*호	서울특별시	2023-08-16 20: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06	서울31사18**	양*희	서울특별시	2023-08-16 22:5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607	47루35**	이*정	인천광역시	2023-08-17 00:3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608	서울32사93**	우*대	서울특별시	2023-08-17 03:0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609	265가81**	조*원	인천광역시	2023-08-17 07: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	전용차로위반	50,000
610	327머96**	유*화	경기도 화성시	2023-08-17 07:1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11	12무91**	김*화	서울특별시	2023-08-17 07:4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12	347부10**	허*두	경기도 시흥시	2023-08-17 08:19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위반	50,000
613	06다08**	박*운	경기도 고양시	2023-08-17 08:29	은평뉴타운10단지~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614	29무13**	강*정	경기도 고양시	2023-08-17 08:29	은평뉴타운10단지~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615	서울86바89**	(*)*서*합*류	서울특별시	2023-08-17 08:3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16	04무87**	가*엔*니*링*식*사	서울특별시	2023-08-17 08:3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17	17루10**	이*수	경기도 용인시	2023-08-17 09:09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18	187우22**	황*영	인천광역시	2023-08-17 09:1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19	22거09**	김*하	서울특별시	2023-08-17 09:2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620	서울31바30**	황*복	서울특별시	2023-08-17 09:32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621	16소69**	백*곡	경기도 부천시	2023-08-17 09:3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22	133하30**	주*회*퍼*트*트*	경기도 용인시	2023-08-17 09:4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23	133하30**	주*회*퍼*트*트*	경기도 용인시	2023-08-17 09:4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24	80가58**	최*준	서울특별시	2023-08-17 09:4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625	05나01**	안*경	서울특별시	2023-08-17 09:4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626	경기65바65**	안*모	경기도 용인시	2023-08-17 09:4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27	50부17**	신*철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7 10:0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28	33모22**	(*)*기*발	경기도 광주시	2023-08-17 10:4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29	15더76**	배*현	경기도 용인시	2023-08-17 10:4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30	837머79**	삼*피*에*(*)	서울특별시	2023-08-17 11:03	광나루역~천호역	전용차로위반	50,000
631	27무23**	김*찬	경기도 화성시	2023-08-17 11:1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32	20두69**	나*예	서울특별시	2023-08-17 12:06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33	167라87**	J*N*H*N*H*	서울특별시	2023-08-17 12: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34	22노84**	김*규	서울특별시	2023-08-17 12:2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35	15마08**	김*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3-08-17 12:48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636	서울영등포카13**	진*섭	서울특별시	2023-08-17 13:51	국제금융로8길 KB국민은행~수정아파트앞교차로	전용차로위반	40,000
637	서울영등포카21**	백*섭	경기도 시흥시	2023-08-17 13:54	국제금융로7길 한양아파트 주변	전용차로위반	40,000
638	41고02**	김*철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7 14:12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위반	50,000
639	49나03**	I*E*R*M*S*V*S*W*N*T*	서울특별시	2023-08-17 14:4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640	16라46**	신*민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7 14: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41	서울중자15**	윤*원	인천광역시	2023-08-17 15:13	종로4가교차로~청계4가4교차로	전용차로위반	40,000
642	130버87**	J*N*I*N*I	경기도 김포시	2023-08-17 15: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43	22어84**	김*자	서울특별시	2023-08-17 15:36	연희IC~모래내고가차도	전용차로위반	50,000
644	199로61**	김*만	서울특별시	2023-08-17 15:57	반포3동주민센터교차로~한남IC	전용차로위반	50,000
645	43다07**	L*X*	서울특별시	2023-08-17 16:0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46	48서21**	정*규	인천광역시	2023-08-17 16:2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47	803머12**	J*N*A*H*N*	인천광역시	2023-08-17 16:27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48	270주98**	박*휘	경기도 가평군	2023-08-17 17:0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49	16러32**	홍*기	서울특별시	2023-08-17 17:1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50	서울31사62**	이*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7 17:15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51	127호15**	주*회*뉴*일*트*	대구광역시	2023-08-17 17:23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52	127호15**	주*회*뉴*일*트*	대구광역시	2023-08-17 17:2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53	205라70**	이*수	경기도 포천시	2023-08-17 17:27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54	19서98**	J*N*H*N*E*	경기도 시흥시	2023-08-17 17:4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55	169오39**	서*미	경기도 평택시	2023-08-17 17:4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56	258너11**	남*우	서울특별시	2023-08-17 17:5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57	13두38**	김*숙	서울특별시	2023-08-17 18:07	중계역~노원역	전용차로위반	50,000
658	157저62**	박*인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7 18:09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59	217어97**	김*지	서울특별시	2023-08-17 18:1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60	18고06**	송*진	서울특별시	2023-08-17 18:13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661	12오55**	김*호	서울특별시	2023-08-17 18:2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62	39러64**	유*헌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17 18:4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63	49부93**	최*석	경기도 고양시	2023-08-17 18:4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64	280부18**	박*현	경기도 부천시	2023-08-17 1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전용차로위반	50,000
665	56저76**	채*직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7 19:0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66	21러03**	김*희	서울특별시	2023-08-17 19:2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67	31더02**	박*우	서울특별시	2023-08-17 19:2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68	11우89**	김*래	서울특별시	2023-08-17 19:5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69	253조59**	김*혜	서울특별시	2023-08-17 19:5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70	47조96**	박*환	경기도 성남시	2023-08-17 20:07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671	서울31사51**	김*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7 20:1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72	서울31사85**	윤*운	서울특별시	2023-08-17 20:2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73	66모47**	김*동	인천광역시	2023-08-17 20: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74	59우92**	신*일	경기도 수원시	2023-08-17 20:4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75	116허68**	아*랑*주*회*	충청남도 서산시	2023-08-17 20:4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76	서울32아21**	강*수	서울특별시	2023-08-17 20:5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77	18더57**	(*)*트	서울특별시	2023-08-17 21:43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78	경북15바12**	박*수	경상북도 구미시	2023-08-17 22:2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679	17라53**	노*천	충청남도 아산시	2023-08-17 23:1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680	서울32사46**	신*옥	서울특별시	2023-08-18 00:5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681	서울85자80**	남*복	서울특별시	2023-08-18 05:47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682	서울32바50**	여*출	서울특별시	2023-08-18 07:15	서울송중초등학교~이오부동산앞	전용차로위반	50,000
683	07구50**	이*란	서울특별시	2023-08-18 07:3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84	12무91**	김*화	서울특별시	2023-08-18 08:0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85	50조35**	이*기	경기도 고양시	2023-08-18 08:15	중계그린공원교차로~중계역	전용차로위반	50,000
686	205라70**	이*수	경기도 포천시	2023-08-18 08:1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87	35나27**	전*수	서울특별시	2023-08-18 08:1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88	35나27**	전*수	서울특별시	2023-08-18 08: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89	81버69**	유*태	서울특별시	2023-08-18 08:2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90	353부59**	김*민	경기도 하남시	2023-08-18 08: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91	69도57**	허*섭	서울특별시	2023-08-18 08:3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692	243조51**	주*연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18 08:39	온수골사거리~노원역	전용차로위반	50,000
693	381러27**	(*)*이*센*	대전광역시	2023-08-18 08:47	시흥IC~구로디지틀단지역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94	83서63**	이*영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18 09:0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95	56다65**	이*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8 09:19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96	85부55**	한*기	서울특별시	2023-08-18 09:36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97	47서78**	(*)*터	경기도 하남시	2023-08-18 09:5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98	85우30**	이*희	경기도 양주시	2023-08-18 10:12	아차산역~아차산역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699	72수53**	이*동	경기도 용인시	2023-08-18 10:2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60,000
700	87마91**	김*우	경상북도 구미시	2023-08-18 10:2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01	137무95**	안*혁	서울특별시	2023-08-18 11: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8	전용차로위반	50,000
702	92노09**	박*원	경기도 광명시	2023-08-18 11:17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703	15오81**	차*호	경기도 용인시	2023-08-18 11:2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04	15오81**	차*호	경기도 용인시	2023-08-18 11:3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05	39누21**	C*I*H*N*Q*A*	서울특별시	2023-08-18 11: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06	13마78**	유*정*통*(*)	서울특별시	2023-08-18 11:4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707	35두95**	오*석	서울특별시	2023-08-18 12:1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708	108버62**	정*훈	서울특별시	2023-08-18 12:15	현충로 한강현대아파트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09	202너94**	박*준	광주광역시	2023-08-18 13:4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10	202너94**	박*준	광주광역시	2023-08-18 13:4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11	83구03**	C*E*H*W*N	경기도 수원시	2023-08-18 13:47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12	716주27**	김*성	서울특별시	2023-08-18 14:0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60,000
713	347주41**	W*J*N*H*N*	서울특별시	2023-08-18 14:4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14	65두34**	이*연	경기도 시흥시	2023-08-18 14:55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15	65두34**	이*연	경기도 시흥시	2023-08-18 14:5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16	396라69**	최*원	경기도 시흥시	2023-08-18 15:3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717	27로59**	(*)*비*	서울특별시	2023-08-18 15:4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18	35저08**	채*숙	서울특별시	2023-08-18 15:4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719	182러94**	K*N*R*K*L*K*	서울특별시	2023-08-18 16:1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20	28로40**	이*리	서울특별시	2023-08-18 16:1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21	63모19**	T*A*C*N*H*N*	경상남도 함양군	2023-08-18 16:3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22	85누12**	임*모	서울특별시	2023-08-18 16:3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23	254거39**	K*M*L*I*A	인천광역시	2023-08-18 16:39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24	254거39**	K*M*L*I*A	인천광역시	2023-08-18 16:4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25	57고90**	김*우	서울특별시	2023-08-18 16:5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726	서울31사66**	정*호	서울특별시	2023-08-18 17:1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27	314마81**	정*용	서울특별시	2023-08-18 17:1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728	274구54**	김*성	경상북도 구미시	2023-08-18 17:1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29	274너84**	이*해	서울특별시	2023-08-18 17:16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30	94부86**	김*근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8 17:1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31	50서21**	주*회*더*스	서울특별시	2023-08-18 17:2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732	93두52**	정*영	서울특별시	2023-08-18 17:2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33	25보77**	이*식	서울특별시	2023-08-18 17:3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734	서울38아64**	이*식	서울특별시	2023-08-18 17: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35	20머51**	전*주	서울특별시	2023-08-18 17: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36	20다47**	배*극	서울특별시	2023-08-18 17: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37	39루97**	김*환	서울특별시	2023-08-18 17:37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738	27어51**	김*업	서울특별시	2023-08-18 17:4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39	91러85**	최*민	서울특별시	2023-08-18 17:4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740	62도89**	김*회	서울특별시	2023-08-18 17:4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41	335우45**	(*)*왕*스*티	인천광역시	2023-08-18 17:5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42	80보05**	정*중	경기도 동두천시	2023-08-18 17:5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743	66두10**	함*덕	서울특별시	2023-08-18 17:5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44	335우45**	(*)*왕*스*티	인천광역시	2023-08-18 17:5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45	251노83**	양*섭	경기도 고양시	2023-08-18 17:55	서대문역교차로~독립문역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746	13가19**	(*)*케*	경기도 용인시	2023-08-18 17: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47	60오57**	김*필	경기도 성남시	2023-08-18 17:5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48	96더85**	김*석	서울특별시	2023-08-18 18:0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749	325러92**	최*해	서울특별시	2023-08-18 18:0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50	35루07**	박*만	서울특별시	2023-08-18 18:06	성내교	전용차로위반	50,000
751	23두66**	정*영	경기도 성남시	2023-08-18 18:07	성내교	전용차로위반	50,000
752	81무04**	이*철	서울특별시	2023-08-18 18:0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753	61보80**	홍*순	세종특별자치시	2023-08-18 18:0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54	인천30바59**	박*원	인천광역시	2023-08-18 18: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55	95도24**	손*라	서울특별시	2023-08-18 18: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56	32부41**	임*윤	서울특별시	2023-08-18 18:1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57	36우50**	정*기	서울특별시	2023-08-18 18: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58	22구46**	권*형	서울특별시	2023-08-18 18: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59	서울31사17**	김*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18 18:2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60	36부84**	김*익	서울특별시	2023-08-18 18:3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761	364소81**	이*미	서울특별시	2023-08-18 18:44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62	50더75**	(*)*노*레*	서울특별시	2023-08-18 18:45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63	서울31사97**	김*용	서울특별시	2023-08-18 18:4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64	80무79**	김*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3-08-18 18:4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65	67버62**	최*현	서울특별시	2023-08-18 18:50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66	289가16**	주*회*외*공*디*인*숲	서울특별시	2023-08-18 18:53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67	42조66**	케*비*(*)	경기도 성남시	2023-08-18 18: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68	05조88**	주*회*에*제*마*	서울특별시	2023-08-18 18:5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69	170더33**	연*영	경상남도 통영시	2023-08-18 18:5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770	05노67**	김*숙	서울특별시	2023-08-18 19:0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71	01무44**	소*수	서울특별시	2023-08-18 19:0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72	11조92**	H*R*E*J*S*I*J*H*	서울특별시	2023-08-18 19:1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73	106구22**	주*회*디*스*드*	서울특별시	2023-08-18 19:2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74	34노78**	D*R*A*B*Y*N*I*E*	서울특별시	2023-08-18 19:2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75	333조75**	이*화	경기도 부천시	2023-08-18 19:25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위반	50,000
776	63누01**	주*회*에*치*이*역	서울특별시	2023-08-18 19:2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77	160너70**	최*봉	경상남도 양산시	2023-08-18 19:2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78	26저82**	이*락	서울특별시	2023-08-18 19:31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79	147나78**	Y*G*O*I*N*	서울특별시	2023-08-18 19:3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80	12조44**	권*욱	서울특별시	2023-08-18 19:3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81	14모90**	이*순	서울특별시	2023-08-18 19: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82	231부18**	최*규	서울특별시	2023-08-18 19:4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83	67러04**	조*민	서울특별시	2023-08-18 19: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84	33오22**	채*만	경기도 양주시	2023-08-18 19:5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85	07거04**	김*오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8 19:58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86	26거30**	방*영	서울특별시	2023-08-18 19:59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87	경기92자46**	송*영	경기도 양주시	2023-08-18 20:0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88	11도55**	고*환	서울특별시	2023-08-18 20:0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789	83마12**	조*식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18 20:14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790	83두13**	백*현	경기도 양주시	2023-08-18 20:1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91	59노67**	함*영	서울특별시	2023-08-18 20: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92	234구94**	유*조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18 20:2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93	87무85**	태*토*주*희*	서울특별시	2023-08-18 20:3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94	175호52**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2023-08-18 20:35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95	25다04**	최*재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18 20:3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96	119구39**	김*홍	서울특별시	2023-08-18 20:3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97	36가55**	김*명	서울특별시	2023-08-18 20:4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798	42두62**	문*주	서울특별시	2023-08-18 20:4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799	97누78**	태*토*주*희*	서울특별시	2023-08-18 20:4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800	30어35**	B*T*H*S*I*T*I*G*U*D*S*	서울특별시	2023-08-18 20:5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801	60도56**	S*A*I*O*M*S*A*O	경기도 이천시	2023-08-18 21:1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802	36소91**	유*미	경상남도 창원시	2023-08-19 00:27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03	19가25**	정*석	경기도 고양시	2023-08-19 08:2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804	48부92**	전*진	서울특별시	2023-08-19 09:36	마포대교교차로~여의도공원앞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05	355도95**	지*수	인천광역시	2023-08-19 12:16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위반	50,000
806	399조91**	김*웅	대전광역시	2023-08-19 12:3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07	24고02**	이*화	인천광역시	2023-08-19 14:0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08	46러92**	전*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3-08-19 14:38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809	201머57**	정*준	서울특별시	2023-08-19 15:1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810	69라54**	P*A*J*F*	경기도 고양시	2023-08-19 15:19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11	69라54**	P*A*J*F*	경기도 고양시	2023-08-19 15:2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12	95버10**	김*용	충청남도 금산군	2023-08-19 16:1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13	32가23**	J*N*H*N*L*N*	경기도 안산시	2023-08-19 16:5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14	32가23**	J*N*H*N*L*N*	경기도 안산시	2023-08-19 16:5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15	42부02**	케*피*리*이*브*이*시*주*	서울특별시	2023-08-19 18:26	용두역~신답지하차도	전용차로위반	50,000
816	86루34**	오*영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023-08-19 18:5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817	204소59**	전*연	서울특별시	2023-08-19 19:5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18	157누19**	전*하	서울특별시	2023-08-19 20:4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19	서울31사66**	최*열	서울특별시	2023-08-19 22:4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820	15너59**	Y*N*I*G*I*G	서울특별시	2023-08-20 00:37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21	286주74**	명*희	충청남도 태안군	2023-08-20 09:1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822	서울31사66**	권*일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20 10:0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823	14다18**	이*	충청북도 청주시	2023-08-20 10:5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24	39루24**	임*환	서울특별시	2023-08-20 13:0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825	210구22**	박*자	경기도 부천시	2023-08-20 13:04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위반	50,000
826	41마24**	심*현	경기도 고양시	2023-08-20 13:56	모래내고가차도	전용차로위반	50,000
827	109주17**	P*A*Y*L*N	경기도 안산시	2023-08-20 15:1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28	32가23**	J*N*H*N*L*N*	경기도 안산시	2023-08-20 15:18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29	109주17**	P*A*Y*L*N	경기도 안산시	2023-08-20 15:1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30	32가23**	J*N*H*N*L*N*	경기도 안산시	2023-08-20 15:1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831	32가23**	J*N*H*N*L*N*	경기도 안산시	2023-08-20 15:2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32	57주57**	D*V*A*S*R*N*A*H*Y*M	경기도 성남시	2023-08-20 16:1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833	39루52**	유*숙	서울특별시	2023-08-20 18:4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834	34로21**	G*N*U*G*B*T*R*E*E	충청남도 천안시	2023-08-20 19:23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위반	50,000
835	15두88**	임*류	인천광역시	2023-08-20 20:24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36	210누26**	안*정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3-08-20 23:26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37	45두98**	김*규	서울특별시	2023-08-21 01:4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838	334서66**	박*형	서울특별시	2023-08-21 01:53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39	서울32바51**	엄*용	서울특별시	2023-08-21 06:2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840	342오78**	정*환	서울특별시	2023-08-21 06:55	미아역~삼양입구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841	88부02**	송*식	경기도 시흥시	2023-08-21 07: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42	33노04**	송*수	경기도 광주시	2023-08-21 07:1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43	47구28**	박*호	경기도 수원시	2023-08-21 07:2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44	서울84자75**	이*열	서울특별시	2023-08-21 07: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45	03러94**	김*석	서울특별시	2023-08-21 07:38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46	79우05**	강*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3-08-21 07:4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60,000
847	03러94**	김*석	서울특별시	2023-08-21 07:48	서대문역~경찰청앞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48	258다65**	홍*은	서울특별시	2023-08-21 07:5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49	55너57**	이*진	서울특별시	2023-08-21 08:11	천호대교 위	전용차로위반	50,000
850	66루42**	김*선	경기도 포천시	2023-08-21 08:11	천호대교 위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851	97보22**	황*상	경기도 김포시	2023-08-21 08:18	개화교	전용차로위반	50,000
852	서울32아45**	양*홍	서울특별시	2023-08-21 08:20	성산2교~마포구청역사거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53	32마96**	최*연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21 08:2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54	59로64**	조*욱	서울특별시	2023-08-21 08:2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55	18너41**	이*채	서울특별시	2023-08-21 08:2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56	서울32바32**	고*철	경기도 부천시	2023-08-21 08:3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57	57보78**	김*덕	서울특별시	2023-08-21 08:30	천호사거리~광나루역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58	서울31아36**	이*돌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21 08:3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59	217거41**	담*물*(*)	서울특별시	2023-08-21 08:3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60	51고54**	정*수	경기도 성남시	2023-08-21 08:5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861	52부02**	(*)*이*스*퍼*이*	서울특별시	2023-08-21 09:00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62	53두22**	최*엽	경기도 고양시	2023-08-21 09:05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863	87다69**	(*)*투*	경기도 광주시	2023-08-21 09:09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64	62우92**	전*섭	경기도 의정부시	2023-08-21 09:3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865	213노69**	전*영	서울특별시	2023-08-21 09:3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66	67구76**	(*)*은*재	경기도 광주시	2023-08-21 09:4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67	387고95**	김*환	서울특별시	2023-08-21 09:46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868	262다65**	김*영	경기도 광주시	2023-08-21 10:0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869	86수04**	김*호	서울특별시	2023-08-21 10:1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870	25주55**	김*규	서울특별시	2023-08-21 10:2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871	서울31아64**	함*철	서울특별시	2023-08-21 10:44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72	163보43**	김*정	서울특별시	2023-08-21 10:4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873	82저59**	(*)*에*환*	경기도 시흥시	2023-08-21 10:59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74	19오98**	P*R*V*A*H*Z*A*A	서울특별시	2023-08-21 11:27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위반	50,000
875	26부82**	이*경	경기도 평택시	2023-08-21 12:0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76	53두74**	문*옥	경기도 구리시	2023-08-21 12:17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77	41버34**	조*영	경기도 김포시	2023-08-21 13:4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78	35루21**	정*연	경기도 안양시	2023-08-21 14:42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79	93누07**	블*하*스*리*주*회*	경기도 성남시	2023-08-21 15:01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80	52주66**	양*학	서울특별시	2023-08-21 15:1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881	249어95**	이*	인천광역시	2023-08-21 15:27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82	서울32자36**	이*호	서울특별시	2023-08-21 15:3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883	56버78**	W*T*I*U*N	서울특별시	2023-08-21 16:43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84	56버78**	W*T*I*U*N	서울특별시	2023-08-21 16:4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85	45보04**	김*원	경기도 구리시	2023-08-21 16: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86	164거15**	서*명	경상북도 포항시	2023-08-21 17:0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87	156나47**	권*	경기도 고양시	2023-08-21 17: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88	11두60**	양*욱	서울특별시	2023-08-21 17: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89	56마61**	김*복	경기도 군포시	2023-08-21 17:22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890	65더25**	윤*열	경기도 오산시	2023-08-21 17:3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91	18로52**	한*연	서울특별시	2023-08-21 1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92	37주85**	유*매	서울특별시	2023-08-21 17:4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893	서울37사31**	주*회*휴*스*빌*티	서울특별시	2023-08-21 17:5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94	125호45**	주*회*휴*스*빌*티	서울특별시	2023-08-21 17:5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95	364조83**	엄*란	서울특별시	2023-08-21 17: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96	22마74**	한*희	전라북도 전주시	2023-08-21 18:06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897	20머06**	Z*A*Y*H*N*	서울특별시	2023-08-21 18:0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98	259모87**	L*J*N	서울특별시	2023-08-21 18:1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99	33로71**	박*식	인천광역시	2023-08-21 18:1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900	193러94**	J*N*A*L*N*	서울특별시	2023-08-21 18:3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901	54두48**	박*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3-08-21 18:30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902	56루89**	김*관	서울특별시	2023-08-21 18:3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903	27무50**	정*희	서울특별시	2023-08-21 18: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04	129소41**	정*석	서울특별시	2023-08-21 18:4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05	25모47**	N*Y*Z*V*A*U*	경상북도 경산시	2023-08-21 18:4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06	93노03**	조*규	서울특별시	2023-08-21 18:5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07	서울31바88**	유*하	서울특별시	2023-08-21 18:5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08	서울85자29**	유*용	서울특별시	2023-08-21 18: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909	서울31자44**	김*수	서울특별시	2023-08-21 19:0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910	64서18**	인*근	인천광역시	2023-08-21 19:1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11	05마63**	신*미	서울특별시	2023-08-21 19: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912	38보27**	이*영	서울특별시	2023-08-21 19:2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13	51모68**	김*덕	서울특별시	2023-08-21 19:4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14	38소33**	백*순	서울특별시	2023-08-21 19:53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915	80소98**	김*양	서울특별시	2023-08-21 19:5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16	296구70**	이*희	서울특별시	2023-08-21 20:2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17	54부46**	이*임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21 20:2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18	서울31바33**	유*식	경기도 파주시	2023-08-21 20: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19	서울32아17**	박*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3-08-21 20:4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920	172조77**	정*길	서울특별시	2023-08-21 20:4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21	서울31사89**	이*열	서울특별시	2023-08-21 20:5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26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이라 한다)」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과 인증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범위 확대
   - 당초: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 변경: 「장애인등편의법」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
   -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 포함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시설안전과)
   O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O 연락처 : 전화 02-399-9228
   O 이메일 : wjddnjs753@sen.go.kr
   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290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의 근거가 되는 「학원법」이 일부개정되어, 교습소에 대해서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습소의 위반사항 벌점표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에 관한 사항 신설(별표 4)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 전화 02-399-9513, FAX 02-6973-9935
         ◦ 이메일 : silver510@sen.go.kr

   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새소식/공지]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입법안(다음 페이지)

◈ 서울특별시 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제7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제7호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2항제7호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폐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별표 4]

위반사항 벌점표(제16조 및 제21조 관련)

1. 법 제17조제1항 관련(학원)
벌점표 (생 략)

2. 법 제17조제2항 관련(교습소)
벌점표 제1호~제6호 (생 략)

<table>
<tr><th colspan="5">현행</th></tr>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위반사항</th><th rowspan="2">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th><th colspan="3">반복횟수별 벌점</th></tr>
<tr><th>1차</th><th>2차</th><th>3차</th></tr>
<tr><td>제7호</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 법 제17조제3항 관련(개인과외교습자)
벌점표 (생 략)

</td><td>

[별표 4]

위반사항 벌점표(제16조 및 제21조 관련)

1. 법 제17조제1항 관련(학원)
벌점표 (현행과 같음)

2. 법 제17조제2항 관련(교습소)
(현행과 같음)

<table>
<tr><th colspan="6">개정안</th></tr>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위반사항</th><th rowspan="2">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th><th colspan="3">반복횟수별 벌점</th></tr>
<tr><th>1차</th><th>2차</th><th>3차</th></tr>
<tr><td>제7호</td><td>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td><td>법 제17조제2항제7호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td><td>폐지</td><td></td><td></td></tr>
</table>

3. 법 제17조제3항 관련(개인과외교습자)
벌점표 (현행과 같음)

</td></tr>
</table>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td><td rowspan="2">「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td><td colspan="8">2. 구분 (○ 표시)</td></tr>
<tr><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내용
심사</td><td></td><td>존속
기한
연장</td><td></td></tr>
<tr><td colspan="2"></td><td>경제적
규제</td><td></td><td colspan="2">사회적
규제</td><td></td><td colspan="2">행정적
규제</td><td>○</td></tr>
<tr><td>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10">평생교육과장 김순화
학원정책담당사무관 정관용</td></tr>
<tr><td>4. 근거법령</td><td colspan="10">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10">(기준: 2023. 7. 1., 단위: 개소, 명)
<table><tr><td>구분</td><td>교습소</td></tr><tr><td>기관수</td><td>10,675</td></tr></table></td></tr>
<tr><td>6. 규제영향분석</td><td colspan="10">가. 연간비용 : 해당없음
나.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 교습소 교습자
다. 규제의 적정성 및 실효성
o 그동안 학원에만 적용되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관련 행정처분을 교습소에도 신설하여 적용함으로써 학생 안전 관리 강화에 기여</td></tr>
<tr><td>7.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
내용</td><td colspan="10">가. 현행 규제 내용 : 없음
나. 신설(강화) 규제 내용
o 규제 신설
-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다. 그 밖의 규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td></tr>
<tr><td>8.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10">존속기한 설정 없음</td></tr>
</table>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벌점 근거 규정 정비) 학원법 개정으로 교습소에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관련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되어 교습소 벌점표에 해당 벌점 규정 반영이 가능해짐

1-2. 규제의 신설 필요성

□ (학생 안전 강화) 교습소에 대해서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학생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설 규제 >

○교습소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7호	신설					제7호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2항제7호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폐지			학원법 일부개정으로 벌점표에 해당 벌점 내용 반영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본 규제의 신설은 학습자의 안전과 지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준의 최적안임

2-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 본 규제와 관련된 비용은 해당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교습소의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 : 2023. 9. 14.(목) ~ 10. 4.(수)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근거법령에 따른 벌점표 신설을 통해 학원 지도·점검의 효용성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교습소의 학생 안전관리 강화 및 건전 운영에 기여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29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 이유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현행화로 회계 업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조례 적용 대상 확대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기관 확대(제2조제1호): '유치원을 제외한' 문구 삭제
나. 업무추진비 정의 수정(제2조제1호) 및 상위 규정 명칭 변경(제4조, 제6조제1항)
다. 기존 규정 상세화 및 명칭 수정(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라. 업무추진비 공개 방법 수정(제7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재정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 전화 02-399-9631, FAX 02-6973-9945
○ 이메일 : hyejin0809@sen.go.kr
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붙임 1. 입법안
2. 의견제출서식

◈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5급 기관장을 포함한다), 각급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물품을”을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로, “수령자”를 “수령자, 사용용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접대성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경우, 집행 품의서에”를 “경우에는”으로, “기재하여”를 “증빙서류에 기재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관”을 “기관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공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업무추진비 “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5급 기관장을 포함한다),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 “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1. “업무추진비 “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5급 기관장을 포함한다), 각급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 “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원칙)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집행기준) ①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	1. ----------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 수령자, 사용용도 ----------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2. 업무추진비---------- 경우에는 ----------

현 행	개 정 안
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내역 공개)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사용내역 공개) ① ---------- ---------- ---------- -- 기관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공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제(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3년 월 일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23-4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9호(2016.05.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 결정, 2021-194호(2021.04.15.) 및 중구 고시 제2021-127호(2021.11.04.)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중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서울로7017과 에너지플러스 서울로(신축)의 보행로 연결 결정 사항 중 건축물의 주출입구 레벨 변경 및 경계명시 측량 결과에 따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계획 높이 및 연장 축소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	10.3	특수도로	810	남대문5가 281	만리동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 철도, 광장, 도로 중복결정 · 연결통로(일부 입체적 결정)
기정	소로	1	-	10.3	특수도로	810	남대문5가 281	만리동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 철도, 광장, 도로 중복결정 · 연결통로(일부 입체적 결정) · 연결통로(금회 변경사항)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 중 지표 면기준 높이 변경
변경	소로	1	-	10.3	특수도로	810	남대문5가 281	만리동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 연결통로(금회 변경사항) - 현황측량 및 연결 건축물 계획 높이 변경으로 인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연결 통로1	남대문로5가 526일대	길이	3.15m	-	3.15m	-	변경없음 (대우재단빌딩)
			폭	6m	-	6m		
			높이 (지표면기준)	4.8~5.8m	-	4.8~5.8m		
			면적	18.3㎡	-	18.3㎡		
기정	연결 통로2	남대문로5가 526일대	길이	12.25m	-	12.25m	-	변경없음 (호텔마누)
			폭	1.8~2.75m	-	1.8~2.75m		
			높이 (지표면기준)	0~5.62m	-	0~5.62m		
			면적	24.9㎡	-	24.9㎡		
기정	연결 통로3	남대문로5가 537일대	길이	6.88m	-	6.88m	-	변경없음 (메트로타워)
			폭	4.15m	-	4.15m		
			높이 (지표면기준)	0~8.92m	-	0~8.92m		
			면적	28.56㎡	-	28.56㎡		
기정	연결 통로4	봉래동2가 122-11일대	길이	33.17m	-	33.17m	-	변경없음 (구서울역사)
			폭	6m	-	6m		
			높이 (지표면기준)	0~13.47m (-22.37~13.47m)	-	0~13.47m (-22.37~13.47m)		
			면적	286.36㎡	-	286.36㎡		
기정	연결 통로5	남대문로5가 84-17일대	길이	3.32m	-	3.32m	-	신설 (에너지플러스 서울로)
			폭	4m	-	4m		
			높이 (지표면기준)	0~8.05m (-1.95~8.05m)	0~8.05m (증 +1.95)	0~8.05m		
			면적	13.28㎡	-	13.28m		
변경	연결 통로5	남대문로5가 84-17일대	길이	3.32m	3.29m	3.29m	-	변경 (에너지플러스 서울로)
			폭	4m	-	4m		
			높이 (지표면기준)	0~8.05m	0~8.70m	0~8.70m		
			면적	13.28㎡	13.19㎡	13.19㎡		

※ 괄호 안의 값은 지하구조물을 포함한 값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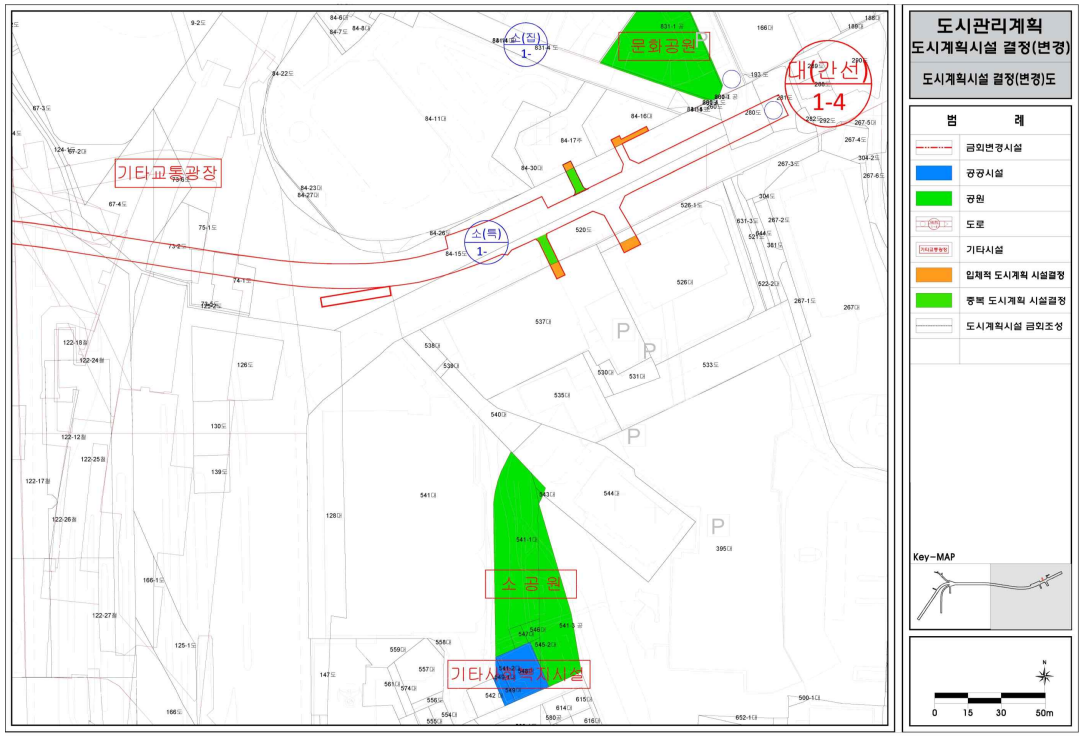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	소로1	·현황측량 및 연결 건축물 계획 높이 변경으로 인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 H=기정 : 0~8.05m → 변경 : 0~8.70m	·현황측량 및 연결 건축물 계획 높이 변경으로 인한 서울로 7017(소로1)과 에너지플러스서울로(신축)의 보행로 연결 결정 사항 중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변경

3. 관계도서 : 생략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열람편의를 위하여 중구청 도심정비과(☎3396-575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



※ 현황측량 및 연결 건축물 계획 높이 변경으로 인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 용산구고시 제2023-137호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5차)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21호(’ 11.5.12.)로 지정·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58호(’ 15.4.23.)로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65호(’ 15.10.30.)로 복합시설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43호(’ 18.6.19.)로 복합시설조성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45호(’ 20.12.24.)로 복합시설조성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2-131호(’ 22.8.16.)로 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2-146호(’ 22.9.7.)로 사업계획변경승인(1차),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2-200호(’ 22.12.28.)로 사업계획변경승인(2차),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3-31호(’ 23.2.28.)로 사업계획변경승인(3차),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3-70호(’ 23.5.1.)로 사업계획변경승인(4차) 처리된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원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에 대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6일
용 산 구 청 장

1. 사 업 명(변경없음):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2. 사업주체
 - 당초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 용산일레븐주식회사 대표 엄성용, 박양준
  나.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89, 4층
 - 변경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대표 박종철
  나.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변경사유: 관리형토지신탁에 따른 사업주체 변경)

3.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외 8필지(변경없음)
  나. 사업기간: 2022.08.16.~2027.02.12.(변경없음)
  다. 시행면적
   - 당초: 51,753㎡(대지면적 44,935㎡, 공공공지 6,818㎡)
   - 변경: 44,935㎡
   (변경사유: 공공공지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오류 정정 - 경관녹지 4,518㎡, 문화공원 1800㎡, 도로 500㎡ 조성은 LH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별개 사업으로 삭제)

라. 건설주택규모 등(변경없음)

사업종류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주택건설	대지면적	44,935㎡	-
	건축면적(건폐율)	25,970㎡(57.79%)	
	연 면 적(용적률)	480,462.6396㎡(599.98%)	
	주 용 도	공동주택(420세대), 오피스텔(723호),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주동수 및 층수	10개동, 지하7층/지상20층	
	사 업 비	13,823,227,596천원	

4. 기타 변경사항

가. 오피스텔 TYPE 변경: (당초→변경)63→64A, 64B, 95B→94

(변경사유: 분양성 확보를 위한 오피스텔 단위세대 및 내부 레이아웃 변경)

5.「주택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변경없음)

가.「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하수도법」제34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6. 관계도면: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용산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 참조(변경없음)

◈ 용산구고시 제2023-14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94호(1973.06.2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2호(2007.12.0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일괄 결정되고, 용산구고시 제2008-53호(2008.09.1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되고, 용산구고시 제2021-74호(2021.04.1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되고, 용산구고시 제2021-123호(2021.06.18.)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되고, 용산구 고시 제2022-196호(2022.12.29.)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59-3번지 일원 배문중·고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용 산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배문중·고등학교의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사업 관련 선진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경계 조정 및 건축범위(용적률) 결정(변경)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중고교	용산구 서계동 259-3번지 일원	11,759.4	감)234.4	11,525.0	서울특별시고시 제94호 (1973.06.20.)	배문중·고교

○ 건축범위 결정(변경)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0	40	140	160	6층	6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건축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교	○ 면 적 - 기정 : 11,759.4㎡ - 변경 : 11,525.0㎡(감:234.4㎡)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경계 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담장경계 및 지적경계 기준 - 학교시설내 존치건축물 제척
	○ 용적률 - 기정 : 140% - 변경 : 160%(증:20%)	○ 「2022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된 사업계획 반영 건축범위 결정(변경) - 2023~2027년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특수학급 의무설치, 급식실 및 체육관 개별 학교 계획에 따른 건축연면적 증가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지형도면고시(기정, 변경)도(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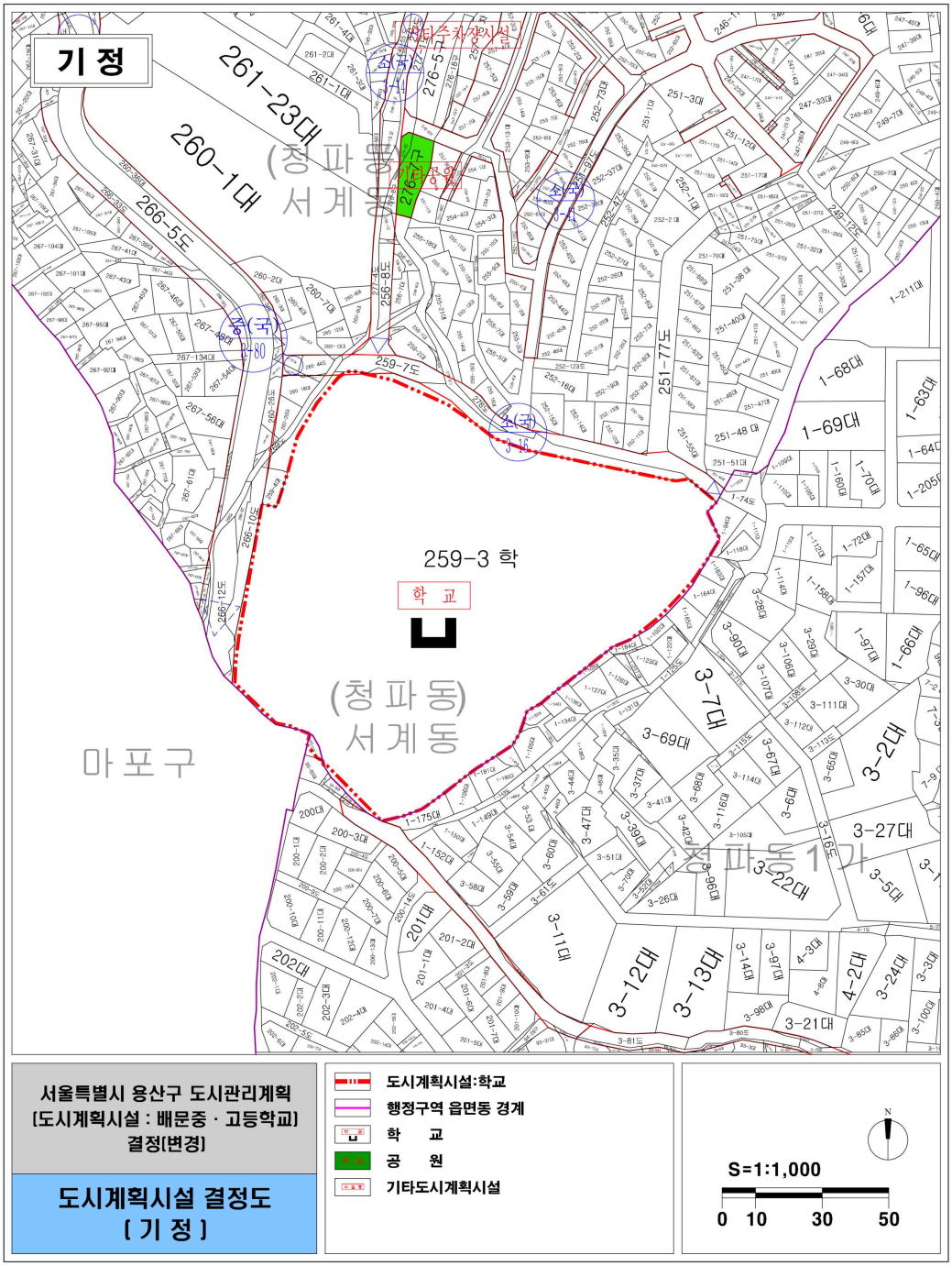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3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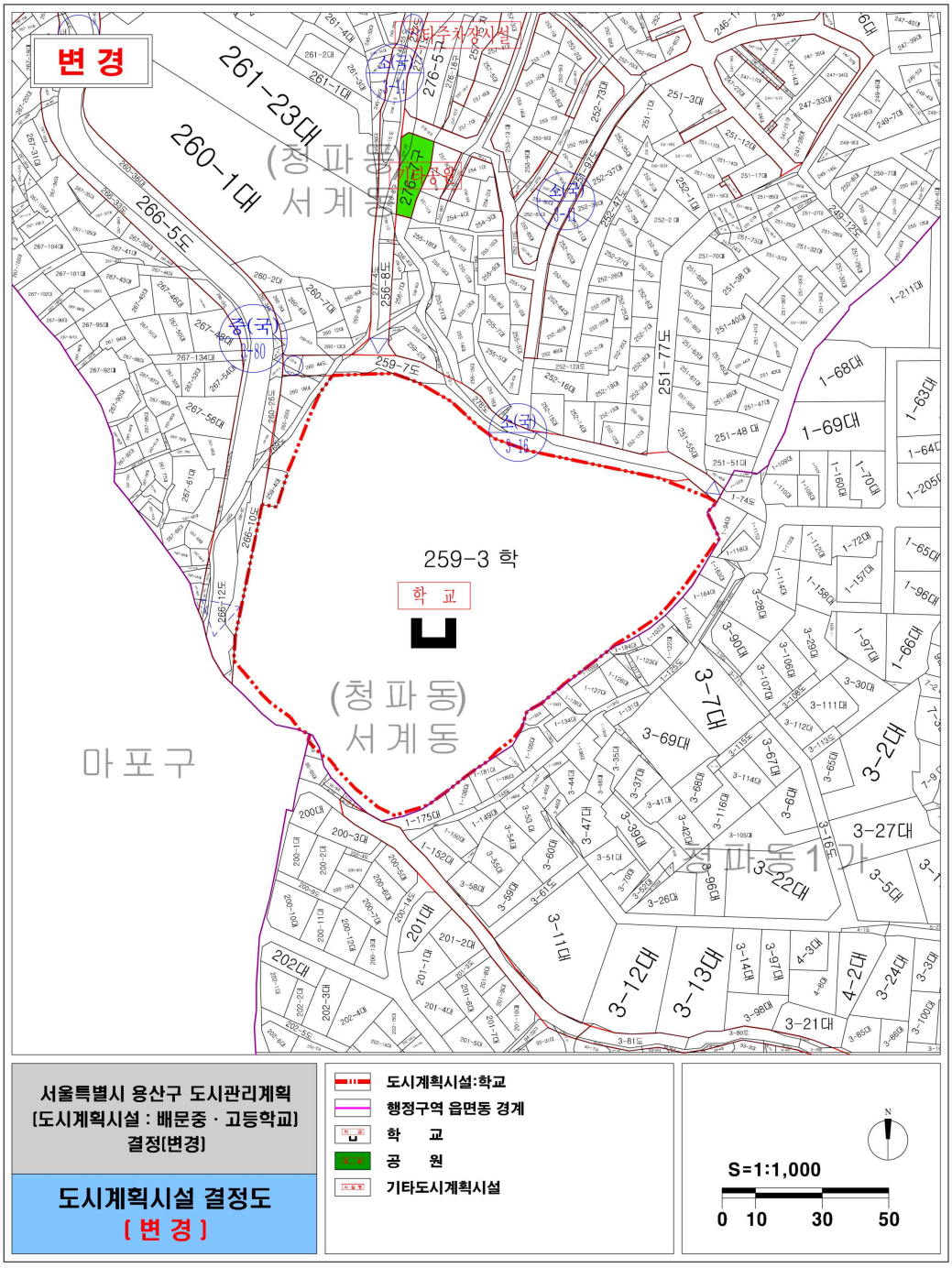
[붙임]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기정)도



[붙임]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도



◈ 서대문구고시 제2023-11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45-1 ~ 신촌동 1-37외 1개소와 북아현동 1-584 ~ 봉원동 산 3-1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9	국지도로	88	봉원동 45-1	신촌동 1-37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6	국지도로	164	신촌동 1-52	봉원동 41-6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12	국지도로	668	북아현동1-584	봉원동 산3-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3호 (1952.03.25.)	
변경	중로	3		12	국지도로	668	북아현동1-584	봉원동 산3-1	일반도로		선형변경 (도로폭 선형)

○ 결정(변경)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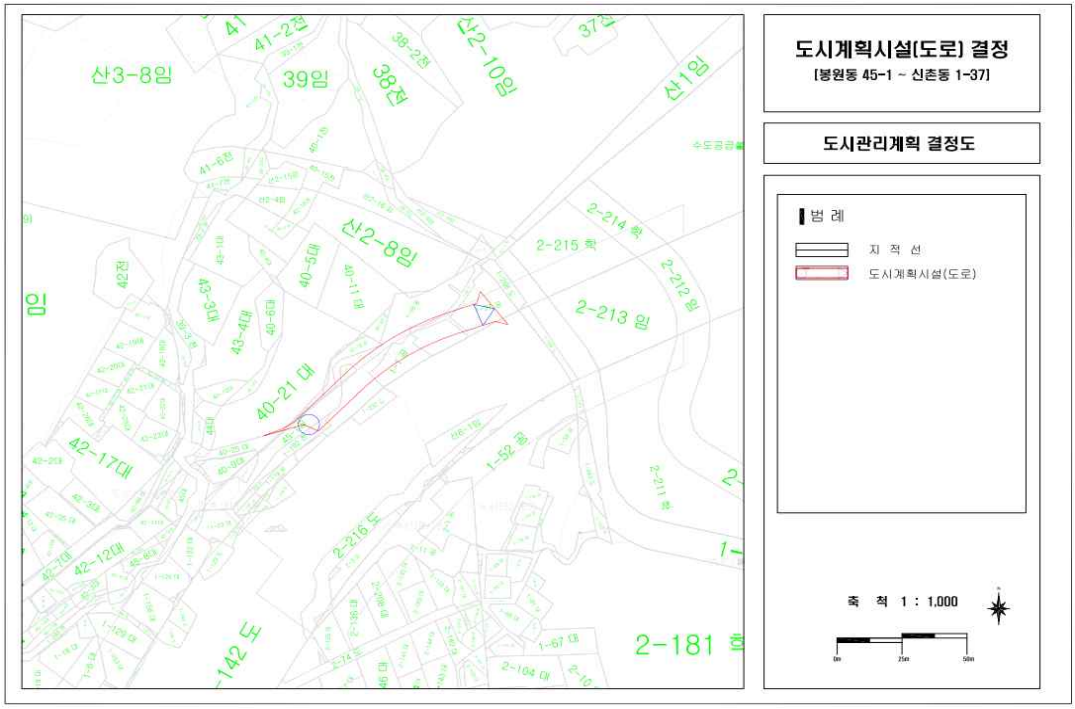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신설	소로2류, 소로3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인근 지역 도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결정
변경	중로3류	- 기존도로 선형개량 5%미만 변경	- 신설도로에 기존도로 접속을 위한 도로선형 개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결정(변경)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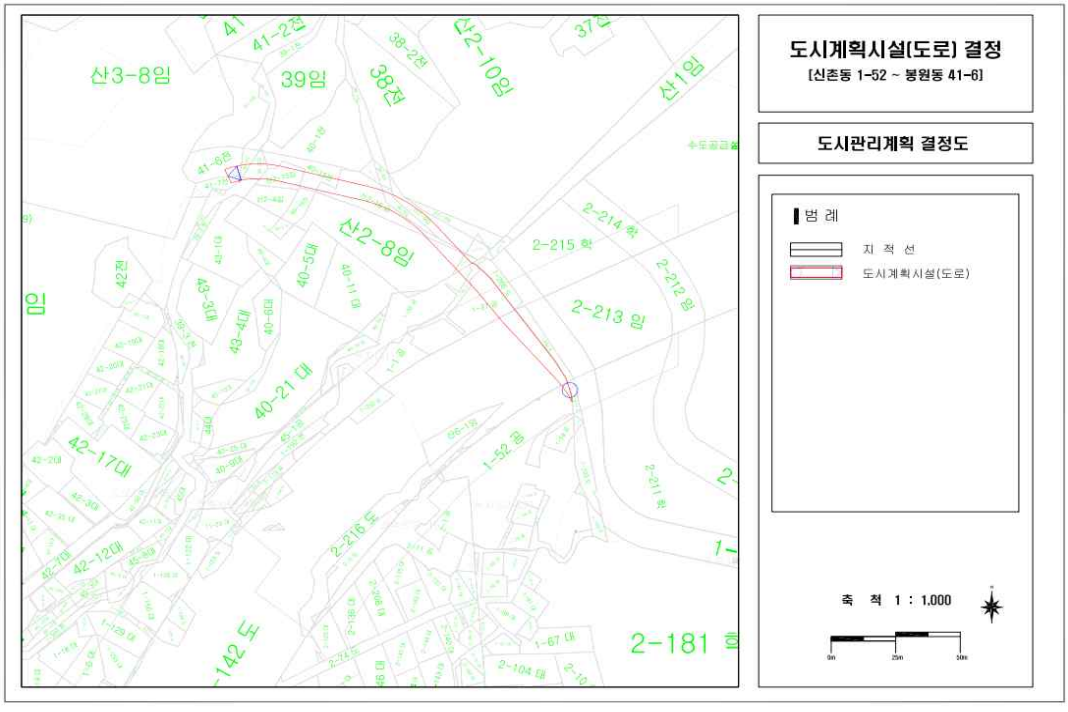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 서대문구 도시계획과(☎ 330-1560), 도로과(☎ 3140-802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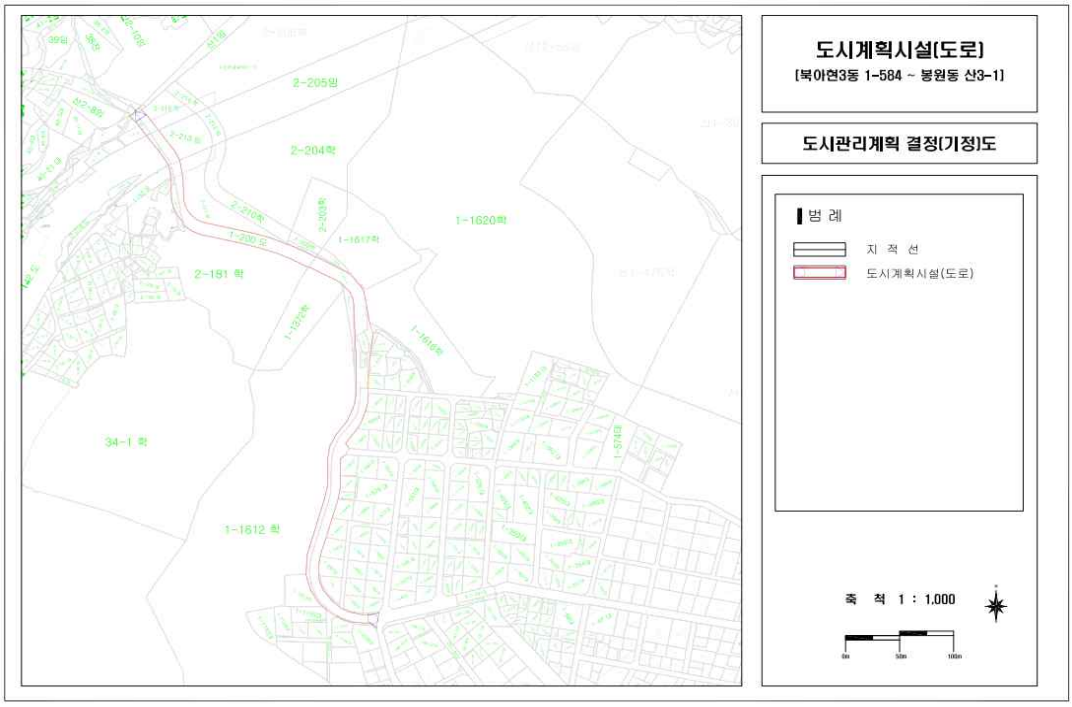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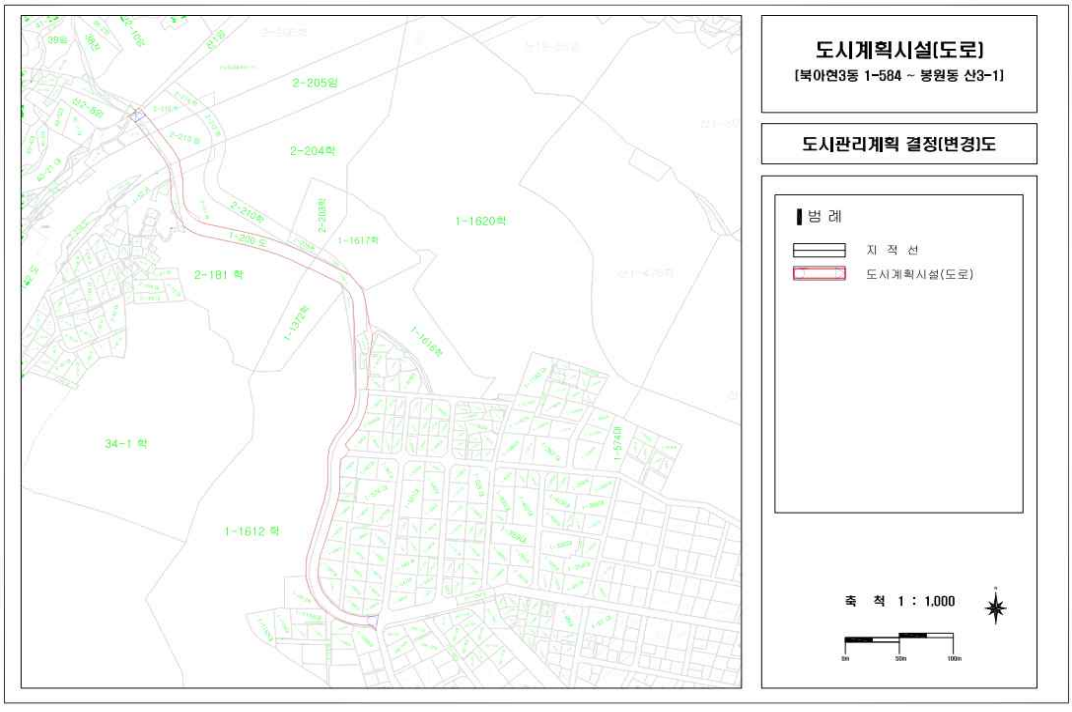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서초구고시 제2023-117호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64호(1978.03.29.)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실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실효	녹지	서초구 양재동 산69-1	324	감) 324	0	건설부고시 제64호 (1978.03.29.)	-

2. 변경(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3. 지형도면 : 붙임참조

– 기정



– 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강남구고시 제2023-165호

비관리청 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승인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등 의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강 남 구 청 장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사항

1. 하천공사의 명칭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1공구) 우선 시공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현대자동차(주) 외 2개사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3. 하천공사의 목적
   - 청담1교, 청담2교 1차로 확장(현재 4차로)
   - 교량 구조개선을 통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향상
4. 하천공사의 위치: 청담1교, 청담2교
5. 하천공사의 기간: 2023. 10. 1. ~ 2025. 10. 1.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별도 붙임
7. 관련도면 및 서류는 강남구청 치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치수과 하천관리팀(☎02-3423-6605)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하 천 조 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 적 (㎡)	하천명	점용목적		소 유 자		비고
					영구점용	일시점용	성 명	주 소	
1	185-2	천	23,398.0	탄천	340.0	60.0	국	건설부	2공구
2	186-2	천	2,628.0	탄천	387.0		국	건설부	2공구
3	186-1	천	25,989.0	탄천	1,269.0	2,123.0	국	건설부	2공구
4	185-3	도	21,733.0	탄천	1,676.0	73.0	국	건설부	2공구
5	186-3	천	110,437.0	탄천	1,749.0	2,343.0	국	건설부	2공구
6	186-5	천	54455	탄천		8,732	국	건설부	사무실
소계			238,640		5,421.0	13,331.0			

◈ 강남구고시 제2023-166호

비관리청 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승인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등 의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강 남 구 청 장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사항

1. 하천공사의 명칭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2공구) 우선 시공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현대자동차(주) 외 2개사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3. 하천공사의 목적
   - 봉은교 좌회전차로 확장(교차로 구간 교통개선)
   - 봉은교 중앙분리대 철거 및 포장공사 시행
4. 하천공사의 위치: 봉은교
5. 하천공사의 기간: 2023. 9. 21. ~ 2023. 10. 31.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별도 붙임
7. 관련도면 및 서류는 강남구청 치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치수과 하천관리팀(☎02-3423-6605)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하 천 조 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 적 (㎡)	하천명	점용목적		소 유 자		비고
					영구점용	일시점용	성 명	주 소	
1	186-6	천	56,275.0	탄천	3,340.8		국	건설부	
소계			56,275		3,340.8	0.0			

◈ 송파구고시 제2023-120호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승인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등 의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송 파 구 청 장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사항

1. 하천공사의 명칭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1공구 우선 시공분)

2. 하천공사의 기간 : 2023.10.01. ~ 2025.10.01. (24개월)

3. 하천공사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일대
   - 청담1,2교 확장 공사
   - 탄천나들목 연결램프 설치

4.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현대자동차 외 2개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 법인등록번호 : 110111-*******

5. 하천공사의 목적 : 국제교류복합지구 접근성 및 올림픽대로 선형 개선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별도붙임

7. 관련도면 및 서류는 송파구청 치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치수과 하천관리팀(☎02-2147-3364)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4. 편 입 하 천 조 서

하 천 조 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 적 (㎡)	하천명	점용목적		소 유 자		비고
					영구 점용	일시 점용	성 명	주 소	
1	247-4	천	14,903.0	탄천	2,265.0		국	환경부	2+3공구
2	247-8	천	5,741.0	탄천	1,060.0	2,267.0	국	환경부	2+3공구
3	247-7	도	2,427.0	탄천	366.0		국	환경부	3공구
소계			23,071		3,691.0	2,267.0			

하 천 조 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 적 (㎡)	하천명	점용목적		소 유 자		비고
					영구점용	일시점용	성 명	주 소	
1	1168-8	천	14,912.0	탄천	877.0	69.0	국	환경부	2공구
2	1168-4	천	10,266.0	탄천	66.0	7,357.0	국	건설부	2공구
3	1168-9	천	4,651.0	탄천	948.0	1,564.0	국	환경부	2공구
4	3	도	15,298.3	탄천	596.0	5,018.0	공	서울특별시	1+2+3공구
5	1168-1	천	4,699.0	탄천	427	3,564	국		2+3공구
6	1168-3	천	19,050.0	탄천		3,567	국		2공구
7	2	제	28,847.0	탄천	238	2,582	공		2+3공구
8	7	제	4,692.0	탄천	633	2,868	공	서울특별시	1+2+3공구
9	1	도	128,524.9	탄천		3,414	공	서울특별시	1공구
10	10	체	135,861.0	탄천		5,404	공	서울특별시	1+3공구
11	8	도	10,689	탄천		1,094	공	서울특별시	1공구
12	9	도	12,692	탄천		12,291	공	서울특별시	1+3공구
13	12	도	18,898	탄천		369	공	서울특별시	1+3공구
14	13	도	5,573	탄천		5,470	공	서울특별시	1+3공구
15	14	제	4,087	탄천		4,087	공	서울특별시	1공구
16	16	제	15,778	탄천		6,873	공	서울특별시	1+3공구
17	17	도	8,939	탄천		2,103	공	서울특별시	3공구
18	19-11	도	5,193	탄천		158	공	서울특별시	3공구
19	15	도	12,228	탄천		5,377	공	서울특별시	1공구
소계			460,878		3,785.0	73,229.0			

◈ 송파구고시 제2023-121호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승인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등 의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송 파 구 청 장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사항

1. 하천공사의 명칭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2공구 우선 시공분)

2. 하천공사의 기간 : 2023.09.21. ~ 2023.10.31.

3. 하천공사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일대
 - 봉은교 좌회전 차로 확장

4.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현대자동차 외 2개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 법인등록번호 : 110111-*******

5. 하천공사의 목적 : 봉은교 좌회전차로의 대기차로를 추가로 확보하여 봉은교에서 올림픽대로 방향의 차량통행을 원활히 함으로써 봉은교 교차로 상습정체를 완화하고 교통이용자의 불편 최소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별도붙임

7. 관련도면 및 서류는 송파구청 치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치수과 하천관리팀(☎02-2147-3364)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4. 편 입 하 천 조 서

하 천 조 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 적 (㎡)	하천명	점용목적		소 유 자		비고
					영구점용	일시점용	성 명	주 소	
1	1168-3	천	19,050.0	탄천	2182.7		국		
2	2	제	28,847.0	탄천	828.7		공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소계			47,897		3,011.4	0.0			

◈ 강동구고시 제2023-148호

고덕아르테온 기부채납 어린이공원 1호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시 고시 제375호(2009.9.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강동구 고시 제66호(2013.6.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된 강동구 상일동 520-3 고덕아르테온 기부채납 어린이공원 1호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덕아르테온 기부채납 어린이공원 1호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강 동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고덕아르테온 기부채납 어린이공원 1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 인근 아파트 및 초등학교와 연접하고 있어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원 이용도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재배치 등을 시행하고 현황에 맞게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520-3

다. 면　　적 : 4,964.6㎡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붙임파일 참조

마. 열람장소 :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882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덕아르테온 기부채납 어린이공원 1호 재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2023. 09.

강동구

■ 고덕아르테온 기부채납 어린이공원 1호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상일1동 520-3)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	(㎡)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기)	(㎡)	(㎡)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기)	
					(동)	(㎡)	(㎡)				(동)	(㎡)	(㎡)		
합 계			4,964.6	2,191.2				25	4,964.6	2,045.8				33	시설면적 감 145.4㎡ (증 8기)
공원시설	계		2,191.2	2,191.2				25	2,045.8	2,045.8				33	감 145.4㎡
	기반시설	소 계	1,198.9	1,198.9					1,292.5	1,292.5					증 93.6㎡
		도 로	718.5	718.5					899.7	899.7					증 181.2㎡
		광 장	480.4	480.4					392.8	392.8					감 87.6㎡
	조경시설													8	증 8기
	휴양시설		203.3	203.3				12	112.1	112.1				12	감 91.2㎡
	유희시설		789.0	789.0				8	597.8	597.8				8	감 191.2㎡
	운동시설							5	43.4	43.4				5	증 43.4㎡
녹지 및 기타			2,773.4						2,918.8						증 145.4㎡
・기 정 : 시설율 : 44.14% ・녹지율 : 55.86% ・건폐율 : 0.00%									・변 경 : 시설율 : 41.21% ・녹지율 : 58.79% ・건폐율 : 0.00%						

■ 고덕아르테온 기부채납 어린이공원 1호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계			상일1동 520-3	4,964.6	2,191.2	-	-	-	-	25		상일1동 520-3	4,964.6	2,045.8	-	-	-	-	33	시설면적 감 145.4㎡ (증 8기)
기반시설	소 계		"	1,198.9	1,198.9	-	-	-	-	-		"	1,292.5	1,292.5	-	-	-	-	-	증 93.6㎡
	도 로			718.5	718.5								899.7	899.7					-	증 181.2㎡
	광 장	소 계		480.4	480.4						소 계		392.8	392.8						감 87.6㎡
		가-1		380.1	380.1						가-1		308.4	308.4						감 71.7㎡
		가-2		100.3	100.3						가-2		84.4	84.4						감 15.9㎡
조경시설	소 계		"	-	-	-	-	-	-	-		"	-	-	-	-	-	-	8	증 8기
	앉음벽										⑨								1	증 1기
	수목보호대										⑩								7	증 7기

휴양시설	**소 계**		"	**203.3**	**203.3**	-	-	-	-	**12**		"	**112.1**	**112.1**	-	-	-	-	**12**	**감 91.2㎡**
	휴게소	소 계		203.3	203.3						소 계		112.1	112.1						감 91.2㎡
		나-1		130.9	130.9						나-1		90.8	90.8						감 40.1㎡
		나-2		72.4	72.4						나-2		21.3	21.3						감 51.1㎡
	파고라	①								3	③								3	
	등의자	②								9	④								9	
유희시설	**소 계**		"	**789.0**	**789.0**	-	-	-	-	**8**		"	**597.8**	**597.8**	-	-	-	-	**8**	**감 191.2㎡**
	놀이공간	다		789.0	789.0						다		597.8	597.8						감 191.2㎡
	조합 놀이대	③								1	⑤								1	
	흔들놀이	④								3	⑥								3	
	시 소	⑤								2	⑦								2	
	통과놀이	⑥								1	⑧								1	
	그 네	⑦								1	⑨								1	
운동시설	**소 계**		"	-	-	-	-	-	-	**5**		"	**43.4**	**43.4**	-	-	-	-	**5**	**증 43.4㎡**
	체력 단련장										라		43.4	43.4						증 43.4㎡
	체력단련 시설	⑧								5	⑩								5	
녹지 및 기타	**소 계**			**2,773.4**	-	-	-	-	-	-			**2,918.8**	-	-	-	-	-	-	**증 145.4㎡**
	녹 지			2,773.4									2,918.8							증 145.4㎡

■ 고덕아르테온 기부채납 어린이공원 1호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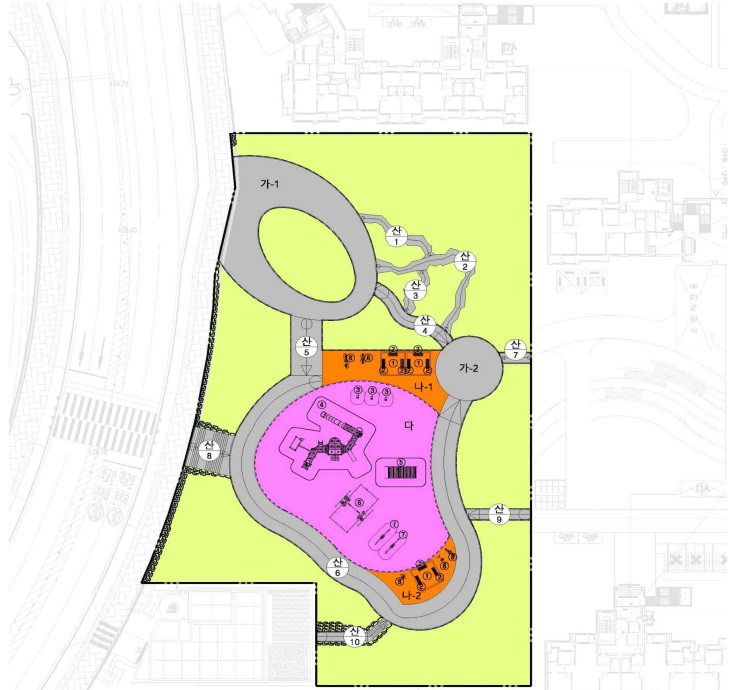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m)	(m)	(㎡)				
기 정		합 계		-	173.4	718.5	-	-	-	증 181.2㎡
변 경				-	278.4	899.7	-	-	-	
폐지	산책로		1	1.4	14.7	20.7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2	
폐지	산책로		2	1.5	29.5	44.5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4	
폐지	산책로		3	1.5	9.2	13.4	산책로	산책로 2	산책로 4	
기정	산책로		4	2.3	15.9	36.7	연결로	광장 가-1	광장 가-2	
기정	산책로		5	5.3	9.9	52.9	연결로	광장 가-1	산책로 6	
변경	산책로		6	4.0	80.8	325.4	연결로	산책로 11	산책로 11	감 122.7㎡

변경	산책로		7	2.1	4.6	9.8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2	감 0.2㎡
기정	산책로		8	7.1	7.0	50.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6	
변경	산책로		9	3.4	10.5	36.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1	증 14.8㎡
기정	산책로		10	1.6	12.9	21.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6	
신설	산책로		11	4.6	52.1	237.7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2	
신설	산책로		12	1.4	55.6	76.3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2	
신설	산책로		13	1.9	29.1	53.9	연결로	광장 가-1	광장 가-2	

공원조성계획도(당초)

고덕아르테온기부채납어린이공원1호



■ 시설물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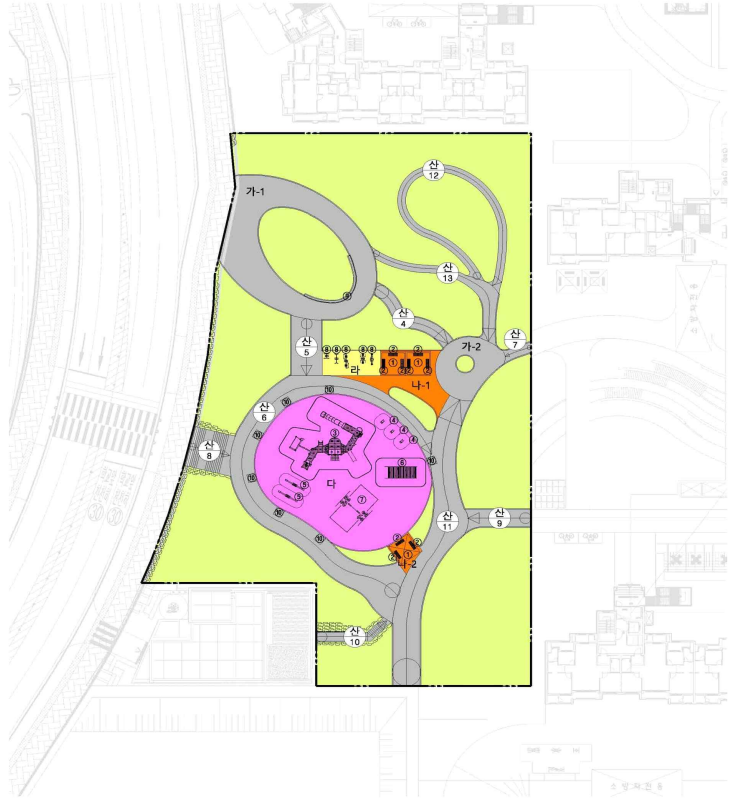
구 분	기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축물면적(m2) 바닥면적	건축물면적(m2) 연면적	공작물	비고
총 계			4,964.6	2,191.2	–	–	25	
시설면적 계			2,191.2	2,191.2	–	–	25	
도로 및 광장		소 계	1,198.9	1,198.9	–	–	–	
	㉮	도 로	718.5	718.5	–	–	–	
	소 계	광 장	480.4	480.4	–	–	–	
	가-1		380.1	380.1	–	–	–	
	가-2		100.3	100.3	–	–	–	
휴양시설		소 계	203.3	203.3	–	–	12	
	소 계	휴게소	203.3	203.3	–	–	–	
	나-1		130.9	130.9	–	–	–	
	나-2		72.4	72.4	–	–	–	
	①	파고라	–	–	–	–	3	
	②	음의자	–	–	–	–	9	
유희시설		소 계	789.0	789.0	–	–	8	
	다	놀이광간	789.0	789.0	–	–	–	
	③	조합놀이대	–	–	–	–	1	
	④	흔들놀이	–	–	–	–	3	
	⑤	시 소	–	–	–	–	2	
	⑥	뜀과놀이	–	–	–	–	1	
	⑦	그 네	–	–	–	–	1	
운동시설		소 계	–	–	–	–	5	
	⑧	체력단련시설	–	–	–	–	5	
녹지면적 계			2,773.4	–	–	–	–	
녹지 및 기타		소 계	2,773.4	–	–	–	–	시설율 44.14%
		녹 지	2,773.4	–	–	–	–	

0 5 10 30 60m

SCALE : 1/600(A3)

공원조성계획도(변경)

고덕아르테온기부채납어린이공원1호



■ 시설물 총괄표

구 분	기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축물면적(m2)		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4,964.6	2,045.8	-	-	33	
시설면적 계			2,045.8	2,045.8	-	-	33	
도로 및 광장		소 계	1,292.5	1,292.5	-	-	-	
	주	도 로	899.7	899.7	-	-	-	
	소 계	광 장	392.8	392.8	-	-	-	
	가-1		308.4	308.4	-	-	-	
	가-2		84.4	84.4	-	-	-	
조경시설		소 계	-	-	-	-	8	
	⑧	담쟁벽	-	-	-	-	1	
	⑩	수목보호대	-	-	-	-	7	
휴양시설		소 계	112.1	112.1	-	-	12	
	소 계		112.1	112.1	-	-	-	
	나-1	휴게소	90.8	90.8	-	-	-	
	나-2		21.3	21.3	-	-	-	
	①	파고라	-	-	-	-	3	
	②	등의자	-	-	-	-	9	
유희시설		소 계	597.6	597.6	-	-	8	
	다	놀이공간	597.6	597.6	-	-	-	
	③	조합놀이대	-	-	-	-	1	
	④	흔들놀이	-	-	-	-	3	
	⑤	시 소	-	-	-	-	2	
	⑥	흙과놀이	-	-	-	-	1	
	⑦	그 네	-	-	-	-	1	
운동시설		소 계	43.4	43.4	-	-	5	
	라	체력단련장	43.4	43.4	-	-	-	
	⑨	체력단련시설	-	-	-	-	5	
녹지면적 계			2,918.8	-	-	-	-	
녹지 및 기타		소 계	2,918.8	-	-	-	-	시설율 41.21%
		녹 지	2,918.8	-	-	-	-	

0 5 10 30 60m

SCALE : 1/600(A3)

구 공 고

◈ 용산구공고 제2023-1111호

도시계획시설(공원/꿈나무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구 도시계획법』 부칙(제2435호,1972.12.30.) 및 동법 시행령 부칙(1973.3.21.) 공원결정(의제) 및 서울시 고시 제2006-98호(2006.3.23.), 서울시 고시 제2023-392호(2023.9.7.)로 변경 결정되고, 용산구 고시-제164호(2019.10.31.)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꿈나무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기존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고자 공원조성계획(변경)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용 산 구 청 장

1. 공원의 위치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2. 공원의 종류 및 명칭
   - 공원의 종류 : 어린이공원
   - 공원의 명칭 : 꿈나무
3. 공원면적 : 1,352.4㎡
4.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 및 도면 : 열람장소(공원녹지과) 비치
5.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6. 열람기간 :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 이상
7. 열람장소 :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02-2199-7605)
8. 본 조성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02-2199-76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구 분	변 경 전(소공원)						변 경 후(어린이공원)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412.60	274.40	1동	59.40	137.47	23	1,352.40	769.55	1동	59.40	137.47	38	부지면적 감)60.20㎡
기반시설 소 계	135.00	135.00					347.46	347.46					증)212.46㎡
기반시설 도 로	(75.00)	(75.00)					(145.37)	(145.37)					증)70.37㎡
기반시설 광 장	(60.00)	(60.00)					(202.09)	(202.09)					증)142.09㎡
조경시설						1							
휴양시설						12	60.37	60.37				15	증)60.37㎡
유희시설	80.00	80.00				1	267.63	267.63				2	증)187.63㎡
운동시설							32.49	32.49				3	증)32.49㎡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59.40	59.40	1동	59.40	137.47	9	61.60	61.60	1동	59.40	137.47	18	증)2.20㎡
녹지 및 기타	1,138.20						582.85						감)555.35㎡
시 설 률 (법정60%)	(274.40㎡ / 1,412.60㎡) x 100 = 19.43%						(769.55㎡ / 1,352.40㎡) x 100 = 56.90%						증)37.47%
건폐율 (법정 5%)	(59.4㎡ / 1,412.60㎡) x 100 = 4.21%						(59.4㎡ / 1,352.40㎡) x 100 = 4.39%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계				1,412.60	274.40		1동	59.40	137.47	23			1,352.40	769.55		1동	59.40	137.47	38	부지면적 감:60.20㎡
기반시설	소계			135.00	135.00								347.46	347.46						증:212.46㎡
	도로			75.00	75.00								145.37	145.37						증:70.37㎡
	광장	가	이촌동 301-86대	60.00	60.00						가		202.09	202.09						증:142.09㎡
											가-1	이촌동 301-86대	(65.93)	(65.93)						
											가-2	이촌동 301-86대	(136.16)	(136.16)						
조경시설	소계			-	-					1			-	-						
	플랜터	①	이촌동 301-86대							(1)										
휴양시설	소계									12			60.37	60.37					15	증:60.37㎡
	파고라	②								(1)	①	이촌동 301-86대	(49.37)	(49.37)					(2)	부호변경 (②→①)
	앉음벽										②	이촌동 301-86대	(11.00)	(11.00)					(9)	신설
	등의자	③	이촌동 301-86대							(11)	③	이촌동 301-86대							(4)	
유희시	소계			80.00	80.00					1			267.63	267.63					2	증:187.63㎡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설	어린이놀이터	나		80.00	80.00						나	이촌동 301-86대	267.63	267.63						잔:187.63㎡
	조합놀이대	④								(1)	④	이촌동 301-86대							(1)	
	그네										⑤	이촌동 301-86대							(1)	신설
운동시설	소계												32.49	32.49					3	잔: 32.49㎡
	운동공간										다	이촌동 301-86대	32.49	32.49						신설
	체력단련시설										⑥	이촌동 301-86대							(3)	신설
관리시설	소계			59.40	59.40			59.40	137.47	9			61.60	61.60		1동	59.40	137.47	18	잔: 2.20㎡
	음수대										⑦	이촌동 301-86대	(2.20)	(2.20)					(1)	
	관리사무소	1	이촌동 301-86대	59.40	59.40			59.40	137.47		⑧	이촌동 301-86대	(59.40)	(59.40)			59.40	137.47		부호변경(1→⑧)
	공원등	⑪	이촌동 301-86대							(7)	⑨	이촌동 301-86대							(7)	
	안내판	⑫	이촌동 301-86대							(2)	⑩	이촌동 301-86대							(3)	
	배수시설										⑪	이촌동 301-86대							(6)	신설
	CCTV										⑫	이촌동 301-86대							(1)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녹지 및 기타	소계			1,138.20									582.85							감: 555.35㎡
	녹지		이촌동 301-86대	1,138.20								이촌동 301-86대	582.85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총괄	합 계			54.5	75.00				
변경					68.50	145.37				
당초	산책로	소 계			54.5	75.00				
변경	산책로	소 계			68.50	145.37				
당초	산책로		1	1.5	19.0	28.50	산책로	외부도로	산책로 2	
변경	〃		1	2.0	7.0	20.22	진입동선	외부도로	산책로 3	
당초	〃		2	1.5	6.0	9.00	산책로	외부도로	산책로 1	
변경	〃		2	1.5	6.5	13.52	진입동선	외부도로	산책로 3	
당초	〃		3	1.5	25.0	37.50	산책로	광장 가	산책로 1	
변경	〃		3	1.8	55.0	111.63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2	

◈ 용산구공고 제2023-111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이촌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구 도시계획법』 부칙(제2435호,1972.12.30.) 및 동법 시행령 부칙(1973.3.21.) 공원결정(의제) 및 서울시 고시 제2006-98호(2006.3.23.), 서울시 고시 제2023-392호(2023.9.7.)로 변경 결정되고, 용산구 고시-제56호(2019.5.2.)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이촌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기존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고자 공원조성계획(변경)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용 산 구 청 장

1. 공원의 위치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60번지
2. 공원의 종류 및 명칭
   - 공원의 종류 : 어린이공원
   - 공원의 명칭 : 이촌
3. 공원면적 : 1,736.9㎡
4.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 및 도면 : 열람장소(공원녹지과) 비치
5.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6. 열람기간 :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 이상
7. 열람장소 :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02-2199-7605)
8. 본 조성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02-2199-76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촌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60 일대)

구 분		변 경 전(소공원)						변 경 후(어린이공원)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736.90	331.00				27	1,736.90	942.26				36	시설면적 증)611.26㎡
기반시설	소 계	56.00	56.00					389.28	389.28					증)333.28㎡
	도 로	56.00	56.00					(237.78)	(237.78)					증)181.78㎡
	광 장							(151.50)	(151.50)					증)151.50㎡
조경시설		62.00	62.00				2							감)62.00㎡
휴양시설		4.32	4.32				4	54.96	54.96				9	증)50.64㎡
유희시설		120.00	120.00				1	345.30	345.30				5	증)225.30㎡
운동시설		51.50	51.50				7	151.72	151.72				3	증)100.22㎡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41.18	41.18				13	1.00	1.00				19	감)40.18㎡
녹지 및 기타		1,401.90						794.64						감)607.26㎡
시 설 률 (법정60%)		(331.00㎡ / 1,736.90㎡) x 100 = 19.06%						(942.26㎡ / 1,736.90㎡) x 100 = 54.25%						증)35.19%
건폐율 (법정 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계				1,736.90	331.00								1,736.90	942.26					36	시설면적 증:611.26㎡
기반시설	소계			56.00	56.00								389.28	389.28						증:333.28㎡
	도로	가	공원입구	56.00	56.00								237.78	237.78						증:181.78㎡
	광장										가	2개소	151.50	151.50						증:151.50㎡
											가-1		(60.87)	(60.87)						신설
											가-2		(90.63)	(90.63)						신설
조경시설	소계			62.00	58.00					2										감:62.00㎡
	파고라	①	부지서측	(32.00)	(32.00)					(1)										
	육각정자	②	공원출입구	(30.00)	(26.00)					(1)										
휴양시설	소계			4.32	4.32					4			54.96	54.96					9	증:50.64㎡
	등의자	③	부지전체	4.32	4.32					(4)										
	조형파고라										①	부지중앙	25.20	25.20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사각파고라										②	부지서측	13.47	13.47					(1)	
	앉음벽										③	부지서측	16.29	16.29					(4)	
	야외테이블										④								(3)	
유희시설	소계			120.00	120.00					1			345.30	345.30					5	증:225.30㎡
	어린이놀이터										나	부지 북측	345.30	345.30						신설
	조합놀이대	⑨	공원부지 중심부	120.00	120.00					(1)	⑤								(1)	부호변경(⑨→⑤)
	그네										⑥								(1)	신설
	시소										⑦								(1)	신설
	흔들놀이										⑧								(2)	신설
운동시설	소계			51.50	51.50					7			151.72	151.72					3	증:100.22㎡
	야외운동시설(평행봉)	④-1	부지동측	(2.52)	(2.52)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야외운동시설(오금펴기)	④-2	부지남측	(1.39)	(1.39)					(1)										
	야외운동시설(하늘걷기)	④-3	〃	(2.38)	(2.38)					(1)										
	야외운동시설(마라톤운동)	④-4	〃	(1.68)	(1.68)					(1)										
	야외운동시설(운몸역기 내리기)	④-5	〃	(1.50)	(1.50)					(1)										
	야외운동시설(옆파도타기)	④-6	〃	(1.13)	(1.13)					(1)										
	야외운동시설(다리뻗치기)	④-7	〃	(0.9)	(0.9)					(1)										
	운동공간	나	〃	40.0	40.0						다	부지남측	151.72	151.72						부호변경(나→다)
	체력단련시설										⑨								(3)	신설
관리시설	소계			41.18	41.18					13			1.0	1.0					19	감:40.18㎡
	휀스	⑩	공원경계부	9.25	9.25					(4)										
	공원등	⑪	부지전체	0.64	0.64					(4)	⑩	부지전체							(6)	부호변경(⑪→⑩)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관리용수전	⑫	퍼걸러 우측	1.82	1.82					(1)										
	공원안내판	⑬	공원입구	0.31	0.31					(3)	⑪	공원입구							(4)	부호변경 (⑬→⑪)
	배수시설	⑭	부지전체	29.16	29.16					(1)	⑫	부지전체							(7)	부호변경 (⑭→⑫)
	음수대										⑬		1.0	1.0					(1)	신설
	CCTV										⑭	공원입구							(1)	신설
녹지 및 기타	소계			1,401.90									794.64							감:607.26㎡
	녹지			1,401.90									794.64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총괄	합 계			28.0	56.00				
변경					125.0	237.78				증:181.78㎡
당초	소로	소 계			28.0	56.00				
변경	소로	소 계			125.0	237.78				증:181.78㎡
당초	소로	3	1	2.0	6.0	12.00	산책로	서측입구 (안내판)	놀이공간 (조합놀이)	
변경	〃	〃	1	2.5	4.0	10.48	진입동선	동측입구	산책로 4	감:1.52㎡
당초	〃	〃	2	2.0	16.0	32.00	산책로	서측입구 종점부	서측출구 시작부	
변경	〃	〃	2	2.0	14.0	27.85	진입동선	서측입구	산책로 4	감:4.15㎡
당초	〃	〃	3	2.0	6.0	12.0	산책로	서측출구 (안내판)	놀이공간 (조합놀이)	
변경	〃	〃	3	3.0	6.0	17.78	진입동선	서측입구	산책로 4	증:5.78㎡
신규	〃	〃	4	1.8	101.0	181.67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 1	증:181.67㎡

◈ 동대문구공고 제2023-1120호

새샘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58호(2006.02.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14-102호(2014.10.13.)로 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새샘근린공원에 대하여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4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새샘근린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004-7일대
3. 면　　적 : 8,910.10㎡
4. 주요변경(안) 내용 : 공원내 실내놀이터 조성 등
   ㅇ시설면적: 3,562.02㎡→3,231.51㎡
   ㅇ주요시설: 바닥분수, 관찰데크, 실내놀이터 등
5.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02-2127-4775)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동대문구 답십리동 1004-7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8,910.10	3,562.02	-	-	-	142	8,910.10	3,231.51	1	283.71	283.71	97	시설면적 감 330.51㎡ (감 45기)
기반시설	소 계	2,194.37	2,194.37	-	-	-	-	1,821.11	1,821.11	-	-	-	-	감 373.26㎡
	도 로	732.97	732.97	-	-	-	-	749.79	749.79	-	-	-	-	증 16.82㎡
	광 장	1,461.40	1,461.40	-	-	-	-	1,071.32	1,071.32	-	-	-	-	감 390.08㎡
조경시설		333.99	333.99	-	-	-	109	360.69	360.69	-	-	-	74	증 26.70㎡ (감 35기)
휴양시설		485.02	485.02	-	-	-	26	179.31	179.31	-	-	-	15	감 305.71㎡ (감 11기)
유희시설		367.26	367.26	-	-	-	3	689.02	689.02	1	283.71	283.71	3	증 321.76㎡
운동시설		181.38	181.38	-	-	-	4	181.38	181.38	-	-	-	5	(증 1기)
녹지 및 기타		5,348.08	-	-	-	-	-	5,678.59	-	-	-	-	-	증 330.51㎡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8,910.10	3,562.02					142			8,910.10	3,231.51		1	283.71	283.71	97	시설면적 감소 330.51㎡ (감 45기)
기반시설	소 계			2,194.37	2,194.37								1,821.11	1,821.11						감 373.26㎡
	도 로	산책로	전지역	732.97	732.97						산책로	전지역	749.79	749.79						증 16.82㎡
		산-1		(339.42)	(339.42)						산-1		(339.42)	(339.42)						
		산-2		(226.89)	(226.89)						산-2		(243.71)	(243.71)						증 16.82㎡
		산-3		(66.20)	(66.20)						산-3		(66.20)	(66.20)						
		산-4		(63.44)	(63.44)						산-4		(63.44)	(63.44)						
		산-5		(11.84)	(11.84)						산-5		(11.84)	(11.84)						
		산-6		(25.18)	(25.18)						산-6		(25.18)	(25.18)						
	광 장	가	전지역	1,461.40	1,461.40						가	전지역	1,071.32	1,071.32						감 390.08㎡
		가-1		(325.62)	(325.62)						가-1		(174.71)	(174.71)						감 150.91㎡
		가-2		(796.23)	(796.23)						가-2		(689.03)	(689.03)						감 107.2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가-3		(245.61)	(245.61)						가-3		(207.58)	(207.58)						감 38.03㎡
		가-4		(93.94)	(93.94)															감 93.94㎡
조경시설	소 계			333.99	333.99					109			360.69	360.69					74	증 26.70㎡ (감 35기)
	연못	나		272.11	272.11						나		238.07	238.07						감 34.04㎡
	장식가벽	①-1		8.59	8.59															감 8.59㎡
		①-2		4.50	4.50															감 4.50㎡
											①-3		31.28	31.28						증 31.28㎡
											①-4		6.87	6.87						증 6.87㎡
											①-5		9.28	9.28						증 9.28㎡
											①-6		4.99	4.99						증 4.99㎡
											①-7		9.12	9.12						증 9.12㎡
조경시설	관찰데크	②		48.79	48.79					(1)	②		56.18	56.18					(1)	증 7.39㎡
	바닥분수	③								(1)	③								(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명열주	④								(7)	④								(10)	(증 3기)
	디딤돌	⑤								(100)	⑤								(61)	(감 39기)
	원형 플랜터										⑱		4.90	4.90					(1)	증 4.90㎡ (증 1기)
휴양시설	소 계			485.02	485.02					26			179.31	179.31					15	증 205.90㎡ (감 11기)
	휴게소	다	전지역	407.73	407.73						다	전지역	152.67	152.67						감 255.06㎡
		다-1		(176.91)	(176.91)															감 176.91㎡
		다-2		(61.54)	(61.54)															감 61.54㎡
		다-3		(57.83)	(57.83)						다-3		(57.83)	(57.83)						
		다-4		(58.60)	(58.60)						다-4		(58.60)	(58.60)						
		다-5		(52.85)	(52.85)															감 52.85㎡
											다-6		(36.24)	(36.24)						증 36.24㎡
	파고라	⑥	전지역							(3)										(감 3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평의자	⑦	파고라 하부							(9)										(감 9기)
	등의자	⑧	전지역							(14)	⑧	전지역							(15)	(증 1기)
	평상 없음	⑨	전지역	77.29	77.29						⑨	전지역	26.64	26.64						감 50.65㎡
		⑨-1		(10.51)	(10.51)															감 10.51㎡
		⑨-2		(8.65)	(8.65)															감 8.65㎡
		⑨-3		(8.27)	(8.27)															감 8.27㎡
		⑨-4		(11.09)	(11.09)															감 11.09㎡
		⑨-5		(5.00)	(5.00)						⑨-5		(10.51)	(10.51)						증 5.51㎡
		⑨-6		(5.11)	(5.11)						⑨-6		(10.69)	(10.69)						증 5.58㎡
휴양시설	평상 없음	⑨-7		(6.68)	(6.68)															감 6.68㎡
		⑨-8		(13.36)	(13.36)															감 1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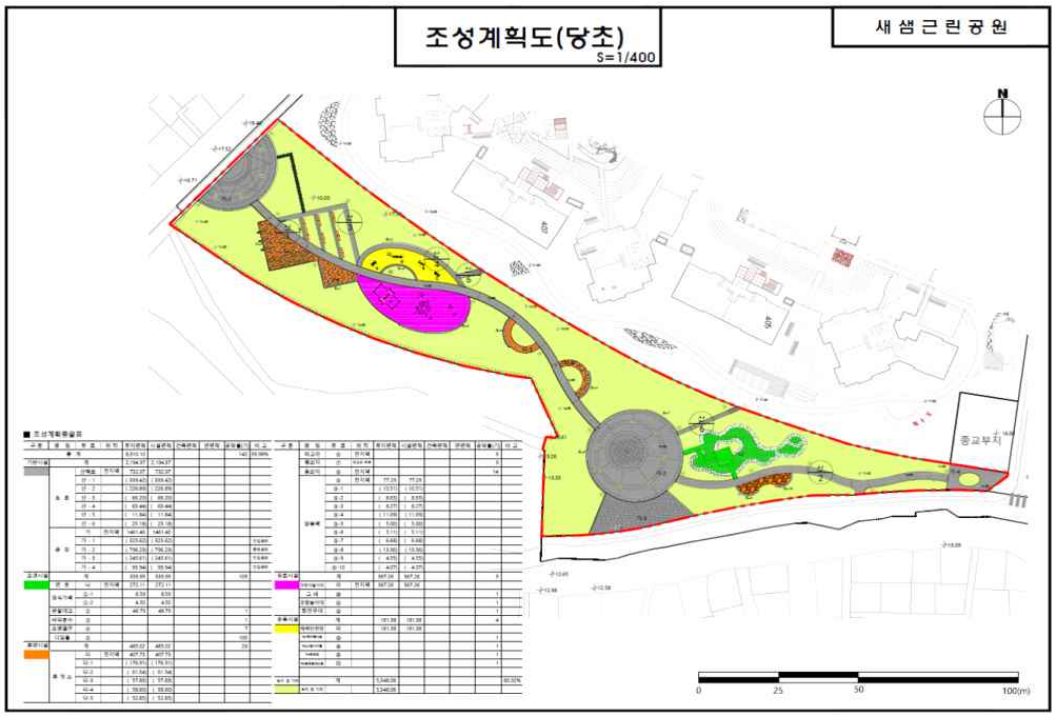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⑨-9		(4.55)	(4.55)															감 4.55㎡
		⑨-10		(4.07)	(4.07)															감 4.07㎡
											⑨-11		(5.44)	(5.44)						증 5.44㎡
야외시설	소 계			367.26	367.26					3			689.02	689.02		1	283.71	283.71	3	증 321.76㎡
	어린이 놀이터	라	전지역	367.26	367.26						라	전지역	367.26	367.26						
	그네	⑩								(1)	⑩								(1)	
	조합 놀이대	⑪								(1)	⑪								(1)	
	회전무대	⑫								(1)	⑫								(1)	
	실내 놀이터										바		321.76	321.76		1	283.71	283.71		증 321.76㎡
안내시설	소 계			181.38	181.38					4			181.38	181.38					5	(증 1기)
	체력 단련장	마	전지역	181.38	181.38						마	전지역	181.38	181.38						
	TM체어 웨이트	⑬								(1)	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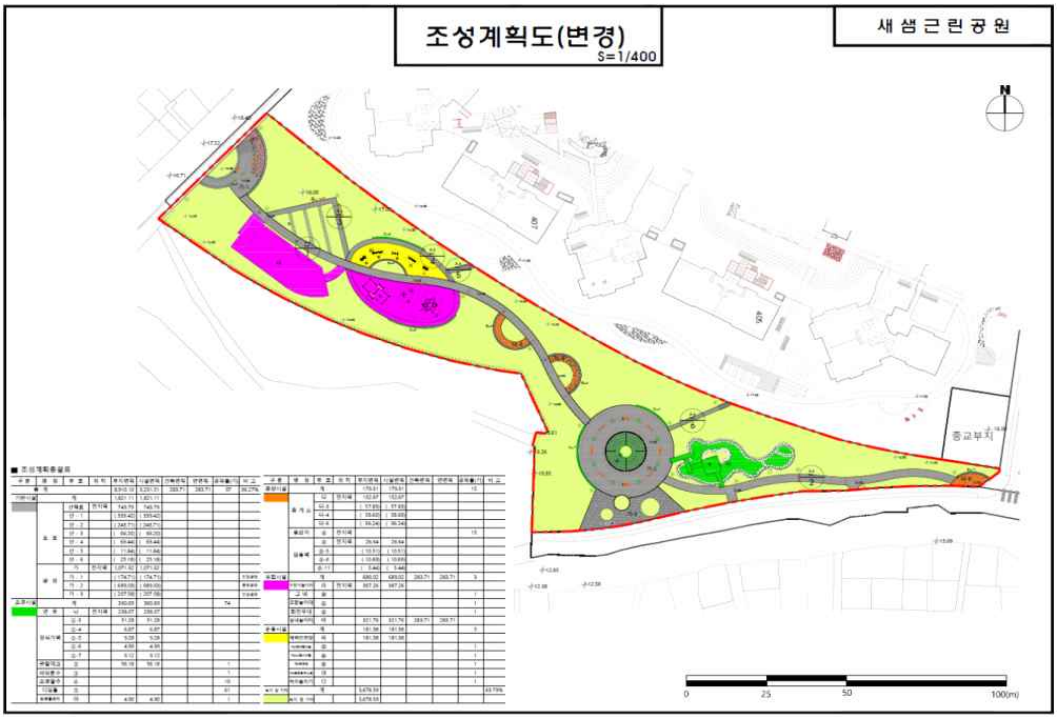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TM스텝 사이클	⑭								(1)	⑭								(1)	
	TM 워밍암	⑮								(1)	⑮								(1)	
	TM트윈 트위스트	⑯								(1)	⑯								(1)	
	허리 돌리기										⑰								(1)	(증 1기)
녹지 및 기타	소 계			5,348.08									5,678.59							증 330.51㎡
	녹지			5,348.08									5,678.59							증 330.51㎡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32.7	732.97				
변경					338.6	749.79				
당초	산책로	소 계			332.7	732.97				
변경					338.6	749.79				
당초		–	1	2.5	137.0	339.42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2	
당초		–	2	2.5	86.5	226.89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4	
변경		–	2	2.5	92.4	243.71	산책로	광장 가-2	휴게소 다-6	
당초		–	3	1.5	39.7	66.20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4	
당초		–	4	1.5	40.4	63.44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1	
당초		–	5	1.5	7.9	11.84	산책로	산책로 4	공원경계	
당초		–	6	1.2	21.2	25.18	산책로	광장 가-2	공원경계	


조성계획도(당초)
S=1/400
새샘근린공원
N
종교부지
0
25
50
100(m)


조성계획도(변경)
S=1/400
새샘근린공원
N
종교부지
0
25
50
100(m)

◈ 마포구공고 제2023-1363호

마포구 염리동 168-9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포구 염리동 168-9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9월 14일
마 포 구 청 장

Ⅰ.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57)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염리동 168-9	-	증) 8,925.9	8,925.9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신설	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염리동 168-9	8,925.9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925.9	-	8,925.9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8,925.9	감) 8,925.9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8,925.9	8,925.9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위 치		면 적(㎡)	용적률	결정 사유
		기 정	변 경			
-	마포구 염리동 168-9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8,925.9	800%	•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하고 지역 활성화 도모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함

나. 용도지구: 해당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해당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신설)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신 설	1	마포구 염리동 168-9	8,925.9	-

■ 가구 및 획지 결정 사유서

구 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결정사유
신설	1	획지 신설: 8,925.9㎡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획지계획 수립 • 단일 소유 필지인 대상지 전체를 단일 획지로 지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신설)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1) 불허용도

구 분	도면번호	불허용도	비 고
신 설	불허용도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2) 지정용도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1층부 지정용도		비 고
신 설	지정용도 (a)	1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 가로 활성화용도 도입
		2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주1) 지정용도는 해당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확보
주2) 기부채납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제1항 준용

2)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용도지역		계획내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기준(허용)	상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250% 이하	800%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3-2-1. 준용

3)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34.0% 이상	• 부지면적의 34.4% • 세부내용 – 공공임대산업시설 15.3% – 공공임대상가 7.8% – 지역필요시설 11.3%	기준 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8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 용적률 10% 이상	• 주거 : 비주거 = 0% : 100%		
		• 전체 연면적 20% 이상	• 주거 : 비주거 = 0% : 100%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85㎡이하	• 전체 비주거시설로 해당없음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등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및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 전체 비주거시설로 해당없음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2023.08.04.기준)
주2) 향후, 건축설계 결과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내에서 계획내용의 면적 및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단, 비주거 비율은 지상 용적률의 20% 이상,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을 준수하여야 함.

4)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높이 계획	비 고
일반상업지역	110m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3-3-5. 준용

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 독막로변(20m 도로)	• 건축한계선 3m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
	• 백범로28길변(6m 도로)	• 건축한계선 3m	
	• 백범로36길변(10m 도로)	• 건축한계선 1m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물 형태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규제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도모	권장
	야간경관 조명	•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건축설비의 노출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금지	
기타 사항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등 관련규정 준수	규제
	지하철 및 지중화 관련시설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물 또는 대지 안에 설치할 것을 권장	권장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전면공지	• 보도형 전면공지 - 독막로변(20m), 백범로28길변(6m), 백범로36길변(10m)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
공개공지	• 백범로28길과 공공보행통로 가각부에 공개공지 1개소 지정 • 가로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자의 휴게공간 조성	
공공 보행통로	• 대상지 및 주변 이용자의 원활한 보행흐름 유도 및 우회방지 도모	

나.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조서

1) 공공기여 계획

구 분	기준(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 고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일반 상업지역	250%	800%	부지면적의 34.0% 이상 (3,034.8㎡)	• 공공기여율: 총 34.4%(3,071.0㎡) - 공공임대산업시설 44.6% - 공공임대상가 22.6% - 지역필요시설 32.8%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4-1-1.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함

주2) 공공기여시설은 토지, 건축물 모두 기부채납함(기부채납만 공공기여율로 산정)

※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위치, 면적(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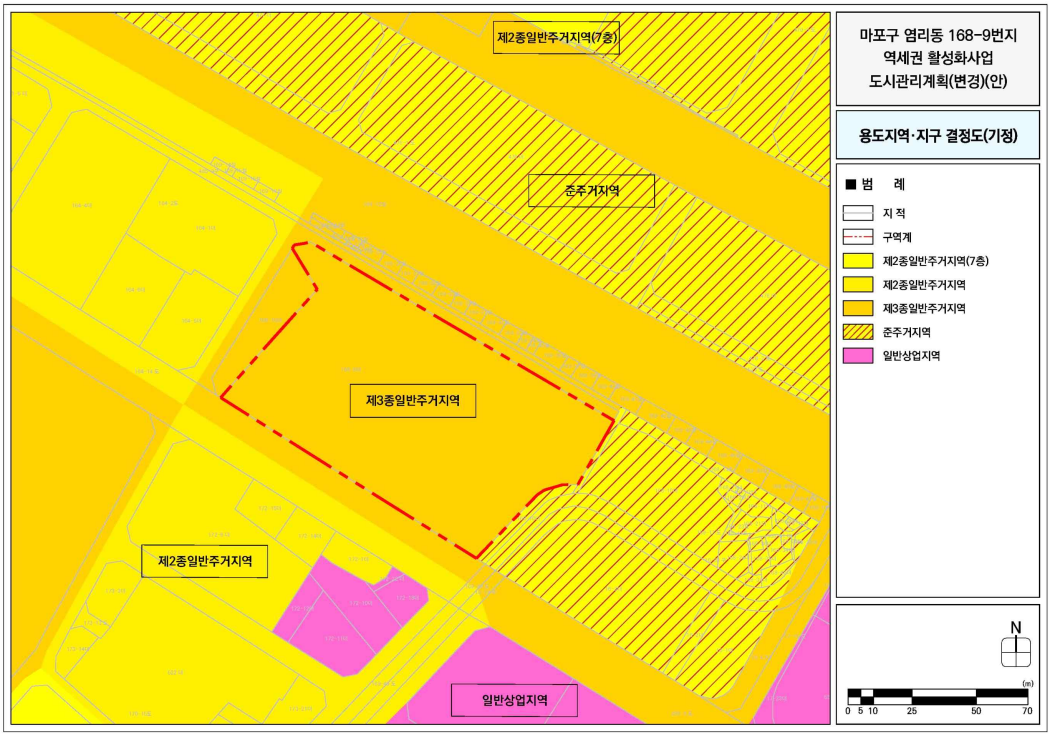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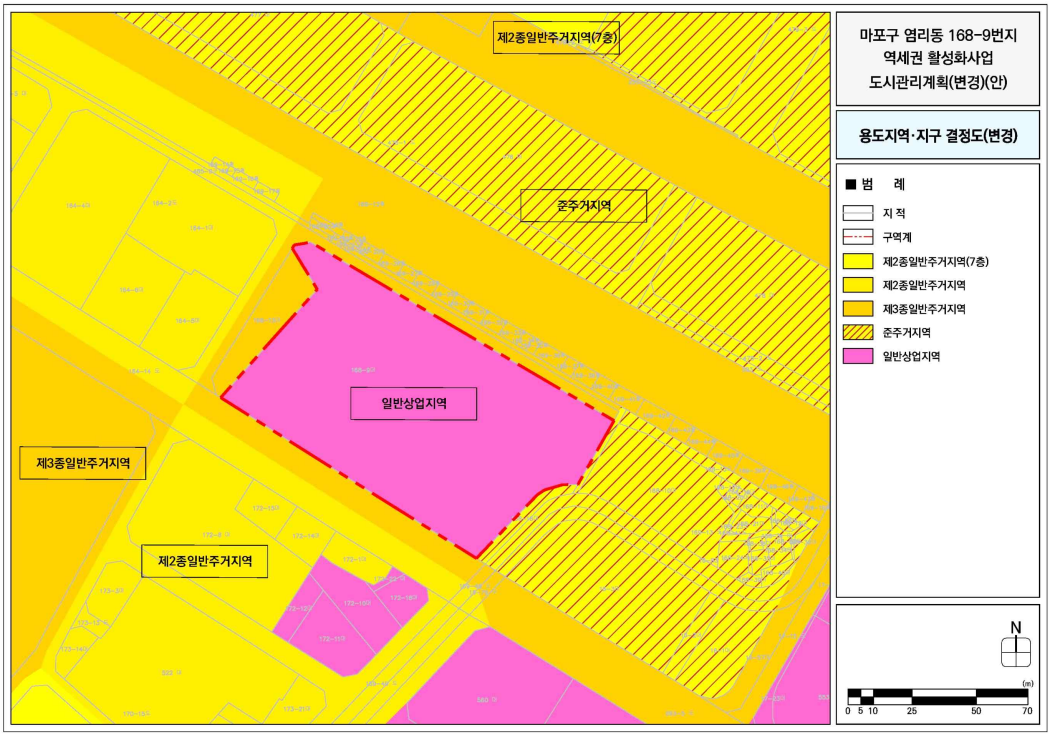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제9호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개공지, 대지 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 전면공지 조성방법의 변경
  -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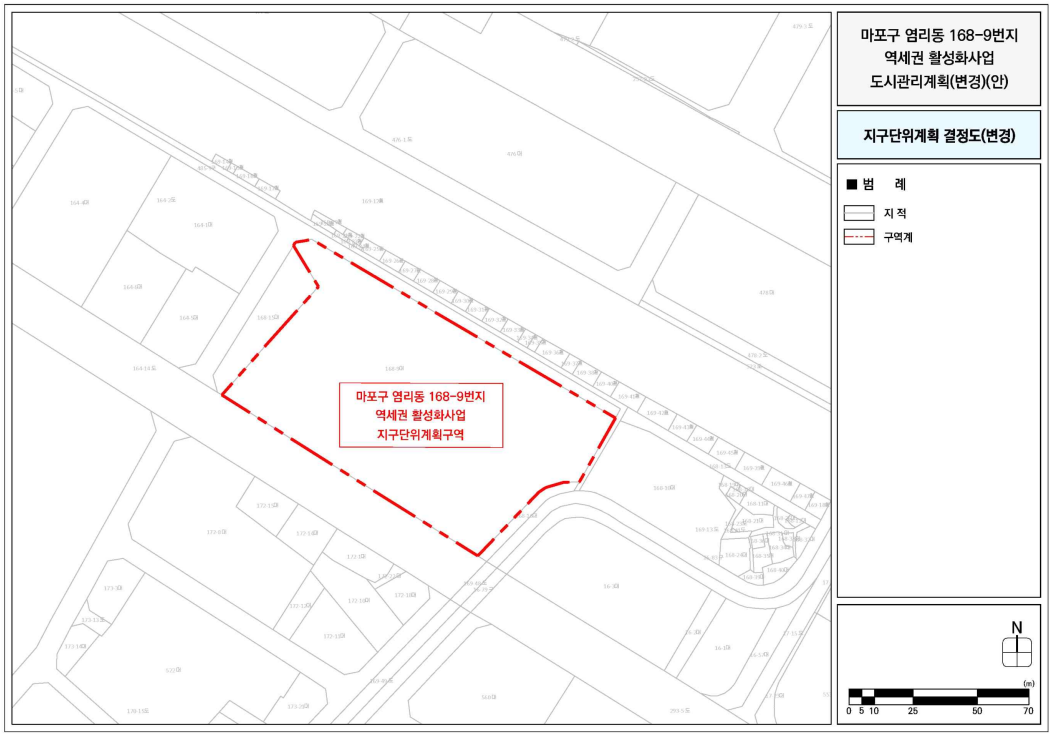
Ⅳ. 관계도면: 붙임 참조(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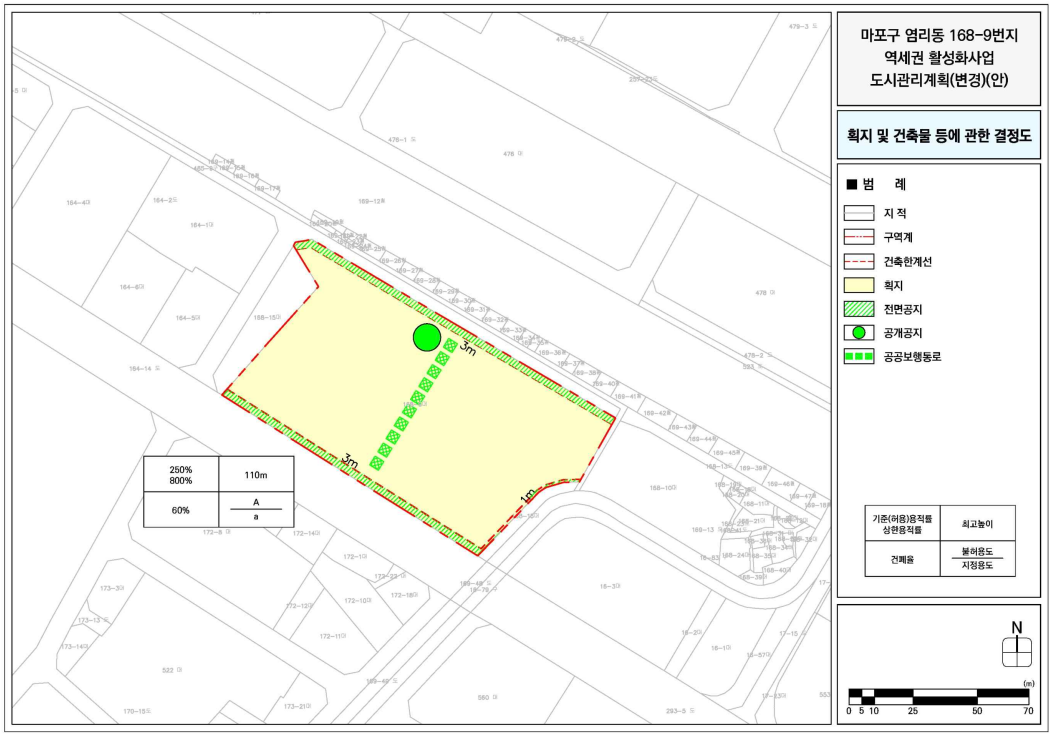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https://www.mapo.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 범 례
지 적
구역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N
0 5 10 25 50 70 (m)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 범 례
지 적
구역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N
0 5 10 25 50 70 (m)


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 범 례
지 적
구역계
N
0 5 10 25 50 70 (m)


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범 례
지 적
구역계
건축한계선
획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3m
3m
1m
250%
800%
110m
60%
A
a
기준(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최고높이
건폐율
볼허용도
지정용도
N
0 5 10 25 50 70 (m)

◈ 양천구공고 제2023-1568호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71호(2007.3.22.)로 결정 고시된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4일
양 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2620-3517)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4. 의견제출 :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서면(별도서식 없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도시계획과(☎2620-35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양천구공고 제2023-1569호

도시관리계획[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72호(2007.3.22.)로 결정 고시된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4일
양 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2620-3509)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4. 의견제출 :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서면(별도서식 없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도시계획과(☎2620-350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양천구공고 제2023-157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갈산근린공원] 결정(변경)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73호(2020.06.25.)로 최종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의 제안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4일
양 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3. 9. 14. ~ 10. 4. (14일이상)

나. 열람장소 : 양천구청 공원녹지과(☎2620-3574)

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조서

-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공원	근린공원	양천구 신정동 162-56일원	139,576	감) 578	138,998	1977.07.09. (건설부고시 138호)	일부 해제

- 해제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비고
1	양천구 신정동	162-28	대	235	235	이OO	
2		162-30	대	343	343	이OO	
계				578	578		

라. 변경 결정 사유서
- 확정판결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재처분하고자 함
- 갈산근린공원 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기존건물 저촉지역 공원 일부 해제

마.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바.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공원녹지과(☎2620-357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금천구공고 제2023-1507호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43호(2004.1.5.)로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및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04-1호(2004.1.10.)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2004-19호(2004.5.6.)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관련도서는 금천구청 문화체육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며,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4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금천구 시흥동 893-1번지 외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 명 칭 :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사업
다. 사업면적 : 4789.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2024.12.31. 까지
바. 열람 장소 :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사.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문화체육과(☎2627-1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공고 제2023-1505호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1-1608호(2021. 9. 23.)로 열람·공고한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2년 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 · 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도시계획포털(주민의견청취-동작구-공고문)에 주민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4일
동 작 구 청 장

Ⅰ.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장승배기로 161, 본관 4층)
Ⅲ.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74,079	-	74,079	서울시고시 1997-14호 (1997.2.14)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①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 경계 조정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및 근린공원의 정형화를 위해 구역 경계 조정 - 사유지와 근린공원의 동일면적 토지교환(274.8㎡)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4,079.0	-	74,079.0	100.0	
일반주거지역	27,705.2	감) 4,139	23,566.2	31.8	
제1종일반주거지역	1.0	-	1.0	0.0	도로 및 광장
제2종일반주거지역	22,514.0	-	22,514.0	30.4	도로 및 광장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5,190.2	감) 4,139	1,051.2	1.4	
준주거지역	34,059.8	증) 4,139	38,198.8	51.6	
근린상업지역	12,314.0	-	12,314.0	16.6	

※기정 면적은 2022년 고시 면적(동작구고시 제2022-29호)이며,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조정(사유지와 근린공원의 동일면적 274.8㎡ 토지교환)에 따른 근린공원 편입은 토지교환시 용도지역도 교환함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4,139	500% 이하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도로 외 변경없음

1) 도로 : 금회 신설도로 외 기정 도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류	-	4~6	국지 도로	35	상도동 363 -193	상도동 363 -292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	•도로 신설 (폭 4~6m, 연장 35m)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잔여부지의 차량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등용로에서 잔여부지로의 국지도로 신설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계획 : 가구 a번 외 변경없음

구분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a	7,984.0	•상도동 363-190	185.0	-	
			•상도동 363-116, 363-180	305.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3-273	240.0	-	
			•상도동 363-87, 363-88, 363-228	233.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3	86.0	-	
			•상도동 363-143	235.0	-	
			•상도동 363-94	222.0	-	
			•상도동 363-5	387.0	-	
			•상도동 363-10	328.0	-	
			•상도동 363-268	120.0	-	상도동 363-224와 합병
			•상도동 363-135	310.0	-	상도동 363-265와 합병
			•상도동 363-117, 363-235	479.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3-92, 363-152, 363-231	202.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3-9	152.0	-	
			•상도동 363-125	152.0	-	
			•상도동 364-1	299.0	-	
			•상도동 363-168, 363-169	344.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3-243	676.0	-	
			•상도동 363-164	1,876.0	-	상도동 363-204와 합필
			•상도동 363-142, 363-205, 363-303	1,153.0	공동개발 지정	장승배기2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a	3,447.0	•상도동 363-190	185.0	-	
			•상도동 363-87, 363-88, 363-228	233.0	공동개발 지정	
			•상도동 363-164	1,876.0	-	상도동 363-204와 합필
			•상도동 363-142, 363-205, 363-303	1,153.0	공동개발 지정	장승배기2 특별계획가능구역

2) 필지의 교환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a번 가구면적 4,537㎡ 감소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신설 반영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상도동 373-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73-1번지 일대	9,132.8	-	9,132.8	
신설	②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	-	증) 5,245	5,245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②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신설: 면적 5,245㎡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신설 -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확대사업 대상지 선정(' 20.5월)

3) 장승배기1 특별계획가능구역 : 변경없음
4) 장승배기2 특별계획가능구역 : 변경없음
5) 상도동 373-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 변경없음
6)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신설)
가) 구역개요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	5,245	

나)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적용하며,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 자문단'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주1),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반시설			•등용로에서 잔여부지로의 폭 4~6m 연결도로 조성	
용도주2)	지정용도주3)(①)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라목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라, 아, 자목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불허용도(b)	전층	•제2호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 •제28호 장례식장	
		1층	•제2호 공동주택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허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 •준주거지역 360% 이하	
	상한		•5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34층 이하, 100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등용로변 3m, 그 외 도로변 1~1.5m -그 외 도로변 중 상도로15길은 반대편 경계에서 10m 이격하여 확보	결정도 참조
대지 안의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지정구간내 전면공지 조성 -등용로변 : 보도부속형(3m) -상도로15길변 : 보도부속형(1~1.5m) -신설도로변 : 보도부속형(1~1.5m)	

주1)사유지(제3종일반주거지역)와 근린공원(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동일면적 토지교환 후 용도지역도 교환하는 것으로 전제

주2)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에 해당

주3)지정용도는 지상1층 및 지하1층 바닥면적 합계의 50% 이상 확보(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분 및 공공기여시설 면적 제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형태 및 색채	건축물 입면	•통일적 요소와 특징적 요소로 구분하여 디자인 -건축물 외벽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규모·소재 추구 -주요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도로로부터 전면으로 인식되도록 계획 -저층부(2층 이하), 중층부(저층부와 상층부를 제외한 구간), 상층부(최상층 2개 이내)로 분절하여 디자인 -저층부 입면은 수직분절요소, 개방형 벽면 등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입면 디자인 유도	
	건축물 저층부 (2층 이하)	•주요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저층부(2층 이하)는 다채로운 파사드 조성을 위하여 윈도우존, 차양존, 사인존으로 분할되는 수평분할요소 적용 -윈도우존 : 출입문 및 투시형 벽면(벽면적 50% 이상) 설치 -차양존 : 어닝 등 차양시설 설치 -사인존 : 옥외광고물 설치	
	차양막	•설치시 저층부에 한해 설치. 동일층에서는 같은 형태 및 높이, 동일 건축물 내 같은 색채로 하고 너비는 단위 창문폭 미만으로 설치	
옥외광고물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색채 및 소재 사용 •가로형 간판은 2층 이하의 업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고 폭은 해당 업소의 가로폭 이내로 제한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등용로 및 상도로15길변 일부 주차출입구 설치 불허	결정도 참조
	공공보행 통로	•등용로~노량진근린공원간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2개소, 폭원 3m 이상	결정도 참조

주4)공공보행통로는 향후 건축계획 수립시 방향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위치 및 선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3호」를 적용하며,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 자문단'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기여	비율	•증가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주1) -제3종일반주거지역 25% 이상, 준주거지역 10% 이상	
	시설 종류	•공공임대주택/상가/오피스, 지역필요시설(생활서비스시설, 문화시설 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적용기준'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용적률 : 50% (증가하는 용적률의 ½에 해당하는 용적률)	
비주거 용도 비율		•용적률 10% 이상 (준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제외)	
주택건설기준		•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형태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주2)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친환경 건축물, 역사문화 보전 중 2가지 사항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공동시설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 따라 세대당 2.5㎡ X 1.25	

주1)사유지(제3종일반주거지역)와 근린공원(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동일면적 토지교환 후 용도지역도 교환된 것으로 전제하여 산정
주2)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에서 규정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역세권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2 (노량진 근린공원)상도제10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상도제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상도동 363번지 및 노량진동 315번지 일대	32,001.0	-	32,001.0	서울시고시 2006-430호 (2006.12.14)	-
변경		상도제10 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상도제10 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명 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구역 경계 조정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및 근린공원의 정형화를 위해 구역 경계 조정 -사유지와 근린공원의 동일면적 토지교환(274.8㎡)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구 분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구성비 (%)	비고
계	32,001.0	-	32,001.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3,338.0	-	13,338.0	41.68	
제2종일반주거지역	3.0	-	3.0	0.01	
제3종일반주거지역	18,588.0	-	18,588.0	58.09	
준주거지역	72.0	-	72.0	0.22	

※ 기정 면적은 2016년 고시 면적(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6-52호)이며,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조정(사유지와 근린공원의 동일면적 274.8㎡ 토지교환)에 따른 사유지 편입은 토지교환시 용도지역도 교환함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공원 외 변경없음

1)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	노량진 근린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294-190번지 일대	413,203 (12,355.0)	-	413,203 (12,355.0)	총독부 고시 제208호 (1940.3.12.)	

※ ( )은 구역내 면적 표시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노량진 근린공원	•공원 경계 조정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및 근린공원의 정형화를 위해 공원 경계 조정 -사유지와 근린공원의 동일면적 토지교환(274.8㎡)

Ⅳ.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송파구공고 제2023-156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24호(1974.9.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12호(1995.11.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내 송파구 신천동 32번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의제처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문화예술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02-2147-28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4일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32-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부지면적: 대지면적 117,109.01㎡/사업부지 1,391.40㎡
  2)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1층(최고높이10.20m)
  건축면적 225.29㎡/연면적 709.10㎡
  건폐율 0.76%/용적율0.98%

라. 사업시행자
  1) 성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고시일~2024. 5. 31.(예정)

바.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사.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아.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송파구청 문화예술과(☎ 2147-2807)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토 지 조 서

연번	지번	지목	면적 (㎡)	시설결정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송파구 신천동 32-0	공원	117,109.10	1.391.40	송파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차.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력사항

1)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

- 최　　초 : 1974. 09. 24. (건설부고시 제324호)
- 최　　종 : 1996. 01. 08.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93호)

2) 공원조성계획 결정

- 최　　초 : 1977. 07. 09. (서울특별시고시 제1977-138호)
- 최　　종 : 1995. 11. 24.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12호)

◈ 강동구공고 제2023-1931호

암사동 252-8 일대 행위제한 열람 공고

1. 서울시 한옥마을 신규 조성사업 추진 예정인 암사동 252-8 일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행위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행위제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주민 등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 또는 서울도시계획포털에 의견서를 제출(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4일
강 동 구 청 장

가. 건　　명: 암사동 252-8 일대 행위제한(안)

○ 행위제한 사유: 개발행위로 인한 부동산 투기, 난개발 방지 및 향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 행위제한 대상지

구　분	위　치	면 적(㎡)	필지수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사업	강동구 암사동 252-8 일대	70,244	61

○ 제한기간: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제한대상 행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6호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예외사항

-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경우
- 재해 예방 또는 방재시설의 설치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6), 암사3동 주민센터(☎02-3425-7640)

라.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마.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서울도시계획포털(주민의견청취-강동구-공고문)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3-3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조선기술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47, 10동 309호	서울시계 내 한강 (잠원한강 공원 내 서울메리모나크 유선장 인근)	선박 3척 (845㎡)	서울메리모나크 시설개선	2023. 9. 4. ~ 2023.10.10.	2023.9.4.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3-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식회사 우림씨앤아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8, 502(신갈동, 이레타운)	서울시계 내 한강 (강동대교 인근)	선박 2척 (366㎡)	강동대교 교량하부 보수공사 중 선박항해	2023.09.20. ~ 2023.11.10.	2023.08.2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3-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재난안전관리실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교량안전과	서울시계 내 한강 (강동대교 ~ 행주대교 사이)	선박 1척 (14㎡)	교량 수중구조물 점검 및 청소	2023.08.28. ~ 2023.12.18.	2023.08.31.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27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길 99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84-6번지 등 4필지 일원
 - 면 적: 54.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열수송관 매설
 - 내 역
  · 고수부지 구간: 이중보온관 250A×2열 L=16m, 밸브시설 250A 1개소
  · 동부간선도로 구간: 강관케이싱 1100A×2열 L=38m, 이중보온관 250A×2열 L=38m 양수기

5. 점용기간: (당초) 2018.9.8.□~ 2023.9.7.
 (변경) 2023.9.8.□~ 2028.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27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길 99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일원
 - 면 적: 11,55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지역난방 공급
 - 내 역: 열수송관 매설(L=7,899m)

5. 점용기간: (당초) 2018.9.18.□~ 2023.9.17.
 (변경) 2023.9.18.□~ 2028.12.31.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31 문의 : ☎120